제 12 집

의정 백서

제7대 전반기

(2018. 7. 1. ~ 2020. 6. 30.)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북구 상징물

심벌 마크

● 산, 육지 / 자연 ● 바다 / 자연 ● 자동차를 포함한 산업 / 공단
산과 바다, 자동차 산업 등의 공단의 지역특성과 균형 잡힌 지역발전의 모습

캐릭터(쇠부리와 참나리)



쇠부리는 뜨거운 열정을 지닌 구민
참나리는 북구의 맑고 푸른 미래, 행복과 번영 상징
쇠부리가 들고 있는 망치는 4차 산업을 주도하는 디지털방망이

구화(참나리)



청초 우아함과 순결함, 번식력이 강하여 신설 북구의 깨끗함과 번영 상징

구목(느티나무)



화합·번영·안정성과 강한 생명력을 가진 장수나무로 북구의 힘찬 번영과 도약 상징

구조(산까치)



친숙성과 아름다움,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는 더불어 사는 북구의 희망과 친환경성 상징

발 간 사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제7대 전반기 북구의회가 어느덧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임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7대 전반기 2년간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원님들이 북구 관내 곳곳에서 발로 뛰는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그 뜻을 모아 최대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간의 의회 운영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연구자료와 정책자료로 활용하고자, 제7대 북구의회 전반기 2년간의 의정활동과 성과를 담은「제12집 의정백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북구의회는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열린 의정을 추진하고, 소통과 협치를 통한 선진 의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 전문성 있는 의회,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22만 북구 주민 모두가 풍요와 행복, 그리고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그 동안 자료수집과 편찬을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지역의 중요한 사료(史料)로서의 역할은 물론 주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모범적인 의회운영 모델을 정립하는데 소중한 지침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임 채 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7대 전반기 「의정백서」발간을 22만 주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018년 7월 제7대 북구의회를 개원한 이래,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역사문화벨트 조성을 통한 문화도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송정 역세권 마스터플랜 마련을 통한 도시 인프라 구축, 공공기관·공공시설 유치 등 지역 발전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우리 집행기관과 의회가 서로 긴밀한 협력관계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간된 「의정백서」가 제7대 전반기 북구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역사적 자료로서 향후 의정활동 지침서로도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제7대 전반기 북구의회 「의정백서」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 동 권**

의회

제 7대 전반기 북구의회 의원 현황

의 장 단

(재임기간 : 2018. 7. 2. ~ 2020. 7. 1.)

의 장	부 의 장
	
이 주 언	백 현 조



제7대 전반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 (2018. 7. 2.)



제7대 전반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보궐선거 (2020. 4. 16.)



이 주 언

가 선거구
(농소1동 · 강동동 · 송정동)

학력
우석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국대 사회과학대학원 재학

경력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조직국장 역임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울산선대본 유세 관리팀장 역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대외협력국장 역임
제7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반기 의장 역임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북구 자문위원
현) 고헌초등학교 운영위원장
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기초의회 원내대표 초대협의회장

자택 울산광역시 북구 통샘8길 14 (화봉동)
E-mail jelee21h@nate.com
H.P 010-9173-4432



정 치 락

가 선거구
(농소1동 · 강동동 · 송정동)

학력
울산고등학교 졸업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
울산광역시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 역임
하늘아이, 느티나무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장 역임
농소초, 신천초, 호계중, 매곡고 운영위원장 역임
북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역임
북구 족구연합회 회장 역임
6대 울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역임
6대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장 역임
농소 새마을금고 이사 역임
현) 4·19혁명 정임석열사추모사업회 사무국장
현) 매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
현) 월드메르디앙월드시티2단지 입대의 회장
현) 농소초등학교 총동문회장

자택 울산광역시 북구 매산로 66 (매곡동)
E-mail jcr3993@hanmail.net
H.P 010-3863-8980



박 상 복

가 선거구
(농소1동 · 강동동 · 송정동)

학력
학성고등학교 졸업
울산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경력
현대자동차그룹 기획실, 품질본부 차장 역임
농소초등학교 운영위원 역임
경영서적 집필(제로플러스, 강소기업이 힘이다)
제7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018.7.2.~2020.1.15.)

자택 울산광역시 북구 달곡2길 101-8(신현동)
E-mail creatin@naver.com
H.P 010-8630-4918



이 정 민

나 선거구
(농소2동 · 농소3동)

학력
성덕대학 사회복지계열 졸업

경력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북구지회장 역임
농소2동 체육회 회원, 감사, 부회장 역임
법무부 법사랑위원 청소년협의회 북구지구
운영위원 역임
바르게살기운동 울산북구협의회 여성회장 역임
울산북구시니어클럽 운영위원 역임
울산 명성노인전문요양원 운영위원 역임
한자녀 더갖기 연합 울산본부 북구지부장 역임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북구 자문위원
현) 북구 한부모가정 어머니후원회 회원
현) 제7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자택 울산광역시 북구 마동로10, 3층 (호계동)
E-mail jungmin3387@daum.net
H.P 010-3123-3387



정 외 경

나 선거구
(농소2동 · 농소3동)

학력 울산여자고등학교 졸업
한국방송통신대 청소년교육과 재학

경력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역임
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현)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국립병원유치특별위원회
북구 공동위원장

자택 울산광역시 북구 약수9길 20, 가동 1310호
(중산동, 약수제일아파트)
E-mail jsara0918@hanmail.net
H.P 010-6625-7725



임 수 필

나 선거구
(농소2동 · 농소3동)

학력 제주 오현고등학교 졸업
울산대학교 졸업

경력 북구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 위원장 역임
친환경 의무 무상급식 풀뿌리 울산연대 북구집행위원장 역임
북구주민회 대표 역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대표 역임
농소3동 자율방범대원 역임
현) 북구주민회 회원
현) 식생활교육 울산북구 네트워크 회원
현) 농소큰사랑작은음악회 회원
현) 이웃사랑해모임 회원
현) 엄마손봉사단 회원
현) 참사랑봉사대 회원
현) 매곡중학교 운영위원

자택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5, 212동 506호
(상안동, 쌍용아진그린타운)
E-mail soiburi@hanmail.net
H.P 010-6227-0049



임 채 오

다 선거구
(효문동 · 양정동 · 염포동)

학력
성신고등학교 졸업
국립경상대학교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실용영어학과 석사과정재학

경력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국립병원유치 북구 공동위원장 역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역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사람중심도시디자인
북구 공동위원장 역임
제7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역임
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현) 제7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후반기 의장

자택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로 54, 1동 710호
(연암동, 성원아파트)
E-mail president52@naver.com
H.P 010-4844-5405



백 현 조

다 선거구
(효문동 · 양정동 · 염포동)

학력
경주 문화고등학교 졸업
대구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졸업

경력
양정동 주민자치위원 역임
양정동 선거관리위원 역임
양정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역임
북구 축구연합회 사무국장 역임
제18대 대통령선거 북구지역 상황실장 역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수행팀장 역임
제19대 대통령선거 북구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역임
국회의원 비서관 역임
새누리당 북구 양정동협의회 회장 역임
효문초등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역임
새누리당 북구 동협의회 간사 역임
제7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역임
미래통합당 울산시당 통일안보위원장 역임
현) 국민의힘 울산시당 부대변인(북구당협 대변인)
현) 북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현)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현)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자택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379, (양정동)
☎ 287-6822
E-mail bh6605@hanmail.net
H.P 010-3801-8364



이 진 복

비례대표

학력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서예과 졸업
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재학

경력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총무부장 역임
현) 제7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
현) 더불어민주당 북구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현)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
현) 호계초등학교 운영위원
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자치분권위원회 자문위원

자택 울산광역시 북구 통샘10길 9, 107동 503호
(화봉동, 삼환아파트)
E-mail jjjh8986@hanmail.net
H.P 010-4228-8986

의회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제7대 북구의회 의원 당선증 교부식 (2018. 6. 15.)



제7대 당선의원 상견례 및 오리엔테이션 1 (2018. 6. 21.)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제7대 당선의원 상견례 및 오리엔테이션 2 (2018. 6. 21.)



제7대 북구의회 개원식 1 (2018. 7. 2.)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제7대 북구의회 개원식 2 (2018. 7. 2.)



제7대 북구의회 개원식 3 (2018. 7. 2.)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제7대 북구의회 의원 역량강화교육 (2018. 7. 12.)



공무원노조 북구지부와의 간담회 (2018. 7. 16.)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북구의회 아이스버킷 챌린지 참가 (2018. 7. 20.)



현장방문 활동(강동문화센터, 달천철장) (2018. 7. 20.)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건강버스 및 건강관리센터 개소식 (2018. 9. 3)



제7대의원 노인복지회관 자원봉사활동 (2018. 9. 11)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제7대 의원 예결산교육 (2018. 9. 28.)



제19회 북구장애인 복지증진대회 (2018. 10. 16.)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북구의회 의원 직원 역량강화 교육 (2018. 10. 22.)



자율방범순찰 자원봉사활동 (2018. 10. 23.)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지역현안 관련 간담회 (2018. 11. 1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 (2018. 11. 21.)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의원 현장방문활동 (2018. 11. 29.)



강동문화센터 개관식 (2018. 12. 3.)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2018년도 적십자회비 전달 (2018. 12. 5.)



2018년 북구의회 종무식 (2018. 12. 21.)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2019년 구정발전 기원 신년인사회 (2019. 1. 9.)



정자활어직매장 준공식 (2019. 1. 31.)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삼일절 기념행사 (2019. 3. 1.)



새봄맞이 일제대청소 (2019. 3. 26.)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쇠부리사업 추진사항 보고회 (2019. 3. 27.)



진장명촌지구 관련 의원 간담회 (2019. 4. 8.)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구군의원 친선체육대회 참가 (2019. 4. 20.)



제15회 쇠부리축제 개막 (2019. 5. 10.)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쇠부리축제 가마솥 비빔밥 배식 (2019. 5. 12.)



7765부대 2대대 위문 (2019. 5. 14.)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키즈오토파크울산 준공식 (2019. 6. 10.)



182회 1차 정례회 현장방문 (2019. 6. 21.)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김용종 의회사무과장 송별회 (2019. 6. 24.)



세계로태권도 국제문화교류단 접견 (2019. 7. 24.)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구군의원 합동워크숍 참가 (2019. 8. 20.)



중산초, 북구의회 본회의 견학 (2019. 8. 26.)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필승코리아 애국펀드 가입 (2019. 8. 29.)



북구시설관리공단 출범식 (2019. 9. 2.)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북구의회 의정연찬회 개최 (2019. 9. 17.)



구민한마음체육대회 참가 (2019. 10. 13.)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4분기 배식자원봉사 (2019. 10. 17.)



184회 임시회 현장방문 (2019. 10. 17.)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개소식 참가 (2019. 11. 20.)



185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2019. 11. 21.)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사용후핵연료 정책 관련 기자회견 (2019. 11. 21.)



농수산물도매시장 울주군 선정 불복 회견 (2019. 11. 29.)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새마을회 김장나눔행사 참가 (2019. 12. 4.)



2019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2019. 12. 5.)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북구의회 종무식 개최 (2019. 12. 20.)



나눔냉장고 물품 전달식 (2019. 12. 27.)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농소1동 주민자치회 발대식 (2020. 1. 9.)



북구신년인사회 참가 (2020. 1. 9.)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코로나19 피해지원성금 전달 (2020. 3. 12.)



매곡강동 현장방문활동 (2020. 6. 23.)

목 차

■ 발간사

■ 축 사

■ 제7대 전반기 북구의회 의원 현황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제1장 일반현황

제1절 우리고장의 연혁 ····· 53

제2절 의회연혁 ····· 55

제3절 의회일반현황 ····· 57

1. 제7대(전반기)의회 원구성 ····· 57
2. 의회기구 ····· 58
3. 의원현황(직업, 학력, 연령, 성별) ····· 58
4. 의회예산(당초)현황 ····· 59
5. 의사당 시설현황 ····· 60
6. 사무과 직원현황 ····· 60
7. 의회의 권한 ····· 61
8. 의회의 역할 ····· 62

제4절 구정기본현황 ····· 63

1. 지역여건 ····· 63
2. 구정현황 ····· 63
3. 구민생활지표 ····· 64
4. 동별 인구면적 현황 ····· 66
5. 울산광역시 구군 일반현황 ····· 67

제2장 의회운영현황

제1절 집회현황 ····· 71
1. 의회역대 집회현황 ····· 71
2. 연도별 집회현황 ····· 72
3. 회기별 소집요구 및 집회현황 ····· 73

제2절 회기별 안건처리현황 ····· 74

제3절 회기별 주요의정활동 내용 ····· 75

제3장 제7대 전반기 개회상황

제1절 제174회 임시회 ····· 83
1. 개회이유 ····· 83
2. 개 회 사 ····· 83
3. 의사일정 ····· 85

제2절 제175회 임시회 ····· 86
1. 개회이유 ····· 86
2. 개 회 사 ····· 87
3. 의사일정 ····· 88
4.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91

제3절 제176회 임시회 ····· 109
1. 개회이유 ····· 109
2. 의사일정 ····· 109

제4절 제177회 임시회 ····· 110
1. 개회이유 ····· 110
2. 개 회 사 ····· 110
3. 의사일정 ····· 112
4.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114

제5절 제178회 제1차 정례회 ····· 117
1. 개회이유 ····· 117
2. 개 회 사 ····· 118
3. 의사일정 ····· 119
4.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121

제6절 제179회 제2차 정례회 ····· 126
1. 개회이유 ····· 126
2. 개 회 사 ····· 128
3. 의사일정 ····· 129
4.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139

제7절 제180회 임시회 ····· 182
1. 개회이유 ····· 182
2. 개 회 사 ····· 182
3. 의사일정 ····· 184
4.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186

제8절 제181회 임시회 ····· 193
1. 개회이유 ····· 193
2. 개 회 사 ····· 194
3. 의사일정 ····· 196
4.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199

제9절 제182회 제1차 정례회 ····· 220
1. 개회이유 ····· 220
2. 개 회 사 ····· 221
3. 의사일정 ····· 223
4.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226

제10절 제183회 임시회 ····· 246
1. 개회이유 ····· 246
2. 개 회 사 ····· 247
3. 의사일정 ····· 249
4.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251

제11절 제184회 임시회 ····· 265
1. 개회이유 ····· 265
2. 의사일정 ····· 266
3.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267

제12절 제185회 제2차 정례회 ····· 277
1. 개회이유 ····· 277
2. 개 회 사 ····· 278
3. 의사일정 ····· 279
4.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283

제13절 제186회 임시회 ····· 307
1. 개회이유 ····· 307
2. 개 회 사 ····· 307
3. 의사일정 ····· 309
4.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310

제14절 제187회 임시회 ····· 314
1. 개회이유 ····· 314
2. 개 회 사 ····· 314
3. 의사일정 ····· 316
4.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318

제15절 제188회 제1차 정례회 ····· 336
1. 개회이유 ····· 336
2. 개 회 사 ····· 336
3. 의사일정 ····· 338
4.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340

제16절 제189회 임시회 ····· 359
1. 개회이유 ····· 359
2. 의사일정 ····· 359

제4장 예산·결산심의사항

제 1절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63
제 2절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367
제 3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70
제 4절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72
제 5절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78
제 6절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82
제 7절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386
제 8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91
제 9절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93
제10절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97

제11절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04
제12절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08
제13절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412
제14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417

제5장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사항

제1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 421
1. 감사개요 ····· 421
2. 감사대상 기관(부서) 및 증인 출석요구 공무원 ····· 422
3. 행정사무감사 일정 ····· 424
4. 감사자료 제출 요구 ····· 425
5.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 425
6. 증인 선서 방식 ····· 426
7. 행정사항 ····· 426
8. 동주민센터 연도별 행정사무감사 계획 ····· 426
9.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현황 ····· 427

제2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 469
1. 감사의 목적 ····· 469
2. 근거 ····· 469
3. 감사기간 ····· 469
4. 감사대상 기관 ····· 469
5. 감사실시 경과 ····· 469
6. 감사결과 ····· 472

제3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 493

제4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495
1. 시정·건의요구사항 현황 ····· 495
2.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 ····· 49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사항

제5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 540
1. 감사개요 ····· 540
2. 감사대상 기관(부서) 및 증인 출석요구 공무원 ····· 541
3. 행정사무감사 일정 ····· 543
4. 감사자료 제출 요구 ····· 544
5.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 544
6. 증인 선서 방식 ····· 545
7. 행정사항 ····· 545
8. 동주민센터 연도별 행정사무감사 계획 ····· 545
9.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현황 ····· 546

제6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 592
1. 감사의 목적 ····· 592
2. 근거 ····· 592
3. 감사기간 ····· 592
4. 감사부서 ····· 592
5. 감사실시 내용 ····· 592
6. 감사결과 ····· 596

제7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 620

제8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622
1. 시정·건의요구사항 현황 ····· 622
2.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 ····· 623

제6장 기타의정활동

제1절 결의안 ····· 665

제2절 구정질문, 서면질문 ····· 687

제3절 5분 자유발언 ····· 713

제4절 진정·건의서 처리현황 ····· 818

제5절 주요 의정활동사항 ····· 835

제6절 의정활동일지 ····· 851

〔附　錄〕

1. 역대 의장단 명단 ····· 877
2. 초대의원 명단 ····· 879
3. 초대의원 사진 ····· 880
4. 제2대 의원 명단 ····· 881
5. 제2대 의원 사진 ····· 882
6. 제3대 의원 명단 ····· 883
7. 제3대 의원 사진 ····· 884
8. 제4대 의원 명단 ····· 885
9. 제4대 의원 사진 ····· 886
10. 제5대 의원 명단 ····· 887
11. 제5대 의원 사진 ····· 888
12. 제6대 의원 명단 ····· 889
13. 제6대 의원 사진 ····· 890
14. 제7대 의원 명단 ····· 891
15. 제7대 의원 사진 ····· 892
16. 북구지역 전직의원 명단 ····· 893
17. 역대 구청장 명단 ····· 894
18. 역대 사무(국)과장 명단 ····· 894
19. 역대 전문위원 명단 ····· 895

제1장

일반현황

제1절 우리고장의 연혁
제2절 의회연혁
제3절 의회일반현황
제4절 구정기본현황

제1절 우리고장의 연혁

□ **부족국가시대**

◦ 삼한시대에는 진한에 속하였으며, 굴아화촌이라는 촌락 형성

□ **삼국시대**

◦ 신라 제35대 경덕왕 16년에 지명을 하곡으로 개칭, 임관군에 속함.

□ **고려시대**

◦ 태조때 하곡, 동진, 우풍현을 합하여 흥려부로 승격
◦ 제16대 현종때 울주로 개칭

□ **조선시대**

◦ 제3대 태종 13년 울주를 울산으로, 선조 31년 울산 도호부로 승격
◦ 고종 32년 울산군으로 개칭

□ **근　　대**

◦ 1941년 부군 정리 폐합하는 지방제도 개편 시 언양군을 울산군에 병합하고 울산면, 사항면, 대현면으로 행정구역개편

□ **현　　대**

◦ 1962. 2. 1. : 각령 제403호로 울산특정공업지구로 지정 공포
(당시 농소면 송정리, 화봉리 편입)
◦ 1962. 6. 1. : 법률 제1086호로 울산시로 승격
울산군을 울주군으로 명칭변경
(농소·강동면→울주군 편입)

◦ 1985. 7. 15. : 대통령령 제11716호로 구제실시
(2구 1출장소 40개동, 중·남구)
◦ 1988. 1. 1. : 대통령령 제12367호로 방어진출장소 설치
◦ 1991. 1. 1. : 방어진출장소→동구청으로 승격(3구 40개동)
(울주군→울산군으로 명칭변경)
◦ 1995. 1. 1. : 법률 제4081호로 울산시·군, 도·농통합
(울산군→울주구로 명칭변경)
◦ 1995. 3. 2. : 농소면→농소읍으로 승격
◦ 1996. 12. 31. : 법률 제5243호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공포
(북구는 종전 울산시 중구 송정, 효문, 진장, 양정동과 울주군 농소읍, 강동면으로 구역획정)
◦ 1997. 7. 15. : 울산광역시 및 북구설치〈신설〉 → 8개동
(농소읍→농소1, 2, 3동, 강동면→강동동으로 전환)
◦ 1998. 3. 1. : 대통령령 제15652호 "광주광역시북구등4개자치구의 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에 의거 동구 염포동이 북구로 편입→ 9개동
◦ 1998. 10. 1. : 인구과소동 폐치분합 진장동·효문동 → 효문동(8개동)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1차 구조조정 지침〉
◦ 2001. 6. 1. : 청사 소재지 변경
(남구 신정3동 585-9→북구 연암동 1004-1)

제2절 의회연혁

□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 1952. 4. 25. : 초대 읍·면의원 선거(56명)
◦ 1956. 8. 8. : 제2대 읍·면의원 선거(50명)
◦ 1960. 12. 19. : 제3대 읍·면의원 선거(50명)
◦ 1961. 9. 1. : 울산읍·면의원 해산

□ 울산시 승격 이후

◦ 1991. 3. 26. : 울산시의회의원 선거(50명)
◦ 1991. 4. 15. : 초대 울산시의회 개원
- 임기 : 1991. 4. 15. ~ 1995. 6. 30.
◦ 1992. 7. 12. : 울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중·남·동구 각 1명)
◦ 1993. 7. 10. : 울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동구 1명)

□ 울산시·군 통합 이후

◦ 1995. 1. 10. : 울산시·군 통합 울산시의회 개원(64명)
◦ 1995. 6. 27. :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1995. 7. 11. : 제2대 울산시의회 개원(60명)
- 임기 : 1995. 7. 1. ~ 1998. 6. 30.

□ 울산광역시 승격 및 북구의회 설치

◦ 1997. 7. 15. : 초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1997. 7. 15. ~ 1998. 6. 30.
◦ 1997. 7. 15. : 초대 울산광역시의회 개원(72명)
◦ 1998. 3. 1. : 동구 염포동 선거구 북구 편입(8명)

◦ 1998. 6. 4. :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1998. 7. 7. : 제2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개원(8명)
- 임기 : 1998. 7. 1. ~ 2002. 6. 30.
◦ 2000. 2. 21. : 송정동의원 사직(7명)
◦ 2000. 6. 8. : 송정동의원 보궐선거(8명)
◦ 2002. 6. 13. :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02. 7. 9. : 제3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개원(8명)
- 임기 : 2002. 7. 1. ~ 2006. 6. 30.
◦ 2006. 5. 31.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06. 7. 3. : 제4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2006. 7. 1. ~ 2010. 6. 30.
◦ 2010. 6. 2.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10. 7. 1. : 제5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2010. 7. 1. ~ 2014. 6. 30.
◦ 2014. 6. 4.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14. 7. 1. : 제6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2014. 7. 1. ~ 2018. 6. 30.
◦ 2018. 6. 13.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18. 7. 1. : 제7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8명)
- 임기 : 2018. 7. 1. ~ 2022. 6. 30.
◦ 2020. 1. 15. : 농소1·강동·송정동의원 사직(7명)
◦ 2020. 4. 15. : 농소1·강동·송정동의원 보궐선거(8명)

제3절 의회일반현황

1. 제7대〈전반기〉의회 원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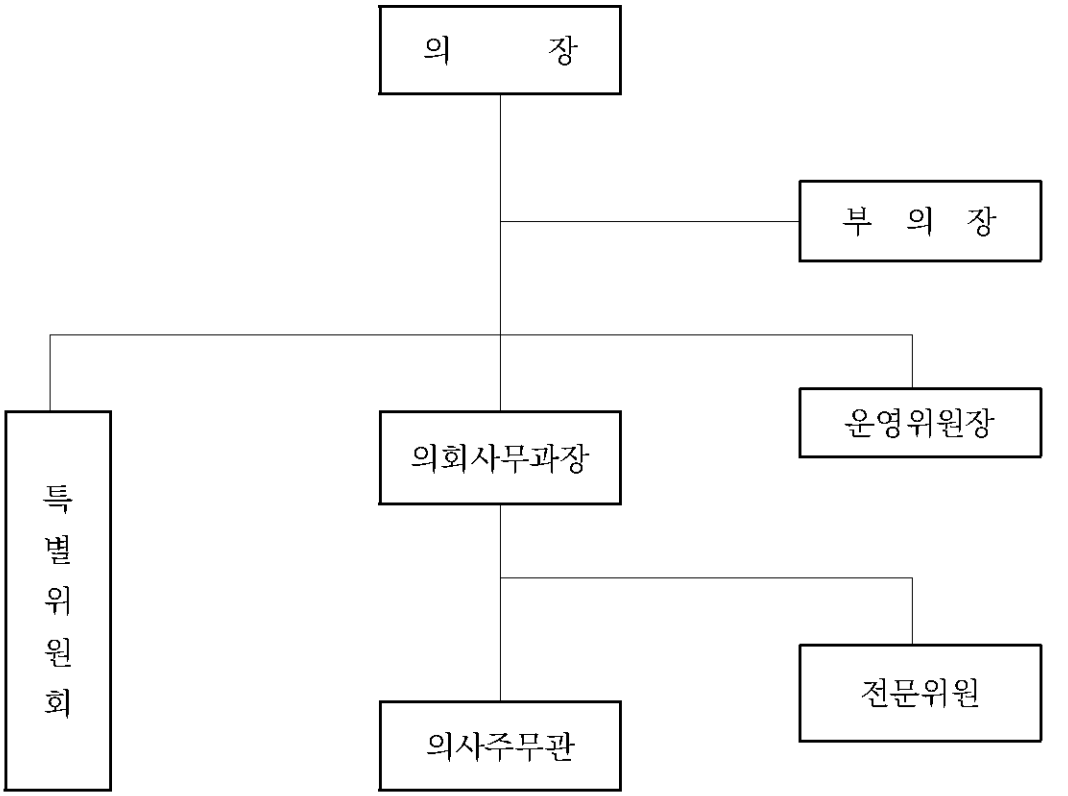
◦ 의장단 선거

2018년 7월 2일 10:00에 개회된 제17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8명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백현조 의원의 사회로 먼저 의장선거를 실시하고 계속해서 부의장을 선출하였으며, 의장에 이주언 의원, 부의장에 백현조 의원을 선출하였음.

◦ 의장단선거 실시결과

- 투표참석 의원 : 8명
- 선거방법 : 무기명 투표실시
- 총 투표수 8표 중 이주언 의원이 8표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여 의장에 당선되었음.
- 총 투표수 8표 중 백현조 의원이 6표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여 부의장에 당선되었음.

2. 의회기구



3. 의원현황

□ 의원정수

계	가 선거구	나 선거구	다 선거구	비례대표
	농소1·강동·송정동	농소2·3동	효문·양정·염포동	
8	2	3	2	1

□ 직업별

직업별 / 의원수	농 업	상 업	회사원	기 타	비 고
8				8	

□ 학력별

학력별 / 의원수	국졸	중졸	고졸	대재	대졸	대학원졸	기타
8					7	1	

□ 연령별

연령별 / 의원수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이상	50세 이상	60세 이상
8			3	3	2

□ 성 별

의 원 수	계	남	여	비고
8	8	5	3	

4. 의회예산(당초)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일 반 회 계		
	계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	행정운영경비 (의사운영)
2009년도	1,287,155	664,987	622,168
2010년도	1,227,266	596,134	631,132
2011년도	1,125,438	499,923	625,515
2012년도	1,183,542	505,561	677,981
2013년도	1,200,978	501,063	699,915
2014년도	1,249,983	545,085	704,898
2015년도	1,281,039	540,605	740,434
2016년도	1,347,643	555,035	792,608
2017년도	1,492,632	627,858	864,774
2018년도	1,563,071	683,869	879,202
2019년도	1,725,804	647,022	1,078,782
2020년도	1,769,377	655,822	1,113,555

5. 의사당 시설현황

◦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 면적 : 북구청 5층 1,174.55㎡ (355.30평)

(단위 : ㎡(평))

시 설 명	전용면적(평)	비 고
본 회 의 장	211.23(63.90)	
방 청 객 실	60.23(18.22)	
소 회 의 실	108.00((32.67)	
의 장 실	70.47(21.32)	
부 의 장 실	60.70(18.36)	
의 원 사 무 실	243.77(73.74)	1인실 6개
다 목 적 실	88.22(26.69)	
의 회 사 무 과	97.41(29.47)	
전 문 위 원 실	59.40(17.97)	
방 송 실 등 6 실	179.59(54.33)	

6. 의회사무과 직원현황

직위 및 직급	정 원	현 원	비 고
계	15	15	
5급(과 장)	1	1	
5급(전문위원)	2	2	
6급(의사주무관)	1	1	
6급(주무관)	2	2	전문위원 보좌
7급	4	5	행정2, 행정/임기제 행정1, 속기1
8급	3	3	행정2, 행정/방송통신1
9급	2	1	운전1, 속기1

※ 정원 외 : 1명(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7. 의회의 권한

◦ 의결권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함.

-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
-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행정감시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정부의 행정집행 상태를 감시하는 통제권으로 매년 정례회 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특정사안을 조사하는 행정사무조사가 있음.

◦ 자율권

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 스스로 규율을 정함.
(회의규칙, 회기결정 등)

◦ 선거권

의장, 부의장, 특별위원회위원장 등 선출

◦ 청원처리권

주민이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함.

◦ 의견표명권

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하여 집행기관, 공공·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건의안 등)을 제시할 수 있음.

8. 의회의 역할

◦ 주민대표기관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주민을 대신하여 지역의 이익을 대변함과 동시에 주민의 뜻을 정책결정에 반영시키는 역할
(선거지역뿐만 아니라 해당자치단체 전 주민대표)

◦ 의결기관

자치단체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 제정, 단체 운영 등 그 자치단체의 주요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의 역할

◦ 입법기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자치단체의 법규인 조례를 발의하고 의결하는 역할

◦ 감시기관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 및 확인하기 위해 보고, 승인, 질문, 행정사무감사·조사하는 역할

제4절 구정기본현황

1. 지역여건

◦ 주거, 공단, 해양관광·수산의 3개 권역별 지역·기능적 구분
◦ 주민생활 및 의식이 도시·농촌·어촌적 요소 공존
◦ 도·농 복합적 지역특성에 따른 구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 존재

2. 구정현황(2020. 6. 30.기준)

□ 면 적

◦ 행정구역 ------- 157.34㎢
◦ 도시계획구역

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소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소계	보전	생산	계획	
157.87	120.60	12.96	1.07	11.07	95.50	6.67	4.01	1.49	1.16	30.60

※ 개발제한구역 76.16㎢(48.2%)

□ 인 구

가 구	총 인구수			외국인 등록수
	계	남	여	
82,511세대	218,673명	113,189명	105,484명	2,422명

□ 행정조직

◦ 기　　구

구 분	본 청	의 회	보건소	사업소	동
현 황	3국 2실 20과	1과 2전문위원	1소 1과	1소 1과	8개동

◦ 공 무 원

(정원/현원)

계	본 청	의회사무과	보건소	사업소	동
615명/602.625명	450명/441.375명	14명/14명	44명/40명	9명/9명	98명/98.25명

◦ 예산(당초)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정자립도
2018년도	302,033	298,498	3,534	28.9%
2019년도	314,081	311,948	2,133	28.8%
2020년도	373,435	370,977	2,458	26.7%

3. 구민생활지표(2020. 6. 30.기준)

□ 보건복지

식품접객	공중위생	의료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세대/명)					생활폐기물 발생량		1일분뇨 수거량
		기관	병상수	소계	일반	시설	조건부	특례	1인1일 발생량	월발생량	
2,955 개소	698 개소	163	1,475	2,851 / 4,327	2,278 / 3,476	210 / 210	205 / 438	158 / 203	0.27kg	1,751ton	23.75ton

□ 지역경제

경 지 면 적				기 업 체		노동조합		
소 계	전	답	과수원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지자체 관할	고용노동부 관할
1,903ha	734ha	1,077ha	92ha	859개	50,523명	25개	14개	11개

□ 도시건설

도 로				주 택	상 수 도			하 수 도		
연장	도로율	포장도	포장율	보급률	1일 급수량	1인당1일 급수량	보급률	총인구	보급인구	보급률
562㎞	40.4%	265㎞	92.2%	79,284 110.7%	62,577 ton/일	323.4ℓ	99.0%	204,877명	202,418명	98.8%

□ 교 통

자 동 차				
소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115,958대	101,122대	2,771대	11,618대	447대

□ 교 육

(개소/학생수)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50개소 28,835명	22 15,881	14 6,927	12 5,775	0 0	2 252

4. 동별 인구·면적현황(2020. 6. 30.기준)

구 분	면 적 (㎢)	법정동	인구수 (명)	지 역 여 건 및 특 성
계	157.34	27	218,673	
농소1동	14.85	창평동 호계동 매곡동 신천동 (2개동중복)	37,632	농소라는 말은 고려 태조때의 박윤웅공의 **식읍지(食邑地)**인데서 생긴 말이며, 아파트 단지가 많고 경주시와 인접하고 있으며, 급격한 도시화로 **재래시장 및 신개발주거지역임**
농소2동	11.36	중산동 매곡동 신천동 (2개동중복)	40,063	
농소3동	31.17	가대동 상안동 천곡동 달천동 시례동	39,312	
강동동	60.72	무룡동 구유동 정자동 신명동 대안동 당사동 신현동 산하동 어물동	16,428	강동지역은 신라초에 율포현이 있고 울산지역의 동쪽이며, 해수욕장과 산과 바다가 조화된 **천혜의 관광지역**이며 **국제규격의 강동축구장**이 있음
효문동	16.29	명촌동 진장동 연암동 효문동	29,965	효문은 세종때 효자였던 송도의 효성을 기리기 위해 효문이라 하였으며,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이 많은 **준공업지역임**
송정동	10.78	화봉동 송정동	34,903	송정은 큰 노송들이 많이 우거져있고 좋은 정자가 있었다하여 송정이라고 하였으며, 울산공항이 있고 북구 중심의 **교통요충지역임**
양정동	6.66	양정동	10,129	영조때 오정리와 양정리의 두마을이 있었으며 우리나라 대기업인 **현대자동차** 회사가 소재해 있고, **7,800여평의 양정생활체육공원**이 있음.
염포동	5.51	염포동	10,241	염포는 이조때 수군의 군사기지와 왜군회유책으로 개항한 **제포, 부산포와 함께 3포의 하나**였으며 현대하이스코, 현대모비스 회사가 소재하고 있음.

5. 울산광역시 구·군 일반현황(2020. 6. 30.기준)

□ 인구·면적현황

구 분	면 적(㎢)	인 구 (명)			외 국 인 등록수(명)
		계	남	여	
계	1062.03	1,142,190	586,939	555,251	19,287
중 구	37.01	220,028	111,559	108,469	1,998
남 구	73.47	322,883	164,689	158,194	4,782
동 구	36.07	157,973	82,633	75,340	3,349
북 구	**157.34**	**218,673**	**113,189**	**105,484**	**2,422**
울주군	758.14	222,633	114,869	107,764	6,736

□ 재정규모현황(당초)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정자립도
울산광역시	3,859,012	3,130,416	728,596	46.3%
중 구	381,728	372,294	9,434	16.6%
남 구	519,499	503,106	16,393	28.4%
동 구	290,903	288,613	2,290	18.6%
북 구	**302,033**	**298,498**	**3,535**	**26.7%**
울주군	904,554	824,956	79,598	37.7%

제2장

의회운영현황

제1절 집회현황
제2절 회기별 안건처리현황
제3절 회기별 주요의정활동 내용

제1절 집회현황

1. 의회역대 집회현황

구 분	연 도	정 례 회		임 시 회		합 계	
		회수	회기	회수	회기	회수	회기
초대	계	1	35	9	25	10	60
	'97	1	35	4	11	5	46
	'98			5	14	5	14
제2대	계	6	140	36	184	42	324
	'98	1	35	6	31	7	66
	'99	1	35	11	45	12	80
	2000	2	35	8	45	10	80
	2001	2	35	9	45	11	80
	2002			2	18	2	18
제3대	계	8	152	29	168	37	320
	2002	2	35	5	27	7	62
	2003	2	35	8	45	10	80
	2004	2	34	8	46	10	80
	2005	2	48	5	29	7	77
	2006			3	21	3	21
제4대	계	8	184	22	170	30	354
	2006	2	40	3	12	5	52
	2007	2	44	5	31	7	75
	2008	2	50	6	50	8	100
	2009	2	50	6	51	8	101
	2010			2	26	2	26
제5대	계	8	197	21	191	29	388
	2010	2	50	5	46	7	96
	2011	2	50	3	32	5	82
	2012	2	50	6	45	8	95
	2013	2	47	5	46	7	93
	2014			2	22	2	22
제6대	계	8	192	19	175	27	367
	2014	2	48	3	18	5	66
	2015	2	49	4	42	6	91
	2016	2	47	5	44	7	91
	2017	2	48	4	45	6	93
	2018			3	26	3	26
제7대	계	5	108	11	98	16	206
	2018	2	47	4	26	6	73
	2019	2	46	4	44	6	90
	2020	1	15	3	28	4	43

2. 연도별 집회현황

연 도	정 례 회		임 시 회		합 계		법정회기일수
	회수	회기	회수	회기	회수	회기	
계	44	1,008	145	985	187	1,993	
'97	1	35	4	11	5	46	연 80일 (정기회 35일 이내)
'98	1	35	11	45	12	80	〃
'99	1	35	11	45	12	80	〃
2000	2	35	8	45	10	80	〃 (정례회 35일 이내)
2001	2	35	9	45	11	80	〃
2002	2	35	7	45	9	80	〃
2003	2	35	8	45	10	80	〃
2004	2	34	8	46	10	80	〃
2005	2	48	5	29	7	77	연 80일
2006	2	40	6	33	8	73	정례회 45일 이내, 임시회 매회기 15일 이내
2007	2	44	5	31	7	75	연 110일 이내 (정례회 50일 이내)
2008	2	50	6	50	8	100	〃
2009	2	50	6	51	8	101	〃
2010	2	50	5	46	7	96	〃
2011	2	50	3	32	5	82	〃
2012	2	50	6	45	8	95	연 100일 이내 (정례회 50일 이내)
2013	2	47	5	46	7	93	〃
2014	2	48	5	40	5	88	〃
2015	2	49	4	42	6	91	〃
2016	2	47	5	44	7	91	〃
2017	2	48	4	45	6	93	〃
2018	2	47	7	52	9	99	〃
2019	2	46	4	44	6	90	〃
2020	1	15	3	28	4	43	〃

3. 회기별 소집요구 및 집회현황

회 기	회 별	소 집 요 구 인	집 회 기 간	일수
제174회	임시회	의회사무과장	2018. 7. 2.	1
제175회	임시회	박상복 외 2명	2018. 7. 17. ~ 7. 26.	10
제176회	임시회	임수필 외 2명	2018. 8. 20.	1
제177회	임시회	이정민 외 2명	2018. 8. 28. ~ 9. 10.	14
제178회	정례회	북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4조(집회)	2018.10. 5. ~ 10. 19.	15
제179회	정례회	북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4조(집회)	2018.11. 20. ~ 12. 21.	32
제180회	임시회	정외경 외 2명	2019. 2. 18. ~ 2. 28.	11
제181회	임시회	백현조 외 2명	2019. 4. 12. ~ 4. 26.	15
제182회	정례회	북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4조(집회)	2019. 6. 10. ~ 6. 24.	15
제183회	임시회	임채오 외 2명	2019. 8. 26. ~ 9. 9.	15
제184회	임시회	이진복 외 2명	2019.10. 15. ~ 10. 17.	3
제185회	정례회	북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4조(집회)	2019.11. 20. ~ 12. 20.	31
제186회	임시회	정외경 외 2명	2020. 2. 17. ~ 2. 28.	12
제187회	임시회	임수필 외 2명	2020. 4. 20. ~ 5. 4.	15
제188회	정례회	북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4조(집회)	2020. 6. 10. ~ 6. 24.	15
제189회	임시회	이진복 외 2명	2020. 6. 26.	1

제2절 회기별 안건 처리현황

제7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반기〉(2018.7.1.~2020.6.30.) 2018~2020년도

회수	기 간	일수	계	예산안	결산	조례안	동의안(승인)	건의안	결의안	청원	보고	질문	기타
합 계		206	282	15	3	123	12	5	5	2	3	4	110
소 계	2018년도	73	96	5	1	41	4	0	2	1	1	2	39
제174회	2018. 7. 2.	1	4										4
제175회	2018. 7.17.~ 7.26.	10	19			15					1		3
제176회	2018. 8. 20.	1	2						1				1
제177회	2018. 8.28.~ 9.10.	14	11	1		1						1	8
제178회	2018.10. 5.~10.19.	15	17	1	1	3						1	11
제179회	2018.11.20.~12.21.	32	43	3		22	4		1	1			12
소 계	2019년도	90	128	8	1	57	6	3	3	0	1	1	48
제180회	2019. 2.18.~ 2.28.	11	12			3	1		2		1		5
제181회	2019. 4.12.~ 4.26.	15	24	1		10	2	1					10
제182회	2019. 6.10.~ 6.24.	15	27	1	1	15	1					1	8
제183회	2019. 8.26.~ 9. 9.	15	23	2		7	2	1	1				10
제184회	2019.10.15.~10.17.	3	13			8							5
제185회	2019.11.20.~12.20.	31	29	4		14		1					10
소 계	2020년도	43	58	2	1	25	2	2	0	1	1	1	23
제186회	2020. 2.17.~ 2.28.	12	8			3					1		4
제187회	2020. 4.20.~ 5. 4.	15	21	1		11	1			1			7
제188회	2020. 6.10.~ 6.24.	15	25	1	1	11	1	2				1	8
제189회	2020. 6. 26.	1	4										4

제3절 회기별 주요의정활동 내용

회 별	집 회 요구자	집회기간	회기	주 요 활 동 사 항
제174회 (임시회)	의회사무 과장	2018. 7. 2.	1	○ 제7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 ○ 개원식
제175회 (임시회)	의 원	2018. 7. 17. ~ 7. 26.	10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조례안 15건 의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제176회 (임시회)	의 원	2018. 8. 20.	1	○ 결의안 1건 의결(가결)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에 대한 촉구 결의안
제177회 (임시회)	의 원	2018. 8. 28. ~ 9. 10.	14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 ○ 조례안 1건 의결 -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제178회 (제1차 정례회)	의 원	2018. 10. 5. ~ 10. 19.	15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 조례안 3건 의결 -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 구정질문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회 별	집 회 요구자	집회기간	회기	주 요 활 동 사 항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정례회	2018. 11. 20. ~ 12. 21.	32	○ 2019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조례안 22건 의결 -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 결의안 1건 의결(심의보류) -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동의 촉구 결의안 ○ 동의안 4건 의결(가결)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 퇴직자 친환경 농산물 재배전문가 양성과정 민간위탁 동의안 - 폐형광등 폐건전지 소형폐가전제품 수집 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 청원 1건 의결(채택) -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면제 청원의 건 ○ 출연 의결의 건 1건 의결(가결)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제180회 (임시회)	의 원	2019. 2. 18. ~ 2. 28.	11	○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 조례안 3건 의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 동의안 1건 의결(가결)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 동의안 ○ 결의안 2건 의결(가결) - 고헌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개정 촉구 결의안 - 부산~울산 광역전철 송정역(가칭) 연장 운행 촉구 결의안

회 별	집 회 요구자	집회기간	회기	주 요 활 동 사 항
제181회 (임시회)	의 원	2019. 4. 12. ~ 4. 26.	15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 조례안 11건 의결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 동의안 2건 의결(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동의안 - 울산광역시 북구 신규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출자안 의결의 건 1건 의결(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안 의결의 건 ○ 건의안 1건 의결(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 청문회 실시를 위한 협약 체결 촉구'에 대한 건의안
제18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정례회	2019. 6. 10. ~ 6. 24.	15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조례안 15건 의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 동의안 1건 의결(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구정 질문의 건 -『윤종오 전)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 비용 면제 청원의 건』 수용불가 사유와 월성 핵 폐기물 임시저장소 관련하여

회 별	집 회 요구자	집회기간	회기	주 요 활 동 사 항
제183회 (임시회)	의 원	2019. 8. 26. ~ 9. 9.	15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 ○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 조례안 7건 의결 -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 동의안 2건 의결(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창작소(감성갱도 2020) 민간위탁동의안 -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동의안 ○ 결의안 1건(가결) -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 건의안 1건(가결) - 북구 초·중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신설학교 승인조건 변경 촉구 건의안 ○ 울산광역시 북구 성장관리방안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화정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제184회 (임시회)	의 원	2019. 10. 15. ~ 10. 17.	3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 조례안 8건 의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 등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정례회	2019. 11. 20. ~ 12. 20.	31	○ 2020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의결 ○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조례안 13건 의결 -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 규칙안 1건 의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건의안 1건 의결(가결) -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및 급간식비 현실화 촉구 건의안 ○ 출연 의결의 건 1건 의결(가결)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

회 별	집 회 요구자	집회기간	회기	주 요 활 동 사 항
제186회 (임시회)	의 원	2020. 2. 17. ~ 2. 28.	12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조례안 3건 의결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제187회 (임시회)	의 원	2020. 4. 20. ~ 5. 4.	15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 조례안 11건 의결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 동의안 1건 의결(가결)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 ○ 청원 1건 의결(채택) -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면제 청원의 건
제18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정례회	2020. 6. 10. ~ 6. 24.	15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조례안 11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 건의안 2건 의결(가결) - 건축물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 송정역(가칭) 광역전철 연장운행 조속추진 촉구 건의안 ○ 구정 질문의 건 - 윤종오 전)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면제 청원 처리 결과와 관련하여
제189회 (임시회)	의 원	2020. 6. 26.	1	○ 제7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

제3장

제7대 전반기 개회상황

제1절 제174회 임시회
제2절 제175회 임시회
제3절 제176회 임시회
제4절 제177회 임시회
제5절 제178회 제1차 정례회
제6절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7절 제180회 임시회
제8절 제181회 임시회
제9절 제182회 제1차 정례회
제10절 제183회 임시회
제11절 제184회 임시회
제12절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13절 제186회 임시회
제14절 제187회 임시회
제15절 제188회 제1차 정례회
제16절 제189회 임시회

제1절 제174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의회사무과장

나. 개회일시 : 2018. 7. 2.(월) 10:00

다. 회　　기 : 2018. 7. 2.(1일간)

라. 부의안건

○ 제7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의 건(의장 제의)

- 의장(이주언)당선인사

○ 제7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의장 제의)

- 부의장(백현조)당선인사

○ 제17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제17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개회사

존경하는 2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헌 국회의원님,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저에게 영광스러운 제7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과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7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가 구민의 염원을 가득 안고 새롭게 출발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북구는 꾸준히 발전하고 인구가 증가하여 구민 20만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에 따라 구민의 대표인 의원의 수도 1명이 증원되어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 8명의 의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이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집행기관과 의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북구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고 구민의 대표인 8명의 의원들이 구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번 제7대 북구의회는 비록 자치단체 의정 경험은 없지만 전문성과 참신성을 겸비한 대다수 신진 의원들로 구성되어 구민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역사의 현장에서 북구 주민들의 결정에 한없는 두려움과 존경심을 느낍니다. 늘 북구의 역사를 위해서 큰 방향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 뜻을 받들어 앞으로 4년간 펼쳐질 제7대 의회는 저를 비롯한 우리 동료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는 구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구민의 뜻과 의지가 왜곡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구민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전문성을 확보함은 물론 무엇보다도 비전 있는 정책개발 및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구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는 의원 한 사람의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의결기관입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모습이 참다운 의회 상이라 할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과 이념이 다르더라도 건강한 토론을 통하여 구민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를 살피고 20만 구민으로부터 받은 대의기관의 역할과 책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600여 북구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북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최고의 공직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회 여러분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집행기관에 대하여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북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제7대 북구 의회가 개원하고 앞으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북구 주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이상헌 국회의원,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개원을 위하여 큰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회사무과에도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우리 의회에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며,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이 주 언

3. 의사일정

제17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8. 7. 2.(1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7. 2.(월) 10:00		개 회 식	본회의장
	1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7대 상반기 의장 선거의 건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7대 상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 3. 제17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제17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본회의장

제2절 제175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정외경 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18. 7. 17.(화) 10:00

다. 회　　기 : 2018. 7. 17. ~ 7. 26.(10일간)

라. 부의안건

○ 제17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제17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정창)

○ 울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백현조 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2. 개회사

사랑하는 2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이동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마철과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2일 개원한 제7대 북구의회는 역대 그 어느 의회보다 아름다운 출발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우리 8명의 의원들은 의장단 구성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잡음도 없이 신뢰와 화합 속에 오직 구민을 위한 민생 의회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채운 만큼 배려와 소통 속에 구민 공감을 이끌어 내는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는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의원 선서를 통해 다짐했던 마음가짐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175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10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201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와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는 집행기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이해를 도모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구정 전반에 대한 현안과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여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업무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통해 당초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구정업무에 대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제7대 북구의회부터 울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실시간 인터넷방송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의회방송을 시청함으로써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이번 임시회가 활기찬 행복도시 사람중심 희망북구를 위한 뜻깊은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20만 구민과 오늘 개회식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이 주 언

3. 의사일정

제17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8. 7. 17 ~ 7. 26.(10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7. 17.(화)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1	◆ 5분 자유발언 (임수필 의원) ◆ 5분 자유발언 (박상복 의원) ◆ 5분 자유발언 (이진복 의원) 1. 제17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3. 제17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18.(수) 10:00	2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호, 기획홍보실) 2.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호, 기획홍보실) 3.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호, 행정지원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호, 행정지원국) 5.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호, 행정지원국) 6.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호, 행정지원국) 7.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호, 행정지원국) 8.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호, 행정지원국) 9. 울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호, 행정지원국) 10.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2호, 백현조 의원 발의 - 복지경제국) 11.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12호, 복지경제국) 12.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13호, 복지경제국) 13. 울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4호, 복지경제국)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4.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호, 복지경제국) 15.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호, 건설도시국)	
7. 19.(목) 10:00	3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기획홍보실 ○ 행정지원국(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7. 20.(금) 10:00	4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행정지원국(관광해양개발과,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7. 20.(금) 14:00		〈현장방문 활동〉 1. 달천철장 보존 및 주변 정비사업 2. 강동문화센터	
7. 21.(토)		휴 회	
7. 22.(일)		휴 회	
7. 23.(월) 10:00	5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복지경제국(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미화과)	
7. 24.(화) 10:00	6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복지경제국 (경제일자리과, 가족정책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임시회 후	〈현장방문 활동〉 1. CCTV통합관제센터	
7. 25.(수) 10:00	7	◆ 5분 자유발언 (임수필 의원)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건설도시국(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과)	
7. 26.(목) 10:00	8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건설도시국(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 보건소 ○ 의회사무과	

4.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7. 10.(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7. 18.(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18년 기준인건비 증원인력 범위 내 인력 조정

○ 인력증원 수요를 반영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운용

나) 주요내용

가. 정원 증원 : 15명(577명 → 592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별표 3】

○ 총　　계 : 577명 → 592명(증 15명)

• 집행기관의 정원 : 564명 → 578명(증 14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3명 → 14명(증 1명)

○ 일반직 계 : 575명 → 590명(증 15명)

• 5급 : 34명 → 35명(증 1명), 6급 이하 : 536명 → 550명(증 14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기준인건비 증원인력 범위 내 인력 조정 및 인력증원 수요를 반영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운용을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개정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정원 증원 : 15명(577명 → 592명)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별표 3】

• 총　　계 : 577명 → 592명(증 15명)

· 집행기관의 정원 : 564명 → 578명(증 14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3명 → 14명(증 1명)

• 일반직 계 : 575명 → 590명(증 15명)

· 5급 : 34명 → 35명(증 1명), 6급 이하 : 536명 → 550명(증 14명)

으로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부합하며, 집행기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7. 10.(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7. 18.(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 명칭 변경

○ 업무이관에 따른 국 단위 분장사무 조정

나) 주요내용

○ 부서명칭 변경

• 여성가족과 → 가족정책과

• 창조경제과 → 경제일자리과

○ 업무이관에 따른 국 단위 분장사무 조정

• 영상물 지도에 관한 사무 : 복지경제국(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6대 구정의 원활한 추진과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부서명칭 변경
  • 여성가족과 → 가족정책과
  • 창조경제과 → 경제일자리과
- 업무이관에 따른 국 단위 분장사무 조정
  • 영상물 지도에 관한 사무 : 복지경제국(삭제)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부합하며, 집행기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7. 10.(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7. 18.(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

○ 직무수행에 뛰어난 성과를 거두거나, 국가 또는 지방단위의 주요행사 지원 등에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포상휴가 조항 신설

나)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 현행 조례 제8조, 제18조, 제19조제2항·제3항, 제23조, 제24조제2항·제4항·제11항·제12항, 제25조

* 자녀돌봄휴가 : (기존) 연간 3일 이내 ⇒ (변경) 연간 2일 이내

나. 직무수행에 뛰어난 성과를 거두거나, 국가 또는 지방단위의 주요행사 지원 등의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 포상휴가 부여(신규)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조항 정비 및 유공 공무원의 포상휴가 조항 신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개정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상위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 현행 조례 제8조, 제18조, 제19조제2항 · 제3항, 제23조, 제24조 제2항 · 제4항 · 제11항 · 제12항, 제25조

* 자녀돌봄휴가 : (기존) 연간 3일 이내 ⇒ (변경) 연간 2일 이내

- 직무수행에 뛰어난 성과를 거두거나, 국가 또는 지방단위의 주요행사 지원 등의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 포상휴가 부여(신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사항과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7. 10.(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7. 18.(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인 쉬운 용어로 정비에 따라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명칭 변경 : 납골당 → 봉안당 (안 제3조, 별표 3 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개정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명칭 변경 : 납골당 → 봉안당 (안 제3조, 별표 3 제1항)으로 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7. 10.(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7. 18.(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므로, 호적법상 용어를 삭제하고, 현실에 맞게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호적법상 용어 삭제(안 제2조제1항3호)

- “예식장 사용은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주소 또는 본적을 둔 자”를 “예식장 사용은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주소를 둔 자”로 수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호적법상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개정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호적법상 용어 삭제(안 제2조제1항3호)

- "예식장 사용은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주소 또는 본적을 둔 자"를 "예식장 사용은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주소를 둔 자"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관련법령인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호적법상 용어를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7. 10.(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7. 18.(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호계·매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사업부지 내 호계동과 매곡동의 경계를 조정하여 입주민의 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별표 1, 2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호계·매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내 호계동과 매곡동의 경계를 조정하여 입주민의 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개정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별표 1, 2 개정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호계·매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사업부지 내 호계동과 매곡동의 경계를 조정하여 입주민의 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7. 10.(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7. 18.(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찾아가는 상담 및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 복지 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복지 중심으로 재편되는 동의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 기존 :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개정 :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나. 조문 개정

• 제1조(목적) 중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 제2조(소재지) 중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 별표의 제목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변경
• 별표 기관명 란의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찾아가는 상담 및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 등, 복지 중심으로 재편되는 동의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개정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조례명 개정
  • 기존 :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개정 :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조문 개정
  • 제1조(목적) 중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 제2조(소재지) 중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 별표의 제목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로 변경
  • 별표 기관명 란의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복지 중심으로 재편되는 동의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7. 10.(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7. 18.(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 임기의 연임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 및 장애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문구 수정

나) 주요내용

가. 위원 임기의 연임 근거 마련 및 용어순화(안 제4조제1항)

나. “심신장애” 문구 수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사항 해소(안 제9조제1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 임기의 연임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개정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위원 임기의 연임 근거 마련 및 용어순화(안 제4조제1항)
- “심신장애” 문구 수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사항 해소(안 제9조제1호)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7. 10.(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7. 18.(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 임기의 연임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 및 장애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문구 수정

나) 주요내용

가. 위원 임기의 연임 근거 마련 및 용어순화(안 제4조제1항)

나. “심신장애” 문구 수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사항 해소(안 제9조제1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 임기의 연임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개정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위원 임기의 연임 근거 마련 및 용어순화(안 제4조제1항)
- “심신장애” 문구 수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사항 해소(안 제9조제1호)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7. 10.(백현조 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8. 7. 18.(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명칭 및 위치, 기능(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설치 및 운영, 운영의 위탁 및 지원,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위탁운영의 해지, 조직 및 구성(안 제4조 ~ 안 제8조)

다. 이용자 보호, 수수료 등의 징수, 지도·감독, 준용(안 제9조 ~ 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백현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을 보면

- 조례의 목적, 명칭 및 위치, 기능(안 제1조 ~ 3조)
- 설치 및 운영, 운영의 위탁 및 지원,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위탁 운영의 해지, 조직 및 구성(안 제4조 ~ 8조)
- 이용자 보호, 수수료 등의 징수, 지도·감독, 준용(안 제9조 ~ 안 12조)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미래의 주역이며, 국가 성장 동력의 중추인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담당부서 의견

청취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7. 10.(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7. 18.(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체계적인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중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내용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여 급식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급식지원의 대상자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지원방법, 급식지원 안내, 급식 신청 절차, 대상자 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다.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위원회의 구성, 위원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위원회 회의,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지도·감독, 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6부터 제17조까지)

사.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급식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체계적인 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개

정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주요 내용을 보면

- 급식지원의 대상자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지원방법, 급식지원 안내, 급식 신청 절차, 대상자 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위원회의 구성, 위원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위원회 회의,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지도·감독, 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6부터 제17조까지)
-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구 등의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체계적인 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7. 10.(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7. 18.(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아동수당법」 시행 및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기존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서 아동급식지원 심의에 관한사항 삭제, 아동수당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4조제2호)

다.「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아동수당법」 시행 및「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개정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제명 변경

• 기존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서 아동급식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 삭제, 아동수당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4조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인「아동수당법」 시행 및「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7. 10.(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7. 18.(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착한가격업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내지 제2조)

나. 지정 및 취소, 운영현황 점검

1)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안 제3조)

2) 운영현황 점검 규정(안 제4조)

다. 이용 활성화, 지원, 영업자의 협조

1) 이용 활성화 방법(안 제5조)

2) 착한가격업소 지원 규정(안 제6조)

3) 영업자의 협조 규정(안 제7조)

라. 포상, 연합회 구성

1)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규정(안 제8조)

2) 연합회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개정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주요 내용을 보면

-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2조)
-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운영현황 점검 규정(안 제4조)
- 이용 활성화 방법(안 제5조)
- 착한가격업소 지원 규정(안 제6조)

- 영업자의 협조 규정(안 제7조)
-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규정(안 제8조)
- 연합회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사항으로,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최근 국제적인 무역, 관세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7. 10.(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7. 18.(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 실현 및 감량추진, 공공처리시설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사업시행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세대별 종량기기(RFID)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RF/ID(Radion Frequency ID): 개별ID로 계량데이터 전송방식의 종량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가. 개별계량장비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9호 신설)

나. 관내 70세대 이상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기(RFID)설치 권고사항 명시(안 제20조제2항 신설)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정비

(안 제2조제3호, 제12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 실현 및 감량,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한 신축 공동주택의 사업시행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세대별 종량기기(RFID)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개정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개별계량장비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9호 신설)
- 관내 70세대 이상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기(RFID)설치 권고사항 명시(안 제20조제2항 신설)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정비 (안 제2조제3호, 제12조제1항)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 실현 및 감량,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한 세대별 종량기기(RFID)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7. 10.(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7. 18.(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및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변경에 따른 용도지구 및 조문 변경

• 현행 조례 제2장, 제3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 제4항 · 제5항 · 제6항, 제4조

* 미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미관 ⇒ 경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및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개정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변경에 따른 용도지구 및 조문 변경

• 현행 조례 제2장, 제3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 제4항 · 제5항 · 제6항, 제4조

* 미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미관 ⇒ 경관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및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3절 제176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임수필 의원

나. 개회일시 : 2018. 8. 20.(월) 10:00

다. 회　　기 : 2018. 8. 20. ~ 8. 20.(1일간)

라. 부의안건

○ 제17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에 대한 촉구 결의안(임수필 의원)

2. 의사일정

제17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8. 8. 20.(1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8. 20.(월) 10:00	1	1. 제17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에 대한 촉구 결의안	

제4절 제177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이진복 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18. 8. 28.(화) 10:00

다. 회　　기 : 2018. 8. 28. ~ 9. 10.(14일간)

라. 부의안건

○ 제17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수필 의원 외 2인 발의)

○ 제17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2. 개회사

존경하는 2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활기찬 행복도시 사람중심 희망북구' 건설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뭄과 폭염으로 유난히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2회 구민의 날 행사, 서머페스티벌, 물놀이장 운영 등 각종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추진하신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행사 참석과 민원해결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지역에서 늘 구민과 함께 하는 현장중심의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울산은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한 큰 피해는 없지만 기상학자들은 이번 '솔릭'을 시작으로 태풍의 길목에 위치한 한반도에 앞으로 더 강한 태풍들이 몰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늦여름과 초가을에 강력한 태풍 발생률이 높았던 전례가 많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태풍 대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피해 발생에 대비한 응급 복구 및 사후 관리 태세 구축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77회 임시회는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및 조례안 등의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 타당성 등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 지역을 보다 풍요롭게 가꿀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예리한 시각과 철저한 조심성이 없으면 실수와 오류를 피할 수 없고 결국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 심의에 필요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올 한 해 계획한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예상되는 문제는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구민의 안녕과 여러분 모두가 하시는 일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이 주 언

3. 의사일정

제17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8. 8. 28. ~ 9. 10.(14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8. 28.(화)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임수필 의원) ◆ 5분 자유발언 (이정민 의원) 1. 제17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7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9호) - 제 안 설 명(구 청 장)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29.(수) 10:00	제2차 본회의	1.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20호, 행정지원국) 2.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1호, 기획홍보실)	
8. 30.(목) 10:00	제1차 예결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기획홍보실 ○ 행정지원국(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8. 31.(금) 10:00	제2차 예결위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행정지원국 (관광해양개발과,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9. 1.(토)		휴 회	
9. 2.(일)		휴 회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 3.(월) 10:00	제3차 예결위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복지경제국(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9. 4.(화) 14:00	제4차 예결위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복지경제국 (경제일자리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9. 5.(수) 10:00	제5차 예결위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건설도시국(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과)	
9. 6.(목) 10:00	제6차 예결위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건설도시국(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 보건소 ○ 의회사무과	
9. 7.(금) 10:00	제7차 예결위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계 수 조정 후	〈현장방문 활동〉 1. 생활문화센터 2. 울산안전체험관 3. 천곡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 현장	
9. 8.(토)		휴 회	
9. 9.(일)		휴 회	
9. 10.(월) 10:00	제3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정외경 의원)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종합 심의의결	

4.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8. 21.(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8. 29.(제1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취 득(변 경) : 2건

• 취득내용 : 토지매입(8필지, 841㎡), 건물 신축(2개동, 693㎡)

• 취득(변경)사유

- 소금포 역사관 조성

- 염포운동장 조성사업 변경(관리동 건립) 및 보조주차장 조성사업 취소

※ 염포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사업 취소(토지 1,500㎡, 추정가격 165백만원)

• 추정가격 : 총 3,600백만원

- 소금포 역사관 조성(토지 매입 1,000백만원, 건물신축 1,800백만원)

- 염포운동장 조성사업 변경 및 보조주차장 조성사업 취소 (토지매입 230백만원, 건물신축 570백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그 취득 및 변경대상 공유재산은 소금포 역사관 조성, 염포운동장 조성사업 변경 및 보조주차장 조성사업 취소사업으로, 토지매입 8필지 841㎡, 건물신축 2개동, 연면적 693㎡로, 총 사업비는 36억원임.

○ 검토결과, 염포·양정 지역은 과거 소금(자염) 생산지, 왜관무역의 중심이었으나, 현재 개항지 표지석 이외에는 지역의 역사를 알 수 있

는 흔적, 장소, 시설이 없음. 소금포 역사관은 도시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이 점점 열악해져 가고 있는 염포·양정 지역에 삼포 개항 등 지역 역사를 담고 주민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상권, 커뮤니티, 문화 등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

○ 염포운동장 관리동 건립 사업은 주민들에게 건강한 체력 단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만 보조주차장 조성 사업 취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8. 21.(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8. 29.(제1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근거 예산의 불법지출과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를 위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처리절차 등을 마련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예산절감사례 등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예산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라 예산의 불법지출과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를 위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처리절차 등을 마련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예산절감사례 등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예산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6조)으로 구성됨.

○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라 예산의 불법지출과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를 위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처리절차 등을 정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5절 제178회 제1차 정례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지방자치법 제44조(정례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집회)

나. 개회일시 : 2018. 10. 5.(금) 10:00

다. 회　　기 : 2018. 10. 5. ~ 10. 19.(15일간)

라. 부의안건

○ 제17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진복 의원 외 2인 발의)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의장 제의)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산동 문화센터건립)(구청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17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 구정질문의 건(임수필 의원)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2. 개회사

존경하는 2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성함으로 가득찬 결실의 계절 가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7월 아름다운 출발을 이루어 낸 우리 북구의회는 20만 구민을 향한 한결 같은 마음으로 벌써 석 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우리 북구의회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소통하는 민생 의회가 되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현장 속에서 구민 곁으로 다가가 늘 함께 땀 흘리고 호흡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은 제7회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를 비롯하여 제7회 울산북구 농도한마당 큰잔치, 제15회 청소년예술제, 독서의 달 운영 등 많은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다양하고 즐길 수 있는 지역 축제를 경험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사고 없이 안전하게 행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1차 정례회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등의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집행의 사후 평가임과 동시에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결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지적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예산집행에 있어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결산검사 기간 동안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5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이 주 언

3. 의사일정

제17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18.10.5.~2018.10.19.(1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0. 5.(금)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박상복 의원) ◆ 5분 자유발언 (임수필 의원)	
		1. 제17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안번호 제23호) 3.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2호) - 제 안 설 명(행정지원국장) - 4.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백현조 의원)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제17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5호) 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의안번호 제26호)	
10. 6.(토)		휴 회	
10. 7.(일)		휴 회	
10. 8.(월) 10:00	제1차 예결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행정지원국(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10. 9.(화)		휴 회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0. 10.(수) 10:00	제2차 예결위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행정지원국(관광해양개발과,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10. 11.(목) 14:00	제3차 예결위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복지경제국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경제일자리과, 환경미화과)	
10. 12.(금) 10:00	제4차 예결위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복지경제국(복지지원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10. 13.(토)		휴 회	
10. 14.(일)		휴 회	
10. 15.(월) 10:00	제5차 예결위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건설도시국(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과)	
10. 16.(화) 13:00	제6차 예결위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건설도시국(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10. 17.(수) 10:00	제7차 예결위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기획홍보실 ○ 보건소 ○ 의회사무과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4호) (기획홍보실, 농수산과)	
10. 18.(목) 10:00	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의안번호 제27호, 기획홍보실) 2.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8호, 기획홍보실) 3.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호, 행정지원국) 4.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30호, 건설도시국)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0. 19.(금) 10:00	제3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임채오 의원) 1.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종합 심의의결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종합 심의의결 3. 구정질문의 건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임수필 의원)	

4.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9. 28.(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10. 18.(제1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기존 오프라인만이 아닌 온라인(소셜네트워크서비스)을 같이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의 소식을 알 수 있도록 객원기자 조항을 삭제하고 'SNS 서포터즈'를 구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4조(게재사항) 7호 중 "객원기자 투고"를 삭제

○ 제5조(자료수집) 1항 중 객원기자 조항 삭제

○ 제6조, 제7조, 제8조 삭제

○ 별표 내용 중 객원기자 원고료란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오프라인만이 아닌 온라인(소셜네트워크서비스)을 같이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의 소식을 알 수 있도록 객원기자 조항을 삭제하고 'SNS 서포터즈'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제4조(게재사항) 7호 중 “객원기자 투고”를 삭제
- 제5조(자료수집) 1항 중 객원기자 조항 삭제
- 별표 내용 중 객원기자 원고료란 삭제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기존 오프라인만이 아닌 온라인(소셜네트워크서비스)을 같이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의 소식을 알 수 있도록 객원기자 조항을 삭제하고 ‘SNS 서포터즈’를 구성하기 위한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9. 28.(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10. 18.(제1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개설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게시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서포터즈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서포터즈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홍보 마케팅의 환경변화에 따라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개설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게시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서포터즈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서포터즈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등으로 구성됨.

○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울산 북구와 구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9. 28.(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10. 18.(제1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염포운동장 및 쇠부리체육센터 공연장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고 무룡운동장 폐장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염포운동장 명칭, 소재지, 주요시설 등 운영내용 명시 및 무룡운동장 삭제(별표 1, 별표 2)

○ 쇠부리체육센터 공연장 및 부대시설 사용료 명시
(안 제2조2의3, 별표1, 별표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에 준공한 염포운동장 및 쇠부리체육센터 공연장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고 무룡운동장 폐장에 따라 관련 내용의 삭제를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염포운동장의 명칭, 소재지, 주요시설 등 운영 내용 명시 및 무룡운동장 삭제 (별표 1, 별표 2)

- 쇠부리체육센터의 공연장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 명시 (안 제2조2의3, 별표1, 별표3)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8조, 제9조에 근거하여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등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유지·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북구 경관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9. 28.(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10. 18.(제1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경관법」제7조제2항에 의거 북구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경관자원의 보존과 체계적 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수립 중에 있는 '북구 경관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범　　위 : 북구 관내 전역(A=157.32㎢)

○ 기준년도 : 2018년

○ 목표연도 : 2028년

○ 주요내용

-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
-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등 분야별 계획

-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및 관리방안
- 경관가이드라인
- 해안경관 개선 및 관리방안
- 실행계획(경관사업 등)
- 경관지구 등 관리방안

제6절 제179회 제2차 정례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지방자치법 제44조(정례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집회)

나. 개회일시 : 2018. 11. 20.(화) 10:07

다. 회　　기 : 2018. 11. 20. ~ 12. 21.(32일간)

라. 부의안건

○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정민 의원 외 2인 발의)
○ 2019년도 예산안(구청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주언 의원 발의)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 2019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 퇴직자 친환경 농산물 재배전문가 양성과정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 폐형광등 폐건전지 소형폐가전제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백현조 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오 의원 외 3인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상복 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판문점 선언 국회비준동의 촉구결의안(임수필 의원 발의)

○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면제 청원의 건 (임수필 의원 발의)
○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 2019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2. 개회사

존경하는 20만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북구의회에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 활기찬 행복도시 사람중심 희망북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행사 참석과 민원해결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함께 출범한 7대 북구의회는 지난 7월 개원을 시작으로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 벌써 2018년도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우리 의회 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회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부터 3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정례회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셨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구정운영에 근본적인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큰 틀의 정책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를 받고 평가를 받는다는 생각보다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해서 더 좋은 북구를 만들어 간다는 자부심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고용불안과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세심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회성 행사와 전시성 불요불급한 예산은 적극 배제시키고 구민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올해도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금년도 계획한 사업은 차질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동절기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말연시에 소외받는 어려운 이웃들이 없는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절기상 이미 입동을 지나서 본격적인 겨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이 주 언

3. 의사일정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18. 11. 20. ~ 12. 21.(32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1. 20.(화)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1	◆ 5분 자유발언(임수필 의원) 1.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9년도 예산안(의안번호 제61호) - 시 정 연 설(구청장) -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 21.(수) ~ 11. 29.(목)		행 정 사 무 감 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함 - 붙임 일정 참조)	
11. 30.(금) 10:00	2	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36호, 행정 지원국) 2.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37호, 행정지원국) 3.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8호, 행정지원국) 4.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8호, 행정지원국)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 (의안번호 제41호, 행정지원국) 6.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9호, 행정지원국) 7.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3호, 기획홍보실) 8.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4호, 기획홍보실) 9.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제45호, 기획홍보실) 10. 울산광역시 북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6호, 기획홍보실) 11.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7호, 기획홍보실) 12.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2호, 복지경제국)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3.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53호, 복지경제국) 14.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의안번호 제42호, 복지경제국) 15. 울산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4호, 이주언 의원 발의 - 행정지원국)	
12. 1.(토)		휴 회	
12. 2.(일)		휴 회	
12. 3.(월) ~ 12. 12.(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2019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 붙임 일정 참조)	
12. 13.(목) 10:00	3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9년도 예산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4.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64호) - 제안설명(구청장) -	
12. 14.(금) 10:00	4	1. 울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호, 복지경제국) 2.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1호, 복지경제국) 3.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4호, 복지경제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55호, 복지경제국) 5. 퇴직자 친환경 농산물 재배전문가 양성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39호, 복지경제국) 6. 울산광역시 북구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56호, 복지경제국) 7. 폐형광등 폐건전지 소형폐가전제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40호, 복지경제국)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8.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7호, 복지경제국) 9.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8호, 건설도시국) 10.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 (의안번호 제33호, 백현조 의원 발의, 건설도시국) 11.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9호, 건설도시국)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의안번호 제63호, 건설도시국) 13.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호, 임채오 의원 외 3명 발의, 건설도시국) 14. 울산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31호, 박상복 의원 발의, 보건소) 15.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0호, 보건소) 16.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판문점 선언 국회비준동의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65호, 임수필 의원)	
12. 14.(금) 본회의 종료후 ~ 12. 20.(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붙임 일정 참조)	
12. 21.(금) 10:00	5	1.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면제 청원의 건(의안번호 제66호, 임수필 의원)	
12. 21.(금) 14:00		◆ 5분 자유발언(이정민 의원)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폐 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11. 21. ~ 11. 29. 9일간)

구분 / 일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18. 11. 21.(수)	10:00	소회의실	◦증인선서 •국·소·실·과·동장 ◦기획홍보실 ◦보 건 소 ◦의회사무과	
2018. 11. 22.(목)	10:00	〃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행정복지센터 포함 : 농소1동·농소3동 ·효문동·양정동) •총 무 과 •민원지적과	
2018. 11. 23.(금)	10:00	〃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관광해양개발과 •도 서 관 과 •세 무 과	
2018. 11. 24.(토)		휴 회		
2018. 11. 25.(일)		휴 회		
2018. 11. 26.(월)	10:00	소회의실	◦복지경제국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복지지원과	
2018. 11. 27.(화)	11:00	〃	◦복지경제국 •경제일자리과 •농 수 산 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2018. 11. 28.(수)	10:00	〃	◦건설도시국 •건 설 과 •안전정보과 •도 시 과	
2018. 11. 29.(목)	10:00	〃	◦건설도시국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감사이후	대상현장	◦현장방문	

※ 해당 부서 감사 종료 후 재확인 등 필요 시 해당부서 추가 감사할 수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12. 3. ~ 12. 20. 17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3.(월) 10:00	1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62호) 4. 2019년도 예산안〈계속〉 ○ 기획홍보실 ○ 의회사무과 ○ 보 건 소	
12. 4(화) 10:00	2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 행정지원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12. 5.(수) 10:00	3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관광해양개발과, 도서관과, 세무과)	
12. 6.(목) 10:00	4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 복지경제국 (경제일자리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12. 7.(금) 10:00	5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12. 8.(토)		휴 회	
12. 9.(일)		휴 회	
12. 10.(월) 10:00	6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 건설도시국 (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과)	
12. 11.(화) 10:00	7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 건설도시국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12.(수) 10:00	8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12. 14.(금) 본회의 종료후	9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기획홍보실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12. 15.(토)		휴 회	
12. 16.(일)		휴 회	
12. 17.(월) 10:00	10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행정지원국	
12. 18.(화) 10:00	11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복지경제국	
12. 19.(수) 10:00	12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건설도시국	
12. 20.(목) 10:00	13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당 일 의 사 일 정 변 경 안

《당 초》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14.(금) 10:00	4	1. 울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호, 복지경제국) 2.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1호, 복지경제국) 3.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4호, 복지경제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55호, 복지경제국) 5. 퇴직자 친환경 농산물 재배전문가 양성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39호, 복지경제국) 6. 울산광역시 북구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56호, 복지경제국) 7. 폐형광등 폐건전지 소형폐가전제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40호, 복지경제국) 8.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7호, 복지경제국) 9.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8호, 건설도시국) 10.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 (의안번호 제33호, 백현조 의원 발의, 건설도시국) 11.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9호, 건설도시국) 12.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호, 임채오 의원 외 3명 발의, 건설도시국) 13. 울산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31호, 박상복 의원 발의 - 보건소) 14.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0호, 보건소)	

《변 경》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14.(금) 10:00	4	1. 울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호, 복지경제국) 2.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1호, 복지경제국) 3.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4호, 복지경제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55호, 복지경제국) 5. 퇴직자 친환경 농산물 재배전문가 양성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39호, 복지경제국) 6. 울산광역시 북구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56호, 복지경제국) 7. 폐형광등 폐건전지 소형폐가전제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40호, 복지경제국) 8.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7호, 복지경제국) 9.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8호, 건설도시국) 10.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 (의안번호 제33호, 백현조 의원 발의, 건설도시국) 11.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9호, 건설도시국) 〈추가〉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의안번호 제63호, 건설도시국) 13.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호, 임채오 의원 외 3명 발의, 건설도시국) 14. 울산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31호, 박상복 의원 발의, 보건소) 15.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0호, 보건소)	

《당 초》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21.(금) 10:00	5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폐 회	

《변 경》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21.(금) 10:00	5	〈추가〉 1.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면제 청원의 건	
12. 21.(금) 14:00		〈추가〉 ◆ 5분 자유발언 (박상복 의원) ◆ 5분 자유발언 (이정민 의원)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폐 회	

4.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1. 14.(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11. 30.(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송정복합문화센터 등 4건에 대하여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취 득(변 경) : 4건

• 취득(변경)내용 : 토지매입(17필지, 12,305㎡), 건물신축(3개동, 7,610㎡), 건물매입(1개동, 831㎡)

• 취득 및 변경 사유

-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 : 부족한 문화 인프라 구축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 달성을 위해 송정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활력 넘치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변경) :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 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한 사항임.

○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내용

구 분	면 적(㎡)			취득가액(백만원)			비고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계	11,687	12,160	증 473 (4%)	9,500	14,000	증 4,500 (47%)	
토 지 (매입)	9,278	9,300	증 22 (0.2%)	2,000	3,350	증 1,350 (68%)	
건 물 (연면적)	2,409	2,860	증 451 (18%)	7,500	10,650	증 3,150 (42%)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물 매입 : 사무 공간을 확보하여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조성 : 달천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의 폐쇄에 따라 이를 철거 후 제조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자들을 위한 시설로 신축 하고자 함

• 추정가격 : 31,120백만원

- 토지매입(6,743백만원), 건물신축(23,677백만원), 건물매입(700백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그 취득대상 공유재산은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 호계문화센터 건립 변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물 매입 및 청년 제조업 ㄹ창업공간 조성 사업으로, 토지매입 12,305㎡, 건물신축 3개동 7,610㎡, 건물매입 1개동 831㎡로, 총 사업비는 311억 2천 만원임.

○ 검토결과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송정지구내 대단위아파트 건립으로 인구 유입(7,821세대, 19,595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족한 문화 인프라 구축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타당성이 인정됨.

- 호계문화센터 건립 변경사업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당초계획안에 비해 토지 및 건물의 면적이 473㎡증가, 취득가액이 45억원 증가(47%)한 총사업비 140억원임. 따라서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데 대한 사업계획의 설명과 토론을 거쳐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물 매입 건은 현재 위치한 건물이 2018. 12. 31일자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이전이 불가피하며, 2016년 건강가정 사업이 통합되고, 2017년 다함께 돌봄 센터가

시설 내 위치 하면서 사무공간 및 프로그램 시설이 협소하여 민간 건물 매입을 통 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유 재산 취득의 타당성이 인정됨.

-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조성 사업은 달천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의 폐쇄에 따라 이를 철거 후 제조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시설로 신축하여 청년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타당성이 인정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1. 14.(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11. 30.(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달천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사업 취소건에 대하여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취 득(변 경) : 1건

- 취득(변경)내용 : 토지 매입(1필지, 1,650㎡)
- 취득(변경)사유 :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달천운동장 부지내로 주차장 조성사업 위치변경을 검토하였으나,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수립 및 입지 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제7조(관리계획수립의 기본원칙) 제10항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취소가 불가피함
- 추정가격 : 총 452백만원(토지매입비 272백만원, 공사비 180백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그 취득 변경 대상 공유재산은 달천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사업 취소이며, 토지매입 1,650㎡, 총 사업비는 4억 5천 2백만원임.

○ 검토결과 달천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사업 변경 사업은 본 건은 2016년 12월 북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을 위해 울산시와 국토교통부에 업무협의 결과,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만을 위한 사업으로서 본 사업의 불가피성이 타당하지 않고 시급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으로 달천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 사업은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1. 14.(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11. 30.(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구 전체의 인력 및 조직운영을 위한 가용인력 확보와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놀이터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설 개요

• 위　　치 : 북구 중보길 42-25(중산동)

• 개 관 일 : 2015. 6. 9.
• 규　　모 : 부지면적 9,524㎡, 연면적 5,314㎡(지하 1층, 지상 2층)
• 주요시설 : 나무놀이터, 그물놀이터, 마을공방, 마을사랑방·구판장 등

○ 위탁 개요
• 기　　간 : 2019. 1. 1. ~ 2021. 12. 31.(3년)
• 범　　위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 전반
• 수탁자격 : 비영리법인 · 단체 · 기관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별도의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위탁 운영비 : 389,000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임.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 전반,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강사 관리 등에 대하여 비영리법인 · 단체 · 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3억 8천 구백만원임.

○ 검토결과, 세대공감창의놀이터는 2015년 6월 개관이후 어린이들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심어주고 주변 환경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옴. 현재 북구청 직영운영 형태는 소속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 부족으로 운영이 정체되고 있는 실정임. 아이들의 창의와 상상을 키우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에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1. 14.(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11. 30.(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통장 신분증의 규격 및 제식사항, 발급권자와 발급·재발급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6조 제목 및 본문 중 “위촉해제”를 각각 “해촉”으로 변경

○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 제7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통장 신분증의 규격 및 제식사항, 발급권자와 발급·발급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제6조 제목 및 본문 중 “위촉해제”를 각각 “해촉”으로 변경하고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 제7조의2 신설하고자 함

○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동장은 위촉한 통장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통장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신분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1. 14.(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11. 30.(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19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세무과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9,848천원

- 지방세연구원의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지방세수 확충 및 지속적인 지방세정의 발전을 위하여,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동 출연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우리 구 출연금 분담분 지급

○ 출연금 산출기준

- 산출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5/10,000
- 2017년 보통세 세입징수액 65,653,002천원 × (1.5/10,0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출연금은 지방세수 확충 및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 출연하여 2011년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 구 분담금을 출연하는 것이므로, 연도별 출연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토론을 통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1. 14.(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11. 30.(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권고」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개정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에 수반되는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 등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세에 관한 증명 수수료(별표 1, 6항) 규정 변경 "과세(납세)

증명"을 "과세증명"으로 변경하고,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에는 무료로 한다는 규정 신설

○ 행정정보 공개방법 및 수수료(별표 4) 규정 변경

- 정보공개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하는 때, 현행 1MB 이하인 경우에만 무료이나 초과하는 경우에도 무료로 조문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권고」 및 민원사무 처리기준표 개정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에 수반되는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 등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지방세에 관한 증명 수수료(별표 1, 6항) 규정과 행정정보 공개 방법 및 수수료(별표 4) 규정을 변경하고자 함

○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권고」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개정에 따 라 제증명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에 수반되는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 등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1. 14.(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11. 30.(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고충·질의민원,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위한 민원 전담부서 신설

○ 사업소 신설, 세무과 분리 등 주민 수요에 맞춘 행정기구 조정

나. 주요내용

가. 기구신설(사업소) : 문화예술회관(안 제2조제2항)

1) 사업소 설치 목적(안 제11조제1항)

2) 사업소 명칭 및 위치(안 제11조제2항)

3) 관장의 직무(안 제12조)

4) 사업소 소관사무 신설(안 제13조)

나. 국 명칭변경 : 건설도시국 → 안전건설국(안 제3조)

1) 안전건설국 직제 조정(안 제7조제1항)

다. 부서신설 : 주민소통실(안 제4조)

라. 부서분리 : 세무과 → 징수과, 부과과(안 제5조제1항)

마. 부서폐지 : 자치행정과(안 제5조제1항)

바. 분장사무 조정

1) 기획홍보실 감사담당 분장사무 삭제(안 제4조의2)

2) 주민소통실 분장사무 신설(안 제4조의3)

3) 행정지원국 분장사무 조정(안 제5조제2항)

가) 자치행정과 분장사무 삭제

나) 문화예술회관 분장사무 삭제

다) 창의놀이터 운영 분장사무 조정

라) 평생교육 분장사무 조정

4) 복지경제국 분장사무 조정(안 제6조제2항)

가) 출산장려 분장사무 조정

나) 지역공동체 분장사무 조정

5) 안전건설국 분장사무 조정(안 제7조제2항)

가) 하수 분장사무 조정

나) 도시경관 분장사무 조정

다) 교통시설 분장사무 조정

라) 공공시설 분장사무 조정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공공청사(시설) 신축”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공청사(시설) 신축”

※ 중기지방재정계획 기준금액 상향에 따른 개정(10억원 → 20억원)

마) 생활민원 분장사무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고충·질의민원,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위한 민원 전담 부서 신설하고 사업소 신설, 세무과 분리 등 주민 수요에 맞춘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문화예술회관은 사업소로 기구신설,
- 건설도시국 → 안전건설국으로 국 명칭 변경
- 주민소통실 부서 신설, 자치행정과는 부서폐지
- 세무과 → 징수과와 부과과로 부서 분리
- 기획홍보실 감사담당 분장사무를 삭제, 주민소통실 분장사무를 신설하는 등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부합하며, 집행기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1. 14.(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11. 30.(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주민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탄력적 정원 운영을 위한 개정 조례임

나. 주요내용

○ 가. 직급별 정원 조정

1. 5급 : 증 2명(35명 → 37명)

2. 6급 이하 : 감 2명(550명 → 548명)

나. 본청 부서 및 사업소 신설에 따른 5급 정원 조정

1. 본 청 : 5급 증 1명(21명 → 22명)

2. 사업소 : 5급 증 1명(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탄력적 정원 운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직급별 정원 조정과 본청 부서 및 사업소 신설에 따른 5급 정원 조정 사항임.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부합하며, 집행기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 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1. 14.(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11. 30.(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연구용역사업의 사전심의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사후평가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마련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 정책연구결과를 공개토록 규정

○ 2019년 지자체 합동평가 세부지표(자치법규 정비실적 필수조례)에 해당됨에 따라 2018년 연내 조례제정 완료 요구

나. 주요내용

○ 가. 제1장(총칙) 제1조~제4조 / 목적, 정의, 적용범위, 관리원칙

나. 제2장(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제5조~제10조

-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제척·회피, 운영, 의견청취, 수당 등

다. 제3장(정책연구용역 관리) 제11조~제19조

- 과제의 선정, 심의요청, 심의기준, 실명관리, 진행상황의 점검, 결과의 평가, 결과의 공개, 결과의 활용, 시행규칙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연구용역사업의 사전심의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사후평가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가. 제1장(총칙) 제1조~제4조 / 목적, 정의, 적용범위, 관리원칙

나. 제2장(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제5조~제10조

-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제척·회피, 운영, 의견청취, 수당 등

다. 제3장(정책연구용역 관리) 제11조~제19조

- 과제의 선정, 심의요청, 심의기준, 실명관리, 진행상황의 점검, 결과의 평가, 결과의 공개, 결과의 활용, 시행규칙

○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연구용역사업의 사전심의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정책연구결과를 평가 및 공개를 통해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1. 14.(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11. 30.(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다양한 행정환경의 변화로 소송·법률자문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추가 위촉함으로써 소송 수행의 전문성 확보 및 자문의 신속한 답변으로 행정신뢰도 제고

나. 주요내용

○ 가. 고문변호사 위촉인원 확대 근거 마련

- “3인 이내”에서 “5명 이내”로 확대(안 제2조)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수정(안 제5조)
- “서식에 의한”을 “서식에 따라”로 수정(안 제5조)
- “비치하고”를 “갖춰 놓고”로 수정(안 제5조)
-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수정(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소송·법률자문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추가 위촉함으로써 소송 수행의 전문성 확보 및 자문의 신속한 답변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고문변호사 위촉인원을 3인 이내에서 5명 이내로 확대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음

○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행정환경 변화로 소송과 법률 자문이 증가함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추가 위촉하여 소송대비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최근 소송 증가 등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1. 14.(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11. 30.(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개정(2014.5.28.) 당시 부칙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2018.12.31.)에 따라,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 조항을 일괄로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나.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부터로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개정(2014.5.28.) 당시 부칙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2018.12.31.)에 따라,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항을 일괄로 신설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개정(2014.5.28.) 당시 부칙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18. 12. 31.로 도래함에 따라,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항을 일괄로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1. 14.(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11. 30.(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및 첫째자녀 출산가정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설에 따른 용어 정의, 지원기준 수정 등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출산축하용품” 용어의 정의(안 제2조제3호)

나.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준 수정(안 제3조제1항, 제4조제1·2항)

1) 출산지원금 : “둘째자녀 이상” → 〈삭제〉

2) 출산축하용품 : 첫째자녀 지원 신설

다. 출산축하용품 지원신청 및 절차 변경(안 제5조1·2항 및 제6조1항)

라. 출산축하용품 지급 대장 추가(안 제8조)

※ 별지 제1·2호서식 변경(붙임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범국가적으로 저조한 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 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출산축하용품의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제3호)
-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준 수정(안 제3조제1항, 제4조제1·2항)
  - 출산지원금 : “둘째자녀 이상” → 〈삭제〉
  - 출산축하용품 : 첫째자녀 지원 신설
- 출산축하용품 지원신청 및 절차 변경(안 제5조1·2항 및 제6조1항) 등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검토결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는 인구감소와 관련된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1. 14.(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11. 30.(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조문구성 : 33개 조문, 부칙으로 구성

나.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아동실태조사,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마. 아동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바. 아동권리대변인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사.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33개 조문, 부칙으로 구성
-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아동실태조사,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제11조)
- 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제20조)
- 아동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제28조)
- 아동권리대변인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9조~제32조)
-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검토결과,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제정조례임
- 검토 내용으로, 제4장 아동의회와 관련하여 '의회'는 입법기관인 지방의회를 의미하며 매년 '청소년 모의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의회' 명칭 사용시 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혼돈될 수 있으므로, '아동의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사항으로, 타자치단체에서는 '아동참여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 제출된 조례안 제24조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4장의 대상은, 특정계층인 학생으로서 제24조 중 '아동위원의 2년 임기'와 관련하여 '학년변경, 초·중·고 졸업과 전학, 이사 등' 변경이 예상되고, 특히, 연령은 1년 주기로 계산됨으로 임기를 2년으로 할 경우, 기준 연령 내외로 걸쳐 적용이 애매하고, 당초 취지와 목적 달성에 곤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2년"을 "1년"으로 수정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25조제1항 중 "만19세"를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연령인 "18세"로 수정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1. 14.(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11. 30.(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다양한 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동협력기구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통해 국내외 아동복지 관련 선진사례를 구정에 접목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명　　칭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 설립일자 : 2015. 9. 14.

※ 가입현황 : 전국 61개 단체(인증도시 31, 추진 중 30)

○ 지방정부협의회 기능

-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에 관한 사항
-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
- 기타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

○ 규약 주요내용

- 구성 : 16개 조문
- 지방정부협의회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제2조~제3조)
- 임원 및 조직,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제4조~제5조)
- 회의 및 의결, 의안 제출, 안건 배부, 의견 청취,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제6조~제10조)
- 실무협의회 등에 관한 사항(제11조)
- 경비 부담 및 사용, 회계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제12조~제13조)
-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다양한 아동문제 해결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협력기구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합의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모든 아동이 충분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 아갈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현안사업에 대하여 공동해결방안 모색 등 상생 발전방안을 도모하기 위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1. 14.(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11. 30.(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통일의 주체로서 구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자각과 인식 확산을 위해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통일 역량 강화 및 통일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평화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기본방향,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평화통일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 공공시설의 이용(안 제4조 ~ 제6조)

다.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직무 및 회의 등(안 제7조 ~ 제11조)

라. 평화통일교육 지원, 포상, 시행규칙(안 제12조 ~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 통일 역량 강화 및 통일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평화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이주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조례의 목적, 기본방향,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직무 및 회의 등 (안 제4조 ~ 제8조)
- 평화통일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 공공시설의 이용(안 제9조 ~ 제11조)
- 평화통일교육 지원, 포상 등(안 제12조 ~ 제14조)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조례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통일의 주체로서 구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자각과 인식 확산을 위해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통일 역량 강화와 통일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평화통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1. 14.(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12. 14.(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환경영향평가, 부패영향 평가 등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명칭의 형식이 달라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워,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를 “성별영향평가조례”로 제명 변경

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변경

다. “분석평가”를 “평가”로 변경

라. “울산광역시 북구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특정성별영향평가”로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명칭의 형식과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워,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를 “성별영향평가조례”로 제명 변경
-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변경
- “분석평가”를 “평가”로 변경
- “울산광역시 북구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특정성별영향평가”로 변경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1. 14.(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12. 14.(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청소년지도위원 추천권한을 지역현안에 밝은 동장으로 지정하여 구·동·민간(청소년지도위원) 협력체계를 긴밀히 구축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절차 개정(안 제12조제2항, 제12조제2항제2호)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1) 제11조 삭제

2) 제12조제3항제2호 중 “제26조의2”를 “제30조”로 변경3. 참고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청소년복지지원법」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동장이 청소년지도위원을 추천하게 함으로써 구·동·민간 협력체계를 긴밀히 구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청소년복지법 시행령(2005.4.27.)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절차를 개정(안 제12조제2항, 제12조제2항제2호) 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과 지역현안에 밝은 동장이 청소년지도위원을 추천하도록 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용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청소년 보호·선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1. 14.(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12. 14.(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시장 사용권의 상속 승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공설시장에 대한 화재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화재발생 시 생업복구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시장 사용권의 상속 승계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 제8조)

나. 시장 사용허가재산(건물) 및 점포 내부물품 및 설비에 대한 화재보험(공제)에 가입 권장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개정(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 사용권의 상속 승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공설시장에 대한 화재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화재발생 시 생업복구 안전망을 확보하기 이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시장 사용권의 상속 승계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8조)
- 시장 사용허가재산(건물) 및 점포 내부물품 및 설비에 대한 화재보험(공제) 가입에 있어 권장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개정(안 제13조)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공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화재보험 가입 등 안전망 확보를 위한 사용자의 의무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을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1. 14.(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12. 14.(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미취업 청년의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3조)

나.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사업참여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미취업 청년의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조례제정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3조)
-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사업참여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고용정책 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저성장 기조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 등 심각한 청년실업과 고용촉진에 대한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퇴직자 친환경 농산물 재배전문가 양성 과정」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1. 14.(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12. 14.(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19년 신규 퇴직(예정)자 교육 프로그램인 「퇴직자 친환경 농산물 재배 전문가 양성교육」 민간위탁으로 시행함에 앞서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추진배경

○ 친환경급식 확대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 수요증가와 퇴직자 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계한 지역 맞춤형 퇴직(예정)자 교육 필요

○ 친환경 농산물 생산·판매(친환경급식 납품) 지원을 통한 로컬 푸드 활성화 및 퇴직(예정)자 노후소득 창출에 기여

나. 사업개요

○ 사 업 명 : 퇴직자 친환경 농산물 재배전문가 양성 과정

○ 사업내용

• 교육기간 : 2019. 3월 ~ 10월(8개월)

• 교육대상 : 신중년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 20명 정도

• 교육과정 : 24회 교육, 월 3회/회당 3시간

- 친환경 농산물 중 구근류 재배교육 및 생산·판매 지원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연계 등

○ 추진방법 : 전문기관 민간위탁

○ 소요예산 : 20,000천원(307-05, 전액구비)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	산출내역	
계	20,000		
인건비	4,000	전담인력	500,000원 x 8월 x 1명 = 4,000,000원
재료비	5,000	실습재료비	250,000원 x 20명 = 5,000,000원
강사비	5,760	약재교육	80,000원 x 3시간 x 4회 = 960,000원
		재배·현장교육	80,000원 x 3시간 x 20회 = 4,800,000원
운영비	5,240	인쇄비(교재 등)	25,000원 x 30권 = 750,000원
		임차비(토지 등)	1개소 x 1식 = 2,400,000원
		사무용품	100,000원 x 8월 = 800,000원
		현수막	50,000원 x 10개 = 500,000원
		재해보험료	20,000원 x 20명 = 400,000원
		기타경비	390,000원

다. 민간위탁

○ 위탁기간 : 2019. 3월 ~ 10월(8개월, 사업수행 기간)

○ 위탁사무 : 퇴직자 친환경 농산물 재배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전반

○ 수탁자격 : 친환경 재배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기관

• 모집방법 : 공개모집('19. 1월 중)

• 선정방법 : 별도의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19. 2월 중)

※ 세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퇴직자 친환경 농산물 재배전문가 양성 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와 기대수명 증가 등 노령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노후 소득창출을 위한 퇴직자들의 일자리 창출과 로컬푸드(친환경 농산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퇴직자 맞춤형 전문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결과, 친환경 농산물 수요가 증가하고, 퇴직자 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계한 지역 맞춤형 퇴직(예정)자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퇴직자 친환경 농산물 재배전문가 양성과정 민간위탁을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1. 14.(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12. 14.(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농어업재해에 의하여 직접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수별 복구비 지원금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농어업재해에 의하여 직접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수별 복구비 지원금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농어업재해에 의하여 직접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수별 복구비 지원금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지원대상 :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안 제4조)

- 지원제외대상(안 제5조)

1) 농작물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2) 농어업외 소득이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중복 지원되거나 금지지역에서 행위를 한 경우 등

- 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안 제7조)

〈재난지수 산정 후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 지급〉

재 난 지 수	복구비지원금(원)
200이상 ~ 300미만	300,000
100이상 ~ 200미만	200,000
100미만	100,000

○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조례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재해 발생에 따른 복구비 지원과 농어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폐형광등 폐건전지 소형폐가전제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1. 14.(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12. 14.(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공동주택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수거되는 폐형광등, 폐건전지 및 소형폐가전제품의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위탁개요

- 기　　간 : 2019. 1. 1. ~
- 위탁사무 : 폐형광등, 폐건전지 및 소형폐가전제품 수집·운반
- 범　　위 : 북구 소재 공동주택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수거함
- 수탁자격 : 북구 소재 생활폐기물수집 · 운반업자
- 선정방법 : 수의계약(1개 업체)
- 소요예산 : 66,776천원(민간위탁금)
  - 폐형광등, 폐건전지 민간위탁 : 31,586천원
  - 소형폐가전제품 민간위탁 : 35,190천원

※ 2019년 생활폐기물 등 수집 · 운반 대행료 원가산정 용역에 의함.

나. 추진일정

- 2019년 당초예산 확보 : '18. 11. ~ 12월
- 사무위탁에 따른 북구의회 동의 절차 이행 : '18. 11. ~ 12월
- 사업준비 및 시행
  - 대행업체 선정 : '18. 12월
  - 주민홍보 : '18. 12월
  - 시　　행 : '19. 1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폐형광등 폐건전지 소형폐가전제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폐형광등, 폐건전지, 소형폐가전제품 수집운반에 관한 업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북구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쾌적하고 청결한 거리조성을 위해 2018. 9. 20.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위탁추진 동의를 받았으며, 환경미화 업무처리 방식의 효율성 제고, 처리과정의 문제점 해소 및 송정택지개발지구, 호계매곡지구, 대규모 택지개발 등 청소권역의 확대 문제 등을 해소하고자 민간 위탁하는 내용으로 폐형광등, 폐건전지, 소형가전제품 수집운반 민간

위탁을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1. 14.(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12. 14.(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쓰레기 불법소각·투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에 대해 건전한 신고 유도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적 신고를 차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포상금 지급대상 과태료 범위 변경(안 제23조제1항제1호)

• 5만원 → 10만원

나. 포상금 지급률 하향 조정(안 제23조제1항제2호)

• 50,000원 초과 과태료 50% → 100,000원 초과 과태료 10%

다. 동일 신고자의 신고건수 제한(안 제23조제1항제3호)

• 월 10건, 연 50건 → 월 2건, 연 10건

라. 포상금 지급대상자 거주지 제한(안 제23조제1항제2호)

마.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에 대하여 무분별한 신고를 억제하고, 건전한 신고를 유도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적 신고를 차단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과태료 범위 변경(안 제23조제1항제1호·제2호)

• 5만원 → 10만원

- 신고포상금 지급률 하향 조정(안 제23조제1항제2호)

• 50,000원 초과 과태료 50% → 100,000원 초과 과태료 10%

- 동일 신고자의 신고건수 제한(안 제23조제1항제3호)
  • 월 10건, 연 50건 → 월 2건, 연 10건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행정질서벌의 특성을 살려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에 따른 전문 신고꾼의 등장으로 무분별한 신고와 행정력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1. 14.(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12. 14.(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내용 및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추진계획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개정내용 및 법제처 권고사항 반영

• 안전관리위원회 관장 사무 추가(안 제2조)
- 재난이나 각종 사고 수습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방법 및 명칭 정비(안 제3조)
-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
- 위원 소속기관 변경에 따라 명칭 정비
•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변경 (안 제3조·제7조)
• 제9조(조사·연구 의뢰) 규정 삭제
- 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의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해당 규정 삭제

• 관계기관 협조요청 주체 변경(안 제10조)

-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변경

나. 용어 정비

•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안 제4조 · 제 5조 · 제6조 · 제12조 ·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내용 및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으로,

- 상위법령 개정내용 및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

• 안전관리위원회 관장 사무 추가(안 제2조)

•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방법 및 명칭 정비(안 제3조)

•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변경
(안 제3조·제7조)

• 제9조(조사·연구 의뢰) 규정 삭제 :

▸ 위원회는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조사와 연구에 관한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규정 삭제

• 관계기관 협조요청 주체 변경(안 제10조)

•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 개정과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삭제〉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구청장은 실무위원회에서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1. 12.(백현조 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8. 12. 14.(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과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협력(안 제1조~제4조)

나.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계 구축, 안전도시사업의 범위, 사업의 지원, 위탁운영(안 제5조~제8조)

다. 안전도시협의회의 설치(안 제9조)

라. 시행규칙(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민의 안전증

진 및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과 안전도시를 지향하고 수행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협력(안 제1조~제4조)
-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계 구축, 안전도시사업의 범위, 사업의 지원, 위탁 운영(안 제5조~제8조)
- 안전도시협의회의 설치(안 제9조)
- 시행규칙(안 제10조)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검토결과,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구민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하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내용으로 안전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증진시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도시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안전도시 실현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임
-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본 조례의 실무기능은 안전 관리 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기능을 일원화 하는 상징성이 강한 조례임
- 집행부의 의견 청취 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1. 14.(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12. 14.(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관내 북부소방서의 개청과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 등에 따라 현황과 맞지 않는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정비하여 통합방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울산광역시북부소방서 개청(안 제2조제3항)

• 위원 변경 : 울산광역시중부소방서장 → 울산광역시 북부소방서장

나. 위원 소속기관 명칭 정비 및 현행화(안 제2조제3항)

• 울산해양경비안전서장 → 울산해양경찰서장

•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 →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 기무부대장 → 군사안보지원부대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북부소방서의 개청과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조례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울산광역시북부소방서 개청(안 제2조제3항)

• 위원 변경 : 울산광역시중부소방서장 → 울산광역시 북부소방서장

- 위원 소속기관 명칭 정비(안 제2조제3항)

• 울산해양경비안전서장 → 울산해양경찰서장

•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 →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 기무부대장 → 군사안보지원부대장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북부소방서 개청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1. 27.(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12. 14.(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 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또는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가 도입됨.

○ 따라서 우리 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 현황

구 분			시 설 수	연장(m)	면 적(㎡)	비 고
계			1,628	-	5,206,581.3	
도로	소 계		1,282	264,774	2,597,907.0	
	중 로	소 계	206	75,968	1,103,935.0	
		2 류	111	50,680	92,244.0	
		3 류	95	25,288	11,691.0	
	소 로	소 계	1,076	189,806	1,493,972.0	
		1 류	145	34,219	50,422.0	
		2 류	583	110,562	86,672.0	
		3 류	348	44,025	56,878.0	
기타시설	소 계		346	-	2,608,674.3	
	주 차 장		87	-	42,458.4	
	공원	소 계	75	-	05,823.7	
		어린이공원	51	-	23,965.3	
		소공원	24	-	81,858.4	
	공 공 공 지		35	-	14,821.5	
	시 장		1	-	32,197.0	
	수도공급설비		16	-	65,145.4	
	공 공 청 사		17	-	21,404.2	
	학 교		44	-	34,192.7	
	문 화 시 설		4	-	22,111.0	
	체 육 시 설		8	-	70,407.0	
	사회복지시설		5	-	42,893.4	
	청소년수련시설		2	-	59,991.6	
	하 천		15	-	45,067.7	
	유 수 지		29	-	67,350.3	
	하 수 도		8	-	84,810.4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구 분			결정면적			집 행		미 집 행	
			시설수	연장(m)	면 적(㎡)	연 장	면 적(㎡)	연 장	면 적(㎡)
총 계			326	75,558	705,274	11,058	104,554	64,500	600,720
도로	소 계		317	75,558	686,328	11,058	104,554	64,500	581,774
	중로	소계	24	15,208	218,117	2,477	35,152	12,731	182,965
		2류	14	11,639	175,023	1,807	27,110	9,832	147,913
		3류	10	3,569	43,094	670	8,042	2,899	35,052
	소로	소계	293	60,350	468,211	8,581	69,402	51,769	398,809
		1류	27	6,542	65,459	1,672	18,944	4,870	46,515
		2류	193	40,585	323,885	4,082	33,494	36,503	290,391
		3류	73	13,223	78,867	2,827	16,964	10,396	61,903
기타시설	소 계		9	-	18,946	-	-	-	18,946
	주 차 장		4	-	5,336	-	-	-	5,336
	공 원		2	-	3,000	-	-	-	3,000
	공공공지		1	-	100	-	-	-	100
	공공청사		1	-	1,000	-	-	-	1,000
	학 교		1	-	9,510	-	-	-	9,510

○ 경과년도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구 분		계		10년 미만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계		326	600,720	8	10,184	196	393,719	122	196,817
도로	소계	317	581,774	8	10,184	187	374,773	122	196,817
	중로	24	182,965	-	-	21	160,299	3	22,666
	소로	293	398,809	8	10,184	166	214,474	119	174,151
주 차 장		4	5,336	-	-	4	5,336	-	-
공 원		2	3,000	-	-	2	3,000	-	-
공공공지		1	100	-	-	1	100	-	-
공공청사		1	1,000	-	-	1	1,000	-	-
학 교		1	9,510	-	-	1	9,510	-	-
						장기미집행시설(318개소)			

○ 미집행시설 단계별·연차별 집행계획

(단위 : ㎡, 백만원)

구분	계	1 단 계				2-1 단 계			2-2 단계	비 고
		소 계	2018	2019	2020	소 계	2021	2022	2023이후	
시설수	326	17	3	10	4	229	224	5	80	
면 적	600,720	28,841	4,034	10,070	14,737	454,230	447,692	6,538	117,649	
사업비	594,608	14,993	1,515	5,690	7,788	483,788	476,937	6,851	95,827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방식 및 단계별 사업비 집계

시설명	사업개요			계획기간 중 사업비(2018~2023이후)											
				집행방식별 사업비 (백만원)					단계별 사업비(백만원)						
	건수	사업규모 (㎡)	총 사업비 (백만원)	총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17개)			2-1단계 (228개)		2-2단계 (73개)	
					국비	시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18 (3개)	´19 (10개)	´20 (4개)	´21 (223개)	´22 (5개)	´23이후 (73개)	
총계	318	590,536	585,664	585,664	-	585,664	-	-	1,515	5,690	7,788	476,841	6,851	86,979	
도로	309	571,590	546,610	546,610	-	546,610	-	-	1,515	5,690	7,788	467,949	6,851	56,817	
주차장	4	5,336	5,687	5,687	-	5,687	-	-	-	-	-	4,009	-	1,678	
공원	2	3,000	1,606	1,606	-	1,606	-	-	-	-	-	1,606	-	-	
공공공지	1	100	25	25	-	25	-	-	-	-	-	-	-	25	
공공청사	1	1,000	3,277	3,277	-	3,277	-	-	-	-	-	3,277	-	-	
학교	1	9,510	28,459	28,459	-	28,459	-	-	-	-	-	-	-	28,459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1. 12.(임채오 의원 외 3명 발의)

○ 심의일자 : 2018. 12. 14.(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관내 소재하는 공동주택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경비원, 청소원 등

근로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원대상의 추가(안 제4조의2)

• 공동주택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경비원, 청소원 등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소재하는 공동주택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경비원, 청소원 등 근로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시설 관리 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

○ 검토결과,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공동주택시설을 관리하는 경비원과 청소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집행부의 의견 청취 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1. 12.(박상복 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8. 12. 14.(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한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북구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사업내용, 운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6조)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 수행 내용 및 운영위원회의 기능 명시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다.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12조)

○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음.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한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정신질환자의 관리·재활·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상복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1조 ~ 안 제3조)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 내용,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 (안 제4조 ~ 안 제6조)
-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안 제12조)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조례 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정신보건

사업을 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1. 14.(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12. 14.(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조례 정비 및 신설, 용어 정비로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는 진료비에 한하여 전액 감면(내용 정비) (안 제14조제2항제8호)

나. 보건진료소 방문 시 만 65세 이상 만성질환자의 진료수가는 투약 1일 방문당 수가 적용, 그 외 본인부담금은 감면 (안 제14조제2항제9호)

다. 감면사항에 대한 용어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조례 정비 및 신설, 용어 정비로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는 진료비에 한하여 전액 감면하고, (안 제14조제2항제8호)
- 보건진료소 방문 시 만 65세 이상 만성질환자의 진료수가는 투약 1일 방문당 수가 적용, 그 외 본인부담금은 감면 (안 제14조제2항제9호) 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희망자는 진료비에 한하여 전액 감면하고, 보건진료소의 주민건의사항으로 만 65세 이상 만성질환자의 진료수가를 조정하여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판문점 선언 국회비준동의 촉구 결의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2. 10.(임수필 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8. 12. 14.(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가. 남과 북의 적대감정을 완전히 걷어내고 평화와 화해의 시대로 넘어가는 길목에 정부만의 역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도 제 역할을 해야 함.

나. 4.27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과 함께 남북교류사업이 장애가 되고 있는 대북제재를 해제할 방안을 찾아야 하며, 국회가 나서 한반도 평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과시하고 다시는 대결의 시대로 되돌릴 수 없도록 항 구적인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하는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판문점 선언 국회비준동의'에 대한 결의안을 촉구함.

3) 심의결과 : 심의보류

제7절 제180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지방자치법」 제45조

나. 개회일시 : 2019. 2. 18.(월) 10:00

다. 회　　기 : 2019. 2. 18. ~ 2. 28.(11일간)

라. 부의안건

○ 제18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백현조 의원 외 2인 발의)

○ 제18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구청장)

○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 고헌 박상진의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개정 촉구 결의안 (정외경 의원)

○ 부산~울산 광역전철 송정역(가칭) 연장 운행촉구 결의안(이주언 의원)

2. 개회사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생현장과 북구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를 맞이하여 첫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제18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29일, 울주군 두서면에서 북구 강동까지 이어지는 외곽순환고속도로와 농소에서 외동 간 국도 건설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경주시로 진입하는 산업로의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해소되고 북구로의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며 교통 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더욱 편리하게 강동해변을 찾을 수 있어 지지부진하던 강동권 개발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고, 침체된 울산경제의 재도약도 기대됩니다.

더 나아가 울산의 물류와 문화, 교육, 관광산업 등이 엄청나게 활성화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산재전문공공병원도 5개 구·군 중 제조업체 근로자 수가 가장 많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더라도 교통이 편리한 북구로 유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는 여야를 떠나 지역 정치권과 21만 북구민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힘과 지혜를 모아 새로운 청사진으로 희망찬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지난해 7월, 제7대 북구의회가 구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 속에서 출발하여 어느새 2019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북구의회 전 의원은 구민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구민들에게 필요한 각종 조례를 정비하고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해 예산안을 심의하고 다양한 구민의견을 의정에 반영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북구의회는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구민 여러분과 소통하며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민원현장을 살피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조직정비를 통해 민선7기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만큼 안심북구 조성과 이동권 확보로 교통 중심도시 인프라 구축 및 복지와 문화도시 조성, 미래지향적 복합신도시 건설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포함해서 2019년도 역점시책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1년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보고 받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의회가 되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업추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보다 풍성하고 발전하는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풍요와 복을 상징하는 기해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뜻하는바 모두 이루시고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2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이 주 언

3. 의사일정

제18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9. 2. 18. ~ 2. 28.(11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 18.(월)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1	■ 5분 자유발언(박상복 의원, 임수필 의원, 이진복 의원) 1. 제18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안번호 제67호) 3. 제18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안번호 제68호)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 19.(화) 10:00	2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기획홍보실 ○ 주민소통실 ○ 보 건 소 ○ 문화예술회관 ○ 의회사무과	
2. 20.(수) 10:30	3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행정지원국(총무과, 관광해양개발과, 민원지적과)	
2. 21.(목) 10:00	4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행정지원국(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징수과, 부과과)	
2. 22.(금) 10:00	5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복지경제국(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2. 23.(토)		휴 회	
2. 24.(일)		휴 회	
2. 25.(월) 10:00	6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복지경제국(경제일자리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2. 26.(화) 10:00	7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안전건설국(안전정보과, 건설과, 도시과)	
2. 27.(수) 10:00	8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안전건설국(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2. 28.(목) 10:00	9	1.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 동의안 (의안번호 제69호, 행정지원국) 2.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70호, 행정지원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1호, 기획홍보실) 4.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2호, 보건소) 5.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3호, 복지경제국) 6. 고헌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개정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74호, 정외경 의원) 7. 부산~울산 광역전철 송정역(가칭) 연장 운행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제75호, 이주언 의원)	

4.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 동의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2. 12.(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2. 28.(제180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방정부간 교류 강화

○ 지방정부간 협력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 및 문제해결 공동대응

○ 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나. 주요내용

○ 조문구성 : 22개 조문으로 구성

○ 지방정부협의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 임원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회의 및 의결, 의안 제출, 안건 배부, 의견 청취,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 사무국의 업무 및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재원, 부담금, 예산 및 결산, 감사에 관한 사항(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동의안은 지방정부간 협력강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 합의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임.

○ 검토결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형성 및 현안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2. 12.(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2. 28.(제180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강동동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하여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취 득 : 1건

- 취득내용 : 건물 신축(1개동, 660㎡)
- 취득사유 : 강동동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 추정가격 : 1,997백만원(국비 461, 시비 230, 구비 1,306)

※ 건물 신축비 1,997백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 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그 취득 대상 공유재산은 강동동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건이며, 총 사업비는 19억 9천 7백만원임.

○ 검토결과 강동동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건은 최근 강동산하지구의 대단위 공동주택 4,084세대의 입주에 따라 영유아 수가 증가해 보육수요는 늘어났으나,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 정원 수(190명)가 적어 입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2018년 어린이집 신규 인가 접수 시 정원 541명을 공고하였으나, 2개소 90명만 접수되는 등 민간어린이집 공급 또한 부족한 실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2. 12.(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2. 28.(제180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문화·관광도시 조성, 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등 주민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담당을 신설하고, 국가시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정원 일부를 조정

나.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 592명 → 607명(증 15) (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578명 → 593명(증 15)

○ 직급별 정원 조정(별표 3)

- 6급 이하 : 548명 → 563명(증 15)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탄력적 정원 운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직급별 정원 조정과 본청 담당 신설에 따른 6급 이하 정원 조정 사항임.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부합하며, 집행기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2. 12.(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2. 28.(제180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 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근거가 되는 법령 포괄적으로 규정(안 제1조, 제4조제1항제1호)

• (기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제6항 같은 법 제34조제3항

(변경) 「국민건강증진법」

• (기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 법령 제명 변경사항 반영 및 문구 변경(안 제4조제1항)

• 제명 및 문구 변경(안 제2호)

(기존)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 정화구역

(변경)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 근거법령 명시 및 명칭 변경(안 제3호)

(기존) 버스 및 택시 정류소

(변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 상위법령(「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놀이터”는 중복 규정이므로 조례에서 삭제(안 제4호)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6조,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근거가 되는 법령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법령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문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2. 12.(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2. 28.(제180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인근 지자체(경주, 울주군 등)의 가축사육 거리제한 강화로 인하여 우리 구에 무분별한 대형 신규축사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 지정되어 있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정 및 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정의 일부 삭제(안 제2조)
나.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변경(안 제3조)

○ (기존) 동별 제한 → (변경) 주거밀집지역 등 축종별 거리제한
- 축종별 주거밀집지역 등 이격거리 제한
(소 100m, 젖소 250m, 돼지 800m, 닭·오리·개·메추리 1,000m, 양·말·사슴 500m)

다. 가축사육에 따른 가축사육자 의무사항 신설(안 제4조)

라. 가축사육제한 지형도면 고시 의무사항 신설(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인근 지자체(경주, 울주군 등)의 가축사육 거리

제한 강화로 인하여 축사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정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임.

○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에서 정의된 용어의 중복부분 삭제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구 실정에 적합하게 변경하고, 가축사육자 의무사항과 가축 사육제한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였음.

○ 검토결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과 보건위생에 위해(危害)가 발생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고헌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개정 촉구 결의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2. 12.(정외경 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9. 2. 28.(제180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가.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로, 광복회 총사령관인 고헌 박상진 의사에 대한 역사적 가 치와 평가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함.

나. 광복회 총사령을 역임한 고헌 박상진 의사는 광복회를 조직하고 조국의 독립운동에 모든 것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3등급에 머문 서훈등급에 대하여 올바른 역사적 평가 및 조국독립에 기여한 공헌과 공적을 고려하여 서훈등급은 반드시 상향되어야 할 것임.

다. 현행 「상훈법」에서는 서훈 등급의 변경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라. 이에, 고헌 박상진 의사의 서훈 등급 상향과 서훈 등급 변경을 위한 「상훈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자 결의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부산~울산 광역전철 송정역(가칭) 연장 운행 촉구 결의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2. 12.(이주언 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9. 2. 28.(제180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가. 부산~울산 광역전철이 내년에 개통예정인데 부산 부전역에서 울산 태화강역까지 연결 예정임.

나. 송정역이 향후 유일한 북구의 역사가 되며, 북구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태화강역까지 거리가 멀고, 주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장래 이용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이므로 송정역까지 연장이 필요함.

다. 이에, 부산~울산 광역전철을 태화강역에서 송정역까지 연장 운행 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3)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8절 제181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지방자치법」 제45조

나. 개회일시 : 2019. 4. 12.(금) 10:00

다. 회　　기 : 2019. 4. 12. ~ 4. 26.(15일간)

라. 부의안건

○ 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채오 의원 외 2인 발의)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 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운영 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신규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현조 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관한 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오 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상복 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주언 의원 발의)
○ 의사일정 변경의 건(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외경 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안의결의 건(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협약 체결 촉구에 대한건의안(임수필 의원 발의)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2. 개회사

존경하는 2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 북구를 위해 애쓰시는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따스한 봄기운 속에 제181회 임시회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생업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지역 현안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지역 발전에 힘 기울이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중 무역 갈등, 국내 경기 부진 등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무역확장법」232조에 따라 자동차 관세폭탄이 현실화할 경우를 대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정부 및 울산시와의 긴밀한 정책 협조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숙원사업인 외곽순환도로 조기 착공과 준공, 농소에서 외동 간 도로 개설, 북부터미널 신설,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박상진 의사 훈격 상향, 도시 꽃단지 조성사업 등에 계속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현안 사업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민원 현장도 더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인구는 3월 말 기준으로 21만 명을 넘어섰고, 현재도 송정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광역전철은 부전역에서 태화강역까지만 운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북구와 중구, 동구 주민들이 가까운 가칭 송정역을 두고 10km 이상 떨어진 태화강역을 이용해야 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산~울산광역전철의 송정역 연장 운행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 광역전철 연장운행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서명목표 인원 4만 명이 목표인 서명운동을 5월 말까지 진행 중입니다.

현장 및 온라인서명운동 등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더 많이 참여하도록 행정력을 모아 부산~울산 광역전철이 송정역까지 연장 운행되도록 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제181회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및 조례안 등의 안건 처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추경예산안에는 구민의 실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예산이 포함되는 만큼 사업의 우선순위와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지역을 더 풍요롭게 가꾸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의원들께서는 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의에 필요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 한 해 계획한 업무가 정상 추진되고 있는지, 예상되는 문제는 없는지 재차 확인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의회에서는 내부적으로 여야 협치를 더욱 강화하고,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최적의 안을 도출하는데 힘쓸 것입니다.

화창한 봄 날씨 속에 야외활동이 잦은 시기인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구민의 안녕과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이 주 언

3. 의사일정

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9. 4. 12. ~ 4. 26.(1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4. 12.(금) 10:00		개 회 식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박상복 의원, 임채오 의원) 1. 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81호) - 제 안 설 명(구 청 장) - 4. 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13.(토)		휴 회	
4. 14.(일)		휴 회	
4. 15.(월) 10:00	제2차 본회의	1.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82호, 행정지원국) 2.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88호, 행정지원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83호, 행정지원국) 4.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9호, 행정지원국)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5.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0호, 행정지원국) 6. 울산광역시 북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7호, 주민소통실) 7. 울산광역시 북구 신규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84호, 복지경제국) 8.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7호, 백현조 의원 발의, 복지경제국) 9. 울산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91호, 보건소) 10.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8호, 임채오 의원 발의, 의회사무과) 1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9호, 박상복 의원 발의, 의회사무과) 12.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85호, 기획홍보실) 1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6호, 이주언 의원 발의, 의회사무과)	
4. 16.(화) 10:00	제1차 예결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기획홍보실 ○ 주민소통실 ○ 보 건 소 ○ 문화예술회관 ○ 의회사무과	
4. 17.(수) 10:00	제2차 예결위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행정지원국(총무과, 관광해양개발과, 민원지적과)	
4. 18.(목) 10:00	제3차 예결위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행정지원국(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징수과, 부과과)	
4. 19.(금) 14:00	제4차 예결위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복지경제국(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4. 20.(토)		휴 회	
4. 21.(일)		휴 회	
4. 22.(월) 10:00	제5차 예결위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복지경제국 (경제일자리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4. 23.(화) 14:30	제3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제3차 본회의후	제6차 예결위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안전건설국(안전정보과, 건설과, 도시과)	
4. 24.(수) 10:00	제7차 예결위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안전건설국(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제7차 예결위 후	제4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93호, 정외경 의원 발의, 기획홍보실) 2.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안 의결의 건 (의안번호 제86호, 기획홍보실) 3.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 청문회 실시를 위한 협약 체결 촉구'에 대한 건의안 (의안번호 제92호, 임수필 의원 발의)	
4. 25.(목) 10:00	제8차 예결위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계수 조정 후	〈현장방문 활동〉 3개소 - 화봉공원주차장, (가칭)송정역, 반려동물문화센터	
4. 26.(금) 10:00	제5차 본회의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종합 심의의결	

당 일 의 사 일 정 변 경 안

《당 초》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4. 15.(월) 10:00	5	1. ~ 12.(생략) 13.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안 의결의 건 (의안번호 제86호, 기획홍보실) 14.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 청문회 실시를 위한 협약 체결 촉구'에 대한 건의안 (의안번호 제92호, 임수필 의원 발의) 1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76호, 이주언 의원 발의, 의회사무과)	

《변 경》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4. 15.(월) 10:00	5	1. ~ 12.(생략) 1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76호, 이주언 의원 발의, 의회사무과)	

4.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2019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4. 3.(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4. 15.(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소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 등 3건)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취 득 : 3건

• 취득내용 : 토지매입(6필지, 2,157㎡), 건물신축(1개동, 2,400㎡), 건물매입(3개동, 614㎡)

• 취득사유

- 농소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호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 추정가격 : 13,063백만원(국비 5,967, 시비 2,673, 구비 4,423)

- 농소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 : 1,950백만원 (국비 200, 구비 1,750)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9,000백만원 (국비 4,500, 시비2,250, 구비 2,250)
- 호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 2,113백만원 (국비 1,267, 시비 423, 구비 42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 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그 취득 대상 공유재산은 농소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 등 3건이며, 총 사업비는 130억 6천 3백만원임.

○ 검토결과, 첫 번째, 농소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의 건은 신천동 270번지 일원에 사업비 19억 5천만원으로 예술창작, 마을공방 등 문화시설을 구비한 지상2층 규모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예정이며 인근 매곡천 친수환경이 조성되고 호계·매곡지구 신규 입주민들이 유입되고 있으나 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두 번째,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의 건은 현재 호계매곡도시개발사업 지구 A2블록 1롯트에 위치하는 구유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2,400㎡ 규모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축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현재 산모의 산후조리원 문화가 정착되면서 민간산후조리원의 고비용, 감염 등 안전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산후 조리원 건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관내 산후조리원이 없는 우리구의 실정으로는 타 지역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해야 하는 원정출산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대단지 아파트 조성으로 젊은 세대들이 늘어 산후조리원의 건립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공공산후조리원의 인력과 시설기준, 직영 또는 위탁 등 운영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세 번째, 호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본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호계 전통시장은 농소권 구도심에서 지역상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시장 주변의 열악한 주차 환경개선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호계동 678-5번지외 1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28면의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됨. 현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하는'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공모하여 심사결과를 앞둔 상황으로서 국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고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요구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4. 5.(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4. 15.(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생활문화센터는 우리 구에 처음 개관하는 생활문화 활동공간으로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가는 문화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설립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에 맞게 생활문화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시설의 위치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다. 이용시간 및 시설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10조)

라.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5조)

마. 자원봉사자, 운영자문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위치 및 추진사업, 이용시간, 시설대관, 수강료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계약기간, 위탁의 취소, 지원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4. 5.(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4. 15.(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해 설치한 생활문화센터가 2019. 8월 개관 예정임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임.

○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설 개요

• 위　　치 : 북구 오치골 1길 10-3(양정동)
• 개관예정 : 2019. 8월
• 규　　모 : 부지면적 496㎡, 연면적 747.11㎡/지상3층
• 주요시설 : 다목적실, 북카페, 동아리방, 음악연습실, 노래연습실, 강의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임.
- 생활문화센터 관련 주민참여 강좌 기획 및 운영, 생활문화센터 및 동아리 활동의 육성·지원,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등에 대하여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운영비는 1억 2천 3백만원임.

○ 검토결과,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가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4. 5.(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4. 15.(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개정(법률 제7846호, 2006. 1. 11)에 따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하한연령을 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예비 전문매각기관의 모집 공고, 심사 등(안 제2조 ~ 제3조)
나.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선정취소(안 제4조 ~ 제5조)
다. 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 및 매각대행 해제(안 제6조 ~ 제7조)
라. 매각대금의 수령, 매각재산의 인도(안 제8조 ~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매각 기관이 예술품 등을 매각대행 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2에 따라 예술품 등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및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4. 5.(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4. 15.(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종교단체의 의료법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안 제2조)

구 분	현 행	개 정
감면기한	2018. 12. 31.까지	2020. 12. 31.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2018. 12. 24.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개정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감면 (50%)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사항임.

○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의 개정으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4. 5.(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4. 15.(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매곡·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사업부지 내 매곡동과 중산동의 경계를 조정하여 입주민의 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별표 1, 2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매곡·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내 중산동과 매곡동의 경계를 조정하여 입주민의 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울산광역시 북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별표 1, 2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9조의2에 따라 매곡·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사업부지 내 매곡동과 중산동의 경계를 조정하여 입주민의 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신규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4. 3.(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4. 15.(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19년 7월 개소 예정인 신규 공립지역아동센터의 전문적, 효

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임.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시설 현황

• 위　　치 : 호계동 718-3번지
(호계지구 주거지재생사업 커뮤니티센터 2층)

• 규　　모 : 연면적 200㎡

- 구　　성 : 사무실, 집단지도실 3,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등
- 이용정원 : 19명(중학생)
- 종 사 자 : 2명(시설장 1, 생활복지사 1)

• 개　　소 : 2019. 7월(예정)

○ 위탁개요

• 기　　간 : 2019. 7. 1. ~ 2024. 6. 30.(5년)
※ 커뮤니티센터 준공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범　　위 :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수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별도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위탁운영비 : 80,000천원 정도

- 인건비 및 프로그램사업비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동의안은 2019년 7월 개소 예정인 신규 공립지역아동센터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해당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검토결과, 「울산 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의 민간지역 아동센터를 대표하여 아동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지역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립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

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체에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려는 것임.

- 「아동복지법」 제50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그리고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과 같은 아동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공립지역아동센터사업의 운영은 다양하고 풍부한 운영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타 시도에서 운영 중인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민간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4. 4.(백현조 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9. 4. 15.(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본 조례 중 「아동복지법」등 관련 규정 준수, 아동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동의 정의와 아동의회의 구성·임기·해촉에 관련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아동의 정의 및 아동의회 관련 일부 조문 정비

- “아동을”을 “18세 미만의 사람을”로 수정(안 제2조제1호)
- “위원회의 위원장은”을 “위원장은”으로 수정(안 제15조제2항)

- “위원회의 위원은”을 “위원은”으로 수정(안 제15조제3항)
- “이 경우”를 “다만,”으로 수정(안 제23조제1항)
- “2년으로”를 “1년으로”로, “한차례만”을 “2회에 한하여”로 수정(안 제24조)
- “만 19세가”를 “18세가”로 수정(안 제25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등 관련 규정 준수, 아동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동의 정의와 아동의회의 구성·임기·해촉에 관련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아동의 연령, 아동 의회의 임기·연임·해촉 규정을 관련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아동복지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하는 연령인 18세미만으로 개정하여 아동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아동의원이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자구일부를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조례입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4. 5.(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4. 15.(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과음의 위험성과 절주의 필요성을 알리고 음주 폐해로부터 보호하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사업의 법적 근거 및 실효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교육 및 홍보(안 제4조)
라.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안 제5조)
마. 자원봉사 활동 및 지원, 구민의 참여 사항(안 제6조,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안임.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음주청정지역의 정의와 지정의 범위, 계획, 교육, 홍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주류광고 및 후원 행위 제한과 자원봉사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4. 4.(임채오 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9. 4. 15.(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주민생활 및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을 수립할 때 외부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자문으로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정책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 구민만족행정을 구현하고자 협의회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

하는 지방의원 여비지급 기준조항 명시, 의원 여비 지급 기준 변경(안 제3조)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 삭제(별표2, 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개정에 따른 북구의회 의원 여비지급기준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지방의원 여비지급 기준조항 명시, 의원 여비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안 제3조),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별표2, 3)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음.

○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개정(2018. 1. 9.)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지방의원 여비지급 기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4. 4.(박상복 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9. 4. 15.(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9431호, 2019. 3. 25. 시행)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신설(안 제4조, 제4조의2~5)

○ 알선·청탁 등의 금지 신설(안 제8조의2)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및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신설(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신설(안 제15조)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 신설(안 제3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적 이해관계,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 활동의 신고 등 직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또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및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 사항 등도 추가로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9431호, 2019. 3. 25. 시행)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반영하는 한편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고, 지방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며 지방자치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4. 5.(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4. 15.(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직영 또는 위탁하고 있는 시설 및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가.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안 제1조 ~ 제6조)
나. 임원의 구성(안 제7조 ~ 제11조)
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제12조)
라. 임원의 임기(안 제13조)
마. 이사회 구성(안 제15조)
바. 직원의 임면(안 제19조)
사. 공단의 사업(안 제20조)
아.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안 제21조)
자. 회계처리의 원칙(안 제23조)
차.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24조)
카. 세입 및 결산(안 제25조, 제26조)
타. 공단의 감독(안 제28조 ~ 제3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책임경영을 통한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안임.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목적 등 설립에 관한 사항, 임원과 직원의 임기·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복합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운동장 및 다목적구장의 관리·운영,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의 사업 수행 범위와 재무회계, 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현재 북구청에서 직영 또는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 및 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 설립으로 민간경영기법 및 책임경영체계 도입, 전문인력 채용,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통한 주민 서비스 질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됨.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소중한 주민의견은 적극 반영되었으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부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4. 4.(이주언 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9. 4. 15.(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제명 변경

• 기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나.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허가권자(안 제1조~안 제3조)

다. 심사위원회의 설치, 심사기준, 회의, 수당 및 여비 (안 제4조~안 제7조)

- 민간위원으로 심사위원 구성

- 위원수 : 6인 → 7인, 위원장 : 부의장(당연직) → 민간위원 중 호선

라. 공무국외출장 제한, 출장계획서의 제출, 출장보고서 제출, 예산 편성·집행, 사후관리 등(안 제8조~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국외연수와 국외연수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여 의정활동의 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개정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기존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라는 조례명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사기준 등을 강화하고 공무국외출장 제한, 출장계획서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음.

○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국외연수와 연수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의원의 일탈행위 등으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과 지방의회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 이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있어 심사위원을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하는 한편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하였고, 출장보고서 제출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4. 17.(정외경 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9. 4. 24.(제1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직영 또는 위탁하고 있는 시설 및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가.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안 제1조 ~ 제6조)

나. 임원의 구성, 결격사유 등(안 제7조 ~ 제11조)
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제12조 ~ 제13조)
라. 임원의 임기(안 제14조)
마. 이사회 구성(안 제16조)
바. 직원의 임면(안 제20조)
사. 공단의 사업(안 제21조)
아.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안 제22조)
자. 회계처리의 원칙(안 제24조)
차.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25조)
카. 세입 및 결산(안 제26조, 제27조)
타. 공단의 감독(안 제29조 ~ 제3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책임 경영을 통한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안임.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목적 등 설립에 관한 사항, 임원과 직원의 임기·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등 필요한 사항과 위원의 자격 요건 중 "기타 공단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명시하여 참여의 폭을 다양화하였음. 또한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공단 파견 범위를 지정 하였고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부칙사항에 신설하였음.

○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당초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4.15일 제181회 제2차 본회의시 부결된 바 있음.

- 그 이후 정외경 의원으로부터 의안 발의되어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6건의 주민의견이 제출되어 2건이 반영됨.
- 정외경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경우 당초 조례안에 비해 제8조,

임원 결격사유를 구체적 명시하고 제13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의 추천 자격 및 참여의 폭을 대폭 변경하였으며 제33조, 공무원 파견의 경우 공단 정원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100분의 5범위로 변경하였음.

- 부칙 제4조, 임원추천위원회의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부칙 제9조,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규정을 명시하였음.
- 이상과 같이 여러 조항의 내용이 변경, 삭제, 신설되는 등 당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와는 상이하다고 판단됨.
- 끝으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안 의결의 건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4. 5.(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4. 24.(제1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행정 서비스 향상을 통한 주민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 중이며, 지방공단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해야 하므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자대상 :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 출 자 금 : 1억 5천만원

○ 출자방식 : 현금출자

○ 설립예정일 : 2019. 9. 1.

○ 출자금 산출근거

- 울산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수행기관 : 지방

공기업평가원) 시 적정 자본금(출자금) 산정 제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1항 및 제76조제2항,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공단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지원근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 청문회 실시를 위한 협약 체결 촉구에 대한 건의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4. 10.(임수필 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9. 4. 24.(제1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자가 갖춰야 할 업무 수행 능력은 물론 소양과 자질, 도덕성과 책임성, 준법의식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고위공직자가 적합한 직무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잘 갖추었는지를 파악하여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직원 채용 및 인사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자리이지만 최근 강원랜드 부정채용사건을 시작으로 각 공기업의 채용비리 사건이 불거졌으며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은 전직 군수를 비롯한 고위공무원들이 개입된 채용비리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음. 최근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참여 감시의 눈이 높아져 관리자의 경영 전문성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 보다도 도덕성을 필요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모를 통해 새로 임명하게 될 공단 이사장 임명에 있어

후자의 자질과 도덕성, 경영능력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와 북구청 간 북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실시를 위한 협약 체결을 촉구 건의하고자 함.

3) 심의결과 : 부결

제9절 제182회 제1차 정례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지방자치법」 제44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나. 개회일시 : 2019. 6. 10.(월) 10:00

다. 회　　기 : 2019. 6. 10. ~ 6. 24.(15일간)

라. 부의안건

○ 제1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상복 의원 외 2인 발의)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의장 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1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구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운영 지원 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외경 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꽃도시 조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2. 개회사

존경하는 2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녹음이 무성해진 성하의 계절을 맞아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제182회 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7월 이 자리에서 제7대 북구의회가 힘차게 출발해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년간 북구의회는 많은 의안을 처리하면서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했고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구민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투철한 사명감으로 당면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성실하게 추진 중인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힘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북구의회 의원 모두는 지난 1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민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도록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펴나가려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북구는 이동권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각종 시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부산~울산광역전철 (가칭)송정역 연장 운행은 그 숙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부전역에서 태화강역까지 예정된 광역전철이 송정역까지 연장 운행된다면 송정역 주변 10km 내에 사는 주민 50만 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북구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광역전철 연장으로 부산까지 이동이 쉬워지면 강동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우리 구 국회의원과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운행 추진위원회가 연장 운행을 청원하는 7만2,574명의 서명부를 정부에 전달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전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명 전달에 더해 광역전철의 송정역 연장 운행에 대한 주민 수요와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철도 정책에 적극 반영시키도록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광역전철 연장 운행 외에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의 6월 준공과 송정택지개발지구의 다양한 인프라 구축,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의 조속한 건설 및 농수산물 도매시설 입지 등 기반시설 확충도 주요 과제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폭염이 일찍 찾아온 만큼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도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각 사업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시고 각종 민원 현장도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5일간 이어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등을 심의합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한 해 집행한 예산이 올바르고 투명하게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안건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의 승인대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했는지를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출한 문제점과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대책을 제시하여 내년도 예산편성과 주요 시책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내실 있는 결산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과거 지적받은 사례의 재발이 없도록 유념하시고 예산 집행 투명성 확보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구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뜻깊은 회기가 되도록 의회나 집행부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이 주 언

3. 의사일정

제1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19. 6. 10. ~ 6. 24.(1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6. 10.(월)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제1차 본회의	1. 제1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96호) - 제 안 설 명(행정지원국장) - 4.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임채오 의원)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제1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 구정질문의 건 ○ “『윤종오 전)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면제 청원의 건』수용불가 사유와 월성핵 폐기물임시저장소 관련하여” (임수필 의원)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6. 11.(화) 10:00	제1차 예결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기획홍보실 ○ 문화예술회관 ○ 의회사무과	
6. 12.(수) 10:00	제2차 예결위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주민소통실 ○ 보건소 ○ 행정지원국(총무과, 관광해양개발과, 민원지적과)	
6. 13.(목) 10:00	제3차 예결위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행정지원국(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징수과, 부과과)	
6. 14.(금) 10:00	제4차 예결위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복지경제국(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6. 15.(토)		휴 회	
6. 16.(일)		휴 회	
6. 17.(월) 10:00	제5차 예결위	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97호) (기획홍보실, 농수산과)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복지경제국 (농수산과,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6. 18.(화) 10:00	제6차 예결위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건설도시국(안전정보과, 건설과, 도시과)	
6. 19.(수) 10:00	제7차 예결위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건설도시국(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6. 20.(목) 10:00	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8호, 기획홍보실) 2.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109호, 기획홍보실) 3.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0호, 주민소통실) 4.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8호, 행정지원국)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5.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9호, 행정지원국) 6.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0호, 행정지원국) 7.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1호, 행정지원국) 8.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6호, 문화예술회관) 9.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4호, 정외경 의원 외 2, 의회사무과)	
6. 21.(금) 10:00	제3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07호, 복지경제국) 2.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2호, 복지경제국) 3.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의안번호 제111호, 복지경제국) 4. 울산광역시 북구 꽃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03호, 복지경제국) 5.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4호, 복지경제국) 6.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2호, 안전건설국) 7.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5호, 안전건설국)	
	제3차 본회의 후	〈현장방문 활동〉 1. 육아종합지원센터 2. 신천공원	
6. 22.(토)		휴 회	
6. 23.(일)		휴 회	
6. 24.(월) 10:00	제4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박상복 의원, 임채오 의원) 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종합 심의의결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종합 심의의결	

4.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6. 7.(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6. 20.(제1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19년 기준인력 범위 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미세먼지 저감 대책, 개인소득세 업무 등 국가시책 추진 인력 배치를 위한 정원 일부를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정원의 총수 : 607명 ⇒ 615명(증 8) (안 제2조 관련)

- 집행기관의 정원 : 593명 ⇒ 601명(증 8)

나. 직급별 정원 조정(별표 3 관련)

- 6급 이하 : 563명 ⇒ 571명(증 8)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기준인력 범위 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미세먼지 저감 대책, 개인소득세 업무 등 국가시책 추진 인력 배치를 위한 정원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607명에서 615명으로 8명 증원하고,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을 563명에서 571명으로 8명 증원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음.

○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부합하며, 집행기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6. 7.(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6. 20.(제1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반시설사업을 지역 내에 유치하거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제반활동 등에 대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조례제정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2조)

나. 위원회(설치, 기능, 구성,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10조)

다.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반시설사업을 지역 내에 유치하거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제반활동 등에 대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위한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관계기관 등의 협조와 수당 등을 명시하여 지역발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음.

○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현안사업으로 산업시설, 생활시설, 연구시설, 공공기관 등 기반시설 사업의 유치활동 및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제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6. 7.(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6. 20.(제1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확대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 구성 및 운영등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용어 정의 신설 및 변경(안 제2조, 제16조)

나. 주민자치회 기능 강화(안 제4조)

다. 주민자치회 구성 규모 및 위원의 자격, 선정 및 위촉, 임기 정비(안 제5조~제9조)

라. 위원의 해촉 조항 정비(안 제11조)

마. 분과위원회 조항 정비(안 제17조)

바. 주민총회·자치계획 조항 신설(안 제20조~제22조)

사.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 내용 정비(안 제23조)

아. 보칙 보험 조항 신설(안 제26조)

자. 부칙 정비(안 부칙 제1조~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의 확장과 실질적인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회의 용어 정의, 기능,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주민자치회의 운영 원칙, 분과위원회, 회의, 주민총회, 지원 등 주민자치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명시하였음.

○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9조,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9조, 제60조에 근거하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확대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기능 강화 및 행·재정적 지원 확대를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자치위원의 대표성 확보 및 책임성 제고, 주민총회를 통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소중한 주민의견은 적극 반영되었으며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가. 주요내용

○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16조의2 신설)

○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안 제19조)

○ 연가 당겨쓰기 사유 제한 폐지 및 사용가능 일수 세분화 (안 제20조제6항)

○ 상위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 현행 조례 제21조제1항·제2항

○ 학습휴가 명칭 변경 및 일수 확대(안 제24조제2항제4호)

• 명칭 : 학습휴가 → 장기재직휴가

• 일수 : (현행)30일 → (개정)50일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안 별표3) : (현행)5일 → (개정)10일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라 용어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9조,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9조, 제60조에 근거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확대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기능 강화 및 행·재정적 지원 확대를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자치위원의 대표성 확보 및 책임성 제고, 주민총회를 통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소중한 주민의견은 적극 반영되었으며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위원의 자격) ① (생략) ② 제1항 각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중인 사람 2.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 및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이거나 선정된 사람	제6조(위원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 및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이거나 선정된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제16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간사로 선임하여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사무국장) ① ---------- 사무국장으로 ----------. ② ---------- 사무국장을 ----------. ③ ------- 사무국장과 ----------.
제20조(주민총회)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100분의 1 이상 참여로 연 1회 이상 주민총회를 개최하며,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 ⑥ (생략)	제20조(주민총회) ① -------- 연 1회 이상 주민총회를 개최하며,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5. 31.(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6. 20.(제1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종합적 특성에 따른 장애정도로 구분하도록 일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2019. 7. 1.)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현행 조례 제4조제1항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용어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장애등급제를 폐지함에따라 변경되는 제도 시행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임.

○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개정 시행(2019. 7. 1.)됨에 따라 장애인공무원 편의시설 지원범위의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5. 31.(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6. 20.(제1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종합적 특성에 따른 장애정도로 구분하도록 일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2019.7.1.)됨에 따라 사용하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 변경

- 현행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 변경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개정되어 장애등급을 명시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업무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음.

○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개정 시행(2019. 7. 1.)됨에 따라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의 면제 및 감면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5. 31.(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6. 20.(제1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 사항 반영

1)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한 경우와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이 공유재산 대부 신청 시 대부료의 50/100까지 감경할 수 있는 조항 신설함.(안 제31조)

나.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 보완

1) 공유재산심의회 위촉위원 연임 제한 규정 삭제(안 제3조제4항)

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추가(안 제39조)

-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정비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거나 최근 개정법령의 미적용된 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일자리 정책에 따른 미취업 청년들의 창업,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 사항 조문도 신설하는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위촉위원 연임제한 규정 삭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 사항을 정비하였음.

○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공포(2018. 12. 4. 제29324호)됨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

업자의 창업을 지원하는 경우와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사회적기업 등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고, 대부료를 50%까지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 규정을 삭제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준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5. 31.(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6. 20.(제1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등 조항을 명시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약칭사항 수정(안 제1조)

- “구민”을 “울산광역시 북구민”으로 함

나.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 설치(안 제5조)

다. 공연장 규모 수정(안 제12조 별표2)

- 공연장 “482석”을 공연장 “453석” 으로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문화예술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구민”을 “울산광역시 북구민”으로 약칭 수정하고, 공연장 규모를 “453석”으로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고 울산광역시 북

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음.

○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북구 문화예술회관의 대관업무 심의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공연장 규모 등 현실에 맞게 개 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5. 30.(정외경·이정민·임수필 의원)

○ 심의일자 : 2019. 6. 20.(제1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요구 확대에 따라 지방의원의 겸직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유도하고 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겸직신고 관련 서식 변경(안 제5조)
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및 관련 서식 명시(안 제7조)
다. 관리인 등 겸직 금지 범위 구체화(안 제8조)
라. 징계 관련 규정 구체화 및 징계기준 신설(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원의 겸직 관련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겸직신고 관련 서식을 변경하고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및 관련 서식을 명시하였음.

- 또한 관리인 등 겸직 금지 범위를 구체화하고 징계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음.

○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 규정 제도 개선' 권고(제도개선총괄과-1519. 2019. 03. 19)에 따라 기존 조례에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가족 등 이해관계자와 자치 단체의 수의계약 제한사항 신고, 관리인 등의 겸직 금지 범위, 징계 관련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6. 3.(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6. 21.(제18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지원 및 가정양육사업 등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20. 1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임

○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설 개요

• 명　　칭 : 울산광역시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위　　치 : 연암동 1129-4번지 일원
• 규　　모 : 부지 1,500㎡, 연면적 2,931.82㎡(지하1층, 지상4층)
• 주요시설 : 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실, 그림책도서관, 사무실, 시간제보육실, 대강당 등
• 준　　공 : 2020년 1월 예정(개관 2020년 3월)

○ 위탁 개요

• 기　　간 : 2019. 10월 ~ 2022. 9월(3년)

- 범　　위 :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
- 수탁자격 :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별도의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구성
- 위탁 운영비 : 28,000천원 정도
  ※ 2020년 665,300천원 정도

○ 추진일정

- 2019. 6월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019. 7월 : 모집공고 및 접수
- 2019. 8월 : 위탁운영자 선정 및 위탁운영 협약 체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5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임.

-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및 운영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운영비는 2,800만원이며, 올해는 3개월간 개관 준비를 위한 인건비 위주의 편성임.

○ 검토결과, 본 조례는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것으로 보육컨설팅, 교직원 상담 및 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 기능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일시보육 서비스 등 가정양육 지원 기능의 지역내 One-stop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 으로서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5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5. 31.(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6. 21.(제18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거주 1개월 미만 출산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을 통합하고자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 변경(안 제3조 및 제5조)

-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거주 →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거주

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추가(안 제2조, 제4조 및 제6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폐지(부칙)

다. 다자녀가정 용어 정의(안 제2조 및 제4조)

-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거주 1개월 미만 출산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을 통합하고자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가.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 변경(안 제3조 및 제5조)

-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거주 →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거주

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추가(안 제2조, 제4조 및 제6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폐지(부칙)

다. 다자녀가정 용어 정의(안 제2조 및 제4조)

-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

○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과 지원신청을 변경하고, 장애인 가정에 대하여 출산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입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에 부합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6. 7.(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6. 21.(제18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기업의 효율적 투자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고도화 등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관련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투자유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안 제3조 ~ 제7조)

다. 투자유치지원단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안 제8조)

라. 투자유치자문관 위촉 및 운영 관련 규정(안 제9조)

마. 투자유치 사무의 위탁 근거 관련 규정(안 제10조)

바. 투자유치기업 지정대상 선정 및 재정지원 시책 규정 (안 제11조~제12조)

사. 대규모 투자유치기업 등 특별지원 관련 규정(안 제13조)

아.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관련 규정(안 제14조)

자. 중복지원의 금지, 포상금 지급, 타 법률·조례의 준용, 시행규칙 근거(안 제15조~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의 효율적 투자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고도화 등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조례 제정 목적 및 관련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 투자유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안 제3조 ~ 제7조)
- 투자유치지원단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안 제8조)
- 투자유치자문관 위촉 및 운영 관련 규정(안 제9조)
- 투자유치 사무의 위탁 근거 관련 규정(안 제10조)
- 투자유치기업 지정대상 선정 및 재정지원 시책 규정(안 제11조~제12조)
- 대규모 투자유치기업 등 특별지원 관련 규정(안 제13조)
-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관련 규정(안 제14조)
- 중복지원의 금지, 포상금 지급, 타 법률·조례의 준용, 시행규칙 근거(안 제15조~제18조)

○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 안은 자동차, 조선 등 고용효과가 큰 업종들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제조업 전체 고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먹거리 발굴 등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판단됨.

- 상정된 조례안은, 산업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업이나 연구소, 공장 등을 구 관할구역 내로 이전, 신설, 증설하는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투자유치추진위원회 설치와 투자유치지원단 구성 운영,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특별지원,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으며, 입법에 대한 제반 절차사항 이행과 조례 제정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꽃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5. 31.(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6. 21.(제18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꽃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꽃도시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 정의 등(안 제1조, 제2조)

나. 꽃도시 조성사업의 범위 및 확산 지원(안 제4조, 제5조)

1) 조성사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4조)

2) 확산 지원(안 제5조)

다.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안 제6조 ~ 제8조)

1)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6조)

2)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안 제7조,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꽃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꽃도시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가. 목적 및 용어 정의 등(안 제1조, 제2조)

나. 꽃도시 조성사업의 범위 및 확산 지원(안 제4조, 제5조)

1) 조성사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4조)

2) 확산 지원(안 제5조)

다.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안 제6조 ~ 제8조)

1)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6조)

2)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안 제7조, 제8조)

○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내륙과 해양의 자연친화적이고, 산업도시의 이미지를 조화롭게 하여 구민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구민들이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꽃도시 조성을 건설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으로 조례입법에 대한 제반절차 이행과 조례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5. 31.(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6. 21.(제18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생활폐기물 중 5톤 미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체계 개선을 위한 특수규격 종량제 시행(2019. 7. 1.)에 따라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제10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2항 조문 수정
나. 제13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 제1항 조문 수정
다. 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제1항제1호 별표3 특수규격 쓰레기봉투 공급가격,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추가 및 제5호 삭제, 제2항 조문 수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중 5톤 미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체계 개선을 위한 특수규격 종량제 시행(2019. 7. 1.)에 따라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가. 제10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2항 조문 수정

나. 제13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 제1항 조문 수정

다. 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제1항제 1호 별표3 특수규격 쓰레기봉투 공급가격,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추가 및 제5호 삭제, 제2항 조문 수정

○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2019년 7월 1일자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중 5톤 미만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개선을 위하여 알기 쉽도록 조문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 절차를 이행하였고, 개정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6. 7.(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6. 21.(제18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경관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정비 및 경관사업 추진과 실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경관계획수립제안 첨부서류 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4조)

나.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중점경관관리구역) 추가(안 제18조)

다. 경관위원회 기능 및 구성 보완(안 제19조, 제20조)

라. 경관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규정 신설(안 제22조의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경관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정비 및 경관사업 추진과 실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가. 경관계획수립제안 첨부서류 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4조)
나.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중점경관관리구역) 추가(안 제18조)
다. 경관위원회 기능 및 구성 보완(안 제19조, 제20조)
라. 경관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규정 신설(안 제22조의1)

○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중점경관관리 구역 건축물에 대하여 내용을 추가하고, 알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경관협의 대상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과 관련된 사항 중 부서 협의사항을 임의적 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경관사업 추진과 실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으로서 조례입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5. 31.(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6. 21.(제18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종합적 특성에 따른 장애정도로 구분하도록 일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2019. 7.1.)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공영 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최초 주차시간이 20분 이내일 때에는 무료로 하는 단서 조항이 시행(2019. 1. 1.)됨에 따라 해당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6조제4항제1호라목)

• 현행 : 「장애인복지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

• 변경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단서조항 신설(별표 1 비고 제4호)

• 현행 : 기본요금을 적용하는 최초 30분 이내 시간은 30분으로 하고, 초과 10분 단위 이내의 시간은 10분 단위로 계산한다.

• 변경 : 기본요금을 적용하는 최초 30분 이내 시간은 30분으로 하고, 초과 10분 단위 이내의 시간은 10분 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노외주차장의 최초 20분 이내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종합적 특성에 따른 장애정도로 구분하도록 일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2019. 7. 1.) 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공영 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최초 주차시간이 20분 이내일 때에는 무료로 하는 단서조항이 시행(2019. 1. 1.)됨에 따라 해당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6조)

- 노외주차장의 경우 기본요금 적용내용 신설(안 별표 1)

○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강화하고자 '장애등급'을 삭제하고 '장애정도'라는 표현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조례입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개정취지에 부합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0절 제183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지방자치법」 제45조

나. 개회일시 : 2019. 8. 26.(월) 10:00

다. 회　　기 : 2019. 8. 26. ~ 9. 9.(15일간)

라. 부의안건

○ 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외경 의원 외 2인 발의)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 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임채오 의원 발의)

○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오 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감성갱도 2020)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수필 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성장관리방안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화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박상복 의원 발의)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구청장)
○ 북구 초·중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신설학교 승인조건 변경 촉구 건의안(이주언 의원 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2. 개회사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위에 맞서 구민의 안녕을 위해 힘써 오신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맹위를 떨친 폭염에도 불구하고 제183회 임시회를 통해 여러분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예년과 같이 무더위와 이로 인한 열대야 등이 참기 어려운 고통을 주었습니다.

더욱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명분 없는 치졸한 보복성 수출 규제에 나선 현 상황은 우리에게 더욱 참기 힘든 분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이번 무역 보복 조치에 맞서 우리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일본의 이번 조치가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니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대한광복회 총사령 고헌 박상진 의사를 배출한 고장의 주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슴 깊이 새기고 같이 뭉쳐서 난관을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제183회 임시회는 집행기관의 상반기 구정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구정 운영방향을 살필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및 조례안 등의 안건 처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는 사업의 우선순위,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을 보다 풍요롭게 가꿀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 심의에 필요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고, 올 한 해 계획한 업무가 정상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확인하셔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아쪼록 이번 임시회가 의회와 집행기관 간 조화 속에 지역 발전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는 기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번 회기가 종료되면 곧바로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가위를 앞두고 소외되는 계층은 없는지 집행기관에서는 살뜰히 살펴봐 주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적절히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 모두가 함께 뜻깊고 따스한 명절을 맞이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북구의회는 이번 회기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 모두의 바람과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온 힘을 쏟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이 주 언

3. 의사일정

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9. 8. 26. ~ 9. 9.(1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8. 26.(월) 10:00		개 회 식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이정민 의원, 박상복 의원, 이진복 의원) 1. 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17호) - 제 안 설 명(구 청 장) - 4. 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제128호, 임채오 의원 발의)	
8. 27.(화) 10:00	제2차 본회의	1.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119호, 행정지원국) 2.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0호, 행정지원국) 3. 울산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14호, 임채오 의원 발의, 행정지원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1호, 행정지원국) 5.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감성갱도 2020)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22호, 행정지원국) 6.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23호, 복지경제국) 7.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5호, 임수필 의원 발의, 복지경제국) 8.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124호, 안전건설국) 9.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25호, 안전건설국) 10. 울산광역시 북구 성장관리방안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126호, 안전건설국)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1.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화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127호, 안전건설국) 1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113호, 박상복 의원 발의, 의회사무과)	
8. 28.(수) 10:00	제1차 예결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기획홍보실 ○ 주민소통실 ○ 보 건 소 ○ 문화예술회관	
8. 29.(목) 10:00	제2차 예결위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행정지원국(총무과, 관광해양개발과, 민원지적과)	
8. 30.(금) 10:00	제3차 예결위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행정지원국(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징수과, 부과과)	
8. 31.(토)		휴 회	
9. 1.(일)		휴 회	
9. 2.(월) 11:00	제4차 예결위	1. 2019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안번호 제118호, 기획홍보실)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복지경제국(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가족정책과)	
9. 3.(화) 11:00	제5차 예결위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복지경제국(경제일자리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9. 4.(수) 10:00	제6차 예결위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안전건설국(안전정보과, 건설과, 도시과)	
9. 5.(목) 10:00	제7차 예결위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안전건설국(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 6.(금) 10:00	제8차 예결위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9. 7.(토)		휴 회	
9. 8.(일)		휴 회	
9. 9.(월) 10:00	제3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박상복 의원)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종합 심의의결 2. 2019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종합 심의의결 3. 북구 초·중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신설학교 승인조건 변경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제129호, 이주언 의원 발의)	

4.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8. 19.(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8. 27.(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북구지역자활센터 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정원 증원 : 15명(577명 → 592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별표 3】

○ 총 계 : 577명 → 592명(증 15명)

• 집행기관의 정원 : 564명 → 578명(증 14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3명 → 14명(증 1명)

○ 일반직 계 : 575명 → 590명(증 15명)

• 5급 : 34명 → 35명(증 1명), 6급 이하 : 536명 → 550명(증 14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취득대상 공유재산은 북구지역자활센터 건물 매입 건이며, 총 사업비는 21억원임.

○ 검토결과, 북구지역자활센터 취득(변경) 사유와 관리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8. 19.(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8. 27.(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3조와 용어가 상이하여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물품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과 물품관리공무원 직명 일치(안 제2조제2항, 제4항)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개정에 따라 소모품 취득단가 변경(안 별표 1)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법령과 관련된 사항 및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불일치한 조문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운영기준」개정에 따라 소모품 취득단가를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음.

○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 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중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8. 13.(임채오 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9. 8. 27.(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거리공연가들과 구민들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문화예술인의 거리예술 활동을 보장하며,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 및 상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구청장 및 거리공연가의 책무 규정 (제3조~제4조)

○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의 수립, 지원 규정(제5조, 제7조)

○ 거리공연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구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진흥을 통하여 지역문화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구청장 및 거리공연가의 책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지원 계획의 수립, 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조례 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생활속으로 스며드는 공연문화를 조성하여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임.

-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과 거리공연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8. 19.(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8. 27.(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북구 예술 창작소 추가 조성에 따라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예술 창작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북구 예술 창작소 추가 설치로 인한 명칭 등 조문 수정(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감성갱도 2020(신천동)의 추가 설치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예술 창작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북구 예술 창작소 추가 설치로 명칭 및 위치를 수정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북구 예술 창작소를 추가로 조성함에 따른 '설치와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임.

- 본 조례안은 주민선호도 조사결과를 반영한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8. 19.(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8. 27.(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 문화예술 콘텐츠를 발굴하고 주민 문화 활동 공간 제공 등을 위해 조성중인 북구 예술 창작소(감성갱도 2020)가 2020년 6월 개관 예정됨에 따라 창작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임.

○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설 개요

• 위　　치 : 북구 신천동 270번지 외 3필지

• 개관예정 : 2020년 6월

• 규　　모 : 부지면적 989㎡, 연면적 600㎡(증축 300㎡정도)

※ 기존건물 : 연면적 304㎡, 지상2층

• 주요시설 : 레지던시 공간, 주민창작실, 세미나실, 갤러리 등

○ 위탁 개요

• 기　　간 : 2020. 6월 ~ 2022. 12월(2년 7개월)

• 범　　위 : 북구 예술 창작소 감성갱도 2020 운영 전반

• 수탁자격 : 문화예술 분야 전문 민간단체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별도의 「수탁기관 심사위원회」구성
• 위탁 운영비 : 155,000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예술 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임.

- 지역주민 문화향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공모사업 및 프로젝트 추진, 레지던스 운영 및 전시·공연 기획 등에 대하여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운영비는 1억 5천 5백만원임.

○ 검토결과,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예술가와 시민들의 소통, 힐링의 공간인 북구 예술 창작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가에게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8. 19.(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8. 27.(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사회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및 지역 주민들의 능동적 참여와 복지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북구자원봉사센터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한 인프라 강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함.

○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설 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6

• 규　　모 : 연면적 110.7㎡(지상 1층)

• 주요시설 : 사무공간, 자원봉사자실(회의실), 문서고, 탕비실 등

○ 위탁 개요

• 시　　기 : 2020. 1. 1. ~

• 범　　위 : 자원봉사센터운영 전반

• 수탁대상 : (사)울산광역시 북구자원봉사센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8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임.

- 자원봉사센터 시설 및 운영업무 전반에 법인을 설립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3억 7,243만원이며, 2020년 1월 개소하고자 함.

○ 검토결과,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운영 조례」 제7조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북구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시, 자원봉사 관련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와 다양한 경로의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이용이하고, 자원봉사센터 관리 및 운영의 전문화·다양화·세분화되는 봉사활동 영역을 높일 수 있는 수탁법인을 설립 및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8. 13.(임수필·정외경·이정민·이진복 의원)

○ 심의일자 : 2019. 8. 27.(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여성의 생필품인 생리대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한 생리대 비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여성 및 청소년이 다수 이용하는 공공 시설 등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증진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19조2 신설

• 가임기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여성 및 청소년이 다수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 비상용 보건위생과 관련되는 물품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증진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19조2 신설하는 것으로, 가임기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함.

○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가임기 여 성의 성건강을 위한 보건위생과 관련되는 물품을 공공시설에 비치하여 긴급한 경우에 대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여성 및 청소년의 건강권을 증진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8. 19.(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8. 27.(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고 또는 재난 등으로부터 구민 피해 보상제도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구민 생활 및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관련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생활안전보험 피보험자 규정(안 제4조)

다.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률 납입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보험금액 산정(안 제8조)

마.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생활안전보험 운영을 통하여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고 또는 재난 등으로부터 구민 피해 보상 제도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구민 생활 및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안 임.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생활안전보험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피보험자 규정, 보상범위, 보험률, 보험금액 및 보험금 청구·지급에 관한 사항임.

○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구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구민의 생활안전과 복지 실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8. 19.(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8. 27.(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화재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발생을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안 제4조)

라. 지원 신청 등(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화재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안임.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설치지원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임.

○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구 관내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화재안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안전과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8. 13.(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8. 27.(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관내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관리를 위해 수립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달천동, 대안동 일원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 면적 : 2,769㎢(3개소)

○ 계획의 내용

-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의무)
-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에 관한 사항(의무)
-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 계획(선택)
-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선택)
- 기타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유도를 위한 필요사항

3)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이화·화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8. 13.(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8. 27.(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25년 울산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수립'에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북구 중산동 이화 및 화정 일원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이화화정 도시재생뉴딜 활성화계획(안)' 수립 및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신청 하였음.

○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천(川)길음 이화정마을

○ 대상지역 : 중산동 1166-1번지 일원(이화 및 화정마을 일대)

○ 사업면적 : 86,190㎡(주거지지원형)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4년간)

○ 총사업비 : 23,970백만원(국 11,400, 시 7,980, 구 3,420, 민간 20, 기금 1,150)

○ 주요사업 : 13개 단위사업, 18개 세부사업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사업비	
① 이화·화정 쿨하길 조성	- 우회전 해소길 조성	450	2,860
	- 이화천 쌍둥이길 정비	140	
	- 이화·화정 이음다리 신설	2,270	
② 이화·화정 안전하길 조성	- 마을안심 골목길 조성	730	1,820
	- 이화천 안전보행길 조성	920	
	- 이화·화정 아름다리 신설	170	
③ 이화마을 화재예방도로	- 소방도로 개설	1,030	1,030
④ 이화·화정 솟대마당 조성	- 역사알림 디자인 쉼터 조성	810	810
⑤ 이화·화정 차굿간 조성	- 이화마을 공용주차장 조성	1,840	2,870
	- 국도변 공용주차장 조성	1,030	
⑥ 어린이 아지트 정비	- 어린이놀이터 정비	120	120
⑦ 3불해소 집수리	- 집수리 지원사업	150	150
⑧ 평생살이HOUSE 임대주택 조성	- 다가구주택(공가) 리모델링	750	750
⑨ 건강누리기 디딤센터	- 건강생활지원센터	2,170	2,170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사업비	
⑩ 자주찾는 행복맞춤 복합센터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청소년문화의집 - 공유부엌, 마을빨래방/카페 등	10,360	10,360
⑪ 현장지원센터 운영	- 현장지원센터 운영	540	540
⑫ 주민역량강화	- 도시재생대학 등 S/W 운영	380	380
⑬ 주민공모사업	- 일반공모 및 기획공모	120	120
사업비 합계			23,970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8. 13.(박상복 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9. 8. 27.(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북구의회에 입법고문과 더불어 법률고문의 위촉 및 자문사항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법률고문을 위촉하여 각종 안건심의나 자치법규 제·개정 등 법령해석에 대한 자문을 통해 의정활동의 내실과 의회의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 직무의 규정(안 제2조)

○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 수당(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북구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입법 및 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자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입법·법률고문 직무의 규정, 위촉, 임기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고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실적부 비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22만 구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사람중심의 가치를 실현하고,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자치와 분권의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자 북구의회에 입법과 법률 고문을 두어 의정활동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1절 제184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임수필 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19. 10. 15.(화) 10:00

다. 회　　기 : 2019. 10. 15. ~ 10. 17.(3일간)

라. 부의안건

○ 제18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수필 의원 외 2명)

○ 제18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2. 의사일정

제18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9. 10. 15. ~ 10. 17.(3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0.5.(화) 10:00		개 회 식	
		1. 제18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18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139호)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의안번호 제140호) 6.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131호, 기획홍보실) 7.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132호, 주민소통실) 8.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3호, 주민소통실) 9.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4호, 안전건설국) 10.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5호, 안전건설국) 11.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6호, 안전건설국) 12.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7호, 안전건설국) 13.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8호, 복지경제국)	
10.16(수)		1. 개별 의정 활동	
10.17(목) 14:00		1. 현장 방문	

3.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0. 7.(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10. 5.(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관 주도의 행정에서 탈피, 민·관 합동으로 지역갈등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자문 및 협의 기능을 하는 지역혁신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협의회 기능 명시(안 제1조, 제2조)

○ 협의회 위원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안 제3조 ~ 제6조)

○ 협의회 회의 및 분과협의회 설치·운영(안 제7조, 제8조)

○ 간사, 의견 청취, 회의록, 수당 등(안 제9조 ~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군·구에 지역혁신협의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의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

○ 지역혁신협의회의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 및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 활용, 확산시키는 지역혁신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의 협의,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대학 및 연구기관과 기업 등 지역발전 추진에 역량 있는 분야의 전문가 등 다양한 주민참여 확대로 분과협의회를 면밀하게 구성함으로써

○ 지역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상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음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0. 7.(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10. 15.(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역량 강화 및 내실 있는 지방자치 분권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 정의 등(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추진계획 등

1)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2)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자치분권협의회

1)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5조 ~ 제8조)

2) 위원장의 직무, 협의회의 운영 등(안 제9조 ~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자치분권 및 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함으로써 지역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우리 구도 자치분권의 체계적인 추진과 각계각층의 적극적 참여 환경 조성, 자치분권 촉진 활동 권장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제정이라고

판단됨.

다만,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서는 기초자치

○ 단체간의 긴밀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및 지속적인 자치분권 정책 과제 발굴·시행, 지역 내 각계각층 구민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채널의 교육과 홍보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상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적법한 제정절차를 거쳤음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 제정에 따라,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공동체 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국기의 게양일에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7월 15일)'을 신설(안 제4조제3항)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 제정에 따라,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공동체 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담당부서 의견 청취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0. 7.(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10. 15.(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최근 3년 이상 미개최한 위원회로 목적, 기능상 필요하나 안건 발생 가능성이 낮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비상설화(안 제13조제1항, 제5항)

- 심의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

○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내용 보완(안 제14조제2항)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수정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 등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3년 이상 미개최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개정하여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3조제1항에서 당초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하도록 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심의회 구성 등)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심의회 구성 등) ⑤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기타 조문에서 한글 맞춤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였음.

○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회의 개최실적이 없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화로 전환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적법한 개정절차를 거쳤음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0. 7.(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10. 15.(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하나,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점용료의 부과·징수·반환 관련 조문 수정(안 제5조제2항)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지방세 징수 준용 규정 삭제(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반환의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규정에 따르되, 그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징수 예에 따름.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한 준용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야 하므로, 지방세 징수 예의 준용 규정을 삭제하는 것임.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점용료의 부과·징수·반환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지방세 징수 준용 규정을 삭제하였음.
-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 「도로법」 제66조(점용료 징수 등)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규정에 따르되, 그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르고자 하는 내용이며,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는 본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행정질서벌의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규정에 따라 부과해야 하므로

- 조례 제7조 지방세 징수 준용규정을 삭제·정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0. 7.(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10. 15.(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하나,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규정 삭제(안 제21조)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지방세 징수 준용 규정 삭제(안 제22조)

○ 별지 제6호 서식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야 하므로, 불필요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규정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지방세 준용 규정과 관련된 별지 서식을 삭제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 관내 지하수 개발·이용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규정에 따르고자 하는 내용으로,

- 본 조례 제21조 및 제22조,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조문을 삭제·정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0. 7.(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10. 15.(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청사 및 소속기관 부설주차장에 대한 요금징수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반하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청사 주차장 요금징수 근거조항 신설(안 제10조의2)

제10조의2(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인 이용) ① 울산광역시 북구 및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별표1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차량, 기타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의 관리자가 정한다.

○ 과태료 처분조항 삭제(안 제21조)

■ 현행 : 제21조(과태료 처분) 영 제18조제2항과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은 별표 6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변경 :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 울산광역시 북구 청사 및 소속기관 부설주차장에 대한 요금징수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반하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주차장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규정을 삭제·정비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 구 청사 및 소속기관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 본 조례21조 [별표6] 규정의 '과태료 처분기준'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6] 규정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부합하도록 삭제·정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0. 7.(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10. 15.(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고, 옥외광고물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신고 수수료 추가(별표3)
- 10㎡ 이하 : 5,000원
-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1,000원

○ 현수막 게시시설 수수료 조항 삭제(별표3)

○ 법령에 근거 없는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별표6)

- 옥외광고사업 영업소 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옥외광고물 신고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 옥외광고물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신고 수수료를 추가·신설하였으며, 현수막 게시시설 수수료 조항과 과태료 부과 기준은 관련법에 따라 삭제·정비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 관내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신고 수수료를 10㎡ 이하는 5,000원으로, 10㎡ 초과시 1㎡마다 1,000원의 수수료를 추가·신설하고,
- 법령에 근거 없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정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0. 7.(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10. 15.(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등 신설(안 제5조의2)

○ 시장의 인정취소 근거 및 취소 절차 신설(안 제10조, 제10조의2)

○ 상인회의 등록취소 근거 및 취소 절차 신설(안 제26조, 제26조의2)

○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기간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정산기간과 동일하게 2개월 이내로 변경(안 제27조)

○ 시장관리자 지정취소 절차 신설(안 제33조, 제33조의2)

○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의 갱신 횟수 및 조건 신설(안 제34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등의 절차, 시장의 인정취소, 상인회의 등록취소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기간을 정비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필수 사항인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와
- '시장의 인정취소 근거 및 취소 절차',
- '상인회의 등록 취소 및 시장관리자 지정취소 절차'의 근거를 명시한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2절 제185회 제2차 정례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지방자치법 제44조(정례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집회)

나. 개회일시 : 2019. 11. 20.(수) 10:00

다. 회　　기 : 2019. 11. 20. ~ 12. 20.(31일간)

라. 부의안건

○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진복 의원 외 2인 발의)

○ 2020년도 예산안(구청장)

○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2. 개회사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과 기대 속에 힘차게 새해를 맞은 날이 엊그제 같은데 2020년 경자년 새해를 준비하는 마지막 회기에 이르렀습니다.

한 해 동안 북구의회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사람 중심의 희망찬 도시 북구'에 걸맞은 기반 구축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큰 박수를 보냅니다.

구민 대의 기관으로서 생생한 민원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확인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31일간 진행할 이번 정례회는 올 한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의 등 매우 중요한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구정 전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각 사업들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살피셔서 미흡한 부분은 시정과 보완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배분토록 하고 불용 예산이 없도록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서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요 안건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 개선책을 마련하여 올 한해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올 초 모두의 기대 속에 출발한 기해년 한 해도 이제 불과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잘 챙겨주시고, 겨울철 화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다르게 날씨도 쌀쌀해지는 만큼 건강도 각별히 관리하실 것을 당부합니다.

특히 연말연시를 앞둔 만큼 소외되는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 주시고, 지역 주민 모두가 뜻깊고 따스한 겨울을 보내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이 주 언

3. 의사일정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19. 11. 20. ~ 12. 20.(31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1. 20.(화)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1	◆ 5분 자유발언(임수필 의원, 박상복 의원, 임채오 의원) 1.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0년도 예산안(의안번호 제142호) - 시 정 연 설(구청장)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 21.(목) ~ 11. 29.(금)		행 정 사 무 감 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함 - 붙임 일정 참조)	
11. 30.(토)		휴 회	
12. 1.(일)		휴 회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2.(월) 10:00	2	1.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143호, 기획홍보실) 2.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4호, 기획홍보실) 3.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5호, 기획홍보실) 4.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6호, 주민소통실) 5.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7호, 주민소통실) 6.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48호, 주민소통실) 7.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149호, 행정지원국)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 (의안번호 제150호, 행정지원국) 9.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1호, 복지경제국)	
12. 3.(화) ~ 12. 12.(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2020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 붙임 일정 참조)	
12. 13.(금) 10:00	3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0년도 예산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53호) - 제안설명(구청장) -	
12. 14.(토)		휴 회	
12. 15.(일)		휴 회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16.(월) 10:00	4	1.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및 급간식비 현실화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제162호, 이진복 의원 발의) 2.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54호, 복지경제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5호, 복지경제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6호, 안전건설국) 5.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7호, 안전건설국) 6.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8호, 보건소) 7.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용어 일괄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9호, 임수필 의원 발의, 기획홍보실) 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160호, 이정민 의원 발의, 의회사무과)	
12. 17.(화) ~ 12. 19.(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붙임 일정 참조)	
12. 20.(금) 10:00	5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2. 2019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폐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12. 3. ~ 12. 19. 17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3.(화) 10:00	1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152호) 4. 2020년도 예산안〈계속〉 ○ 기획홍보실 ○ 주민소통실 ○ 보 건 소 ○ 문화예술회관 ○ 의회사무과	
12. 4(수) 10:00	2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 행정지원국 (총무과, 문화체육과, 관광해양개발과)	
12. 5.(목) 10:00	3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 행정지원국 (도서관과, 징수과, 부과과, 민원지적과)	
12. 6.(금) 10:00	4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12. 7.(토)		휴 회	
12. 8.(일)		휴 회	
12. 9.(월) 10:00	5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 복지경제국 (가족정책과, 경제일자리과, 농수산과, 환경미화과)	
12. 10.(화) 10:00	6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 안전건설국 (안전정보과, 건설과, 도시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11.(수) 10:00	7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 안전건설국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12. 12.(목) 10:00	8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12.17.(화) 10:00	9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기획홍보실 ○ 주민소통실 ○ 보 건 소 ○ 문화예술회관 ○ 의회사무과 ○ 행정지원국	
12.18.(수) 10:00	10	1. 2019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제161호)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복지경제국 ○ 안전건설국	
12.19.(목) 10:00	11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4.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3.(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12. 2.(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8호, 2019. 8. 6. 공포·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 및 구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사무직원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2019. 8. 6.)에서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임.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그동안 공익을 위해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향후 책임질 것이 두려워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던 만큼, 본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설치되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 기능 등으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해 보임.
- 다만,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4조 제1항제1호[1]에 의하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특별 승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 승진이 이뤄질 경우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지만, 위화감만 조성되고 '보여주기식' 업무에만 집중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안 제3조 제1항[2]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시, 누구나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우수공무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공정한 업무추진 등이 필요해 보임.
- 또한, 안 제3조 제2호의(영 제12조) 단서조항 내용처럼 책임회피

등을 목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검증이 필요해 보임.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3.(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12. 2.(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8호, 2019. 8. 6. 공포·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 및 구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사무직원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2019. 8. 6.)에서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임.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그동안 공익을 위해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향후 책임질 것이 두려워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던 만큼, 본 조례안이 제정됨으

로써 설치되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 기능 등으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해 보임.

- 다만,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 제1항제1호에 의하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특별 승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 승진이 이뤄질 경우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지만, 위화감만 조성되고 '보여주기식' 업무에만 집중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안 제3조 제1항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시, 누구나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우수공무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공정한 업무추진 등이 필요해 보임.
- 또한, 안 제3조 제2호의(영 제12조) 단서조항 내용처럼 책임회피 등을 목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검증이 필요해 보임.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3.(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12. 2.(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기획·예산, 고충 민원 처리, 전략사업 추진, 지역경제·일자리 활성화 업무 추진을 위한 담당관제 도입

○ 부서 신설·폐지 등 주민 행정 수요에 맞춘 행정기구 조정

나) 주요내용

○ 담당관제 도입에 따른 자구 수정

1) 실·과장 → 담당관·과장(안 제2조)

2) 담당관 명칭, 분장사무 규정(안 제4조, 제4조의2 ~ 제4조의5)

○ 행정지원국

1) 부서 폐지 및 신설, 부서명 변경(안 제5조제1항)

가) 부서 폐지 : 관광해양개발과

나) 부서 신설 : 회계과

다) 부서명 변경 : 문화체육과 → 문화관광체육과

2) 해양개발 업무 삭제(안 제5조제2항)

○ 복지환경국

1) 국 명칭 변경(안 제3조 및 제6조)

가) 복지경제국 → 복지환경국

2) 부서 이관 및 폐지(안 제6조제1항)

가) 부서 이관 : 경제일자리과 → 부구청장 직속(담당관)

나) 부서 폐지 : 환경위생과

다) 부서명 변경 : 환경미화과 → 환경과

3) 인구정책 업무 삭제(안 제6조제2항제3호)

4) 경제일자리 업무 삭제(안 제6조제2항제4호)

5) 보건·위생 업무 삭제(안 제6조제2항제8호)

6) 해양개발 업무 신설(안 제6조제2항제11호)

○ 안전건설국 : 국 명칭 오기 수정(안 제7조제2항)

○ 보건소 사무 근거 법률 조항 수정(안 제10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민선7기 공약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조직기반을 마련하고자 행정기구를 정비·추진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부서의 신설·통합·폐지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구민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여 구정운영 비전에 맞는 생산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주요정책의 자문과 북구 미래발전 전략을 연구· 수립하는 전략사업담당관 신설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회계과와 보건소 건강지원과를 신설하고,

관광해양개발과를 폐지하여 관광분야의 업무를 문화관광체육과로, 해양개발 업무는 농수산과로 이관시켰으며, 환경분야(환경위생과+환경미화과)의 업무를 통폐합하여 환경과로, 위생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는 등 행정조직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 민선7기 제6대 비전인 울산 북구 주요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자문·추진하고 구민 협치와 구민참여행정 구현 등 가중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처하며 활기찬 행복한 사람중심의 희망도시로서의 기반 구축을 위한 기구를 정비하고 조정하는 내용임.
- 현행 "3국 2실 20과 8동 2소 1과 1의회 114담당"에서 "3국 4담당관 18과 8동 2소 2과 1의회 116담당" 으로 개편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규정을 검토 한 바,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3.(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12. 2.(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주민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탄력적 정원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 630명(615명 → 630명, 증 15명)

○ 직급별 정원 조정

1) 5급 : 증 2명(37명 → 39명)

2) 6급 이하 : 증 13명(571명 → 584명)

○ 기관별 정원 조정(5급 이상)

1) 직속기관 : 5급 증 2명(3명 → 5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 주민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탄력적 정원 운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청 담당관제 도입 및 부서 신설 등에 따른 5급(증 2명), 6급 이하(증 13명) 등을 정원 조정하는 사항임.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며,
- 집행기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3.(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12. 2.(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오토밸리로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부지 경계를 조정하여 입주민의 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별표 1, 2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 오토밸리로 효성해링턴 아파트 부지 등 법정동 경계 일부 구간이 토지의 구획형태와 생활권, 교통, 학군, 경제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임.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동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의 토지 이용상황과 생활권, 경제권 등의 사유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산동 10필지 75,515.4㎡를 매곡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법정동 경계 일부 구간을 생활권과 경제권 등 현재의 토지구획 형태를 기준으로 변경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논의를 통해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3.(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12. 2.(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생활불편 가사도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재료비 무료지원 대상을 거주여건이 열악한 사회취약계층(독거노인 등)까지 확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생활민원'에 대한 정의 수정(안 제2조)

○ 재료비 무료지원 대상 확대(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 생활불편 가사도움 서비스 제공을 사회취약계층까지 재료비를 무료로 지원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 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취약계층 가정의 소규모 생활불편사항 처리와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3.(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12. 2.(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권익을 보호하고 구민의 다양한 요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옴부즈만의 구성, 임기 등(안 제3조 ~ 제4조)

○ 옴부즈만의 결격사유, 직무, 대상기관 등(안 제5조 ~ 제10조)

○ 고충민원의 신청, 조사 등(안 제11조 ~ 제14조)

○ 옴부즈만의 시정권고 등(안 제15조 ~ 제20조)

○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안 제21조)

○ 운영지원(안 제2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에 따라 옴부즈만을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구민의 다양한 요구가 구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법 제3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8조에서는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옴부즈만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주민의 고충처리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운영 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여 권고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고충민원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였으나, 본 조례 제정으로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침해나 불편을 주는 민원에 대하여 적극 해결될 것으로 보임.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3.(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12. 2.(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 당사해상캠핑장 조성사업 등 3건에 대하여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그 취득대상 공유재산은 당사 해상캠핑장 조성, (가칭)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건립, 송정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3건으로, 토지매입 5,669㎡, 건물신축 1,652㎡, 공작물 1개동 3,800㎡로, 총 사업비는 12,800백만원임.

- 당사 해상캠핑장 조성 사업은

• 북구 당사동 507번지 일원 공유수면 6,200㎡ 규모로 건립되며, 전국 최초로 바다 위에 조성되는 캠핑장으로서,
가족친화형 여가문화 확산을 위한 체류형 관광명소로 활성화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2019년 10월 23일 북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의결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또한 개장 이후 운영 실적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당사해양낚시

공원과 연계를 통해 해상 관광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캠핑장 조성에 행정적 업무수행과 운영관리 주체 선정 등 캠핑장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로 “매력 넘치는 관광휴양도시”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가칭) 울산 북구 실버케어센터 건립 사업은
  -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중산동 253번지 외 2필지 3,803㎡(건물 연면적 1,652㎡) 규모로 건립되며,
  - 기초자치단체에 공립 치매 안심형 요양시설(주·야간) 확충이 의무화 되고 고령화 사회에 늘어나는 치매환자의 전문적인 의료지원과 치매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시설로서,
  - 실버케어센터는 치매환자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공립요양시설이며, 가족의 치매환자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치매 관리를 위해 울산의 5개 구·군중에 북구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취득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송정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 송정지구내 대단위아파트(7,821세대, 20,000여명) 입주와 주택, 상가 등의 건립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역사공원 이용객의 증가도 예상됨에 따라 역사공원과 인접한 H1블럭(1,866㎡)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3.(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12. 2.(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20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함임.

나)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10,778천원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지방세수 확충 및 지속적인 지방세정의 발전을 위하여,
-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동 출연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우리구 출연금 분담분 지급

○ 출연금 산출기준

- 산출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5/10,000
- 2018년 보통세 세입징수액 71,856,264천원 × (1.5/10,0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 4월,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되어 전국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서울 서초구에 2본부 7실 6센터로, 지방세 연구사업과 대외 협력사업을 하고 있으며,

○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에 따라 2020년도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출연금은 지방세수 확충 및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우리 구 분담금을 2011년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연도별 출연 현황 등 설명을 듣고, 토론을 통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3.(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12. 2.(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수료가 환경부 권고 주민부담률 가이드라인(80%)에 비해 우리 구는 40.8%(2018년 기준)로 현저히 낮아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 매년 단계적 현실화를 추진하여, 구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정착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수료 단가 인상(안 별표1)

- 주택(ℓ당) : 50원→60원(2020년)→70원(2021년)→80원(2022년)
- 소규모사업장(ℓ당) : 100원→120원(2020년)→140원(2021년)→160원(2022년)

○ 울산광역시 4개구와 통일성 있게 배출수수료 단가 인상에 따른 공급 및 판매가격 조정(안 별표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수료가 환경부 권고 주민부담률 가이드라인(80%)에 비해 우리 구는 40.8%(2018년 기준)로 현저히 낮아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 3개년 동안 점진적으로 배출수수료 단가를 인상을 통한 단계적 현실화를 추진하여, 구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고자 함.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 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수료를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 물가상승 및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및 급간식비 현실화 촉구 건의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9.이진복 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9. 12. 16.(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현재 떨어지는 출산율, 높아지는 고령화로 인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필요함.

○ 무엇보다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단기 정책이 아닌 보육환경 개선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 표준보육비용의 산정에 대한 문제점 해결, 수년째 동결되어 있는 기준의 현실화는 보육환경 개선 및 강화를 위한 첫 발걸음이 될 것임.

○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영유아보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수 있는 근간이 되도록, 보육의 질 제고를 강력히 촉구함.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3.(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12. 16.(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6조)

○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7조)

○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홍보(안 제8조)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9조 ~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본 제정조례안은 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며,
-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 등의 실태조사, 장애인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인권보장위원회 설치 등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3.(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12. 16.(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아동복지 향상과 관련한 각각의 조례를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로 조례 제명 변경

○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

○ 소위원회 구성·운영 조항 신설(안 제12조)

○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항 신설(안 제18조 ~ 제24조)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항 신설(안 제25조 ~ 제32조)

○ 다른 조례의 폐지(부칙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 아동복지 향상과 관련한 각각의 조례를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조례로 통합·운영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 조례 제명을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항을 신설하는 등 「아동복지법」이 지향하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의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3.(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12. 16.(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고,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구성 및 운영 등 표준안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난현장의 조기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및 현장대응반장의 지정(안 제4조 ~ 제9조)

-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경우, 설치 위치, 실무반 편성 및 업무
- 긴급구조 활동시 업무연락관 파견
- 재난현장을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현장대응반장의 지정

○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안 제10조 ~ 제17조)

- 재난현장 상황전파, 재난현장 출동,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원, 재난 현장 수습·복구체계 전환 순으로 대응

○ 권한의 위임 신설(안 제23조)

-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자원동원 요청, 재난현장 출동지원 등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 위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구청장)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본부장: 부구청장)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 각종 재난의 발생 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실무반은 표준편제의 주요임무와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여 반별 임무를 수행하고, 재난지역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 상황전파 → 출동 → 긴급구조 지원 → 수습·복구까지 단계별로 통합대응하고자 하며,
-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재난현장 자원동원 요청 및 출동지원 등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행정안전부 조례 변경 표준안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3.(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12. 16.(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사회재난의 효율적인 피해수습을 위해 재난 복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구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행정안전부의 조례 변경 표준안 통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따라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명칭 변경(안 제4조 등)

○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및 지원기준 신설(안 제5조제3항)

○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의 구상

권 청구 및 이의에 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 제5조의3)

○ 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안 부칙 제2조)

○ 사회재난 피해신고서의 피해자 정보 중 주거형태 작성란 추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행정안전부의 조례 변경 표준안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 화재·붕괴·폭발 등의 사회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하며,
- 사회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 및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은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과 사회재난의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는 시설의 복구 및 피해주민 생계안정에 부담한 지원 금액의 전부를 청구하는 구상권을 신설하고,
- 지원된 자금이나 물품이 위반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환수토록 하는 근거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3.(구청장)

○ 심의일자 : 2019. 12. 16.(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보건소 수질검사·시험 관련 수수료 미반환 규정이 국민권익 침해 발생 가능성이 있어 미반환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보건소 수질검사 ·시험 출장여비 관련 시험의뢰자의 사전 납부규정 삭제(안 제8조제3항)

○ 수질검사·시험을 위해 기 납부한 수수료 및 여비의 미반환 규정 삭제(안 8조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으로 인한 위법 및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주민 권익보호를 위하여 관련 사항을 개정하여 반영하고자 함.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을 삭제하여 위법 및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주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용어 일괄개정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20.(임수필 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9. 12. 16.(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 일부를 일괄 개정하여 노동과 인권의 가치 제고 및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변경함(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외 6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포함한 7건의 조례 중 ‘근로’를 ‘노동’으로 용어를 각각 변경하여 노동의 가치,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임.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된 “근로”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가치 중립적인 개념인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노동의 주체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근로”는 “정신노동” 과 “육체노동”을 아우르는 용어로서 사전적 의미와 노동관계법령에서 모두 “노동”과 “근로”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됨.
- 지난해 고용노동부장관은 종속적 의미의 “근로자”대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밝힌 바 있고 국회에서도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11개의 제명과 조문 중 “근로”를 “노동”으로 각각 개정하는 법률안이 발의 된 바 있음.
- 또한 2018년 3월에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에서도 노동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일본 제국주의와 군사독재 시대에 사용되어 온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헌법적 의무로 보기 어려운 ‘근로의 의무’를 삭제한 바 있음.
- 본 조례안을 통해 ‘근로’와 ‘근로자’를 노동의 주체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용어인 '노동'과 '노동자'로 변경 사용하여 노동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여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현재 서울특별시 등 5개의 지자체에서 일괄 개정을 실시하였으며, 개정 사례는 더 많아 질것으로 사료됨.

- 특히, "노동"의 용어가 개별 법령이나 정부 부처 명칭으로 사용되어 지고 "노동"이 부지런함을 강조하는 "근로"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해당 용어의 변경당위성이 인정되나, 조례에서 관계법령의 용어와 달리 사용하는 경우, 다른 개념으로 오인하거나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법령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자치법규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따라서, 조례 개정을 통해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부합하는 등의 타당성이 있겠으나, 법체계의 안정성과 주민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용어 변경 사안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0. 20.(이정민 의원 발의)

○ 심의일자 : 2019. 12. 16.(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의안배부 방법 추가(안 제20조제1항,)

: 인쇄물 →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상의 일부표현을 정비하여 의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에 따라 맞지 않는 조문을 개정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규칙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타법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3절 제186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임수필 의원 외 1인 발의

나. 개회일시 : 2020. 2. 17.(월) 10:00

다. 회　　기 : 2020. 2. 17. ~ 2. 28.(12일간)

라. 부의안건

○ 제18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수필 의원 외 1인 발의)

○ 제18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개회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해에도 북구의 도약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22만 구민 여러분과 이동권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북구는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는 희망찬 소식으로 한 해를 시작했고, 계속되는 인구 감소세 속에서도 지역 5개 구·군 중 유일하게 구민이 늘어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구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이 13년 만에 준공되었으며, 지난 11일에는 강동골프장 조성 사업의 착공으로 강동권 개발사업이 본격 재개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주력기업인 현대자동차의 작년 매출액 성장률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으며, 영업이익도 7년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이러한 호재 속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살아나던 경제가 예기치 않게 타격을 받아 수출과 관광, 생산과 소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작년 일본 수출규제를 이겨냈던 우리 국민의 저력으로 이번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다행히 우리 구를 포함한 울산시에서는 아직까지 확진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우리 구에서도 대응 전담반 운영과 비상근무 등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를 포함한 북구의회 전 의원은 우리 구 주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집행부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일간 열리는 이번 제186회 임시회에서는 집행기관의 업무보고와 2019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등 주요 안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결산검사는 지난 한 해 동안 구청에서 집행한 예산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사하고 분석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선임되시는 책임 위원께서는 구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해빙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해빙기 안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우리 주변에 위험한 곳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주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이 주 언

3. 의사일정

제18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0. 2. 17. ~ 2. 28.(12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17.(월)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1	■ 5분 자유발언(임채오 의원) 1. 제18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안번호 제163호) 3. 제18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안번호 제167호)	
2.18.(화) 10:00	2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기획홍보실 ○ 주민소통실 ○ 보 건 소 ○ 문화예술회관 ○ 시설관리공단 ○ 의회사무과	
2.19.(수) 10:00	3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행정지원국(총무과, 문화체육과, 관광해양개발과)	
2.20.(목) 10:00	4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행정지원국(도서관과, 징수과, 부과과, 민원지적과)	
2.21.(금) 10:00	5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복지경제국(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2.22.(토)		휴 회	
2.23.(일)		휴 회	
2.24.(월) 10:00	6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복지경제국 (경제일자리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25.(화) 10:00	7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안전건설국(안전정보과, 건설과, 도시과)	
2.26.(수) 10:00	8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안전건설국(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2.27.(목) 10:00	9	1.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4호, 주민소통실) 2.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5호, 관광해양개발과) 3.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6호, 보건소) 4.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면제 청원(의안번호 제168호, 임수필 의원)	
2.28.(금) 10:00	제9차 본회의 후	〈현장방문 활동〉 1. 육아종합지원센터 2. 매곡천 친수환경 및 경관조명사업	

4.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2. 7.(구청장)

○ 심의일자 : 2020. 2. 27.(제186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신천동과 매곡동의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별표 1, 2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 토지의 구역형태, 생활권, 교통·학군·경제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신천동과 매곡동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농소1동 매곡동 46필지 20,069㎡를 신천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신천지구도시개발 사업시행자의 요구에 따라 경계 변경신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주민생활 편익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확보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2. 7.(구청장)

○ 심의일자 : 2020. 2. 27.(제186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 홍보물 및 관광해설사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역특산품, 관광 기념품 등 지원 대상 구체화(안 제5조제2항)

○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내용 신설(안 제7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 내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다양한 볼거리가 산재하는 우리 지역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하여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범위를 특정시키고 관광해설사의 임무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지역특산품, 관광기념품 등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 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 조문의 이견 없는 명확한 해석과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 조례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고, 타법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2. 7.(구청장)

○ 심의일자 : 2020. 2. 27.(제186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유사한 기능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관리·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제적·회피조항을 보완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폐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2조, 제3조)
○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안 제5조)
○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안 제6조,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 보급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위원회 기능을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건강실천협의회의 심의기능에 「지역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추가되어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의 임기 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유사기능의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내실을 도모)과 「지역보건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 조례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고,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4절 제187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백현조 의원 외 1인 발의

나. 개회일시 : 2020. 4. 20.(월) 10:00

다. 회　　기 : 2020. 4. 20. ~ 5. 4.(15일간)

라. 부의안건

○ 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백현조 의원 외 1인 발의)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개회사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과 확진자 관리 등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동권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구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2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래 현재 국내 확진자 만여 명, 사망자 200여 명으로 초기에는 급속하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지난 6일부터 신규 확진자가 50명 내외로 차츰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전체 확진자는 총 43명이며, 우리 구의 확진자는 6명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해외 유입을 제외하고는 지역사회 발생이 없는 상황이지만 아직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일선 현장에선 비대면 업무와 재택근무를 확산시켰고 학생들에게는 우리나라 역사상 첫 온라인개학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여파는 1997년 IMF 외환위기보다 더 클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탄탄하고 효율적인 제조업과 민주주의적 사회 작동에 바탕한 모범적 방역 체계로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구축하였습니다.

IMF 때 이미 증명된 바와 같이 우리 민족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드러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부족과 컨트롤타워의 중요성, 감염병 대응체계의 취약점,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경제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도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주체성을 가지고 정부 정책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지방정부 스스로 할 수 있는 대책들이라도 적극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구청 주도로 실시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와 당사자연산 직판장의 '드라이브 스루' 등이 바로 그 좋은 실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4.15 총선과 더불어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구의원 한분이 새로 선출되셨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 한분, 한분이 구민을 대표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초심을 가지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우리 북구의회는 내부적으로 협치를 더욱 강화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집행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방역비 및 긴급 생계비 지원, 소상공인 대출 지원 등 코로나19 사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예산을 포함한 총531억 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각종 사용료 수입 등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사업의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더 면밀히 검토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의에 필요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고, 올 한 해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깨닫게 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이 주 언

3. 의사일정

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0. 4. 20. ~ 5. 4.(1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4.20.(월)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임수필 의원) 1. 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안번호 제170호)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71호) - 제 안 설 명(구 청 장) - 4. 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21.(화) 10:00	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2호, 기획홍보실)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3호, 기획홍보실) 3.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4호, 주민소통실)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4.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5호, 행정지원국) 5.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6호, 행정지원국) 6.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177호, 행정지원국) 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의안번호 제178호, 복지경제국) 8.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9호, 복지경제국) 9.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0호, 복지경제국) 10.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1호, 복지경제국) 11.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69호, 이진복 의원 발의, 안전건설국) 12.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83호, 안전건설국) 13.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제182호, 안전건설국) 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 (의안번호 제184호, 안전건설국)	
4.22.(수) 10:00	제1차 예결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기획홍보실 ○ 주민소통실 ○ 보 건 소 ○ 문화예술회관 ○ 의회사무과	
4.23.(목) 10:00	제2차 예결위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행정지원국(총무과, 문화체육과, 관광해양개발과, 도서관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4.24.(금) 10:00	제3차 예결위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행정지원국(징수과, 부과과, 민원지적과) ○ 복지경제국(복지지원과)	
4.25.(토)		휴 회	
4.26.(일)		휴 회	
4.27.(월) 10:00	제4차 예결위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복지경제국(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경제일자리과, 농수산과)	
4.28.(화) 10:00	제5차 예결위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복지경제국(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 안전건설국(안전정보과, 건설과)	
4.29.(수) 10:00	제6차 예결위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안전건설국(도시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4.30.(목)		휴 회	
5.1.(금) 10:00	제7차 예결위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제3차 본회의	1.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면제 청원의 건(의안번호 제168호, 임수필 의원)	
5.2.(토)		휴 회	
5.3.(일)		휴 회	
5.4.(월) 10:00	제4차 본회의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종합 심의의결	

4.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13.(구청장)

○ 심의일자 : 2020. 4. 21.(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에 따른 국장급 기획조정실을 신설하고,

○ 회계 전담 기구 신설, 정부 부처 공모사업 대응, 아동학대 조사,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 강화 등 국가 정책과 지역 현안 수요 대응을 위한 행정기구 조정으로 조직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획조정실 신설 및 담당관제 도입

1)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자구 수정(안 제2조 및 제3조)

가) 국장 → 실·국장

나) 실·과장 → 담당관·과장

2) 기획조정실 신설, 하부 부서 및 분장사무 규정(안 제4조)

○ 행정지원국

1) 재무 및 재산관리 분장사무 삭제(안 제5조제2항제2호)

○ 복지환경국

1) 국명칭 변경 : 복지경제국 → 복지환경국(안 제6조)

2) 부서이관 : 경제일자리과 → 기획조정실(안 제6조제1항)

3) 경제일자리과 분장사무 삭제(안 제6조제2항제4호)

○ 안전건설국 : 국 명칭 오기 수정(안 제7조제2항)

○ 보건소 : 분장사무 근거 법률 조항 수정(안 제10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민선7기 지난 조직개편('18. 12. 06.) 이후 구민 행정수요 및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체감 실용행정에 맞는 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행정목적과 기능중심으로 재편한 조직으로서,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주민편의 행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부서의 신설 및 사무의 조정 등을 통해 구정운영 비전을 추진

하기 위한 탄력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1항 별표3에 의하면 광역시 자치구의 국 설치기준은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인 경우 2개 이상 4개 이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6조 제1항에는 국(局)에는 4과 이상의 하부조직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과·담당관 설치기준은 같은 규정 제6조 제4항 및 제5항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2명(6급이상 4명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협치와 참여행정 구현 등 가중되는 주민 행정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을 신설하고,
-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는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를 담당하는 기획예산담당관과 주민참여와 소통, 기업의 성장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소통담당담당관과 경제일자리담당관, 회계담당관을 하부조직으로 두어
- 행정 개선과제를 실현하고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수요 대응을 위한 행정기구 조정으로 조직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행정기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임.
- 현행 "3국 2실 20과 8동 103담당, 2소 1과 1의회 11담당"에서 "1실 3국 4담당관 19과 8동 109담당, 2소 2과 1의회 11담당"으로 개편하였으며,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문의 불부합 사항은 없으며,
-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구청장의 정책방향이나 의지 등 주민과의 소통과 현장위주의 구정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정부나 상급기관의 정책, 구정 운영방향 및 공약사항 등을 고려하였다고 보여지고,

- 집행기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13.(구청장)

○ 심의일자 : 2020. 4. 21.(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주민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탄력적 정원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임.

나)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 643명

○ 직급별 정원 조정

1) 4급 : 증 1명(4명 → 5명)

2) 5급 : 증 1명(37명 → 38명)

3) 6급 이하 : 증 26명(571명 → 597명)

○ 기관별 정원 조정

1) 본청

가) 4급 증 1명(3명 → 4명)

나) 5급 증 1명(22명 → 23명)

2)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 변동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른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적자원을 효율적·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 지방공무원 수를 615명에서 643명으로 28명을 증원하여 행정목

적에 부응하고 생산적인 행정조직을 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4급(증 1명), 5급(증 1명), 6급 이하(증 26명)

- 제출된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26명 증원에 소요되는 연간 인건비는 1,973,496천원임
  - ■ 2020년도 인건비 부담액 : 986,748천원(7월~12월 인건비 산출)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며,
- 집행기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따른 적정한 정원의 조정은 필요하다고 할 것임.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13.(구청장)

○ 심의일자 : 2020. 4. 21.(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브랜드슬로건, 캐릭터)이 새로이 개발됨에 따라, 구 상징 공식 도시브랜드 이미지로 사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징물 활용 및 관리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상징물 목적, 정의, 종류(안 제1조 ~ 제3조)

○ 상징물의 사용 및 관리, 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규정 (안 제4조 ~ 제5조)

○ 상징물의 사용신청, 사용료 규정(안 제6조 ~ 제8조)

○ [별지 서식]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 서식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표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개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개정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

○ 새로 개발된 브랜드슬로건과 캐릭터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현행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13.(구청장)

○ 심의일자 : 2020. 4. 21.(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수입증지의 상용화와 인증기의 확대 보급 및 수수료의 카드결제 도입 등으로, 종이수입증지의 사용이 불필요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삭제)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수입증지 용어의 정의를 명시(안 제2조)

○ 수입증지 현금 납부 이외에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 확대(안 제3조)

○ 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을 명시(안 제6조)

○ 수입증지 수입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종이수입증지의 발행 및 판매·보관 등 일체의 사항을 전부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 행정안전부의 '종이 수입증지 사용폐지 방안'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전자수입증지' 상용화를 위한 근거를 보완하며 수수료 납

부 체계개선 등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보면

- 수수료 납부(안 제3조), 관리책임자 지정(안 제5조), 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안 제6조), 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안 제7조)에 대해 규정하였고,
- 부칙 제2조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사용인가는 이 조례에 따라 받은 것으로 연속성을 명시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전자수입증지의 상용화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13.(구청장)

○ 심의일자 : 2020. 4. 21.(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 부담 없이 이의 신청등의 불복절차에서, 세무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소유재산의 평가 방법 신설(안 제5조의2)

○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신설(안 제5조의3)

○ 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신설(안 제5조의4)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2020. 3. 24.

시행)으로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 세무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13.(구청장)

○ 심의일자 : 2020. 4. 21.(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 장애인복지관 건립 및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하여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 취득대상 공유재산은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청소년수련관 건립 건이며, 총 사업비는 각각 89억 6,700만원과 164억원임.

○ 검토결과,

-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은
  창평동(건물 연면적 2,130㎡) 764-4번지 일원에 주간보호센터, 치료실, 재활운동실 등으로 구성되고,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되는 장애인 복지시설로서 공공시설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와 타구의 시설을 이용해 오던 우리구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히 장애인들에게 재활과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타당성이 인정됨.
- 청소년 수련관(청소년 Job&Art센터) 건립사업은
  매곡동 818번지 등 11필지(건물 연면적 3,250㎡)에 직업체험실, 창의활동실, 문화·예술활동실 등 지상4층 규모로 구성되어 통합적인 청소년 이용 시설로서 전문화된 직업체험과 문화·예술 체육 등 다양한 체험활동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며, 특히,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여 청소년의 창작활동과 직업 탐색을 통한 잠재성을 계발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타당성이 인정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13.(구청장)

○ 심의일자 : 2020. 4. 21.(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회원도시 확대 및 협의회 예산 증가 등 협의회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8조 및 제15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규약 상 지방정부협의회 명칭 변경
○ 협의회 법적 근거 조항 삽입(제1조)
○ 공동사무국 관련 조항 수정(제4조)
○ 구체적인 경비사용 기준 마련(제12조)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협의회 부담금 회장 지자체 세입·세출 예산 편성 근거 마련(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은,
- 회원도시 확대(83개 지자체) 및 협의회 예산 증가 등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이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협의회 명칭변경, 협의회 법적 근거 조항 추가, 구체적인 경비사용 기준 등을 개정하여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검토결과,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하여 지자체 간의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 명칭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변경하여 명칭의 법적근거(「지방자치법」 제152조)를 명확히 하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각 지자체가 부담하는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은 회장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고, 집행은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사용토록 하는 근거 마련과
- 아동친화도시 확산, 아동권리 인식증진, 협의회 회원도시 간 교류 및 지원사업 등을 위한 경비사용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부담금 집행 및 관리에 투명성이 제고될 것임.
- 따라서,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13.(구청장)

○ 심의일자 : 2020. 4. 21.(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다자녀가정' 관련 자치법규의 통일된 정의 및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다자녀가정 용어 정의 변경(안 제2조)

-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 →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 「울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자녀가정에 대한 통일된 정의를 적용하여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안 제2조제6호 다자녀가정 용어의 정의를 개정하는 것으로,
-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에서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으로 변경하는 것임.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 다자녀가정에 대한 용어를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으로 변경하여 울산광역시와 통일된 정의 및 지원기준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 본 조례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고,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13.(구청장)

○ 심의일자 : 2020. 4. 21.(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공중화장실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개방화장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개방화장실 지정 요건을 완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개방화장실 지정 기준 완화(안 제12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미만의 시설물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설치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안 제12조제1항 개방화장실의 지정 조문을 개정하여 개방화장실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임.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 공중화장실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 이용자의 편의 증진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 취지는 타당하고,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13.(구청장)

○ 심의일자 : 2020. 4. 21.(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9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일정시간에는 작업할 수 없도록 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관련 규정 삭제(안 제7조제1항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9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일정시간에는 작업할 수 없도록 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법률의 위임이 없는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규정 안 제7조제1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의 피해 방지 및 지도·점검을 통해 적정·관리하여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제1항의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9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 오전 7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동절기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5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본 조례 제7조제1항은 상위 법률에 위임 없이 일정 시간에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13.(이진복 의원 대표 발의)

○ 심의일자 : 2020. 4. 21.(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화재 사고에 대비하여 조작이 간편한 방연마스크 비치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들의 생명 보호 및 신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화재 예방과 효율적 대피방법의 홍보를 통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교육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방연마스크 비치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대피 방법, 방연마스크 비치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함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 화재관련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화재예방과 효율적인 대피방법 홍보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고,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13.(구청장)

○ 심의일자 : 2020. 4. 21.(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심의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나) 주요내용

○ 제정 목적(안 제1조)

○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안 제2조)

-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에 대한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안 제3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

○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안 제4조 ~ 제9조)

-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간사, 관계기관 등의 협조

○ 시행규칙 근거(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서 조례로 제정 하도록 위임된 사항이며,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지역교통 안전기본계획 심의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서,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교통안전정책심의 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 위원회는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지역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고,
- 위원장(구청장) 및 부위원장(안전건설국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제정 취지는 타당하고,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13.(구청장)

○ 심의일자 : 2020. 4. 21.(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등의 제정·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지역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 근거 마련

○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업무를 체계화하고 지자체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

나)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공공디자인, 공공조형물 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 시행(안 제5조)

- 공공디자인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진흥계획 수립(5년마다 재정비)
- 진흥계획 수립·변경할 때에는 구의 공보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 제13조)

-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 검토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 구성인원 : 15명 이내
-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조형물 설치 절차 등

○ 공공디자인 심의 및 공공조형물 설치(안 제14조 ~ 제18조)

- 심의대상 및 공공조형물 설치 등

○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안 제19조)

-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 발굴
- 공모를 통한 공공디자인안 선정 등

○ 공공조형물의 관리(안 제20조)

- 연간 1회 이상 관리계획 수립·시행
-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작성·비치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2019.1.25. 제정·시행)」 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등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업무를 체계화하여 지자체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시행, 진흥위원회 설치·운영, 공공디자인 심의 및 공모를 통한 공공디자인안 선정, 공공조형물 설치·관리 등 공공 디자인·조형물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등이 포함된 진흥계획(이하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하여 구 공보에 공고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계획의 수립·변경, 공공디자인 기준 수립·변경 등을 심의토록 하며,
- 공공디자인 진흥사업 발굴 및 시범사업 시행, 공모를 통한 디자인안 선정, 공공 조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세부기준 선정 등으로 공공 디자인 및 조형물의 건립과 관리를 체계화하고,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과 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본 조례 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고,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5절 제188회 제1차 정례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임채오 의원 외 1인 발의

나. 개회일시 : 2020. 6. 10.(월) 10:00

다. 회　　기 : 2020. 6. 10. ~ 6. 24.(15일간)

라. 부의안건

○ 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채오 의원 외 1인 발의)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의장 제의)

○ 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구정질문의 건(백현조 의원)

- 윤종오 전)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면제 청원 처리 결과와 관련하여

2. 개회사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월20일 코로나19 첫 국내 확진자가 나온 이래 오늘부로 143일째가 되는 날이며, 생활속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8일자로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이 완료되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등교 수업 중단이나 연기가 발생하고 있고, 이태원클럽과 물류센터, 소규모 종교시설에서의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인하여 우리 주위 곳곳에는 아직도 집단감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염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느슨해진 시민의식으로 인해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사회 곳곳에서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지만 이제는 방역과 일상을 병행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집단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방역수칙 준수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고, 구민 여러분께서는 방역 수칙 준수가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 아이들과 가족, 이웃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인식하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월부터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처리를 위해 고생하고 계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소중한 돈이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적극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1차 정례회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등을 심의합니다.

특히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기관의 재정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의 승인대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했는지를 심의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이번에 지적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결산검사 기간 동안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존경하는 이정민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구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뜻깊은 회기가 되도록 의회나 집행기관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이 주 언

3. 의사일정

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20. 6. 10. ~ 6. 24.(1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6.10.(수)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임수필 의원) 1. 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안번호 제190호)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88호) - 제 안 설 명(행정지원국장) - 4.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이정민 의원)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 구정질문의 건 ○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면제 청원 처리결과와 관련하여”(백현조 의원)	
6.11.(목) 10:00	제1차 예결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89호) 4.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기획홍보실 ○ 주민소통실 ○ 보건소 ○ 의회사무과 ○ 문화예술회관	
6.12.(금) 10:00	제2차 예결위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행정지원국(총무과,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6.13.(토)		휴 회	
6.14.(일)		휴 회	
6.15.(월) 10:00	제3차 예결위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행정지원국(관광해양개발과, 징수과, 부과과, 민원지적과)	
6.16.(화) 10:00	제4차 예결위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복지경제국(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6.17.(수) 10:00	제5차 예결위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복지경제국 (경제일자리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6.18.(목) 10:00	제6차 예결위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안전건설국(안전정보과, 건설과, 도시과)	
6.19.(금) 10:00	제7차 예결위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안전건설국(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6.20.(토)		휴 회	
6.21.(일)		휴 회	
6.22.(월) 10:00	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1호, 행정지원국) 2.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92호, 행정지원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93호, 보건소)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5호, 임수필 의원 발의, 의회사무과) 5.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4호, 복지경제국) 6.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95호, 복지경제국) 7.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96호, 복지경제국) 8.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7호, 안전건설국) 9.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의안번호 제186호, 이정민 의원 발의, 안전건설국) 10.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의안번호 제198호, 안전건설국) 11.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9호, 안전건설국) 12.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처분에 따른 구상금 판결 관련 구상금 및 소송비용 부담 일부면제 동의안 (의안번호 제187호, 기획홍보실)	
6.23.(화) 10:00		〈현장방문 활동〉	
6.24.(수) 10:00	제3차 본회의	1.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종합 심의의결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종합 심의의결 3. 건축물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제200호, 이진복 의원 발의) 4. 송정역(가칭) 광역전철 연장운행 조속추진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제201호, 이주언 의원 외 7 발의)	

4.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6. 3.(구청장)

○ 심의일자 : 2020. 6. 22.(제18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및 직원 복지 증진 및 가정친화적 근무여건 강화를 위해 보육휴가 및 자기계발휴가 조항 신설

○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 현행 조례 제6조, 제20조제2항·제5항, 제24조제2항제1호

○ 군 입영 자녀 휴가일수 및 사유 확대(안 제24조제2항제5호)

• (현행) 자녀 입영 당일 1일 → (개정) 자녀 군(軍) 훈련소 입·퇴소 시 각각 1일

○ 포상휴가 사유 구체적 명시(안 제24조제2항제6호)

• 재난·재해, 각종 행사, 선거업무 등 구체적 명시

○ 자녀 양육이 필요한 공무원을 위해 보육휴가 신설(안 제24조제2항제7호)

• 4세 이하 자녀 1명 → 3일

• 4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6일

○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제공을 위해 연간 3일의 자기계발 휴가 신설(안 제24조제2항제8호)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의 규정에 따라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2019. 4. 29.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북구지부와 합의한 바 있고, 2020. 1. 30. 울산광역시와 구군, 공공기관이 아이 낳고 좋은 직장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 입영자녀 휴가일수 및 사유 확대, 포상휴가 내용 구체화, 자녀 양육이 필요한 공무원을 위한 보육휴가제도 및 자기계발 기회 제공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입법 제반 절차사항을 이행하였고,

- 직원 복지를 향상하여 업무의 능률화를 도모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을 위한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6. 3.(구청장)

○ 심의일자 : 2020. 6. 22.(제18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 관광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여가 및 휴양문화 공간으로 캠핑장이 조성됨에 따라, 캠핑장의 쾌적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관리 및 운영(안 제3조)

○ 시설사용료 세부기준(안 제4조, 별표 1)

1) 캠핑장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 : 성수기, 비수기 등 구분

2)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에 관한 사항

○ 사용신청 및 사용료 등 납부(안 제5조)

○ 시설사용료의 감면(안 제6조)

1) 전액 감면: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2) 100분의 30 감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3) 100분의 20 감면: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

4) 100분의 10 감면: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시설사용료의 반환 및 시설의 사용제한(안 제7조 ~ 제8조, 별표 2)

○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안 제9조)

○ 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책임(안 제10조 ~ 제11조, 별표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 관광문화도시로의 실현과 지역관광 활성화 촉진을 위한 여가 및 휴양공간으로 조성되는 북구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 시설사용료 및 예약,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 감면, 사용자 준수사항, 시설관리 및 운영 등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과 캠핑장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조례입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 제정취지에 부합하고, 특히 구에서 조성되는 캠핑장들의 관리운영 전반에 걸쳐 기본역할을 하는 조례로써
- 북구의 캠핑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6. 3.(구청장)

○ 심의일자 : 2020. 6. 22.(제18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치매관리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치매관리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치매관리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지역사회협의체에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 와 지원을 통해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 치매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대상, 비용 지원,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서,

○ 검토결과,

- 현재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어 조례 제정이 다소 늦었으나, 치매안심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임.

- 조례입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제정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5. 20.(임수필 의원 대표 발의)

○ 심의일자 : 2020. 6. 22.(제18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직자 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제도를 통일성 있게 운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 시기 등 기준 완화(안 제13조제2항, 제3항)

1) 신고대상 : 모든 강의 → 사례금을 받는 강의

2) 신고시기 : 사전 신고 → 10일 이내 사후 신고

3)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신고내용 보완기한 : 2일 이내 → 5일 이내

○ 제한대상을 의원으로 구체적 명시(안 제13조제5항)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안 제18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완화된 내용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조례입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조례 개정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6. 3.(구청장)

○ 심의일자 : 2020. 6. 22.(제18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영유아보육법」과 용어 일치 및 개정사항 반영하고자 함.

○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운영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 용어 정의대로 정비(안 제2조제6호, 제6조제2호, 제5장, 제20조, 제22조제1항)

○ 육아종합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위탁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안 제14조제1항, 제15조제3항)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규정 신설(안 제16조의1)

○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감면 기준 변경(안 제18조제3항)

○ 영유아플라자의 운영 조항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중복되어 삭제(안 제4장, 제19조)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안 제20조제1항)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규정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안 제6장, 제26조, 제27조, 제2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 상위 법령인 「영유아보육법」과 용어 일치 및 개정사항 반영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운영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안 제2조제6호, 제6조제2호, 제5장, 제20조, 제22조제1항은 상위법에 맞게 용어 정비 및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이고,
- 안 제14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6조의1, 제18조제3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변경 또는 신설하는 것이며,
- 안 제4장, 제19조, 제26조 ~ 제28조는 중복된 영유아플라자의 운영 조항과 상위법에 규정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제2조의 “영유아플라자”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제6조의 “공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 제14조제1항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

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외에 상담전문요원을 두도록 하며, 위탁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수탁기관은 심사를 거쳐 두 차례만 재위탁하는 것을, 수탁기관의 사업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한 차례만 재위탁하고,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사항,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며, 사용료 면제 및 감면 사항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 본 조례는 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고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6. 3.(구청장)

○ 심의일자 : 2020. 6. 22.(제18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초등학생 등에게 적절한 돌봄 지원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 「지역돌봄협의체 구성·운영 매뉴얼(2019. 6. 14.)」에 따라 돌봄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돌봄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및 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6조)

○ 돌봄 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 초등학생 등에게 적절한 돌봄 지원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 보건복지부 「지역돌봄협의체 구성·운영 매뉴얼(2019. 6. 14.)」에 따라 돌봄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안 제1조 ~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 안 제4조 ~ 제6조는 돌봄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및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 안 제7조 ~ 제8조는 돌봄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의 아동에게 다함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며,
- 돌봄 서비스 등의 용어 정의와 돌봄 서비스 제공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급·간식 제공, 체험활동 등의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 돌봄 시설 간의 서비스 연계·조정,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등을 위한 돌봄협의회를 두어,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 조례는 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6. 3.(구청장)

○ 심의일자 : 2020. 6. 22.(제18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산업안전보건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산업구조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시키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1) 취약노동자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2)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연계사업

3) 울산광역시 및 관련기관 협조 요청, 노사 관련 단체 의견청취

○ 사업 수행 방법(안 제5조)

○ 건강증진위원회(안 제6조)

1) 위원회 설치 및 기능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재정지원 등(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 건강한 노동력 유지가 어려운 취약노동자의 건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안 제1조 ~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 안 제4조는 취약노동자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기간·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 안 제5조 ~ 제7조는 사업 수행 방법, 건강증진위원회,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노동자의 건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취약노동자 등 관련 용어 정의, 취약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사업의 수행 방법, 건강증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북구의 취약노동자들을 위한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 조례는 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6. 3.(구청장)

○ 심의일자 : 2020. 6. 22.(제18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정에 따라 구성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업무 처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함.

○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향상을 도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문대상 공공건축물 시설물의 종류에 대한 확대 및 수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시시설물과 공공시설물 등 중복되는 조항 삭제(안 제19조)

○ 공공건축물 시설물의 종류 확대 및 수정(안 제1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정에 따라 구성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 자문대상 공공건축물 시설물의 종류 확대 및 수정을 통하여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향상 및 체계적 관리를 하고자 하며,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안 제19조는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 자문대상 공공건축물 시설물 종류 확대 및 수정을 하는 것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제19조제3항제2호〔별표2〕의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시설물”을 “건축물”로 개정하고, 공공건축물의 시설물 종류를 확대·정비하고자 하며,
- 2020. 4. 29일 제정·시행된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5조(공공디자인 심의대상)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과 중복되는 〔별표2〕의 도로시설물과 〔별표3〕의 공공시설물을 삭제하여 북구의 공공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본 조례는 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고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6. 3.(이정민 의원 대표 발의)

○ 심의일자 : 2020. 6. 22.(제18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따라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 조문과 주차장 설치비용의 융자금 연체이자 조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의 “다자녀가정” 에 대한 정의와 동일하게 조문 정비(안 제6조제4항제7호)

○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주차요금 감면조항 신설 (안 제6조제4항제12호)

○ 융자금 연체이자 조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6조제5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 중 제2조제6호의 다자녀가정에 관한 정의의 개정 사항과 주차장 설치비용의 융자금 연체이자 조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안 제6조제4항제7호는 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따라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 안 제6조제4항제12호는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 안 제16조제5항은 융자금 연체이자 조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의 증명자료로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 다자녀가정에 대한 용어를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와 같이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으로 정의하며,
- 주차장 설치비용 융자금 상환 연체시의 이자는 연 18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고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6. 3.(구청장)

○ 심의일자 : 2020. 6. 22.(제18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빈집의 정비 및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정비대상, 빈집의 활용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 홍보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 빈집의 정비 및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안 제1조 ~ 제4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 안 제5조는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 안 제6조 ~ 제8조는 빈집의 정비대상, 활용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 안 제9조 ~ 제10조는 홍보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빈집의 정비 및 효율적 활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 “빈집”과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빈집 현황 및 실태, 시행방법, 빈집정비 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한 재원조달 등이 포함된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 안전사고 우려 및 주변 환경과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 등으로 빈집소유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등을 위한 임대주택과 주민운동시설 및 공용주차장 등 주민복리증진과 공공목적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며,
- 정비사업 지원요건 및 빈집 활용에 대한 홍보, 지도·감독, 지원요건 위반 시 비용 반환 등의 내용으로 규정되어 북구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고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6. 3.(구청장)

○ 심의일자 : 2020. 6. 22.(제18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법령에 근거가 없는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조항 삭제(안 제2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 옥외광고물 법령에 근거가 없는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안 제22조는 옥외광고물 법령에서 일부 조항이 법률 개정에 따라 삭제되었으며, 이와 연관된 조례 조항 중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옥외광고사업의 등록)에 근거가 없는 제22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정비하는 것으로,
- 본 조례는 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조항을 정비·삭제하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처분에 따른 구상금 판결 관련 - 구상금 및 소송비용 부담 일부면제 동의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5. 20.(구청장)

○ 심의일자 : 2020. 6. 22.(제18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출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채택된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면제 청원의 건이 채택되어 이송됨에 따라

○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구상금 및 소송비용 부담 일부면제 동의안에 대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의안을 제출함.

나) 주요내용

○ 2020년 5월 20일 현재 구상금(지연이자 포함) 및 소송비용 부담 일부면제 금액 : 354,896,105원

※ 일자에 따라 지연이자 변동됨.

- 구 상 금 : 326,321,623원
- 지연이자 : 14,081,002원(2020. 5. 20.현재)
- 소송비용 : 14,493,480원

○ 산출내용

- 구 상 금 : 326,321,623원
- 지연이자 : 14,081,002원(2020. 5. 20.현재)
- 소송비용 : 14,493,480원
- 채권회수 : 145,199,469원
  - ▸부동산 경매에 따른 회수액 : 8,674,509원
  - ▸윤종오 전 북구청장 납부액 : 136,524,960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구상금 및 소송비용 부담 일부면제 동의안은

- 2020. 5. 20.기준, 채권회수 대상금액은 5억 9만 5,574원 중 1억 4,519만 9,469원을 회수하고 남은 3억 5,489만 6,105원의 면제를 요구하는 내용임.
- 진행내용을 살펴보면, 2020. 2. 10.자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면제 청원의 건이 북구의회에 접수되어 2020. 5. 1.자로 채택 의결되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이송 처리되었으며, 금년 5. 20.자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면제 동의안이 상정된 사항임.

○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 「청원법」 제3조 제2호는 청원대상기관을 지방자치단체로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9호에서 원칙적인 청원 수리 기관으로 지방의회를 정하고 있음. 동법 제76조 제1항에서는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이송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재정법」 제86조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면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5항이 「지방재정법」 제86조 상의 '법령'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법제처 또한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8호에 따라 지방의회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됨.

○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북구의회에서 2회에 걸쳐 청원의 건을 채택한 바 있고, 청원의 채택이 구청장을 기속하는 사항은 아니나, 의회에서 채권을 면제한 안양시와 경기도의 사례를 참고하였으며, 구상금 청산을 위한 모금활동 전개, 주민들의 청원, 지역원로들의 기자회견 내용과 SSM으로 인한 지역상권 붕괴와 중소상인의 몰락 등의 문제에 대한 「유통산업발전

법」개정에 반영되기도 한 사항과 경매를 진행하였을 시, 회수가능금액과 실제 회수한 금액의 차이가 1,809만 4,488원의 차이가 발생하나 구상금 채권관련 지역사회 갈등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북구발전에 저해요소가 된다고 판단한 점 등 행정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구상금 및 소송비용 부담 일부면제를 위한 동의안을 북구의회에 심의·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사항임.

○ 본 구상금 및 소송비용 부담 일부면제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등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의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6절 제189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북구의회 사무과장

나. 개회일시 : 2020. 6. 26.(금) 10:00

다. 회　　기 : 2020. 6. 26.(1일간)

라. 부의안건

○ 제7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의 건(의장 제의)
- 의장(임채오)당선인사

○ 제7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의장 제의)
- 부의장(이정민)당선인사

○ 제18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제18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의사일정

제18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0. 6. 26.(1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20.6.26.(금)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본회의장
	1	1. 제18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8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제7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의 건 4. 제7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	

제4장

예산 · 결산심의사항

제1절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절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3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4절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5절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6절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7절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8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9절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0절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1절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2절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3절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14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1절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의경과

◦ 제 출 일 자 : 2018. 8. 21.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18. 8. 28.(제1차 본회의)
◦ 본회의 의결일자 : 2018. 9. 10.(제3차 본회의)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회계별		2018년 예산액 (2회추경)	%	기정 예산액 (1회추경)	%	증감	비고 (일시차입 한도액)
계		340,821,326	100.00	316,921,828	100.00	23,899,498	10,224,640
일반회계		331,268,213	97.20	313,385,666	98.88	17,882,547	9,938,046
특별회계		9,553,113	2.80	3,536,162	1.12	6,016,951	286,593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81,521	0.05	154,620	0.05	26,901	5,44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5,564,160	1.63	-	0.00	5,564,160	166,925
	폐기물처리시설	291,747	0.09	291,747	0.09	-	8,752
	기반시설	-	0.00	379	0.00	△379	-
	주차장	3,515,685	1.03	3,089,416	0.97	426,269	105,471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요구액(A)	예산심의내역					확정예산액(예산총액)	일시차입금한도액
			삭감액(B)			예비비			
			세입	세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계		340,828,826	△7,500	△10,000	0.005	3,041,609	3,044,109	340,821,326	10,224,640
일반회계		331,275,713	△7,500	△10,000	0.005	2,392,255	2,394,755	331,268,213	9,938,046
특별회계		9,553,113	-	-	-	649,354	649,354	9,553,113	286,593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81,521	-	-	-	-	-	181,521	5,44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564,160	-	-	-	-	-	5,564,160	166,925
	폐기물처리시설	291,747	-	-	-	-	-	291,747	8,752
	기반시설	-	-	-	-	-	-	-	-
	주차장	3,515,685	-	-	-	649,354	649,354	3,515,685	105,471

4. 심의의결 요지

□ 세입 분야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38억 9,950만원이 증액된 3,408억 2,133만원이며,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65억 7,018만원, 지방교부세 22억 7,835만원, 조정교부금등 37억 7,000만원, 보조금 51억 5,375만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61억 2,721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세출 분야

○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기정예산 대비 238억 9,950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 되었으며, 이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1억 4,367만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에 5억 8,617만원, 교육 분야에 2,040만원, 문화및관광 분야에 14억 5,417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55억 7,424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51억 4,684만원, 보건분야에 5억 5,064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7억 1,919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5,049만원, 수송및교통 분야에 30억 5,080만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등에 48억 678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또한 예비비 분야에 32억 7,65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중요 재산을 취득 및 처분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 안건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현장 설명이 요구되며, 계획 단계에서부터 완료 시까지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민들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유재산관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과 확인을 당부 드림.

의회 청사 건립 계획과 관련하여 본청 건물도 과포화상태인데다 부서의 대부분도 협소하고 비좁아 민원인들의 불편과 직원들의 근무의욕 저하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청사 부족 공간 해소를 위해서 의회 청사 건립이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인데 의회 청사 건립 시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구 청사 근처에 건립되어야 할 것이며 내진설계 반영 및 소방시설 설치 등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가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구립도서관 자원봉사자와 관련하여 도서관 운영에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구립 도서관별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며,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견학, 워크숍 활성화 방안들을 적극 모색하시기 바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울

산 지역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격려하며, 향후에도 협의체 운영 및 보장계획 수립에 북구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람.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북구는 타 도시에 비하여 노인 인구가 적은 편이나 사회적 변화에 따른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 고령화 시대에 맞는 복지향상을 위해 경로당 신축, 개·보수 및 운영 프로그램에 대하여 선제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함. 또한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시급성, 타당성 등 여러 부분을 잘 검토·판단하여 합리적으로 사업수행을 하여 주시기 바람.

초·중·고 무상급식 사업과 관련하여 북구청에서는 무상급식과 친환경 먹거리 제공에 있어 선도적으로 학교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향후에도 자라나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친환경 먹거리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구정 각종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중요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 승인 후 사업 시행 전에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사전 설명이 필요함. 또한 도로 포장, 시설 건축 등 각종 사업 추진 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제반사항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아울러 각종 민원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대처하여 주민 편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람.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에 사전설명이 부족한 경우 짧은 심의기간 내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많음. 향후에는 신규 사업이나 당초 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 시 나타난 권고와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5. 심의결과 : 수정가결

제2절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 심의경과

○ 접수일자 : 2018. 5. 30.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10. 8. ~ 10. 17.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제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입 결산액 : 398,705,578,240원
  • 세출 결산액 : 315,881,099,970원
  • 세계 잉여금 : 82,824,478,270원
○ 재무제표
  • 재정상태
    - 자 산 : 682,805,889,414원
    - 부 채 : 11,503,861,506원
    - 순 자 산 : 671,302,027,908원
  • 재정운영
    - 수 익 : 300,879,677,108원
    - 비 용 : 289,543,934,702원
    - 재정운영결과 : 11,335,742,406원

4. 심의의결 요지

□ 2017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은 예산편성 시 우리 구의 세입전망과 분석을 통해 편성하였는지, 세입징수율 제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음.

□ 세입부문

◦ 2017년도 세입예산현액 3,945억 8,52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87억 558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3,777억 6,654만원에 수납액은 3,813억 6,211만원이고, 미수납액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83억 8,482만원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68억 1,87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3억 4,347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7억 3,134만원임.

◦ 지방세에 있어서 지난년도 체납액의 지속적 발생은 우리 구 재정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 징수대책을 통한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 아울러,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납비율이 저조한 일부 세외수입의 경우, 각 부서에서는 과징금 및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는 사례 등을 주민들에게 사전 안내하여 차단하도록 하고, 발생한 체납액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징수해 줄 것을 당부드림.

◦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의 경우, 결손처분으로 징수 가능한 재원이 소멸되는 것이 아닌지 결손처분 사유를 전반적으로 확인·분석하여야 하며, 결손처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길 바람.

□ 세출부문

◦ 세출예산현액 3,945억 8,524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158억 8,110만원임. 이 중 일반회계는 세출예산현액 3,777억 6,654만원, 지출액은 3,009억 2,66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168억 1,871만원, 지출액은 149억 5,445만원임.

◦ 세출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서,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실적의 평가와 분석을 통해 다음 해 사업 추진 시 그 결과가 반영되어

야 하고, 신규 사업은 면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음. 또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예측되는 집행 잔액은 추경 시 삭감하여 반납된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각 분야별 추진 사업 중 기박산성 의병 추모제, 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 등과 같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나 활성화 되지 못하는 사업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람.

◦ 동별 공공요금과 관련하여 월별 사용량이 상이한데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여 과다하게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면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으로 에너지를 절감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지원과 로컬푸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과 관련된 각종 사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매곡공원·중산생태공원 조성 사업 등의 추진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또한 태풍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조속한 피해복구를 하여 주시기 바람.

◦ 국·시비 보조사업 중 복지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이 많으므로 주민 홍보 등을 통해 수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 또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임. 특히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문화진흥기금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 조성은 계속적으로 되고 있으나, 집행은 하지 않고 있음. 향후 관리 부서에서 기금 조례가 정하는 목적 사업 및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적절히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권고 드림.

□ 이상과 같이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 판단하는 과정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충분한 업무연찬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림.

5.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3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의경과

○ 접수일자 : 2018. 9. 28.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10. 17.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 제29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3.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원)

회계별	사 업 명	결정일자	지 출 결정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고
계	2건		43,380,000	43,380,000	-	-	
일반회계	AI 긴급대응 수매실시에 따른 보상금 지급	'17. 6. 23.	18,180,000	18,180,000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라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가금농가의 가금류 보상금 구비 부담분임

회계별	사 업 명	결정 일자	지 출 결정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 잔액	비고
	AI 긴급방역을 위한 방역초소 설치 및 운영	'17. 11. 24.	25,200,000	25,200,000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지역 유입방지 및 차단방역을 위한 이동통제초소를 설치·운영비임

4. 심의의결 요지

○ 「지방재정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 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17년도 예비비 지출은 2건으로 지출결정액 총 4,338만원 중 4,33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및 집행잔액은 없음.

○ 2017년도 예비비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보면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AI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가금농가의 가금류 수매 보상금 1건,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AI의 지역 유입 방지 및 차단방역을 위한 이동통제초소 설치 운영비 1건, 총 2건으로 적정하게 집행하였음.

5.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4절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 2018. 11. 19.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18. 11. 20.
◦ 본회의 의결일자 : 2018. 12. 13.

2. 2019년도 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회계별		2019년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	증감	비고 (일시차입 한도액)
계		314,081,758	100.00	302,033,031	100.00	12,048,727	9,422,453
일반회계		311,948,333	99.32	298,498,216	98.83	13,450,117	9,358,450
특별회계		2,133,425	0.68	3,534,815	1.17	△1,401,390	64,003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62,820	0.05	162,020	0.05	800	4,88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53,600	0.02	283,000	0.09	△229,400	1,608
	기반시설	7,134	0.00	-	-	7,134	214
	주차장	1,909,871	0.61	3,089,416	1.02	△1,179,545	57,296

3. 2019년도 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요구액(A)	예산심의내역					확정예산액(예산총액)	일시차입금한도액
			삭감액(B)			예비비등			
			세입	세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계		314,106,758	△25,000	△248,690	0.08	3,130,447	3,354,137	314,081,758	9,422,453
일반회계		311,973,333	△25,000	△248,690	0.08	2,921,460	3,145,150	311,948,333	9,358,450
특별회계		2,133,425	-	-	-	208,987	208,987	2,133,425	64,003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62,820	-	-	-	-	-	-	4,88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3,600	-	-	-	-	-	-	1,608
	폐기물처리시설	7,134	-	-	-	-	-	-	214
	주차장	1,909,871	-	-	-	-	-	-	57,296

4. 심의의결 요지

□ 세 입

○ 2019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세입규모는 전년도 대비 120억 4,873만원이 증액된 3,140억 8,176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119억 4,833만원, 특별회계는 21억 3,343만원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내역은 지방세수입 22억 6,300만원, 세외수입 13억 1,207만원, 지방교부세 7억 7,000만원, 보조금 110억 3,437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등 31억 7,764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억 5,308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지방세는 신규 공동주택 증가로 저당설정액을 반영한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가 각각 2.66%, 8.3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에 있어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국세 종합부동산세 정산분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19.11% 증가하겠음.

○ 자체세입 증대를 위해서는 체납세 징수에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대책이 요구되며, 국·시비 확보를 통한 세입 확충에도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세 출

○ 2019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120억 4,873만원이 증액된 3,140억 8,176만원임. 이 중 주요 편성내용은 문화 및관광분야에 19억 5,641만원, 환경보호분야에 12억 1,421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89억 8,37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억 8,938만원, 기타분야 35억 418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1억 950만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 3,650만원, 교육분야에 1억 2,749만원 보건분야에 9억 9,855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3억 7,422만원, 수송및교통분야에 55억 3,722만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 24억 9,630만원, 예비비에 11억 1,578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음.

○ 먼저,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의원 공무국외연수 경비' 예산의 경우, 현재 경기 침체와 고용불안 속에 의회도 긴축 재정 운영에 앞장서고자 일부 삭감함.

'업무용 차량 구입' 예산과 관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생산제품을 우선 순위로 하고업무의 활용도가 높은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며, 향후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등 구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보견학' 예산의 경우, 매년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절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일부 삭감하였음.

'아동 참여위원회 운영' 예산의 경우, 최근 제정된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예산 편성 시 자치법규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상이하여 예산 요구 분을 삭감 조치하고 향후

조례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편성 요구하기 바람.

'노동역사관 운영' 예산의 경우, 자동차, 조선업계의 불황 여파로 확산되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구 재정여건에 맞춰 전년도 대비 증액분을 삭감하였음.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하므로 국·시비 추가 확보를 위하여 노력 바람.

'편백림 이용 활성화 사업 용역', '셉테드 CCTV 안내판 구입', 예산의 경우, 사업의 정확한 개념, 타당성 및 시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편백림 이용 활성화 사업 용역의 경우, 시급성을 판단하기 곤란하여 당초예산에 전액 삭감조치 하였으나 향후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재검토하여 추경 등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셉테드 CCTV 안내판 구입 사업은 시범적으로 설치한 후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 시 추가로 예산 편성 요구하기 바람.

○ 다음은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요구 사항으로,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구정소식지 등에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주민이 예산 운영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낭비 신고 및 예산 절감에 대한 제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관용차량 유류대 지원' 의 경우,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근거하여 부서별 관용 차량 및 지원단체의 차량 유류비를 계상할 때 석유류 지역별 판매가격을 참고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기 바람.

'정자 활어직매장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 층별 공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화장실, 편의시설, 사무실, 어린이 실내놀이터에 대한 효과적인 배치를 검토하여 주시고, 향후 개소 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우리 구의 찾고 싶은 명소로 자리 잡아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경로당 신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화, 교육, 건강, 일자리 분야 등을 포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를 하여 주시고,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휴게 공간을 넘어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기 바람.

○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명예구민감사관제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관 위촉 시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가, 지역 현안에 관심 있는 주민을 위촉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주민불편사항, 재난 위험 및 취약 시설의 사전 제보 시에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지방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 등 지방보조금의 예산은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므로 공익활동 등 단체의 활동상황에 따라 지원을 하되 일부 특정단체의 지속적인 지원은 지양하고 형평성 있게 다양한 단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근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차장을 확보하여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향후 운영 인력 모집 시 지역 현안 사업에 관심 있고 능동적인 주민이 채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기 바람.

'해상오토캠핑장 기초조사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연안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친환경적인 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으로 시설의 안정성과 경제성, 사업성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검토하여 소기의 성과물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향후 조성 시 해양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기 바람.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 보훈대상자들의 연령이 고령화되어 지원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의 자긍심이 고취 되도록 적극적인 예우와 함께 일상 생활 속에서 지원 가능한 다른 항목들을 발굴하는 등 다가가는 밀착형 보훈 복지를 추진하기 바람.

'소방도로 개설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우선 투자 순위를 정하여 가장 필요로 하는 구간에 소방도로 개설을 추진하여 주시고, 이에 따른 사업비도 빠른 시일 내에 편성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람.

'안전도시 북구 구현'을 위한 범죄예방환경디자인(셉테드) 관련 사업을 추

진함에 있어, 단순히 안내간판, 감시카메라에만 국한하지 말고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기 바라며, 최근 라돈, 생활 속 방사선 피해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증가되고 있는데, 라돈측정기 대여 등 여러 안전 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여 주기 바람.

○ 예산은 우리 구 전체의 균형발전과 미래를 준비하는 내용으로 편성하여야 함. 전 구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림.

5. 심의결과 : 수정가결

제5절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 2018. 12. 4.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18. 12. 13.(제3차 본회의)
○ 본회의 의결일자 : 2018. 12. 21.(제5차 본회의)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회계별		2018년 예산액 (3회추경)	%	기정 예산액 (2회추경)	%	증감	비고 (일시차입 한도액)
계		357,300,987	100.00	340,821,326	100.00	16,479,661	10,719,030
일반회계		347,746,245	97.33	331,268,213	97.20	16,478,032	10,432,387
특별회계		9,554,742	2.67	9,553,113	2.80	1,629	286,642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83,150	0.05	181,521	0.05	1,629	5,49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91,747	0.08	291,747	0.09	-	8,752
	폐기물처리시설	5,564,160	1.56	5,564,160	1.63	-	166,925
	주차장	3,515,685	0.98	3,515,685	1.03	-	105,471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 요구액 (A)	예산심의내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시 차입금 한도액
			삭감액(B)			예비비			
			세입	세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계		357,300,987	-	-	-	9,772,790	9,772,790	357,300,987	10,719,030
일반회계		347,746,245	-	-	-	9,042,800	9,042,800	347,746,245	10,432,387
특별회계		9,554,742	-	-	-	729,990	729,990	9,554,742	286,642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83,150	-	-	-	-	-	183,150	5,49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91,747	-	-	-	-	-	291,747	8,752
	폐기물처리시설	5,564,160	-	-	-	-	-	5,564,160	166,925
	주차장	3,515,685	-	-	-	-	-	3,515,685	105,471

4. 심의의결 요지

□ 세입 분야

○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4억 7,966만 1천원이 증액된 3,573억 98만 7천원임.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 17억원, 세외수입 24억 6,991만 2천원, 지방교부세 10억 3,500만원, 조정교부금 등 13억 6,200만원, 보조금 97억 1,432만 3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세출 분야

○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4억 7,966만 1천원이 증액된 3,573억 98만 7천원임. 이 중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에 1억 7,930만 8천원, 문화및관광 분야에 7억 8,264만 1천원, 사회복지 분야에 15억 7,036만 9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3억 5,744만 1천원, 수송및교통 분야에 1억 9,556만 3천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66억 3,412만 3천원, 예비비로 66억 4,804만 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9억 1,123만 5천원, 교육 분야에 2백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1억 669만 3천원, 보건 분야에 815만원 7천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4,451만 8천원, 기타 분야에 8억 1,522만 6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금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추경 예산 편성의 근본 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음.

○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면밀한 사업계획하에 정확한 예산 추계가 필요하고, 각종 용역비 등 삭감할 사유가 있을 시 1, 2차 추경에 삭감하여 다른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또한 우리 구의 주요 현안 사업들을 시행할 시 주민들의 민원 발생 예방과 홍보를 위해서 사업 시행 전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하여 주시고, 특히 사업 추진 과정이나 완료 시에도 의원들과 사업 현황들을 공유하여 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림.

화봉꿈마루길 도시재생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노인회관 건립 사업추진 시 지역 노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련 부서와 사전 의견 조율을 충분히 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립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청년실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산업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계획 수립에 앞서 지역여론과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을 실시한 후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철저히 하여 형식적인 성과를 지양하고 내실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바람.

건설도시국 소관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도로 및 시설에 관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므로 향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하여 SOC관련 사업비 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마지막으로 당초예산 및 추경 예산 편성 시 심의 이전에 예산 편성 취지, 필요성 등에 대해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여 원활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림.

○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 시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 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예산 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5.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6절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4. 3.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9. 4. 12.

라. 심의기간 : 2019. 4. 16. ~ 4. 25.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가. 구성일자 : 2019. 4. 12.

나. 구성인원 : 7명

○ 위원장 : 백현조 위원

○ 간 사 : 이진복 위원

○ 위 원 : 임채오 위원, 박상복 위원, 정외경 위원, 이정민 위원, 임수필 위원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천원)

회계별		2019년 예산액 (1회추경)	%	기정 예산액 (당초예산)	%	증감	비고 (일시차입 한도액)
계		355,585,042	100.00	314,081,758	100.00	41,503,284	-
일반회계		352,008,098	98.99	311,948,333	99.32	40,059,765	-
특별회계		3,576,944	1.01	2,133,425	0.68	1,443,519	-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89,348	0.05	162,820	0.05	26,528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55,700	0.02	53,600	0.02	2,100	-
	주차장	837,770	0.24	7,134	0.00	830,636	-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 3,555억 8,504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15억 328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됨.

○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119억 4,833만 3천원보다 400억 5,976만 5천원이 증가된 3,520억 809만 8천원으로 12.84%가 증액됨.

○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1억 3,342만 5천원보다 14억 4,351만 9천원이 증가된 35억 7,694만 4천원으로 67.66%가 증액됨.

□ 세입 예산(안)의 경우

○ 일반회계는

• 세외수입 11억 4,390만 9천원, 지방교부세 19억 239만 1천원, 보조금 254억 8,284만 8천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91억 3,861만 7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특별회계는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 지원 등에 14억 4,351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출 예산(안)의 경우

○ 기능별로 살펴보면,

• 일반공공행정 분야 32억 9,453만 6천원
• 문화및관광 분야 25억 5,861만 5천원
• 사회복지 분야 221억 9,774만 1천원
• 농림해양수산 분야 32억 4,437만 1천원
• 수송 및 교통 분야 37억 5,928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예비비 분야에 5억 9,523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됨.

○ 성질별로는

• 경상이전으로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이전 등 220억 8,900만 5천원,
• 자본지출로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157억 735만 7천원,
• 예비비및기타로 23억 5,031만 1천원 등이 증액 편성됨.

4. 심의의결 요지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편성의 근본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음.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다고 하겠으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권고 및 시정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시 질 높은 서비스 품질 기대, 전문경영인 경영에 따른 지방재정 도움, 비용절감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공단 이관 시 이용자 부담 증가 및 서비스 질 저하 등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이러한 부분에서는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으로 채용비리를 사전 예방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시설관리공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염포운동장 준공 이후 주민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문화체육 인프라가 부족했던 염포동에 운동장이 조성됨으로써 주민들에게 체력단련과 힐링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나, 염포운동장 준공 이후 차양막 보완, 트랙길 로드 설치, 관리동 설치 등 주민 의견이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우가어촌체험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활동이 저조한 종사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음.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또한 우가어촌체험마을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연중 운영 방안 및 관광객 유치에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노동역사관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 다각화를 통하여 노동역사관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특히, 현대 노동역사를 넘어 달천철장·소금포 노동역사, 4차 산업혁명의 미래 노동역사, 북구의 노동역사 등을 아우르는 노동역사의 장을 만들어, 주민들이 함께하는 체험과 교육을 통하여 노동의 역사와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도시 꽃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최근 꽃도시조경담당이 신설되어 도시 꽃단지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부서별·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예산낭비가 될 수 있으니 부서별 세부 사업의 예산 편성 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바람. 특히,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와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통하여 실효성 있고 주민들이 공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기 바람.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에 사전설명이 부족한 경우 짧은 심의기간 내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많음. 향후에는 신규 사업이나 당초 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 시 나타난 권고와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5.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7절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5. 30.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9. 6. 10.
라. 심의기간 : 2019. 6. 11. ~ 6. 19.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가. 구성일자 : 2019. 6. 10.
나. 구성인원 : 7명
○ 위원장 : 정외경 위원
○ 간 사 : 박상복 위원
○ 위 원 : 백현조 위원, 임채오 위원, 이정민 위원, 임수필 위원, 이진복 위원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제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세 입 결 산 액	세 출 결 산 액	세 계 잉 여 금
합 계		420,193,069,010	425,935,286,953	363,261,583,937	62,673,703,016
일 반 회 계		410,638,327,010	415,367,635,071	354,551,923,311	60,815,711,760
기타특별회계	소 계	9,554,742,000	10,567,651,882	8,709,660,626	1,857,991,256
	의료급여기금	183,150,000	196,385,900	174,440,080	21,945,82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91,747,000	292,168,900	290,070,350	2,098,550
	폐기물처리시설	5,564,160,000	6,401,929,650	5,564,159,390	837,770,260
	주 차 장	3,515,685,000	3,677,167,432	2,680,990,806	996,176,626

○ 세 입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420,193,069,010	53,919,249,646	425,935,286,953	514,707,210	10,159,155,483
일 반 회 계	410,638,327,010	42,521,121,833	415,367,635,071	514,707,210	9,328,679,552
기타특별회계	9,554,742,000	11,398,127,813	10,567,651,882	-	830,475,931

○ 세 출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 조 금 반 납 금	집 행 잔 액
합 계	420,193,069,010	363,261,583,937	41,537,237,508	2,172,026,651	13,222,220,914
일 반 회 계	410,638,327,010	354,551,923,311	41,462,697,418	2,145,693,416	12,478,012,865
기타특별회계	9,554,742,000	8,709,660,626	74,540,090	26,333,235	744,208,049

○ 세계잉여금

(단위 : 원)

회 계 별	계	순세계잉여금	이 월 액			보 조 금 반 납 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62,673,703,016	19,018,558,329	6,062,997,400	1,681,550,908	33,792,689,200	2,117,907,179
일반회계	60,815,711,760	17,261,440,398	6,062,997,400	1,681,550,908	33,718,149,110	2,091,573,944
기타특별회계	1,857,991,256	1,757,117,931	-	-	74,540,090	26,333,235

4. 심의의결 요지

□ 2018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은

예산편성 시 우리 구의 세입전망과 분석을 통해 편성하였는지 여부와 세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음.

□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 내용은

○ 예산현액은 4,201억 9,307만원으로 수납액이 4,259억 3,528만원, 지출액이 3,632억 6,158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626억 7370만원임.

○ 일반회계 결산 예산현액은 4,106억 3,833만원으로 수납액이 4,153억 6,763만원, 지출액이 3,545억 5,192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608억 1,571만원임.

○ 기타 특별회계 결산 예산현액은 95억 5,474만원이며 수납액이 105억 6,765만원, 지출액이 87억 966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8억 5,799만원임.

□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 세입 부문에 있어

지방세에 있어서 지난년도 체납액의 지속적 발생은 우리 구 재정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 징수대책을 통한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아울러,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납비율이 저조한 일부 세외수입의 경우, 각 부서에서는 과징금 및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는 사례 등을 주민들에게 사전 안내하여 차단하도록 하고, 발생한 체납액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징수해 줄 것을 당부 드림.

○ 세출 부문에 있어

사전에 면밀한 조사와 신중한 예측을 통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또한 사업추진 중 예측되는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추경 시 삭감하여 반납된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임.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여전히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사업 중 실적이 부진하여 불용액으로 반납되는 규모가 과다하니, 반납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각 분야별 추진 사업 중

아동의회와 관련하여 모든 아동들이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여 지정되도록 부서에서는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라며, 꽃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 전체를 대상으로 전문가와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구의 위상에 걸 맞는 꽃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입안단계부터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도로부문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숙원하고 염원하는 소방도로 개설 시 예산 확보시기를 놓쳐 공사추진이 부진하였고 각종 이월 사업들이 다수 발생하여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시켰음. 향후 적기의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기 바람.

○ 또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 기금 사용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예산 편성 시, 기금별로 수입과 지출 계획을 정비하여 기금의 고유 목적을 위한 사용액 비중을 늘려가야 하고, 기금 조례가 정하는 목적 사업 및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적절히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권고 드림.

○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는 총 69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41개의 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음. 일부 부서에서는 목표치가 100% 달성할 수밖에 없는 성과지표 설정, 단순한 처리 결과 등을 측정 산식으로 설정하고 있으니, 목표 설정을 개선하여 타당성과 신뢰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이상과 같이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 판단하는 과정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충분한 업무 연찬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림.

5.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8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5. 31.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심의일자 : 2019. 6. 1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경비를 위하여 지출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단위 : 원)

회계별	사 업 명	결 정 일 자	지 출 일 자	지 출 결정액	지 출 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비고
계	1건			16,200,000	16,200,000	0	0	
일반 회계	폭염피해 예방 축사시설 지원	'18. 8. 14.	'18. 10. 15.	16,200,000	16,200,000	0	0	일반 예비비

3. 심의의결 요지

○ 「지방재정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 · 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라고 규

정하고 있음.

○ 2018년도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지출결정액 총 1,620만원 중 1,62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및 집행 잔액은 없음.

○ 2018년도 예비비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보면 폭염피해 예방 축사시설 지원 건으로 사업량은 축사 환풍기 100대, 안개분무기 5개, 스프링클러 4대로 적정하게 집행하였음.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9절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8. 19.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9. 8. 26.

라. 심의기간 : 2019. 8. 28. ~ 9. 6.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가. 구성일자 : 2019. 8. 26.

나. 구성인원 : 7명

○ 위원장 : 이정민 위원

○ 간 사 : 임채오 위원

○ 위 원 : 백현조 위원, 박상복 위원, 정외경 위원, 임수필 위원, 이진복 위원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천원)

회계별		2019년 예산액 (2회추경)	%	기정 예산액 (1회추경)	%	증감	비고
계		372,281,719	100.00	355,585,042	100.00	16,696,677	
일반회계		368,682,775	99.03	352,008,098	98.99	16,674,677	
특별회계		3,598,944	0.97	3,576,944	1.01	22,000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97,348	0.05	189,348	0.05	8,00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55,700	0.01	55,700	0.02	-	
	폐기물처리시설	837,770	0.23	837,770	0.24	-	
	주차장	2,508,126	0.67	2,494,126	0.70	14,000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 3,722억 8,171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6억 9,667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됨.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520억 4,833만 809만 8천원보다 166억 7,467만 7천원이 증가된 3,686억 8,277만 5천원으로 10.48%가 증액 편성됨.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억 7,694만 4천원보다 2,200만원이 증가된 35억 9,894만 4천원으로 0.6%가 증액 편성됨.

□ 세입 예산(안)의 경우

○ 일반회계는

• 세외수입 11억 2,008만원, 지방교부세 18억 8,300만 1천원, 조정교부금 등 61억원, 보조금 73억 4,492만 7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됨.

○ 특별회계는

• 보조금에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됨.

□ 세출 예산(안)의 경우

○ 기능별로 살펴보면,

• 일반공공행정 분야 2억 8,976만 6천원,
•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4억 2,346만 7천원,
• 문화및관광 분야 10억 6,428만 7천원,
• 사회복지 분야 95억 6,830만원,
• 산업·중소기업 분야 21억 1,953만 2천원,
• 수송 및 교통 분야 26억 2,700만원,
•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13억 871만 7천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예비비 분야 10억 9,698만 2천원,
• 기타 분야에 1억 1,013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됨.

○ 성질별로는

• 경상이전으로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이전 등 53억 1,831만 8천원,
• 자본지출로써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등 118억 7,393만 2천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예비비및기타로 10억 2,985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됨.

4. 심의의결 요지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편성의 근본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음.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이 약 69.0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로로 국·시비를 비롯한 교부세, 교부금 확보를 위해 노력한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림. 또한 구 자체예산이 부족한 시기에 집행부에서 불필요한 구유재산을 매각하여 재정수요에 필요한 자체재원을 발 빠르게 확충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사항임.

○ 이번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권고 및 시정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 먼저,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정책연구 인센티브 해외선진지 견학과 관련하여 2019년 공무원 창의정책 연구모임 결과 우수 1팀, 장려 2팀을 선정하였고 해외 선진지 견학, 포상휴가를 인센티브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검토하여 요구액 전액을 삭감하였음.

○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달천철장 정비와 관련하여 2020년 제16회 울산쇠부리축제의 원활한 축제 개최를 위해 전기,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하며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주민과의 설명회, 홍보 등을 철저히 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또한 주차장 확보에도 신경 써 주고 2020년 쇠부리 축제가 철의 생산지인 달천철장으로 이전한 만큼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어 주민이 공감하는 사업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공공산후조리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이 산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출산 양육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건립 초기 단계에서부터 비용분석 등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운영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를 바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전

국적인 운영 사례 분석, 주민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 및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하여 지역사회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를 바람.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현재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높고, 매출이 대폭 감소하여 지역 경제가 어려운 실정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중소기업 지원 사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울산페이'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주시고, 자동차특화도시에 맞는 적극적인 시책도 펼쳐주기 바람.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에 사전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짧은 심의기간 내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많음.

향후에는 신규 사업이나 당초 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 시 나타난 권고와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5. 심의결과 : 수정가결

제10절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1. 13.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본회의 상정일자 : 2019. 11. 20.

라. 심의기간 : 2019. 12. 3. ~ 12. 12.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가. 구성일자 : 2019. 12. 3.

나. 구성인원 : 7명

○ 위원장 : 이진복 위원

○ 간 사 : 임수필 위원

○ 위 원 : 백현조 위원, 임채오 위원, 박상복 위원, 정외경 위원, 이정민 위원

3. 2020년도 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회계별		2020년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	증감	비고 (일시차입 한도액)
계		373,435,078	100.00	314,081,758	100.00	59,353,320	11,203,052
일반회계		370,976,966	99.34	311,948,333	99.32	59,028,633	11,129,309
특별회계		2,458,112	0.66	2,133,425	0.68	324,687	73,743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71,191	0.05	162,820	0.05	8,371	5,13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76,100	0.02	53,600	0.02	22,500	2,283
	폐기물처리시설	1,754	0.00	7,134	0.00	△5,380	53
	주차장	2,209,067	0.59	1,909,871	0.61	299,196	66,272

4. 2020년도 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요구액(A)	예산심의내역					확정예산액(예산총액)	일시차입금한도액
			삭감액(B)			예비비등			
			세입	세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계		373,435,078	-	△141,493	0.04	3,414,514	3,556,007	373,435,078	11,203,052
일반회계		370,976,966	-	△141,493	0.04	2,975,521	3,117,014	370,976,966	11,129,309
특별회계		2,458,112	-	-	-	438,993	438,993	2,458,112	73,743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71,191	-	-	-	-	-	-	5,13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6,100	-	-	-	-	-	-	2,283
	폐기물처리시설	1,754	-	-	-	-	-	-	53
	주차장	2,209,067	-	-	-	-	-	-	66,272

5. 심의의결 요지

□ 세 입

○ 2020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세입규모는 전년도 대비 593억 5,332만원이 증액된 3,734억 3,507만 8천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709억 7,696만 6천원, 특별회계는 24억 5,811만 2천원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내역은 지방세수입 분야에 51억 7,400만원, 세외수입 분야에 44억 1,023만 2천원, 지방교부세 분야에 66억 1,600만원, 조

정교부금등 분야에 3억 2,344만원, 보조금 분야에 423억 1,221만 4천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분야에 5억 1,743만 4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지방세는 2019년도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6.08%, 개별주택가격 2.17% 상승 등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며,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조정교부금 및 전환사업 보전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에 있어 사용료 수입, 재산임대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국세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되고 세부담상한액이 150% 인상됨에 따라 부동산교부세가 137.84% 증가하겠음.

○ 자체세입 증대를 위해서는 체납세 징수에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대책이 요구되며, 국·시비 확보를 통한 세입 확충에도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세 출

○ 2020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593억 5,332만원이 증액된 3,734억 3,507만 8천원임.

이 중 주요 편성내용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8억 7,378만 5천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에 2억 177만 1천원, 교육 분야에 1억 2,815만 5천원, 문화및관광 분야에 39억 3,968만 7천원, 환경보호 분야에 7억 3,194만 6천원, 사회복지 분야에 408억 2,616만 5천원, 보건 분야에 10억 9,567만 5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3억 8,806만 3천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에 9억 8,328만 6천원, 교통및물류 분야에 36억 7,110만 8천원, 기타 분야에 26억 2,252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19억 3,921만 2천원, 예비비에 1억 6,962만 9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먼저,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의원 공무국외출장 경비', '선진지견학 차량임차료', '의원 공무국외출장 수행 및 시책개발 여비' 예산의 경우, 현재 경기 침체와 고용불안 속에 의회도 긴축 재정 운영에 앞장서고자 일부 삭감함.

'기타직보수(시간선택제 6급 상당)' 예산과 관련하여, 시간선택제 6급상당 전문인력 확보는 현재 4명의 법률고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어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의 특수성과 다양성, 전문성을 감안한 복잡 다변한 행정전문 변호사 채용이 어렵고, 경력 많은 변호사가 아닌 신입변호사가 채용이 될 경우 다양한 분야의 법률자문, 소송수행 방향성 제시 등 즉각적인 행정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됨. 특히, 고소득을 보장받는 변호사를 공무원 임금체제의 인건비로는 채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다른 지자체의 경우 몇 차례 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어 유명무실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향후, 행정의 전문성이 확보된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현행대로 운영하거나 법률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현재 4명의 법률고문변호사를 줄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회 예산안에서 삭감하였음.

'퇴임자 공로패 및 배우자 감사패 제작', '퇴임자 기념영상물 제작' 예산과 관련하여, 한 직장서 근무하고 퇴직하는 공무원 퇴직은 축하받을 일이지만 과도한 예산을 들여 퇴직기념품 제공 관행이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퇴직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은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반드시 주민들의 체감온도와 눈높이에 맞게 편성할 것을 조건부로 하여 2020년 당초 예산을 심의하였음.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및 자료 수집', '직원하계휴양소 임차', '조직공동체 소통워크숍', '구청사 전기요금' 예산의 경우, 매년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일부 삭감하였음.

'도시 꽃단지 조성' 사업 예산의 경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일부 불필요한 꽃도시 조성 관련 콘테스트, 초화 및 파종용 종자 구입비, 평가시상금은 삭감하며, 꽃동산 및 꽃길 조성 시 다년생 꽃과 관목류 등을 식재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 다음은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요구 사항으로, '지방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함에도 몇 단체

는 아직까지 미흡한 정산 업무 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보조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기준 및 절차 등을 반드시 지도하여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기 바람. 또한 각 단체의 활동이 일반 주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여성 위생용품 자판기 구입' 예산과 관련하여, 금년 9월 개정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내용에 여성 및 청소년이 다수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 여성들의 필수 보건위생용품을 비치하여 여성의 건강권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였음에도 2020년 예산에 2개소만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된 조례의 취지에 맞게 확대되도록 적극 검토하여 조치하기 바람.

'어린이날 행사',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예산과 관련하여, 어린이날 행사 예산이 감액 되었는데 향후에는 아동친화도시 추진과정 및 절차에 맞추어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주기 바라며, 청소년을 위한 천곡 꿈의마루 바닥 개선 예산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기 바람.

'매곡천 친수환경 조성 사업', '신명천 피해복구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매곡천 친수환경 조성 사업 시 조경수 식재에 대하여는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해 주기 바라며, 신명천 피해복구사업은 세굴되는 부분을 확인 후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추후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수 공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건강지도자 양성'과 관련하여, 평생학습 건강 강좌 개설로 경력 단절된 여성 및 관심 주민을 건강지도자로 양성하여 재취업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주변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조직공동체 소통 워크숍' 의 경우, 평소 업무 외적으로 교류가 적었던 직원 간의 실질적인 친교의 시간이 되고 일상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기 바람.

'공공청사관리' 와 관련하여 구청사 시설 유지 관리 시, 특정업체와의 과다한 계약을 지양하고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아 업무를 추진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지역업체를 이용하기 바라며, 직원들의 사무 능률이 바로 주민 복지와 연결되는 사항이므로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기능성 가구 구입에 신경 써 주기 바람.

또한 구청 광장 내 경관조명 설치 사업 추진 시 용적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기존 나무의 구조물을 이용하는 것보다 새로운 구조물을 이용하여 구 청사의 미관을 고려하고, 국회 전시회와도 조화로운 경관이 되도록 계획 초기 단계부터 세심하게 노력하여 주기 바람.

'달천철장 갱도 복원 및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하여 적지 않은 예산이 용역비로 편성되었는데 전문가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환경성 검토도 고려하여 추진하기 바람.

아울러 소중한 문화자산을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용역을 추진하기 바라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보육서비스 강화' 와 관련하여, 보육서비스 강화, 출산율 제고 및 보육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일부 지역의 결원, 민간어린이집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급간식비 추가 지원, 교사 인건비 보전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재난재해 예방' 과 관련하여, 지진, 원자력, 정전, 통신두절 등 다양한 복합재난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에 대한 검토를 하여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대피요령 및 행동요령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주기 바라며, 원전 사고 시 주민들이 적절한 지원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람.

'각종 도시재생사업' 과 관련하여,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부서와 현장지원센터와 긴밀한 소통과 참여를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력증원, 직원 및 코디의 역량강화, 충분한 성과평가를 통하여 소통하는 마을을 만드는데 기여하기 바람.

기타의견으로, 지방보조금 심의 대상 단체 및 도시문화 아카이빙 기억이

음사업 등과 관련하여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되는 단체들 간 사업들이 중복되고, 단체별 특색 있는 사업들이 부족하며, 매년 동일한 사업들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다고 판단되어, 향후 효율적이고 단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3년 주기의 사업 일몰제를 운영 추진할 것을 권고함.

또한 도시문화 아카이빙 기억이음 사업의 경우, 역사적 스토리를 조사 발굴하고, 기록하여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영상, 다큐멘터리로 제작 추진하는 사업으로 참신하고 신선한 시책으로 판단되나, 계획수립 후 충분한 자료 수집을 통해 완성도 높은 사업으로 추진하고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대안을 갖고 추진하기 바람.

'영상디스플레이 장치 구입' 과 관련하여, 지적전산 관리 영상디스플레이 장치 구입 시 활용도를 고려한 이동이 용이한 물품으로 구입하여 이용과 활용성을 높이고 초기 계획에 따라 해당 부서에 우선 배치하기 바람. 또한, 물품의 상태, 제품 사양, 금액 등 용도에 적합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여 주시고, 당초예산에 확보된 금액 부족 시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더라도 사용 용도에 맞는 적정한 물품을 구입하기 바람.

○ 예산은 우리 구 전체의 균형발전과 미래를 준비하는 내용으로 편성하여야 함. 전 구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림.

6. 심의결과 : 수정가결

제11절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2. 4.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본회의 상정일자 : 2019. 12. 13.

라. 심의기간 : 2019. 12. 17. ~ 12. 19.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가. 구성일자 : 2019. 12. 3.

나. 구성인원 : 7명

○ 위원장 : 이진복 위원

○ 간 사 : 임수필 위원

○ 위 원 : 백현조 위원, 임채오 위원, 박상복 위원, 정외경 위원, 이정민 위원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회계별		2019년 예산액 (3회추경)	%	기정 예산액 (2회추경)	%	증감	비고 (일시차입 한도액)
계		388,150,908	100.00	372,281,719	100.00	15,869,189	11,644,527
일반회계		384,551,842	99.07	372,281,719	99.03	15,869,067	11,536,555
특별회계		3,599,066	0.93	368,682,775	0.97	122	107,972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97,470	0.05	3,598,944	0.05	122	5,92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55,700	0.01	197,348	0.01	-	1,671
	폐기물처리시설	837,770	0.22	55,700	0.23	-	25,133
	주차장	2,508,126	0.65	837,770	0.67	-	75,244

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 요구액 (A)	예산심의내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시 차입금 한도액
			삭감액(B)			예비비			
			세입	세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계		388,150,908	-	△30,000	-	1,980,630	2,010,630	388,150,908	11,644,527
일반회계		384,551,842	-	△30,000	-	1,464,992	1,494,992	384,551,842	11,536,555
특별회계		3,599,066	-	-	-	515,638	515,638	3,599,066	107,972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97,470	-	-	-	-	-	197,470	5,92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5,700	-	-	-	-	-	55,700	1,671
	폐기물처리시설	837,770	-	-	-	-	-	837,770	25,133
	주차장	2,508,126	-	-	-	-	-	2,508,126	75,244

5. 심의의결 요지

□ 세입 분야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8억 6,918만 9천원이 증액된 3,881억 5,090만 8천원임.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5,000만원, 지방교부세 58억 2,000만원, 조정교부금등 5억 2,000만원, 보조금 95억 822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 2,903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세출 분야

○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8억 6,918만 9천원이 증액된 3,881억 5,090만 8천원임. 이 중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억 7,556만 1천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에 4억 4,181만 6천원, 교육 분야에 2백만원, 문화및관광 분야에 27억 7,198만 5천원, 사회복지 분야에 66억 8,670만 1천원, 보건 분야에 1,197만원 2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5억 7,376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4,226만 8천원, 수송및교통 분야에 44억 6,336만 3천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6억 549만 9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환경보호 분야에 2억 1,499만 6천원, 예비비에 1,294만 3천원, 기타 분야에 6억 7,779만 7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금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근본 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음.

○ 먼저,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조직개편 및 정기인사에 따른 총무과 사무비품 구입 및 보건소 사무실 시스템 냉난방기 예산 삭감은, 이번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결에 따른 사항으로 이후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 계획을 면밀히 수립한 후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면밀한 사업계획에 따른 정확한 예산추계가 필요하고, 예산 삭감 사유 발생 시 1,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삭감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며 주민 편익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또한 우리 구의 주요 현안 사업 시행 시, 주민들의 민원 발생 예방과 홍보를 위해, 사업 시행 전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자료 공유와 충분한 사전 설명을 통해 사업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꼭 필요한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미세먼지 저감조치 살수차 임차와 관련하여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이하일 경우라도 살수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고, 특히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에도 신경 써 주기 바람. 어린이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CCTV 확대·설치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아동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마지막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심의 이전에 예산 편성 취지, 필요성 등에 대해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여 원활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림.

○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 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예산 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6. 심의결과 : 수정가결

제12절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4. 13.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0. 4. 20.
라. 심의기간 : 2020. 4. 22. ~ 5. 1.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가. 구성일자 : 2020. 4. 20.
나. 구성인원 : 7명
○ 위원장 : 정외경 위원
○ 간 사 : 이정민 위원
○ 위 원 : 백현조 위원, 임채오 위원, 정치락 위원, 임수필 위원, 이진복 위원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천원)

회계별		2020년 예산액 (1회추경)	%	기정 예산액 (당초예산)	%	증감	비고
계		426,612,844	100.00	373,435,078	100.00	53,177,766	
일반회계		422,811,169	99.11	370,976,966	99.34	51,834,203	
특별회계		3,801,675	0.89	2,458,112	0.66	1,343,563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87,362	0.04	171,191	0.05	16,17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77,643	0.02	76,100	0.02	1,543	
	폐기물처리시설	1,754	0.00	1,754	0.00	-	
	주차장	3,534,916	0.83	2,209,067	0.59	1,325,849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 4,266억 1,284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31억 7,776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됨.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709억 7,696만 6천원보다 518억 3,420만 3천원이 증가된 4,228억 1,116만 9천원으로 13.97%가 증액 편성됨.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4억 5,811만 2천원보다 13억 4,356만 3천원이 증가된 38억 167만 5천원으로 54.66%가 증액 편성됨.

□ 세입 예산(안)의 경우

○ 일반회계는

• 세외수입 20억 1,244만 3천원, 지방교부세 8억 8,000만원, 조정교부금등 57억 1,000만원, 보조금 332억 992만 5천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00억 2,183만 5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됨.

○ 특별회계는

• 교통주·정차시설 설치 등에 13억 4,356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됨.

□ 세출 예산(안)의 경우

○ 기능별로 살펴보면,

• 교육 분야 25억 484만원,
• 문화및관광 분야 55억 916만 8천원,
• 사회복지 분야 228억 776만 3천원,
• 농림해양수산 분야 50억 88만 7천원,
• 교통 및 물류 분야 41억 7,483만 8천원,
•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81억 4,953만 9천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환경 분야 2억 4,334만 3천원,
• 예비비 분야에 6억 70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됨.

○ 성질별로는

• 경상이전으로 일반보상금, 이주및재해보상금, 민간이전 등 189억 8,193만 3천원,
• 자본지출로써 시설비및부대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274억 9,238만 4천원 등이 증액 편성됨.

4. 심의의결 요지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편성의 근본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하였음.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시비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되었으며, 구 자체예산이 부족한 시기에 집행기관에서 직원 교육을 위한 조직공동체 소통워크숍 2억5천만원 등 코로나19 재원 조달을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자발적으로 삭감하여 주신 데 감사드림.

○ 이번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권고 및 시정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기 바람.

○ 먼저,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매곡천 스토리텔링 사업 관련하여 매곡천에 친수환경 및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매곡천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홍보비용 대비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과다하게 편성된 면이 있어 요구액 중 일부를 삭감 조치하였음.

전통사찰 보수 정비 관련하여 신흥사 진입교량 및 주변석축 보수 사업은 시와 협의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비 재원조달이 여의치 않아 집행부의 의견을 검토하여 요구액 전액을 삭감하였음.

○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캐릭터 활성화 사업 관련하여 인건비는 경직성 예산으로서 편성되면 삭감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인력 증원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며,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내실있는 인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또한, 주민을 직접 만나는 대면접촉 방식보다는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이용한 비대면 접촉방식 등도 함께 강구하여 주기 바람.

민간어린이집 등 지원과 관련하여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은 운영에 있어 많은 애로 사항이 있으며, 울산의 타구군과 비교해서 조리사·보육교사의 처우개선·시설환경개선·코로나19 방역지원 등

열악한 부분은 여러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각종 사회복지예산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예산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있으나 수혜자나 수혜 현장에 있어서는 소외 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세밀한 복지체계 구축을 통하여 매년 증가되는 복지예산이 수혜자에게 체감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어려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도 시행하여 주기 바람.

매곡천 경관조명 설치 사업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지역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어려운 시기에 있으나 본 사업은 매곡천 친수환경 조성 사업과 연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도시재생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건축, 건설 등 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넘어 도시재생의 취지에 맞게 공동체 복원, 마을 활성화 등에 대하여 역점을 두고, 특히 코디들의 역량 강화에 힘써주기 바라며, 아울러 청년문화혁신플랫폼 사업처럼 도시재생 취지에 걸 맞는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람.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에 사전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짧은 심의기간 내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많음.

향후에는 신규 사업이나 당초 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 시 나타난 권고와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5. 심의결과 : 수정가결

제13절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5. 29.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0. 6. 10.
라. 심의기간 : 2020. 6. 11. ~ 6. 19.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가. 구성일자 : 2020. 6. 10.
나. 구성인원 : 7명
○ 위원장 : 임수필 위원
○ 간 사 : 임채오 위원
○ 위 원 : 백현조 위원, 정치락 위원, 정외경 위원, 이정민 위원, 이진복 위원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제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세 입 결 산 액	세 출 결 산 액	세 계 잉 여 금
합 계		429,688,145,508	443,858,842,065	390,081,830,532	53,777,011,533
일 반 회 계		426,014,539,418	439,711,660,463	387,114,446,174	52,597,214,289
기타특별회계	소 계	3,673,606,090	4,147,181,602	2,967,384,358	1,179,797,244
	의료급여기금	197,470,000	209,646,260	193,994,850	15,651,41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55,700,000	55,763,930	54,221,970	1,541,960
	폐기물처리시설	837,770,000	839,524,530	837,770,000	1,754,530
	주 차 장	2,582,666,090	3,042,246,882	1,881,397,538	1,160,849,344

○ 세 입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429,688,145,508	455,188,837,642	443,858,842,065	702,492,870	10,627,502,707
일 반 회 계	426,014,539,418	450,192,152,095	439,711,660,463	702,492,870	9,777,998,762
기타특별회계	3,673,606,090	4,996,685,547	4,147,181,602	-	849,503,945

○ 세 출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 조 금 반 납 금	집 행 잔 액
합 계	429,688,145,508	390,081,830,532	32,015,822,516	2,606,326,586	4,984,165,874
일 반 회 계	426,014,539,418	387,114,446,174	31,903,895,426	2,550,268,316	4,445,929,502
기타특별회계	3,673,606,090	2,967,384,358	111,927,090	56,058,270	538,236,372

○ 세계잉여금

(단위 : 원)

회 계 별	계	순세계잉여금	이 월 액			보조금반납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53,777,011,533	19,203,966,817	6,664,853,790	292,147,780	25,058,820,946	2,557,222,200
일반회계	52,597,214,289	18,192,154,933	6,664,853,790	246,927,860	24,992,113,776	2,501,163,930
기타특별회계	1,179,797,244	1,011,811,884	-	45,219,920	66,707,170	56,058,270

4. 심의의결 요지

□ 2019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은

예산편성 시 우리 구의 세입전망과 분석을 통해 편성하였는지 여부와 세입징수율 제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음.

□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 내용은

○ 예산현액은 4,296억 8,814만원으로 수납액이 4,438억 5,884만원, 지출액이 3,900억 8,183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537억 7,701만원임.

○ 일반회계 결산 예산현액은 4,260억 1,453만원으로 수납액이 4,397억 1,166만원, 지출액이 3,871억 1,444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525억 9,721만원임.

○ 기타 특별회계 결산 예산현액은 36억 7,360만원이며 수납액이 41억 4,718만원, 지출액이 29억 6,738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1억 7,979만원임.

□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 세입 부문에 있어

지방세에 있어서 지난년도 체납액의 지속적 발생은 우리 구 재정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 징수대책을 통한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특히, 납세태만에 의한 미수납액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각 부서에서는 과징금 및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는 사례 등을 주민들에게 사전 안내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림.

○ 세출 부문에 있어

예산 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며, 면밀한 조사와 신중한 예측을 통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또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예측되는 집행 잔액은 추경 시 삭감하여 반납된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임.

○ 각 분야별 추진 사업 중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동간 경계를 넘어 상호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불필요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관광 활성화사업 추진 관련 단체관광객 실적이 예년보다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저조한 상황임. 힐링, 레저, 어린이 안전 등 다양한 테마와 코스 개발이 필요하며, 우리구 관광지의 장점을 한눈에 부각시킬 수 있는 여행안내지도 제작 등 다양한 활성화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주시기 바람.

복지부문에 있어 최근 아동 학대와 관련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폭력예방 및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또한,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인상을 적극 검토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람.

자연재해부문에 있어서는 매년 반복되는 재난지역에 대하여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시고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으로 예방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람.

○ 또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임. 현재 일부 기금의 경우 기금 사용 실적이 저조하므로 향후 관리부서에서는 기금 조례가 정하는 목적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적절히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람.

○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는 총 73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40개의 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음. 목표 및 실적이 각각 100(%)로 작성되었는데, 건수·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고, 매년 성과목표 설정 시 명확한 근거에 의하여 증감치를 반영해 주시기 바람. 성인지결산서의 경우에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미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비합리적이거나 실적이 없는 자료 등은 개선하여 주시기 바람.

○ 이상과 같이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 판단하는 과정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충분한 업무연찬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림.

5.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4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5. 29.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심의일자 : 2020. 6. 1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경비를 위하여 지출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단위 : 원)

회계별	사 업 명	결정일자	지출일자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2건			82,650,000	82,650,000	-	-	
일반회계	이상저온 피해에 따른 농작물 복구지원	'19. 7. 17.	'19. 7. 26.	5,950,000	5,950,000	-	-	
	제17호 태풍 '타파'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19. 11. 8.	'19. 11. 12.	76,700,000	76,700,000	-	-	

3. 심의의결 요지

○ 「지방재정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19년도 예비비 지출은 2건으로 지출결정액 총 8,265만원 중 8,26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및 집행 잔액은 없음.

○ 2019년도 예비비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보면 이상저온 피해에 따른 농작물 지원 건은 사업량 28농가 134,345㎡에 대하여 595만원을 적정하게 집행하였으며, 침수·강풍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건은 사업량 주택·농작물 147건에 대하여 7,670만원을 적정하게 집행하였음.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5장

행정사무감사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사항
제1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제2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제3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제4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사항
제5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제6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제7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제8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제1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1. 감사개요

가. 감사의 목적

○ 2018년 구정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 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나. 근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다. 감사기간 : 제179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8. 11. 21. ~ 11. 29.)

라. 감사장소 : 북구의회 소회의실

마. 감사의 주체 : 본회의

○ 의　　장 : 이 주 언
○ 부 의 장 : 백 현 조
○ 의　　원 : 전 의 원
○ 전문위원 : 허사영, 최상규
○ 사무직원 : 황영지, 박영석

2. 감사대상 기관(부서) 및 증인 출석요구 공무원

감사대상 기관	감사대상 부서	출석요구공무원			비고
		직	성명	전임자	
울산광역시 북구		구청장	이동권		
		부구청장	정호동		
	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총무과장	윤일호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도서관과장	이득필		
		세무과장	정해우		
		민원지적과장	서상달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농수산과장	김수호		
		환경위생과장	김정열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건설도시국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건설과장	신동운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도시과장	정갑균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보건소	보건소장	손정미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감사대상 기관	감사대상 부서	출석요구공무원			비고
		직	성명	전임자	
울산광역시 북구	전 동	농소1동장 농소2동장 농소3동장 강동동장 효문동장 송정동장 양정동장 염포동장	김근철 류춘호 김도원 곽내영 오세천 권오걸 한영석 초금희		

○ **관계 공무원 출석**

- 출석기간 : 제179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8. 11. 21. ~ 11. 29.)
- 출석장소 : 감사장(소회의실), 대상 현장
- 기 타 : 당일 감사대상 부서의 출석 공무원은 항상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 출석 공무원은 대상사무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3. 행정사무감사 일정

구 분 / 일 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18. 11. 21.(수)	10:00	소회의실	◦증인선서 •국·소·실·과·동장 ◦기획홍보실 ◦보 건 소 ◦의회사무과	
2018. 11. 22.(목)	10:00	〃	◦행정지원국 •총 무 과 •자치행정과 (행정복지센터 포함 : 농소1동·농소3동 ·효문동·양정동) •문화체육과	
2018. 11. 23.(금)	10:00	〃	◦행정지원국 •관광해양개발과 •도서관과 •세 무 과 •민원지적과	
2018. 11. 24.(토)		휴 회		
2018. 11. 25.(일)		휴 회		
2018. 11. 26.(월)	10:00	소회의실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2018. 11. 27.(화)	10:00	〃	◦복지경제국 •경제일자리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2018. 11. 28.(수)	10:00	〃	◦건설도시국 •건 설 과 •안전정보과 •도 시 과	
2018. 11. 29.(목)	10:00	〃	◦건설도시국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4. 감사자료 제출 요구

○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

계	공 통	기획홍보실	행정지원국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446	26	21	140	137	91	24	7

※ 감사 당일 제출될 자료와 관련된 서류 일체

○ 제출서류

○ 행정사무감사 자료 : 파일 및 책자(18부)로 제출

○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 파일 및 책자(18부)로 제출

- 기본 현황(기구, 정원·현원, 분장사무현황) : 실·국·소, 과·동별 작성
- 2018년도 예산 집행 현황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 20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세부 처리결과(완결 포함)
- 2017. 10. 1. ~ 2018. 9. 30. 구정 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감사범위 : 2017. 10. 1. ~ 2018. 9. 30.

※ 요구 자료에 따라 감사범위(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감사 관련 필요한 별도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작성기준일 : 2018. 9. 30. 현재

○ 제출기한 : 2018. 11. 5.(월)

5.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1. 감사 선언(의장)
2. 의장 인사
3. 증인 선서(집행기관)
4.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 소개
5.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6. 서류 검증 또는 현지 확인
7. 감사 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6. 증인 선서 방식

○ 선서장소 : 감사장(소회의실)

○ 선서방법

• 감사 첫날 국·소·실·과·동장 일괄 실시 - 35명
(국장 3명, 소장 1명, 실·과장 23명, 동장 8명)

• 선서문 낭독(대표) : 행정지원국장

○ 선서문 : 감사 첫 날(11. 21.(수) 선서 후 일괄 제출

7. 행정사항

○ 감사장 설치 : 전 직원

○ 감사지적사항 당일 작성 제출 : 감사의원

○ 감사지적사항 취합 작성 : 황영지, 박영석

○ 녹음, 녹화 등 회의록 작성 : 엄현주 외 1명

○ 현장확인 활동(필요시)

• 준비사항 : 차량, 장비 및 담당 공무원 현지 안내

8. 동주민센터 연도별 행정사무감사 계획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비 고
계	4개동	4개동	
농소1동	○		
농소2동		○	
농소3동	○		
강 동 동		○	
효 문 동	○		
송 정 동		○	
양 정 동	○		
염 포 동		○	

※ 감사자료는 전체 동에서 작성 제출하고 해당연도 감사대상은 동장이 출석하여 답변

9.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현황

구 분		요구건수	비 고
합 계		446	
공 통 사 항		26	
기 획 홍 보 실		21	
행정지원국	소 계	140	
	총 무 과	28	
	자치행정과 · 동주민센터	37	
	문화체육과	32	
	관광해양개발과	9	
	도 서 관 과	10	
	세 무 과	11	
	민원지적과	13	
복지경제국	소 계	137	
	복지지원과	9	
	사회복지과	19	
	가족정책과	25	
	경제일자리과	16	
	농 수 산 과	25	
	환경위생과	20	
	환경미화과	23	
건설도시국	소 계	91	
	건 설 과	22	
	안전정보과	17	
	도 시 과	14	
	공원녹지과	14	
	교통행정과	12	
	건축주택과	12	
보 건 소		24	
의 회 사 무 과		7	

【전부서】

<table>
<tr><th>소관
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공통
사항]</td><td>
1.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 현황
<table>
<tr><th>민원명</th><th>접수일자</th><th>처리일자</th><th>민 원 인</th><th>민원내용</th><th>처리결과</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2. 인·허가 처리 불가 및 반려된 내역(사유)
3.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 현황 및 처리결과
4. 고소, 고발 사건 현황 및 결과, 발생비용
5. 각종 공사 추진 현황
※ 사업비 300만원 이상, 담당별, 사업 성격별, 사업추진 기간 순으로 작성
설계단계, 계약 및 완료건 모두 포함 /필요시 공사 전·후 사진 사본 요구
<table>
<tr><th>공 사 명
(사업명)</th><th>사 업 개 요
(기간, 위치, 세부사업내역 등)</th><th>사업비</th><th>공정률</th><th>시공업체</th><th>예 산
확보시기</th></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6.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
<table>
<tr><th>사업명</th><th>용역종류</th><th>용역비</th><th>착수일자</th><th>완 료
일 자</th><th>용 역
결 과</th><th>계약자</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7. 2018년도 이월사업 현황(계속비·명시·사고이월) 내역 및 추진 현황
8. 공사금액 1억원 이상 설계변경 내용
<table>
<tr><th>공사명</th><th>변경사유</th><th>공사금액
증 가 액</th><th>설계변경
요 청 자</th><th>설계자</th><th>비 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9. 3,000만원 이상 도급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관리 현황 및 하자발생 처리 내역
1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도로, 공원, 공공건물, 공공이용시설)
- '17. 10. 1. 이후 신규 설치분만 작성
11.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황
- 위탁·용역 현황 : (붙임 2)
- 위탁·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 : (붙임 3)
12. 주민참여감독 운영 현황(공사명, 기간, 공사금액, 감독 인적사항)
13. 각종 공사에 따른 각 동 통보를 위한 공문발송 내역
<table>
<tr><th>해당동</th><th>통보일자</th><th>공사명</th><th>공사개요</th><th>통보내용</th><th>비 고</th></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
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공통
사항]</td><td>
14. 지방보조금(구.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집행내역
- 2017. 10. 1. ~ 2018. 9. 30.
(일반 민간단체-민간경상보조사업보조금 지원 포함)
<table>
<tr><th rowspan="2">단체명</th><th rowspan="2">세부사업내용</th><th rowspan="2">사업기간</th><th colspan="3">예 산 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잔액</th><th rowspan="2">비고</th></tr>
<tr><th>계</th><th>보조금</th><th>자부담</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 부서 개별사항에 중복 요구일 경우 공통사항은 생략 가능
15.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각종 사업비 집행에 따른 단체나 업체 등으로부터 환수 받은 내역
<table>
<tr><th rowspan="2">환수일</th><th rowspan="2">사업명</th><th colspan="2">환수대상</th><th rowspan="2">환수사유</th><th rowspan="2">금액</th><th rowspan="2">비고</th></tr>
<tr><th>성명(업체,기관,단체명)</th><th>주소</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16. 바우처 사업 현황
- 사업개요(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대상, 참여자 현황, 실적, 예산, 사업주체 등)
17.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
<table>
<tr><th rowspan="2">번호</th><th rowspan="2">차량명</th><th rowspan="2">차량번호</th><th rowspan="2">구입일</th><th rowspan="2">용도</th><th rowspan="2">상태</th><th colspan="3">수리내역</th><th rowspan="2">유류비</th><th rowspan="2">비고</th></tr>
<tr><th>일자</th><th>내역</th><th>비용</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18. 단위사업별 기간제 근로자(일시사역인부 포함) 채용 현황
<table>
<tr><th>부서명</th><th>성명</th><th>성별</th><th>나이</th><th>주소</th><th>사역기간</th><th>사역목적</th><th>단가(원)</th><th>채용
방법</th><th>비고</th></tr>
<tr><td></td><td>김○○</td><td></td><td></td><td>○구 ○○동</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작성기간 : 2017. 10. 1. ~ 2018. 9. 30.
19. 부서별 선진지 견학 추진 실적(국외 포함)
<table>
<tr><th>기간</th><th>지역</th><th>인원</th><th>목적</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예산편성부서에서 작성하되, 위탁 견학 포함
20. 공무원 교육, 주민교육 실시 현황 및 실적·평가
※ 공무원 교육은 교육원 교육 제외. 부서별 직원(주민) 교육, 연수, 워크숍, 세미나 등(위탁 교육 포함)
2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붙임 1)
22.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붙임 1)
23. 국가·시 등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세부추진상황
</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
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공통
사항]</td><td>
24. 심사와 관련한 위원회 개최 현황
<table>
<tr><th>위원회명</th><th>개최일시</th><th>주요안건</th><th>심사방법</th><th>심사결과</th><th>비 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심사기준표 첨부 제출

25. 행사·축제 개최 현황
(단위:천원)
<table>
<tr><th>사 업 명</th><th>개최일시</th><th>장 소</th><th>예산액
/집행액</th><th>주요내용
(요약)</th><th>비 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26. 각 실과에서 제작한 홍보물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현황
(인쇄 및 온라인 홍보물 모두 포함)
<table>
<tr><th>평가년도</th><th>사 업 명</th><th>홍보주제</th><th>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여부</th><th>비 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td><td></td></tr>
</table>

(붙임 1)

□ 기관운영(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 예산과목 :

사용일	사용액	지 출 처	지출목적(내용)	대상인원 (○○○외 0명)
계				
년, 월, 일 명시				※ 대표 1인 실명 또는 직책 명시

※ 예산과목(203-01, 203-03) 별지 작성, 지급연도를 구분하여 연도별 합계 계산

(붙임 2)

□ 위탁용역 현황(2018년도)

위탁 부서 및 기관	위탁 용역 업무명	수탁 용역 기관	계약 기간	모집 방법	재계약 횟수	총 수탁 기간	입찰 참여 업체수	입찰 예정 가격	수탁 총액 (낙찰가격)	수탁 업체 고용 인원	수탁자 선정 방법과 근거

※ 작성방법

(1) 민간위탁과 용역 업무를 구분 작성

(2) 모집방법은 일반경쟁, 공개경쟁, 수의계약, 조달청 등으로 분류

(붙임 3)

□ 위탁·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2018년도)

구분	위탁기관명		위탁용역업무명	수탁용역기관			근로계약서	임금	상여금	퇴직금	근로시간	법정수당	법정휴가	사회보험	계약기간	근속기간	재계약방법
	실국	부서명		업체명	구성	인원(명)											
본청	기획홍보실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행정지원국	총무과			:												
		…			:												
		…			: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															
		…															
	…	…															
의회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보건소																
	농소1동																
	…																

(1) 구성
- ㅇ 정규직 : 계약기간 정함 없이 상시 고용된 자
- ㅇ 계약직, 임시직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 ㅇ 파견직 : 상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상이한 자

(2) 근로계약서 : 서면 근로계약서 있으면 ○, 없으면 ×
(3) 임금 : 2018. 7월 지급된 임금, 상여금 제외(천원단위)
(4) 상여금 : 연간 지급율(%)
(5) 퇴직금 : 퇴직금 지급대상 ○, 지급대상이 아니면 ×로 표기
(6) 근로시간 : 2018. 7월 실근로시간
(7) 법정수당 :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였으면 ○, 지급하지 않았으면 ×
(단, 사유가 없어 미지급하였으나, 사유발생시 지급할 것이라면 ○로 표기)
(8) 법정휴가 : 주휴, 연차유급휴가 등 법정휴가 부여 하였으면 ○, 미부여 하였으면 ×
(단, 부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미부여 하였으나, 충족될 경우 부여할 것이라면 ○)
(9) 사회보험 : 산재보험 1, 고용보험 2, 국민연금 3, 건강보험 4로 하여 적용되는 것의 번호를 모두 기재
(예 : 1, 3 / 1, 2, 3, 4)
(10) 계약기간 : 계약기간이 없으면 무기, 계약기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입
(11) 근속기간 : 평균 근속기간
(12) 재계약방법 : 자동갱신 1, 재선발(공개채용) 2, 재계약 안 됨 3

【기획홍보실】

<table>
<tr><th>소관
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기획
홍보실</td><td>
1. 구청장 공약사업 이행현황, 공약이행율, 향후계획
2. 공무원 창의정책연구모임 운영 실적과 내용 및 구정반영여부
3. 공무원 제안 운영 실적
4. 구민창안제도 운영 실적
5. 위원회 현황 관련(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각종 협의회 포함)
① 위원회 현황
(2018. 9. 30. 현재)
<table>
<tr><td>구 분</td><td>계</td><td>법령</td><td>조례</td><td>기타 규정</td></tr>
<tr><td>설치근거별</td><td></td><td></td><td></td><td></td></tr>
</table>
<table>
<tr><td>구 분</td><td>계</td><td>심의</td><td>의결</td><td>자문</td><td>협의</td></tr>
<tr><td>성격별</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② 위원회 위원 현황
<table>
<tr><td rowspan="3">위원회명</td><td rowspan="3">위원장</td><td colspan="6">위 원 수</td><td rowspan="3">임 기</td></tr>
<tr><td rowspan="2">계</td><td rowspan="2">남</td><td rowspan="2">여</td><td rowspan="2">당연직
임명직</td><td colspan="3">위 촉 직</td></tr>
<tr><td>공무원</td><td>시·구의원</td><td>민간위원
(시민단체)</td></tr>
<tr><td>총계</td><td>구청장( )
부구청장( )
국장( )
민간위원( )</td><td></td><td>0</td><td>0</td><td>0</td><td>0</td><td>0</td><td>0</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③ 위원회 개최 현황
<table>
<tr><td rowspan="2">위원회명</td><td rowspan="2">회의주기</td><td rowspan="2">개최횟수
(서면)</td><td rowspan="2">회의록</td><td colspan="3">예산집행내역</td></tr>
<tr><td>예산액
(천원)</td><td>인원
(명)</td><td>집행액
(천원)</td></tr>
<tr><td>총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위원회 관리카드(설치근거, 목적, 설치일, 위원 명단 등) : 별도 제본 제출
④ 신규 설치 위원회 현황
<table>
<tr><td>소관부서</td><td>위원회명</td><td>설치일자</td><td>설치근거</td><td>비고</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⑤ 위원회 개최에 따른 식비 집행내역
<table>
<tr><td rowspan="2">소관부서</td><td rowspan="2">위원회명</td><td colspan="4">집행내역</td><td rowspan="2">비고</td></tr>
<tr><td>일시</td><td>장소</td><td>참석인원</td><td>소요금액</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td><td></td></tr>
</table>

소관 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기획 홍보실	6.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위원 구성 현황, 운영 실적 및 성과, 예산집행액 7.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내역(2017년, 2018년) 8.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 '18년 참여예산제 운영계획서 - 시민위원 현황(추천단체 및 소속, 거주지 포함, 타 단체가입 현황) -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현황 및 실적(일정, 교육대상, 주제, 참석인원) - 조정위원회 조정결과 - 지역위원회 구성 현황 및 개최현황, 소규모 사업 및 정책 사업 제안 주민 의견 수렴 자료 - 연구회 연구 현황, 연구실적 9. 주민참여예산제 2018년도 당초예산 반영내역 10. 지방보조금 정산 및 평가방법, 개선결과, 회의 개최 현황 11. 예산절약 인센티브제 운영 실적 - 인센티브 종류(해외연수기회 제공 등) 12. 우리 구 채무 현황(지방채, 보증채무 등) 13. 구정홍보 관련 업무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14. 행정심판 및 소송(행정, 민사) 현황 신규 사건 및 작성기준일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의 사건 접수(제소 포함)일, 사건내용, 담당부서, 진행상황, 결과, 비용(패소나 조정에 따른 배상비용 포함 등) ※ 위 기간 동안 사건 완료 건도 포함 15. 고문변호사 활동 현황 및 실적 16. 동 종합감사 실시 결과 및 조치내역 (동명, 감사기간, 지적사항, 조치사항, 징계 처분사항, 모범 사례) 17. 구민감시관제, 명예구민 감사관제 및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실적 18. 자체감사·특별감사·광역시·행안부·감사원 감사의 목적, 감사내용, 감사기간 및 결과 조치사항 19. 계약심사 현황 및 추진 실적 20. 구정성과, 구정홍보 영상물 예산집행 내역 (※ 영상물 별도 제출) 21. 국민신문고 접수현황, 처리절차, 수상현황 등	

【행정지원국】

<table>
<tr><th>소관
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총무과</td><td>
1. 청사 내 직원 휴식 공간 등 복지시설 설치 현황
2. 구청 어린이집 현황
- 원생 수, 교사 현황, 북구청 지원사항, 보조금 집행내역,
시설 공사 현황 및 결산 자료
3.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사업 추진실적
4. 인력 운용 관련
- 전체 인력 현황 : 서식 - (붙임 1)
- 기관별 인력 현황 : 서식 - (붙임 2)
- 기타 인력 현황 : 서식 - (붙임 3)
5. 공무직 직원 현황과 급여 지급내역
(기준단가, 성과금,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현황)
6. 공무원 현황
- 6급 이하 공무원 현황(직급별, 연령대, 성별, 총 근무연수)
- 직급별 장애인 공무원 현황
- 행정 6, 7, 8급 공무원 성별 비율
- 최근 4년간 행정7급▸6급, 행정8급▸7급 승진자 현황
(성별 승진비율, 당해 직급 근무년수, 당해직급 근무부서 이력)
- 최근 3년간 동 공무원 성별 비율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2018년도(9.30.기준)</th><th colspan="3">2017년도(9.30.기준)</th><th colspan="3">2016년도(9.30.기준)</th></tr>
<tr><th>계</th><th>남</th><th>여</th><th>계</th><th>남</th><th>여</th><th>계</th><th>남</th><th>여</th></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동</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7. 5급 공무원 전보내역
<table>
<tr><th>대상자</th><th>부서명</th><th>근무기간</th><th>비 고</th></tr>
<tr><td rowspan="2"></td><td></td><td></td><td></td></tr>
<tr><td></td><td>~ 현재</td><td></td></tr>
</table>
8. 임기제 공무원 채용 현황
<table>
<tr><th>부서명</th><th>성명</th><th>직급</th><th>임용약정기간</th><th>업무</th><th>채용방법</th><th>월평균급여</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포함
9. 인사관련 민원 또는 직원고충 처리현황(건수, 처리결과)
※ 건수 : 주요내용별 건수
10. 민간인, 공무원 표창 수여 현황(2017년, 2018년)
</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
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총무과</td><td>
11. 공개입찰 계약 현황 - 2천만원 이상 (공사, 물품·용역)
<table>
<tr><th>발주부서</th><th>계약
일자</th><th>건명</th><th>사업량
(수량)</th><th>예정가</th><th>낙찰가</th><th>낙찰율</th><th>입찰참여
업체수</th><th>낙찰자</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12. 관급공사 계약 현황 -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발주부서명, 계약일자, 방법, 공사명, 설계금액, 계약금액, 계약업체(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13. 수의계약 현황 - 1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 부서명,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업체명
14. 계약위반업체 행정조치 현황
15.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16. 구청사, 보건소,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7개소
- 청소 관련 계약내역(총괄)
- 청사 내 실내화단 관리업체 관리비 내역
17. 공유재산 대부, 임대, 매각, 임대료 체납 등 관리 현황 (대상자, 지번, 지목, 면적 등 포함)
18. 공유 재산 취득 현황(구 소유 - 토지, 건물)
- 토지
<table>
<tr><th rowspan="2">연
번</th><th colspan="3">품 명</th><th rowspan="2">취득일</th><th rowspan="2">취 득
방 법</th><th rowspan="2">취 득
가 격</th><th rowspan="2">취 득
목 적</th><th rowspan="2">비고</th></tr>
<tr><th>소재지</th><th>지목</th><th>면적(㎡)</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건물
<table>
<tr><th rowspan="2">연
번</th><th colspan="3">품 명</th><th rowspan="2">취득일</th><th rowspan="2">취 득
방 법</th><th rowspan="2">취 득
가 격</th><th rowspan="2">취 득
목 적</th><th rowspan="2">비고</th></tr>
<tr><th>소재지</th><th>건축면적(㎡)</th><th>건축연면적(㎡)</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토지, 건물 - 연도별 구분, 부서별(소계) 작성
19. 대회의실 월별 사용료 수입/횟수 현황(사용자 표기), 대회의실 대여 현황(대여 단체, 행사명 등)
20. 구청사 개보수 내역
<table>
<tr><th>사업명</th><th>사업기간</th><th>사업내역</th><th>사업비</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21. 구청사 냉방기 가동 실적(가동 온도 기준, 지침 포함)
22. 구청사 전기료 사용내역(2017년, 2018년 월별 비교)
23. 중산행복샘 운영현황
</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
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총무과</td><td>24. 최근 3년간 한마음 연수 현황(무기계약직, 소수직렬 참가율 등),
심사실적 및 구정 반영 여부
25. 수의계약 구별 업체 계약 현황(500만원 이상)
(단위 : 건)
<table>
<tr><th>구 분</th><th>물 품</th><th>공 사</th><th>용 역</th></tr>
<tr><td>계</td><td></td><td></td><td></td></tr>
<tr><td>북 구</td><td></td><td></td><td></td></tr>
<tr><td>중 구</td><td></td><td></td><td></td></tr>
<tr><td>남 구</td><td></td><td></td><td></td></tr>
<tr><td>동 구</td><td></td><td></td><td></td></tr>
<tr><td>울주군</td><td></td><td></td><td></td></tr>
<tr><td>울산외</td><td></td><td></td><td></td></tr>
</table>
26. 제한업체와 계약 체결한 경우와 사유
27. 동 주민센터 내 카페 시설 계약 현황(계약방법 등)
28. 연간 태극기 도로 게양 현황(지급내역, 파손 현황 등)
※ 태극기 및 게양대 단가 포함</td><td></td></tr>
</table>

(붙임 1)

□ 전체 인력 현황(2018. 9. 30. 기준)

구분	지방공무원 인력										기타 인력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계	정무직	일반직	관리운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임기제	소방직	기타	계	전문실무원	시설관리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전 동																
:																

※ 위 표의 각 항목마다 현원을 기입하고 만약 정원과 현원이 다를 경우에는 (괄호)안에 정원을 표기

(붙임 2)

□ 기관별 인력 현황(2018. 9. 30. 기준)

구 분		지방공무원 인력									
		계	정무직	일반직	관리운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임기제	소방직	기타
계											
기획홍보실											
행정지원국	총 무 과										
	자치행정과										
	:										
	: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										
	:										
건설도시국	건 설 과										
	안전정보과										
	:										
	:										
의회사무과											
보 건 소											
농 소 1 동											
:											
:											

(붙임 3)

□ 기타 인력 규모(2018. 9. 30. 기준, 단, 일시사역의 경우 연인원을 표기)

구 분		업 무	기타 인력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계	전 문 실무원	시 설 관리원	환 경 미화원	청원 경찰	계	180일이하		1년 미만		1년 이상		
									현재	연 인원	현재	연 인원	현재	연 인원	
기획홍보실															
행 정 지원국	총무과	:													
		:													
		:													
	자 치 행정과														
	:														
:	:														
의회사무과															
보건소															
농소1동															
:															

※ 업무란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인원을 기입

<table>
<tr><th>소관
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자치
행정과,
동주민
센터</td><td>
1. 주민참여 추진 현황
2. 주민참여학교 운영 실적
3. 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및 문화탐방 추진 상황
4. 국민운동단체 및 민간 자생단체 현황, 예산 지원내역,
각 단체별 사업실시 현황
<table>
<tr><th rowspan="2">세부사업내용</th><th rowspan="2">사업기간</th><th colspan="3">예 산 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잔액</th><th rowspan="2">비고</th></tr>
<tr><th>계</th><th>보조금</th><th>자부담</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북구협의회 현황 관련
- 명단(회원경력 포함), 직업(소속단체), 사업 추진내용 및 결과, 예산 지원 내역
<table>
<tr><th>세부사업내용</th><th>사업기간</th><th>보조금 지원액</th><th>보조금 집행액</th><th>보조금
집행잔액</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6. 구청장 (연초) 동순회 방문 주민건의내용 처리 현황
7. 관내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및 운영 상황
8. 직원 친절교육 실시내용
9. 교육진흥재단 운영 상황
- 재단 기금 및 매년 장학금 집행실적, 향후계획
10. 교육경비지원 현황 및 세부 집행내역(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 2018년도 각 학교 및 유치원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요약분), 예산 포함
11.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12. 열린명사아카데미 운영실적, 식전공연 추진내용 및 실적
- 일시, 참여인원, 강사, 주제 등
- 예산 집행내역(강사수당 등 포함)
13. 제3대학 운영 실적
(강사·학생선발 과정 및 운영실적, 출석률)
14. 제3대학 졸업 후 활동실적
15. 비문해 사업기관 현황 및 지원 현황
</td><td></td></tr>
</table>

소관 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자치 행정과, 동주민 센터	16. 성인문해 활성화 사업 추진상황 전반 - 추진실적, 예산 집행내역 - 찾아가는 경로당 한글교실 운영 내역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17.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실적 18. 방범대 연합회 보조금 지원 내역 및 집행잔액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19. 생활공감모니터 운영 현황 20. 창의놀이터 운영 실적 21.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실적 (접수 및 선정, 진행현황, 공동체 심의위원회 회의록 등) 22. 민주평화통일북구협의회 해외연수 관련 실적, 정산, 사진 등 23. 구청장 공동주택 등 주민간담회 주민건의내용 및 처리현황 24. 동별 예산 집행 현황(동별 취합),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25. 각 동 공공요금(가스, 수도, 전기) 월별 사용량 및 요금 현황 (2017년, 2018년 월별 비교) 26. 동별 자율방범대 구성 세부 현황, 운영비 지원 내역 및 집행 잔액 ※ 필요시 정산서 및 활동일지 별도 요구 27.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장 회의 개최 현황 및 회의수당 집행내역(동별 회의일시, 총원, 참석현황, 수당지급 현황), 회의록 제목(안건) ※ 필요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별도 요구 28.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 29.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체계 개선실적 30. 소통과 공감의 힐링문화 조성(양정동) 실적 31. 농소3동 주민자치회 운영 실적 32.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사업실적	

<table>
<tr><th>소관
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자치
행정과,
동주민
센터</td><td>33.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
(사업내용, 소요인원 및 예산, 참가자 현황 등)
34. 2018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원 인력 분석 현황
(동별, 성별, 연령별, 소득 수준별, 세대주 유무 등 도표 작성)
35. 관내 마을기업 발굴 육성 현황(예산지원 내역 포함)
<table>
<tr><th rowspan="2">설립일</th><th rowspan="2">기업명</th><th rowspan="2">주생산품</th><th colspan="3">투 자 비</th><th rowspan="2">종사자수</th><th rowspan="2">월평균
매출액</th><th rowspan="2">비고</th></tr>
<tr><th>계</th><th>보조금</th><th>자부담</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36. 협동조합 등록 현황
37. 사회적협동조합 생산제품 우선 구매현황</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
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문화
체육과</td><td>
1. 축제 및 문화행사 (쇠부리, 정월대보름 행사 제외)
(현황, 예산, 집행내역,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2. 쇠부리축제 사업내용, 결과, 일자별 세부 지출내역, 향후 사업운영 계획
(자체 축제준비 여부 등), 쇠부리축제 평가보고회 회의록, 외부
감사 받은 결과 보고서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3. 서머페스티벌 실적 및 정산
4. 염포예술창작소 사업계획서 및 예산 지원내역, 일자별 세부
지출 내역
5. 문화쉼터 몽돌 운영 현황, 인문학 강좌 등 사업 현황
6. 북구문화원 사업계획서 및 예산 지원내역, 일자별 세부 지출내역
<table>
<tr><th rowspan="2">세부사업내용</th><th rowspan="2">사업기간</th><th colspan="3">예 산 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액</th><th rowspan="2">보 조 금
집행잔액</th><th rowspan="2">비고</th></tr>
<tr><th>계</th><th>보조금</th><th>자부담</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7. 문화재 지정 현황 및 정비 실적, 관리 현황
8. 달천철장 보존 및 주변 정비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
9. 쇠부리 복원사업 관련 실적 및 정산
10. 농소3동, 양정동 물놀이장 운영 현황
(위탁업체, 계약내용, 안전요원 배치, 교육 및 근무현황)
11. 동별 체육시설 설치 현황(위치, 운동기구 명칭, 개수, 관리상태 등)
12. 운동장별 대여 현황 및 사용료 수입 현황 : 도표로 작성
13. 각종 체육관련 행사 개최 및 지원 현황(행사명, 일시, 예산, 내용, 주관),
동별 체육대회 개최 현황 및 정산결과
14. 2017년도 구민 한마음 생활체육대회 내용 및 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15. 체육회 관련
- 운영비 보조금 지출 일자별 세부내역
- 모든 행사 사업계획서 및 예산, 지원내역, 지출 일자별 세부내역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16.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운영 현황,
각종 수당 현황
-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집행 현황
</td><td></td></tr>
</table>

소관 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문화 체육과	17. 생활체육교실(강사수당 집행 현황 포함), 장수체육대학, 청소년 체련교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현황 18. 체육회 조직도, 조직현황, 임원, 이사회, 대의원 현황 (이름, 나이, 직업, 거주지, 활동경력) 19. 생활체육시설 현황, 운영주체, 수익금 20. 장애인 실업팀 운영실적 21. 관내 학교 운동부 지원사업 실적 22.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실적, 관련 공문(최근 3년간) 23.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쇠부리체육센터 운영 현황 - 종목별 프로그램 현황 및 세목별 예산집행 내역, 참여자 현황 등 - 민원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 ※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쇠부리체육센터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 인력 운용 현황 24. 문화예술회관 · 오토밸리복지센터 · 국민체육센터, 쇠부리체육센터 공공요금(가스 · 전기 · 수도)월별 사용량, 요금 및 각 운동장 전기료 사용내역 (2017년, 2018년 월별 비교) 25. 문화예술회관 운영 현황, 민원 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 공사 개요 및 예산 내역, 정산결과 26. 문화예술회관 아카데미 프로그램 현황, 예산 집행 내역, 참여자 현황 27. 문화예술회관 상주예술단 현황 28. 문화예술회관 아카데미 동아리 현황과 추진사업 29. 각종 공연 · 전시행사 개최 현황 30. 게임장 현황 및 단속 실적, 처리결과 (성인게임장, 청소년게임장, PC방 구분, 폐쇄현황 포함) 31. 노래연습장 불법행위 단속 현황 및 처리결과 32. 농소큰사랑 작은 음악회 개최 현황, 예산 집행 내역 ※ 정산서 포함	

소관 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관광 해양 개발과	1. 관광주간 관광지 투어 프로그램 운영 실적 2. 주요 관광지 홍보 실적 3.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 실적 4.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현황 5. 강동관광단지 조성 지원 TF팀 구성 현황 6. 강동 해안 익사사고 현황(최근 5년간), 구 차원의 예방대책 추진상황 7. 어촌체험마을 운영 실적 8. 공모전, 기념품 등 관광활성화 추진 실적 9. 강동 물놀이장 운영 실적 (위탁업체, 계약내용, 안전요원 배치, 교육 및 근무현황)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도서관과	1. 각 도서관 운영 현황 및 실적 - 세부 편성예산 - 하루 평균 이용자수 - 도서(장서) 보유 현황 - 인력 현황(일반직 공무원, 사서직 공무원, 상용, 사서 자격증 보유 여부 등) -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실적, 참여자 현황, 소요예산 2. 도서관 인력 운영 현황 - 각 도서관별(작은도서관 포함) 자원봉사자 수, 봉사참여 비율(월 1회 이상) - 각 도서관별 기간제근로자 현황(도서관 봉사 경력 유무) 3. 구립도서관 도서구입 현황(예산 포함) 4. 작은 도서관 조성 현황 및 지원 내역, 운영 실적, 도서 대출 현황, 이용자 현황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5. 울산 북구의 책 사업 추진성과 - 도서 대출 현황 - 독서 감상문 참여 현황 및 독서릴레이 참여현황 - 주민 홍보 현황 -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업 전략 6. 9월 독서의 달 추진 현황, 사업 실적, 사업 평가 7. 7개 도서관 전기료 사용내역(2017년, 2018년 월별 비교) 8.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회의록, 사업내역 등) 9. 자원봉사자(도서관 친구들 포함)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예산지원 현황 10. 주민·자원봉사자 교육 현황 및 내용	

<table>
<tr><th>소관
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세무과</td><td>
1.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세목별 부과, 징수, 예산편성액)
2. 고액 체납자 및 체납처분 현황
(1백만원 이상, 압류·독촉사항 등)
3.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현황과 환급내역(요약 총괄)
4. 지방세 부과징수 이의 신청(민원)내용 및 처리 현황
5. 세무조사 현황 및 결과, 실적
6. 지방세,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
(시효소멸 제외 건당 10만원 이상)
(단위:천원)
<table>
<tr><th colspan="2">체 납 자</th><th colspan="3">결손내역</th><th rowspan="2">결손처분
일 자</th><th rowspan="2">결손사유</th></tr>
<tr><th>성명</th><th>주소</th><th>세목</th><th>부과연도</th><th>결손액</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7.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황
8. 선진지 견학 추진상황
9. 주민세 종업원분 기업별 현황
(단위:천원)
<table>
<tr><th rowspan="2">자본금</th><th colspan="2">부과</th><th colspan="2">징수</th><th rowspan="2">비 고</th></tr>
<tr><th>업체수</th><th>부과액</th><th>업체수</th><th>징수액</th></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r>
<tr><td>10억이하</td><td></td><td></td><td></td><td></td><td></td></tr>
<tr><td>50억이하</td><td></td><td></td><td></td><td></td><td></td></tr>
<tr><td>100억이하</td><td></td><td></td><td></td><td></td><td></td></tr>
<tr><td>100억초과</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10. 지방소득세(법인세분) 기업별 현황
(단위:천원)
<table>
<tr><th rowspan="2">자본금</th><th colspan="2">부과</th><th colspan="2">징수</th><th rowspan="2">비 고</th></tr>
<tr><th>업체수</th><th>부과액</th><th>업체수</th><th>징수액</th></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r>
<tr><td>10억이하</td><td></td><td></td><td></td><td></td><td></td></tr>
<tr><td>50억이하</td><td></td><td></td><td></td><td></td><td></td></tr>
<tr><td>100억이하</td><td></td><td></td><td></td><td></td><td></td></tr>
<tr><td>100억초과</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11. 기부금품 접수 현황
</td><td></td></tr>
</table>

소관 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민원 지적과	1. 민원실 친절도 향상을 위한 추진 실적 2.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3. 민원 1회방문처리제 추진 실적 4.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제 운영 실적 5.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 및 발급건수(월별, 1일평균) (설치일자, 발급종류 등) ※ 무인발급기 고장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중단 횟수, 민원 발생내역 및 처리결과 6. 야간 민원실 운영 실적 7. 여권발급 실적(전년도, 월별 비교), 여권발급 배치인력 현황 8. 최근 3년간 지적 재조사 현황(예산, 필지수 등), 사업 효과 9.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결과 10.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현황 11.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및 조정 현황(과년도 대비) 12.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 및 조치 현황 13.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따른 부정신고 혐의자 적발 및 과태료 처분 현황	

【복지경제국】

<table>
<tr><th>소관
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복지
지원과</td><td>1. 구 자체 복지사업 현황, 예산, 사업계획, 홍보, 대상 및 실적
2. 보훈단체 지원 현황, 예산 지원 현황, 세부지출내역(사업별, 사업기간)
<table>
<tr><th rowspan="2">세부사업내용</th><th rowspan="2">사업기간</th><th colspan="3">예 산 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잔액</th><th rowspan="2">비고</th></tr>
<tr><th>계</th><th>보조금</th><th>자부담</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단체별 구분 작성,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3. 권역별 복지관 운영 실적
4. 긴급복지지원 사업 실적
- 국비, 시비129 구분(지원금액 등)
5. 자원봉사센터 월별 예산 및 결산 현황, 사업내역 및 실적,
자원봉사자 관리 현황
6. 자원봉사 홈타운 관련 추진실적, 예산 지원내역
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현황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운영 현황
8.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명단, 직업) 및 활동 현황
9. 지정기탁금 내용과 집행 현황</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
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사회
복지과</td><td>1. 경로당 신축, 개·보수 현황 및 소요예산
2. 경로당 현황(주소, 이용인원, 건물형태, 소유형태), 경로당별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급내역, 각종 물품 구입지원 내역(세부 단가 포함)
3. 찾아가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 현황
(세부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
4. 노인복지관 시설 현황, 일 이용인원, 사업 추진내역 및 실적,
예산 및 결산 현황
5.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실적(참가인원, 나이, 사업내용 등)
6. 관내 각종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 종사자 시설별 급여실태, 처우개선비 지급 현황, 근무시간 등
7. 장애인단체 관련
- 기본 현황
- 보조금 및 기타 지원내역
- 지도점검 내역 및 조치결과
8. 관내 장애인 현황(장애등급별) 및 예산 지원 현황, 자립생활 지원 현황
9. 북구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련(2017년, 2018년)
- 기본 현황
- 구청 자체 점검결과 및 지회 감사결과
- 직원 현황
<table><tr><th>성명</th><th>나이(성별)</th><th>부양가족수</th><th>장애유형</th><th>장애등급</th><th>월 평균임금</th><th>비고</th></tr><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생산단가, 생산량, 판매단가, 판매량
※ 비누 생산분만 작성
- 손이익 현황
- 자원봉사 현황
- 시설운영 위원회 회의록
- 기부금품 접수 현황 및 사용처
- 고용장려금, 인건비 등 각종 예산 지원 현황</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
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사회
복지과</td><td>10. 태연재활원·메아리동산 운영 현황 ※ 연도별, 시설별 구분 작성
- 기본 현황 〈서식 적의 조정〉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 rowspan="2">계</td><td colspan="3">지체</td><td colspan="3">지적장애</td><td colspan="3">정신장애</td><td colspan="3">.....</td><td colspan="3">....</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남</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여</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2017, 2018년 사업계획, 예산 지원 현황, 감시감독 실적
- 2017, 2018년 현재까지 사업 실적 및 정산서
- 2017, 2018년 시설이용자, 종사자 연간 교육내용
11. 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 현황 및 이용 현황(일, 월 평균)
12. 장애인 행정도우미, 장애복지 일자리 참가자 장애유형 및 등급, 성별, 개인별 구체적 업무 표기
13. 어울림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기관, 보조금 지원 현황, 사업비 내역
14. 노인대학 운영실적
15. 노인건강체육대회 사업계획서 및 예산 지원내역
1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사업 실적
17. 기초수급자 생활안정 지원내역 (지원월, 지원내용, 대상자 수, 지원금액)
18. 지역자활센터 사업추진 현황, 실적, 지도점검 현황
- 2018년도 사업계획, 사업목표, 예산지원 현황
- 2017년, 2018년 사업실적
- 총 매출액 및 집행내역
- 지도점검 현황
- 교육실적, 교육내용
- 자활사례관리 추진현황
19.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실적</td><td></td></tr>
</table>

소관 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가족 정책과	1. 2018년도 양성평등정책 기본시책 - 예산 사업내역, 추진결과, 집행내역, 미추진 사업내역 2. 북구 양성평등주간사업 내용, 평가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3. 아동 폭력방지 지역연대사업 추진계획, 지역연대 기구 구성 현황, 역할, 사업비 내역, 사업 현황 4. 지역아동센터 현황 - 아동수, 프로그램 운영, 시설장·종사자 임금 현황 등 5. 어린이날 행사 세부 사업내용 및 평가결과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6.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 급식지원 방법에 따른 세부내역 7. 한부모가족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관련사업 8. 다문화가족 현황(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예산지원, 지원사업 현황, 중점 추진시책, 다문화가정 어린이집 이용자 현황 9. 어린이집 관련 - 24시간 어린이집 현황(정원대비 이용인원 포함), 보조금 지원내역 - 시간연장형 야간 어린이집 현황(정원대비 이용인원 포함), 보조금 지원내역 - 북구 관내 어린이집 현황 10. 공공형 어린이집 현황, 지원 내역 11. 어린이집 지원 보조금 상세 내역 및 점검 내용 12. 정부지원시설 중 영아전담, 장애전담, 기타 법인에 대한 현황 13.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활동 내역 14. 청소년 비행예방 사업현황 15. 청소년 축제 관련 사업내역 및 실적 16. 청소년참여위원회 역할, 구성 명단, 위원회 개최 관련 시기 및 회의록 17. 공동생활가정 현황 및 사업실적, 정산내역서, 기부물품현황 18. 관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현황	

소관 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가족 정책과	19. 입양아동, 가정위탁아동 관리 실적 20. 어린이집 관련 민원 현황 21.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실적 22.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 현황, 관내 아동학대 발생 현황, 아동학대 예방사업 실적 23. 구청내 성희롱 상담 및 접수 건수, 기타 성희롱 관련 실적, 성희롱 예방사업 교육 현황(6급 이상 공무원 참석자 현황) 24. 2자녀·3자녀, 장애인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 25. 청소년 생리대지원사업 현황	

소관 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경제 일자 리과	1.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항 및 실적, 예산 지원 현황 등 2. 변전소 및 송전선로 설치 추진상황 및 관련 민원 처리 상황 등 3.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 점검 현황(행정처분 내역) 4. 비정규직 관련 지원 사업 현황 5.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현황(상담 및 지원 사업) 6. 노사민정협의회 현황, 추진 실적 및 운영성과 자료, 회의 자료, 명단, 소속 7.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실적 8.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 (사업내용, 소요인원 및 예산, 참가자 현황 등) 9. 일자리 창출 실적 및 일자리 연계사업(지원) 추진 실적 10.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현황, 지원내역, 관련 사업 현황 11. 신재생에너지 사업 현황 12.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사업 실적 13. 에너지 바우처 지급 실적 14. 퇴직자 지원 교육 사업 실적 15.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 실적 16. 사회적 기업 생산제품 우선 구매 현황	

소관 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농수산과	1. 농어촌 육성기금 운영 실적 2. 농업인(농업관련단체)보조금 지원 및 자부담 내역 3.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내역 4. 쌀소득 보전직불제 보조금 집행내역 5. 농업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내역 6. 농지 무단전용 현황 및 처리결과 7. 후계농업인 육성 및 관리 실적(후계농업인수 포함) 8.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9.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지원 시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전체적으로 시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친환경 농가수 현황, 친환경 농가 지원 현황 10. 친환경 식생활 교육 실적 11. 직거래 장터 운영 실적 12. 진장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 현황 13. 봄꽃 전시회 사업계획, 주요내용,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14. 농축산물 불법유통(원산지표시 등) 단속 실적 15.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 내역 및 대책 16. 축산경쟁력강화 시책 추진에 따른 사업성과 17. 구제역 예방활동 추진상황 18. 원예농업육성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19. 유통기반조성사업 추진 현황 20. 여성어업인 지원 현황 21. 수산종묘매입방류 사업 추진 현황 22.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 추진상황, 추진성과, 향후 추진계획 - 인건비를 포함한 각종 예산 집행내역 23.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실적 24. 친환경 인증 농가수 및 친환경 식재료 품목별 납품현황 25.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 -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정책 분과 등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소관 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환경 위생과	1. 간이급수시설 및 약수터 개·보수 현황 (공사일자, 공사내역, 공사금액, 업체명 등) 2. 간이급수시설 및 약수터의 수질검사 결과 3. 환경오염 각종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4.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개소수 현황 포함) - 관리업체 입찰가격/수의계약 가격 - 공중화장실 유지보수(개선공사)비용 내역 (2016년, 2017년, 2018년 비교 작성) 5.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선공사 추진 현황 6.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대기, 수질) - 배출업소 현황 - 점검결과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실태 및 지도점검 실적 8. 가축분뇨 배출량과 처리방법 9. 1하천살리기 운동 참가단체 지원 현황, 사업내용 10. 구민자율 환경감시단 합동점검 추진 실적 11. 지방하천 수질개선 비교 결과 보고 (2016년, 2017년, 2018년 비교 작성) 12. 모범 음식점 지정관리 현황(업소명, 소재지) 13. 음식문화 개선 추진 실적 - 남은 음식 싸주기, 좋은식단, 위생영업주 교육 등 ※ 모범음식점 포함 14. 학교 앞 유해환경 지도 점검 - 점검결과, 조치내역 및 건수, 처리결과 15. 위생접객업소 위생검사 단속 실적 및 불법 영업업소 단속 실적(행정처분업소 처분결과 포함)	

소관 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환경 위생과	16.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내역 17. 에너지절약 탄소포인트제 - 인센티브 지원 실적 18.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실적 19. 송정지구내 분진 등 민원 접수 현황, 처리 결과 20.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 철거 현황(2016, 2017년, 2018년) - 건물 현황, 년도별 추진실적, 문제점, 향후 대책	

소관 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환경 미화과	1. 기본 현황(2018. 9월말 현재) - 청소대행업체 계약 현황(음식물 포함) - 청소구역 및 투입인원(구청 직영 포함) - 위탁업체 미화원 현황(구청 환경미화원 포함, 정규직, 비정규직 등) 2. 환경미화원 정·현원(2018년도) 및 담당구역 현황 3. 환경미화원 노사협의회 구성 및 회의록 4. 청소전방지휘소 현황(휴식 공간, 샤워시설 등) 5.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내역, 판매내역, 판매소 지도점검 결과 ※ 종량제 봉투 관련 민원 발생내역 및 처리결과, 대책 6. 청소차량 현황 및 운행 실적, 청소위탁업체 차량 현황(지난 3년간 간접비용 중 차량수리비 금액과 비율, 차량년식, 차량 수리비, 차량등록증) ※ 구입내역, 운영비, 청소노선, 월별 주행거리 등 7.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포상금 지급 실적 현황 ※ 불법투기감시카메라 설치 현황 및 단속 실적 포함(과태료 부과내역 등) 8.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9. 폐기물 관련 사업장 민·관 합동 지도점검 내용 10. 병·의원 적출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내용 1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관련(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포함) - 청소대행업체 용역비 산정 용역보고서(2017년, 2018년)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서 사본(2017년, 2018년)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 직원 현황(2017년, 2018년) - 수집운반 대행료 지급 현황(2017년, 2018년) - 대행업체 지도점검 또는 감사결과, 조치결과 12. 폐기물(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처리 관련 - 처리량, 처리방법, 처리비용 -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건설폐기물 수집, 운반방법	

<table>
<tr><th>소관
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환경
미화과</td><td>
13. 음식물쓰레기 감량조치에 따른 실적, 향후 계획
(2016, 2017, 2018 연도별, 월별 비교)
※ 3개년도 월별 음식물 발생량 변동 추이 포함
(○○년도)
<table>
<tr><th>구 분</th><th>계</th><th>1월</th><th>2월</th><th>…</th><th></th></tr>
<tr><td>아파트</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식당별</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주 택</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14. 음식물폐기물 시범지역 추진상황 및 민원 발생내용 등
15.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RFID)설치현황(변경)
16. 재활용품(고철, 폐지 등) 수집상 현황
17. 단독주택 재활용 분리수거 운영 실적(동별, 성상별 분류)
18. 단독주택 재활용 분리수거 그물망 제작내역(제작업체),
배포 현황(동별)
19. 단독주택 재활용품 거점망 관리내역
<table>
<tr><th>동 명</th><th>거점망
관리장소수</th><th>관리단체</th><th>지정일</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20. 공공용 마대 제작 내역 및 사용 내역
21.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손바닥 정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22. 농소권, 강동 재활용 분리수거 방식 변경(거점 수거⇒내 집 앞
수거)에 따른 운영 및 민원 현황
23. 재활용품 위탁 현황, 수거 현황(최근 3년간)
</td><td></td></tr>
</table>

【건설도시국】

<table>
<tr><th>소관
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건설과</td><td>1. 가로등, 보안등 용역업체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2. 가로등, 보안등 관련 주민불편사항 신고내역 및 조치사항
<table>
<tr><th>민원접수일</th><th>내 용</th><th>처리결과</th><th>완료일자</th><th>비 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3. 불법노점상 단속 실적 및 조치상황, 향후 대책
4. 미지급용지 보상 현황 및 추진계획
5. 자전거 도로 개설 추진 현황(개설구간/부대시설 포함)
※ 자전거 도로 내 체육시설 설치내역 포함
6. 자전거도로 현황, 자전거 거치대 현황
7. 자전거도로 관련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
8. 자전거이용자 상해보험 지급 현황(처리건수, 처리결과, 상해 현황)
9. 소방도로 개설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위치, 사업개요, 사업비, 문제점 및 대책)
※ 필요시 공사 전·후 사진 사본 요구
10.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
11. 동천강변 내 각종 식재 현황, 예산 집행내역 및 현재 생존율
12. 자연 친화형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 현황
13. 하수도 정비 실적(하수도 준설, 보수, 맨홀 교체·수리 등)
14. 미개설 오수관로 현황 및 추진계획
15. 제설 장비 현황 및 설해 대비 추진 실적
16. 생활민원바로처리 운영 현황 및 저소득층 가사도우미 운영실적
17. 동별 주민참여예산 소규모 사업 추진실적
18. 긴급도로 복구사업 추진실적
19. 하천부지 현황, 불법 점유 현황 및 관리내역
20.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점검 현황(기준 오염표 비교)
21. 농소수질개선사업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 및 추진현황
22.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체납현황 포함)</td><td></td></tr>
</table>

소관 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안전 정보과	1. 사회복무요원 복무 및 관리 현황 - 부서별 근무 현황(인원, 복무목적 등) - 사회복무요원 징계 현황(복무연장 등) - 사회복무요원 고충 상담 및 민원 처리 현황 2.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 운영 실적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 연령분포도 포함) 3.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실적 4.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현황 - 구성일시, 구성 현황(조직도), 운영 실적, 예산집행 실적 등 5. 수방 장비 및 자재 보유 현황 6. 장마철 풍수해 대비 사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 상습침수 피해지역에 대한 우수기 대비 예방사업 실적 포함 7.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이후 그에 따른 추진상황 8.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현황 9.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추진 실적 및 계획 (안전점검, 보험가입 등) 10. 도로 등 현장 작업 시 안전교육 실시 현황과 안전 매뉴얼 11. 방사능 방재계획 관련 전반적인 추진상황 ※ 책자 모두 제출 12. 공직자 비상대비 역량강화 교육 실적 13. 지진 및 관련 대책, 추진사항(대피소 등) 14. 최근 3년간 민방위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 현황 15. 최근 3년간 전산, 통신장비 유지보수비 지출현황 및 예산 절감 대책 현황 16. 안전취약계층 재난 안전교육 실적 및 예산 17.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 관련 실적 및 예산	

소관 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도시과	1.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점검결과 및 조치 현황 2. 도시계획사업 건별 추진 현황, 민원 현황 및 지원 실적 3. 도시계획 수립 후 장기 미집행 소방도로, 공원 추진 계획 및 대책 4.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현황(일시, 안건명, 주요내용, 심의결과) 5.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평창아파트 부지) 명의이전 관련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 6. 호계지구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7. 염포양정 도심재생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8. 개발제한구역내 도로개설 등 각종 주민편의사업 추진실적 (2017년, 2018년) 9.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현황 10. 도시계획사업지구 사업변경 현황 11. 산업단지 추진상황 12. (가칭)송정역 주변 역세권 개발 계획 및 활용방안 13. 지난 2년간 도시재생사업 관련 부서장, 담당주무관, 담당자 등 변경 현황 14. 심천지구 지구단위계획 입안 관련 추진 현황(변경 포함)	

소관 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공원 녹지과	1. 재선충 등 산림병해충 방제 현황 및 실적(구체적으로 작성) 2. 산림훼손 지도단속 현황 3. 산불예방을 위한 종합 계획 현황 - 세부 추진사항, 소요예산, 산불감시 시설 현황, 산불 발생 현황 - 산불예방 대비책 - 산불진화 장비 현황(구입 시기, 장비명, 구입비용) 4. 조림사업, 임도사업, 사방사업, 숲가꾸기사업 세부추진 현황 (예산집행 포함) 5.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 사업 현황 6. 관내 등산로 개설 및 정비 현황(세부내역, 예산 투입내역 포함) 7. 공원 현황 (위치, 시설 현황, 개·보수내역 - 소요예산 포함, 관리대장) 8. 공원 내 체육시설 현황, 향후 조성계획 ※ 공원 특색화 계획에 따른 추진상황 포함 9. 공원시설물 정비 관련 향후 추진계획 1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추진 실적 및 계획(위생검사, 보험가입 등) 11. 도로변 꽃길 및 화단 조성 실적 (시기, 장소, 품종, 소요예산, 주관단체 등) 12. 국화꽃 전시회 사업계획, 주요내용,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 투입 인력 현황(채용방법), 전시회 후 꽃 활용 현황 13. 가로수 식재, 도시 숲 조성사업 추진 현황 ※ 공유지 도시 숲 조성사업 추진 현황 포함 14. 명촌, 신천 물놀이장 운영현황 (위탁업체, 계약내용, 안전요원 배치, 교육 및 근무현황)	

<table>
<tr><th>소관
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교통
행정과</td><td>
1. 버스승강장 설치에 따른 민원사항 및 설치 현황
- 미설치 지역, 버스승강장 디자인, 민원 현황
2. 주·정차 단속 실적 및 민원 해소대책(이동식, 고정식, 인력 단속)
※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실적
<table>
<tr><th>구 분</th><th>건 수</th><th>과태료부과액</th><th>비 고</th></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3.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현황(자투리땅 활용 포함) 및 향후계획
(추진실적, 소요예산 등 포함)
4. 공영주차장 관리 현황 및 운영실태, 최근 3년간 공영주차장
임대사업 분석(수입지출, 저소득노인 참여 여부, 향후 개선 방안)
5. 내 집 주차장 설치 현황
6. 사업용화물차 차고지설치확인서 발급 현황 및 단속 현황, 행정처분 실적
- 발급 현황
<table>
<tr><th>연번</th><th>사업자</th><th>차고 소재지</th><th>차고지 면적</th><th>용 도</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단속 현황, 행정처분 실적
<table>
<tr><th>단속일자</th><th>단 속
차량대수</th><th>행정처분 실적</th><th>비 고</th></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 월별 실적 통계자료 포함
7.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안전시설 설치 현황 및 개선 사업 실적,
CCTV 현황 및 설치 실적 등
8. 노인보호구역 현황 및 안전시설 설치현황, 개선사업 추진실적
9. 교통편의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세부내역
10. 과태료 체납 현황, 징수(정리) 실적
1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체납 포함)
12. 철도이설 후 철로 활용방안
</td><td></td></tr>
</table>

소관 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건축 주택과	1. 무허가건물 단속 현황 및 조치내역 2. 건축허가 미준공 건물, 방치된 건축물 내역 및 대책 3. 건축허가 취소내역(취소 및 반려) - 건별 4.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 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5.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 일시, 공동주택명, 지원내용, 지원비용 포함 6.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교육 실적 7. 미분양 아파트 현황 8.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상황 및 조치내역, 신고현황 및 포상금 내역 (과태료 부과 등) 9. 건축위원회 개최 현황(일시, 안건명, 주요내용, 심의결과) 10. 불법광고물 관리 차량 현황 및 업무처리 과정 11. 동별 빈집 현황 및 관리상황, 향후 대책 12. 관내 지역주택조합 진행현황 및 주요 민원사례	

【보 건 소】

소관 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보건소	1. 보건소(보건진료소 포함) ①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 대비 현재 근무인력 현황 - 의사, 간호사 등 직무별 정원대비 현원 기재, 과부족 사유 제출 ② 관내 의료취약계층 현황 및 보건소 진료 실적, 예산 내역 - 건강보험 적용인구, 의료급여 수급자 이용 현황, 취약계층 이용환자 수 구분 제출 - 의료취약계층 관련 사업계획, 추진 실적, 편성예산, 집행내역 2. 보건소 단위사업별 인력 배치 현황 - 법정사업별 필수 인력 표시 - 최근 5년간 보건소 인력 확충 현황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 3. 약품 관리 현황 (입·불출 기록 및 재고 현황, 단가, 금액, 유통기한 등) ※ 영양제 입고내역(예산 포함) 및 불출내역 포함 4. 보건진료소 고혈압 치료제 구입 현황, 구입단가, 구입처, 복용자 수 (타 제약회사와 비교) 5. 의료장비 구입 및 관리 실태 6. 예방접종(정기 및 임시) 유형별 약품 구입 및 접종 실적 7. 방역장비 현황, 방역실적 및 대책 8. 방역, 소독 대행업자 지정내역 9. 모자보건사업 현황 및 사업 추진 내역 10.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실적 11.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등록 현황, 대상자 선정 기준 12.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출산 지원내역	

소관 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보건소	13. 관내 아동 예방접종 지원 현황 - 만 12세까지 영·유아 대상 예방접종 종류 - 보건소 지원 관내 예방접종 대상자 및 수혜자 수 - 국가 필수 예방 접종 현황 및 지원 현황(병의원 포함), 시행 이전과 비교 실적, 이용자 홍보 실적, 관리대상자 수 - 전체 접종 건수 중 보건소 이용 건수 - 타 지자체 예방접종 현황 14.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추진 현황 15. 금연클리닉 운영실적 및 운영 현황 - 청소년(10세~18세) 교육 방식, 교육 횟수, 금연사업 16. 장애아 재활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실적 17. 장애아 재활프로그램 이용 정원, 프로그램 내역, 향후 운용계획 프로그램 18. 건강생활실천사업 현황 19.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 20. 각종 홍보물 제작내역 및 부수, 내용 등 21. 구강보건실 운영 실적 ※ 2018 여름방학 중 구강검진 사업 추진 실적 포함 22. 치매 예방 관리사업 실적 23. 보건소 전기료 사용내역(2017년, 2018년 월별 비교) 24. 금연지도원 현황 및 금연단속 실적	

【의회사무과】

소관 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의회 사무과	1. 예산집행 현황 2. 각종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 현황 3. 조례 제정·개정 의원 발의 총괄 현황 4. 의원 발의 결의안, 자유발언, 구정질문(서면질문 포함) 현황 5. 의회 방청 현황 6. 의회 견학 현황 7. 언론 홍보, 보도 현황	

제2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1. 감사의 목적

○ 구정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2. 근 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기간 : 2018. 11. 21. ~ 11. 29.(9일간)

4. 감사대상 기관

기 관 명	대 상 부 서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	◦ 기획홍보실 ◦ 행정지원국 ◦ 복지경제국 ◦ 건설도시국 ◦ 의회사무과 ◦ 보 건 소 ◦ 동	

5. 감사실시 경과

① 감사주체 - 본회의

의 장	부 의 장	의 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허사영 최상규	황영지 박영석

② 감사일시 및 장소

구분 / 일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18. 11. 21.(수)	10:00	소회의실	◦증인선서 •국·소·실·과·동장 ◦기획홍보실 ◦보 건 소 ◦의회사무과	
2018. 11. 22.(목)	10:00	〃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행정복지센터 포함 : 농소1동·농소3동 ·효문동·양정동) •총 무 과 •민원지적과	
2018. 11. 23.(금)	10:00	〃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관광해양개발과 •도 서 관 과 •세 무 과	
2018. 11. 24.(토)		휴 회		
2018. 11. 25.(일)		휴 회		
2018. 11. 26.(월)	10:00	소회의실	◦복지경제국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복지지원과	
2018. 11. 27.(화)	11:00	〃	◦복지경제국 •경제일자리과 •농 수 산 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2018. 11. 28.(수)	10:00	〃	◦건설도시국 •건 설 과 •안전정보과 •도 시 과	
2018. 11. 29.(목)	10:00	〃	◦건설도시국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감사이후	대상현장	◦현장방문	

③ 감사순서

- ○ 감사 선언(의장)
- ○ 의장 인사
- ○ 증인 선서(집행기관, 감사 첫날 관계 공무원 합동 실시)
- ○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 소개
- ○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청취)
  - 개괄적 총괄보고 : 국·소장
  - 세부사항 보고 : 해당 실·과·동장
- ○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 서류 검증 또는 현지 확인
- ○ 감사 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④ 증인출석 및 감사실시 현황

감사대상부서	감사자료 제출건수	증인출석	참고인출석
계	446	37	
공 통 사 항	26		
기 획 홍 보 실	21	1	
행 정 지 원 국	140	10	
동		8	
복 지 경 제 국	137	8	
건 설 도 시 국	91	7	
보 건 소	24	2	
의 회 사 무 과	7	1	

⑤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83	17	66
공 통 사 항	2	1	1
기 획 홍 보 실	4	1	3
행 정 지 원 국	25	3	22
복 지 경 제 국	26	8	18
건 설 도 시 국	21	4	17
보 건 소	3	-	3
의 회 사 무 과	2	-	2

6. 감사결과

공통사항

시정요구

① 기간제근로자의 구민 우선 채용 건의

-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분야의 경우, 동등한 자격 조건이라면 구민(6개월 이상 거주자) 중에서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건의사항

① 여성공무원 보건휴가 사용 적극 권장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여성공무원은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활성화되지 않은 일부 부서들이 있음.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특성, 출장, 교육 등으로 여건이 어렵겠지만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하는 등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개선 바람.

기획홍보실

시정요구

①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계획 수립 철저

-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계획과 관련하여 일부 사업의 경우 연차별 투자계획 및 집행액이 기재되지 않은 부분 등이 있으니 계획 수립 시 구체적 이행계획, 재원 조달방법, 실현 가능성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구하고 검토하여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

- 93개 각종 위원회의 개최 현황을 보면 위원회 구성 이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음.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을검토하여 주시고 일부 위원회의 경우 실제 회의 개최가 필요함에도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임.
- 일부 위원회의 경우 여성위원 참여 비율이 낮은 경우가 있는데, 양성평등기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향후 여성 참여가 가능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여성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②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전적인 방향 모색

- 시민 및 지역위원 교육 참석율이 저조한데 교육 시에는 접근성,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도 적극 검토하기 바람.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조례 개정 건의와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도 적극 시행하여 주기 바람.

③ 객관적인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 배치

- 최근 늘어나는 업무에 비해 적정한 인력 배치가 안 되어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정확한 조직 진단을 통해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인력 배치를 하여 주기 바람.

총 무 과

시정요구

① 가로기 관리 철저

- 태극기는 국민 정신을 상징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대표하는 숭고한 표현인데, 도로변 일부 게양된 가로기가 변색되고 게양대와 깃봉이 파손되는 등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음. 가로기 정비 사업으로 훼손된 국기가 게양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 현재 교류중인 자매결연 도시들은 지속적인 교류가 어려운 실정이니, 신규로 지역의 산업, 지역특성상 자동차와 연계된 도시들을 모색하고 선정하여 교류가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② 청사 에너지 절약 시책 지속적인 추진

- 전기 및 가스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고효율 기자재로 공급하는 등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솔선수범하여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기 바람.

행정복지센터

건의사항

① 대민 친절 교육 실시

- 민원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했을 때 보다 친절한 응대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대민친절 마인드 함양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고객 만족 서비스 제공에도 노력하여 주기 바람.

② 기타 건의사항

〈농소1동〉

- 호계장날 주차문제 및 학생들의 안전 통학로 확보 대책 건의.

〈농소3동〉

- 동 주차공간 부족 대책 마련 필요.

〈양정동〉

- 오치골 공원 조성사업 추진 시 산책과 휴식을 겸할 수 있는 특색있는 공간으로 양정의 명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책 강구.

자치행정과

시정요구

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철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특정 단체회원 비율이 높은 동이 있는데 주민의 대표성이 결여되는 등 부작용이 있음.
  단체 1~2명 정도 형평성 있게 위촉하도록 주민자치위원회에 지도하고, 단체 회원이 중복 가입되지 않도록 세칙 개정이 되지 않는 동은 권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지원 사업 수행 시 심사단계에서부터 사업 목적에 맞는지 세심하게 검토하고, 당초 목적에 맞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사업 시행 후 그 효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람.

② 구청장 동 순회 방문 시 참석대상자 확대 시행

- 구청장 동 순회 방문 시 참석자가 통장, 주민자치위원 등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가족, 중·고등학생 학부모 등 다양하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홍보에도 신경 써 주기 바람.

③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서면 심의 자제 등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서면 심의는 자제하고 실제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남북교류 사업 등을 논의하고, 북한이탈주민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결연 추진도 검토하기 바람.

④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공통경비로 통합 편성

- 자율방범대 운영비 집행 시 목별로 분리되어 지출하기 어려움이 있으니 공통경비로 통합 편성하여 지출되도록 검토하기 바람.

문화체육과

시정요구

① 달천철장 활용한 문화콘텐츠 적극 개발

- 달천철장 정비사업이 관리시설을 제외하고 완료되었지만 주민들의 볼거리가 부족하고 가족들이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없음. 타 박물관과 전시관 등을 벤치마킹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도심 속 주민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문화원 사업 내실 있는 운영

- 쇠부리 문화교실, 쇠부리기술 복원사업 등 문화원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만 향토문화연구와 관련된 사업의 실적은 저조함. 향토사연구 및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검토하여 주고 이에 따른 예산 및 인력부분을 보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각종 보조 사업에 대하여도 사업별 내용과 취지에 맞게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행정 지도하여 주기 바람.

② 체육시설 관리 철저 및 운동장 시설 개선

- 관내 체육시설이 100여개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각종 체육 시설물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음. 노후화된 시설물은 교체하고 보수할 곳은 신속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아울러 운동 기구 등 시설물에 번호표를 부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검토하여 주기 바람.
- 농소운동장, 달천운동장내 인라인스케이트장, 교통질서를 체험할 수 있는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니 검토하여 주기 바람.

③ 양정생활체육공원 내 화장실 리모델링 검토

- 깨끗하고 청결하게 공중화장실을 리모델링하여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키고 선진화된 공중화장실 문화 정착에 기여하여 주기 바람.

관광해양개발과

건의사항

① 우가어촌체험마을 다양한 콘텐츠 발굴

- 우가체험마을은 6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체험프로그램도 한정적이라 방문객 수가 많지 않음.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② 관광 자원 홍보 강화

- 관광스토리텔링 공모 행사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었는데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북구를 소개하고 홍보마케팅을 강화함으로써 관광객 유입에 적극 노력하기 바람. 또한 부산 국제관광전 홍보 행사 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체험행사 등 다채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③ 야외 물놀이장 관리 일원화 및 상설화 검토

- 여름철 도심 속 야외 물놀이장 운영으로 가족 나들이 장소로 자리 잡고 있으나, 물놀이장 운영하는 부서가 일원화되지 않아 효율적이지 않음. 물놀이장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기 바람.
- 하천 등을 활용해서 물놀이장을 상설화한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매곡천도 물놀이장으로 상설 운영하도록 방법을 모색하기 바람.

도서관과

건의사항

①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 관내 등록된 작은도서관이 32개소가 있는데 문화사랑방 기능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비 등 적극적인 지원 방법을 모색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처우개선에도 적극 검토하기 바람.

② 독서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 어린이, 성인, 가족 등 계층별 맞춤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화적·사회적으로 적응하기 어려운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 가정도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③ 기타 건의사항

- 도서 다독자 및 책 잔치 행사 시 시상품을 상패보다 대상자에 맞는 도서, 포인트 등 다른 시상품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세 무 과

건의사항

① 지방세 부과 및 결손 처분 철저

- 취득세 부과 시 비과세감면 자료의 계획적인 관리를 통해 누락세원을 차단하기 바람.
-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결손 처분을 최소화하고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바람.

② 체납세 징수 활동 철저

- 지방세 부과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체납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징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여 소멸, 부실채권 되기 전에 정리하기 바람.

민원지적과

건의사항

①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운영

- 현재 구 무인민원발급기 20대 설치 운영으로 민원발급이 신속해지고 편의성이 향상되었음. 농소2동, 강동동의 경우 대규모 아파트 건립으로 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으니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람.

◦ 복지지원과

건의사항

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복지기반 구축 철저

- 기 수립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대 변화에 맞게 퇴직자, 노인, 여성, 아동에 중심을 두고 추진하기 바라며, 유사 중복된 사업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② 자원봉사홈타운 사업 내실화

- 자원봉사홈타운의 한정된 봉사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하여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참여자 인센티브도 다각도로 검토하여 자원봉사홈타운 사업을 활성화시켜 주기 바람.

③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추진 활성화

- 희망천사프로젝트, 행복울타리사업 등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기업체 봉사단체와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촘촘한 복지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기 바람.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협의체 구성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민·관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사회복지 구현에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사회복지과

시정요구

① 경로당 개보수 및 운영 철저

- 양정경로당 외벽에 페인트가 벗겨져 보완이 필요하며, 다른 경로당들도

확인 점검을 하여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기 바람.

-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 진행시 지역적 안배와 형평성에 맞게 진행해 주기를 바라며, 원연암경로당 철거와 관련된 사업도 충분한 검토를 하기 바람.
- 제전마을 치유프로그램이 호응이 좋았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경로당 내 세대갈등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노력하여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철저

- 구청장 공약사항인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장애인복지관 조기 건립에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함.

②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추진 철저

-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공공건물 신축 시 설계단계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or-Free)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장애인이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해 주기 바람.

③ 노인, 장애인 복지사업 관련 추진 철저

- 향후 급속한 고령화가 예측되므로 퇴직한 노인들의 일자리 사업 추진시 기존 단순한 공익형 일자리 사업보다 재능기부와 연계하는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바람.
- 장애인의 인권 증진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특히, 대피소 등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 주기 바람.
- 독거 노인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가족정책과

시정요구

① 아동급식관련 사업 추진 철저

-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시 타구의 사례를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지원횟수 및 급식단가 등 인상요인이 있는지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기 바라며, 해당 식당의 옥외 가격 표시, 어린이급식카드를 학생증·청소년증으로 발급 방법을 다른 대체 수단이 가능한지 검토하여 대상 아동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하여 주기 바람.

② 호계지역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 보강 추진

- 농소권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대기자가 많고, 제반 시설도 열악한 실정이어서, 해당지역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확대 및 신설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고, 다른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시설 보강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양성평등 관련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여성의 사회활동참가 욕구와 관련하여 여성 정책에 대한 다양한 여성단체와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 양성평등 관련 다양한 홍보와 교육에 대하여도 다각도로 검토하여 성평등 문화가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② 저출산 극복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

-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출산 지원을 확대하여 저출산 극복에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어린이집·유치원 등 아이가 안심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하여 주기 바람.

③ 학교밖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학교밖지원센터 운영 관련, 민관이 협력하여 여러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자기 주도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학교밖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 도모에 노력해 주기 바람.

경제일자리과

시정요구

①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

- 2003년에 설립되어 다양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확대, 직원 1명 증원을 적극 검토하고,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상생의 노사문화의 모범이 되어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노동특보 충원에 따른 관련사업 철저 및 경제 활성화 추진

- 노동특보라는 명칭과 관련하여, 노동자와 경영인 모두를 아우르는 명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람.
- 노동특보가 채용되어 노사민정협의체를 중심으로 근로자와 산업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내실을 다져 주시고, 상황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 바람.
- 어려운 지역 경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내 기업들도 적극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 바람.

②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 우리구 자동차 튜닝산업 발전을 위하여 온로드 테스트장에 비해 예산수반이 상대적으로 적은 오프로드 테스트장 건립을 강동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튜닝산업의 발전에 대하여도 검토하여 주기 바람.

농수산과

시정요구

① 송정터널 홈골못 차수보강 철저

-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2공구 송정터널 공사 수행에 따른 홈골못 저수량이 감소된 부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저수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차수보강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 강동농수산물주말직거래장터 운영은 모범적인 사례로, 직거래장터 추가 개설과 로컬푸드·친환경농산물 관련 사업 확대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기 바람.

② 반려동물문화센터 활성화

- 반려동물문화센터와 관련하여 반려동물축제, 반려동물 놀이터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여 주고, 이와 관련된 유기동물 문제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추진하여 주기 바람.

③ 천곡새뜰 일원 농경지 상습침수 대책 마련

- 천곡동 천곡새뜰 일원 농경지 상습침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민원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기 바람.

환경위생과

시정요구

① 미세먼지 저감 관련 대책 마련

- 미세먼지 저감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측정장비 확충, 전광판 보완, 드론 활용 등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기 바라며, 이에 대한 각종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 관련 교육 실시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

① 도시개발지구 일원 등 악취 및 비산먼지 대책 마련

- 강동산하지구 인근 아스콘 공장 악취, 강동양계장 악취, 필그린 상가 인근 악취, 도시개발지구 내 비산먼지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 주기 바람.

② 그린리더 및 탄소포인제 활성화

- 그린리더와 탄소포인트제 사업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고, 특히 관련 사업들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지도 점검 등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주기 바람.

환경미화과

시정요구

① 구청 내 일회용컵 사용 제한 및 장바구니 사용하기 추진

- 환경보호는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근본인 만큼, 이를 위하여 구청의 모든 부서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주기 바람.

② 호계천 인근 손바닥정원 주변 정비

- 호계천 일원 손바닥정원의 설치 후 간판 및 주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으며, 해당 지점에 대하여 정비를 바라며 다른 장소에 대해서도 환경을 점검하여 개선하여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음식물류 폐기물 세대별 종량기 사업 내실화

- RFID 사업의 추진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량이 많이 감축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 해당 주민들에 대하여 만족도 및 의견수렴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② 감시카메라 등 운영 내실화

- 감시카메라 설치 및 주기적 이동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불법투기 근절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미화원 반장선거 투표 실시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하여 주기 바람.
- 수성천 인근, 희망공원에 손바닥 정원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건 설 과

시정요구

① 제설함 및 자전거 거치대 정비

-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설함 및 자전거 거치대(보관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함.

② 매곡천 일원 태풍 피해지역 보수

- 매곡천 친수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태풍 콩레이 시 피해 입은 구간에 대하여 보수조치 하고 향후 태풍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상습정체 구역 해소 만전

- 산업로 일원, 효문사거리 고가차도 등 상습정체 구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연관된 도로 개통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② 도로재포장 공사 철저

-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 마을 안길, 경로당 입구 지역 등 노후화된 소방도로 및 마을 안길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③ 자전거문화센터 조속 건립 등

-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주기 바라며, 오토밸리로 일부 미흡한 절개지에 대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 매곡천, 천곡천 등 하천 사업 시 주민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농소2동 호계청구아파트 앞 우수로에 대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기 바람.
- 아울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노점상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주기 바람.

안전정보과

건의사항

① 지진 및 각종 재난 대비 철저

- 내진성능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점검 및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라며, 도로, 하천, 교량, 공동주택, 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를 하여 주기 바람.

② 핵발전소 방사능 방재 관련 검토

- 지진에 의한 핵발전소 사고, 핵폐기물 임시저장소 관련 등에 우리 구도 주도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전담인력 확충과 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 등에 대한 검토를 하여 추진하기 바람.

③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등

-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가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주기 바라며,
-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데, 우리 구 의회를 포함한 공공장소 및 관광지에 대한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람.
- 기 보도된 통신업체 화재와 관련하여 통신라인에 대한 점검과 재난 발생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기 바람.

◦ 도 시 과

시정요구

① 도시개발지구 민원 사항 적극 수렴

- 진장·명촌지구, 강동산하지구, 호수지구 등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기 바라며, 최소한의 민원 해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불편 민원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강동오토캠핑장 관련 사업 및 향후 운영 철저

- 강동오토캠핑장 조성 후 운영할 시, 타지자체의 사례를 냉철하게 분석·비교 검토하여 우리 구 만의 차별화된 캠핑장 조성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② 주민과 소통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 각종 도시재생사업에 주민 참여를 통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라며,
- 또한, 전통문화체험장을 효문운동장 인근 공간을 활용하는 등 다른 방안에 대하여도 강구하여 주기 바람.

공원녹지과

시정요구

① 안내간판 정비 요청

- 일부 등산로나 공원에 설치된 안내간판이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으며, 전수 조사를 실시한 후 정비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소나무재선충 방재사업 철저

- 소나무재선충 방재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설계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살피고 드론을 통한 예찰활동 검토와 방재목 파쇄율 증가 등 최선의 여러 방법을 시행하여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② 중산어린이공원 조성 및 운영철저

- 조성단계부터 주민참여형으로 잘 진행해 주었으며, 향후 운영 시 놀이활동가, 공원지킴이 등 일자리 사업과의 연계도 검토하여 주고,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하여 주기 바람.

③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보강 등

-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보강 및 확장을 통하여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주기 바라며, 청솔공원 화장실 보수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 도심속 가로수를 정비하여 차량 시야 확보 등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라며, 우리 구에 적합한 수종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교통행정과

건의사항

①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교통안전 업무 지속 추진

- OECD 국가 중 교통안전지수가 낮은 편으로 특히, 사업용자동차, 화물차 등에 대한 교통안전정책이 필요하며, 아이들 등·하굣길이 안전한 워킹스쿨버스, 보행안전지도, 교통안전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 바람.

② 버스노선 및 버스정류장 관련 지속적인 검토

- 마동 버스정류장이 취락 지역과 거리가 있어 버스노선 및 운영 검토가 필요하며, 송정택지지구에 대단위 아파트 건립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신규 버스노선과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바람.

③ 보행자 통행 안전 확보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그린카운티 인근 택시승강장 개설과 화봉초교 앞 등·하교 시 교통지도 및 신호등 작동에 대해 검토 바람.

건축주택과

건의사항

① 숙박시설 조건부 허가사항 지속 점검

- 상안동 모텔, 신천지구 숙박시설에 대하여 조건부 허가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확인과 지도감독을 실시하기 바람.

② 건축 관련 민원사항 지속 검토

- 신규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인근 주민과의 민원, 시공사와 입주민과의 하자보수 민원, 명촌효성해링턴 구획 준공과 관련된 민원 등 여러 건축 관련한 민원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주민과 시공사 등과 적극 소통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바람.

③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주차문제 검토 등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시 주차 공간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 바람.
- 월드메르디앙 수영장에 생존수영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주기 바람.

보 건 소

건의사항

① 약품 관리 철저

- 보건소에서 구입 관리하고 있는 주요 약품에 있어 수요와 공급 주기를 충분히 감안하고 다량의 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② 치매안심센터 효율적 관리

- 치매안심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지역 사회 치매관리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니 가정방문, 순회 검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 또한 치매조기 검진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 추진함으로써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도록 당부 드림.

③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내실화

- 최근 정신질환자 범죄가 급증하고 강력 범죄 비중이 높아 정신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이 시급한 실정임.
- 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은 계속 확대되어야 하며,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으로 사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의회사무과

건의사항

① 북구의회 인터넷방송 서비스 개선

- 최근 7월 실시간 인터넷방송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나 방청 실적이 저조하니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라며, 의원별 영상만 검색하고 볼 수 있는 편리한 기능 등을 개선하여 주기 바람.
- 타 지방자치단체 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인스타나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함께 연동되도록 검토하여 주기 바람.

② 어린이 모의의회 운영 내실화

- 청소년도 자유학기제·학년제 시행으로 진로체험 장소를 모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체험기회의 장으로 제공하여 주기 바람.
- 어린이들이 흥미를 갖고 호응할 수 있는 모의의회 의제를 적극 발굴하여 주기 바람.

제3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 2017. 10. 1. ~ 2018. 9. 30.까지의 구정 전반의 행정수행사항에 대하여 446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각종 정보와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여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였음.

○ 감사의 중점 방향으로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 그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거론되었거나 문제점이 도출된 각종 사안들에 대한 적법성과 주민의 요구가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단순 1회성 보완 요구가 아닌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감사를 실시한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행정수요에 비해 매우 열악한 인적 구성에도 불구하고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시책 추진을 위한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을 엿볼 수 있었으나, 일부 업무의 경우 주민을 위한 소신 있는 업무 추진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임. 또한, 행정은 무엇보다 구민들에 대한 신뢰성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각종 예산집행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고 실현가능한 대안이 제시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함.

○ 각종 사항별 감사지적 사항으로는 총 83건이며, 시정요구사항 17건, 건의사항 66건으로 본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조치하기 바라며, 그 처리결과를 2019년 1월 3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제4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시정·건의요구사항 현황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소계	완결	추진중	불가	소계	완결	추진중	불가
계		83	17	7	10		66	26	38	2
공 통		2	1	1			1	1		
기획홍보실		4	1		1		3		3	
주민소통실 (동)		4 (4)	1	1			3 (4)	3 (2)	(1)	(1)
행정지원국 (17)	총무과	3	1		1		2		2	
	문화체육과	4	1		1		3		3	
	관광해양개발과	3					3		2	1
	도서관과	4					4		4	
	징수과	1					1		1	
	부과과	1					1		1	
	민원지적과	1					1		1	
복지경제국 (26)	복지지원과	3					3	1	2	
	사회복지과	4	1		1		3	2	1	
	가족정책과	5	2		2		3		3	
	경제일자리과	3	1	1			2		2	
	농수산과	4	1	1			3	3		
	환경위생과	3	1		1		2		2	
	환경미화과	4	2	1	1		2	1	1	
안전건설국 (21)	안전정보과	3					3	2	1	
	건설과	5	2		2		3		3	
	도시과	3	1	1			2	2		
	공원녹지과	4	1	1			3	1	2	
	교통행정과	3					3		3	
	건축주택과	3					3	3		
보건소		3					3	3		
문화예술회관		-								
의회사무과		2						2		

2.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

□ 기획홍보실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시정 요구	①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계획 수립 철저 -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계획과 관련하여 일부 사업의 경우 연차별 투자계획 및 집행액이 기재되지 않은 부분 등이 있으니 계획 수립 시 구체적 이행계획, 재원 조달방법, 실현 가능성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구하고 검토하여 주기 바람.	◦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은 6개분야 47개 사업으로 이행계획 수립 시 사업기간, 완료시기, 연차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며, ◦ 일부 연차별 투자계획 및 집행액이 기재되지 않은 사업은 울산광역시 또는 국가사업으로 구에서는 민선7기 임기동안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향후 사업이 가시화될 경우 연차별 추진계획 및 집행액을 반영하여 작성하겠음.	추진중
건의 사항	①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 - 93개 각종 위원회의 개최 현황을 보면 위원회 구성 이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음.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을검토하여 주시고 일부 위원회의 경우 실제 회의 개최가 필요함에도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임. - 일부 위원회의 경우 여성위원 참여 비율이 낮은 경우가 있는데, 양성평등기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향후 여성 참여가 가능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여성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 매년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실제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는 폐지토록 정비하고 있으나, 조례 등 상위 법령에 강행규정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존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유지하고 있음. ◦ 하지만, 최근 3년 이내 미개최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비토록 통보하였음. ◦ 또한, 여성위원 참여비율이 낮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여성위원 수를 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겠음.	추진중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②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전적인 방향 모색 - 시민 및 지역위원 교육 참석율이 저조한데 교육 시에는 접근성,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도 적극 검토하기 바람.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조례 개정 건의와 정책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도 적극 시행하여 주기 바람.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연구회 안건상정 등 위원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또한 위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커리큘럼으로 구성하고자 함. ◦ 또한, 시와 구·군간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해 조례 개정 건의, 성별영향평가 시행 등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음.	추진중
	③ 객관적인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 배치 - 최근 늘어나는 업무에 비해 적정한 인력 배치가 안 되어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정확한 조직 진단을 통해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인력 배치를 하여 주기 바람.	◦ 연2회(상·하반기) 인력 및 기구의 적정 여부 점검을 위한 조직진단을 시행 중이나, 적정 정원의 경우, 배치 인력 개인의 역량, 업무에 대한 책임감 등에 따라 좌우되는 변수가 많아 정확한 진단에 어려움이 있으며, 조직진단 결과 거의 모든 부서에서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 ◦ 하지만, 지자체의 정원은 대통령령(기구정원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기준인력(지자체 인구, 면적, 세입규모 등을 기초로 산정)을 토대로 정원을 배정 중이며, 부서 요구대로 인력 증원 시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19년 498억)을 감안할 때 불가능한 상황임. ◦ 향후, 조직진단 시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인력배치에 노력하겠음.	추진중

□ 주민소통실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철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특정 단체회원 비율이 높은 동이 있는데 주민의 대표성이 결여되는 등 부작용이 있음. - 단체 1~2명 정도 형평성 있게 위촉하도록 주민자치위원회에 지도하고 단체 회원이 중복 가입되지 않도록 세칙 개정이 되지 않은 동은 권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기 바람.	◦ 주민자치위원 위촉 시 주민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한 현실태 파악 및 문제적 분석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주민자치위원회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단체 회원이 중복가입 되지 않도록 운영세칙 개정 등 동 실정에 맞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함. [자치행정과-20546('18. 12. 21.)호]	완결
건의사항	① 구청장 동 순회 방문 시 참석대상자 확대 시행 - 구청장 동 순회 방문 시 참석자가 통장, 주민자치위원 등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가족, 중·고등학생 학부모 등 다양하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홍보에도 신경 써 주기 바람.	◦ 구청에서는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 행정복지센터에 협조 요청하고[자치행정과-20734 (2018. 12. 24.)호], 현수막을 동별 2개소씩 총 16개를 설치하여 홍보하였으며, ◦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일반 주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통장회의, 아파트게시판,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등에 홍보를 실시하여 ◦ 4일간 8개 동 700여명의 주민이 새해공감토크를 참여함.	완결
	②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서면 심의 자제 등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서면 심의는 자제하고 실제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남북교류 사업 등을 논의하고, - 북한이탈주민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결연 추진도 검토하기 바람.	◦ 중앙정부 및 시와 연계하거나 우리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남북교류 사업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북한이탈주민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 멘토-멘티 결연식('18. 2. 10.)을 추진하여 남한사회 적응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있음.	완결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③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공통경비로 통합 편성 - 자율방범대 운영비 집행 시 목별로 분리되어 지출하기 어려움이 있으니 공통경비로 통합 편성하여 지출되도록 검토하기 바람.	◦ 동별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지원예산 범위에서 야식비, 유류비, 소모품 구입비 등 탄력적으로(공통경비 성격) 집행하고 있으나, ◦ 몇몇 자율방범대에서 지원예산 집행방법을 잘 숙지하여 못하여 목별로 예산이 분리되어 지출하기 어렵다는 지적사항이 제기된 바, 운영비 지원예산 범위에서 탄력적으로(공통경비 성격) 지출 가능함을 안내하도록 동에 조치하였음. [자치행정과-20546('18. 12. 21.)호]	완결

□ 동 행정복지센터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① 대민 친절 교육 실시 - 민원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했을 때 보다 친절한 응대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대민친절 마인드 함양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고객 만족서비스 제공에도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주민소통실 주관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직원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 주민 대응 최일선 기관인 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보다 친절한 응대 및 고객 만족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동장 주도하에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하였음. [자치행정과-20478('18. 12. 20.)호]	완결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② 〈농소1동〉 - 호계장날 주차문제 및 학생들의 안전통학로 확보 대책	◦ 호계장날의 경우 협소한 도로상의 노점, 이용 주민들의 차량증가, 인근지역 주차공간 부족으로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음. ◦ 불법주정차 이동단속반을 통한 수시 주정차 단속·계도를 병행하여 차량 소통 및 안전을 도모하였음. ◦ 학생들의 버스승강장 공간 확보 및 통학로 시야 확보를 위해 농소 상우회, 호계시장 상인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알리고 또한 버스정류장 주변 기존 노점 자바라를 철거하여 학생들의 안전 통학로를 확보하였음.	완결
	③ 〈농소3동〉 - 동 주차공간 부족 대책 마련	◦ '15년도 13면, '17년 21면의 포켓 주차장을 추가 조성 하였으나 방문객 대비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임. 현재 청사 부지 및 인근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계획시설(녹지)로 결정되어 있어 주차장 추가 확보는 어렵고, 아울러 현 행정복지센터도 좁고 낡아 청사 이전 등 근본적이고 장기적 대책 마련 필요.	불가
	④ 〈양정동〉 - 오치골 공원 조성사업 추진 시 산책과 휴식을 겸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공간으로 양정의 명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책 강구	◦ 오치골 공원은 3개년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으로 2018년 연말까지 1차 사업이 완료되어, 많은 주민들이 자녀들과 함께 오치골 공원을 찾아 여가를 보내고 있음. 오치골 등산로와 연계하여, 어른들은 등산로를 찾고 자녀들은 공원에서 함께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담당부서 및 주민대표(주민자치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SNS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활용하여 오치골이 울산 시민 전체가 찾을 수 있는 명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추진중

□ 총무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공통 시정 요구	①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구민 우선 채용 -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분야의 경우, 동등한 자격 조건이라면 구민(6개월 이상 거주자) 중에서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분야는 구민(6개월 이상 거주자)을 우선 채용하도록 공문 통지 하였으며, 부서별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 수립 시, 인사 단체담당 협조결재를 통해 관련내용 반영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민 우선 채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완결
	① 여성공무원 보건휴가 사용 권장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여성공무원은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활성화되지 않은 일부 부서들이 있음.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특성, 출장, 교육 등으로 여건이 어렵겠지만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하는 등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개선 바람.	◦ 보건휴가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2016년 노사협의로 채택된 부서별 월초 일괄결재 이용 및 간부공무원의 솔선수범으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음.	완결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시정 요구	① 가로기 관리 철저 - 태극기는 국민정신과 대한민국의 주권을 대표하는 숭고한 표현인데, 도로변 일부 게양된 가로기가 변색되고 게양대와 깃봉이 파손되는 등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음. 가로기 정비 사업으로 훼손된 국기가 게양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내 게양된 가로기의 상태를 동별 수시 점검하여 국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추진중
건의 사항	①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 현재 교류중인 자매결연 도시들은 지속적인 교류가 어려운 실정이니, 신규로 지역의 산업, 지역특성상 자동차와 연계된 도시들을 모색하고 선정하여 교류가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 기존 교류도시 외 우리구와 지역적 공통점, 교류를 통한 실익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선진행정 노하우를 습득하고 상호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신규 교류도시 발굴에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 ◦ 현재, 자동차 및 관광분야에 중점을 두고 유럽의 다수 도시와 접촉중에 있음.	추진중
	② 청사 에너지 절약 시책 지속 추진 - 전기 및 가스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고효율 기자재로 공급하는 등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솔선수범하여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기 바람.	◦ 청사 에너지 절약을 위해 현재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설비 등 지속적으로 운용중이며, 노후 조명은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중임(교체율 : 89.3%) ◦ 아울러, 청사 고효율 변압기 교체공사('18. 12월 완료)로 연간 6,500천원 전기요금 절감이 예상됨. 앞으로도 청사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음.	추진중

□ 문화체육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① 달천철장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적극 개발 - 달천철장 정비사업은 관리시설을 제외하고 완료되었지만, 주민들의 볼거리 및 체험거리가 부족함. 타 박물관 등을 벤치마킹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등 도심속 힐링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 달천철장은 정비사업 완료 후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평일 500여명, 주말 800여명이 즐겨 찾는 주민휴게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 달천철장 관리시설은 공사착공 단계로 올해 9월 개관예정이며,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준비하겠음. ◦ 향후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전문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달천철장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음.	추진중
건의사항	① 문화원 사업 내실있는 운영 - 쇠부리문화교실, 쇠부리기술 복원사업 등 문화원 추진사업이 있지만, 향토문화연구와 관련된 사업실적이 저조함. 향토사 연구 및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업 시행 검토 및 예산, 인력 부분 보충이 필요함. 또한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 사업별 내용과 취지에 맞게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지도바람.	◦ 문화원 산하기관으로 북구향토문화연구소를 두고, 향토사의 조사 및 연구, 사료의 수집, 보존을 수행하고 있음. ◦ 향토문화연구소는 비전문가 단체로써 연구보다는 조사와 관련자료 편집 발간을 주로 하고 있어, 현재 지원예산은 부족하지 않음. ◦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유기적인 협조로 향토사연구를 포함하여 문화원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추가예산 요구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음.	추진중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② 체육시설 관리 철저 및 운동장 시설개선 - 관내 체육시설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음. 노후 시설물 교체 및 신속한 보수를 요청하며, 운동기구 등 시설물에 번호표를 부착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검토바람. - 농소운동장, 달천운동장내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교통질서를 체험할 수 있는 놀이시설 조성을 검토바람.	◦ 관내 체육시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노후화된 시설물은 순차적으로 보수하도록 하겠으며, ◦ 운동기구에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운동기구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계획임. ◦ 농소운동장은 축구장 2면, 주차장 등으로 구성, 유휴공간 부족으로 놀이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며, 달천운동장은 인라인스케이트장 공간 등을 활용하여 교통체험 시설 설치를 검토하겠음.	추진중
	③ 양정생활체육공원 내 화장실 리모델링 검토 - 깨끗하고 청결하게 공중화장실을 리모델링하여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키고 선진화된 공중화장실 문화정착에 기여하여 주기 바람.	◦ 양정생활체육공원 내 화장실은 전체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으로, 예산 반영 후 추진토록 하겠음.	추진중

□ 관광해양개발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① 우가어촌체험마을 다양한 콘텐츠 발굴 - 우가체험마을은 6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체험프로그램도 한정적이라 방문객 수가 많지 않음.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 주민들 대상 전문기관 컨설팅 및 선진지 견학 실시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개발', '어촌 생활체험형 민박 운영' 등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노력하겠음. ◦ 또한, 어촌체험마을의 체험객 확보를 위해 관광전문 방송 프로그램 홍보, 관광공사 블로그 홍보단 내방 요청,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버스 승강장 홍보물 설치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음.	추진중
	② 관광 자원 홍보 강화 - 관광스토리텔링 공모 행사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었는데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북구를 소개하고 홍보마케팅을 강화함으로써 관광객 유입에 적극 노력하기 바람. 또한 부산 국제관광전 홍보 행사 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체험행사 등 다채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 관광자원 개발 및 다양한 홍보물 제작을 통해 관광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내나라여행박람회, 서울 청계천 등에 홍보부스를 설치 운영하여 관광 홍보활동 강화하겠음.	추진중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③ 야외 물놀이장 관리 일원화 및 상설화 검토 - 여름철 도심 속 야외 물놀이장 운영으로 가족 나들이 장소로 자리 잡고 있으나, 물놀이장 운영하는 부서가 일원화되지 않아 효율적이지 않음. 물놀이장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기 바람. - 하천 등을 활용해서 물놀이장을 상설화한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매곡천도 물놀이장으로 상설 운영하도록 방법을 모색하기 바람.	◦ 물놀이장 5개소를 일원화하여 운영할 경우 최소 전담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나, 업무 특성상 시기적(여름철) 2개월 정도 집중되는 업무이므로 전담 조직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됨. ◦ 또한 물놀이장이 설치된 시설 관리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특정 부서에서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 물놀이장 운영 현황 - 문화체육과 : 2개소 (달천운동장, 양정생활체육공원) - 관광해양개발과 : 1개소(산하해변) - 공원녹지과 : 2개소 (명촌근린공원, 신천 어린이공원)	불가

□ 도서관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①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 관내 등록된 작은도서관 33개소가 문화사랑방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비 등 적극적인 지원 방법 모색 및 자원봉사자들의 처우개선 적극 검토	◦ 현재 작은도서관에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 도서구입비, 교육문화프로그램비가 구 재정에 맞게 현실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자문도서관 지정과 공유체계(장서점검기, 빅북, 북스타트 꾸러미 지원 등) 마련을 추진 중에 있음. ◦ 또한, 기존 작은도서관 운영 공로자에 대한 표창을 확대하여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도 시상할 계획임.	추진중
	② 독서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 가정도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노력	◦ 도서관 주간, 교육문화프로그램, 독서의 달 행사 기획 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중
	③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지원사업 수행 시 심사단계에서부터 사업 목적에 맞는지 세심하게 검토하고, 당초 목적에 맞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사업 시행 후 그 효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람.	◦ 내실 있는 교육경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서 심사 시 사업목적에 적합하고 효과성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하겠으며, ◦ 또한 수시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효과분석을 실시하는 등 내실 있는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중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④ 기타 건의사항 - 도서 다독자 및 책 잔치 행사 시 시상품 상패보다 대상자에게 맞는 도서, 포인트 등 다른 시상품을 주는 방안 강구 - 4차 산업 혁명인 드론과 연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여 주기 바람.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근거하여 상패 외 상품 지급은 불가하나, 수상자에 대한 도서 대출권수 확대(14일 →21일) 및 대출기한 연장(5권→10권)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 주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민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차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 및 생애설계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중

□ 징수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① 체납세 징수 활동 및 결손 처분 철저 - 지방세 부과,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체납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징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여 소멸, 부실채권 되기 전에 정리하기 바람. -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결손 처분을 최소화하고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바람.	◦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연 2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 (상반기 4월~6월, 하반기 10월~11월)함과 동시에 세무부서 전 직원 징수할당제 등을 실시하여 체납세 징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음. ◦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 매월실시(부동산, 차량 등) 및 각종채권(예금, 보험금, 환급금, 급여, 공탁금, 보상금 등) 상시 조회로 시효소멸 결손처분 철저한 관리로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겠음.	추진중

□ 부과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① 지방세 부과 철저 - 취득세 부과시 비과세감면 자료의 계획적인 관리를 통해 누락세원을 차단하기 바람.	◦ 취득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감면 사후관리 조사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여 감면유형별로 적정 감면 및 유예요건 준수 여부를 수립된 조사계획에 근거하여 연중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감면요건 위반 부동산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적기에 추징함으로써 세원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누락세원을 차단하고 과세형평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중

□ 민원지적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①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운영 - 현재 구 무인민원발급기 20대 설치 운영으로 민원발급이 신속해지고 편의성이 향상되었음. 농소2동, 강동동의 경우 대규모 아파트 건립으로 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으니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람.	◦ 2018년도 신규 설치 현황 - 장 소 : 울산공항, 송정·염포·양정·강동동주민센터, 에일린의 뜰 아파트(1차) 앞 - 대 수 : 6대 ※ 북구 관내 : 21대 운영 ◦ 향후, 북구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지역별, 발급건수별, 인구 추이 등을 분석하여 설치 검토하고자 함.	추진중

□ 복지지원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복지기반 구축 철저 - 기 수립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대 변화에 맞게 퇴직자, 노인, 여성, 아동에 중심을 두고 추진하기 바라며, 유사 중복된 사업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 고용환경 변화와 북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취약계층 등 퇴직자 일자리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10개의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였음. ◦ 여성·아동의 경우, 저출산 대비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 복지 인프라 구축과 아동의 건강하고 안정된 성장 발달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추진 등 욕구조사에 근거한 추진전략과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 노인의 경우,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등 서비스 접근성과 고령층의 여가와 건강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여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였음.	완결
	② 자원봉사홈타운 사업 내실화 - 자원봉사홈타운의 한정된 봉사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하여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참여자 인센티브도 다각도로 검토하여 자원봉사 홈타운 사업을 활성화 시켜 주기 바람.	◦ 자원봉사홈타운 사업은, 아파트 주민인 홈타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폭 넓은 프로그램 운영에 제약요소가 많으나, ◦ 아파트 및 홈타운 임원진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경로당 봉사, 이웃돕기 바자회, 홈타운 연합활동 강화 등 활동 영역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 자원봉사참여자에 대해 보험가입, 공공시설이용료 및 가맹점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 등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활성화를 도모하겠음.	추진중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③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추진 활성화 - 희망천사프로젝트, 행복울타리 사업 등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기업체 봉사단체와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촘촘한 복지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기 바람.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협의체 구성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민·관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사회복지 구현에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 「H-지역동행」 사업을 통해 기업체 봉사단체/기업과 동협의체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그물망 복지행정을 제고하겠음. ◦ 동 협의체 홍보 및 소통을 위한 SNS(Band)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협의체 위원장 카톡방 개설과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사항 공유 등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사항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홍보 전단지를 제작 배부하고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의 홍보부스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음.	추진중

□ 사회복지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시정 요구	① 경로당 개보수 및 운영 철저 - 양정경로당 외벽에 페인트가 벗겨져 보완이 필요하며, 다른 경로당들도 확인 점검을 하여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기 바람. -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 진행시 지역적 안배와 형평성에 맞게 진행해 주기를 바라며, 원연암경로당 철거와 관련된 사업도 충분한 검토를 하기 바람. - 제전마을 치유프로그램이 호응이 좋았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경로당 내 세대 갈등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양정경로당은 2018년 내진평가 결과에 따른 내진보강공사로 올해 외벽보강과 병행 도색작업을 할 예정이며, 노후경로당 개보수를 58개소 할 계획으로 시설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 경로당신축은 노후정도, 도시계획 편입, 기부채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후 추진중이며 원연암경로당은 지난해말 철거 후 노인인구 등을 감안, 인근 삼통경로당으로 회원을 통합하여 운영중에 있고 원연암 새뜰사업으로 삼통경로당을 리모델링, 시설개선 할 계획임. ◦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정서안정, 심리안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음.	추진중
건의 사항	①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철저 - 구청장 공약사항인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장애인복지관 조기 건립에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함.	◦ 시립 제2장애인복지관 건립 반영을 위하여 시 해당부서(장애인복지과)에 건의 및 국회의원, 시·구의원과 협조체제로 우리구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음.	추진중
	②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추진 철저 -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공공건물 신축 시 설계단계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Free)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장애인이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해 주기 바람.	◦ 국가 및 지자체 신축하는 공공건물은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BF(Barrior-Free)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사업부서에서 실시설계단계의 예비인증, 준공 시 본인증절차를 거치고 있음. 참고로 2015년 7월 이후 신축한 도서관, 경로당 등 10개 건축물 모두 BF 예비인증·본인증을 받았음.	완결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③ 노인, 장애인 복지사업 관련 추진 철저 - 향후 급속한 고령화가 예측되므로 퇴직한 노인들의 일자리 사업 추진시 기존 단순한 공익형 일자리 사업보다 재능기부와 연계하는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바람. - 장애인의 인권 증진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특히, 대피소 등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 주기 바람. - 독거노인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 노인일자리 사업 중 공익사업으로 실버강사파견, 보육교사 도우미, 노-노교육 강사파견 전통누릉지, 된장만들기 등 다양한 재능기부 맞춤형 일자리를 하고 있으며 또한, 개인별 특성에 맞는 배치가 되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토록 하겠음. ◦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하여 우리구 자체사업으로 북구 장애인인권 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대피소 장애인 접근권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임시거주시설과 옥외대피장소 해당부서에 통지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요청하였음. ◦ 응급관리요원과 소방서 등을 연계하여 독거노인 댁내 상시로 안전모니터링 실시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이상 징후 발견 시 구조·구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고 있음.	완결

□ 가족정책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① 아동급식관련 사업 추진 철저 -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시 타구의 사례를 면밀히 비교검토하여 지원횟수 및 급식단가 등 인상요인이 있는지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기 바라며, 해당 식당의 옥외 가격표시, 어린이급식카드를 학생증·청소년증으로 발급 방법을 다른 대체 수단이 가능한지 검토하여 대상 아동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하여 주기 바람.	◦ 급식지원 횟수 및 단가는 울산 5개 구군 동일하며, 급식단가는 2018. 5. 1.부터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어 전국 평균 4,323원과 비슷한 수준임. ◦ 식당 옥외가격표시는 150㎡ 이상 업소는 의무사항이나,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패스트푸드나 분식점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계도를 통해 옥외 가격을 표시토록 하겠음. ◦ 학생증은 전자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없으며, 청소년증은 교통카드 기능이 있지만 급식카드 가맹점과 시스템 연계가 안 되어 당장 시행은 어려운 상황임. ◦ 현재 급식카드는 낙인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 신용체크카드 디자인을 도입하고 있으며, 울산시에서 사업자 선정을 하고 있어, 우리 구 단독으로 변경하기는 어려움. 향후 울산시에 교통카드 등 다른 유형으로 변경 검토 요청하겠음.	추진중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② 호계지역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 보강 추진 - 농소권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대기자가 많고, 제반 시설도 열악한 실정이어서, 해당지역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확대 및 신설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고, 다른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시설 보강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 농소권은 현재 농소1동 2개소, 농소2동 2개소, 농소3동 1개소로 전체 9개소 중 5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지속적인 인구 유입 등 지역아동센터 확충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 호계동 718-3번지 커뮤니티센터 내 2층에 공립 지역아동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 ◦ 60평 규모 19명 정원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대기인원 수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기존 노후지역아동센터 시설보강은 '19년 환경개선지원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어 총 79,000천원이 지원될 예정임.	추진중
건의사항	① 양성평등 관련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여성 정책에 대한 다양한 여성단체와 의견 수렴 필요 - 양성평등 관련 다양한 홍보와 교육에 다각도로 검토하여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 확산에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성·가족분과 위원 및 여성단체협의회 중심으로 여성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음. ◦ 지역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및 주민성인지 향상 교육 실시 등 평등이 일상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음.	추진중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	② 저출산 극복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 - 어린이집·유치원 등 아이가 안심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적극적인 지도점검 바람.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인프라 구축 (2019년 14개소 확충 추진) ※ ('17년)7개소 → ('18년)12개소 → ('19년) 26개소(예정) ◦ 어린이집 전수조사 전담인력 배치 및 지도점검반 편성으로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점검기간 : '18. 12. ~ '19. 6. - 점검대상 : 관내 어린이집(204) - 점검내용 : 대표자·보육교직원 관리, 회계관리, 운영 전반 등	추진중
	③ 학교 밖 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민관이 협력하여 학교 밖 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 도모에 노력해 주기 바람.	◦ 2018년 민관 협력 운영 사업 - 청소년 문화의집 바리스타 자격취득 사업과 연계(10명 참여) - 중소기업지원청 창업동아리 지원사업 학교 밖 청소년 창업 활동비 지원 - 화봉중 대안교실과 연계하여 심리검사 및 상담지원 실시 - ○○ 노인주간 보호센터 현장실습을 통한 1명 취업 - 북구청소년문화의집, 사설 체육관 현장 실습 2명 참여 ◦ 2019년도에도 민관과 협력하여 학교 밖 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에 노력하겠음.	추진중

□ 경제일자리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①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 - 2003년에 설립되어 다양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확대, 직원 1명 증원을 적극 검토하고,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상생의 노사문화의 모범이 되어 주기 바람.	◦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2003년 센터 개소 이래 비정규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19년 위탁운영비는 90,000천원으로 전년도 위탁운영비 80,000천 대비 12.5%로 증액 편성하였음. 향후에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사업량 변동 등을 감안하여 예산지원 확대 등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음. ◦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전환협의를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2018. 12. 31. 구성하였으며, 향후 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정규직 전환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완결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① 노동특보 충원에 따른 관련사업 철저 및 경제 활성화 추진 - 노동특보라는 명칭과 관련하여, 노동자와 경영인 모두를 아우르는 명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람. - 노동특보가 채용되어 노사민정 협의체를 중심으로 근로자와 산업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내실을 다져 주시고, 상황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 바람. - 어려운 지역 경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내 기업들도 적극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 바람.	◦ 노동특보는 노동조합 지원업무 뿐만 아니라 노사민정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에도 적극 활동할 계획임. 향후 노동특보가 노동조합 및 노사민정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노동자 뿐만 아니라 노사민정 협력사업의 한축인 기업인의 입장도 충분히 아우르는 실질적인 조정자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음. ◦ 노동특보가 채용되면 노동특보 중심으로 노사갈등예방팀을 정비하여 노동현장 방문을 통한 기업체 및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고 노사의견 수렴을 위한 사회적 대화채널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중
	②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 우리구 자동차 튜닝산업 발전을 위하여 온로드 테스트장에 비해 예산수반이 상대적으로 적은 오프로드 테스트장 건립을 강동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튜닝산업의 발전에 대하여도 검토하여 주기 바람.	◦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튜닝산업에 대한 주민관심 등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다만, 오프로드 테스트장의 특성상 주민 생활권과 떨어진 일정규모 이상의 대상지가 필요하므로 도시계획법령 등 관련 법령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향후 지속적으로 튜닝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모색하겠음.	추진중 (장기검토)

□ 농수산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시정 요구	① 송정터널 홈골못 차수보강 철저 -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2공구 송정터널 공사 수행에 따른 홈골못 저수량이 감소된 부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저수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차수보강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울산~포항 복선전철 2공구 송정터널 공사에 따른 홈골못 저수량 저하에 대한 대안으로 "홈골못 차수보강공사"를 대림산업㈜에서 진행중이며, 2019년 2월 중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준공확인 및 준공 후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완결
건의 사항	②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 강동농수산물주말직거래장터 운영은 모범적인 사례로, 직거래장터 추가 개설과 로컬푸드·친환경농산물 관련 사업 확대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기 바람.	◦ 현재 직거래장터는 2개소(강동, 달천) 운영하고 있으며, 2개소 중 달천농산물직거래장터는 2018년 하반기부터 진입로 공사로 인해 중단되고 있으며, 2019년 상반기 중 재개장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 로컬푸드 판매장 2개소(농협울산유통센터, 농소농협)중 농협울산유통센터 판매장을 당초 159㎡에서 2018년 11월 393㎡로 확장 운영하고 있음. ◦ 2019년에는 친환경농산물 중 학교 공급 품위에 미달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전처리장을 이용하여 세척 및 포장한 후 로컬푸드 판매장에 출하하는 등 잉여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완결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③ 반려동물문화센터 활성화 - 반려동물문화센터와 관련하여 반려동물축제, 반려동물 놀이터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여 주고, 이와 관련된 유기동물 문제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추진하여 주기 바람.	◦ 울산시에서는 증가하는 반려동물 문화공간 수요에 발맞추어 사업비 11,139백만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1,998㎡규모로 반려동물문화센터를 건립 중에 있음. ◦ 센터 개원 후 반려동물문화축제 및 반려동물 놀이터 등과의 연계를 적극 검토하겠으며 ◦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및 동물보호 관련 교육 등을 통해 유기동물 발생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완결
	④ 천곡새들 일원 농경지 상습침수 대책 마련 - 천곡동 천곡새뜰 일원 농경지 상습침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민원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기 바람.	◦ 해당 구간 침수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환경조성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전액 국비로 “신천천곡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0. 12. 준공예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완결

□ 환경위생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시정 요구	① 미세먼지 저감 관련 대책 마련 - 미세먼지 저감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측정장비 확충, 전광판 보완, 드론 활용 등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기 바라며, 이에 대한 각종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관련 교육 실시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람.	◦ 2019.2.15.시행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강화 → 공사시간 단축·조정, 인근도로 청소 강화, 살수량 증대 등 비상저감조치 이행 확인 - 미세먼지 경보제 상황실 운영 -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 비상조치 발령시 단속실시, 4월 및 11월 사전대응 단속, 공회전 단속 강화 - 공공부문 직원차량 2부제 의무시행 - 비산먼지 저감조치 관련 관련 부서 담당자 교육실시 → 관급공사 공사시간 단축, 공공 직원차량 2부제 의무시행 등 ◦ 법 시행일(2019.2.15.)이전 시행계획 수립	추진중
건의 사항	① 도시개발지구 일원 등 악취 및 비산먼지 대책 마련 - 강동산하지구 인근 아스콘 공장 악취, 강동양계장 악취, 필그린 상가 인근 악취, 도시개발지구 내 비산먼지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 주기 바람.	◦ 효원아스콘 악취 해결을 위해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 총 4회 실시, 악취측정 2018년 9회, 2019년 1회 실시, 행정처분 1회(개선권고) 조치 등 지속적으로 관리중에 있음. ◦ 강동양계장은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2018년 인근 비료 공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함. ◦ 필그린 상가 인근 악취의 경우 확인결과 하수도 악취로 건설과에조치토록 안내함. ◦ 도시개발지구 내 2018년 비산먼지 공사장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행정처분 3건, 과태료 60만원 조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중에 있음.	추진중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② 그린리더 및 탄소포인제 활성화 - 그린리더와 탄소포인트제 사업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고, 특히 관련 사업들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지도 점검 등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주기 바람.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교육 및 동별 녹색생활실천교육,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주민 실천운동 확산을 목표로 가정, 상가 등의 에너지 사용실태 진단 및 감축을 위한 컨설팅, 감축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만남의 날 홍보 등을 통하여 참여자를 확대하고 있음.	추진중

□ 환경미화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① 구청 내 일회용컵 사용 제한 및 장바구니 사용하기 추진 - 환경보호는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근본인 만큼, 이를 위하여 구청의 모든 부서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주기 바람.	◦ '18. 12. 14. 전부서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추진계획」을 통보하였으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② 호계천 인근 손바닥정원 주변 정비 - 호계천 일원 손바닥정원의 설치 후 간판 및 주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으며, 해당 지점에 대하여 정비를 바라며 다른 장소에 대해서도 환경을 점검하여 개선하여 주기 바람.	◦ 호계천 일원 손바닥정원 주변환경을 정비하였으며 불법투기가 빈번한 다른 설치장소에도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음.	완결
건의사항	① 음식물류 폐기물 세대별 종량기 사업 내실화 - RFID 사업의 추진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량이 많이 감축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 해당 주민들에 대하여 만족도 및 의견수렴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 2018년 공동주택 RFID 종량기 설치 사업추진 결과, 전년 대비 38%의 감량성과를 거두었음. 2019년 사업추진 시 주민만족도 등 의견수렴하여 추진하겠음.	추진중
	② 감시카메라 등 운영 내실화 - 감시카메라 설치 및 주기적 이동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불법투기 근절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미화원 반장선거 투표 실시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하여 주기 바람. - 수성천 인근, 희망공원에 손바닥 정원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 환경미화원 반장임명은 미화원들의 요구로 직접투표로 선출하고 있고 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나 미화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선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수성천 인근 희망공원에 손바닥 정원이 설치되어 있으나 훼손된 부분은 2019년 사업시행 시 정비토록 하겠음.	완결

□ 안전정보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① 지진 및 각종 재난 대비 철저 - 내진 성능평가 실시와 관련 점검 및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도로·하천·교량·공동주택·공원과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하여 주기 바람.	◦ 관내 공공시설물(도로 시설물, 일반 건축물, 어항시설)에 대하여 현재 내진성능평가 실시 및 보강공사를 진행 중이며, ◦ 내진성능이 인증된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인증마크를 부착하는 등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시행으로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고 지진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완료
	② 핵발전소 방사능 방재 관련 검토 - 지진에 의한 핵발전소 사고, 핵폐기물 임시저장소 관련 등에 우리 구도 주도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전담인력 확충과 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 등에 대한 검토를 하여 추진하기 바람.	◦ 원자력발전소 폐기물 임시저장소 건립과 관련하여서는 지속적으로 동향을 파악토록 노력하겠으며, 방사능방재 행정력을 키우기 위한 전담인력 보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에 대하여는 현재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의 민간건축물에 확대시행 계획(2019년 2월 이후)에 맞춰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시행으로 지진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완료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③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등 -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가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안전 점검 실시 바라며, -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데, 의회를 포함한 공공장소 및 관광지에 대한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 통신업체 통신구 화재 관련 통신라인에 대한 점검과 재난 발생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검토해 주기 바람.	◦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 수급자 등 재난취약기구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 실시하고 있으며, ◦ 문체부 관광지 공공 와이파이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18. 10월)되어 강동 주요관광지 6개소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와이파이 확대사업 관련, 주요 공공장소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추가 추진('19. 3월한)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 사업대상 선정결과를 고려하여 자체 구축 사업 확대도 적극 검토할 예정임. ◦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한, 구청 인입 통신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KT, LGU플러스, JCN 공동 통신구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 실시를 요구하고, 연 1회 이상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음. 또한 행정통신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가정보통신망 사업자 재선정시, 통신 회선의 구청 인입경로 이중화를 요구하여 재난 및 장애에 적극 대비토록 하겠음.	추진중

□ 건설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① 제설함 및 자전거 거치대 비치 -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설함 및 자전거 거치대(보관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함.	◦ 겨울철 설해대비 시설물 정기 점검을 시행하여 제설함 등 제설장비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기 설치된 제설함 및 자전거 거치대는 지속적인 순찰 점검을 시행하고 미비한 부분은 발견 즉시 정비토록 하겠음.	추진중
	② 매곡천 일원 태풍 피해지역 보수 - 매곡천 친수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태풍 콩레이 시 피해 입은 구간에 대하여 보수조치하고 향후 태풍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람.	◦ 태풍 “콩레이”로 인해 유실 된 호안공 재시공 추진중 (3개소, A=140㎡)	추진중
건의사항	① 상습정체 구역 해소 만전 - 산업로 일원, 효문사거리 고가차도 등 상습정체 구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관된 도로 개통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산업로 구간의 교통체증은 산업로 확장 등 연계도로의 개설이 완료되면 완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연계도로의 조속시행 등 조기개통을 위하여 도로관리청(울산광역시 건설도로과, 종합건설본부 등)과 지속적인 건의, 협의 등 만전을 기하겠음.	추진중
	② 도로재포장 공사 철저 -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 마을 안길, 경로당 입구 지역 등 노후화된 소방도로 및 마을 안길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노후된 도로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순찰 점검을 시행하고, 마을안길, 차량통행이 많은 곳, 주민건의 등 필요구간은 도로정비를 시행하여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추진중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③ 자전거문화센터 조속 건립 등 -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주기 바라며, - 오토밸리로 일부 미흡한 절개지에 대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 매곡천, 천곡천 등 하천 사업 시 주민건의사항을 적극 수렴. - 농소2동 호계청구아파트 앞 우수로에 대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지속 관찰하기 바람. -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노점상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 하여 지도, 단속 강화 하여 주기 바람. - 하천 등을 활용 물놀이장을 상설화한 자치단체 벤치마킹하여 매곡천도 물놀이장으로 상설 운영하도록 방법을 모색하기 바람.	◦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 오토밸리로 절개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순찰, 점검을 시행하고, 위험구간 발생시 시 종합건설본부 정비 요청 ◦ 매곡천, 천곡천 등 주민건의사항 발생시 적극적으로 수렴 조치 ◦ 우수관로 CCTV 조사 및 우수기전 준설작업 등 수시 점검 ◦ 농소상우회, 호계시장상인회와 간담회 개최, 노점상 자바라 철거 및 노점상 위치 조정 보행자 안전 및 통행로 확보 ◦ 중구 동천 및 척과천 물놀이장을 벤치마킹하고 매곡천에 물놀이장 설치 방안 검토	추진중

□ 도시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① 도시개발지구 민원사항 적극 수렴 - 진장·명촌지구, 강동산하지구, 호수지구 등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기 바라며, 최소한의 민원 해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불편 민원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주기 바람.	◦ 진장·명촌지구, 동산하지구, 호수지구 등 관내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독려를 시행중이며, 행정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부서협의를 통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음. ◦ '19년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민원해결을 위한 긴급예산은 1차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주민불편민원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음.	완결
건의사항	① 강동오토캠핑장 관련 사업 및 향후 운영 철저 - 강동오토캠핑장 조성 후 운영할 시, 타지자체의 사례를 냉철하게 분석·비교 검토하여 우리구 만의 차별화된 캠핑장 조성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타지자체 견학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사례분석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캠핑장 조성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음.	완결
	② 주민과 소통하는 도시재생 사업 추진 등 - 각종 도시재생사업에 주민 참여를 통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 또한, 전통문화체험장을 효문운동장 인근 공간을 활용하는 등 다른 방안에 대하여도 강구하여 주기 바람.	◦ 도시재생사업 구역내 현장지원 센터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음. ◦ 동 주민자치위원회 정기 회의에 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가 참석하여 도시재생사업 추진상황을 설명할 예정임 ◦ 매년 도시재생대학 및 주민공모사업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음. ◦ 전통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기존 전통건축물(서당)을 활용하여 전통문화를 체험하고자 추진한 사항으로, ◦ 효문운동장 인근 부지를 활용할 경우 토지보상 및 신축공사비 등 상당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후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검토하겠음.	완결

□ 공원녹지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시정 요구	① 안내간판 정비 요청 - 일부 등산로나 공원에 설치된 안내간판이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으며, 전수 조사를 실시한 후 정비하기 바람.	◦ 관내 등산로변 설치된 안내 간판은 조사를 통해 안내문구 교체 등 정비 완료(2018.12.3.)	완결
건의 사항	①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철저 -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설계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살피고 드론을 통한 예찰활동 검토와 방재목 파쇄율 증가 등 최선의 여러 방법을 시행하여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주기 바람.	◦ 우리구 전역을 7개지구로 설계·감리 및 시공에 대한 책임방제를 시행하고 2월 중 드론 예찰을 통한 추가목도 매개충 우화기전인 3월까지 사업 완료도록 조치하겠음. ◦ 예찰방제단을 운영하여 방제적기에 나무주사(1월~2월) 및 지상방제(5월~10월)를 시행하도록 하겠음. ◦ 산지 내 험준지가 많아 감염목의 수집과 파쇄에 어려움이 있으나 수집·파쇄율을 최대한 증가시키도록 하겠음. ◦ 직영방제단에 대한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시공사에도 작업자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중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② 중산어린이공원 조성 및 운영 철저 - 조성단계부터 주민참여형으로 잘 진행해 주었으며, 향후 운영 시 놀이활동가, 공원지킴이 등 일자리 사업과의 연계도 검토하여 주고,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 주기 바람.	◦ 시설물별로 놀이시설 안전수칙 안내판을 설치완료 하였으며 (2019. 1.19.), ◦ 현재 1단계 공공일자리사업을 통한 공원지킴이 운영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완결
	③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보강 등 -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보강 및 확장을 통하여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주기 바라며, 청솔공원 화장실 보수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 도심속 가로수를 정비하여 차량 시야 확보 등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라며, 우리 구에 적합한 수종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 천마산 편백산림욕장은 기본용역을 위한 추경예산 확보 후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조성 및 관리할 계획임 ◦ 청솔공원내 화장실은 수시로 유지보수 관리하겠음. ◦ 가로수로 인한 간판가림, 교통표지판 가림 등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가로수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정비토록 하겠음. ◦ 또한 은행암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불익기 전에 미리 제거하고 점진적으로편 해소를 위해 열매가 수나무로 교체를 추진하겠음. ◦ 아울러 나무를 심기 전에 기후, 토양,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지적수 식재토록 하겠음.	추진중

□ 교통행정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①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교통안전 업무 지속 추진 - OECD 국가 중 교통안전지수가 낮은 편으로 특히, 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교통안전정책이 필요하며, 아이들 등·하굣길이 안전한 위킹스쿨버스, 보행안전지도, 교통안전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바람.	◦ 시에서 울산화물협회에 위탁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월2회 실시하며 보수교육 중 교통안전 분야도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교통안전(과속, 스쿨존 등) 관련 교육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시와 울산화물협회에 건의하도록 하겠음. ◦ 어린이가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보행안전지도사업은 2019년도는 3개교 이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임.	추진중
	② 버스노선 및 버스정류장 관련 지속적인 검토 - 마동 버스정류장이 취락 지역과 거리가 있어 버스노선 및 운영 검토가 필요하며, 송정택지지구에 대단위 아파트 건립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신규 버스노선과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바람.	◦ 현재 설치된 마동정류소는 울산광역시(버스정책과)에 버스정류장 위치변경 요구 2회(2018. 12. 3, 2018. 12. 26)에 요청 하였으며, 주민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 송정지구내 입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버스노선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송정지구 2개 노선 신설(7대), 1개 노선 변경(2대)을 시내버스 노선 개편 반영되었으며, 신설 및 노선변경 시행은 송정지구 입주율 모니터 후 시행 계획임. ◦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는 울산광역시(버스택시과)와 LH공사와 협의중에 있음.	추진중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③ 보행자 통행 안전 확보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그린카운티 인근 택시승강장 개설과 화봉초교 앞 등·하교 시 교통지도 및 신호등 작동에 대해 검토 바람.	◦ 울산광역시(버스택시과)에서 달천 그린카운티 인근 택시승강장 신설 설치 계획에 있음. ◦ 화봉초교 앞 녹색어머니회(화봉초)에서 등·하교 시 교통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 중에 있으며, 신호등은 현재 작동되고 있음.	추진중

□ 건축주택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① 숙박시설 조건부 허가사항 지속 점검 - 상안동 모텔, 신천지구 숙박시설에 대하여 조건부 허가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확인과 지도감독을 실시하기 바람.	◦ 상안동 숙박시설 민원사항에 대해서 주민합의 완료('18.4.13) ※ 차면시설 완료, 외부조명 완료 ◦ 신천지구 숙박시설은 구조심의 조건사항이며, 현재 문제없음	완결
	② 건축 관련 민원사항 지속 검토 - 신규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인근 주민과의 민원, 시공사와 주민과의 하자보수 민원, 명촌효성해링턴 구획 준공과 관련된 민원 등 여러 건축관련 민원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주민과 시공사 등과 적극 소통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바람.	◦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 민원에 대하여 현장관리에 철저토록 지도하겠으며, 하자민원은 사용검사 전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을 통하여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음. ◦ 공동주택 준공(사용검사) 및 하자보수 제도 등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제작, 입주민에게 배부·안내하고, 입주민·시공사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중재하여 관련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완결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③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주차문제 검토 등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시 주차공간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 바람.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법적주차대수 이상인 46대를 확보하였으며, 장기적 안목으로 공공청사 부지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총무과) ◦ 공공청사부지에 주차타워 건립으로 부족한 주차수요를 충족하는 방안도 필요함.	완결
	- 월드메르디앙 수영장에 생존수영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주기 바람.	◦ 생존수영교실의 운영은 현행 법령상 위법한 실정이나, 국가적 시책으로 반드시 습득해야 하는 교육과정인 점 등 실정을 감안하여, 교육청 등 공공기관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2019. 1. 8.로 국토교통부에 법령개정 건의하였음.	완결

□ 보건소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① 약품 관리 철저 - 보건소에서 구입 관리하고 있는 주요 약품에 있어 수요와 공급 주기를 충분히 감안하고 다량의 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PHIS(보건의료정보시스템), 보건진료소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의약품 수불관리로 현재 적정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품 수요량을 감안하여 약품을 구매하고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간 적극적인 약품 전배를 통하여 재고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품 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완결
	② 치매안심센터 효율적 관리 - 치매안심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지역사회 치매관리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니 가정방문, 순회 검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 또한 치매조기 검진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 추진함으로써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도록 당부 드림.	◦ 치매환자 조호물품을 직접 배송하는 1:1 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환자건강 관리 및 방문건강관리팀과 연계, 치매환자 가정방문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 경로당 순회 치매 예방교육, 찾아가는 검진의 날 운영 등 대상자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보건소 내 자원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다양한 매체 활용 등으로 치매조기검진의 중요성 홍보,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비 경감으로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노력하겠음.	완결
	③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내실화 - 최근 정신질환자 범죄가 급증하고 강력 범죄 비중이 높아 정신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이 시급한 실정임. - 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은 계속 확대되어야 하며,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으로 사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관내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등록 및 심리상담서비스를 실시(등록환자 190명, 연간 사례관리서비스 3,054명)하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으로 인식개선 노력하겠음. ◦ 경찰·소방·병원·학교·산업체·복지기관 등(36개소)과 MOU 체결 및 실무자 대상 주기적 간담회를 통해 지역자원 연계를 강화하고 대상자 공유를 통해 응급대응에 만전을 기함. 신규사업으로 고위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하여 건강한 업무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완결

□ 의회사무과

소관부서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① 북구의회 인터넷방송 서비스 개선 - 최근 7월 실시간 인터넷방송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나 방청 실적이 저조하니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라며, 의원별 영상만 검색하고 볼 수 있는 편리한 기능 등을 개선하여 주기 바람. - 타 지방자치단체 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인스타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함께 연동되도록 검토하여 주기 바람	◦ 인터넷방송 활성화를 위해 2019년 개설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인터넷방송 시청 홍보 및 동행정복지센터 등 홍보자료(4,000부) 배포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음. ◦ 의원별 영상만 검색하는 기능은 영상편집 최신장비, 인력이 필요하며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홈페이지 관리 전문업체와 지속협의,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 타 지방자치단체 SNS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네이버블로그 서비스를 개설(2019. 3월)하였고 현재 의회 홈페이지와 연동되어있음.	완료
	② 어린이 모의의회 운영 내실화 - 청소년도 자유학기제·학년제 시행으로 진로체험 장소를 모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체험 기회의 장으로 제공하여 주기 바람. - 어린이들이 흥미를 갖고 호응할 수 있는 모의의회 의제를 적극 발굴하여 주기 바람.	◦ 모의의회 교육자료를 대폭 개편하였고 청소년들이 기존 정해진 회의록을 그대로 따라 읽는 방식에서 직접 자신의 생각을 자유발언, 조례안, 구정질문 등 적극적으로 발언, 표현하는 방식으로 의원 체험기회를 제공하였음. ◦ 모의의회 체험 청소년들이 직접 의제를 선정 발굴하므로 매회 거듭할수록 창의적인 토론주제들이 등장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호응이 좋음.	완료

제5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1. 감사개요

가. 감사의 목적

○ 2019년 구정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 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나. 근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다. 감사기간 : 제18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9. 11. 21. ~ 11. 29.)

라. 감사장소 : 북구의회 소회의실

마. 감사의 주체 : 본회의

○ 의　　장 : 이 주 언
○ 부 의 장 : 백 현 조
○ 의　　원 : 전 의 원
○ 전문위원 : 최상규, 김광명
○ 사무직원 : 황영지, 박영석

2. 감사대상 기관(부서) 및 증인 출석요구 공무원

감사대상 기관	감사대상 부서	출석요구공무원			비고
		직	성명	전임자	
울산광역시 북구		구청장	이동권		
		부구청장	최수미		
	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주민소통실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총무과장	류춘호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도서관과장	이득필		
		징수과장	代박현근		
		부과과장	류춘길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농수산과장	최병훈		
		환경위생과장	김현동		
		환경미화과장	김근철		
	안전건설국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건설과장	조형래		
		도시과장	홍승진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보건소	보건소장	손정미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허사영		

감사대상 기관	감사대상 부서	출석요구공무원			비고
		직	성명	전임자	
울산광역시 북구	전 동	농소1동장	김용근		
		농소2동장	강우송		
		농소3동장	이병직		
		강동동장	김수호		
		효문동장	오세천		
		송정동장	권오걸		
		양정동장	이옥선		
		염포동장	초금희		

○ **관계 공무원 출석**

- 출석기간 : 제18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9. 11. 21. ~ 11. 29.)
- 출석장소 : 감사장(소회의실), 대상 현장
- 기 타 : 당일 감사대상 부서의 출석 공무원은 항상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 출석 공무원은 대상사무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3. 행정사무감사 일정

구분 / 일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고
2019. 11. 21.(목)	10:00	소회의실	◦증인선서 •국·소·실·과·관·동장, 이사장 ◦기획홍보실 ◦주민소통실 (행정복지센터 포함) ◦보 건 소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	
2019. 11. 22.(금)	10:00	〃	◦행정지원국 •총 무 과 •문화체육과 •관광해양개발과	
2019. 11. 23.(토)		휴 회		
2019. 11. 24.(일)		휴 회		
2019. 11. 25.(월)	10:00	소회의실	◦행정지원국 •도서관과 •징 수 과 •부 과 과 •민원지적과	
2019. 11. 26.(화)	10:00	〃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2019. 11. 27.(수)	10:00	〃	◦복지경제국 •경제일자리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2019. 11. 28.(목)	10:00	〃	◦안전건설국 •안전정보과 •건 설 과 •도 시 과	
2019. 11. 29.(금)	10:00	〃	◦안전건설국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4. 감사자료 제출 요구

○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

계	공통	기획홍보실	주민소통실	행정지원국	복지경제국	안전건설국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
452	26	20	25	110	140	88	25	7	4	7

※ 감사 당일 제출될 자료와 관련된 서류 일체

○ 제출서류

○ 행정사무감사 자료 : 파일 및 책자(20부)로 제출

○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 파일 및 책자(20부)로 제출

- 기본 현황(기구, 정원·현원, 분장사무현황) : 실·국·소, 과·동별 작성
- 2019년도 예산 집행 현황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세부 처리결과(완결 포함)
- 2018. 10. 1. ~ 2019. 9. 30. 구정 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감사범위 : 2018. 10. 1. ~ 2019. 9. 30.

※ 요구 자료에 따라 감사범위(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감사 관련 필요한 별도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작성기준일 : 2019. 9. 30. 현재

○ 제출기한 : 2019. 11. 4.(월)

5.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1. 감사 선언(의장)
2. 의장 인사
3. 증인 선서(집행기관)
4.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 소개
5.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6. 서류 검증 또는 현지 확인
7. 감사 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6. 증인 선서 방식

○ 선서장소 : 감사장(소회의실)

○ 선서방법

• 감사 첫날 국·소·실·과·동관장, 이사장 일괄 실시 - 38명
(국장 3명, 소장 1명, 실·과관장 25명, 이사장 1명, 동장 8명)

• 선서문 낭독(대표) : 행정지원국장

○ 선서문 : 감사 첫 날(11. 21.(목)) 선서 후 일괄 제출

7. 행정사항

○ 감사장 설치 : 전 직원

○ 감사지적사항 당일 작성 제출 : 감사의원

○ 감사지적사항 취합 작성 : 황영지, 박영석

○ 녹음, 녹화 등 회의록 작성 : 엄현주 외 1명

○ 현장확인 활동(필요시)

• 준비사항 : 차량, 장비 및 담당 공무원 현지 안내

8. 동주민센터 연도별 행정사무감사 계획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비 고
계	4개동	4개동	
농소1동	○		
농소2동		○	
농소3동	○		
강 동 동		○	
효 문 동	○		
송 정 동		○	
양 정 동	○		
염 포 동		○	

※ 감사자료는 전체 동에서 작성 제출하고 해당연도 감사대상은 동장이 출석하여 답변

9.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현황

구 분		요구건수	비 고
합 계		452	
공 통 사 항		26	
기 획 홍 보 실		20	
주 민 소 통 실(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25	
행정지원국	소 계	110	
	총 무 과	28	
	문화체육과	27	
	관광해양개발과	11	
	도 서 관 과	19	
	징 수 과	7	
	부 과 과	5	
	민원지적과	13	
복지경제국	소 계	140	
	복지지원과	9	
	사회복지과	19	
	가족정책과	26	
	경제일자리과	21	
	농 수 산 과	25	
	환경위생과	20	
	환경미화과	20	
안전건설국	소 계	88	
	안전정보과	18	
	건 설 과	20	
	도 시 과	14	
	공원녹지과	14	
	교통행정과	10	
	건축주택과	12	
보 건 소		25	
문화예술회관		7	
시설관리공단		4	
의 회 사 무 과		7	

【전부서】

<table>
<tr><th>소관
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공통
사항]</td><td>
1.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 현황
<table>
<tr><th>민원명</th><th>접수일자</th><th>처리일자</th><th>민 원 인</th><th>민원내용</th><th>처리결과</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2. 인·허가 처리 불가 및 반려된 내역(사유)
3.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 현황 및 처리결과
4. 고소, 고발 사건 현황 및 결과, 발생비용
5. 각종 공사 추진 현황
※ 사업비 300만원 이상, 담당별, 사업 성격별, 사업추진 기간 순으로 작성
설계단계, 계약 및 완료건 모두 포함 / 필요시 공사 전·후 사진 사본 요구
<table>
<tr><th>공 사 명
(사업명)</th><th>사 업 개 요
(기간, 위치, 세부사업내역 등)</th><th>사업비</th><th>공정률</th><th>시공업체</th><th>예 산
확보시기</th></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6.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
<table>
<tr><th>사업명</th><th>용역종류</th><th>용역비</th><th>착수일자</th><th>완 료
일 자</th><th>용 역
결 과</th><th>계약자</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7. 2019년도 이월사업 현황(계속비·명시·사고이월) 내역 및 추진 현황
8. 공사금액 1억원 이상 설계변경 내용
<table>
<tr><th>공사명</th><th>변경사유</th><th>공사금액
증 가 액</th><th>설계변경
요 청 자</th><th>설계자</th><th>비 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9. 3,000만원 이상 도급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관리 현황 및 하자발생 처리내역
1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도로, 공원, 공공건물, 공공이용시설)
- '18. 10. 1. 이후 신규 설치분만 작성
11.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황
- 위탁·용역 현황 : (붙임 2)
- 위탁·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 : (붙임 3)
12. 주민참여감독 운영 현황(공사명, 기간, 공사금액, 감독 인적사항)
13. 각종 공사에 따른 각 동 통보를 위한 공문발송 내역
<table>
<tr><th>공사명</th><th>공사개요</th><th>해당 동</th><th>통보일자</th><th>통보내용</th><th>비 고</th></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
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공통
사항]</td><td>
14. 지방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집행내역
- 2018. 10. 1. ~ 2019. 9. 30.
(일반 민간단체-민간경상보조사업보조금 지원 포함)
<table>
<tr><th rowspan="2">단체명</th><th rowspan="2">세부사업내용</th><th rowspan="2">사업기간</th><th colspan="3">예 산 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잔액</th><th rowspan="2">비고</th></tr>
<tr><th>계</th><th>보조금</th><th>자부담</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부서 개별사항과 중복 요구일 경우 공통사항은 생략 가능
15.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각종 사업비 집행 후 환수 내역
<table>
<tr><th rowspan="2">환수일</th><th rowspan="2">사업명</th><th colspan="2">환수대상</th><th rowspan="2">환수사유</th><th rowspan="2">금액</th><th rowspan="2">비고</th></tr>
<tr><th>성명(업체,기관,단체명)</th><th>주소</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16. 바우처 사업 현황
- 사업개요(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대상, 참여자 현황, 실적, 예산, 사업주체 등)
17.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
<table>
<tr><th rowspan="2">번호</th><th rowspan="2">차량명</th><th rowspan="2">차량번호</th><th rowspan="2">구입일</th><th rowspan="2">용도</th><th rowspan="2">상태</th><th colspan="3">수리내역</th><th rowspan="2">유류비</th><th rowspan="2">비고</th></tr>
<tr><th>일자</th><th>내역</th><th>비용</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18. 단위사업별 기간제 근로자(일시사역인부 포함) 채용 현황
<table>
<tr><th>부서명</th><th>성명</th><th>성별</th><th>나이</th><th>주소</th><th>사역기간</th><th>사역목적</th><th>단가(원)</th><th>채용
방법</th><th>비고</th></tr>
<tr><td></td><td>김○○</td><td></td><td></td><td>○구 ○○동</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작성기간 : 2018. 10. 1. ~ 2019. 9. 30.
19. 부서별 선진지 견학 추진 실적(국외 포함)
<table>
<tr><th>기간</th><th>지역</th><th>인원</th><th>목적</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예산편성부서에서 작성하되, 위탁 견학 포함
20. 공무원 교육, 주민교육 실시 현황 및 실적·평가
※ 공무원 교육은 교육원 교육 제외. 부서별 직원(주민) 교육, 연수, 워크숍, 세미나 등(위탁 교육 포함)
2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붙임 1)
22.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붙임 1)
23. 정부·울산시 등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세부추진상황
</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
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공통
사항]</td><td>
24. 심사와 관련한 위원회 개최 현황
<table>
<tr><th>위원회명</th><th>개최일시</th><th>주요안건</th><th>심사방법</th><th>심사결과</th><th>비 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심사기준표 첨부 제출

25. 행사·축제 개최 현황
(단위:천원)
<table>
<tr><th>사 업 명</th><th>개최일시</th><th>장 소</th><th>예산액
/집행액</th><th>주요내용
(요약)</th><th>비 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행사·축제 수익이 있을 시 비고란에 작성.

26. 각 실과에서 제작한 홍보물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현황
(인쇄 및 온라인 홍보물 모두 포함)
<table>
<tr><th>평가년도</th><th>사 업 명</th><th>홍보주제</th><th>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여부</th><th>비 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td><td></td></tr>
</table>

(붙임 1)

□ 기관운영(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 예산과목 :

사용일	사용액	지 출 처	지출목적(내용)	대상인원 (○○○외 0명)
계				
년, 월, 일 명시				※ 대표 1인 실명 또는 직책 명시

※ 예산과목(203-01, 203-03) 별지 작성, 지급연도를 구분하여 연도별 합계 계산

(붙임 2)

□ 위탁용역 현황(2019년도)

위탁 부서 및 기관	위탁 용역 업무명	수탁 용역 기관	계약 기간	모집 방법	재계약 횟수	총 수탁 기간	입찰 참여 업체수	입찰 예정 가격	수탁 총액 (낙찰가격)	수탁 업체 고용 인원	수탁자 선정 방법과 근거

※ 작성방법

(1) 민간위탁과 용역 업무를 구분 작성

(2) 모집방법은 일반경쟁, 공개경쟁, 수의계약, 조달청 등으로 분류

(붙임 3)

□ 위탁·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2019년도)

구분	위탁기관명		위탁용역업무명	수탁용역기관			근로계약서	임금	상여금	퇴직금	근로시간	법정수당	법정휴가	사회보험	계약기간	근속기간	재계약방법
	실국	부서명		업체명	구성	인원(명)											
본청	기획홍보실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주민소통실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행정지원국	총무과			:												
		...			:												
		...			: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															
		...															
	...	...															
직속기관	보건소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사업소	문화예술회관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하부행정기관	농소1동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																
법인	시설관리공단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의회	의회사무과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1) 구성
- ㅇ 정규직 : 계약기간 정함 없이 상시 고용된 자
- ㅇ 계약직, 임시직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 ㅇ 파견직 : 상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상이한 자

(2) 근로계약서 : 서면 근로계약서 있으면 ○, 없으면 ×

(3) 임금 : 2019. 7월 지급된 임금, 상여금 제외(천원단위)

(4) 상여금 : 연간 지급율(%)

(5) 퇴직금 : 퇴직금 지급대상 ○, 지급대상이 아니면 ×로 표기

(6) 근로시간 : 2019. 7월 실근로시간
(7) 법정수당 :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였으면 ○, 지급하지 않았으면 ×
(단, 사유가 없어 미지급하였으나, 사유발생시 지급할 것이라면 ○로 표기)
(8) 법정휴가 : 주휴, 연차유급휴가 등 법정휴가 부여 하였으면 ○, 미부여 하였으면 ×
(단, 부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미부여 하였으나, 충족될 경우 부여할 것이라면 ○)
(9) 사회보험 : 산재보험 1, 고용보험 2, 국민연금 3, 건강보험 4로 하여 적용되는 것의 번호를 모두 기재
(예 : 1, 3 / 1, 2, 3, 4)
(10) 계약기간 : 계약기간이 없으면 무기, 계약기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입
(11) 근속기간 : 평균 근속기간
(12) 재계약방법 : 자동갱신 1, 재선발(공개채용) 2, 재계약 안 됨 3

【기획홍보실】

<table>
<tr><th>소관
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기획
홍보실</td><td>
1. 구청장 공약사업 이행현황, 공약이행률, 향후계획
2. 공약이행 주민평가단 구성과 운영 현황
3. 공무원 창의정책연구모임 운영 실적과 내용, 구정반영여부
4. 공무원 제안 운영 실적
5. 구민창안제도 접수현황, 처리절차 등 운영실적
6. 위원회 현황 관련(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각종 협의회 포함)
① 위원회 현황
(2019. 9. 30. 현재)
<table>
<tr><th>구 분</th><th>계</th><th>법령</th><th>조례</th><th>기타 규정</th></tr>
<tr><td>설치근거별</td><td></td><td></td><td></td><td></td></tr>
</table>
<table>
<tr><th>구 분</th><th>계</th><th>심의</th><th>의결</th><th>자문</th><th>협의</th></tr>
<tr><td>성격별</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② 위원회 위원 현황
<table>
<tr><th rowspan="3">위원회명</th><th rowspan="3">위원장</th><th colspan="6">위 원 수</th><th rowspan="3">임 기</th></tr>
<tr><th rowspan="2">계</th><th rowspan="2">남</th><th rowspan="2">여</th><th rowspan="2">당연직
임명직</th><th colspan="3">위 촉 직</th></tr>
<tr><th>공무원</th><th>시·구의원</th><th>민간위원
(시민단체)</th></tr>
<tr><td>총계</td><td>구청장( )
부구청장( )
국장( )
민간위원( )</td><td></td><td>0</td><td>0</td><td>0</td><td>0</td><td>0</td><td>0</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③ 위원회 개최 현황
<table>
<tr><th rowspan="2">위원회명</th><th rowspan="2">회의주기</th><th rowspan="2">개최횟수
(서면)</th><th rowspan="2">회의록</th><th colspan="3">예산집행내역</th></tr>
<tr><th>예산액(천원)</th><th>인원(명)</th><th>집행액(천원)</th></tr>
<tr><td>총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위원회 관리카드(설치근거, 목적, 설치일, 위원 명단 등) : 별도 제본 제출
④ 신규 설치 위원회 현황
<table>
<tr><th>소관부서</th><th>위원회명</th><th>설치일자</th><th>설치근거</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⑤ 위원회 개최에 따른 식비 집행내역
<table>
<tr><th rowspan="2">소관부서</th><th rowspan="2">위원회명</th><th colspan="4">집행내역</th><th rowspan="2">비고</th></tr>
<tr><th>일시</th><th>장소</th><th>참석인원</th><th>소요금액</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
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기획
홍보실</td><td>7.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위원 구성 현황, 운영 실적 및 성과, 예산 집행액
8.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내역(2018년, 2019년)
9.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 ‘19년 참여예산제 운영계획서
- 시민위원 현황(추천단체 및 소속, 거주지 포함, 타 단체가입 현황)
-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현황 및 실적(일정, 교육대상, 주제, 참석인원)
- 조정위원회 조정결과
- 지역위원회 구성 현황 및 개최현황, 소규모 사업 및 정책 사업 제안 주민 의견 수렴 자료
- 연구회 연구 현황, 연구실적
10.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제 당초예산 반영내역
11. 지방보조금 정산 및 평가방법, 개선결과, 회의 개최 현황
12. 예산절약 인센티브제 운영 실적
- 인센티브 종류(해외연수기회 제공 등)
13. 예산낭비센터 운영실적, 제안내용, 처리결과, 포상금 지급액
14. 예비비 지출현황
<table><tr><th>부서명</th><th>사업명</th><th>예산과목</th><th>지출액</th><th>지출일자</th><th>이월액</th><th>집행잔액</th><th>사유</th><th>비고</th></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15. 우리 구 채무 현황(지방채, 보증채무 등)
16. 구정홍보 관련 업무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17. 구정성과, 구정홍보 영상물 예산집행 내역(※ 영상물 별도 제출)
18. 언론 보도사항 주요내용 및 조치결과
19. 행정심판 및 소송(행정, 민사) 현황
신규 사건 및 작성기준일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의 사건 접수(제소 포함)일, 사건내용, 담당부서, 진행상황, 결과, 비용(패소나 조정에 따른 배상비용 포함 등) ※ 위 기간 동안 사건 완료 건도 포함
20. 고문변호사 활동 현황 및 실적</td><td></td></tr>
</table>

【주민소통실】

<table>
<tr><th>소관
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주민
소통실
(동
행정
복지
센터
포함)</td><td>
1. 구청장 (연초) 동순회 방문 주민건의내용 처리 현황
2. 구청장과 주민간담회 주민건의내용 및 처리 현황
3. 주민참여 추진 현황
4. 주민참여학교 운영 실적
5.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장 회의 개최 현황 및 회의수당 집행내역(동별 회의일시, 총원, 참석현황, 수당지급 현황), 회의록 제목(안건)
※ 필요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별도 요구
6. 농소3동 주민자치회 운영 실적
7.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체계 개선실적
8.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사업 현황
9.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
10. 동별 예산 집행 현황(동별 취합),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1. 각 동 공공요금(가스, 수도, 전기) 월별 사용량 및 요금 현황 (2018년, 2019년 월별 비교)
12. 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및 문화탐방 추진 현황
13. 국민운동단체 및 민간 자생단체 현황, 예산 지원내역, 각 단체별 사업 실시 현황
<table>
<tr><th rowspan="2">세부사업내용</th><th rowspan="2">사업기간</th><th colspan="3">예 산 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잔액</th><th rowspan="2">비고</th></tr>
<tr><th>계</th><th>보조금</th><th>자부담</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북구협의회 현황 관련
- 명단(회원경력 포함), 직업(소속단체), 사업 추진내용 및 결과, 예산 지원 내역
<table>
<tr><th>세부사업내용</th><th>사업기간</th><th>보조금 지원액</th><th>보조금 집행액</th><th>보조금
집행잔액</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15. 민주평화통일북구협의회 해외연수 관련 실적, 정산, 사진 등
</td><td></td></tr>
</table>

소관 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주민 소통실 (동 행정 복지 센터 포함)	16. 자율방범대 연합회 보조금 지원 내역 및 집행 잔액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17. 동별 자율방범대 구성 세부 현황, 운영비 지원 내역 및 집행 잔액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18. 생활공감모니터 운영 현황 19. 관내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 20. 직원 친절교육 실시내용 21. 생활민원바로처리 운영 현황 및 저소득층 가사도우미 운영실적 22. 동 종합감사 실시 결과 및 조치내역 (동명, 감사기간, 지적사항, 조치사항, 징계 처분사항, 모범 사례) 23. 자체감사·특별감사·광역시·행안부·감사원 감사의 목적, 감사내용, 감사기간 및 결과 조치사항 24. 구민감시관제, 명예구민 감사관제 및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실적 25. 계약심사 현황 및 추진 실적	

【행정지원국】

<table>
<tr><th>소관
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총무과</td><td>
1. 청사 내 직원 휴식 공간 등 복지시설 설치 현황
2. 구청 어린이집 현황
- 원생 수, 교사 현황, 북구청 지원사항, 보조금 집행내역, 시설 공사 현황 및 결산 자료
3.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사업 추진실적
4. 인력 운용 관련
- 전체 인력 현황 : 서식 - (붙임 1)
- 기관별 인력 현황 : 서식 - (붙임 2)
- 기타 인력 현황 : 서식 - (붙임 3)
5. 공무직 급여 지급내역
6. 공무원 현황
- 6급 이하 공무원 현황(직급별, 연령대, 성별, 총 근무연수)
- 직급별 장애인 공무원 현황
- 행정 6, 7, 8급 공무원 성별 비율
- 최근 3년간 행정7급▸6급, 행정8급▸7급 승진자 현황
(성별 승진비율, 당해 직급 근무년수, 당해직급 근무부서 이력)
- 최근 3년간 동 공무원 성별 비율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2019년도(9.30.기준)</th><th colspan="3">2018년도(9.30.기준)</th><th colspan="3">2017년도(9.30.기준)</th></tr>
<tr><th>계</th><th>남</th><th>여</th><th>계</th><th>남</th><th>여</th><th>계</th><th>남</th><th>여</th></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동</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7. 5급 공무원 전보내역
<table>
<tr><th>대상자</th><th>부서명</th><th>근무기간</th><th>비 고</th></tr>
<tr><td rowspan="2"></td><td></td><td></td><td></td></tr>
<tr><td></td><td>~ 현재</td><td></td></tr>
</table>
8. 임기제 공무원 채용 현황
<table>
<tr><th>부서명</th><th>성명</th><th>직급</th><th>임용약정
기간</th><th>업무</th><th>채용방법</th><th>월평균급여</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포함
9. 인사관련 민원 또는 직원고충 처리현황(건수, 처리결과)
※ 건수 : 주요내용별 건수
10. 민간인, 공무원 표창 수여 현황(2018년, 2019년)
</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
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총무과</td><td>
11. 공개입찰 계약 현황(2천만원 이상 공사, 물품·용역)
<table>
<tr><th>발주부서</th><th>계약
일자</th><th>건명</th><th>사업량
(수량)</th><th>예정가</th><th>낙찰가</th><th>낙찰율</th><th>입찰참여
업체수</th><th>낙찰자</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12. 관급공사 계약 현황(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발주부서명, 계약일자, 방법, 공사명, 설계금액, 계약금액, 계약업체(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13. 수의계약 현황(1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 부서명,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업체명
14. 계약위반업체 행정조치 현황
15.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16. 구청사, 보건소,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7개소
- 청소 관련 계약내역(총괄)
- 청사 내 실내화단 관리업체 관리비 내역
17. 공유재산 대부, 임대, 매각, 임대료 체납 등 관리 현황
(대상자, 지번, 지목, 면적 등 포함)
18. 공유 재산 취득 현황(구 소유 - 토지, 건물)
- 토지
<table>
<tr><th rowspan="2">연
번</th><th colspan="3">품 명</th><th rowspan="2">취득일</th><th rowspan="2">취 득
방 법</th><th rowspan="2">취 득
가 격</th><th rowspan="2">취 득
목 적</th><th rowspan="2">비고</th></tr>
<tr><th>소재지</th><th>지목</th><th>면적(㎡)</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건물
<table>
<tr><th rowspan="2">연
번</th><th colspan="3">품 명</th><th rowspan="2">취득일</th><th rowspan="2">취 득
방 법</th><th rowspan="2">취 득
가 격</th><th rowspan="2">취 득
목 적</th><th rowspan="2">비고</th></tr>
<tr><th>소재지</th><th>건축면적
(㎡)</th><th>건축연면적
(㎡)</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토지, 건물 - 연도별 구분, 부서별(소계) 작성
19. 대회의실 월별 사용료 수입/횟수 현황(사용자 표기), 대회의실 대여 현황(대여 단체, 행사명 등)
20. 구청사 개보수 내역
<table>
<tr><th>사업명</th><th>사업기간</th><th>사업내역</th><th>사업비</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21. 구청사 냉방기 가동 실적(가동 온도 기준, 지침 포함)
22. 구청사 전기료 사용내역(2018년, 2019년 월별 비교)
23. 중산행복샘 운영현황
</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
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총무과</td><td>24. 최근 3년간 한마음 연수 현황(무기계약직, 소수직렬 참가율 등),
심사실적 및 구정 반영 여부
25. 수의계약 구별 업체 계약 현황(500만원 이상)
(단위 : 건)
<table>
<tr><th>구 분</th><th>물 품</th><th>공 사</th><th>용 역</th></tr>
<tr><td>계</td><td></td><td></td><td></td></tr>
<tr><td>북 구</td><td></td><td></td><td></td></tr>
<tr><td>중 구</td><td></td><td></td><td></td></tr>
<tr><td>남 구</td><td></td><td></td><td></td></tr>
<tr><td>동 구</td><td></td><td></td><td></td></tr>
<tr><td>울주군</td><td></td><td></td><td></td></tr>
<tr><td>울산외</td><td></td><td></td><td></td></tr>
</table>
26. 제한업체와 계약 체결한 경우와 사유
27. 동 행정복지센터 내 카페 시설 계약 현황(계약방법 등)
28. 연간 태극기 도로 게양 현황(지급내역, 파손 현황 등)
※ 태극기 및 게양대 단가 포함</td><td></td></tr>
</table>

(붙임 1)

□ 전체 인력 현황(2019. 9. 30. 기준)

구분	지방공무원 인력										기타 인력					
											공무직					
	계	정무직	일반직	관리운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임기제	소방직	기타	계	전문실무원	시설관리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계																
본 청																
:																
:																
:																
:																

※ 위 표의 각 항목마다 현원을 기입하고 만약 정원과 현원이 다를 경우에는 (괄호)안에 정원을 표기

(붙임 2)

□ 기관별 인력 현황(2019. 9. 30. 기준)

구 분		지방공무원 인력									
		계	정무직	일반직	관리운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임기제	소방직	기타
계											
기획홍보실											
주민소통실											
행정지원국	총 무 과										
	문화체육과										
	:										
	: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										
	:										
안전건설국	안전정보과										
	건 설 과										
	:										
	:										
보 건 소											
문화예술회관											
농 소 1 동											
: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											

(붙임 3)

□ 기타 인력 규모(2019. 9. 30. 기준, 단, 일시사역의 경우 연인원을 표기)

구 분		업 무	기타 인력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계	전문실무원	시설관리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계	180일이하		1년 미만		1년 이상		
									현재	연인원	현재	연인원	현재	연인원	
기획홍보실															
주민소통실															
행정지원국	총무과	:													
	문화체육과														
	:														
:	: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농소1동															
: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															

※ 업무란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인원을 기입

<table>
<tr><th>소관
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문화
체육과</td><td>
1. 축제 및 문화행사 (쇠부리, 정월대보름 행사 제외)
(현황, 예산, 집행내역,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2. 쇠부리축제 사업내용, 결과, 일자별 세부 지출내역, 향후 사업운영 계획(자체 축제준비 여부 등), 쇠부리축제 평가보고회 회의록, 외부 감사 받은 결과 보고서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3. 쇠부리 복원사업 관련 실적 및 정산
4. 서머페스티벌 실적 및 정산
5. 염포예술창작소 사업계획서 및 예산 지원내역, 일자별 세부 지출 내역
6. 문화쉼터 몽돌 운영 현황, 인문학 강좌 등 사업 현황
7. 북구문화원 사업계획서 및 예산 지원내역, 일자별 세부 지출내역
<table>
<tr><th rowspan="2">세부사업내용</th><th rowspan="2">사업기간</th><th colspan="3">예 산 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액</th><th rowspan="2">보 조 금
집행잔액</th><th rowspan="2">비고</th></tr>
<tr><th>계</th><th>보조금</th><th>자부담</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8. 문화재 지정 현황 및 정비 실적, 관리 현황
9. 게임장 현황 및 단속 실적, 처리결과
(성인게임장, 청소년게임장, PC방 구분, 폐쇄현황 포함)
10. 노래연습장 불법행위 단속 현황 및 처리결과
11. 농소큰사랑 작은 음악회 개최 현황, 예산 집행 내역
12.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 현황
13. 생활문화센터 운영 현황
14. 농소3동, 양정동 물놀이장 운영 현황
(위탁업체, 계약내용, 안전요원 배치, 교육 및 근무현황)
15. 달천철장 보존 및 주변 정비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
16. 동별 체육시설 설치 현황(위치, 운동기구 명칭, 개수, 관리상태 등)
17. 각종 체육관련 행사 개최 및 지원 현황(행사명, 일시, 예산, 내용, 주관), 동별 체육대회 개최 현황 및 정산결과
18. 2018년도 구민 한마음 생활체육대회 내용 및 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td><td></td></tr>
</table>

소관 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문화 체육과	19.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운영 현황, 각종 수당 현황 -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집행 현황 20. 생활체육교실(강사수당 집행 현황 포함), 장수체육대학, 청소년 체련교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현황 21. 체육회 조직도, 조직현황, 임원, 이사회, 대의원 현황 (이름, 나이, 직업, 거주지, 활동경력) 22. 생활체육시설 현황, 운영주체, 수익금 23. 장애인 실업팀 운영실적 24. 관내 학교 운동부 지원사업 실적 25.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실적, 관련 공문(최근 3년간) 26. 쇠부리체육센터 운영 현황 - 종목별 프로그램 현황 및 세목별 예산집행 내역, 참여자 현황 등 - 민원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 ※ 쇠부리체육센터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 인력 운용 현황 27. 쇠부리체육센터 공공요금(가스·전기·수도)월별 사용량, 요금 및 각 운동장 전기료 사용내역 (2018년, 2019년 월별 비교)	

소관 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관광 해양 개발과	1. 관광지 투어 프로그램 운영 실적 2. 주요 관광지 현황 및 홍보 실적 3.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 실적 4.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현황 5. 공모전, 기념품 등 관광활성화 추진 실적 6. 강동 물놀이장 운영 실적 (위탁업체, 계약내용, 안전요원 배치, 교육 및 근무현황) 7. 당사해양낚시공원 운영 현황 8. 강동관광단지 조성 계획 관련 추진 현황 9. 강동사랑길·누리길·해파랑길 운영현황, 예산(시설유지비) 내역, 기대효과 ※ 강동사랑길 걷기 대회 정산서 제출(별첨) 10. 강동 해안 익사사고 현황(최근 2년간), 구 차원의 예방대책 추진상황 11. 어촌체험마을 운영 실적	

소관 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도서관과	1. 각 도서관 운영 현황 및 실적 - 세부 편성예산 - 하루 평균 이용자수 및 도서대출자 수 - 도서(장서) 보유 현황 - 인력 현황(일반직 공무원, 사서직 공무원, 상용, 사서 자격증 보유 여부 등) -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실적, 참여자 현황, 소요예산 2. 도서관 인력 운영 현황 - 각 도서관별(작은도서관 포함) 자원봉사자 수, 봉사참여 비율(월 1회 이상) - 각 도서관별 기간제근로자 현황(도서관 봉사 경력 유무) 3. 구립도서관 도서구입 현황(예산 포함) 4. 작은 도서관 조성 현황 및 지원 내역, 운영 실적, 도서 대출 현황, 이용자 현황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5. 「2019년 함께 읽는 북구의 책」 사업 추진 성과 6. 9월 독서의 달 추진 현황, 사업 실적, 사업 평가 7. 7개 도서관 전기료 사용내역(2018년, 2019년 월별 비교) 8.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회의록, 사업내역 등) 9. 자원봉사자(도서관 친구들 포함)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예산지원 현황 10. 주민·자원봉사자 교육 현황 및 내용 11. 교육진흥재단 운영 상황 - 재단 기금 및 매년 장학금 집행실적, 향후계획 12. 교육경비지원 현황 및 세부 집행내역 - 2019년도 각 학교 및 유치원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예산 포함)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13.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소관 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도서 관과	14. 열린명사아카데미 운영실적, 식전공연 추진내용 및 실적 - 일시, 참여인원, 강사, 주제 등 - 예산 집행내역(강사수당 등 포함) 15 제3대학 운영 실적 (강사·학생선발 과정 및 운영실적, 출석률) 16. 제3대학 졸업 후 활동 실적 17. 비문해 사업기관 현황 및 지원 현황 18. 성인문해 활성화 사업 추진상황 전반 - 추진실적, 예산 집행내역 - 찾아가는 경로당 한글교실 운영 내역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19.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실적	

<table>
<tr><th>소관
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징수과</td><td>1.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2. 고액 체납자 및 체납처분 현황
(1백만원 이상, 압류·독촉사항 등)
3.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현황과 환급내역(요약 총괄)
4. 지방세,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
(시효소멸 제외 건당 10만원 이상)
(단위:천원)
<table>
<tr><th colspan="2">체 납 자</th><th colspan="3">결손내역</th><th rowspan="2">결손처분
일 자</th><th rowspan="2">결손사유</th></tr>
<tr><th>성명</th><th>주소</th><th>세목</th><th>부과연도</th><th>결손액</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5.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황
6. 선진지 견학 추진상황
7. 기부금품 접수 현황</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
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부과과</td><td>
1.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2. 지방세 부과징수 이의 신청(민원)내용 및 처리 현황
3. 세무조사 현황 및 결과, 실적
4. 주민세(종업원분) 부과 현황
(단위:천원)
<table>
<tr><th rowspan="2">연 종업원
급여총액</th><th colspan="2">부과</th><th colspan="2">징수</th><th rowspan="2">비 고</th></tr>
<tr><th>업체수</th><th>부과액</th><th>업체수</th><th>징수액</th></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r>
<tr><td>10억이하</td><td></td><td></td><td></td><td></td><td></td></tr>
<tr><td>50억이하</td><td></td><td></td><td></td><td></td><td></td></tr>
<tr><td>100억이하</td><td></td><td></td><td></td><td></td><td></td></tr>
<tr><td>100억초과</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5.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부과현황
(단위:천원)
<table>
<tr><th rowspan="2">지방소득세
부과액</th><th colspan="2">부과</th><th colspan="2">징수</th><th rowspan="2">비 고</th></tr>
<tr><th>업체수</th><th>부과액</th><th>업체수</th><th>징수액</th></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r>
<tr><td>1백만원
이하</td><td></td><td></td><td></td><td></td><td></td></tr>
<tr><td>1천만원
이하</td><td></td><td></td><td></td><td></td><td></td></tr>
<tr><td>1억 이하</td><td></td><td></td><td></td><td></td><td></td></tr>
<tr><td>1억 초과</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td><td></td></tr>
</table>

소관 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민원 지적과	1. 민원실 친절도 향상을 위한 추진 실적 2.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3. 민원 1회방문처리제 추진 실적 4.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제 운영 실적 5.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 및 발급건수(월별, 1일평균) (설치일자, 발급종류 등) ※ 무인발급기 고장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중단 횟수, 민원 발생내역 및 처리결과 6. 야간 민원실 운영 실적 7. 여권발급 실적(전년도, 월별 비교), 여권발급 배치인력 현황 8. 최근 3년간 지적 재조사 현황(예산, 필지수 등), 사업 효과 9.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결과 10.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현황 11.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및 조정 현황(과년도 대비) 12.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 및 조치 현황 13.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따른 부정신고 혐의자 적발 및 과태료 처분 현황	

【복지경제국】

<table>
<tr><th>소관
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복지
지원과</td><td>1. 구 자체 복지사업 현황, 예산, 사업계획, 홍보, 대상 및 실적
2. 보훈단체 지원 현황, 예산 지원 현황, 세부지출내역(사업별, 사업기간)
<table>
<tr><th rowspan="2">세부사업내용</th><th rowspan="2">사업기간</th><th colspan="3">예 산 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잔액</th><th rowspan="2">비고</th></tr>
<tr><th>계</th><th>보조금</th><th>자부담</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단체별 구분 작성,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3. 권역별 복지관 운영 실적
4. 긴급복지지원 사업 실적
- 국비, 시비129 구분(지원금액 등)
5. 자원봉사센터 월별 예산 및 결산 현황, 사업내역 및 실적,
자원봉사자 관리 현황
6. 자원봉사 홈타운 관련 추진실적, 예산 지원내역
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현황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운영 현황
8.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명단, 직업) 및 활동 현황
9. 지정기탁금 내용과 집행 현황</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
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사회
복지과</td><td>
1. 경로당 신축, 개·보수 현황 및 소요예산
2. 경로당 현황(주소, 이용인원, 건물형태, 소유형태), 경로당별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급내역, 각종 물품 구입지원 내역 (세부 단가 포함)
3. 찾아가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 현황
(세부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
4. 노인복지관 시설 현황, 일 이용인원, 사업 추진내역 및 실적, 예산 및 결산 현황
5.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실적(참가인원, 나이, 사업내용 등)
6. 관내 각종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 종사자 시설별 급여실태, 처우개선비 지급 현황, 근무시간 등
7. 장애인단체 관련
- 기본 현황
- 보조금 및 기타 지원내역
- 지도점검 내역 및 조치결과
8. 관내 장애인 현황(장애등급별) 및 예산 지원 현황, 자립생활 지원 현황
9. 북구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련(2018년, 2019년)
- 기본 현황
- 구청 자체 점검결과 및 지회 감사결과
- 직원 현황
<table>
<tr><th>성명</th><th>나이(성별)</th><th>부양가족수</th><th>장애유형</th><th>장애등급</th><th>월 평균임금</th><th>비고</th></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생산단가, 생산량, 판매단가, 판매량
※ 비누 생산분만 작성
- 손이익 현황
- 자원봉사 현황
- 시설운영 위원회 회의록
- 기부금품 접수 현황 및 사용처
- 고용장려금, 인건비 등 각종 예산 지원 현황
</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
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사회
복지과</td><td>10. 태연재활원·메아리동산 운영 현황 ※ 연도별, 시설별 구분 작성
- 기본 현황 〈서식 적의 조정〉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 rowspan="2">계</td><td colspan="3">지체</td><td colspan="3">지적장애</td><td colspan="3">정신장애</td><td colspan="3">.....</td><td colspan="3">....</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남</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여</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2018년, 2019년 사업계획, 예산 지원 현황, 감시감독 실적
- 2018년, 2019년 현재까지 사업 실적 및 정산서
- 2018년, 2019년 시설이용자, 종사자 연간 교육내용
11. 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 현황 및 이용 현황(일, 월 평균)
12. 장애인 행정도우미, 장애복지 일자리 참가자 장애유형 및 등급, 성별, 개인별 구체적 업무 표기
13. 어울림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기관, 보조금 지원 현황, 사업비 내역
14. 노인대학 운영실적
15. 노인건강체육대회 사업계획서 및 예산 지원내역
1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사업 실적
17. 기초수급자 생활안정 지원내역 (지원월, 지원내용, 대상자 수, 지원금액)
18. 지역자활센터 사업추진 현황, 실적, 지도점검 현황
- 2019년도 사업계획, 사업목표, 예산지원 현황
- 2018년, 2019년 사업실적
- 총 매출액 및 집행내역
- 지도점검 현황
- 교육실적, 교육내용
- 자활사례관리 추진현황
19.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실적</td><td></td></tr>
</table>

소관 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가족 정책과	1. 2019년도 양성평등정책 기본시책 - 예산 사업내역, 추진결과, 집행내역, 미추진 사업내역 2. 북구 양성평등주간사업 내용, 평가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3. 아동 폭력방지 지역연대사업 추진계획, 지역연대 기구 구성 현황, 역할, 사업비 내역, 사업 현황 4. 지역아동센터 현황 - 아동수, 프로그램 운영, 시설장·종사자 임금 현황 등 5. 어린이날 행사 세부 사업내용 및 평가결과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6.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 급식지원 방법에 따른 세부내역 7. 한부모가족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관련사업 8. 다문화가족 현황(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예산·지원사업 현황, 다문화가정 어린이집·유치원·초·중등학생 학습 지원 사항 (지역아동센터 포함), 중점 추진시책 9. 어린이집 관련 - 24시간 어린이집 현황(정원대비 이용인원 포함), 보조금 지원내역 - 시간연장형 야간 어린이집 현황(정원대비 이용인원 포함), 보조금 지원내역 - 북구 관내 어린이집 현황 10. 공공형 어린이집 현황, 지원 내역 11. 어린이집 지원 보조금 상세 내역 및 점검 내용 12. 정부지원시설 중 영아전담, 장애전담, 기타 법인에 대한 현황 13.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활동 내역 14. 청소년 비행예방 사업현황 15. 청소년 축제 관련 사업내역 및 실적 16. 청소년참여위원회 역할, 구성 명단, 위원회 개최 관련 시기 및 회의록 17. 공동생활가정 현황 및 사업실적, 정산내역서, 기부물품현황 18. 관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현황	

<table>
<tr><th>소관
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가족
정책과</td><td>19. 입양아동, 가정위탁아동 관리 실적
20. 어린이집 관련 민원 현황
21.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실적
22.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 현황, 관내 아동학대 발생 현황, 아동학대 예방사업 실적
23. 구청내 성희롱 상담 및 접수 건수, 기타 성희롱 관련 실적, 성희롱 예방사업 교육 현황(6급 이상 공무원 참석자 현황)
24. 출산지원금 지급 현황
25.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현황
26. 아동친화도시 홍보 교육 현황
<table>
<tr><th>일시</th><th>장소</th><th>내용</th><th>참석자현황(단체 등)</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
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경제
일자
리과</td><td>
1.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항 및 실적, 예산 지원 현황 등
2. 변전소 및 송전선로 설치 추진상황 및 관련 민원 처리 상황 등
3.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 점검 현황(행정처분 내역)
4.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지원 사업현황
5. 노사민정협의회 현황, 추진 실적 및 운영성과 자료, 회의 자료, 명단, 소속
6.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실적
7.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 (사업내용, 소요인원 및 예산, 참가자 현황 등)
8. 일자리 창출 실적 및 일자리 연계사업(지원) 추진 실적
9.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현황, 지원내역, 관련 사업 현황
10. 신재생에너지 사업 현황(업체명 포함)
11.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사업 실적
12. 에너지 바우처 지급 실적
13. 퇴직자 지원 교육 사업 실적
14.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 실적
15. 사회적 기업 생산제품 우선 구매 현황
16.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실적
(접수 및 선정, 진행현황, 공동체 심의위원회 회의록 등)
17.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사업내용, 소요인원 및 예산, 참가자 현황 등)
18. 2019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원 인력 분석 현황
(동별, 성별, 연령별, 소득 수준별, 세대주 유무 등 도표 작성)
19. 관내 마을기업 발굴 육성 현황(예산지원 내역 포함)
<table>
<tr><th rowspan="2">설립일</th><th rowspan="2">기업명</th><th rowspan="2">주생산품</th><th colspan="3">투 자 비</th><th rowspan="2">종사자 수</th><th rowspan="2">월평균 매출액</th><th rowspan="2">비고</th></tr>
<tr><th>계</th><th>보조금</th><th>자부담</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20. 협동조합 등록 현황
21. 비정규직 정규직화 현황
</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
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농수
산과</td><td>1. 농어촌 육성기금 운영 실적
2. 농업인(농업관련단체)보조금 지원 및 자부담 내역
3.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내역
4. 쌀소득 보전직불제 보조금 집행내역
5. 농업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내역
6. 농지 무단전용 현황 및 처리결과
7. 후계농업인 육성 및 관리 실적(후계농업인수 포함)
8.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9.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지원 시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전체적으로 시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친환경 농가수 현황, 친환경 농가 지원 현황
10. 친환경 식생활 교육 실적
11. 직거래 장터 운영 실적
12. 진장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 현황
13. 농축산물 불법유통(원산지표시 등) 단속 실적
14.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 내역 및 대책
15. 축산경쟁력강화 시책 추진에 따른 사업성과
16. 구제역 예방활동 추진상황
17. 원예농업육성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18. 유통기반조성사업 추진 현황
19. 여성어업인 지원 현황
20. 수산종묘매입방류 사업 추진 현황
21.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 추진상황, 추진성과, 향후 추진계획
- 인건비를 포함한 각종 예산 집행내역
22.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실적
23. 친환경 인증 농가수 및 친환경 식재료 품목별 납품현황
24.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
-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정책 분과 등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5. 도시꽃단지 조성현황
<table>
<tr><th>연번</th><th>부서명</th><th>과제명(사업명)</th><th>내용
(식재종류 등)</th><th>장소</th><th>소요예산
(단위:천원)</th><th>주관
단체</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td><td></td></tr>
</table>

소관 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환경 위생과	1. 간이급수시설 및 약수터 개·보수 현황 (공사일자, 공사내역, 공사금액, 업체명 등) 2. 간이급수시설 및 약수터의 수질검사 결과 3. 환경오염 각종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4.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개소수 현황 포함) - 관리업체 입찰가격/수의계약 가격 - 공중화장실 유지보수(개선공사)비용 내역 (2017년, 2018년, 2019년 비교 작성) 5.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선공사 추진 현황 6.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대기, 수질) - 배출업소 현황 - 점검결과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실태 및 지도점검 실적 8. 가축분뇨 배출량과 처리방법 9. 1하천살리기 운동 참가단체 지원 현황, 사업내용 10. 구민자율 환경감시단 합동점검 추진 실적 11. 지방하천 수질개선 비교 결과 보고 (2017년, 2018년, 2019년 비교 작성) 12. 모범 음식점 지정관리 현황(업소명, 소재지) 13. 음식문화 개선 추진 실적 - 남은 음식 싸주기, 좋은식단, 위생영업주 교육 등 ※ 모범음식점 포함 14. 학교 앞 유해환경 지도 점검 - 점검결과, 조치내역 및 건수, 처리결과 15. 위생접객업소 위생검사 단속 실적 및 불법 영업업소 단속 실적 (행정처분업소 처분결과 포함)	

소관 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환경 위생과	16.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내역 17. 에너지절약 탄소포인트제 - 인센티브 지원 실적 18.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실적 19. 송정지구내 분진 등 민원 접수 현황, 처리 결과 20.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 철거 현황(2017년, 2018년, 2019년) - 건물 현황, 년도별 추진실적, 문제점, 향후 대책	

소관 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환경 미화과	1. 기본 현황(2019. 9월말 현재) - 청소대행업체 계약 현황(음식물 포함) - 청소구역 및 투입인원(구청 직영 포함) - 위탁업체 미화원 현황(구청 환경미화원 포함, 정규직, 비정규직 등) 2. 환경미화원 정·현원(2019년도) 및 담당구역 현황 3. 환경미화원 노사협의회 구성 및 회의록 4. 청소전방지휘소 현황(휴식 공간, 샤워시설 등) 5.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내역, 판매내역, 판매소 지도점검 결과 ※ 종량제 봉투 관련 민원 발생내역 및 처리결과, 대책 6. 청소차량 현황 및 운행 실적, 청소위탁업체 차량 현황(지난 3년간 간접비용 중 차량수리비 금액과 비율, 차량년식, 차량수리비, 차량등록증) ※ 구입내역, 운영비, 청소노선, 월별 주행거리 등 7.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포상금 지급 실적 현황 ※ 불법투기감시카메라 설치 현황 및 단속 실적 포함(과태료 부과 내역, 적발건수 포함 등) 8.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9. 폐기물 관련 사업장 민·관 합동 지도점검 내용 10. 병·의원 적출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내용 1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관련(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포함) - 청소대행업체 용역비 산정 용역보고서(2018년, 2019년)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서 사본(2018년, 2019년)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 직원 현황(2018년, 2019년) - 수집운반 대행료 지급 현황(2018년, 2019년) - 대행업체 지도점검 또는 감사결과, 조치결과 12. 폐기물(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처리 관련 - 처리량, 처리방법, 처리비용 -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건설폐기물 수집, 운반방법	

<table>
<tr><th>소관
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환경
미화과</td><td>13. 음식물쓰레기 감량조치에 따른 실적, 향후 계획
(2017년, 2018년, 2019년 연도별, 월별 비교)
※ 3개년도 월별 음식물 발생량 변동 추이 포함
(○○년도)
<table>
<tr><td>구 분</td><td>계</td><td>1월</td><td>2월</td><td>…</td><td></td></tr>
<tr><td>아파트</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식당별</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주 택</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14.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RFID) 설치 현황(변경)
15. 재활용품(고철, 폐지 등) 수집상 현황
16. 단독주택 재활용 분리수거 운영 실적(동별, 성상별 분류)
17. 단독주택 재활용 분리수거 그물망 제작내역(제작업체), 배포 현황(동별)
18. 공공용 마대 제작 내역 및 사용 내역
19.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손바닥 정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20. 재활용품 위탁 현황, 수거 현황(최근 3년간)</td><td></td></tr>
</table>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안전 정보과	1. 사회복무요원 복무 및 관리 현황 - 부서별 근무 현황(인원, 복무목적 등) - 사회복무요원 징계 현황(복무연장 등) - 사회복무요원 고충 상담 및 민원 처리 현황 2.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 운영 실적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 연령분포도 포함) 3.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실적 4.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현황 - 구성일시, 구성 현황(조직도), 운영 실적, 예산집행 실적 등 5. 수방 장비 및 자재 보유 현황 6. 장마철 풍수해 대비 사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 상습침수 피해지역에 대한 우수기 대비 예방사업 실적 포함 7.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이후 그에 따른 추진상황 8.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현황 9.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추진 실적 및 계획 (안전점검, 보험가입 등) 10. 도로 등 현장 작업 시 안전교육 실시 현황과 안전 매뉴얼 11. 방사능 방재계획 관련 전반적인 추진상황 ※ 책자 모두 제출 12. 공직자 비상대비 역량강화 교육 실적 13. 지진 및 관련 대책, 추진사항(대피소 등) 14. 최근 3년간 민방위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 현황 15. 최근 3년간 전산, 통신장비 유지보수비 지출현황 및 예산 절감 대책 현황 16. 안전취약계층 재난 안전교육 실적 및 예산 17. 안전보안관 및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관련 실적 및 예산 18. 재난 대비 훈련 계획	

<table>
<tr><th>소관
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건설과</td><td>1. 가로등, 보안등 용역업체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2. 가로등, 보안등 관련 주민불편사항 신고내역 및 조치사항
<table>
<tr><th>민원접수일</th><th>내 용</th><th>처리결과</th><th>완료일자</th><th>비 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3. 불법노점상 단속 실적 및 조치상황, 향후 대책
4. 미지급용지 보상 현황 및 추진계획
5. 자전거 도로 개설 추진 현황(개설구간/부대시설 포함)
※ 자전거 도로 내 체육시설 설치내역 포함
6. 자전거도로 현황, 자전거 거치대 현황
7. 자전거도로 관련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
8. 자전거이용자 상해보험 지급 현황(처리건수, 처리결과, 상해 현황)
9. 소방도로 개설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위치, 사업개요, 사업비, 문제점 및 대책)
※ 필요시 공사 전·후 사진 사본 요구
10.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
11. 자연 친화형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주민 민원 사항
(천곡천, 매곡천 등)
12. 하수도 정비 실적(하수도 준설, 보수, 맨홀 교체·수리 등)
13. 미개설 오수관로 현황 및 추진계획
14. 제설 장비 현황 및 설해 대비 추진 실적
15. 동별 주민참여예산 소규모 사업 추진실적
16. 긴급도로 복구사업 추진실적
17. 하천부지 현황, 불법 점유 현황 및 관리내역
18.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점검 현황(기준 오염표 비교)
19. 농소수질개선사업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 및 추진현황
20.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체납현황 포함)</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
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도시과</td><td>1.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점검결과 및 조치 현황
2. 도시계획사업 건별 추진 현황, 민원 현황 및 지원 실적
3. 도시계획 수립 후 장기 미집행 소방도로, 공원 추진 계획 및 대책
4.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현황(일시, 안건명, 주요내용, 심의결과)
5.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평창아파트 부지) 명의이전 관련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
6.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7. 도시재생사업관련 교육 현황
<table>
<tr><th>사업명</th><th>교육내용</th><th>지원금액</th><th>일시/장소</th><th>참석인원</th><th>업체명(대표자)</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8. 개발제한구역내 도로개설 등 각종 주민편의사업 추진실적 (2018년, 2019년)
9.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현황
10. 도시계획사업지구 사업변경 현황
11. 산업단지 추진상황
12. (가칭)송정역 주변 역세권 개발 계획 및 활용방안
13. 지난 2년간 도시재생사업 관련 부서장, 담당주무관, 담당자 등 변경 현황
14. 심천지구 지구단위계획 입안 관련 추진 현황(변경 포함)</td><td></td></tr>
</table>

소관 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공원 녹지과	1. 재선충 등 산림병해충 방제 현황 및 실적(구체적으로 작성) 2. 산림훼손 지도단속 현황 3. 산불예방을 위한 종합 계획 현황 - 세부 추진사항, 소요예산, 산불감시 시설 현황, 산불 발생 현황 - 산불예방 대비책 - 산불진화 장비 현황(구입 시기, 장비명, 구입비용) 4. 조림사업, 임도사업, 사방사업, 숲가꾸기사업 세부추진 현황 (예산집행 포함) 5.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 사업 현황 6. 관내 등산로 개설 및 정비 현황(세부내역, 예산 투입내역 포함) 7. 공원 현황 (위치, 시설 현황, 개·보수내역 - 소요예산 포함, 관리대장) 8. 공원 내 체육시설 현황, 향후 조성계획 ※ 공원 특색화 계획에 따른 추진상황 포함 9. 공원시설물 정비 관련 향후 추진계획 1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추진 실적 및 계획(위생검사, 보험가입 등) 11. 도로변 꽃길 및 화단 조성 실적 (시기, 장소, 품종, 소요예산, 주관단체 등) 12. 국화꽃 전시회 사업계획, 주요내용,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 투입 인력 현황(채용방법), 전시회 후 꽃 활용 현황 13. 가로수 식재, 도시 숲 조성사업 추진 현황 ※ 공유지 도시 숲 조성사업 추진 현황 포함 14. 물놀이장 운영현황 (위탁업체, 계약내용, 안전요원 배치, 교육 및 근무현황)	

<table>
<tr><th>소관
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교통
행정과</td><td>
1. 버스승강장 설치에 따른 민원사항 및 설치 현황
- 미설치 지역, 버스승강장 디자인, 민원 현황
2. 주·정차 단속 실적 및 민원 해소대책(이동식, 고정식, 인력 단속)
※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실적
<table>
<tr><th>구 분</th><th>건 수</th><th>과태료부과액</th><th>비 고</th></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3.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현황(자투리땅 활용 포함) 및 향후계획
(추진실적, 소요예산 등 포함)
4. 내 집 주차장 설치 현황
5. 사업용화물차 차고지설치확인서 발급 현황 및 단속 현황, 행정처분 실적
- 발급 현황
<table>
<tr><th>연번</th><th>사업자</th><th>차고 소재지</th><th>차고지 면적</th><th>용 도</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단속 현황, 행정처분 실적
<table>
<tr><th>단속일자</th><th>단 속
차량대수</th><th>행정처분 실적</th><th>비 고</th></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 월별 실적 통계자료 포함
6.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안전시설 설치 현황 및 개선 사업 실적,
CCTV 현황 및 설치 실적 등
7. 노인보호구역 현황 및 안전시설 설치현황, 개선사업 추진실적
8. 교통편의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세부내역
9. 과태료 체납 현황, 징수(정리) 실적
10.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체납 포함)
</td><td></td></tr>
</table>

소관 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건축 주택과	1. 무허가건물 단속 현황 및 조치내역 2. 건축허가 미준공 건물, 방치된 건축물 내역 및 대책 3. 건축허가 취소내역(취소 및 반려) - 건별 4.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 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5.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 일시, 공동주택명, 지원내용, 지원비용 포함 6.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교육 실적 7. 미분양 아파트 현황 8.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상황 및 조치내역, 신고현황 및 포상금 내역 (과태료 부과 등) 9. 건축위원회 개최 현황(일시, 안건명, 주요내용, 심의결과) 10. 불법광고물 관리 차량 현황 및 업무처리 과정 11. 동별 빈집 현황 및 관리상황, 향후 대책 12. 관내 지역주택조합 진행현황 및 주요 민원사례	

【보 건 소】

소관 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보건소	1. 보건소(보건진료소 포함) ①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 대비 현재 근무인력 현황 - 의사, 간호사 등 직무별 정원대비 현원 기재, 과부족 사유 제출 ② 관내 의료취약계층 현황 및 보건소 진료 실적, 예산 내역 - 건강보험 적용인구, 의료급여 수급자 이용 현황, 취약계층 이용 환자 수 구분 제출 - 의료취약계층 관련 사업계획, 추진 실적, 편성예산, 집행내역 2. 보건소 단위사업별 인력 배치 현황 - 법정사업별 필수 인력 표시 - 최근 5년간 보건소 인력 확충 현황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 3. 약품 관리 현황 (입·불출 기록 및 재고 현황, 단가, 금액, 유통기한 등) ※ 영양제 입고내역(예산 포함) 및 불출내역 포함 4. 보건진료소 고혈압 치료제 구입 현황, 구입단가, 구입처, 복용자 수 (타 제약회사와 비교) 5. 의료장비 구입 및 관리 실태 6. 예방접종(정기 및 임시) 유형별 약품 구입 및 접종 실적 7. 방역장비 현황, 방역실적 및 대책 8. 방역, 소독 대행업자 지정내역 9. 모자보건사업 현황 및 사업 추진 내역 10.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실적 11.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등록 현황, 대상자 선정 기준 12.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출산 지원내역	

소관 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보건소	13. 관내 아동 예방접종 지원 현황 - 만 12세까지 영·유아 대상 예방접종 종류 - 보건소 지원 관내 예방접종 대상자 및 수혜자 수 - 국가 필수 예방 접종 현황 및 지원 현황(병의원 포함), 관리대상자 수 - 전체 접종 건수 중 보건소 이용 건수 - 타 지자체 예방접종 현황 14.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추진 현황 15. 금연클리닉 운영실적 및 운영 현황 - 청소년(10세~18세) 교육 방식, 교육 횟수, 금연사업 16. 금연지도원 현황 및 금연단속 실적 17. 장애아 재활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실적 18. 장애아 재활프로그램 이용 정원, 프로그램 내역, 향후 운용 계획 프로그램 19. 건강생활실천사업 현황 20.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 21. 각종 홍보물 제작내역 및 부수, 내용 등 22. 구강보건실 운영 실적 ※ 2019 여름방학 중 구강검진 사업 추진 실적 포함 23. 치매 예방 관리사업 실적 24. 보건소 전기료 사용내역(2018년, 2019년 월별 비교) 25. 건강버스사업 운영 실적	

【문화예술회관】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문화예술회관	1. 문화예술회관 공공요금(가스 · 전기 · 수도) 월별 사용 내역 (2018년, 2019년 월별 비교) 2. 문화예술회관 운영 현황, 민원 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 공사 개요 및 예산 내역(정산 포함) 3. 문화예술회관 아카데미 프로그램 현황(수강자 포함), 예산 집행 내역 4. 문화예술회관 상주예술단 현황 5. 문화예술회관 아카데미 동아리 현황과 추진 사업 6. 각종 공연 · 전시행사 개최 현황(무용예술제 포함) 7. 국 · 시비, 외부재원 등 공모사업 확보 현황	

【시설관리공단】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시설관리공단	1.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운영 현황 - 인력 운용 현황 - 종목별 프로그램 현황 및 세목별 예산집행 내역, 수강자 현황 등 - 민원 처리 현황(결과 포함) ※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수강자 설문조사 결과 포함 2. 오토밸리복지센터·국민체육센터 공공요금(가스·전기·수도) 월별 사용 내역 (2018년, 2019년 월별 비교) 3. 운동장별 대여 현황 및 사용료 수입 현황 ※ 북구 주민 운동장별 이용률(타구민 대비) 4. 공영주차장 관리 현황 및 운영실태, 최근 3년간 공영주차장 임대사업 분석(수입지출, 저소득노인 참여 여부, 향후 개선 방안)	

【의회사무과】

소관 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의회 사무과	1. 예산집행 현황 2. 각종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 현황 3. 조례 제정·개정 현황(의원 발의) 4. 결의안, 5분 자유발언, 구정질문(서면질문 포함) 현황 5. 의회 방청 현황 6. 의회 견학 현황 7. 언론 홍보, 보도 현황	

제6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1. 감사의 목적

○ 구정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2. 근 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기간 : 2019. 11. 21. ~ 11. 29.(9일간)

4. 감사부서

기 관 명	대 상 부 서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	◦ 기획홍보실 ◦ 복지경제국 ◦ 문화예술회관 ◦ 의회사무과	◦ 주민소통실 ◦ 안전건설국 ◦ 동	◦ 행정지원국 ◦ 보 건 소 ◦ 시설관리공단	

5. 감사실시 내용

① 감사주체 - 본회의

의 장	부 의 장	의 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최상규 김광명	황영지 박영석

② 감사일시 및 대상부서

구분 / 일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고
2019. 11. 21.(목)	10:00	소회의실	◦증인선서 •국·소·실·과·관·동장, 이사장 ◦기획홍보실 ◦주민소통실 (행정복지센터 포함) ◦보 건 소 ◦의회사무과	
2019. 11. 22.(금)	10:00	〃	◦행정지원국 •총 무 과 •문화체육과 •관광해양개발과 •도서관과	
2019. 11. 23.(토)		휴 회		
2019. 11. 24.(일)		휴 회		
2019. 11. 25.(월)	10:00	소회의실	◦행정지원국 •징 수 과 •부 과 과 •민원지적과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공단	
2019. 11. 26.(화)	11:00	〃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2019. 11. 27.(수)	10:00	〃	◦복지경제국 •경제일자리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2019. 11. 28.(목)	10:00	〃	◦안전건설국 •건축주택과 •건 설 과 •도 시 과	
2019. 11. 29.(금)	10:00	〃	◦안전건설국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안전정보과	

③ 감사순서

- ○ 감사 선언(의장)
- ○ 의장 인사
- ○ 증인 선서(집행기관, 감사 첫날 관계 공무원 합동 실시)
- ○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 소개
- ○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청취)
  - 개괄적 총괄보고 : 국·소장
  - 세부사항 보고 : 해당 실·과·동장
- ○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 서류 검증 또는 현지 확인
- ○ 감사 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④ 증인출석 및 감사실시 현황

감사대상부서	감사자료 제출건수	증인출석	참고인출석
계	452	40	
공 통 사 항	26		
기 획 홍 보 실	20	1	
주 민 소 통 실	25	1	
행 정 지 원 국	110	10	
행정복지센터		8	
복 지 경 제 국	140	8	
안 전 건 설 국	88	7	
보 건 소	25	2	
문화예술회관	7	1	
시설관리공단	4	1	
의 회 사 무 과	7	1	

⑤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88	14	74
공 통 사 항	2	1	1
기 획 홍 보 실	4	1	3
주 민 소 통 실 (행정복지센터 포함)	5	2	3
행 정 지 원 국	19	2	17
복 지 경 제 국	25	5	20
안 전 건 설 국	20	3	17
보 건 소	6	0	6
문화예술회관	3	0	3
시설관리공단	2	0	2
의 회 사 무 과	2	0	2

6. 감사결과(시정 및 건의 요구사항)

공 통

시정요구

① 지방보조금 사업 내실 있는 운영

-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에 예산 집행방법 및 정산 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한 사업 추진에 노력하여 주고, 사후 성과 평가를 토대로 결과가 미흡한 단체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보조금 지출 시 체크카드가 원칙이고 현금 · 계좌이체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간이 영수증을 발행하여 사용하고 있으니 시정 조치하기 바라며 반드시 사전 교육과 사후 정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국·시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

-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국·시비 확보 지원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각종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예산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기획홍보실

시정요구

①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

-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 대하여 통·폐합하여 내실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고 일부 위원회의 경우, 실제 회의 개최가 필요함에도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가 있으며, 서면 심의 시에는 위원회 회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위원회는 위반한 사례가 있는데 반드시 시정하기 바람.

- 위원회 위원 위촉 시「양성평등기본법」과 지역별 안배 등을 고려하여 특정 인사가 여러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고, 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횡령 등 개인 비위자는 위원 선정 시 배제하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조직진단 시 원스톱 민원처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강구

- 원스톱 민원처리서비스는 개별 부서에서 관할하는 인허가·등록·신고 등의 민원업무를 접수해 원스톱으로 일괄 처리하는 제도로서 부서조정 또는 조직진단 시 부서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개별부서를 일일이 찾아 협의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여 주민만족도 향상과 원스톱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② 구정 홍보 등 강화

- TV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 시 시간 배정이 효율적이지 않고 투자 대비 효과가 미흡함. 향후 다양한 연령대 및 많은 주민들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광고가 편성되도록 조치하여 주고,
- SNS 서포터즈 운영과 관련하여 구에서 중점 추진하는 아동친화도시 정책에 걸맞은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집 시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바람.

③ 주민참여예산제 전환 필요

-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등 동별 대표성이 있는 단체와 연계한 참여예산제 운영과 사업 우선 순위 선정 시 투명하게 전자투표, 온라인투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참여 방식 변화가 필요함.
- 동별 숙원사업 예산 편성 시 시급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기 바람.

주민소통실

시정요구

① 구민감시관제 활동 관리 철저

- 8개의 대형공사 중 5개소는 구민감시관이 활동을 하였고 3개소는 활동을 하지 않았음. 구민감시관 활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적법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②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 수강생들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입금 시 단체 고유의 통장을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나, 개인명의 통장을 사용하는 주민자치센터가 있으니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통장 명의를 변경하기 바람.
- 프로그램 수강 신청 시 장시간 대기로 인해 민원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다양한 수강 계층을 대상으로 적정한 방법을 모색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공공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 철저

- 어려운 이웃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여 함께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람.
- 주민자치회가 핵심기구인만큼 다양한 주민 참여가 되도록 소통 기반을 조성하기 바람.

행정복지센터

건의사항

① 강동동

- 태풍 '타파', '미탁' 등으로 인하여 남방파제 분수공원 등에 조성된 꽃들의 피해가 많았는데, 꽃 식재 선정 장소의 문제점은 없는지 사전에 다각도로 고민하여 다른 장소를 선정하여 꽃단지를 조성하기 바람.

② 송정동

- 권역형 맞춤형 복지 중심동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수행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여 주기 바람.

총 무 과

시정요구

① 관용차량 운영 관리 철저

- 일부 부서의 경우 차량운행 일지가 실제 운행 내용과 다르게 작성되고 차량 관리 시, 점검·정비 등이 정기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또한 소수리업체 선정 시에도 투명하게 계약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또한 관용차의 교통사고가 많은데 안전 운행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차량 구입 시 (주)현대자동차의 지역 공헌도를 고려하여 반영하여 주기 바라며,
- 관용차량 세차 시에도 장애인기업의 세차업체를 이용하여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계약 추진

- 사무실 환경개선, 청사 증축 공사 등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와의 계약을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북구의 업체를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주기 바람.

② 태양광 설치 대비 비효율시설 관리 철저

- 구청 청사 태양광 설비에 대한 발전량과 생산량의 차이가 발생함으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적정 발전량이 생산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문화체육과

시정요구

① 민간단체보조금 행사 정산 철저

- 민간단체보조금 정산보고서를 보면 참석인원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일부 자부담 항목에 간이영수증이 첨부되는 등 허술한 정산서를 관리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리 철저

- 북구는 비인기종목으로 사격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대외적으로 주민 인지도가 낮은 실정임.
  지역 축제나 행사 개최 시 직장운동경기부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에게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차량 운행일지가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으니 확인하고 조치하기 바람.

② 기박산성역사공원 조성 사업 시 역사적 고증 필요

- 기박산성에 대한 역사적 논란이 있는데 기박산성역사공원 조성사업 추진 시 반드시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역사적 고증작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기 바람.

③ 체육시설 개·보수 추진 만전

- 명촌족구장 인조잔디가 시멘트가 보일 정도로 훼손되었고, 그물망 휀스가 낮아 자전거 도로 쪽으로 공이 나가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니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 2015년에 조성된 상안테니스장은 태풍 등의 영향으로 인한 휀스 등에 잦은 보수가 많은데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수리하여 주기 바람.

④ 울산쇠부리축제 장소 이전에 따른 준비 철저

- 내년부터 울산쇠부리축제 장소가 달천철장으로 이전해서 추진되는데 이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인근 상가, 학교 등과의 협의를 통해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고 축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관광해양개발과

건의사항

① 해상캠핑장 조성 철저

- 바다위에 조성되는 시설물이니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설계·공사하고, 불필요한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전체 당사마을의 경관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기 바람.

② 수난 구조 활동 지원 확대

- 해병전우회 등 3개 단체가 수난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수난 구조 장비 지원 건의가 많으니 관련법령 등을 살펴보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③ 해양 시설물 피해 복구 철저

- 해안산책로와 누리길이 태풍으로 파손되었는데 상습피해 구간에 대해서는 복구 방법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여 영구적인 산책로와 누리길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기 바람.

도서관과

건의사항

① 제3대학 운영 내실화

- 제3대학은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프로그램으로 졸업 후 활동실적은 있으나, 재취업인원은 적음. 특히 제3대학 입학 연령이 낮춰지고 있는 추세로 취업과 관련된 전문 강좌를 운영하여 실용성을 높이고, 직업 능력도 함양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②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필요

-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사업 수행 시, 심사단계에서부터 사업 목적에 맞는지 세심하게 검토하고 당초 목적에 맞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 교육 경비 사업 심의 시 아동친화적인 관점도 반영하여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③ 노후화된 도서관 시설 개선 추진

- 관내 중앙도서관, 염포양정도서관을 제외하고 노후화된 도서관이 많은데

리모델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급한 사항부터 체계적으로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바람.

- 특히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점자도서 비치 등 장애인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징 수 과

건의사항

① 세외수입 체납 관리방안 마련

- 세외수입 체납분이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개별부서에서 체납분을 각자 관리함으로 체납액 징수 실적이 좋지 않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② 체납세 징수 활동 철저

- 2017년부터 체납액 및 체납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여 시효소멸 이전에 정리하기 바람.

부 과 과

건의사항

① 기업 지원을 위한 세무 행정 추진

- 세무 지원을 위한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납세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 기업의 경제 활동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기 바람.

민원지적과

건의사항

① 지적기준점 민원 해결 노력

- 지적기준점 불부합지가 많이 있는데 토지 소유자 상호간에 민원이 제기되어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 민원 해결에 노력하여 주기 바람.

② 개별공시지가 내실 있는 조사 추진

-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 등 세금을 비롯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수많은 복지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표준주택가격 조사 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공시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복지지원과

건의사항

①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및 해소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이 구축 중인 과정에서 북구만의 모델 창출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복지정책을 총괄하고, 동장을 중심으로 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방문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에 힘써 주기 바라며,
- 탈북민, 은둔형 수급자 등에 대하여 정신보건센터, 민간기관, 찾아가는 이동희망복지지원단 등과 협업하여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람.

② 청소년자원봉사학교 및 권역별복지관사업 운영 내실화

- 청소년자원봉사학교 운영은 학교 및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봉사활

동 및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봉사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도 발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이 협소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2종합사회복지관, 염포·양정사회복지관 신축 또는 기존 복지관 시설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기 바람.
- 권역별복지관 사업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제한이 있으므로 사업비 증액을 검토하여 주고 지역 주민과 어린이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바람.

③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예우 및 자원봉사박람회 운영 내실화

- 고령의 보훈단체 회원들의 전적지 순례 참가 시 휠체어 등을 마련하여 행사 참가토록 하는 등 예우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 8개동 나눔냉장고 운영과 관련하여 음식의 유통기한을 철저히 점검 및 확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힘써 주고,
- 자원봉사자 우대를 위해 명예의 전당 등재 및 자원봉사박람회 개최 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사회복지과

시정요구

① 복지시설 및 요양시설 소방점검 철저

- 화재취약대상 복지시설 및 요양시설에 대하여 소방점검을 철저히 하고, 특히 소방안전시설이 미설치 된 곳은 빠른 시일 내 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시립노인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철저

- 장애인복지관 및 시립노인복지관은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조기에 건립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고, 장애인복지관 건립 시 진입도로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② 경로당 개보수 및 운영 철저

- 가대경로당, 양정경로당, 상연암경로당 등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조치해 주고, 주기적인 점검으로 노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람.
- 경로당 기존회원과 신규회원간의 갈등, 연령 차이에 따른 갈등이 해소되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 바람.

③ 노인·장애인 복지사업 관련 추진 철저

- 급증하는 노인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권역별 노인복지관, 노인회관, 노인복지관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 장애인일자리 사업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특히,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복지에도 노력해 주기 바람.
- 노인 복지를 위하여 어르신위원회 등에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복지시설 이동 차량에 블랙박스 설치 등 안전에도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람.

● 가족정책과

건의사항

① 아동권리증진 노력

-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연계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 아동정책제안대회에서 나온 좋은 제안은 향후 아동권리대변인단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정책으로 반영하고, 아동의 권리가 증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② 표준보육비용 및 급·간식비 현실화

- 어린이 급·간식비가 10년 전 지침에 따라 편성되고 있는데 현실화 및 인상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라며, 구에서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③ 청소년 지원 확대

- 청소년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청소년 시설 및 정책에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에 따른 각종 문화공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기 바람.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보드게임 카페 같은 문화공간 등을 조성해 주기 바람.
- 다문화 학생들에게 언어의 문제 등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방안은 적극 모색하여 주기 바람.
- 공동생활가정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람.

경제일자리과

시정요구

①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관리 철저

- 사회적기업의 보조금, 일자리 사업 등 각종 지원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과 현장 확인을 통해 사회적기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며,
-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피드백을 통한 성과분석, 사업방향 제시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질 높은 일자리 조성

- 청년, 경력단절여성, 퇴직자들에게 질 높고 안정적인 일자리 조성에 적극 노력해 주기 바라며,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업도 모범

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람.

- 일시적·일회성의 일자리가 아닌 연속성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고민해 주고, 향후 친환경자동차 사업의 확대에 발맞추어 부품생산 기업 유치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② 공공기관 태양광 사업에 대한 관리 철저

- 공공기관 태양광사업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라며, 노후화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 양성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주기 바람.

③ 노동역사관 운영 철저 및 공유경제 활성화

- 노동복지센터 조성과 발맞추어 주민들도 많이 찾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고, 노동자 도시에 걸맞게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 향후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공유경제 플랫폼, 카풀서비스, 숙박공유 플랫폼 등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대가 추구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선진 사례 견학 및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등을 통하여 미래 산업에 대하여 행정이 선도적으로 대처하여 주기 바람.

농수산과

시정요구

① 정자활어직매장 유지보수 및 관리 철저

- 건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정자활어직매장 내 환기 및 누수 문제가 있는데 필요한 부분은 보수 공사를 추진하여 주고, 비어 있는 2층 점포는 카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을 검토해 주기 바람. 또한 인근 노점상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여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꽃도시조성사업 내실화

- 작은 예산으로 북구 전 지역을 꽃도시로 조성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경주 경계 등 특정 지역을 집중적으로 식재하고, 관리가 용이한 관목류 식재도 검토해 주기 바람.
- 꽃도시 조성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동별 자생단체에 지원하는 방안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람.

② 도시농업 등 활성화

- 무룡동 소재 북부농기계임대사업소의 농기계 등의 대여 및 반납절차 간소화와 휴일 운영 검토 및 보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해 주기 바라며, 텃밭상자 보급 확대에도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람.
- 농촌그린투어 견학은 타 구로 가는 것보다는 관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고, 체험농장 외에도 계절별 우리 지역 농가 위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방학과 주말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주기 바람.

환경위생과

시정요구

① 동천, 매곡천 자전거 도로 음수대 설치

- 타 구보다 자전거도로 음수 시설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음수대 설치를 확대해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위생업소 허가 절차 간소화

- 많은 주민들이 음식점 등 창업 및 허가 절차에 대한 불편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춰 절차 간소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람.

② 웰빙라이프 울산 향토전통음식 행사 운영 철저

- 웰빙라이프 울산 향토전통음식 무료시식 행사에 참여하는 음식점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고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음식 업소가 선정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라며, 소규모 미용업소 신기술 교육은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여 주기 바람.

③ 온실가스 저감 및 미세먼지 감축 내실화

- 미세먼지 감축 및 지구온난화 해결 대책은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마땅히 노력하여야 할 과제로서 관련 교육 확대, 그린리더 활동 내실화,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통한 시책 발굴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기 바람.

환경미화과

시정요구

① 농소3동 우리마트사거리 환경 개선

- 농소3동 우리마트 사거리 등 환경취약지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라며, 배출시간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가로변 청소구역 확대에 따른 대책 수립

- 도시개발사업지구 조성 등 가로변 청소 구역이 확대되고 있는데 현재 미화원 인력의 부족으로 근로 강도가 높고 또한 가로변 청소업무 공백 발생 우려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② 이동식감시카메라 등 운영 내실화

- 불법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해 운영 중인 이동식감시카메라 밧데리 방전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고, 고정식감시카메라 단속도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③ 공공기관 재활용 분리 철저

- 공공기관 재활용 분리배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재활용 분리배출용기 보급이나 점검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모범적으로 분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라며, 향후 발생할 노후 태양광 패널 수거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람.

안전정보과

건의사항

① 지진 및 각종 재난 대비 철저

-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동별 재난안전지도 제작을 검토하여 주고, 정전 및 통신망 두절 등의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기 바람.
-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시 적정한 시기와 장소 등을 검토·설치하여 주민들의 그늘막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힘써 주기 바람.

② 자율방재단 사무실 및 창고 확보

-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복구 등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활동으로 참

여하고 있는 자율방재단을 위한 사무실 및 자재보관 창고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③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소 대응 등 방사능방재 업무추진 철저

- 경주(월성원자력)시가 추진하려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소는 경주시내보다 북구가 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론화 및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이 있음.
- 방사능방재에 대한 행동요령 및 대피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하기 바라며, 특히 방사능방재 대피 매뉴얼 작성 시 노인요양 및 장애인 등의 사회복지시설에도 대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건 설 과

시정요구

① 도로 및 하천 시설물 관리 만전

- 국도7호선 가드레일, 신명천 제방, 자전거도로 표지판, 제설함, 노후한 자전거도로 데크 등의 시설물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수하여 주고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도로수로원 인력 및 안전 확보 강화

- 각종 사업지구 및 도로 등의 시설물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관리할 도로수로원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인력 증원방안을 검토하여 불미스러운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고 아울러 장비보강 및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② 효율적인 (소방)도로 관리 및 매곡천 친수환경 녹지 조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내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꼭 필요한 도로들이 해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라며, 매곡천 친수환경 조성 시 녹지를 충분히 확보하여 쾌적한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주기 바람.
- 하수관로 신설 및 교체 공사 시 인접 주택별로 해야 하는 공사와 함께 진행할 방안을 모색하여 여러 차례 도로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 초래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도 시 과

건의사항

① 도시재생사업 추진 철저

-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고, 무엇보다도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코디네이터와 소통하고, 코디네이터와 주민들과도 소통·협력할 수 있도록 주민역량사업을 강화해 주기 바람.
- 양정자동차테마거리 사업은 구간 연장을 적극 검토해 주고, 각종 도시재생사업 진행 과정에 청소년들과 관련된 사업도 발굴· 추진해 주기 바람.

② 도시경관·환경 개선, 민원해소 노력 및 예산낭비 지양

- 행정구역 경계 지역에 대한 경관개선이 필요하므로 적극 검토하여 주고,
- 강동골프장 건립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민원으로 예상되는 갈등도 미리 살펴 공사가 추진되도록 지도해 주기 바라며, 신천동 CGV로 진입하는 제내2길에 대한 경관개선 부분도 검토해 주기 바람.
- 바다와 같이 걷는 해안 산책로 공사는 태풍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향후 이와 같은 공사를 지양하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검토하기 바람.

공원녹지과

건의사항

① 도심지 공원 조성 및 관리 철저 등

- 신천공원 내 화장실,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용에 편리한 생태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방안들을 적극 모색하기 바라며,
- 극동스타클래스, 신천엠코타운 등의 진입로 및 공원부지 정비와 매곡공원 및 호계근린공원 조성에도 적극 노력해 주기 바라며, 강동 중앙공원에 수목을 식재하여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 바람.

②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보완 노력

- 천마산 편백산림욕장은 북구의 대표적 산림욕장으로 조성되었는데 더욱 보완·확대하여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해 주기 바라며, 운동기구는 설치하기 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람.

③ 도시숲 조성 활성화 및 물놀이장 운영 철저 등

- 기후변화에 잘 적응 및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숲 조성을 활성화하여 미세먼지, 대기오염 저감에 노력하고 후손들에게 도시숲을 물려주고, 보호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 햇빛공원 내 물놀이장 운영 시, 의자, 그늘막 등에 대한 추가 설치를 검토해 주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 강동임도 건설은 향후 건립되는 산림복합단지와 연계하여 추진해 주고, 중리마을 토사 유입과 관련해서도 사방사업을 시행해 주기 바람.

④ 체육시설물 운영 및 관리 일원화

- 체육시설물의 관리주체가 달라 주민들에게 혼돈을 주고, 비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교통행정과

시정요구

① 반사경 등 교통시설물 정비 철저

- 노후되고 각도가 맞지 않은 반사경은 즉시 정비하여 주고, 일부 교통시설물에 있는 과거의 구정 목표도 정비해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 선진시책 접목

-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노랑신호등, 점자블록신호등, 소방시설 옆 빨간 인도경계석 등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적극 도입해 주기 바라며, 아동친화도시 조성과도 연계·추진해 주기 바람.

② 버스노선 및 배차, 정류장 설치 등 적극 검토

- 송정지구 버스노선, 이화마을 지선버스, 949번 버스 추가 배차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고, 택지개발 사업으로 신규 조성되는 지역에도 버스노선 신설 및 배차 등에 관심 가지고 주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③ 보행자 통행 안전 확보 등

- 산업로 확장으로 이화초 학생들의 통학로에 대하여 학부모와 함께 모니터링하여 주고, 주정차 단속인력 확충도 검토해 주기 바람.
-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교통신호등 가동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 지역 주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해 주기 바람.
- 벽산아파트 101동 앞 및 매곡초등학교 앞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검토하여 주기 바람.

건축주택과

시정요구

① 공동주택 현황 등 홈페이지 자료 수정

- 구 홈페이지에 나오는 공동주택 현황, 현수막게시대 현황 등 각종 자료를 정비하여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공동주택 관련 각종 민원 사항 해결 노력

- 신규아파트 준공 관련 민원과 시공사와 입주자간 하자보수 민원, 입주자대표·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도 관심을 갖고 갈등 및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② 공동주택 지원사업 가산점 부여

-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 시, 에너지절감, 장애인·임산부 등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 공동주택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③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 내실화 등

- 노후된 벽보게시판 정비, 불법 현수막 근절, 현수막 게시대 증설 등을 검토하여 주고, 간판개선 사업은 심플하면서도 도시경관에 맞도록 증설 및 교체하여 주기 바람.
- 동별 빈집에 대한 대책도 수립·추진해 주고, 문화 공간 등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기 바라며, 소금포역사관 설계 시에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 조성도 고려해 주기 바람.

보 건 소

건의사항

① 청소년 금연클리닉 교육 등 강화

-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울산초등학생 흡연율이 타 지역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데, 이에 대한 조기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니 청소년 등 금연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주기 바람.

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속적으로 관리 철저

- 최근 언론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신고된 사건과 적발사례는 없으나, 학대 등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기 바람.

③ 심리상담실 운영 내실화

- 최근 소방관과 경찰관은 순직자보다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은 실정이고, 보건·복지 전담 공무원의 우울증은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최일선에서 민원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있는 만큼 조기에 심리상담서비스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건강한 업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바람.

④ 보건소 전문인력 배치

- 「지역보건법」에 의거하여 보건소에 전문인력(약사, 한의사, 치과 의사)이 배치되어야 하며 동구, 남구의 경우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음. 우리 구도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홍보 강화

- 만성질환 전 경계위험군 대상자에게 스스로 건강생활실천을 할 수 있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 좋은 시책이나 주민들에게 인지도가 낮으니,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⑥ 기타 사항

- 지역의 부족한 응급의료시설과 관련하여 농소권과 강동권의 지속적인인구 유입 및 골든타임을 감안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 주기 바람.

문화예술회관

건의사항

① 내실있는 공연·전시 추진

- 일부 전시의 경우, 홍보비 예산이 과다 지출되었는데 알차고 다양한 전시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② 홈페이지 관리 철저

-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의 언론보도, 관람후기, 사진 등 최신 자료가 업데이트 되지 않아 관리가 부실하며, 접수일자와 수강일자가 혼돈되어 주민의 불편이 있으니 시정하고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③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필요

- 동 주민자치센터, 체육센터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문화예술회관만의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시간대 교육 강좌에 대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 바람.

시설관리공단

건의사항

① 시설관리공단 운영 정상화 추진

- 시설관리공단은 2019년 9월 업무를 개시한 이후, 주차장 등 여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주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만큼 주민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여 구민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하기 바람.

② 기간제근로자 구민 채용 확대

-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시 동등한 자격 조건이라면 구민 중에서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의회사무과

건의사항

① 관용차량 세차 관련 건의

- 북구는 발달장애인들이 소속된 예비사회적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매주 구청 주차장에서 직원 및 민원인 출장세차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의회 관용차량도 장애인기업이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하여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이용하기 바람.

② 행정사무감사 기간 인력 충원 건의

-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전문위원실의 인력을 증원 또는 보강하여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람.

제7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 2018. 10. 1. ~ 2019. 9. 30.까지의 구정 전반의 행정수행사항에 대하여 452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각종 정보와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여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였음.

○ 감사의 중점 방향으로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 그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거론되었거나 문제점이 도출된 각종 사안들에 대한 적법성과 주민의 요구가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단순 1회성 보완 요구가 아닌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감사를 실시한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행정수요에 비해 매우 열악한 인적 구성에도 불구하고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시책 추진을 위한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을 엿볼 수 있었으나, 일부 업무의 경우 주민을 위한 소신 있는 업무 추진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임. 또한, 행정은 무엇보다 구민들에 대한 신뢰성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각종 예산집행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고 실현가능한 대안이 제시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함.

○ 각종 사항별 감사지적 사항으로는 총 88건이며, 시정요구사항 14건, 건의사항 74건으로 본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조치하기 바라며, 그 처리결과를 2020년 2월 7일까지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제8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시정·건의요구사항 현황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소계	완결	추진중	불가	소계	완결	추진중	불가
계		88	14	7	7		74	24	50	
공 통		2	1		1		1		1	
기획홍보실		4	1		1		3	1	2	
주민소통실 (행정복지센터)		5	2	1	1		3		3	
행정지원국 (19)	총 무 과	3	1	1			2	2		
	문화체육과	5	1	1			4	2	2	
	관광해양개발과	3					3	1	2	
	도 서 관 과	3					3		3	
	징 수 과	2					2		2	
	부 과 과	1					1		1	
	민원지적과	2					2	1	1	
복지경제국 (25)	복지지원과	3					3		3	
	사회복지과	4	1	1			3		3	
	가족정책과	3					3		3	
	경제일자리과	4	1		1		3		3	
	농수산과	3	1	1			2	2		
	환경위생과	4	1		1		3	1	2	
	환경미화과	4	1		1		3	1	2	
안전건설국 (20)	안전정보과	3					3		3	
	건 설 과	3	1		1		2		2	
	도 시 과	2					2		2	
	공원녹지과	4					4	1	3	
	교통행정과	4	1	1			3	2	1	
	건축주택과	4	1	1			3	1	2	
보 건 소(6)		6					6	6		
문화예술회관(3)		3					3	1	2	
시설관리공단(2)		2					2		2	
의회사무과(2)		2					2	2		

2.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

□ 공통사항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시정 요구	① 지방보조금 사업 내실 있는 운영 -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에 예산 집행방법 및 정산 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한 사업 추진에 노력하여 주고, 사후 성과 평가를 토대로 결과가 미흡한 단체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보조금 지출 시 체크카드가 원칙이고 현금·계좌이체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간이영수증을 발행하여 사용하고 있으니 시정 조치하기 바라며 반드시 사전 교육과 사후 정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기 바람.	◦ 담당 공무원을 중심으로 내실 있게 지방보조금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였음. ◦ 담당부서별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 매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미흡한 단체는 예산을 삭감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지방보조금 관련 감사 등에 지적된 단체는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지방보조금 투명성을 확보하겠음. ◦ 또한, 지방보조금 사업 내실화를 위해 3년마다 사업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여 미흡한 사업은 예산을 삭감 또는 중단하여 다양한 지방보조금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음.	추진중
건의 사항	① 국·시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 -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국·시비 확보 지원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각종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예산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에 시달하였음. ◦ 중앙정부 정책 방향 및 공모사업 등을 사전 파악하여 신규사업 발굴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구청장 주재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임. (2. 10. ~ 2. 11.)	추진중

□ 기획홍보실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시정 요구	①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 -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 대하여 통·폐합하여 내실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고 일부 위원회의 경우, 실제 회의 개최가 필요함에도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가 있으며, 서면 심의 시에는 위원회 회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위원회는 위반한 사례가 있는데 반드시 시정하기 바람. -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양성평등기본법」과 지역별 안배 등을 고려하여 특정 인사가 여러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고, 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횡령 등 개인 비위자는 위원 선정 시 배제하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매년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실제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는 폐지토록 정비하고 있으며, 전 부서에 대면회의 개최 원칙, 서면회의 개최 시 유의사항 등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음. ◦ 또한, 위원회 신설·정비에 따른 위원 위촉 시, 사전 검토절차를 통하여 특정 성별비율, 중복위촉(3개 위원회 초과) 및 연임제한(3회 이상 연임)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추진중
건의 사항	① 조직진단 시 원스톱 민원처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강구 - 원스톱 민원처리서비스는 개별부서에서 관할하는 인허가·등록·신고 등의 민원업무를 접수해 원스톱으로 일괄 처리하는 제도로서 부서조정 또는 조직진단 시 부서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개별부서를 일일이 찾아 협의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여 주민만족도 향상과 원스톱서비스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위생 관련 민원 처리 시뮬레이션을 통해 민원 처리 절차의 문제점을 발굴, 민원 처리 원스톱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위생 업무 담당 국장, 부서장, 담당 및 담당자와 구청장과의 간담회(2회),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타 지방자치단체 (구미시) 사례 분석, 구청장 지시사항 시달을 통해 원스톱 민원처리서비스 방안을 마련하였음.	완결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② 구정 홍보 등 강화 - TV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 시 시간 배정이 효율적이지 않고 투자 대비 효과가 미흡함. 향후 다양한 연령대 및 많은 주민들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광고가 편성되도록 조치하여 주고, - SNS 서포터즈 운영과 관련하여 구에서 중점 추진하는 아동친화도시 정책에 걸맞은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집 시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바람.	◦ TV매체를 활용한 울산쇠부리축제 홍보 등 구정홍보 시 다양한 연령대 및 주민들이 시청하는 시간대인 저녁시간 위주로 광고가 집중편성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단계부터 적극 검토하겠음. ◦ SNS 서포터즈 2기 모집시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관내 고등학교 등 청소년 유관기관에 모집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현재 20~50대의 다양한 연령대에서 선발되어 2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2~3월에 SNS 글쓰기 등 전문 역량강화 교육 실시로 SNS 서포터즈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추진중
	③ 주민참여예산제 전환 필요 -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등 동별 대표성이 있는 단체와 연계한 참여예산제 운영과 사업 우선 순위 선정 시 투명하게 전자투표, 온라인 투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참여 방식 변화가 필요함. - 동별 숙원사업 예산 편성 시 시급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기 바람.	◦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음. ◦ 현재, 전자 설문조사 등 온라인 정책참여 코너를 구청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더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음. ◦ 동별 숙원사업(동 소규모)의 경우, 동 지역위원회의 우선순위 선정 내역에 따라 예산편성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시급하거나 연속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추진중

□ 주민소통실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시정 요구	① 구민감시관제 활동 관리 철저 - 8개의 대형공사 중 5개소는 구민감시관이 활동을 하였고 3개소는 활동을 하지 않았음. 구민감시관 활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적법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 사업부서에 구민감시관 활동 활성화(시기별, 주요 공정별)를 요청하고 대규모 사업 등 구민감시관 위촉사업에 대해서는 반기별 1회씩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음.	추진중
	②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 수강생들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입금 시 단체 고유의 통장을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나, 개인명의 통장을 사용하는 주민자치센터가 있으니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통장 명의를 변경하기 바람. - 프로그램 수강 신청 시 장시간 대기로 인해 민원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다양한 수강 계층을 대상으로 적정한 방법을 모색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 고유번호증이 없는 3개동 주민자치센터는 고유번호증 발급받아 고유통장 개설완료 하였음. ◦ 동 주민자치센담당자 회의 시(2020.1.17.) 동별 프로그램 특성을 감안하여 온라인 접수, 전화, 문자에 의한 선착순 접수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협조 요청함.	완결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① 공공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 철저 - 어려운 이웃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여 함께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람. - 주민자치회가 핵심기구인만큼 다양한 주민 참여가 되도록 소통기반을 조성하기 바람.	◦ 현재 농소1동, 농소3동 찾아가는 복지팀에 간호직을 추가 배치하였으며 2022년까지 권역별 전담인력 배치를 목표로 맞춤형 복지를 강화해 나가겠음. 또한, 찾아가는 복건복지팀에서 어려운 이웃 방문내용을 공유하고 상담결과에 따라 사례관리 진행 여부 판단, 지속적 사후확인을 실시하고, 필요 시 유관기관 등 민간지원을 적극 발굴하여 연계추진 하고 있음. ◦ 주민자치회를 통한 공동체 조성지원, 민관 협업 지원 등 다양한 주민참여를 유도하겠음.	추진중

□ 동 행정복지센터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① 강동동 - 태풍 '타파', '미탁' 등으로 인하여 남방파제 분수공원 등에 조성된 꽃들의 피해가 많았는데, 꽃 식재 선정 장소의 문제점은 없는지 사전에 다각도로 고민하여 다른 장소를 선정하여 꽃단지를 조성하기 바람.	◦ 꽃 식재에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여 강동지역 주변 환경(해풍에 강한)을 고려한 화종을 식재토록 하겠음. ◦ 또한, 꽃단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담당 자생단체를 지정하여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중
	② 송정동 - 권역형 맞춤형 복지 중심동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수행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중심동인 송정동과 일반동인 강동동 사례관리를 꼼꼼히 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로 고위험군 발굴 등 위기가구 방지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노력 하겠음.	추진중

□ 총무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① 관용차량 운영 관리 철저 - 차량운행 일지, 차량점검 정비 등 정기적 계획적 운영 및 소수리 업체 선정 시 계약의 투명성 확보 - 안전 운행에 대한 직원 교육실시 - 차량구입시 (주)현대자동차의 지역공헌도를 고려하여 반영 - 관용차량 세차시 장애인 기업의 세차 업체 이용	◦ 운행일지작성, 수시점검(월1회), 정비자격증소지자의 차량점검(년2회) 실시 ◦ 관내 6개 업체와 최저견적에 의한 소수리 단가 계약체결 ◦ 사고방지 교육 및 차량관리 철저 공문발송('19. 12. 4.) ◦ 차량구입 시 관내 소재 친환경자동차 적극반영 ◦ 2017년부터 울산발달장애인협동조합과 소수리 계약	완결
건의사항	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계약 추진 - 사무실 환경개선, 청사 증축 공사 등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와의 계약을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북구의 업체를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주기 바람.	◦ 울산소재 공사업 등록업체(975개) 중 우리구 소재 업체는 전체 9.1%인 89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어 업체선택 시 선택의 폭이 좁은 편이나, 관내 신규업체 발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구 소재 업체와의 계약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음.	완결
	② 태양광 설치 대비 비효율시설 관리 철저 - 태양광 설치 대비 비효율 시설 관리 철저 및 적정 발전량이 생산되도록 방안 강구	◦ 청사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장치는 설비노후(2005년 준공)로 2019년 철거하고, 용량 증설 (20KW →30KW) 하였으며, ◦ 향후 태양광설비가 최적의 효율성을 유지하도록 관리 철저	완결

□ 문화체육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① 민간단체 보조금 행사 정산 철저 - 민간단체보조금 정산보고서를 보면 참석인원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일부 자부담 항목에 간이영수증이 첨부되는 등 허술한 정산서를 관리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기 바람.	◦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행사 운영 및 보조금 정산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보조금 정산시 기준에 맞는 첨부서류를 갖추어 정산을 실시토록 하겠음.	완결
건의사항	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리 철저 - 북구는 비인기종목으로 사격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대외적으로 주민 인지도가 낮은 실정임. 지역축제나 행사 개최시 직장 운동경기부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에게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차량 운행일지가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으니, 확인하고 조치하기 바람.	◦ 구민한마음 생활체육대회 등 지역 주요행사에 직장 운동경기부와 함께 소통하며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직장운동경기부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음. ◦ 또한 직장운동경기부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차량 운행일지 작성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완결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② 기박산성역사공원 조성 사업시 역사적 고증 필요 - 기박산성에 대한 역사적 논란이 있는데, 기박산성역사공원 조성사업 추진 시 반드시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역사적 고증작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기 바람.	◦ 역사공원 조성사업 추진시 정기적으로 자문단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기박산성 의병 책자 발간시 전문가 포럼 등을 개최하여 역사적 고증작업도 병행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음.	추진중
	③ 체육시설 개·보수 추진 만전 - 명촌족구장 인조잔디가 시멘트가 보일 정도로 훼손되었고, 그물망 휀스가 낮아 자전거 도로쪽으로 공이 나가서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으니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 2015년에 조성된 상안테니스장은 태풍 등의 영향으로 인한 휀스 등에 잦은 보수가 많은데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수리하여 주기 바람.	◦ 명촉족구장의 그물망 휀스는 체육시설 하천점용 허가 자체기준(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라 높이를 조절하는 것은 불가함. ◦ 명촌족구장 인조잔디 보수, 상안테니스장 휀스교체 등 시설보수 작업은 2019년 12월에 완료하였음.	완결
	④ 울산쇠부리축제 장소 이전에 따른 준비 철저 - 내년부터 울산쇠부리축제 장소가 달천철장으로 이전해서 추진되는데 이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인근 상가, 학교 등과의 협의를 통해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고, 축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 농소3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2차례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달천철장 인근 학교 4개소를 방문하여 축제 개최에 관하여 양해를 구하였음. ◦ 향후 인근 학교장과의 간담회를 계획중에 있으며, 주차, 소음, 환경정비 등에 대한 대책마련으로 인근 상가 및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축제를 추진하겠음.	추진중

□ 관광해양개발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① 해상캠핑장 조성 철저 - 바다 위에 조성되는 시설물이니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설계·공사하고, 불필요한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전체 당사마을의 경관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기 바람.	◦ 해상캠핑장 조성 사업은 실시설계 중('19. 9. 25. ~ '20. 3. 22.)으로 이용자 및 시설물 안전을 우선하되, 구조물의 형태, 재질 색상 등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에 반영할 예정임.	추진중
	② 수난 구조 활동 지원 확대 - 해병전우회 등 3개 단체가 수난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수난 구조 장비 지원 건의가 많으니 관련법령 등을 살펴보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해병전우회 등 3개 단체를 대상으로, 수난구조 필요 장비를 수요조사 후, 2021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부서 검토를 거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중
	③ 해양 시설물 피해 복구 철저 - 해안산책로와 누리길이 태풍으로 파손되었는데 상습피해 구간에 대해서는 복구 방법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여 영구적인 산책로와 누리길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기 바람.	◦ 상습피해구간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물 설치는 또다른 예산낭비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를 지양하고, 피해 발생 시 장비임차하여 노면을 정비하는 등 해안산책로 기능 유지에 초점을 맞추어 관리예정임.	완결

□ 도서관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① 제3대학 운영 내실화 - 제3대학 취업과 관련된 전문 강좌를 운영하여 실용성을 높이고, 직업 능력도 함양하도록 운영	◦ 학과별 전문과정(경매, 로컬푸드, 신소득작물, 귀산촌 등)과 자격증 취득과정을 추가하여 취·창업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음.	추진중
	②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필요 -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지원 사업 수행 시 심사단계에서부터 사업 목적에 맞는지 세심하게 검토하고, 당초 목적에 맞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	◦ 교육경비 지원사업 추진 시 심사단계에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수시 컨설팅과 점검을 통해 목적에 맞게 집행토록 하겠음. ※ '19년 교육경비 지도점검 실시 ('19. 10. 21 ~ 11. 22.)	추진중
	③ 노후화된 도서관 시설 개선 추진 - 노후화된 도서관 시설 보수공사 실시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점자도서 비치 등으로 장애인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조치	◦ 긴급을 요하는 노후된 도서관 시설의 보수공사를 위해 올 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생활SOC 사업 공모에 선정된 중앙도서관의 경우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할 계획임. ◦ 2018년 실시한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 지적된 사항은 2019년 조치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적사항 발생 시 즉시 보완토록 하겠음. ◦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묵혼용 점자도서(90권)를 1월 구입계약을 완료하였으며, 대활자본 도서 등과 함께 비치하여 장애인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음.	추진중

□ 징수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① 세외수입 체납 관리방안 마련 - 세외수입 체납분이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개별부서에서 체납분을 각자 관리함으로 징수 실적이 좋지 않음. -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2019.1.1. 조직개편으로 세외수입 전담팀 구성에 따라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징수와 체납처분 강화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 현년도 부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부과 징수 하고 있으며, 각 실과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징수 우수 사례 전파로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중
	② 체납세 징수 활동 철저 - 2017년부터 체납액 및 체납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여 시효소멸 이전에 정리하기 바람.	◦ 해마다 늘어나는 부과액에 대비하여 체납액도 누증되는 실정임. ◦ 5백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전담반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시효소멸을 최소화하는 한편, ◦ 연2회 체납세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각종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 부과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① 기업 지원을 위한 세무 행정 추진 - 세무지원을 위한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납세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 기업의 경제 활동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기 바람.	◦ 세무업무는 금전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어, 기업이 세무상담를 필요로 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올해 신규사업으로 “기업지원을 위한 원-스톱 세무 상담 창구”를 운영 중임. ◦ 납세자측에서 효과와 이익이 있으면 계속 운용하여 기업은 본연의 업무인 수익창출에 전념하도록 하여 “기업하기 좋은 북구”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 민원지적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① 지적기준점 민원 해결 노력 - 지적기준점 불부합지가 많이 있는데 토지 소유자 상호간에 민원이 제기되어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 민원해결에 노력하여 주기바람.	◦ 매년 각종 공사와 관련 있는 부서에 공사 착수 전 기준점에 대하여 사전 협의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있으며, 1. 1.부터 10. 31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를 위탁하여 기준점의 망실 또는 훼손된 경우 재설치 하였음.	추진중
	② 개별공시지가 내실 있는 조사 추진 -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 등 세금을 비롯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수많은 복지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준주택 가격 조사 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공시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적극노력하여 주기 바람.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산정시 민원요구사항을 감정평가사들에게 전달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의견제출기간에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우리구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의견 전달하였음.	완결

□ 복지지원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①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및 해소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이 구축중인 과정에서 북구만의 모델 창출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복지정책을 총괄하고, 동장을 중심으로 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방문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에 힘써 주기 바라며, - 탈북민, 은둔형 수급자 등에 대하여 정신보건센터, 민간기관, 찾아가는 이동희망복지지원단 등과 협업하여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람.	◦ 각 동별 팀장과 동장들의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방문을 위해 월5가구, 팀장은 월10가구 이상 상담목표를 설정하여 8개동이 균형적으로 동장중심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음. ◦ 이동희망복지지원단, 민관협력네트워크 회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늘다봄단), 공공부문사례관리사업 등 지역 내 민간기관과 공공 영역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사업의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하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② 청소년자원봉사학교 및 권역별 복지관사업 운영 내실화 - 청소년자원봉사학교 운영은 학교 및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봉사활동 및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봉사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도 발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이 협소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2종합사회복지관, 염포·양정사회복지관 신축 또는 기존 복지관 시설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기 바람. - 권역별복지관 사업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제한이 있으므로 사업비 증액을 검토하여 주고 지역 주민과 어린이들이 폭 넓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바람.	◦ 현재 청소년자원봉사학교 홍보 및 참여자 모집 시 관내 학교와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음. 다양한 봉사활동과 재능 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음. 또한, 청소년자원봉사학교 운영 후 만족도와 욕구를 조사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교육방향을 도출하여 프로그램에 접목시키겠음. ◦ 사회복지관이 그동안 지역 내에서 역할을 한 많은 영역에 있어 전문화된 시설(청소년문화의 집, 다문화건강가족지원센터 등)과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복지관 신축은 운영비를 지원받아야 되는 市와 협의 후 장기 검토할 사항임. ◦ 또한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복지관사업을 운영하며 지역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권역별복지관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한 사업비 증액은 복지관과 협의 후 검토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③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예우 및 자원봉사박람회 운영 내실화 - 고령의 보훈단체 회원들의 전적지 순례 참가 시 휠체어 등을 마련하여 행사 참가토록 하는 등 예우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 8개동 나눔냉장고 운영과 관련하여 음식의 유통기한을 철저히 점검 및 확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힘써 주고, - 자원봉사자 우대를 위해 명예의 전당 등재 및 자원봉사박람회 개최 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보훈단체장과의 간담회 시 여성자원봉사회 연계 등을 통하여 거동불편회원을 위해 휠체어 마련 등으로 소외되는 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준비에 노력하겠음. ◦ 원재료 위주 기부식품을 선별하여 접수하고, 당일 소진 원칙 아래 자활도우미 등을 활용하여 식품위생 상태를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음. ◦ 자원봉사대축제시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자원봉사자의 자부심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대를 하였으며, 향후 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민관협력 T/F팀 구성·운영과 프로그램 자체개발, 타 시·도 벤치마킹 등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음.	추진중

□ 사회복지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① 복지시설 및 요양시설 소방 점검 철저 - 화재취약대상 복지시설 및 요양시설에 대하여 소방점검을 철저히 하고, 특히 소방안전 시설이 미설치 된 곳은 빠른 시일 내 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은 매 반기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가장기요양 기관은 보건복지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하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소방시설이 미설치된 주간보호센터(1개소)는 시정조치 등을 통하여 지난 12월 12일 간이스프링쿨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3종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복지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완결
건의사항	① 시립노인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철저 - 장애인복지관 및 시립노인복지관은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조기에 건립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고, 장애인복지관 건립 시 진입도로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시립노인복지관은 22년 준공을 계획으로 현재 부지매입이 완료되었고 올해 2월까지 실시설계중이며 정상추진되고 있음. 추경에 공사비를 확보하여 상반기중 착공, 계획대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울산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겠음. ◦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시립에서 구립으로 사업방향을 변경,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시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국시비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중
	② 경로당 개보수 및 운영 철저 - 가대경로당, 양정경로당, 상연암 경로당 등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조치해 주고, 주기적인 점검으로 노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람. - 경로당 기존회원과 신규회원간의 갈등, 연령 차이에 따른 갈등이 해소되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 바람.	◦ 가대경로당 화장실보수와 양정경로당 내부공사는 12월 완료하였으며, 예산부족으로 못한 양정경로당 진입로포장과 상연암경로당 도시가스배관 등 공사는 1월 착공하여 2월초 완료하였음. 향후에도 노후 경로당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음. ◦ 경로당 임원 역량강화교육 등 각종 교육과 상담을 통해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간 갈등해소, 소통과 화합이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음.	추진중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③ 노인·장애인 복지사업 관련 추진 철저 - 급증하는 노인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권역별 노인복지관, 노인회관, 노인복지관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 장애인일자리 사업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특히,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도 노력해주기 바람. - 노인 복지를 위하여 어르신위원회 등에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복지시설 이동 차량에 블랙박스 설치 등 안전에도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람.	◦ 급증하는 노인인구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 구에서는 2020년 준공예정인 노인회관을 건립중에 있고, 송정지구에는 제2시립노인복지관을 2022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는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은 물론 기존시설 운영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음. ◦ 2020년 안마사파견사업을 신규추진하는 등 다양한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발굴로 양질의 일자리사업을 발굴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울산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를 1월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모든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노인분과, 노인지회, 노인복지관 운영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관련단체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 노인복지업무에 반영하고 있음. ◦ 장기요양기관의 안전한 차량운행과 관련해서는 시설 설치·변경신고(차량등록)시 이송서비스 중 어르신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탑승자 보험가입, 블랙박스를 설치를 안내, 권고하여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추진토록 하겠음.	추진중

□ 가족정책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① 아동권리증진 노력 -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연계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아동정책제안대회에서 나온 좋은 제안은 향후 아동권리대변인단을 구성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정책으로 반영하고, 아동의 권리가 증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예산에 있어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아동친화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편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아동정책제안대회에서 나온 아동제안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을 요청하여 총 7개 제안에 대하여 반영가능 5개, 시행중 2개로 회신 받아 정책제안대회 참가팀에게 통보함. ◦ 아동권리를 옹호 할 수 있는 전문가로 현재 아동권리대변인을 구성하였으며 아동권리 증진과 관련하여 의견제시, 자문활동 중에 있음. ◦ 아동의 권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추진중
	② 표준보육비용 및 급·간식비 현실화 - 어린이 급·간식비가 10년전 지침에 따라 편성되고 있는데 현실화 및 인상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라며, 구에서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 보건복지부는 2020년에 보육예산 인상안을 발표('19.12.11)하여 보육료 단가는 평균 7.6% 인상하고, 10년간 동결되었던 어린이 급·간식비도 ('19년 1,745원 →'20년 1,900원) 인상하여 보육료에 추가 지원됨. 아동이 차별 없이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도록 급간식비 추가 지원 방안 모색중임.	추진중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③ 청소년 지원 확대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보드게임 카페 같은 문화공간 조성해 주기 바람. - 다문화 학생들에게 언어의 문제 등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주기 바람. - 공동생활가정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람.	◦ 청소년 수련관 건립 시 해당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 청소년문화의집(꿈에마루)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 진행이 없는 시간대를 맞추어 공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조치 함. ◦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대상으로 언어발달지원사업,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 한국어 방문학습사업, 다문화자녀 공부방수업, 방문교육사업을 추진하여 한국어 및 기초학습을 지원할 예정이며 ◦ 더불어 취약가정 다문화자녀의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자 배움지도사 파견, 관내 특수목적형(다문화) 지역아동센터 2개소 다문화분야 전일제 아동복지교사 채용 배치함. ◦ 북구에는 현재 농소2동 1개소, 농소3동 1개소로 전체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지원이 열악함 ◦ 구비를 확보하여 공동생활가정 입소 아동의 정서함양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지방보조금 심의 시 선정되지 못함. ◦ 이에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에서 기탁한 성금 중 일부를 공동생활가정 2개소에 지원함. ◦ 지방보조금 지원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공동생활가정 입소 아동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추진중

□ 경제일자리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시정 요구	①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관리 철저 - 사회적기업의 보조금, 일자리 등 각종 지원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과 현장 확인을 통해 사회적 기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며, -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피드백을 통한 성과분석, 사업방향 제시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매분기 정기·합동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14개 기업 정기점검, 4개 기업 합동점검, 17개 기업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행정처분 및 시정명령 통지하였음. ◦ 2020년 상·하반기 재정지원 참여기업 대상으로 회계·노무 교육 및 부정수급 방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방향 등을 제시하여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음.	추진중
건의 사항	① 질 높은 일자리 조성 - 청년, 경력단절여성, 퇴직자들에게 질 높고 안정적인 일자리 조성에 적극 노력해 주기 바라며,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업도 모범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람. - 일시적·일회성의 일자리가 아닌 연속성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고민해 주고, 향후 친환경자동차 사업의 확대에 발맞추어 부품생산 기업 유치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 중앙부처 공모사업 및 일자리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발굴·추진하겠음. ◦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전환협의를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2018. 12. 31. 구성하였으며, 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 투자 유망기업 조사 및 유치활동을 통하여 자동차 관련 유망기업 등 4차 산업 선도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음.	추진중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② 공공기관 태양광 사업에 대한 관리 철저 - 공공기관 태양광사업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라며, 노후화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 양성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주기 바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신축·증축·개축하는 공공기관 건축물은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이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음. ◦ 농소운동장 등 기설치된 공공기관 태양광 설비는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설치업체와 협의하여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③ 노동역사관 운영 철저 및 공유경제 활성화 - 노동복지센터 조성과 발맞추어 주민들도 많이 찾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고, 노동자 도시에 걸맞게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 향후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공유경제 플랫폼, 카풀서비스 등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대가 추구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선진 사례 견학 및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등을 통하여 미래 산업에 대하여 행정이 선도적으로 대처하여 주기 바람.	◦ 노동복지센터 준공 후 노동역사관을 다양한 계층이 찾도록 노동역사에 대한 강좌, 기획전시, 역사교실 등 눈높이에 맞는 내실 있는 운영 계획을 마련하겠음. ◦ 공유경제에 대한 이해 및 의식 확산을 위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 농수산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① 정자활어직매장 유지보수 및 관리 철저 - 건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정자활어직매장 내 환기 및 누수 문제가 있는데 필요한 부분은 보수 공사를 추진하여 주고, 비어 있는 2층 점포는 카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을 검토해 주기 바람. 또한 인근 노점상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여 주기 바람.	◦ 시설 내 하자는 하자보증기간('19.1.~'21.1.) 내 모두 보수할 계획이며, 우리 구와 사용자가 수시로 건축 시공자에게 하자공사를 요구하고 있음. ◦ 2층 특산물 판매점은 '19년도 2회에 걸쳐 정자어촌계 내 자체 공개입찰을 실시하였지만 모두 무응찰 되었음. ◦ 이에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 법규를 모두 검토 하였으며,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용도변경 승인 요청 한 상태임. ◦ 현재 국가어항인 정자항 내 수산물 판매구역이 부족한 실정이며,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정자항 재정비사업을 통해 부지이용기본계획에 수산물판매구역 면적을 확대 요구할 계획임.	완결
건의사항	② 꽃도시조성사업 내실화 - 작은 예산으로 북구 전 지역을 꽃도시로 조성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경주 경계 등 특정 지역을 집중적으로 식재하고, 관리가 용이한 관목류 식재도 검토해 주기 바람. - 꽃도시 조성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동별 자생단체에 지원하는 방안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람.	◦ 적은 예산으로 꽃도시 조성은 어려운 일이므로 산업로변 교통섬 등 특정지역 중심으로 관리가 용이한 초화 및 관목류 식재 검토하겠음. ◦ 동별 마을주변 꽃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을 재배정하여 동별 자생단체와 연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꽃도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완결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③ 도시농업 등 활성화 - 무룡동 소재 북부농기계임대사업소의 농기계 등의 대여 및 반납 절차 간소화와 휴일 운영 검토 및 보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해 주기 바라며, 텃밭상자 보급 확대에도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람. - 농촌그린투어 견학은 타 구로 가는 것보다는 관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고, 체험농장 외에도 계절별 우리 지역 농가 위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방학과 주말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주기 바람.	◦ 울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북부농기계임대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과 인력 및 예산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市 농업기술센터에 지속적으로 주민불편사항을 건의토록 하겠으며, 도시농업확산을 위한 텃밭상자보급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음. ◦ 농촌그린투어 사업에 있어서는 관내 견학장소를 새로이 발굴하고 청소년들의 참여를 확대토록 하겠음.	완결

□ 환경위생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시정 요구	① 동천, 매곡천자전거도로 음수대 설치 - 타 구보다 자전거도로 음수 시설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음수대 설치를 확대해 주기 바람.	◦ 자전거 도로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깨끗하게 정수된 냉·온수와 쉼터를 상반기중 설치완료 계획임. ■ 설치장소 : 진장동 파크골프장 옆, 명촌동 족구장 앞, 매곡천 일원 ■ 추진일정 - '20. 2월 : 설치업무협의 - '20. 3월 : 설치장소 최종선정 - '20. 4월 : 음수대 설치공사 - '20. 5월 : 보완 및 준공 ■ 소요예산 : 30,000천원(구비) ■ 향후계획 :주민 추가설치 요구가 있을시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	추진중
건의 사항	① 위생업소 허가 절차 간소화 - 많은 주민들이 음식점 등 창업 및 허가 절차에 대한 불편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춰 절차 간소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람.	◦ 영업신고 절차 등에 대한 신고 매뉴얼을 작성·비치 민원인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음.	완결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② 웰빙라이프 울산 향토전통음식 행사 운영 철저 - 웰빙라이프 울산 향토전통음식 무료시식 행사에 참여하는 음식점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고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음식업소가 선정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라며, 소규모 미용업소 신기술 교육은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여 주기 바람.	◦ 우리 구 동장 추천 향토·전통음식점 및 맛집 실태 조사를 실시, 웰빙라이프 울산 등 각종 먹거리 행사 등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추진(공문발송) - 환경위생과-1514호(2020.1.13.) ◦ 미용업소 신기술 교육 횟수를 연 1회에서 상·하반기 연 2회로 확대 추진(2021년 예산확보 계획)	추진중
	③ 온실가스 저감 및 미세먼지 감축 내실화 - 미세먼지 감축 및 지구온난화 해결 대책은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마땅히 노력하여야 할 과제로서 관련 교육 확대, 그린리더 활동 내실화,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통한 시책 발굴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기 바람.	◦ 기후변화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교육 및 동별 녹색생활실천교육,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환경교실운영,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 주민 실천운동 확산을 목표로 가정, 상가 등의 에너지 사용실태 진단 및 감축을 위한 컨설팅, 감축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며, 상반기중 녹색실천 우수지역을 선정하여 견학계획임. ※ 미세감축 내실화 추진계획(2020) ■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 임차운행 - 18,000천원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 44,500천원/ 185가구	추진중

□ 환경미화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① 농소3동 우리마트사거리 환경 개선 - 농소3동 우리마트 사거리 등 환경취약지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라며, 배출시간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 각 상가별로 방문하여 재활용 배출시간 준수 홍보 및 재활용 수거용 그물망 직접 배부. ◦ 재활용 수거장소에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하여 배출시간 미 준수 등 무단투기 예방	추진중
건의사항	① 가로변 청소구역 확대에 따른 대책 수립 - 도시개발사업지구 조성 등 가로변 청소 구역이 확대되고 있는데 현재 미화원 인력의 부족으로 근로 강도가 높고 또한 가로변 청소업무 공백 발생 우려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 미화원 인원 충원은 기준인건비와 막대한 예산문제가 수반되는 사항이라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 가로변 청소업무 공백 발생시에는 기간제, 공공근로 등 인력 확보 후 처리하여 최소화하겠음.	추진중
	② 이동식감시카메라 등 운영 내실화 - 불법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해 운영 중인 이동식감시카메라 밧데리 방전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고, 고정식감시카메라 단속도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 이동식감시카메라 배터리수명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도록 수시로 교체 ◦ 고정식감시카메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완결
	③ 공공기관 재활용 분리 철저 - 공공기관 재활용 분리배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재활용 분리 배출용기 보급이나 점검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모범적으로 분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라며, 향후 발생할 노후 태양광 패널 수거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람.	◦ 전 실·과·소·동·문화예술회관에 공공기관 재활용 분리 철저 공문 발송 〔환경미화과-284(2020.01.03.) ◦ 분리수거함 설치 및 재활용 배출방법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 ◦ 태양광 패널 주민신고 시 각 청소지휘소별 방문 수거하여 재활용 홍보관 현장 창고에 임시보관 후 처리	추진중

□ 안전정보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① 지진 및 각종 재난 대비 철저 -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동별 재난안전지도 제작을 검토하여 주고, 정전 및 통신망 두절 등의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기 바람. -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시 적정한 시기와 장소 등을 검토·설치하여 주민들의 그늘막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힘써 주기 바람.	◦ 양정동 등 3개동 재난대비 지역의 특색에 맞는 재난안전지도를 제작하였으며, 나머지 동에 대해서도 지역특성형 안전지도제작을 독려하겠음. ◦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 5개소에 그늘막 설치 예정으로 3월에 계획수립 후 5월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음. 또한 기존 이용 중인 43개소에 대해서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② 자율방재단 사무실 및 창고 확보 -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복구 등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활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율방재단을 위한 사무실 및 자재보관 창고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2019년 화봉지하차도 아래 방재단 창고를 확보하였으며, 올해에는 신기교 하부에 사무실을 구축하여 방재단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③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소 대응 등 방사능방재 업무추진 철저 - 경주(월성원자력)시가 추진하려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소는 경주시내보다 북구가 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론화 및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이 있음. - 방사능방재에 대한 행동요령 및 대피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하기 바라며, 특히 방사능방재 대피 매뉴얼 작성 시 노인요양 및 장애인 등의 사회복지시설에도 대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및 지역실행기구 동향파악 등 지속 추진중이며, 울산 북구 주민의 의견이 포함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방사능 방재분야는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기타 재난과는 다르게 다소 생소하게 느낄 수 있지만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으로 주민들이 방사능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대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음. ◦사회복지시설과 공동훈련을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음 .	추진중

□ 건설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시정 요구	① 도로 및 하천 시설물 관리 만전 - 국도7호선 가드레일, 신명천 제방, 자전거도로 표지판, 제설함, 노후한 자전거도로 데크 등의 시설물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수하여 주고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 자전거도로 노후도조사를 통해 정비계획 수립하고, 설해대비기간(매년 10월경) 제설함(파손교체, 신규설치, 염화칼슘 정비 등) 실시. ◦ 신명천 구간 현장 확인 완료 → 전반적 시설물 양호한 상태로 지속적 유지관리 조치하겠음.	추진중
건의 사항	① 도로수로원 인력 및 안전 확보 강화 - 각종 사업지구 및 도로 등의 시설물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관리할 도로수로원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인력 증원방안을 검토하여 불미스러운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고 아울러 장비보강 및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 공무직(도로보수원)인원 충원을 위해 총무과와 협의토록 하겠음. ◦ 충원 불가시 기간제 근로자 및 공공근로자 활용하여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음.	추진중
	② 효율적인 (소방)도로 관리 및 매곡천 친수환경 녹지 조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내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꼭 필요한 도로들이 해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라며, 매곡천 친수환경 조성 시 녹지를 충분히 확보하여 쾌적한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주기 바람. - 하수관로 신설 및 교체 공사 시 인접주택별로 해야 하는 공사와 함께 진행할 방안을 모색하여 여러 차례 도로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 초래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 필수도로 내년당초예산 확보로 실시설계용역 추진예정. ◦ 매곡천 친수환경조성 사업 시 팽나무 등 11종류 수종 식재 등 친수환경 조성 추진 만전 ◦ 하수관로 신설 및 교체 공사계획 시공 전 관련 동에 전파하여 일정 조율하여 공사가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중

□ 도시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① 도시재생사업 추진 철저 -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 -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및 주민역량사업 강화 - 양정 자동차테마거리 사업구간 연장 적극 검토 및 청소년 관련 사업도 발굴/추진	◦ 각 세부사업 추진 시, 해당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간담회, 설명회 등과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수렴 ◦ 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의 활동은 업무일지를 통해 매일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시 현황보고, 현장회의, 업무지시 등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또한 주민역량강화 기획 시, 각 활동주체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역량심화과정 운영으로 강화 ◦ 양정 자동차테마거리 사업구간은 현대자동차 정문까지의 구간으로 확장하고자 하며, 도시재생사업 진행 시, 청소년들과 관련된 공간조성 및 참여방안, 프로그램 등 발굴 검토	추진중
	② 도시경관·환경 개선, 민원해소 노력 및 예산낭비 지양 - 행정구역 경계 지역에 대한 경관 개선 검토 - 강동골프장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여 공사 추진 - 신천동 CGV로 진입하는 제내2길에 대한 경관개선 검토 - 바다와 같이 걷는 해안 산책로 공사는 태풍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향후 이와 같은 공사를 지양하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검토	◦ 관문경관 형성을 위한 조형물 설치 위치를 검토 중에 있음. 현행 및 관련 법령 검토 후 추진 예정 ◦ 강동골프장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보상협의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향후 민원 및 갈등이 없게 끔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 현재 제내2길을 중심으로 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으므로 관련 사업 종료 후 필요 시 경관개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 유사 사업 진행 시 지리적, 위치적 조건 등에 대해 사업 시행 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주의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 공원녹지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① 도심지 공원 조성 및 관리 철저 등 - 신천공원 내 화장실,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용에 편리한 생태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방안들을 적극 모색하기 바라며, - 극동스타클래스, 신천엠코타운 등의 진입로 및 공원부지 정비와 매곡공원 및 호계근린공원 조성에도 적극 노력해 주기 바라며, 강동중앙공원에 수목을 식재하여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 바람.	◦ 현재 공원 이용객은 국민체육센터 내 화장실, 주차장 사용으로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향후 철도이설 시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보완 하도록 검토하겠음. ◦ 진입로 확보는 도시계획시설 해제 후 가능한 사항이며,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으며, 공원부지 정비는 공원작업단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음. 또한 매곡공원은 토지보상 진행중에 있으며, 농소근린공원은 7월1일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대상으로 시에 조성을 건의하였으나 시 재정여건상 어려운 실정임. 아울러 강동중앙공원은 1회 추경예산을 확보 후 수목을 식재토록 하겠음.	추진중
	②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보완 노력 - 천마산 편백산림욕장은 북구의 대표적 산림욕장으로 조성되었는데 더욱 보완·확대하여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해 주기 바라며, 운동기구는 설치하기 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람.	◦ 산림욕장내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평상 10개, 평의자 10개정도를 추가 설치했으며, 주민편의를 위해 계속 개선해 나가겠음. 유실부분은 '19년 12월에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음. ◦ 운동기구 종류 및 설치장소 등은 동행정복지센터에 설문조사 등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음.	완결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③ 도시숲 조성 활성화 및 물놀이장 운영 철저 등 - 기후변화에 잘 적응 및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숲 조성을 활성화하여 미세먼지, 대기오염 저감에 노력하고 후손들에게 도시숲을 물려주고, 보호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 햇빛공원 내 물놀이장 운영 시, 의자, 그늘막 등에 대한 추가 설치를 검토해 주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 강동임도 건설은 향후 건립되는 산림복합단지와 연계하여 추진해 주고, 중리마을 토사 유입과 관련해서도 사방사업을 시행해 주기 바람.	◦ 현재 우리 구 원연암마을 일원 미세먼지 차단숲 부터 완충녹지 조성 등 국시비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구 도시숲 조성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시 녹지공원과에서 덕양산업 일원 완충녹지와 연결하는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고 있음. 앞으로 시비나 산림청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음. ◦ 물놀이장 운영시 의자, 그늘막등을 추가로 설치토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겠음. ◦ 강동임도는 산림복지단지 부지와 연결되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 '19. 12. 1일로 임도 1.6㎞ 공사가 완료되었음. 중리마을 사방사업은 '19. 12월에 상부 계곡 1개소에 토사유입 방지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잔여 계곡은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준설 등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겠음.	추진중
	④ 체육시설물 운영 및 관리 일원화 - 체육시설물의 관리주체가 달라 주민들에게 혼돈을 주고, 비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 부서 간 검토가 필요하며, 효율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 교통행정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① 반사경 등 교통시설물 정비 철저 - 노후되고 각도가 맞지 않은 반사경은 즉시 정비하여 주고, 일부 교통시설물에 있는 과거의 구정 목표도 정비해 주기 바람.	◦ 관내 교통시설물 반사경 전수조사 완료('19. 12. 27.) ◦ 반사경 및 교통시설물 정비완료('19. 1월)	완결
건의사항	②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 선진시책 접목 -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노랑신호등, 점자블록 신호등, 소방시설 옆 빨간 인도경계석 등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적극 도입해 주기 바라며, 아동친화도시 조성과도 연계·추진해 주기 바람.	◦ 금년 사업비 교부 시 노란신호등 실시설계 및 공사추진을 적극 추진계획 ※ 대구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벤치마킹 실시 ⇒ 우리 구에 적극 반영 추진	완결
	③ 버스노선 및 배차, 정류장 설치 등 적극 검토 - 송정지구 버스노선, 이화마을 지선버스, 949번 버스 추가 배차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고, 택지개발 사업으로 신규 조성되는 지역에도 버스노선 신설 및 배차 등에 관심 가지고 주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 이화마을 지선버스, 949번 버스추가 배차관련, 울산시에 검토요청('19. 12. 4.) ◦ 택지개발조성 지구에 따른 버스 노선 신설 및 지선 버스 협조 요청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	추진중
	④ 보행자 통행 안전 확보 등 - 산업로 확장으로 이화초 학생들의 통학로에 대하여 학부모와 함께 모니터링하여 주고, 주정차 단속인력 확충도 검토해 주기 바람. -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교통신호등 가동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 지역 주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해 주기 바람. - 벽산아파트 101동 앞 및 매곡초등학교 앞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검토하여 주기 바람.	◦ 산업로 확장공사(2022. 3월 준공예정) 구간은 수시로 현장 확인 후 모니터링 중이며,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여 인력배치 및 통학안전 지도를 우선적으로 실시(7명) ◦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교통신호등 관련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조치(동부경찰서 협의) ◦ 벽산아파트에서 70m 위쪽, 중앙도서관 방면에 신호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건의 결과, '20년도 신설장비설치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설치 검토회신(울산지방경찰청 '19. 12. 3.) ※ 매곡초교 앞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계획 - '19. 12월 : 공사착공 - '20. 4월 : 공사완료 - '20. 5월 : 시설물 이관	완결

□ 건축주택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시정 요구	① 공동주택 현황 등 홈페이지 자료 수정 - 구 홈페이지에 나오는 공동주택 현황, 현수막게시대 현황 등 각종 자료를 정비하여 주기 바람.	◦ '19. 11. 28일자 홈페이지 자료 정비 완료	완결
건의 사항	① 공동주택 관련 각종 민원 사항 해결 노력 - 신규아파트 준공 관련 민원과 시공사와 입주자간 하자보수 민원, 입주자대표·주민들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도 관심을 갖고 갈등 및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 공동주택 주민 간 분쟁을 완화하고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체 활성화 우수 공동주택 공모』사업 추진 예정	추진중
	② 공동주택 지원사업 가산점 부여 -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 시, 에너지절감, 장애인·임산부 등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 공동주택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2020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평가기준 상 장애인 전용주차장 추가설치 단지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 항목을 추가 하였으며, 에너지 절감 항목은 기 시행중임.	완결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③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 내실화 등 - 노후된 벽보게시판 정비, 불법 현수막 근절, 현수막 게시대 증설 등을 검토하여 주고, 간판개선 사업은 심플하면서도 도시경관에 맞도록 증설 및 교체하여 주기 바람.	◦ 노후된 벽보게시판은 예산범위 내에서 정비 예정임. 불법 현수막 게시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게시대를 추가로 증설(2단형 4개소)하고 노후된 지정게시대(6단형 2개소)를 교체할 예정이며 단속반 상시 운영 및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등을 통해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음. ◦ 간판개선사업은 238개의 간판을 철거하고 160개의 새로운 간판을 설치할 계획임. 디자인 설계 시 도시경관 개선 및 업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지역 특성 및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간판 제작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음.	추진중

□ 보건소

<table>
<tr><th>구분</th><th>시정·건의 요구사항</th><th>처 리 내 용</th><th>처리
결과</th></tr>
<tr><td rowspan="3">건의
사항</td><td>① 청소년 금연클리닉 교육 등 강화
-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울산초등학생 흡연율이 타 지역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데, 이에 대한 조기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니 청소년 등 금연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주기 바람.</td><td>◦ 2020년도 청소년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신청을 받아 3월~10월 중 교육 예정이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음.
<table><tr><td>구 분</td><td>2019년</td><td>2020년</td></tr><tr><td>교 육
신청현황</td><td>6개교 /
10학급</td><td>6개교 /
13학급</td></tr></table></td><td>완결</td></tr>
<tr><td>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속적으로 관리 철저
- 최근 언론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신고된 사건과 적발사례는 없으나, 학대 등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기 바람.</td><td>◦ '19년 11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아동학대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북구는 ㈜베이비플래너 1곳으로 제공인력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 시 불시 합동점검 및 경찰 수사 의뢰 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td><td>완결</td></tr>
<tr><td>③ 심리상담실 운영 내실화
- 최근 소방관과 경찰관은 순직자보다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은 실정이고, 보건·복지 전담공무원의 우울증은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최일선에서 민원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있는 만큼 조기에 심리상담서비스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건강한 업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바람.</td><td>◦ '19년 3월 고위험직 공무원 심리상담실 운영 업무협약체결로 소방관, 경찰관 등 709명 대상으로 방문심리상담 및 집단프로그램, 진료비 지원,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도 대상을 확대하여 보건, 복지 전담공무원에게도 찾아가는 심리상담버스를 이용하여 정신건강문제 상담 및 심리검사, 필요시 병의원(정신상담기관) 진단검사비 및 진료비지원, 고위험군 대상 집단 힐링 프로그램과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업무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음.</td><td>완결</td></tr>
</table>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④ 보건소 전문인력 배치 - 「지역보건법」에 의거하여 보건소에 전문인력(약사, 한의사, 치과의사)이 배치되어야 하며 동구, 남구의 경우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음. 우리 구도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홍보실로 전문인력 최소 배치기준 충족을 위한 전문인력 정원 책정을 요청하였음. ※ 보건소-2530(2020.1.23.)호	완결
	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홍보 강화 - 만성질환 전 경계위험군 대상자에게 스스로 건강생활실천을 할 수 있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 좋은 시책이나 주민들에게 인지도가 낮으니,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보도자료, 전광판, 현수막, 주민만남의 날 홍보,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다양한 홍보방법으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완결
	⑥ 기타 사항 - 지역의 부족한 응급의료시설과 관련하여 농소권과 강동권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 및 골든타임을 감안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 주기 바람.	◦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소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반진료, 예방접종, 검사업무는 수행 불가함. ◦ 응급의료 및 진료는 불가한 시설이나 지역사회 건강문제 인식 및 주민건강 증진 기여는 가능하므로, 장기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음.	완결

□ 문화예술회관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① 홈페이지 관리 철저 -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의 언론보도, 관람후기, 사진 등 최신 자료가 업데이트 되지 않아 관리가 부실하며, 접수일자와 수강일자가 혼돈되어 주민의 불편이 있으니 시정하고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 홈페이지 최신자료 업데이트 및 접수일자와 수강일자 혼돈사항을 수정 완료하였으며, 담당자별로 자료 신속 업데이트를 통해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완결
	② 내실 있는 공연·전시 추진 - 일부 전시의 경우, 홍보비 예산이 과다 지출되었는데 알차고 다양한 전시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전시 및 공연 콘텐츠 진행에 있어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홍보 및 홍보물 제작을 진행하겠음.	추진중
	③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필요 - 동 주민자치센터, 체육센터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문화예술회관만의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시간대 교육 강좌에 대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 바람.	◦ 현재 동일프로그램은 10여 강좌로 향후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적극적인 소통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앞서가는 문화예술아카데미가 되도록 진행하겠음.	추진중

□ 시설관리공단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① 시설공단 운영 정상화 추진 - 시설관리공단은 2019년 9월 업무를 개시한 이후, 주차장 등 여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주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만큼 주민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여 구민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하기 바람.	◦ 공단 설립 초기 공영주차장 주차료에 대한 민원이 다소 있었으나 이제 해소되었으며, 주차장 관리요원의 불친절 민원은 지속적인 친절교육 등을 통해 주민의 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있음.	완결
	② 기간제 근로자 구민 채용 확대 -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시 동등한 자격 조건이라면 구민 중에서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 행정사무감사 후 쇠부리체육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12명 중 9명을 구민으로 채용함(3명은 안전자격소지자 채용) ◦ 향후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구민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완결

□ 의회사무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① 관용차량 세차 관련 건의 - 북구는 발달장애인들이 소속된 예비 사회적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매주 구청 주차장에서 직원 및 민원인 출장 세차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의회관용차량도 장애인기업이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하여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이용하기 바람.	◦ 2020년 의회관용차량 세차계약을 “울산장애인자립지원협동조합”과 체결하여 장애인 기업의 안정적 일감 확보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	완결
	② 행정사무감사 기간 인력 충원 건의 -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전문위원실의 인력을 증원 또는 보강하여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람.	◦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의회사무과 인력 1명을 전문위원실 업무지원으로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완결

제6장

기타의정활동

제1절 결의안
제2절 구정질문, 서면질문
제3절 5분 자유발언
제4절 진정·건의서 처리현황
제5절 주요 의정활동사항
제6절 의정활동일지

제1절 결의안

1. 결의안 현황

의안 번호	본회의 의결일	의 안 명	결의안 발의자	처리 결과
17	제176회 임시회 (2018. 8. 20.)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에 대한 촉구 결의안	임수필 의원	원안가결
65	제179회 제2차 정례회 (2018. 12. 14.)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판문점 선언 국회비준동의 촉구 결의안	임수필 의원	심의보류
74	제180회 임시회 (2019. 2. 28.)	고헌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개정 촉구 결의안	정외경 의원	원안가결
75	제180회 임시회 (2019. 2. 28.)	부산~울산 광역전철 송정역(가칭) 연장 운행 촉구 결의안	이주언 의원	원안가결
92	제181회 임시회 (2019. 4. 24.)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 청문회 실시를 위한 협약 체결 촉구에 대한 결의안	임수필 의원	부결
128	제183회 임시회 (2019. 8. 26.)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임채오 의원 외 7명	원안가결
129	제183회 임시회 (2019. 9. 9.)	북구 관내 초·중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신설학교 승인조건 변경 촉구 결의안	이주언 의원 외 7명	원안가결
162	제185회 제2차 정례회 (2019. 12. 16.)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및 급간식비 현실화 촉구 결의안	이진복 의원	원안가결
200	제188회 제1차 정례회 (2020. 6. 24.)	건축물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규제 완화 촉구 결의안	이진복 의원	원안가결
201	제188회 제1차 정례회 (2020. 6. 24.)	송정역(가칭) 광역전철 연장 운행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	이주언 의원 외 7명	원안가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에 대한 촉구 결의안

○ 본회의 의결일 : 제176회 임시회
(2018. 8. 20.)
○ 결의안 발의자 : 임수필 의원



지난 5월부터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주관부처로 하여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위한 '재검토 준비단'(15명 : 단장1, 정부3, 지역5, 시민사회3, 원자력3)을 운영하고 있다. '재검토 준비단'은 이후 본격 진행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재검토위원회'의 구성, 권한, 위상 등 운영원칙과 운영계획 등의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8월 22일 12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

현재 '재검토 준비단'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까지의 관리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제반의 결정과정 설계와 더불어 월성원장력발전소내 저장용량의 포화(2020예상)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결정과정 설계, 의제의 선후, 주민의 범위, 의견수렴 방법 등을 둘러싸고 논쟁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자력과 에너지전환을 선언했고, 그동안 묵혀두었던 과제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정책을 구체화시킬 때이다. 그리고 그 원칙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안전이어야 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본질적으로 위험한 물질로써 핵발전을 운영하는 전 세계 31개국에서 최종처분장 건설을 추진하는 국가가 핀란드밖에 없을 정도로 위험 그 자체이며, 그마저도 10만년 이상이나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와 의혹의 영역이다. 결국 현세대의 편안한 전기소비를 위해 미래세대에 재앙의 위험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하는 셈이다.

울산, 특히 북구의 경우는 대부분 지역이 월성원자력발전소로부터 17km 이내로

인접하여 중수로형 원전의 특징인 삼중수소의 일상적 배출로 인한 일상적 피해를 받고 있는데다가,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에 비해 사용 후 핵연료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 다량 발생하기에 임시로 저장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의 증가로 인한 재앙적 사고위험 가능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울산북구의원 일동은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울산북구의원 일동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마련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범위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울산의 경우 반경 24~30km)까지의 주민임을 확실히 하며, 이를 관철시킬 것임을 결의한다. 북구는 월성원전 직접 영향권내 지역주민 당사자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문제를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행정구역으로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 울산북구는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경주시내보다 더 가까울뿐더러 북구 전 지역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한다. 그만큼 북구주민은 월성원정의 직접 이해당사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형식적인 행정구역의 관점을 벗어나 실제적인 영향지역으로, 국제기준이자 법적 기준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를 원자력발전소 주민의 공식범위로 정하고, 주민의견수렴의 과정에서 북구주민과 북구청, 북구의회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자칫 정부도 판단하지 못하는 것을 주민에게 떠넘겨 주민간의 갈등만을 불러 일으키는 오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둘째, 울산북구의원 일동은 북구주민의 안전을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최종 처분방안 없는 상태에서의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에 반대할 것을 결의한다.

현재 정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중간처분장과 최종처분장 공론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나, 최종처분장 대책 없이 월성과 영광 등 각 원자력발전소 부지별 최인접 지역주민 의견을 물어 건식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 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포화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방편으로 '건식 임시저장시설'을 늘려 원자력발전소는 계속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역과 인근지역은 원자력발전소 사고위험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보관 증가로 2중의

위험에 처한다. 그러므로 북구의회의원 일동은 정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장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별로 임시저장시설을 추가로 건설하려는 시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은 지반과 지질 등 안전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안전성이 확실히 담보되지 못하다면 시급히 월성원자력발전소 2~4호기의 조속한 폐쇄 로드맵을 짜야 한다. 정부는 국내 원자력발전소 전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이를 어떻게 최종 처분할 것인지 대책을 먼저 제시하라. 또한 현재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보관중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은 사실상 '중간처분장'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허술한 '원자력발전소 관계시설'로 규정하지 말고,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라. 북구의회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방안이 북구주민과 울산시민의 안전을 넘어 전 국민의 안전과도 직접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며, 안전한 울산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판문점 선언 국회비준동의 촉구 결의안

○ 본회의 의결일 : 제179회 제2차 정례회
(2018. 12. 14.)
○ 결의안 발의자 : 임수필 의원



남과 북은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전쟁 위기가 최고조로 치달았던 1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극적인 변화입니다.

〈4.27 판문점선언〉은 실로 70여년 만에 만들어진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회이자, 민족 통일과 번영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또한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까지 탄생시킨 화해와 협력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선언 등 수차례의 남북간 합의들이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숱한 우여곡절을 겪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 비준동의를 통해 판문점 선언이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여 남북관계가 정치적 환경변화에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에 대한 찬성의견이 74.3%가 넘는 것에서 보듯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열망도 대단히 높습니다.

이에 울산 북구의회는 20만 북구 주민의 뜻을 모아 대한민국 국회가 판문점 비준 동의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우리의 결의를 밝힙니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가 판문점 선언을 조속히 비준 동의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판문점 선언을 적극 지지하며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울산 북구청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북구
의회도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을 결의한다.

고헌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개정 촉구 결의안

○ 본회의 의결일 : 제180회 임시회
(2019. 2. 28.)
○ 결의안 발의자 : 정외경 의원



올해는 일제강점기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투쟁을 했던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이다.

그 고난의 시대에 투쟁했던 많은 독립 운동가들이 있지만 그중에 고헌 박상진 의사와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조명해 보고자 한다. 천안시에 유관순 열사가 있다면, 우리 울산 북구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독립에 투신한 고헌 박상진 의사가 있다.

박상진 의사는 대한민국 최초의 법조인이었으나 일제를 위해 독립운동가를 재판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저함 없이 직을 그만두고 만주로 떠나 망명활동가들을 규합하고 광복회를 조직하여 초대총사령으로 자신의 전재산을 바쳐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돼 사형선고를 받고 1921년 38세의 젊은 나이로 대구형무소에서 처형된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의 불씨를 지핀 순국선열들의 선구자였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가니, 청산이 비웃고 녹수도 빈정거리는구나.' 이것은 "광복의 아버지" 박상진 의사가 죽기 전에 남긴 피가 끓고 애타는 절명시다.

그러나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박상진이 누구인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부끄럽게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천안 출신인 유관순 열사와 울산 북구 출신인 박상진 의사는 서훈 등급이 동일한 3등급이다. 천안시에서는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이 3등급인 것에 대하여 서훈등급 상향을 갈망하고 촉구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전국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후손들의 무지로 인하여 잘못 책정된 서훈등급을 세간의 웃음거리로 남겨 둘 수 없다.

이젠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친 박상진 의사에게 걸 맞는 옷을 입혀 드려야 한다. 1964년에 제정된 「상훈법」은 정해진 서훈등급을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서훈 대상자의 공적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하도록 「상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되어 있는 상태이다.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되어 유관순 열사와 박상진 의사의 상훈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숭고한 정신들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잘못된 역사적 오류를 바로 잡는 것이 후손들이 해야 할 일임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고헌 박상진 의사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그에 상응하는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고헌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의 상향을 촉구한다.

하나, 고헌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의 상향을 위하여 「상훈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하나, 대한독립의 태동인 고헌 박상진 의사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재조명하여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우리 모두 노력한다.

부산~울산 광역전철 송정역(가칭) 연장 운행 촉구 결의안

○ 본회의 의결일 : 제180회 임시회
(2019. 2. 28.)
○ 결의안 발의자 : 이주언 의원



우리 북구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되어 울산 송정역을 중심으로 울산 동부권의 새로운 성장거점을 마련하여 지역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20년 준공예정인 중앙선 복선전철을 연계한 울산 송정역에 ITX노선 신설 건의를 하여, 16년 2월, 울산시 2040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영되었고, 16년 8월,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를 하여 ITX노선을 운영하기로 협의되었다.

동해남부선 철도에 송정역을 국가기간 철도망과 광역철도를 연계하여 철도이용자들의 이동권 서비스를 극대화하고,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송정역일원에 역세권을 개발하여 울산 동부권의 신 성장 거점도시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2020년 개통예정인 청량리에서 부산 부전역까지 운행되는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과 연계되어야 하는 송정역의 광역철도 운행의 필요성은 다시 제론할 여지조차 없다.

부산~울산 복선전철 공사가 내년 초 완공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부산~울산 광역전철이 도입 될 예정이다. 그러나 부산 부전역에서 울산 태화강역까지만 운행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 북구의회는 송정역까지 연장 운행의 필요성은

첫째, 철도통계연보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호계역 1일 실제이용객은 2,000명이 넘었으며, 송정역에서 직선거리 10㎞내(중·남·동·북구)에 약 45만명이

거주하고 있고, 또한 현재 한창 개발 중인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로 10만 여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철도이용객들의 수요를 감안할 때 반드시, 송정역까지 광역철도가 연장 운행되어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해소되어야 합니다.

둘째, 송정역은 오토밸리로, 옥동~농소간 도로, 국도7호선, 외곽순환도로 등과 연계되어 사통팔달의 교통체계가 구축된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인근에 구축된 교통인프라와 연계된다면 시너지효과는 극대화 될 것입니다.

셋째,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계획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대규모 예산 수반 없이 철도운영시스템 변경만으로 가능한 사항이므로 지역주민 철도이용 편의성과 수혜권역 확대 등을 감안하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송정역까지 광역전철을 연장 운행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울산 북구지역의 하나 뿐인 역사로서 부산~울산 광역전철을 송정역까지 연장 운행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으로 태화강역에서 송정역까지 광역전철 노선 연장 운행 및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 청문회 실시를 위한 협약 체결 촉구에 대한 결의안

○ 본회의 의결일 : 제181회 임시회
(2019. 4. 24.)
○ 결의안 발의자 : 임수필 의원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직영 또는 위탁하고 있는 시설 및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우리 구의 주요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사업을 맡아서 하고자 합니다. 수십 억의 예산과 180여명의 직원을 채용하게 될 시설관리공단은 주민 삶의 질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바 공단 이사장을 공모, 임명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직원 채용 및 인사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자리이지만 최근 강원랜드 부정채용사건을 시작으로 각 공기업의 채용비리 사건이 불거졌으며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은 전직 군수를 비롯한 고위공무원들이 개입된 채용비리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근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참여 감시의 눈이 높아져 관리자의 경영 전문성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 보다도 도덕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인사 검증이 필요합니다.

둘째, 공모를 통해 새로 임명하게 될 공단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게 됩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기준은 모든 항목이 업무평가와 과거 실적, 경영 경험 등에 평가를 하겠지만 다방면의 평가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심사 기능으로서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합니다.

셋째, 현행법상 지방공기업 임원 임면에 관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긴 하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집행부와 의회 간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단 이사장의 임면에 의회 또한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이며,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주민의 대표자들이 모인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인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 공단 이사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 본회의 의결일 : 제183회 임시회
(2019. 8. 26.)
○ 결의안 발의자 : 임채오 의원 외 7명



일본 아베 정부는 지난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8월 2일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정당한 이유도 없이 한국을 제외하는 경제 제재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들에 내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고 있다.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아베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또한, 그릇된 역사 인식에서 출발한 일본 정부의 위선적인 수출규제는 한일 양국의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며,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분업구조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차별적이고 위선적인 규제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경고와 국제사회의 우려는 외면한 채, 여전히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8월 5일 열린 울산지역 5개 구군 의장단 협의회에서 일본 자매·우호 도시의 교류 전면 중단 및 시민들의 노노재팬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도 22만여 북구 구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결의한다.

하나, 강제징용 피해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에 대하여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 역시 과거사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아베 정부가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의 우호 관계를 훼손하고 국제 질서에 반하는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 및 백색 국가 지정 취소 조치 등의 부당한 행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역사적 과오를 덮어 대한민국과 일본의 우호 관계를 훼손하고 우리 경제를 농단하려는 일본 아베 정부의 오만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정부의 냉정하고 강경한 맞대응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22만 북구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노재팬운동에 우리 북구의회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할 것을 결의한다.

북구 관내 초·중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신설학교 승인조건 변경 촉구 결의안

○ 본회의 의결일 : 제183회 임시회
(2019. 9. 9.)
○ 결의안 발의자 : 이주언 의원 외 7명



우리 북구의회는 9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관내 3개 중·고등학교 신설안과 관련하여, 기존 학교를 폐교하는 조건 대신 폐교 대상 학교 교체 또는 학교 통폐합 기한을 연장하는 승인 조건 변경건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함을 22만 구민들과 학부모들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강력하게 촉구한다.

북구는 글로벌 기업인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지역산업의 발 빠른 성장과 아울러 울산광역시의 새로운 성장거점 중추도시로 육성되는 지역이다. 이러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 2020년 3월, 제2호계중, 강동고, 송정중학교 3개 학교가 개교를 앞두고 있다.

개교예정 신설 학교주변에서는 7개 지구 대단위 택지개발이 한창이고, 울산광역시에서 북구만 유일하게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2009년 16만 8천명에 비해 2019년 7월 인구가 21만 5천명에 이르고 2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3년간 3만 1천명이 증가하였다.

개교 예정학교 주변에는 호계매곡지구(제2 호계중) 11,125세대, 강동지구(강동고) 6,166세대, 송정지구(송정중) 7,821세대가 한창 입주 중에 있어 인구의 증가는 더 빨라질 것이며, 교육 수요와 교육환경 등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 또한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 신설로 인해 폐지가 지정된 학교 주변 역시 공동주택과 인접하고 주택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주변 여건에도 불구하고 학교 폐지가 이뤄진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은 교육부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정으로 교육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주민과 학부모들의 반발과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이며 지역사회의 동의 없는 강제적인 추진은 사실상 불가하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참교육을 실천하는 교육부가 백년을 바라보고 계획을 세워 나가는 교육의 참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학교신설 조건부 이행을 위해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기존 학교를 폐지하는 것 또한 우리 22만 구민들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북구 주민 22만명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한마음 한 뜻으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울산 북구의회의 교육부에 대한 결의〉

하나, 울산 북구의 신설학교 승인 조건을 변경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하나, 현실성이 결여된 학교 신설과 통폐합 연계 정책에 대해 전향적으로 재검토 해야 한다.

하나, 학교 신설에 대한 불합리한 법규를 개정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정책 추진을 요청한다.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및 급간식비 현실화 촉구 결의안

○ 본회의 의결일 : 제185회 제2차 정례회
(2019. 12. 16.)
○ 결의안 발의자 : 이진복 의원



현재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과 높아지는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되면서 각종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출생부터 노후까지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되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 정책이 아닌 보육환경 개선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보육부문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현재 정부 방침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환영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의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이 표준보육비용 및 급간식비 기준은 수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특히,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급식 1회, 간식 2회, 기준이 1,745원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11년째 동결되어 있는 상태이다.

다행히 2020년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통하여 일정 수준 오를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낮은 정부 기준액으로 인하여 지자체별 지원액은 제각각이다.

울산 울주군의 경우, 2020년 당초예산에 유아1인당 1만원지원(하루 500원), 울산남구는 유아1인당 하루 100원 지원, 울산중구는 어린이집 개소당 5만원(하루 40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의 급간식비가 하루 6,391원으로 어느 지자체, 공공기관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급간식비의 차별을 키우고 있다.

표준보육비용의 산정에 대한 문제점 해결, 수년째 동결되어 있는 급간식비 기준의 현실화는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 조성을 목표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북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표준보육비용과 급간식비 기준을 현실화하고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를 강화하라.

하나, 울산시는 울산의 구군별 급간식비의 차별적 지원을 해소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울산북구는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보육환경 조성 및 아동의 건강한 식생활 개선을 위해 노력하라.

건축물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규제 완화 촉구 결의안

○ 본회의 의결일 : 제188회 제1차 정례회
(2020. 6. 24.)
○ 결의안 발의자 : 이진복 의원



현재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건축법」 제19조제7항에서는 동법 제48조(구조내력 등)를 준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신축 및 증축에 준하는 구조안전확인 대상으로 규정하여 용도변경 신청 시 구조안전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수선하지 않고 오히려 건축물 용도별 평균하중이 줄어드는 용도변경까지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토록하고 있다.

또한, 최근 포항 일원에서 발생한 지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과 구조안전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노후 건축물이 즐비한 상황으로 시공업자의 안전불감증 등을 고려하면 건축물의 구조안전기준 강화가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그러나 기존에는 건축행위나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구조안전확인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지금은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용도변경의 경우에도 구조안전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과도한 법 적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건축물의 단순 용도변경을 통해 자영업을 영위하려는 소상인들에게 큰 규제가 되는 것이다.
또한 부산의 감천문화마을, 경주의 황리단길과 같은 골목재생 사업과 정부가 역점을 두는 도시재생 사업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소상인들의 자영업이 활성화 되고 민생안정을 불러 올 수 있도록 건축물의 단순

용도변경에 대하여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규제를 완화한다면 이로 인한 오래된 건축물의 공실 증가를 막고 건축물 용도변경 수요 증가로 침체된 지역의 경기를 회복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대한건축협회의 질의회신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라 달라지는 등분포활하중이 5%미만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구조안전확인 없이 허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가 있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는 건축물의 경미한 용도변경에 대하여 구조확인서 제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건축물의 단순 용도변경에 대하여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소상인들의 자영업을 활성화하고, 건축물 용도변경 수요 증가로 침체된 골목상권 및 지역의 경기를 회복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하나,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별 기본등분포활하중이 5%미만의 경미한 용도변경과 구조 변경이 없는 단층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대하여는 구조안전확인 절차 없이 건축허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법 개정을 촉구한다.

송정역(가칭) 광역전철 연장 운행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

○ 본회의 의결일 : 제188회 제1차 정례회
(2020. 6. 24.)
○ 결의안 발의자 : 이주언 의원 외 7명



우리 북구의회는 2019년 2월 제180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부산~울산 광역전철 송정역 연장운행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바가 있다. 이용 인구가 많고 향후 북구 유일의 역사가 되는 송정역까지 연장 운행을 하는 것은 주민들의 교통 및 생활 편의를 증진하여 주는 것이며, 나아가 동해남부지역을 광역 벨트로 묶어 주는 중대한 사업의 일환일 것이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부산~울산 구간은 사업 막바지에 있으며, 울산~신경주~포항 구간은 총 8공구, 76.5km로서 일부 완료되거나 진행 중에 있다. 향후 시속250km의 준고속 신형열차(EMU250)와 전철 개념의 전동차 투입을 통하여 부산·울산·경주·포항, 즉 부산과 해오름동맹은 1시간 생활권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동해남부지역의 무궁한 관광자원을 관광벨트로 묶을 수 있으며, 생활과 경제의 공동체 형성 및 권역 성장의 발전의 기틀이 되며, 더 나아가 동해남부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울산시가 실시한 수요 예측 조사 결과 전체 수요 중 울산 태화강역과 송정역 구간이 78%를 차지하며, 특히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는 송정역 주변은 광역전철의 수요가 높고 향후 동해남부지역 관광벨트 및 생활권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동해남부선 복선철로를 따라 울산과 부산을 오가는 광역전철이 내년 하반기 개통 예정에 있으나 종착역이 태화강역으로 송정역 공사 마무리 단계에 광역

전철 연장이 결정되지 않고 있다. 송정역 반경 10킬로미터 안의 인구가 47만명을 넘어섰고 현재 송정·매곡·율동·강동지구 등 대단위 아파트 개발로 10만여명 인구가 증가 일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전철 연장운행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지만 현재 여러 이유로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72,574명의 집단민원이 제기 되어 있으며, 광역전철역 건설비(108억), 추가 운행에 필요한 차량 2대구입비(104억), 연간 추가운영비(17.5억)에 대하여 여러 관련기관이 재정 부담에 대한 많은 어려움들을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구 주민, 더 나아가 동해남부권 주민들의 숙원 사업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송정역까지 광역전철을 연장 운행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건의한다.

하나, 부산~울산~경주~포항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동해남부권의 생활·경제·관광을 하나의 벨트로 묶어주는 중요한 사업이다.

하나, 이를 위하여 부산~울산 광역전철 개통과 맞추어 송정역 연장운행이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서는 제반사항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부산~울산 개통에 맞추어 반드시 광역전철이 송정역까지 연장 운행 되어야 함을 울산 북구의회에서는 강력하게 촉구한다.

제2절 구정질문, 서면질문

1. 구정질문 및 답변요지



○ 질문의원 : 임수필 의원
○ 질문일시 : 제178회 제1차 정례회(2018. 10. 19.)
○ 질문요지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첫째, 우리 북구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답변

우리 구는 2017년 7월 20일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발표 이후, 300명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직무조사를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 3차례 실시하였고, 같은 해 12월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울산광역시 북구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전환심의위원회는 2차례 심의를 개최하여, 2018년 2월, 4개 직무, 7명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였고, 결정인원에 대해 정규직 채용절차 등을 거쳐,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전환인력에 대한 부서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기관 및 근로자 대표,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의 협의와 결정으로,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용역 근로자에 대한 실태파악 및 전환 협의기구의 협의자료 작성을 위한 각 부서별 용역 근로자 실태조사를 1차적으로 완료하였고, 현재는 마무리 단계로 부서별 실무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 용역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은 “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에 있어 노·사 및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 방식, 시기 등을 결정하되, 이번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고려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 당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기구가 구성·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듯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향후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용역 근로자의 실태를 파악 등 신중히 사전 준비 중임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구의 전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답변

가이드라인은 금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대규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전권을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일임함과 동시에, 정규직 전환 예외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는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사회 양극화 해소와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의지표명과 직업기회 형평성 문제, 공공부문의 재정부담, 인건비 증가에 따른 대주민 정책사업비 감소, 공공부문 유연성 저하 등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제기되는 사회적 우려가, 동시에 고민되어진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7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어렵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임수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의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규모가 일부 전환규모가 큰 지자체와 비교할 경우,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기관별 특성 및 다양한 사정상 지자체 상호간의 획일적인 비교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제기되는 여러 사회적 우려들을 고민한 「울산광역시 북구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권한있는 결정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앞전 구청장님과는 다른 이동권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기간제, 파견, 용역, 민간위탁 부문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대책과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답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7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였고, 용역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위해,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따라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협의에 있어, 노·사 당사자 및 이해 관계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고 협의기구가 심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의 정당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수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사례도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 구 전환 협의기구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매년 자치단체 공무직지부 북구지회와 교섭을 통해서 임금 및 복지부분의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항에 대하여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구 무기 계약직의 처우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재정여건, 직무난이도, 형평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무기 계약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속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수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의원 : 임수필 의원
○ 질문일시 : 제182회 제1차 정례회(2019. 6. 10.)
○ 질문요지 : 『윤종오 전)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면제 청원의 건』수용불가 사유, 월성 핵 폐기물 임시저장소 관련하여



첫째, 수용불가 사유를 보면 법 조항의 나열만 되어 있고 이 법 조항들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설 없이 '동 채권은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 지어 졌습니다. 이 법 조항들의 해석이 어떻게 수용불가 결정으로 귀결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답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은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에 대한 관리의 책임 또한 구청장에게 있음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회신내용을 보면 '지방의회의 청원 채택 의견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의결내용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한 바 2019년 1월 9일 의회에 보고한 청원 처리결과는 나열한 법조항 및 대법원 판결내용과 그 외 관련되는 제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환경을 통일적으로 해석하여 결정한 사항입니다.

본 채권을 면제하는 것은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도 아닙니다. 또한 관련되는 제반 법령에 따른 행정환경과 대법원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북구청장은 의회의 의결에 대해 수용을 하거나, 문제가 있을 시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청장은 '수용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용불가' 결정은 어떤 법 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답변

본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회신 내용에는 '지방의회의 청원 채택 의견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의결내용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첫 번째 답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련되는 제반 법령 및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른 행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면담자리에서는 법리해석토론회 및 자문내용 공개 약속을 하고, 돌아서면 약속을 어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현재 진행되는 천막농성을 해결하기 위한 북구청장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답변

저는 그동안 구상금 면제에 대하여 을들의 연대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서로 의논하고 토론해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을들의 연대의 요구에 고문변호사는 구청의 법령해석을 도와주는 역할이므로 제가 강제할 수 없음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고문변호사들을 설득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고문변호사를 찾아가 설득해 보았지만 '청원 수용불가에 대한 결정에 불복한다면 법적절차인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으로 법리해석토론회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공개에 대한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에 대하여 공개하겠다고 하였으나 자문결과가 공개되면 고문변호사들이 자문결과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향후 진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없고, 고문변호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등이 예상되어 개별적 자문결과 내용의 공개는 맞지 안다고 판단되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고 그 의견을 받는 것은 구청의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자료에 불가한 사항으로 그 자체로써 북구청의 의사결정이 될 수 없는 바 북구청의 의사결정은 모든 제반사항들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을들의 연대와의 간담회를 가지면서 저 다름대로 최선을 다해 의논해 왔습니다. 현재 윤종오 전 구청장은 중소상인을 살리기 위

한 소신행정을 지키고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촉구한다며 주민들이 드나드는 구청 입구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금 면제를 위한 집회와 시위, 천막농성 등의 광경을 지켜보던 주민들이 저마다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니 윤종오 전 구청장은 주민들의 불편을 더 이상 간과하지 말고 즉시 천막농성장을 자진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전 구청장에게 주민은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구에는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합니다. 행정이 어려운 한쪽 주민들을 위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또 다른 주민에게 손해를 입힌다면 어느 누가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구상금 면제 청원에 대한 구청장의 결정이 종료되었음에도 압류재산에 대한 경매 취소, 법리토론회 개최와 채권면제 의안 제출 등을 요구하면서 구청의 결정을 불신하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더 이상 구상금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성금모금 등 충분히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십시오. 구청에서도 성금모금 등 대안이 모색되면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민의 세금 5억여원이 손해배상금으로 충당되어 예산이 낭비된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관련하여 북구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구청장으로서 북구 주민들의 입장을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답변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출범하기 전, 재검토 준비단이 운영될 때에 우리 구에서는 재검토 준비단 회의에 참석하여 북구가 의견수렴 범위에 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에 있어 월성원전 이해당사자인 우리 구가 배제 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구 의견수렴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재검토위원회의 동향을 주시하여 재검토위원회의 지역실행기구

구성에 있어 우리 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재검토준비단, 원전소재 지자체인 경주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말부터 한국수력원자력을 수차례 방문하여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금 및 지원사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주민들이 원자력 발전소의 지원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수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의원 : 백현조 의원
○ 질문일시 : 제163회 임시회(2020. 6. 10.)
○ 질문요지 :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면제 청원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첫째, 윤종오 전 북구청장 구상금 등 면제 청원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다 판단되는데 청원을 통해 면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와 면제한다면 어떤 방법에 의하여 면제가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답변

2018년 12월 6일 행정안전부에서 회신한 지방자치단체 채권 면제와 관련한 법령해석에 따르면, "구상금 청구 소송의 대법원 판결은 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을 확정할 뿐이고,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구상금 채권이라고 하여 다른 금전 채권과 법적 성격이 다르거나 채무면제를 위한 법률상 요건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라고 회신함에 따라 본 구상금 채권도 다른 채권과 같은 법률상 요건으로 청원을 통해 면제가능하다는 점을 회신하였고 그 방법 또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을 면제하여 달라는 주민의 청원을 의결로 채택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와 같은 의회의 의견에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청원을 이행, 즉 채권을 면제하려고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별도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채권을 면제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해석하였음을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청원 처리결과를 종전과 다른 입장으로 표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답변

본 청원 처리결과를 종전과 다른 입장으로 표명한 이유는 2020년 5월 20일 제출한 "구상금 및 소송비용 부담 일부면제 동의안"을 통해 밝힌 바,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21일 북구의회는 본 채권에 대한 면제 청원을 채택•이송하였고, 이송된 청원에 대해 관계법령과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할 때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9년 1월 9일 수용불가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0년 5월 1일 북구의회는 본 채권에 대한 일부면제 청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의결로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의회의 청원 채택이 구청장을 기속하지는 않지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본 채권과 개별사례는 다르지만 '1999년 12월 안양시 삼성7교 부실시공에 따라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주민들의 소송비용에 대해 안양시 의회에서 2008년 10월 16일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 면제에 관한 청원'을 의결•이송하고 안양시에서 '소송비용 부담면제 동의안'을 제출하여 2008년 12월 22일 안양시 의회에서 의결로 면제하였으며, 이어서 2011년 9월 16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서도 소송비용을 면제한 사례가 있는 점, 2018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도 경제정의를 바라는 국민과 중소자영업자의 간절한 뜻을 헤아려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를 공문으로 요청한 점,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乙'들의 연대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대책위원회를 대표로한 27개 각종 단체들의 구상금 면제 결정에 대한 요구가 2018년 8월 13일 기자회견, 2018년 12월 17일 임수필의원의 단식농성, 2019년 1월 23일 결의대회, 2019년 6월 3일 윤종오 전 구청장의 북구청사 입구 천막농성 등을 통해 2년에 걸쳐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2018년 8월 14일부터 여섯 번의 면담을 통해 2019년 6월 24일 상호합의에 이르게 되어 채무자는 모금을 통해 구상금 납부의사를 밝히게 된 점,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구상금 채권과 소송비용에 대하여 2018년 12월 21일 주민 11,256명이 서명하였고 이어 2020년 5월 1일 주민 190명이 서명하여 북구의회에 청원한 점, 2019년 6월 19일 김성보 북구의회 초대의장, 박춘환 2대의장, 김진영, 하인규 3대 의장 등 역대 의장들이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이 아닌 통합과 상생을 위해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를 밝힌 점, 대형마트 진입으로 인한 지역상권 붕괴와 중소상인 몰락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반영되기도 하는 등 진지한 법 정책적 고려로 이어졌다는 점, 2019년 6월 24일 아파트 2차 경매기일 기준 채권회수 예상액 대비 최종 채권 회수액은 1천8백9만4천원정도 적은 상황이지만

윤종오 전 북구청장이 구 재정손실 최소화를 위해 노력 한 점과 그 간 구상금 채권의 면제 요구를 둘러싼 논쟁으로 지역사회 갈등과 상처의 흔적을 남겼으므로 더 이상의 지역사회 갈등상황은 북구발전에 저해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구 주민들의 화합을 토대로 “활기찬 행복도시 사람중심 희망북구”를 조성하는데 힘을 모으기 위하여 북구의회의 청원 채택 의견을 존중하여 “구상금 및 소송비용 부담 일부면제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액 모금이 되지 않고 일부만 모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청원을 ‘수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답변

먼저, 2019년 6월 24일 윤종오 전 구청장이 제출한 이행연기특약신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구상금에 대한 납부기한을 2019년 12월 30일까지 연기한 사항으로 추가적인 기한연기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한 사항이며 2차 청원을 수용한 이유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음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네 번째, 1인 결재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와 구상금 및 소송비용 면제로 인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적인 법적 책임을 현 구청장님이 전적으로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답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상금 및 소송비용 부담 일부면제 동의안 제출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북구의회의 청원 채택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건축허가 반려 건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본 채권의 면제는 북구의회의 청원 채택에 따라 그 수용여부에 대한 구청장의 재량행위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적법한 행정행위이며 별도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된다면 구청장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와 이번 사례를 통해 이와 유사한 청원들이 남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답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따라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두고,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집행기관인 자치구에 구청장을 두어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된다면 먼저, 주민의 대의기관인 북구의회에서 청원의 채택여부에 대하여 심도있는 판단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의회에서 청원이 채택되어 집행부로 이송된다면 그에 대한 판단은 개별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구상금 잔여분 결손을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답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년 5월 20일 현재 본 채권 회수액은 1억4천5백만원으로 3억5천4백만원에 대한 '구상금 및 소송비용 부담 일부면제 동의안'을 제출한 바 북구의회의 의결에 따라 본 채권의 면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임을 다시한 번 말씀드리며 북구의회에서는 그간의 모든 사항을 고려한 후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의 지역사회 갈등상황은 북구발전에 도움이 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북구 주민들의 화합을 토대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백현조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서면질문 및 답변요지



○ 질문의원 : 박상복 의원
○ 질문일시 : 제177회 임시회(2018. 9. 10.)
○ 질문요지 : 동대산 풍력발전 재추진건 관련

첫째, 북구청은 최근의 언론보도 관련, 동대산 풍력발전을 재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 구청장 답변

현재 동대산 풍력발전사업 관련하여 해당사업자로부터 우리구에 어떠한 신청이나 협의한 바도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 일부 지역언론에 보도된 동대산 풍력발전단지 조성 재추진에 대한 사항은 북구청의 의견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정부나 울산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동대산 및 강동인근 풍력발전을 추진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예정입니까?

▶ 구청장 답변

동대산풍력발전의 경우 민간에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기존의 불허가처분에 대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재추진에 대한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강동인근 풍력발전의 경우 동남해안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바, 현재 SK건설(주)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2017. 10. 전기사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전기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발전사업의 경우 대체로 정부나 시 등 관주도로 직접 추진하지 않고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법적절차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구 소관인·허가시 관련법 적법성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세 번째, 임기내 재생에너지 관련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인지 및 울산시나 정부와 협의 중인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 **구청장 답변**

우리구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단독주택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공공청사 여유공간 등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질문의원 : 박상복 의원
○ 질문일시 : 비회기(2018. 11. 7.)
○ 질문요지 : 강동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관련

첫째, 북구청은 여려 차례 '18년 말까지 준공 승인을 약속한 만큼 약속 이행이 가능 한지?

▶ 구청장 답변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조합이 주도하여 '07년 1월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간사업이며, '18년 말 준공을 목표로 조합측과 매월 2회 공정회의를 개최중이며 지속적인 현장확인 및 독려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공을 위해서는 우리구의 행정적인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합 및 시행사측의 사업준공을 완료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확정측량 등에 따른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의 행정절차 이행과 폐기물처리비용, 하수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 그리고 예비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보완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이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위의 사항이 이행되면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에서는 준공검사 신청을 하고 공공시설물 관련부서의 준공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도시개발사업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현재 시점 예비준공검사 보완 사항은 무엇이며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 구청장 답변

'18년 3월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예비준공검사를 시행한 결과 가로등, 도로, 가로수, 공원 등 8개부서 90건에 대하여 보완 및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현재 보완사항 이행을 위하여 시공중이며 10월말 공정보고시 침사지 및 우수박스, 중앙공원, 완충녹지 등의 조경 보완공사가 진행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는 11월 중 중앙분리대, 미끄럼방지 포장 등의 추가공사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준공 전까지 주민들의 민원은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 구청장 답변

가로등 점등, 각종 생활 쓰레기 및 청소 문제, 불법 주정차, 노점상 점유 등 각종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설물 이관이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처리 한계는 있으나,

우리구 담당부서 및 도시개발조합 측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민원사항를 적극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며, 무엇보다 주민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사업 준공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 질문의원 : 박상복 의원
○ 질문일시 : 비회기(2019. 2. 1.)
○ 질문요지 : 병충해 방재작업시 안전대책 수립방안

첫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경위, 사업 현황 및 5년간 안전사고 현황은?

▶ 구청장 답변

지난 1월 19일 11시경 매곡동 산23번지에서 (주)○ 소속의 작업자 2명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직경 50cm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사고자(52세, 남)가 기계톱으로 벌목 도중 벌목한 나뭇가지가 옆에 있는 다른 나무의 간섭을 받아 경사지 쪽으로 넘어지지 않고, 벌목 나무 하단부가 땅에 떨어지고 경사지를 타고 미끄러지면서 사고자 방향으로 넘어와 사고자의 등을 가격하게 되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119로 소방서에 신고하여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급경사 및 험준지인 관계로 인력 후송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구급소방 헬기를 요청하여 울산대학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며, 부검결과 사망원인은 7번 척추 골절에 의한 내부 과다출혈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지구별 계약업체 및 작업인원 현황입니다. 총 7구역 7개 업체로서 일 평균 작업 인원은 28 ~ 51명입니다.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방제작업 안전사고 현황으로 2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안전사고(손가락, 발가락, 무릎 골절 등)로 2016년 2건, 2017년 1건, 2018년 1건이며, 2019년은 이번 사고로 사망 1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두 번째, 안전교육 및 매뉴얼(안전수칙, 개인보호 장비 등) 사용 등 안전 세부지침 활용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 구청장 답변

우리구 7개 사업지구별 감리사는 최소 주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공정을 비롯한 안전장구 착용 여부 및 전반적인 안전관리 점검을 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 제작한 「산림사업 안전관리 매뉴얼」을 이용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매주 월요일 저희 구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산림청, 임업훈련원 등과 연계한 안전교육 실시 여부와 추진계획 및 향후 재발방지 대책은?

▶ 구청장 답변

구 소속 산림사업 담당직원 및 기간제 근로자는 매년 임업훈련원 등에서 직무교육과 병행하여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시공사 소속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기교육 월 2시간과 안전관리자로부터 매일 작업전 안전교육 받은 후 시공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업훈련원 등 안전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에 시공사 작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구에서 지급되는 산업안전관리비 항목 중 안전보건전문교육 기관에 의무적으로 작업자 안전교육을 위탁 실시 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매주 한차례 감리사 보고서 제출을 2회로 변경하여 더욱 내실 있는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우리구 자체적으로 「산림사업 안전관리 매뉴얼 수첩」을 제작·배포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질문의원 : 박상복 의원
○ 질문일시 : 비회기(2019. 2. 21.)
○ 질문요지 : 강동오토캠핑장 멸종위기식물 보호방안

첫째, 강동오토캠핑장의 사업축소 및 공사 시 침출수 영향 및 담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행사항은?

▶ 구청장 답변

캠핑장 조성범위 재검토와 캠핑장 조성 시 갯봄맞이꽃 서식지에 공급되는 담수에 미치는 영향성 검토는 낙동강유역환경청 협의 시 보완 요구한 사항으로, 수리·수문분야 전문가 자문을 요청하였으며 검토결과에 따라 조성범위와 보존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갯봄맞이꽃 서식지에 대한 보호방안 및 대책은?

▶ 구청장 답변

현재 서식지 주변에 펜스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낚시객이 갯바위로 진입할 수 있는 통행로가 없는 상태입니다.

캠핑장 조성 시 강동누리길 전망대에서 갯바위로 통행할 수 있는 계단을 설치하고 누리길과 연결되는 구간에 데크와 난간을 추가 설치하여 이용객의 동선을 제한하고자 하며, 캠핑장 조성 후 CCTV설치와 캠핑장 관리인을 통해 서식지 출입과 훼손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캠핑장 내 안내판 설치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서식지에 대한 홍보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서식지의 보호대책에 따라 강동오토캠핑장의 공사기간 지연 및 추가 예산 투입규모는?

▶ 구청장 답변

서식지 보호대책에 따라 별도로 공사에 투입되는 예산은 없으나, 낙동강환경유역청과의 협의기간이 상당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기연장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사재개 후 절대공기인 8개월 이내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실보고서를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기관관리 및 향후 환경영향평가 부실 검증 방안은?

▶ 구청장 답변

캠핑장 조성을 위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은 2018. 3월부터 7월까지 진행하여 2018. 9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완료하였으며, 갯봄맞이꽃 서식지가 사업지와 떨어져 있고 중간에 강동누리길이 조성되어 있으며, 현장조사 시점은 갯봄맞이꽃 개화시기 이전으로 서식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판이나 펜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억새군락지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지난해 개정되었으며 환경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전문위원회를 두고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 또는 부실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업체를 고발 등 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건 용역수행기관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사유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후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에 대한 문제는 일정정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구에서도 향후 관내 사업 추진 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질문의원 : 백현조 의원
○ 질문일시 : 비회기(2019. 3. 27.)
○ 질문요지 :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문제 관련

첫째,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명촌초, 진장중 이외의 학교용지가 용도 폐지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사업계획상 체비지로서 공공용지로 조성된 학교부지가 타인에게 넘어간 경위는?

▶ 구청장 답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진장초교 폐지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 '12. 10. 19 : 지구단위계획 변경(진장초 폐지)입안 제안(○○토건)
- '12. 10. 25 : 지구단위계획 변경(진장초 폐지)입안제안 반려(북구청)
- '12. 11. 22 : 반려 건에 대한 소(2012구합 2799호)제기(○○토건)
- '13. 5. 30 : 원고(○○토건) 승소 판결

※ 원고에게 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입안제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13. 11. 22 : "입안제안서" 시 도시개발과로 진달
- '15. 10. 29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진장초교 폐지)

위의 과정을 거쳐 진장초교는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교부지가 타인에게 넘어간 경위는 사실관계 확인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은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는데, 평창리비에르아파트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체비지 대장상 명의변경을 해주지 않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손해를 입고 있다. 그렇다면 체비지의 소유권 변동에 따른 체비지 대장상 명의 변경의 구체적인 절차와 그 관계 규정은?

▶ 구청장 답변

보류지등의 처분 및 예산회계에 관한 세칙에 따라 체비지는 매입신청, 가격결정,

매매결정, 대금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 조합장이 체비지 대장 명의변경 절차 이행하고, 조합 정관 제47조(소유권 이동신고)에 따라 소유권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조합장에 신고해야 하며 그 내용에 따라 조합장이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평창리비에르아파트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명의변경을 해주지 않는 등 명백한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조합에 대해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는 북구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 구청장 답변

2017. 6. 30. 체비지 대장 명의 변경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제기 하였으나 판결로 확정된 사안임과 동시에 판결 이행에 관한 사인간의 다툼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 결과 "각하"처리 되었습니다.

간담회, 체비지대장 명의 변경 촉구(7차) 등 여러 가지 경로로 행정지도 하였으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분양자와 조합간의 명의 변경 관련 판결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습니다만 상기 국민권익위원회 "각하"와 같이 사인간의 다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사업계획상 앞으로 환지처분 등으로 사업부지내 토지들이 대지로의 등기가 가능한지? 그 판단의 근거는?

▶ 구청장 답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제65조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후 환지처분에 따라 등기이전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파산으로 사업인가 당시의 당초 사업계획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여겨지는데 구청의 의견은 무엇이고,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 구청장 답변

울산광역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적법하게 사업시행 및 조합설립 인가 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06년 시공사 부도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인가권자인 울산광역시와 협조하여 대책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 질문의원 : 박상복 의원
○ 질문일시 : 제177회 임시회(2019. 4. 29.)
○ 질문요지 : 북구체육회 사무국장 선임절차 및 조직 안정화 방안

첫째, 북구청 체육회 규약집에 따르면 사무국장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관리의 문제로 인해 통합체육회 출범이후 '19년 3월 사무국장이 사임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임이후 신임 사무국장 선임의 절차가 없어 주민의 체육활동 사항에 대한 업무 차질이 예상되는 바, 체육회 신임사무국장 선임절차(기간, 방법 등)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 구청장 답변

사무국장 임명절차는 「북구체육회 규약」제49조에 따라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하게 되어있으며, 임기는 임명 시부터 2020년 2월 총회까지입니다. 북구체육회에서는 적정인물을 발굴하여 결격사유 조회 후 이사회를 거쳐, 임명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체육회 사무국장의 업무전문성 포함 자격 기준은?

▶ 구청장 답변

사무국장은 업무의 전문성 등의 특별한 자격 기준이 없으나, 「북구체육회 규약」제29조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동규약 제49조에 따라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생활지도자의 근태문제로 촉발된 조직원간의 불화 사항을 개선 포함한 조직 활성화 및 안정화 방안?

▶ 구청장 답변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생활체육지도

자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북구체육회에서는 직원 및 지도자에 대한 업무 연찬으로 업무 전문성을 높여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며, 수시로 면담과 수업 현장을 점검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상호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네 번째, 최근 북구체육회 관리범위인 쇠부리체육센터의 직원간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 경위, 처리방안, 사후관리, 재발방지 대책은?

▶ 구청장 답변

사건경위

- 4.13.(토) : 쇠부리체육센터 사무실에서 A직원은 업무관련 대장 비치와 관련하여 B직원과 언쟁이 있었으며, 언쟁이 커져 C직원이 제지 하였으나, A직원과 B직원간 폭행 사건이 발생함.
- 4. 14.(일) : B직원은 갈비뼈 골절, 타박상 등으로 병원 입원
- 4. 16.(화) : A직원 사직서 제출
- 4. 22.(월) :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직 운영 철저 공문 발송

사후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 쇠부리체육센터에서는 매월 강사 간담회 및 직원 회의를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간담회(회의)를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간의 소통의 시간을 가질 것이며,
-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례를 교육하여 직원 윤리의식을 확립시켜 해당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사건 발생전 다양한 신호를 통해 조직원간 화합 문제 등의 문제점이 발생됨에도 인지를 못한 사유는?

▶ 구청장 답변

해당 사건은 업무의 연관성이 높지 않으며, 평소 직원간 갈등 없이 잘 지내는 사이로, 사건 당시 개인적 감정으로 인한 우발적인 사건으로 사전에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 질문의원 : 임채오 의원
○ 질문일시 : 비회기(2020. 9. 10.)
○ 질문요지 : 염포누리 주민휴게공간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첫째, 2019년도 우리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염포전망대 조성사업을 신청하였는데, 선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답변

202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5개 구·군 총 국비 30억) 우리 구는 총 3건(생활기반분야 1건, 문화환경분야 2건) 국비 23억을 신청하였습니다. 최종선정 결과 송정박상진호수공원 공영주차장조성사업(국비 10억) 양정누리길 조성사업(국비 1.6억)이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국비보조 사업은 국토교통부 심사를 통해 선정이 되며, 염포정상 경관개선 사업의 미선정 사유를 특정할 수 없으나, 같은 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생활기반 분야)에 우리 구 송정박상진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국비 10억)이 선정되었다는 점이 심사 시, 국비지원 지역배분 차원에서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다소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2020년도 염포누리 주민휴게공간 조성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 사업과 비교하여 개선 보완된 점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답변

202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5개 구·군 총 국비 30억) 우리 구는 총 3건(생활기반분야 1건, 문화환경분야 2건) 국비 23억을 신청하였습니다. 최종선정 결과 송정박상진호수공원 공영주차장조성사업(국비 10억) 양정누리길 조성사업(국비 1.6억)이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국비보조 사업은 국토교통부 심사를 통해 선정이 되며, 염포정상 경관개선

사업의 미선정 사유를 특정할 수 없으나, 같은 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생활기반 분야)에 우리 구 송정박상진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국비 10억)이 선정되었다는 점이 심사 시, 국비지원 지역배분 차원에서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다소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절 5분 자유발언

○ 발언의원 : 임수필 의원
○ 발언일시 : 제175회 임시회(2018. 7. 17.)
○ 발언요지 : 주민참여형 놀이터를 만듭시다.



사랑하는 20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6기 출범으로 노고가 많으실 이동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중당 임수필 의원입니다.

기존의 정형화된 놀이터를 벗어나 아이들에게 꿈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놀이터, 아동과 주민, 전문가와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참여형 놀이터'를 조성하자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울산 북구의 대부분의 놀이터는 정형화된 놀이터로 모든 놀이기구가 세팅되어 있고, 놀이터의 주인인 아동들의 의견이 반영된 놀이터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참여형 놀이터'는 놀이터를 이용할 아동과 주민들이 원하는 놀이터를 스스로 디자인 하며 놀이터 조성 설계에서 감리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참여형으로 조성된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의 경우 이미 3개가 개장되어 운영중이며, 올 가을이면 네 번째 놀이터가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에는 평일에는 200여명, 주말에는 5~600여명의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찾아와 2~5시간을 놀다간다고 합니다.

얼마전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놀이터를 참여형 놀이터로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만들고 싶은 놀이터를 디자인하게 하고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놀아보며 직접 감리하게 하는 등 전 과정에 학생들을 참여시켰다고 합니다. 전국의 지자체와 교육청이 앞 다투어 참여형 놀이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인구 천명당 출생아 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울산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는 젊은 도시입니다.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가보면 젊은 부모들과 영유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북구는 아이들을 데리고 놀 만한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 달라는 젊은 부모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해마다 기존의 놀이터를 3~4개 가량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지만, 주민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주민들의 관심도 떨어지고, 조성된 후에도 그렇게 주민호응도가 높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 북구에도 앞으로 조성되는 공원이나 놀이터를 주민참여형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적의 도서관 옆에 위치한 중산어린이공원의 경우 주민참여형으로 만들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한 만큼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상황들을 잠시 멈추고,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해 나갈 것인지 논의해야 합니다. 앞으로 주민참여형 사업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번에 추진중인 중산어린이 공원 사업을 통해 주민참여형 사업의 틀을 만들어 가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 봅시다. 어쩌면 초기에는 담당 공무원들이 힘들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귀찮고 짜증날 수 있지만 주민들을 믿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를 잘 해나가는 과정에서 주민참여형의 모델이 만들어 질 것이고 북구 주민들의 주인의식은 더욱 높아 질 것입니다. 촛불혁명 이후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은 직접 참여입니다.

시대정신에 맞게 이동권 북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북구주민들과 함께 멋진 의정활동을 펼쳐 나갔으면 합니다. 덧붙여 북구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지난 민선5기 구청장님 시절 행정에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피해를 보신 주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미처 북구 전체를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거주하는 농소3동에 가슴을 쥐어짜는 아픔을 간직하고 행정을 불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홈플러스 앞 모텔을 눈앞에 두고 살아야하는 헤니언하우스 주민들과 시례새터~상안새터 소방도로 개설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마을 주민들입니다.

신임 이동권 북구청장님께서 농소3동 주민뿐만 아니라 혹시나 모를 북구 곳곳을 살펴보시고 지난 시기 행정의 잘못으로 가슴앓이 하시는 주민들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박상복 의원
○ 발언일시 : 제175회 임시회(2018. 7. 17.)
○ 발언요지 : 제7대 임기를 시작하며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이룩한 울산북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농소1동, 강동, 송정동을 포함하는 북구가선거구 박상복 의원입니다.

회사생활만 하던 정치초년생이 지역주민의 도움과 관심으로 북구를 위해 일할 기회가 생긴 것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하지만, 정책이나 자신의 소신이 아닌 타 정당 비판만으로 주민을 대표하겠다는 정치현실도 경험했습니다. 이게 우리 정치의 현실 일수도 있지만 민생정치/생활정치를 실천하는 건전한 지방정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립니다.

먼저, 집행부께 건의 드립니다.
첫째, 정치나 경제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지난 집행부의 사업들이 무리하게 축소, 변경되는 일이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역 사회에 일관성 있는 추진사업 이행을 통해 주민이 느끼는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치적 신념과 단편지식에 의해 내린 결정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과 후유증을 낳을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시고 예측 가능한 업무를 당부 드립니다.

둘째, 북구지역 인구 증가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많은 구민이 집값 하락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집값 하락을 국가 전반적인 '경기불황 때문이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인식에서 탈피하여 북구청 차원의 고민을 당부 드립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올해 6월까지 집값 하락이 동구가 지역경제 기반 몰락에도 4.12% 수준이며, 이 보다 더 높은 곳이 북구(4.79%)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력 산업 침체 및 구매력 감소, 아파트 과잉공급 때문이라는 두리뭉실한

원인분석 보다 손에 잡히는 대책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전체 인원의 40%가 우리지역 북구(* 중구 21%, 남구 20%, 동구 8%, 경주 6%, 울주군 5%順)에 거주자 중이며 5년 이내 기술직 중심으로 8천명 이상의 정년 퇴직자가 발생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경제공동체를 함께한 중견/중소기업 협력사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울산 북구에 정주하고픈 매력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퇴직 이후 경주나 울주군 등 북구 근교 생활권에 정주희망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등 향후 경제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집값 상승의 호재는 한계에 부딪힌 만큼 북구에 지속 정주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웃한 양산시는 지난해 합계출산율 1.4명, 인구 증가 4위로 우리 북구에 암시하는 바는 분명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셋째, 국내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 차량 중 전기/수소차 등 환경차 비중이 6.2% 수준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8만대에 육박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북구의 준비는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내연기관 중심의 많은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으며, 연구개발 부문 역시 연구인력을 충원하기 쉬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머플러를 생산 하는 관내 중견기업인 세종공업이 환경차시대 도래시 머플러는 필요 없는 부품이 되어 생존할 수 없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이를 둘러싼 수많은 협력사는 또 어찌하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소양산전용 공장을 만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있음에도 수소 충전소가 관내에 하나도 없어 남구 매암동, 옥동으로 다니는 실태입니다. 과연 북구가 한국 자동차 산업의 메카인지를 되묻고 싶습니다.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도래하는 환경차 시대를 준비하여 건강한 자동차 부품 생태계를 다시 이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셈법보다 원칙과 기준의 준수, 관련 부문 중재/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노동조합의 존재이유는 무엇입니까? 노동조합은 이익 단체의 하나로 노동자의 복지를 포함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 합니다. 주주 및 부품업체, 소비자, 금융권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 중 노동조합의 역할만 강화 된다면 다른 이해관계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노동조합은 시장이 정한 그 이상의 보상을 요구 할 경우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북구는 매년 여름은 시장이 정한 보상과 배분을 놓고 노사가 치열하게 대립합니다. 문제는 실패를 경

험하고서도 개선의 여지 없이 매년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노사문제를 개별 기업의 문제로만 인식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자들과 고민하여 지원하는 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 어느 식당의 사장님은 '북한의 핵미사일 보다 현대자동차 파업이 더 무섭다' 라고 합니다. 파업이 미치는 사회적 비용을 표현하는 단적으로 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지역에서 가장 사랑 받아야 할 기업인, 근로자가 지역민의 비토 대상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수의 가치는 올바른 룰을 바탕으로 한 공정함과 배려입니다. 공정함을 위해서는 올바른 규칙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올바른 규칙이 있더라도 불이익을 보는 노인, 아동, 비정규직, 몸이 불편한 사람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겐 배려를 도입하여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북구의회는 올바른 규칙, 다시 말해 어느 누구에게도 특혜가 없는 공정한 조례를 만들며 사회적 약자계층을 위해서는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 제언해야 합니다. 현재 울산시장님 등 새로이 출발한 당선자들은 탈권위주의를 표방하고 특권의식 내려놓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북구청장님 역시 공식행사외 일반출장시 업무효율성이 높은 SUV차량을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가까운 양산시장께서는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관용차로 운영 등 탈권위주의를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님 역시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개개인의 역량보다 문재인 정권의 중앙 바람에 따른 승리라고 자평한 만큼 '겸손하겠습니다'라는 인사말 대신 실천이 우선시 되어야만 변화를 요구한 지역주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특수활동비가 여론의 지탄이 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북구의회 의장단은 품위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의 대폭적인 삭감을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북구의회 역시 관용차를 유지비가 저렴한 차량으로 교체하여 어려운 북구 경제사정을 함께 나누어, 주민의 진정한 봉사자가 되길 제안 드립니다. 더 나아가 이를 조례화 함으로서 주민의 눈높이에 보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내부에서 상처 난 곳에 소금을 문지르는 행위는 하지 말았음

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주민의 선택을 과도하게 받은 정치세력과 그렇지 못한 세력이 공존합니다. 선거인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외부로만 사회적 통합, 소통을 외칠 것이 아니라 북구의회 내부에서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함께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것입니다.

여당이 된 세력이 그렇지 못한 세력에게 또 다시 적폐, 급진진보라는 프레임으로 야당 정당들의 상처에 소금을 문지르지 말았음 합니다. 의원이 집행부의 수행비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정치목적은 오직 북구주민을 바라보고 북구민의 편익 향상 일 것입니다. 이런 정치 목적달성을 위해 가는 길이 조금 다를 뿐이지 중앙정치의 이념투쟁, 편가르기 정치보다 의회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합의 이끌어 내야 합니다.

초선이 중심이 된 의회다 보니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와 의욕만 앞서고 내용이 없는 빈 수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공존합니다. 바보가 박사인냥 전문가 집단인 공무원 그룹을 통제 할 때 그 결과는 뻔합니다. 의회 스스로 공무원을 포함한 전문가 집단과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의원 능력을 키워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각 부문의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제7대 북구의회는 4년 후 '참 괜찮았다'라는 평가를 듣는 성공하는 의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북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이진복 의원
○ 발언일시 : 제175회 임시회(2018. 7. 17.)
○ 발언요지 : 제7대 북구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존경하는 북구주민 여러분! 이주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과 북구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7대 북구의회 이진복 의원입니다.

저의 비전은 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으로서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일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정부의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입니다. 우리 북구도 6.13 지방선거를 통해 보다 민주적인 북구,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북구를 주민들이 원했습니다. 저는 주민들이 부여한 이 책무를 다하는 것이 저의 사명으로 여기겠습니다. 바라건대 우리의회도, 나아가서는 우리 의회 의원 모두가 공동의 책무로 여겨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민은 누구나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하루 8시간 일하면 먹고사는 걱정은 없도록 혁신해야 합니다. 아프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자신의 꿈과 재능을 펼칠 기회를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동안 북구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북구가 추진해온 정책은 성과와 함께 분명한 한계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깨끗한 의정활동, 겸손한 의정활동이라는 실천목표를 가지고 집행부에는

매의 눈으로 구정을 살피고, 지역구인 20만 북구주민에게는 더 낮은 자세로 끝없이 소통하고, 가슴 따뜻한 정치를 할 것을 엄숙히 다짐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역량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갑시다. 관행과 제도를 바꿔나갈 일은 그것대로 의회가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상화되어있는 비민주적인 요소들은 우리 모두 서로 도와가며 바꿔 나갑시다.

민주주의가 정치 사회 경제의 제도로서 정착하고 우리 한사람 한 사람이 일상에서 민주주의로 훈련될 때, 민주주의는 그 어떤 폭풍 앞에서도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려는 새로운 북구는 숱한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며 만들어 놓은 지역입니다. 저는 제7대 북구의회 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북구의회 이주언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임수필 의원
○ 발언일시 : 제175회 임시회(2018. 7. 25.)
○ 발언요지 : 핵발전소 사고 방사능방재대책 전면 재수립 및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소 건설을 반대 합니다.



사랑하는 20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과 북구청 직원 여러분, 민중당 임수필 의원입니다.

인구 20여만 명이 살고 산지로 둘러싸인 후쿠시마 핵발전소 4기가 단 한차례의 지진으로 전 국토를 재앙의 땅으로 몰고 간 사례는 먼 나라의 일이나 먼 훗날의 일이 아닙니다. 재앙은 이미 실증되었습니다. 120만명이 살고 있고 대단위 국가산업단지가 밀집해있는 울산 주변 핵발전소 12기는 단 한차례의 지진에도 후쿠시마보다 훨씬 가혹한 재앙을 몰고 올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에 발생한 경주 5.8지진과 포항의 5.4지진은 더 이상 울산과 주변지역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대가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고 60개가 넘는 활성단층대 위에서 가동되는 핵발전소는 울산시민들에게 일상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6월 27일 감사원이 발표한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는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 주무부서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규제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민의 생명이 걸린 안전시설 점검과 유지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 결과 15개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로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 두께 측정방식 불합리
(2) 원자력 발전소 시설물 내진대책 미흡
(3) 고리원자력발전소 해안방벽 등 침수예방대책 미흡
(4)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자격관리 부적정
(5) IAEA OSART 미션 수검 관리 미흡

(6) 설계수명기간 만료 원전 계속운전제도 절차 불합리
(7) 해외 원자력안전기준 검토·반영 등 규제관리 불합리
(8) 방사능재난 대비 구호소 지정 등 부적정
(9)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방사능 방재훈련 미실시
(10) 원자력발전소 계획예방정비 작업항목 누락 관리
(11) 원자력발전소 종사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12) 원자로 및 관계시설 화재대응 부적정
(13) 방사성폐기물 해상운반경로의 방사선환경조사 등 부적정
(14)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 터빈건물 주기적 안전성 평가 미실시
(15) 원전 대형폐기물 처분비용의 원가산정 미반영

특히 감사원 보고서에 있는 울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사능방재관련 감사 내용을 보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에 구호소 지정, 구호소 지정 시 수용인원 초과해서 산정, 그리고 타 지자체와 연계한 방사능방재 대비 훈련이 미실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원이 발표한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보듯이 방사능방재관련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는 울산광역시가 어떻게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까. 핵발전소 사고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사례를 보듯이 살아있는 생명들을 참혹하게 만들며 지역을 떠나 돌아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울산은 120만 인구와 함께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화학단지 등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국가적 재난을 일으킬 수 있는 핵발전소의 사고에 대한 방재대책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한 사안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주에서는 핵발전소 내의 수조에 꽉 차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처리하고자 이를 밖으로 꺼내 맥스터라는 임시저장시설로 옮겨 보관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주 월성 핵발전소는 중수로 형으로 농축하지 않은 천연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여 다른 곳보다 훨씬 많은 고준위 핵폐기물을 배출(우리나라 전체 핵폐기물의 절반을 차지)하기에 그 양이 2020년이면 이미 포화가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10만년을 보관해야할 고준위 핵폐기물을 임시정장시설을 지어 돌려막기하면서 계속 핵발전소를 운영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월성에 있는 핵발전소는 다른 핵발전소보다 내진설계가 떨어져 지진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방사능물질인 삼중수소를 바다와 대기 중으로 내뿜고 있어 울산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구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청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은 2년 전 소변검사를 통해 삼중수소가 체내에 있는지 검사한 적이 있습니다. 기준치 이하로 나오기는 했지만 삼중수소 방사능 물질이 내 몸 안에서 핵분열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삼중수소 방사능의 세기가 내 몸을 뚫고 나갈 수는 없어도 내 몸 안에 있는 수많은 세포들을 죽일 수 있고 DNA사슬을 끊고 변형시킬 확률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어른보다는 아이들이 호르몬 작용이 높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과연 북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아이들은 안전할까요. 확률적으로 핵발전소와 가깝게 생활할수록 핵발전소로부터 나오는 방사능에 피폭될 확률은 높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울산이 그렇고 북구가 그렇습니다. 당장에 모든 핵발전소를 멈출 수 없다면 핵발전소로부터 나오는 방사능에 피폭될 확률을 낮추도록 해야 합니다. 30년 넘게 침묵했던 울산시민과 북구주민들은 충분히 안전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부와 시민단체 핵산업계가 모여 고준위 정책 재검토 준비단을 꾸리고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청은 월성 원전으로부터 17km 떨어져 있습니다. 경주시청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핵발전소의 사고는 행정구역 단위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준위 핵폐기물 정책 재검토 시 울산시와 울산 각 구군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핵발전소와 핵폐기물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고준위 핵폐기물 대책 없다면, 월성핵발전소 4기는 조기 폐쇄해야 합니다.
- 월성핵발전소 고준위 핵폐기물 돌려막기 임시저장시설 증설을 반대합니다.
- 핵발전소사고 대응 및 울산시민 대피 시나리오 방호방재대책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 핵발전소에 기대는 에너지 정책을 벗어나기 위해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제 북구는 핵발전소로부터 주민들의 안전할 권리를 찾기 위해 북구청과 북구의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울산시와 다른 구군보다 북구가 먼저 관심을 갖고 더 노력합시다. 예방대책도

방재대책도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북구청과 북구의회가 되도록 합시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임수필 의원
○ 발언일시 : 제177회 임시회(2018. 8. 28.)
○ 발언요지 : 윤종오 울산광역시 전)북구청장에 대한 부당한 코스트코 구상금 4억여원은 면제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20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만 북구주민과 북구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이동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중당 임수필 의원입니다.

지방분권의 시대는 자치단체장이 관할하는 지역에서의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법의 잣대로 소신행정을 펼쳐나가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가로막는 것으로는 지방분권시대를 힘차게 펼쳐나갈 수 없으며 그 피해는 지방분권시대를 살아가는 영세상인과 주민들일 것입니다.

지방분권시대를 앞서 준비한 소신있는 구청장에게 구상권 4억여원 판결은 면제되어야 마땅하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1년 당시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에 코스트코 울산점이 오픈 준비를 하였습니다.

당시 인구 17만의 울산시 북구에는 이미 대형마트가 4개소나 입점해 영업을 하고 있었고, 코스트코 마저 들어서면 대형마트가 5개나 되어 전국 최고의 대형마트 밀집지역이 되었습니다.

울산시 북구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중소자영업자들의 몰락이 예상되었고, 이로 인해 중소상인들의 건축허가 반려 요청이 계속 되었습니다.

이에 윤종오 전)북구청장은 “중소상인과 지역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불가피하다”며 건축허가를 반려했습니다.

코스트코 울산점 건축허가 반려의 과정은 대형마트와 중소상인의 생존권 문제가 전국으로 주목받는 사건이 되었고, 이로 인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입점 거리제한, 월 2회 의무휴일 도입 등 상생발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윤종오 전)북구청장은 건축허가를 반려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 민사소송을 겪어야 했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에서 윤종오 전)북구청장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2018년 6월 대법원에서는 사상유례가 없는 70%의 구상금인 4억여원을 북구청에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윤종오 전)북구청장의 살고 있는 아파트마저 가압류에 걸려 있고, 직장이었던 현대자동차에 복직마저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코스트코 건축허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대형마트는 440여개가 있습니다. 인구 10만명당 한 개 꼴입니다. 인구 20만인 우리 북구에 메가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코스트코 이렇게 5개씩의 대형마트가 꼭 있어야 하겠습니까?
4만명 당 1개 꼴입니다.

이러한 대형마트 끼리도 이익을 내지 못하는 과포화 상태의 유통 환경 속에서 중소자영업자의 생존권은 더욱 위협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둔화와 겹쳐 중소영세업자들은 2중 3중으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구 유통환경에 대해 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입점하는 모든 대형마트를 허가해 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대형마트 허가가 신청된다면 이동권 구청장님은 우리 북구의 자영업자들이 한탄을 외면하고 아무런 고심도 없이 허가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법적인 한계 때문에 대기업의 진출을 막지 못해 현재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는 이러한 고심 속에서 내린 소신행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은 이를 불법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이제 어느 단체장이 법의 판결, 구상금 청구 앞에 사회적 약자를 위해, 지역 발전을 위해 소신행정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윤종오 전) 북구청장만의 일이 아니라 이후 북구를 책임지게 될 모든 단체장에게 같은 무게로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북구청에서 제기한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부당한 코스트코 구상금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중소상인들과 노동계가 앞장서서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구상금을 면제하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북구의회와 북구청에서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앞으로 다가올 지방분권시대을 맞이하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책임과 역할을 확장하고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번 코스트코 울산점의 사례에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대형마트 입점 시 현행 등록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전환해야 하고, 대형마트 입점 시 단체장의 건축허가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윤종오 전) 북구청장과 같은 소신행정의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부당한 코스트코 구상금을 면제할 것과 다시는 소신행정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발언의원 : 이정민 의원
○ 발언일시 : 제177회 임시회(2018. 8. 28.)
○ 발언요지 : 농소2동 운동장 조기에 건립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20만 북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의회 자유한국당 이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주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있어, 집행기관의 감시자로서 정당과 이념을 앞세우기보다 주민의 복리증진, 삶의 질 향상, 권익보호를 취우선시 할 것이며, 협력하고, 정책 경쟁을 하는 북구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농소2동, 농소3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수년째 방치되어 있는 농소2동 운동장 조성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급속도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 농소2동은 대단위 공동주택건설은 물론 매곡 중산지구 도시개발을 비롯한 활발한 지역 개발로 인해 인구가 현재 3만 7천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동별 크고 작은 운동장들이 있어 다양한 행사개최 시 주민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으나, 농소2동은 문화·체육인프라가 부족하여 주민들의 여가생활과 체력증진을 도모할 운동장이 없습니다.

농소2동의 냉혹한 현실은 자체행사를 개최할 만한 운동장이나 시설이 없어 타

동의 운동장이나 학교시설 등을 대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역시 생활체육 동호회나 각종 체육활동을 위해 멀리 떨어진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장기간 대기하거나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산 매곡지구까지 생활권이 넓어지면 체육시설 이용에 더욱 불편함이 가중될 것입니다.

이동권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소2동 운동장의 빠른 건립이 필요합니다만, 농소2동 운동장 건립 예정 부지인 오림이뜰 신천동 670-1번지 일원은 농업진흥구역이라는 이유로 몇 년째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연이유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림축산식품부(10,000㎡ 이상) 해제 대상으로 1차 협의부서인 시에서 식량 생산을 위해 보전할 가치가 매우 높은 우량 농지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임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농소2동 운동장 조성사업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현 이동권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입니다.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답변 내용을 보면, 시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중앙부처를 방문 협의를 통해 농소2동 운동장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시와 협의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권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북구 구민을 대표하여 부탁 드립니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막중한 소임을 다해야 하는 자리이기에 그 책임감은 무겁고 업무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원하는 농소2동 운동장은 반드시 건립되어야 합니다.

이제 제7대 이동권 구청장님의 취임과 더불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농소2동 운동장 조성에 속도를 높여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시청과 구청, 중앙부처와 칸막이 행정을 없애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만족과 섬세한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펼쳐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발언의원 : 정외경 의원
○ 발언일시 : 제177회 임시회(2018. 9. 10.)
○ 발언요지 : 고헌 박상진의사 서훈 격상운동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20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주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의회 의원 정외경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주언 북구의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가 잊고 있는 역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라를 위해 숭고한 목숨을 바친 고헌 박상진의사를 참배하는 마음으로 발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학창시절 역사시간을 통해 힘들었던 일제강점기를 배웠습니다. 그 고난의 시대, 투쟁했던 많은 독립운동가들 또한 배웠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람이 김좌진 장군이었습니다. 만주 청산리에서 5천명도 안되는 독립군으로 3만명이 넘던 일본군을 물리쳤던 청산리 전투는, 어릴적 우리에게 자긍심을 불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김좌진 장군이 만주에서 싸우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만주의 독립운동을 위해 김좌진 장군을 만주에 파견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김좌진 장군이 만주를 휘날릴 수 있도록 지원한 사람이, 그 사람이, 우리 울산 북구 출신인 걸 아십니까? 그 사람이 대한광복회의 초대 총사령, 박상진 의사입니다. 고헌 박상진 의사는 1884년 바로 여기 울산 북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최초의 법조인이었습니다. 명석한 머리로 법률, 경제, 국제법 등 신학문을 수학하고 일제강점기 첫 판사 시험에 통과해 평양재판소 판사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판사임용을 거절했습니다. 눈 앞에 놓인 입신양명의 길이 조국의 명이 아니기에 망설임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 길로 조국을 떠나 만주에서 망명활동가들을 규합하고 독립운동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후 그는 국내로 돌아와 상덕태상회를 설립하여 해외에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고 독립운동의 연락망과 거점들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대한광복회를 조직하여 초대총사령으로 전국 곳곳의 독립운동가들을 위한 군자금 확보 및 지원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1918년, 일제에 체포되어 4년의 옥고 끝에 대구형무소에서 순국하셨습니다.

그의 활동과 이력을 보았을 때, 국가로부터 충분히 대우받아야 마땅하나 그의 서훈 등급은 고작 3급입니다. 박상진의사는 대한광복회를 조직하고, 김좌진장군을 만주에 보내고, 독립운동사에서 "광복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큰 발자취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았습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잊었습니다. 울산 시민들조차도 박상진이 누구인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북구 주민들도 박상진을 잘 모릅니다. 그는 국가와 국민, 모두로부터 잊혀졌습니다.

다행히도, 그를 기억하기 위한 기회의 싹이 움트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울산에서 출발했습니다. 2008년에 시작한 '창작오페라 박상진'이 재미와 교훈을 모두 잡아내며 울산시민들에게 11년째, 박상진을 알리고 있습니다. 북구는 송정에 53억원을 투자해 '박상진호수공원'을 조성하며 그의 이름을 우리 고장에 남겼습니다.
또한 LH에서 박상진의사 생가 일원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산과 북구는 '박상진 의사'를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특히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 그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광복회 부사령 김좌진 장군의 서훈은 1등급이지만, 대한광복회 총사령 박상진의사는 3등급입니다. 하루빨리 국회에서 계류중인 상훈법이 개정되어 이 정의로운 사람이 훈격 상향되어야 합니다. 상훈법 개정을 위해 지난 6월 선출된 우리 지역의 이상헌 국회의원이,
국회의 최전선에서 "이는 부당하다." "이는 정의롭지 못하다"며 국회를 설득하고 있고, 지역의 각 원로들이 함께하는 범시민운동본부도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우리 이웃과 주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린 아직 그를 잊지 않았고 국가도 그를 잊지 말아달라며 소리쳐 주셔야

더욱 정의로운 나라를 향해 바뀌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고장에서 나고 자라, 이 한반도를 위해 피눈물 흘리며 옥고로 돌아가신 박상진 의사에, 보은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북구 의회가 나서야합니다. 저부터 시작해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 발로 뛰며 주민과 이웃들에게 박상진을 알려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천안시는 유관순열사 서훈등급 상향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훈 등급 격상이 이뤄지도록 동참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북구청의 역할도 막중합니다.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주민자치회 등 주민과 맞닿는 민원의 공간에서부터 학교, 회사 등 대형 기관에 이르기까지 아직 박상진을 잘 모르는 우리 구민과 이웃들에게 그를 알리고 동참을 호소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존경하는 21만 구민 여러분과 이동권 구청장님이하 공무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것을 잊어왔는지도 모릅니다. 윈스턴처칠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하였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위해, 잊었던 것을 다시 기억할 때입니다. 내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울산 북구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함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독립운동의 탁월한 업적을 남긴 고헌 박상진의사에 대한 서훈등급이 그대로 머물러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과 긍지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북구주민과 북구청, 북구의회의 힘으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발언의원 : 박상복 의원
○ 발언일시 : 제178회 제1차 정례회(2018. 10. 5.)
○ 발언요지 : 강동동 현안문제에 강력한 대처를

존경하는 20만 북구주민 여러분! 이주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1동, 송정동, 강동동을 지역구를 둔 박상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해양관광 휴양도시라는 희망고문으로 고립된 섬인 강동동의 현안문제 해결 촉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강동산하지구는 2005년 유럽풍 해양관광 휴양도시를 목표로 국제 금융위기'로 사업이 일시 중단 됐다가 2014년 푸르지오1차를 시작으로 입주가 되면서 신흥주거 지역으로 발돋음하는 동시에 인구는 2014년 1월 기준 4,502명에서 2018년 6월 말 기준 15,195명으로 3배 이상 급증 했습니다.

이렇듯, 상주인원의 증가로 외형은 커지고 있지만 생활 인프라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천혜의 환경에 대해 '강동브랜드의 거짓 자존감'마저 느끼게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동의 문제는 첫째, 초등학교의 학생 과밀화에 따른 학습권 침해입니다.

집행부는 초등학교 문제는 '교육청 소관입니다'라는 상투적인 대처가 아닌, 당장 내년부터 도래하는 교실 수 부족 해소를 교육청 등 관련 부문에 강력히 요청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강동초등학교는 6학년은 네 학급, 5학년은 여섯 학급으로 운영 중이나, 19년 입학 예정 인원 285명, 20년 293명으로 매년 열두 학급씩 스물 넷 학급이 필요합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2년 이내 열 네 학급 모자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됩니다. (cf, 21년 294명) 현재도 일반교실이 부족하여 실험 실습실 등의 특별실을 전용하여 운영 하고 있으며 강동동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생들은 양질의 학습 공간이 침해 받고 있습니다.

내년 초 산하지구의 마지막 남은 KCC스위첸 582가구가 입주되면 이는 더욱 심화 예상되기 때문에 교육청과의 협의로 증축을 시행해야 합니다. 수직증축의 경우 먼지, 안전사고 위험, 학습권 침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는 바, 이를 감안하여 학부모들의 걱정을 사전에 제거하고 대응 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30~40대의 가장 관심거리가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들은 아스콘 공장 관련 악취 문제에 대해 주민은 북구청外 기댈 곳이 없는 절박함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지난 9월 19일 민원해결 간담회 등 집행부의 많은 노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민원 해결을 지나치게 집행부에 의한, 집행부를 위한 패러다임에 매몰되지 않도록 주민의 불만과 고충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시크릿 소스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주민이 참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객관적인 역학조사 및 악취 시료 조사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아스콘 공장의 악취는 바람, 온도, 습도 등의 기상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만큼 상시 측정 할 수 있는 시스템 강구를 당부 드립니다. 강동은 인근산업단지나 공장이 전무함에도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발생으로 건강권이 침해된다는 오명은 가질 수는 없습니다. 악취 오명이 자꾸 거론되면 안 그래도 떨어지는 집값에 또 하나의 이유를 더 할까 걱정하는 주민간 갈등도 내재하고 있습니다. '아이 더 낳아라 하지 말고, 잘 기를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달라"라는 어느 할머니의 외침을 구청장님은 분명히 간담회 때 들었을 것입니다. "무늬만 천혜의 환경을 자랑하는 해양 복합도시"가 아닌 내부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기대합니다.

셋째, 2007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10년 넘게 준공되지 못한 강동산하지구의 조속한 준공을 요청 드립니다.

집행부 역시 여러 채널을 통해 올 연말까지의 준공 승인을 약속한 만큼 그 동안 6차례 준공 연기 사항을 꼼꼼히 따지고 예비준공 검사 보안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준공 승인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는 강동산하지구 주민에게도 북구청이 관리하는 쾌적한 공공시설물 및 도시

기반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울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관광 특구 등 거창한 구호가 아닌 잡초가 없고, 쓰레기가 방치되지 않으며, 공원지역이 우범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지금 당장 주민이 소소하지만 확실히 행복해 하도록 하는 것이 강동브랜드를 높이는 길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중교통의 불편으로 자녀 고등학교 통학을 위해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셨다는 어느 어머니의 하소연, 부족한 어린이 집으로 인해 5살 난 딸아이를 통학차에 매일 쪽잠을 자게하면서 화봉동으로 보내야 한다는 30대 주부의 걱정, 아이가 아파도 제대로 믿고 보낼 병원 하나 없어 직장에서 일하는 남편에게 데려다 달라고 반차를 사용하게 했다는 어머니의 목소리, 자전거와 오토바이로 모듈단지에 출근하고 싶어도 31번 자동차 전용도로 외 마땅한 도로가 없어 곡선구간이 많고 밤길에 위험한 옛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어느 근로자의 호소 등을 그저 별난 몇몇의 불만으로 치부해선 안 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나하나 해결해야 할 강동의 숙제 입니다.

내부에 거주 하는 사람이 만족 못하는 정주지역에 어찌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고 다시 찾고 싶은 강동으로 만들겠습니까?

저는 어느 하나 쉬운 것 없는 강동 현안 개선을 위해 관계 공무원들께 김연대 시인이 지은 '상인일기'의 한 구절을 소개 합니다.

'상인은 오직 팔아야만 하는 사람, 팔아서 세상을 유익하게 해야 하는 사람, 그러지 못하면 가게 문에다 묘지라고 써 붙여야 한다.'이는 상인의 소명과 혼(魂)에 대해 이야기 한 내용입니다.

상인이란 단어를 공무원으로 바꾸면 바로 여기 계신 전문가 집단인 공무원의 소명과 혼이 됩니다.

'오직 주민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 이란 소명으로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하는 따뜻함과 차분함이 있는 행정을 기대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북구청장님,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임수필 의원
○ 발언일시 : 제178회 제1차 정례회(2018. 10. 5.)
○ 발언요지 : 울산 북구도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자.



사랑하는 20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이동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중당 임수필 의원입니다.

남북이 분단 된지는 73년, 한국전쟁이 발발한지는 68년이 되는 올해에 남과 북의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3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4월 27일 남측 판문점에서 남과 북의 두 정상이 만난 후 5월 26일에는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9월 19일에는 평양에서의 만남으로 이어졌고 이 과정은 분명 분단의 한반도에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음을 알려 주는 징표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긴 세월 이산의 아픔으로 서로의 생사조차 알 수 없고 희미한 기억에 의존하며 그리움을 달래 왔던 고령의 이산가족들에게 희망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판문점 선언은 분단되어 적대시로 살아왔던 이 시대의 우리 민족에게 희망과 행복을 비추는 섬광이 되어야 합니다.

판문점 선언에는 첫 번째로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가자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들입니까.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남과 북의 두 정상이 세 번씩의 만남을 가지면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감격스럽고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러나 복잡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는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는 트럼프 대통령 외 대북적대세력이 있어 북미관계의 개선에 암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관계의 개선을 위한 정보와 판단을 미국 정부 내의 관료들의 판단보다는 한국의 특사와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핵화 조치를 더 바라는 미국의 요구에 북은 선제적 조치로

1, 핵, 미사일 시험 중지,

2. 풍계리 핵시험장 폐쇄,

3.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

4. 위성 발사대 해체,

5. ICBM 조립시설 해체 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단체조를 함께 관람하는 15만 평양시민들에게 한반도의 비핵화와 민족의 공동번영을 얘기했고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남과 북의 민족구성원들이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 의지를 보여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선 비핵화만을 내세우며 한미군사 훈련 중단 외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조치들은 복구하려면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반면 미국은 언제든 쉽게 재개할 수 있는 조치만을 한 것입니다.

북이 비핵화의 선제적 조치로 취하는 것 만큼 미국도 안보의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초기단계의 평화조치인 종전선언을 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전향적인 공동성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례 없는 남북화해와 교류가 다방면에 봇물 터질 것 같습니다. 결실이 맺어지는 가을이 왔기 때문입니다. 개벽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광역시 북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북구에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울산광역시 북구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서 요구되는 출연금은 지난 3년 동안 단절되어 마련되지 않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창조적으로 발굴하고 화해와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마저 단절시켜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북구청은 노력해야 합니다.

부족한 출연금은 메꿔놓고 중앙정부나 광역시 차원에서도 지원을 받아 북구 주민들을 상대로 화해와 평화의 시대에 맞게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세 번의 만남을 통해 만들어 가는 한반도의 종전선언과 비핵화 과정이 평화협정으로 나아가고 우리민족의 통일 번영으로 귀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두 분의 정상들만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남과 북, 해외 동포의 힘이 더해져야 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열강의 상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나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데 울산 북구청과 북구의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을 지지하고 북구에서의 남북교류협력과 화해와 평화를 위한 사업에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임채오 의원
○ 발언일시 : 제178회 제1차 정례회(2018. 10. 19.)
○ 발언요지 : 진장명촌지구 평창리비에르 아파트 체비지 등재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20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북구청장님과 공직자 윤리의식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북구행정에 힘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의회 운영위원장 임채오 의원입니다.

오늘 제178회 정례회 폐회에 앞서, 진장명촌지구 평창리비에르 아파트 체비지 등재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울산 북구 진장·명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벌써 2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완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난 1998년 8월 14일 허가서를 받은 이후 1999년 1월 평창토건 주식회사와 수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06년 12월 공정률 70% 상황에서 평창토건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 조기 매각으로 자금이 없어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구청은 미준공 사업장의 기반시설물에 대해서 이관을 받지 못해 관할대상이 아니다 보니 시설물 정비 사업비를 투입하기 어렵고 재산관리권이 있는 조합 측에서는 정비 사업비가 없어 기반시설물 관리를 하지 못해 주민들만 고통에 시달려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12년간 주민들의 법적 노력과 행정기관 민원에도 여전히 체비지 미등재로 인한 평창 리비에르 주민들 피해가 극심합니다.

첫째로, 공탁금 설정에 따른 피해입니다. 매도인이 28평형 2,000만원, 32평형

2,300만원을 매도인, 매수인,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공동명의로 예탁하고 있으며, 이 공탁금은 수년째 묶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탁금을 설정한 채 매수했던 세대가 또 다시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첫 매도인과의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체 세대 3,152세대 중 소송을 통한 등기세대가 930여 세대이며, 소송을 중도에 포기한 채 개별분양 받으면서 체비지가 등재되지 않은 150여 세대가 있습니다. 전체 세대 중 1/3이 체비지에 등재되어있지 않아서 매매가 어렵고 단지전체가 가격하락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011년 평창리비에르 1차 아파트 임차인들이 소유권 이전등기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임차인이 요청한 소유권 이전등기 요청은 정당하다"며 "임대사업자는 당초 임대주택법 21조에 근거해 승인받은 금액대로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상고판결에서, '이 사건은 법이 경제적 약자인 임대주택 임차인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공 건설 임대주택에 한정하여 '통합도산법'에서 정한 것과 별도의 임차인 보호규정을 마련한 것이 파산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균형성을 상실한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법 제5조 제8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받아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상 평창토건의 소송수계인인 파산관재인은 승인된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성립된 매매계약에 기하여 임차인들에게 해당 아파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대지 지분에 관한 체비지 매매대장상의 매수인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습니다.
올해 2월에 울산 남구는 26년간 방치돼 온 선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주민들의 재산권보호와 생활불편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는 게 힘든 이유는 힘내서 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년 간 미준공된 토지구획정리사업장 내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건설사 부도 그리고 오랜 법적 공방으로 지친 주민들이 그래도 지역사회 행복도시 사람중심 북구에서 희망을 품고 열심히 힘

내서 살고 있습니다.

행정청이 행하는 행위에는 기속적인 것과 재량적인 것이 공존합니다. 특히, 재량적 판단에 있어서는 위법하거나 부당함없이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고 관련 이익 간 크기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균형을 달성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행정의 영역에서는 기속적인 행정행위가 많으나, 기술의 발전, 인구증가, 다양한 이익집단 등으로 인한 복잡한 구조는 재량의 범위를 더욱 넓혀가고 있습니다.

평창리비에르 아파트문제가 관청의 행정사각지대로 방치되기 보다 20년 장기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북구청이 많은 유사 사례 분석 검토를 통해 보다 넓은 법적 행정재량해석으로, 주민들의 재산권보호와 생활불편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대법원이 손을 들어준 판례입니다.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비치된 평창 리비에르 체비지매매 대장상의 매수인 명의변경 절차 이행을 촉구합니다. 충분한 법적 검토, 사례연구 그리고 토지조합과의 상호소통간담회를 통해 북구청의 위민 행정실현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임수필 의원
○ 발언일시 : 제179회 제2차 정례회(2018. 11. 20.)
○ 발언요지 : 노동자 동의 없는 밀어붙이기식 '광주형 일자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20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이동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중당 임수필 의원입니다.

최근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노동계와 언론 지방정부 중앙정부사이에 논쟁이 많습니다.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는 울산 북구의 입장에서 광주형 일자리 정책에 대해 무관심 할 수가 없습니다.
북구주민과 노동자들의 생활기반이 일자리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은 지난 2016년 말에 정립되고 2017년에 사회협약으로 체결된 이른바 '4대의제'에 담겨져 있습니다. 광주시는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관계개선"이라는 4개 의제를 핵심의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사민정 공동결의와 현대자동차 협약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 의제는 실종되고 나쁜 일자리로 창출될 우려가 큽니다. 다음은 언론에 나온 광주형 일자리 노동조건과 관련된 11월 18일 최근 기사 내용입니다.

"4년이 지나 마련된 첫 협약서엔 연봉이 3000만원으로 명시됐다. 기본급 1800만원에 직무수당 300만원, 연차수당 100만원, 명절수당 80만원, 잔업·특근 720만원 등 이다. 웬만한 하청업체보다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5년간 노조 설립 금지와 임금 동결이라는 단서조항까지 포함됐다. 협상과정에 노동계는 배제됐고, 협의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 또한 생략됐다 "고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논의 중입니다만 연봉 3000만원, 노동조합 설립금지와 5년간 임금동

결, 협상과정에서 노동계 배제, 동의 절차 생략, 노동계의 반대로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의 주요내용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한국 노동자 전체 임금의 하향평준화를 가져 오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기준으로 보면 절반 수준으로 노동자 임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임금 고노동으로 시달리는 협력업체의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은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일자리를 늘린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광주형 일자리로 생겨나는 소형차 생산으로 인해 울산의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연적으로 올 것이며 이는 또 다른 실업자 양성과 함께 지역 경제를 몰락시키는 것으로 나타 날 것입니다.

노동계의 주장처럼 한국의 경차 시장이 14만대에 불과한데 광주형 일자리로 2021년 경차 10만대를 추가 생산하겠다는 계획은 결국 구조조정을 가져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몰락과 노동자의 탈울산 현상을 똑똑히 경험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으로 노동자가 울산을 떠나고 지역경제가 몰락하는 것은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상인과 지역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은 울산전체의 경제적 몰락을 가져올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21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노동존중 사회로 가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에서 보여 지듯이 노동계를 배제한 노동정책과 필연적으로 닥쳐 올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자리 문제와 저임금 문제, 자동차 사업의 위기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총파업을 우려하며 민주노총을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민주노총의 목소리를 똑 바로 듣고 노동정책에 대한 노동자와 협의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자동차 생산이 줄고 있고 수출주력사업인 자동차 수출량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필연적으로 울산지역의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실업 증가 및 지역경제의 몰락을 가져 올 것이며, 또 다른 울산형 일자리를 통해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고 지역 간 경쟁으로 한국경제 전체를 몰락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산업의 위기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두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취할 행동이 아니라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및 4차 산업 혁명을 대비한 정책을 노동자와 건전한 기업과정부가 공동으로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지역경제와 울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울산시와 북구는 이 문제를 수수방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올바른 방향에서의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도시 울산에서 노동자가 존중받고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고, 노동자의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형식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위해 사회적 차별을 없애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이정민 의원
○ 발언일시 : 제179회 제2차 정례회(2018. 12. 21.)
○ 발언요지 : 북부버스터미널의 신설과 농소2·3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촉구 합니다.



사랑하는 20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이동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농소2·3동을 지역구를 둔 이정민 의원입니다.

우선, 북부버스터미널 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포항, 경주, 울산 해오름동맹의 관문인 우리 북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북부버스터미널 신설과 관련하여 조속한 대처방안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울산의 버스터미널 현황을 살펴보면 삼산동에 위치한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터미널 그리고 방어진과 언양에 시외버스터미널 등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인구 20만이 넘었고 국도7호선, 오토밸리로, 옥동농소간도로 등 해오름동맹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주요간선도로와 도시외곽순환도로 신설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통량 증가와 교통수요증가는 이미 예측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북구 주민들의 공공교통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공용터미널이 울산 도심의 중심부인 삼산동에 위치해 있다 보니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되어 있으나 도심 내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반나절 생활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우리 북구는 해오름동맹의 관문이며 전국을 소통하는 관문으로서의 도로축이 형성되어 있고, 교통수요 측면에서도 북구에 공용터미널 신설 여건이 충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조속한 대비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농소2·3동 공용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소2·3동에서는 1990년대 건축법 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공동주책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아파트는 1990년대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되다 보니 주차 공간이 아주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하여 아파트 안과 주변은 온통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차실태를 살펴보면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화재나 기타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을 놓쳐 우리 구민들의 재산과 생명이 위협 받을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단독 주택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오래된 공동주택과 주변을 포함시키는 등 현재 시급한 공용주차장 조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박상복 의원
○ 발언일시 : 제179회 제2차 정례회(2018. 12. 21.)
○ 발언요지 : 자동車 부품산업 전담부서를 신설하자.



존경하는 20만 주민과 이주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박상복 의원입니다.

“한 놈만 팬다.” 코미디 영화의 대사입니다. 패야 할 놈을 정해놓고 다른 놈을 제쳐두고 그 놈만 죽자 사자 패기 위해 달려듭니다. 현 정부가 기업가를 대하는 사항과 오버랩이 되는 이유는 왜 일까요? 기업가는 무진장 맞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은 수익구조가 취약한 탓에 이제 회사 운영이나 투자는 그만두고 회사를 팔자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는데,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것이 바로 최저시급인상,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기업 부담 정책이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성한 생산현장까지 만연한 비싼 ‘촛불청구서’를 들고 있는 고임금 비효율적인 노조활동으로 인해 미래를 위한 투자는 엄두도 못 내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통상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매출 얼마 증가, 수익 얼마 증가’로 수립하지만 내년도 지상과제는 ‘생존이다’라고 말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현 정부는 도덕적 우위를 장악한 자의 부풀려진 자신감으로 현장의 목소리엔 귀를 닫아버린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닌 저녁만 있는 삶이 되고 있다.’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 북구는 세계적인 자동차회사가 소재한 축복받은 도시입니다. 근로자들은 높은 연봉을 바탕으로 소비를 순환하면서 건강한 중산층 생태계가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산업에 너무 집중된 나머지 그 산업이 위기를 맞이하니 아파트값 하락 뿐 아니라 심지어 ‘시장통의 콩나물이 팔리지 않는다.’ 할 정도로 심각한 나비효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제대로 된 기업하나가 중요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다시 우리 북구를 열심히 일한 근로자가 대우 받는 중산층이 튼튼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도상에 '자동차 부품산업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합니다. 자동차 튜닝 및 봉제인력 양성, 중소기업 기술, 경영개선 등 기존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자동차산업 관련 정책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기획적인 측면으로 북구 소재의 기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북구에는 연간 150만대의 완성차를 지원하기 위해 부품을 만들고 물류를 담당하는 수많은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동차 부품사가 잘 되면 북구의 살림살이와 경제가 좋아집니다. 북구만의 자동차 부품산업 전담부서는 현대자동차에 부품의 납품하는 중소기업 및 사출, 용접, 금형 등 뿌리산업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노동특보 한 분의 채용이 아닌 수소차 및 전기차 대량양산에 따른 친환경차 부품 전담자, 노동문제 및 근로자 권익문제 전담자, 다양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맞춤식으로 설계·지원하는 전담자, 튜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커스터마이징 전담자, 자동차 서열방식 특성상 북구에 집중 소재한 서열납품 중소기업 지원 담당자 등 매일 자동차 부품산업만 고민하고 지원하는 전문화된 전담조직이 있어야만 빠르게 변화는 자동차 시장에서 낙오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북구가 존재합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얼마나 많은 지원 유인책을 펼치고 있습니까? 하지만 북구는 있는 기업이라도 관내에 남아 건강하게 경영만 되더라도 생산 유지, 고용 확대, 자본 축척에 따른 기술개발 등 지역경제 활력을 주고 장기적으로 세수 증가로 이어져 부유한 지자체가 될 것입니다.

자율주행차가 등장하게 되면 차 안에서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는 컨텐츠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합니다. 차량 생산대수도 엄청나게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자동차 회사가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단행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하드웨어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곳으로 이를 지금부터 경쟁력 있게 가다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가 수소, 전기 등 환경차로 바뀌면

부품 생태계도 바뀝니다. 지금의 중소기업은 스스로 연구하고 미래 트랜드를 따라가기에 너무 힘듭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역시와 학계, 현대자동차, 중견기업의 연구개발조직, 노동계와 경영자를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담조직 신설이 필요합니다.

전담부서를 통해 강동 해안과 산악을 이용한 오프로드 체험장 추진을 건의 드립니다. 환경이 사고를 지배하는 법입니다. 오프로드장이 있으면 ATV, 4륜, 바이크 등 드라이빙 스쿨 운영과 체험형 프로그램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선 급성장하는 튜닝사업의 '악의모드 테스트장' 운영으로 중소기업 부품 신뢰성 검증과 해외시장 개척이 가능합니다.

이에 더해 완성차, 부품사의 후원 대회 개최를 통한 강동 브랜드 위상 제고가 가능한 만큼 산업기반形 관광컨텐츠 개발로 활동적인 북구 이미지 구축될 것 입니다.

존경하는 20만 주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은 578년에 창업한 사찰과 신사, 불각 건축을 담당하는 일본의 '곤고구미'(金剛組)라는 건설회사입니다.

일본은 1,000년 이상된 기업만 해도 20여개에 이릅니다. 모두들 중소기업입니다. 우리 북구에도 후손에게 자랑 할 수 있는 강소기업이 생길 수 있도록 집행부는 친 기업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이 기(氣)가 살면 경제 생태계가 활성화 됩니다. 기업은 적폐가 아닙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유발하여 사회가 선 순환되게끔 하는 가장 이상화된 시장경제주의 시스템의 한 축입니다.

지금처럼 기업의 투자의지가 꺽이고 자유가 억압되며 반기업가 정서가 팽배해진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작금의 팽배한 기업만 패는 '반기업가 정서' 대신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을 춤추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가 정신이란 노동자와 상반되는 자본가나 경영자만 뜻하는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주인의식, 오너쉽을 말합니다. 유럽이나 미국, 일본이 잘 나갈 때 한국은 정책의 실패로 홀로 경기가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의 세계 경기 하강 신호가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도 85%를 해외에서 벌어들이는데 내년이 얼마나 더 힘들지 현장은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투자는 심리입니다. 자동차 부품 전담조직이 있는 지자체가 되도록 집행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준다면 북구 중소기업에게 좋은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시장에서 한 중소기업 사장님은 "자동차 부품산업을 10년 이상을 경영하면 국립묘지에 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 하십니다.

그만큼 산업현장에서 애국적 마음으로 직원들과 목숨을 걸고 어렵게 일하는 중소기업인의 목소리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박상복 의원
○ 발언일시 : 제180회 임시회(2019. 2. 18.)
○ 발언요지 : 강동, 외곽순환도로 그 이후를 준비하자.



존경하는 21만 주민과 이주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1동, 송정동, 강동동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박상복 의원입니다.

정부는 지난 달 2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국도31호 강동IC까지 연결하는 동서축 교통망인 외곽순환도로 예비타당성 면제를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의 시작은 2011년 6월 국토교통부 제2차 도로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되면서 부터입니다. 그 결실은 이상헌 국회의원과 여기 계신 이동권 구청장님의 노력으로 1조원이 넘는 대형 사업의 첫발이 놓여 졌습니다.
다시 한 번 지역 구민을 대신해 구청장님의 그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외곽순환도로는 해양관광 단지를 개발하고 각종 재해의 피난로 확보, 울산시내 도심으로 집중되는 교통량 분산 등의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부턴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2026년 계획 일정 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공무원께서는 역량을 발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2026년 이후의 해양관광단지인 강동을 준비해야 합니다.
도로가 확충되고 이동시간이 단축되면 뜻하지 않는 도시경제학의 역설이 발생합니다.
주민은 편리한 교통을 이용해 더 큰 대도시로 쇼핑, 교육, 의료 등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동합니다.
자칫 잘못하다 강동이 베드타운 정도의 작은 주거지 역할만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넓게 닦인 도로가 뜻하지 않게 사람과 돈이 도시로 모이게 하며, 경제가 발전할

수록 대도시와 중소 거주지간의 불평등은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외곽순환도로와 철도교통이 자본과 사람 역시 대도시 집중화를 시켜 지방분권화에 반대로 갈 우려 역시 생길 수 있습니다.

강동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했던 것이 예기치 못한 역설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지금부터 차근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해양관광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천연자원, 기후조건, 역사적 유물 등의 하드웨어적인 것 외 관광자원에 스토리를 가미해 강동의 매력도를 높이는 것을 제안합니다.

저는 점 하나로 이야기를 만들어 내어 스토리텔링 상품화에 성공한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호텔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호텔은 조선시대 때 중국의 사신을 맞이 한 태평관이 근처에 자리잡고 있었으며, 현대에는 상공회의소가 소재해 있어 돈과 행운이 모이는 곳이라며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동양사상인 풍수지리를 스토리텔링화 해서 대한민국 중심부에 위치한 완벽한 명당에서 즐기는 휴식과 행운이라는 컨셉으로 새해 그 호텔에서 하룻밤을 숙박하면 만사형통의 운이 들어온다고 상품화하여 소비자에게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21만 주민과 이주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강동 관광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앞의 예와 같이 잘 포장된 핵심컨텐츠 구축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북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등을 포함한 전문기관과 함께 충분한 자료연구, 문화원형 발굴, 정확한 소재 등을 찾아 강동의 핵심컨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컨텐츠를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광개발을 당부 드립니다. 전해 내려오는 설화, 역사적인 사실 등에 근거하거나 연계한 스토리를 만들어 강동관광지에 접목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관광객들에게 흥미를 유발시켜 재방문을 유도하고, 강동의 관광이미지 제고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체험관, 정자활어직매장, 뽀로로테마파크 등 이전 집행부에서 시작한 사업의 열매를 받아만 갈 것이 아니라 이젠 민선6대에서 외곽순환도로 건설 이후의 강동을 제대로 고민해야 합니다.

백화점식 관광지 나열에서 탈피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컨텐츠를 설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강동에는 1만 5천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신흥주거단지임에도 아이가 아프면 찾아갈 수 있는 병원조차 없으며, 학원 등의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것 역시 사실입니다.

강동의 개발, 발전 가능성이 있다면 시장경제에선 인프라 투자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 바탕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강동상품이라는 곳에 소비자의 꿈과 감성에 호소하는 스토리 마케팅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외곽순환도로가 외부 대도시로 나가는 유출의 도로가 아니라 강동으로 유입되는 도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임수필 의원
○ 발언일시 : 제180회 임시회(2019. 2. 18.)
○ 발언요지 : 부당한 코스트코 구상금 주민 면제 청원 다시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21만 주민과 이주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중당 임수필 의원입니다.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乙'들의 연대를 아십니까?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乙'들의 연대」는 윤종오 전 구청장의 구상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울산지역 상인단체와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단체들이 함께 발족한 연대 단체의 이름입니다.

'乙'들의 연대가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기 때문에 제2, 제3의 약자들의 연대가 희망을 갖고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설사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의 탄압과 왜곡과 무시가 있더라도 '乙'들의 연대는 촛불의 정신을 갖고 거짓 촛불 세력의 진모들을 밝혀 줄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 2019년 대한민국 자영업이 위기라고 모두들 입을 모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일까요? 유통대기업들이 26년간 수백의 대형마트, 수천의 기업형슈퍼마켓, 수만의 편의점, 각종 프랜차이즈 사업 등에 대책 없이 뛰어 들어 지역 상권을 잠식해 왔습니다.

작년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당정은 자영업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자영업자가 600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0%를 넘는 가운데 자기 고용 노동자인 영세 자영업자가 400만명에 이르렀고 비좁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나 쇼핑몰로 대자본이 진출하고, 인터넷 쇼핑몰로 인해 자영업의 위기가 더 심해진 것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주민 여러분, 2011년 당시 당시 전국 15만명 당 1개 꼴이던 전국 상황과 비교하면 울산시 북구는 코스트코까지 입점한다면 3만 5천명 당 1개소가 되는 대형마트 과밀포화 지역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윤종오 전 구청장은 "중소상인과 지역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했습니다.

이러한 윤종오 전 구청장의 결단은 2019년 대한민국 자영업 대란이라는 현실을 예상하고, 이를 막기 위해 정당했던 소신행정이었음은 분명하며, 그 때 예방책을 잘 마련했더라면 현재의 자영업자들의 힘겨움은 덜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이 아니라 지역상권과 중소상인들의 삶을 대변하는 공익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지난 8년동안 민, 형사 소송이 끊임없이 진행되었고, 대법원에서의 4억 6백만원의 구상금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종오 전 구청장의 유일한 재산인 살고 있는 아파트를 가압류하여 경매절차에 넘겨버렸고, 통장마저 거래 중단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이에 지역의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구상금 면제'를 위해 힘을 모았고, 해법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2019년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산시 이동권 북구청장은 문재인 정부의 행정안전부 회신 내용,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가결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청원안'을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이라며 수용불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옹졸한 수용거부입니다.

어쩌면 북구청에서 감당하고 해석하기 힘든 부분이었다면 주민들을 모셔놓고 양측 입장과 법적 해석의 견해를 듣는 토론회 과정이라도 있었으면 지방자치의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였을 것입니다.

법을 운운하지만 2011년 12월 23일 경기도 의회 본회의에서 안양시 삼성천 수

해주민 소송비용과 관련 도의회 면제 청원이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소송비용 면제 및 기 납부한 소송비용 반환을 완료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국당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자결권을 갖고 파업을 할 때 권력과 자본은 만들어 놓은 법으로 옥죄어 옵니다. 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있었다고 어마마한 손해배상 청구를 돈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청구해 왔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법을 이용한 사법적폐들을 보십시오. KTX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전교조 선생님들이, 철도노동자들이, 콜트콜텍 노동자들이,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모두 그렇게 끊임없는 절망의 구덩이 속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윤종오 전 구청장에 대한 가혹한 판결 또한 전임 구청장과 전임 정권이 법이란 잣대로 가난한 진보정치인을 옥죄어 놓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미비한 법체계에서 중소영세상인을 대변하고자 했던 것이 삶이 송두리째 파괴되어야 했단 말입니까?

8년 전 대형마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소신행정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렁에 빠졌는데도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역 정치의 계산셈법으로, 혹시나 1%의 피해가 있지 않을까 좌고우면하는 행정으로 과연 풀뿌리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가혹한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에서도 '을'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고 촛불로써 국민 직접정치의 기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을'들의 발걸음을 가로막거나 늦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권불십년이 못 가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북구청장이나 북구의회는 알아야 합니다.

자승자박이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측은심정을 느껴야 할 때 물러서고, 분노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선출직들의 자세가 아니 것 같습니다. 스스로 옭아 묶어서는 아니 됩니다.

북구의회가 주민의 뜻과 청원을 수용하고 결정한 노력을 무시 당할 때 분노할 줄 아는 북구의회가 되길 바랍니다.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의 해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동권 구청장에게 결단을 통해 주민들의 구상금 면제 청원을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이진복 의원
○ 발언일시 : 제180회 임시회(2019. 2. 18.)
○ 발언요지 : 평화경협으로 북구 발전을 이루자.



존경하는 21만 주민과 이주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진복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이주언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북구주민의 대변인 역할을 성실히 해 주시는 동료의원께 존경을 표합니다.
21만 북구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북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헌법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단의 역사 70년 동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으나 남북한의 관계는 각각의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겨졌습니다.
작년 4.27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올해 다가 올 2차 북미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통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한반도에는 완전하고 지속가능한 평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 보면 정권의 교체로 또는 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남과 북의 평화는 멈춰야 했고 남북관계는 한없이 퇴보되는 과오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정권의 의지에 의해 대북정책은 급변했으며, 각 지자체 마다 통일정책이 일관성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울산 북구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정치적인 상황변동에 의해 사용되지 못하고 잠자는 기금이 되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남북정세에 따라 국민들의 혼란은 가중되었고 북한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만연했습니다.

최근에는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북한군 개입설을 발설하고 역사를 폄훼하고 왜곡하는 발언으로 한반도 평화의 기류에 찬물을 끼얹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의 발언은 역사가 됩니다. 통일된 미래에 우리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했는가는 역사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70여년간 국가의 정치적인 이념과 대립으로 인한 적대감 해소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11월 이주언의장이 발의한 평화통일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구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자각과 인식 확산, 통일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구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남북통일에 대한 친밀도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발빠른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통일 인프라가 수도권에 있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울산 북구지역만의 특성화된 다양한 경제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가올 통일에 지자체간의 교류 협력은 행정, 문화 차원에서 효율적인 국민적 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중앙정부와 민간을 연결시키고 이들의 역할을 활성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환영하고 북한의 새로운 선택을 지지하고 북한의 변화를

견인함으로써 북한 또한 스스로의 고립을 해소하고 경제 발전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현 정부는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지역경제에 획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으며, 울산의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의 전통 주력산업을 혁신하겠다 함은 울산의 경제발전에 총력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농소~외동간 국도 확장공사는 북구에 너무나 큰 선물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거점이 될 수 있어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울산이 남북경협의 본격화와 물동량의 수송에 대비한 도로망을 구축해 나가야 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동해안 경제벨트 구축을 위해서는 인프라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울산 농소~경주외동 국도 등을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와 항만 진입도 연계할 것에 대해 염두를 두고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북구도 북방경제 협력거점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미리 준비를 착착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박상복 의원
○ 발언일시 : 제181회 임시회(2019. 4. 12.)
○ 발언요지 : 호국사찰 신흥사의 삼존좌상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추진하자.



존경하는 21만 주민과 이주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1동, 송정동, 강동동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박상복 의원입니다.

2015년 8월 북한이 지뢰와 포격으로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에서 도발했을 때 높은 결기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우려하던 20대 청년들을 기억하십니까? 인터넷과 SNS에는 군(軍) 전역 이후 다시 꺼내 놓았다는 군복·군화 사진을 올리고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되겠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도발에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글을 쏟아냈습니다. 또한 가족과 친구, 국가를 위해서 전역을 미루겠다는 자발적 호국의지가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그렇습니다. 20대의 결기를 일부 정치인들은 곡해하나, 청년들의 국가를 위한 진정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울산 북구에도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호국 의지가 불길처럼 일어난 장소가 있었습니다.
울산 북구의 자랑스런 호국사찰 신흥사입니다.

신흥사는 통도사의 말사로 신라 선덕여왕 4년인 635년 처음 건립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신라시대부터 승병 100명 이상이 머물면서 무술을 닦았다고 하니, 호국사찰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흥사는 임진왜란 때 울산지역에서 승군 동원 기록이 있는 유일한 사찰의 가치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초기 병영을 중심으로 한 관군의 대응은 무력하여 병영성이 함락되었으며, 이후 지역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 기박산성을 근거지로 의병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기박산성과 가까운 곳에 있는 신흥사는 의병에 힘을 보탰을 뿐만 아니라 의병과 관군에게 식량을 조달하기도 하

고, 의병과 승병들 훈련 장소로도 제공한 기록이 있는 울산 북구의 자랑스런 사찰입니다. 정유재란 때 왜군이 후퇴하면서 전소시켰지만 1646년 절을 다시 세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곳 신흥사에는 석조 아미타여래 삼존좌상이라는 불상이 존재합니다. 가운데 본존불상은 1649년 조각승 영색에 의해 제작됐고, 좌우 협시보살상은 이보다 늦은 17세기 후반에 활동한 조각승에 의해 조성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울산시는 이를 사료적 가치로 인정해 市 유형문화재로 지정관리 중이나,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신흥사의 석조 아미타여래 삼존불상을 울산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을 추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를 위해, 신흥사 삼존불상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포함한 학술 연구 용역을 우선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불상에 대한 과학적 조사로 재질, 수법, 조성과정에 대한 명확화를 통해 역사적, 문화재적 의미를 재정립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화 함으로써 북구의 품격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북구는 신흥사가 포함된 관광지 8곳 대상으로 '관광지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등 의지를 가지고 관광산업을 육성 중입니다.

하지만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 북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흥사의 호국 사찰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다시 정립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찰음식, 자연경관, 무예수련 등과 연계한 템플스테이를 실시하여 체험형 관광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기박산성, 달현재와 연계한 특화된 호국 문화재 코스 개발로 확장하길 요구 하는 바입니다.

이동권 구청장께서는 기박산성, 달현재와 함께 왜란 때 최초로 승병이 봉기한 신흥사를 아우르는 지역에 의병 탐방로를 개설하여 우리 선조들의 얼과 기상이 담긴 훌륭한 북구의 문화자산 보존이 후손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울산시에 강력히 요청해야 합니다. 의병 탐방로 개설을 위해 연구회나 학술 심포지엄 등에 문화자산에 대한 충분한 연구 예산을 배정하여 제대로 된 호국의 의미를 후손에게 설명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기박산성은 임진왜란 때 1,000여명의 의병을 주축으로 신흥사 승군까지 합진해 애국충절의 결의를 다진 곳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울산시 북구 문화원에서는 해마다 '기박산성의병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흥사는 임란 때 울산 지역 일대에 있었던 승병을 지휘했던 군사령부의 역할을 한 곳으로 호국정신의 용소인 곳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호국 코스가 어디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신흥사 입구에는 일명 학자수로 불리는 400년이 넘은 회화나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회화나무의 꽃이 피는 시기가 음력 7월 정도로 중국에서 과거 시험 중 진사를 치르는 무렵과 비슷하여 관직을 상징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국가를 생각하는 용기와 지혜의 스토리가 있는 신흥사를 울산 북구의 정신적 명당으로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 모든 확장을 위해서는 신흥사의 국가 문화재 지정이 필수적입니다.

존경하는 21만 주민과 이주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최근 고등학생 및 대학생 사이에서 천안함 배지 달기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천안함 배지는 '46+1'이란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북한과 싸우다 전사한 46명과 구조 활동 도중 순직한 한준호 준위를 상징하는 이 숫자를 청년들이 가슴에 달고 북한의 도발과 이를 막다가 희생된 군인들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청년들은 2년 연속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불참한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비교하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추모하는 문화가 생활 속에 배어 있는 미국의 최고 지도자들 모습이 부럽다 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의 호국문화를 부러워하는 대신 우리 청년과 후손들에게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고 호국의 정신을 일깨우는 선물을 위해서라도 신흥사가 제대로 평가 받길 기대합니다. 특정 종교 시설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울산 북구의 품격 있는 문화재적 가치로 평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임채오 의원
○ 발언일시 : 제181회 임시회(2019. 4. 12.)
○ 발언요지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존경하는 21만 북구 구민 여러분! 이주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의회 운영위원장 임채오 의원입니다.

저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국가직으로 전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일 강원도 강한 바람으로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등 여러 지역으로 불길이 옮겨붙어 짧은 시간 동안 초유의 산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산불의 산림 피해 규모는 잠정적으로 175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화재에서 온 국민은 함께 아파하고 슬퍼했습니다. 화재 진압과 복구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피해 지역이 조속히 복구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온 국민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강원도 산불 이후 국가가 풀어야 할 과제 중 소방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신속한 재난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입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청원에 22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하였고 한 청원인은 “꼭 국가직으로 전환해 소방공무원에게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하고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 쓰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지방직 신분인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찬성 의견이 78.7%입니다. 지자체별로 상이한 재정 자립도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인력·장비에 큰 편차가 생기고 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에도 지역 차이가 발생하는 악순환을 멈추어 달라는 청원이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비록 이번 산불은 큰 피해를 남겼지만, 소방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진화작전으로 하루 만에 큰 불길을 잡아 '최고의 진화 작전'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일에서 5일 밤사이 동원된 소방차량은 872대, 소방공무원 3251명, 산림청 진화대원, 의용소방대원, 군인 시·군 공무원, 경찰 등 총 1만여 명이 산불 진화에 투입됐습니다. 강원도로 지원 가는 소방차 행렬은 '속초로 향하는 영웅들'이라는 제목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소방차를 빠르게 동원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2017년 6월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소방본부는 안전처 산하 조직에서 '소방청'으로 분리되면서부터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였으며, 이는 소방직 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어야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이번 고성 산불 진화 과정에서 보았듯이, 소방관들의 활약에 많은 국민이 격려와 응원을 보내고 있으며 현재 계류 중인 「소방기본법」과 「소방공무원법」등이 조속히 처리되어 대형 참사와 화재가 났을 때 안타깝게 숨지는 소방관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울산의 경우, 현재 소방공무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장비 부족보다는 소방차나 특수 소방차를 몰고 갈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소방펌프차량에 탑승이 4명~5명 정도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2명~3명의 소방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 장비도 결국 사람이 있어야 활용 가능한데 한 번 출동하고 나면 2차 출동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전이나 광주의 경우 소방공무원 2000여명에 비해 석유화학공단이 있는 울산은 1000여명으로 그 절반 수준입니다.

울산은 소방인력 부족으로 지난주에 129명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대거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 재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원계획이 2022년까지 잡혀있습니다.

실제 소방청 등을 제외한 소방 인력의 약 99%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직 공무원으로, 매 화재 당시 지자체의 재정에 따라 소방관 투입 인원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에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북구는 등산객 실화나 소각 등에 의한 산불발생을 줄여야 합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산불감시원의 인화물질 소지 여부 확인에도 불구하고 거짓 대답 후 소지하고 산을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산객들에게 인화 물질 보관함 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등산객의 실화로 확산되는 대규모 재난성 산불을 줄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강원도 산불진화 대응처럼 북구도 신속한 진화작업이 될 수 있도록 산불재난대비 매뉴얼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사전 모의 훈련이나 드론과 같은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산불 발생 시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산불대응 시스템을 수시로 보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헬기 진화가 완료된 후 4차 혁명의 상징인 드론에 열 감지 카메라를 장착하여 공중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지휘본부에 잔불 상황을 전송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산불진화가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방직 공무원 국가직 전화의 필요성, 소방공무원 인력 확충, 그리고 첨단 장비를 활용한 산불예방 감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구에서도 단 한 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훈련이나 점검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박상복 의원
○ 발언일시 : 제182회 제1차 정례회(2019. 6. 24.)
○ 발언요지 : 오폐수 유입에 따른 모내기 피해농가 보상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21만 주민과 이주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1동, 송정동, 강동동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박상복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다가오는 내일은 북한의 침략에 의해 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6.25전쟁 69주년입니다.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한 몸 바치신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추념 드립니다.

지난 5월 18일 농소1동 원지마을회관 근처 모가 말라가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초기 단순 냉해 피해로만 여겼지만, 모판에서 하수구와 같은 냄새가 나고 모의 뿌리가 얽히지 못해서 뿌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상태를 발견 후 피와 땀으로 한 해 농사를 준비하던 농민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확한 원인분석이 필요하겠지만 피해 논 옆쪽의 옹벽에서 생활하수가 새어 나오는 점을 근거로 피해농가는 오폐수의 유입에 따라 뿌리가 썩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판의 모가 다 자란 상태에서 농소1동 2가구, 송정동 1가구에서 7천판 이상의 모판이 피해를 본 만큼 집행부는 오폐수 유입에 따른 문제인지, 질병에 의한 피해인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더 적극적이고 절실한 원인분석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번 모내기 피해를 경험하면서 피해 농민들의 감정이 격앙되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소통해주신 농수산과와 건설과 공무원들께 피해 농가 및 지역주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소농협 육묘배양장, 울주군 등에 연락해 모판을 미리 확보하는 등 농민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농수산과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재차 드리는 바입니다. 비가 오는 궂

은 날씨 포함 2차례 김수호 과장님, 정연태 주무관님 및 관계자 25명이 직접 현장에서 썩은 모판을 제거, 처리하여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격앙된 감정은 어느새 감사와 희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수시로 원인지점으로 추정되는 농업용수관로를 신속하게 리워크하여 문제 지점을 수리하였습니다. 지난 3월초 농업용수관로를 청소하는 등 오염되지 않은 농업용수가 공급되도록 업무 지원까지 하여 주신 점 역시 농민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의 도움 및 농소1동 주민자치위원, 통장님의 격려와 지원까지 더해져 지난 6월 7일 피해 못자리 농가의 올해의 모심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젠 정확한 원인분석을 바탕으로 한 농지피해에 대한 보상을 고민해야 합니다. 농민의 주장대로 오폐수에 따른다면 오폐수가 새어 나온 건설의 문제가 됩니다. 저는 농민들이 제기한 공사에 대해 정확한 검증 작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일부 농업용수 관로에서 생물학적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이 기준치 이상 기록된 시험, 검사성적서 결과가 확인된 바, 부적합 사항에 대한 오염 원인을 인근 식당의 음식물 쓰레기 유입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꼼꼼히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오폐수의 별도 처리 하수관로가 없어 농업용수 관로에 생활하수가 함께 흐르는 구조적인 문제는 북구청이 울산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 후 설치해야 하는 근본적인 개선을 조속히 이끌어 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못자리 피해로 농민들은 3,500원~3,700원 하는 모판을 7천판 이상 내다 버린 농민들은 막대한 시간, 비용부담을 겪었습니다. 구청에서 육묘배양 금액을 일부 지원한다손 치더라도 한 판당 2,000원의 자가 비용이 부담되었습니다.

집행부는 피해 농가의 육묘 훼손 정도, 못자리 크기, 육성상태 등 고려하여 보상 진행을 고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피해 농민이 정확하게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지만 또다시 지역주민과 행정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지사지의 자세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울주군의 경우 못자리 관리 소홀에 따른 문제발생시 영농자재지원비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못자리에 실패하는 농가, 이상기온, 뜬모 현상 등 발생 시 농가에서 모두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보상을 통해 보전해 주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알다시피 작금 북구의 농촌은 아주 어렵습니다.

농업인구 감소로 인한 일손 부족·농촌 인구의 고령화·값싼 수입품의 범람 등 우리 북구 농촌 발전을 가로막는 악재들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새로이 조성된 신시가지는 편리한 인프라와 정치인의 관심으로 사소한 민원까지 초스피드로 해결되지만 평생 땀 흘리며 노력한 우리의 농촌 현실은 어떠합니까?

농민에게 집행부의 세심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중 하나가 폭염과의 싸움입니다. 농업은 날씨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산업인 만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이상기상 상시화에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민들에게 폭염 때 행동요령과 가축 및 축사 관리요령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상시 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농촌에는 고령화로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많은 만큼 이들이 폭염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집행부는 마을 단위의 세심한 관심과 돌봄을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번번한 집행부는 되지 맙시다. 만약 건설의 문제에 따른 오폐수가 모를 상하게 하고 농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면 여러 변명보다 정중히 사과하고 보상을 실시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못자리 피해 진행상황, 추진계획 등을 해당 농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을에 풍년이 된 햅쌀로 밥 한 끼 대접하겠노라는 피해 농민의 우직한 약속을 우리는 응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밥 한 끼에 올 봄에 있었던 못자리 피해는, 막걸리 안주 삼아 해프닝이었노라 하며 웃는 시간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임채오 의원
○ 발언일시 : 제182회 제1차 정례회(2019. 6. 24.)
○ 발언요지 : 참여와 소통, 1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존경하는 21만 북구 주민과 이주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의회 운영위원장 임채오 의원입니다.

먼저, 북구 발전을 위해 지난 1년간 지역을 꼼꼼히 챙기며 주민과 함께 열심히 민생 현장을 뛰어 다닌 북구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1997년 7월 15일 초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가 개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에 이주언 의장, 백현조 부의장, 임채오 운영위원장 의장단을 구성하고 박상복의원, 정외경의원, 이정민의원, 임수필의원, 이진복의원 8명의 의원들로 제7대 북구의회가 구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 속에서 출범했습니다.

우리 북구는 민생과 지역경제 등 산적한 현안 문제들이 있습니다. 북구의원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상생과 협치는 북구의회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가장 큰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북구의회는 지역구 대표로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이 집행부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제174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올해 6월 제182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기까지 9번의 회기를 거치며 예산안 및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안 심사 등을 통해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예산안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추진했던 정책 내실을 다지고 지역현안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각종 결의안, 5분 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집행기관인 북구청과 정책 소통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제180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부산~울산 광역전철 송정역(가칭) 연장운행 촉구 결의안'을 시작으로 '송정역(가칭) 광역전철 연장운행 추진위원회'가 주민들 염원을 담은 약 7만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제7대에 들어와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했던 주요현안 사업들에 대해서도 의회와 집행부 협업으로 활력을 더했습니다. 울산 도로망에 동·서축을 추가하는 울산외곽순환도로건설 뿐만 아니라 지지부진하던 강동권 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북구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활발한 현장활동 및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강동초등학교 인근 풀베기작업, 자율방범활동, 재활용분리수거 등 현장체험 활동을 하였으며 강동문화센터, 달천철장, CCTV 통합관제센터, 정자활어직매장 등 현장방문을 추진하여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을 통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현황점검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끝으로,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우리 구 현안사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관광거점 조성사업 및 지역자원개발 사업, 광주형 일자리 사업 및 자동차산업 지원, 아동 친화도시 등 선진 시설방문과 정책 사례를 연구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함께 일본 제철문화 선진지 견학을 통해 달천철장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각인시키는 뜻깊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정재숙 문화재청장 울산방문 때 이동권구청장님이 직접 북구지역 문화사업 브리핑을 하셨고 북구의회도 의원 8명이 전원 참석하여 우리 구 숙

원인 문화사업 추진을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삼존불좌상과 복장유물을 시지정문화재에서 국가지정문화재 승격과 기박산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요청하였습니다.

영국의회는 1688년 시민혁명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7세기 영국의회와 시민들은 '왕은 법 위에 선다'는 제임스 1세의 왕권신수설에 반대하였고 '명예혁명'과 '권리장전'은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입헌군주제 개념으로 의회와 시민이 통치 권한을 가지게 된 역사적 사건입니다.

북구의회도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입니다.

낙후된 지역 도로·하천 정비, 재난안전, 인구증가에 따른 쓰레기 수거 문제, 우수관 정비, 노후된 경로당과 아파트, 빈집 문제, 주차난 등 주민불편 사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이 생활 곳곳에 미치지 못한 점을 반성하며, 앞으로도 21만 북구 주민들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주민을 최고로 생각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의정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 활동을 위하여 업무 보고와 각종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이정민 의원
○ 발언일시 : 제183회 임시회(2019. 8. 26.)
○ 발언요지 : 달천철장 관광콘텐츠를 적극 개발하여 북구 관광 자원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하자



존경하는 22만 주민과 이주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2동, 농소3동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이정민 의원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우리 북구의 달천철장에서 삼한시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약 2,000년 동안 철이 생산 되었으며 달천철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일본을 비롯한 외국과의 무역거래가 있었다는 문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철기문화를 선도했던 이 곳 달천철장의 쇠부리 철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전통 제철기술을 복원하여 우리의 철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다면 달천철장의 역사적 보전가치와 북구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인 관광콘텐츠 개발에도 획기적 성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달천철장은 당시 유일한 토철을 생산하는 대한민국 철 문화의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했던 곳입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문화적 가치가 높은 재산들을 너무나도 소홀하게 방치해 왔고 달천철장의 철 문화에 대한 우수성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데 소홀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몇 해 전부터 쇠부리 복원 사업단도 생겨나고 당시의 철 생산 과정들을 재현한 쇠부리 축제를 전국단위 축제 행사로 승화시켜 나가면서 우수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늦은 감은 있지만 알려 나가고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다행스런 일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인 우리 북구청에서도 이러한 소중한 문화유산과 유적지를 제대로 보존하고 당시의 제철기술을 복원하는데 행정력과 예산을 적절히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달천철장을 중심으로 쇠부리 공원과 철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전시장을 빨리 완공하여 우리 북구만의 소중한 관광자원화를 일궈야 합니다. 국내·외 철 문화 학술단체들이 직접 달천철장을 찾아와서 학술세미나는 물론 철 문화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달천철장 컨벤션센타 건립도 지금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와 더불어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중앙의 문화재청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정책적 지원은 물론 국가 예산 확보에도 전력을 쏟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열악한 현재의 북구의 예산으로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 구청장께서 집권당 소속이기에 제대로 된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울산시 그리고 정부단체와 업무 협조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예산 확보와 정부 차원의 관련 규정 제정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 북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달천철장 주변의 SOC사업에도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또한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박상복 의원
○ 발언일시 : 제183회 임시회(2019. 8. 26.)
○ 발언요지 : 울산북구, 꽃 단지 조성의 성공을 위한 제언



존경하는 22만 주민과 이주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1동, 송정동, 강동동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박상복 의원입니다.

울산 북구는 도심지 내 아름다운 가로 경관 조성 및 관리, 구민 정서함양 기여를 목표로 '도시 전체가 꽃과 정원이 되는 도시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도시 유휴공간과 주택, 공원, 가로변 등에 꽃을 심고 가꾼다는 계획인데 지역 공한지 곳곳을 꽃으로 채우는 명분에 반대할 주민이 없을 것입니다. 가시적인 성과로 농소운동장 입구에 해바라기가 피었고, 시례잠수교에 코스모스가 주민들의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 차례 5년간 15억 이상의 주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도시 꽃 단지 조성' 사업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지속 당부하고 있습니다.
'1대10대100'의 법칙이 있습니다. 일명 페덱스 이론으로 품질경영 부분의 교과서와 같이 인식되는 법칙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설계나 기획 단계에서 즉시 고치는 데는 1의 원가가 들지만, 책임 소재를 규명하거나 문책당할 것이 두려워 잘못을 숨기고 진행하게 되면 10의 비용이 들며, 이것이 고객 손에 들어가 손해배상 청구 건이 되면 100의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실패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설계, 기획 단계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불량 및 결함 가능성을 미리 제거하는 것이 최선임을 증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만큼 세밀한 계획이 중요하므로 재차 강조하는 바입니다.

올해는 북구는 기존 건설과의 경우 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꽃 단지 조성에 맞게끔 자연 친화적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이름만 변경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부서별로 36개 과제 3억 가까운 예산으로 실행 중입니다. 꽃 심기가 얼마나 긴급한 일인

지 몰라도 재해, 재난 관련 예산편성이나 국가 또는 시(市)로부터 받은 교부금의 조정 등의 사안이 아님에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경우는 지나치지 않나 사료됩니다.

단체장의 공약 사항이라 해서 비용 편익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무리하게 혈세(血稅)를 집행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를 위해 첫째, 현재 꽃단지 조성 컨트롤타워 역할을 농수산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업무분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수산과의 존재 이유는 살기 좋은 복지 농어촌 건설로 농업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반면에 공원녹지과 목표는 도시공원 디자인으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도시 조성이며 공원 가꾸기, 녹지 공간 조성, 도시공원 만들기 등의 주요 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꽃단지 조성 추진 업무가 농수산과에서 수행해야 하는지 명확한 설명이나 공감대도 없습니다. 부서간 이기주의인 '사일로(Silo)' 현상을 없애는 방법 중에는 조직원이 서로 인정하는 업무 분장을 시행하는 것인데,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내부 조직원과 외부 수혜자가 동의가 되어야만 권한이 생기고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수반되는 만큼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를 담당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농수산과에 업무를 추진하려면 농민의 수익증대 사업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 방안 중의 하나가 구청이 직접 화초 육성 등의 기능을 가진 양묘장을 운영하거나 지역 화훼 농가의 화초를 직접 구매하는 것일 겁니다. 북구는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제3대학을 운영 중인데 구청 양묘장에서 필요한 지식 및 맞춤과를 신설하여 은퇴자를 교육 후 고용하는 선순환의 효과를 기대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둘째, 꽃단지 조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에 대한 인원과 조직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여름철 가장 많은 민원 중의 하나가 풀베기 및 잡초제거임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 포함해서 이해하실 겁니다. 도시 미관상의 문제뿐 아니라 풀에 자전거가 걸려 넘어진다던 지, 도로변 풀을 피하고자 차도로 다니는 등 안전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안입니다. 주민을 동원에 꽃을 파종하고 심고 사진을 찍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꽃 단지라는 이름으로 공한지에 조성된 곳이 잡초 밭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거진 잡초 사이에 간혹 꽃이 보이고, 토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꽃을 심다 보니 더운 여름에 꽃이 말라 죽는 등 사후관리가 철저하지 못해 흉물로 전락 할 수 있기에 잡초제거, 물주기, 주변 정비 등의 인원과 장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꽃뿐만 아니라 다년생으로 관리되고 녹음을 느낄 수 있는 나무 심기를 병행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꽃은 자주 물을 줘야 하고, 주변 풀 제거 등 관리가 까다로운 만큼 꽃을 키우기 어려운 곳은 나무로 대체, 병행하여 도시를 가꿔줘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북경에서 업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북경에는 학자수 나무라 불리는 회화나무가 가로수 역할을 하는 것을 목격했는데, 회화나무는 미세먼지 흡착이나 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꽃이 피는 시기가 진사 과거시험이 있는 음력 7월이라 재물과 관(管)운을 상징한다 해서 중국인들이 사랑하는 가로수였습니다.

이렇듯 나무나 꽃에 지역 향토 문화나 설화 등 스토리를 가미해서 북구를 상징할 수 있는 꽃 단지 조성토록 설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한지 자투리 땅 뿐만 아니라 누구나가 찾을 수 있는 대형화되고 규모 있는 꽃단지 조성 역시 필요하기에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요.

존경하는 22만 주민과 이주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꽃이 정치인에게 비유되는 말 중의 하나가 '권불사년(權不四年)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입니다.

사년 가는 권세 없고 열흘 붉은 꽃 없듯이 정치인이 권력을 잡았을 때 가장 화려하여, 그 화려함에 눈이 멀고 귀를 닫아 제대로 주민을 위한 비용편익분석, 예산사용의 우선순위를 혼돈 할 수 있습니다. 꽃이 먼저인지, 소방도로가 우선인지, 소상공인 지원이 우선인지 등 우선순위에 정치인의 신념 외 과학적, 법률적 전문가 집단인 공무원이 올바른 조언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 집단인 공무원의 존재 이유입니다. 정치인의 판단과 전문가인 공무원의 판단이 균형을 이룰 때 공익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의회는 이중 삼중으로 비판하여 더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올린 사항을 원안 가결이 아닌 주민의 혈세를 생각하여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바라옵건대, 북구 꽃 단지 조성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정치인과 과학적 판단을 하는 행정이 가시적 성과만 바랄 것이 아니라 함께 깊이 있는 설계를 고민해 주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이진복 의원
○ 발언일시 : 제183회 임시회(2019. 8. 26.)
○ 발언요지 : 역사문화 전통을 발판으로 북구형 관광 중심지로 만들자!



사랑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의회 이진복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4일 정재숙 문화재청장의 울산 북구 방문 시 이동권 구청장님께서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의 보전과 관리 방안 등을 직접 요청하였고, 북구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계승을 위한 개발에 탄력을 받고 있으며 최근 이상헌 국회의원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침체되고 있던 강동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발의된 관광진흥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강동권 대형 프로젝트사업들은 물론이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역사적으로 문화의 고장이며 고헌 박상진의사, 구충당 이의립 선생 그리고 효자 송도선생을 배출한 충절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기박산성 역사공원조성과 더불어 유포석보, 유가봉수대, 신흥사, 달천철장을 연결한 역사벨트화사업을 계획하고 북구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작업을 통해 선사 청동기문화 중산리 고분군, 고인돌, 관문성, 염포동 소금포, 정자항 미역바위 등이 어우러지는 관광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해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달천철장의 광산복원과 관련해서 민·관·산·학의 협업을 통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전시관과 영상콘텐츠 등의 개발을 통해 북구 지역이 대표적인 한국의 철 생산의 중심이었음을 알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사업은 민·관·학이 주도해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하며,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 산업화와 첨단기술의 접목 등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안과제로서, 북구는 미래 먹거리인 관광산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래세대인 아이들을 위한 역사문화 체험 콘텐츠개발과 이색적인 커뮤니티 공간,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는 문화행사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광벨트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이겨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발판을 만들어야 할 시기이며 북구의 관광문화 자산을 차별화하여 국내·외에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강동개발과 관광정책 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박상복 의원
○ 발언일시 : 제183회 임시회(2019. 9. 9.)
○ 발언요지 : 땅바닥에 패대기쳐진 공정세대 청년들의 자존감.



사랑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박상복 의원입니다.

기초의회는 정치권에서 논하는 이념논쟁과는 거리가 먼 대한민국 국민들 속에서 함께 생활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해 듣고 있는 또 하나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추석 인사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분들의 울분을 담아낼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생산, 부품소싱, 투자검토 등 업무를 위해 남미의 파라과이부터 유럽의 독일까지 50여개 국을 다녀봤습니다.
광복 이후 사회주의 이념이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자랑스런 정치인들의 선택이 오늘날 뉴욕 지하철에서 삼성전자 휴대폰을 볼 수 있고, 모스크바 시내에서 현대자동차의 로고를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소 그렇게 애국심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경제력을 바탕으로 민주화를 이끌어 낸 자랑스런 대한민국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허나, 지금의 이 자랑스런 대한민국 나의 조국은 조국이란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 명으로 인해 진영논리로 정의가 갈리고 공정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가장 큰 범죄는 지식층의 반칙, 특권층의 말과 행동이 다른 유체이탈법에 청년들이 대한민국에 대해 실망하고, 자랑스러워 해야 할 국가에 대한 자존감이 패대기쳤다는데 있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 가슴 뭉클했던 청년들이 지금 대학가, 거리에서 가슴속에 분노를 집회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단지 '당시 제도가 그랬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며 사회공정,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을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런 뜨거운 논쟁을 제외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몰락을 촉발한 것도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학점 특혜 아니었습니까? 학사 비리가 청년층부터 부모 세대까지 '이게 나라냐'의 분노를 터트렸습니다. 당시 반칙과 특권으로 대표되는 기득권을 가진 '그들만의 리그'가 없기를 바라면서 촛불을 든 청년세대의 배신감은 어떻겠습니까?

문재인정부는 지나친 이념 정책과 무능으로 경제의 각종 지표는 하향곡선이 되었고 안보는 위태해졌으며 외교는 왕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청년들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나라 운영에 대한 일말의 기대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동산투기, 펀드문제, 사학비리 등 가족사기단의 모습을 의혹이 있더라도 국민들은 법적 판단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국 자녀의 입시 특혜는 국민의 정서 가장 예민하고 아픈 부분을 건드린 꼴입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필기시험 한 번도 안보고 갈 수 있는 신통방통한 진학스토리는 뒷배 없는 학부모에겐 상실감을 주었고 일부 특권층이 반칙으로 기득권을 유지한 민낯을 드러내었습니다.

'조선시대 언관(言官)에게 탄핵당한 관리는 사실 여부를 떠나 사직해야 했고 무고함이 밝혀진 후에 복직했다' 이는 조국 자신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언론에 의해 수많은 비리 의혹이 밝혀지고 있는데 자신의 말대로라면 탄핵당한 꼴이다.

하지만 그는 '의혹만으로는 사퇴가 안 된다. 국민정서상 괴리는 있지만 불법은 아니다'라고 이중생활에 취해 버렸습니다.

그 많던 개념 연예인은 진영 논리 속에 단 한마디도 못하는 사이 조국 후보자는

국민의 정서에는 도덕적 실형자일 뿐이다.

남에게 가혹하고 자신에게 관대하려면 정치, 공직자가 아니라 좌파사상가로 남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22만 주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

자신의 흠결에 감수성이 무너지더라도 내편만 있으면 된다는 착각은 사회를 더욱 불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남에게는 칼날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같은 편에겐 너무도 자애로운 기준을 말하는 것이 과연 좌파 정치이고 진보정치 입니까? 청년들은 절차적 불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실력과 노력에 걸맞지 않은 불공정한 결과에 대해 용인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진 조국은 수사의 대상일 뿐 개혁의 대상이라고 자신을 포장해선 안 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외치면서 자기편끼리 특별한 기회, 특별한 과정, 특별한 결과를 누리는 집단에 대해 미래의 공정세대인 청년들이 보수, 진보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를 바로 잡아주길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제자리에서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성장시켜온 대한민국 국민의 단결된 저력을 마음껏 다시 펼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의 모습을 국민들께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땅바닥에 패대기쳐진 청년들의 자존감이 다시 살아나 자랑스런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임수필 의원
○ 발언일시 : 제185회 제2차 정례회(2019. 11. 20.)
○ 발언요지 : 한미방위비 분담금은 이제 국민보편복지를 위해 사용해야 국민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과 북구청 직원 여러분, 민중당 임수필 의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없어 곳곳에서 작년보다 못하게 예산이 깎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재정 상황이 힘든가 봅니다. 그러면 주민들 살림살이도 힘들어졌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저는 민족의 이익과 노동자 서민의 입장에 서서 미군이 터무니없이 얘기하는 한미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반대합니다.

미국은 무슨 근거로 우리나라에 약 6조원이라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올해 우리나라가 분담금으로 지출한 비용이 1조389억원이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의원님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미국이 재정주권을 침해하고 강압으로 혈세를 강탈하는 것을 이제는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 여러분, 미국이 우리나라에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와 미국사이에 체결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보면 '미군부대가 사용할 토지는 한국이 제공할 뿐 그 외는 미국이 분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천문학적인 미군기지와 시설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바로잡아야 할 시기에 주둔비용까지 덤으로 내게 된 것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1991년부터 만들어진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때문입니다.

협정 초기에는 1천여억원으로 시작해서 매년 천억이상 늘어나다가 올해 분담금은 1조3백8십9억원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오직 일본과 한국만이 내는 부당한 비용입니다. 필리핀은 미군에게 기지를 빌려주면서 오히려 기지사용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10월 초 한 보수신문에 게재된 칼럼의 내용입니다

"지난 8월 뉴욕에서 열린 대선자금 모금행사에서 트럼프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임대료를 수금하러 다닌 일화를 소개하며 '브루클린의 임대아파트에서 114달러 13센트 (15만이하)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를 받는 게 더 쉬웠다'고 허풍을 떨었다.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10억 달러 가까운 수준으로 인상한 데 대한 자화자찬이다.

방위비 분담금을 아파트 월세에 비유한 것은 참기 힘든 모욕이다. 미국은 집주인이고, 한국은 세입자란 소리 아닌가. 아무리 악랄한 집주인도 한 번에 집세를 5배로 올리라고 요구하진 않는다. 한국을 호구로 여기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요구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주권국가의 지방 의원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자괴감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분노스럽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들 세금이 방위비분담금이란 명목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평택에는 10조가 넘는 예산을 들여 '세계 최고의 휴양지 수준의 기지를 만들면서 펑펑 쓰고도 남았다고 합니다.

야구장과 소프트볼경기장, 18홀 골프장, 국제 경기급 수영장, 워터파크, 볼링장, 영화관, 쇼핑몰 등 수많은 편의 복지시설이 있어 미군들은 세계미군기지 중에서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최고로 친다고 합니다.

이처럼 연간 1조원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각종 명목으로 주한미군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으로 이자수익을 얻고 미군의 목욕비, 전기 세탁, 폐기물처리 등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6조원을 요구하는 근거로 새로운 항목들을 살펴보면 주한미군 주둔경비와도 무관한 전력자산 운영비용과 작전지원 항목, 주한미군의 인건비까지 포함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멋대로 써도 묻지도 못하는 비용, 한반도에 불안을 조성하는 비용 등이 우리의 국민들 세금으로 쓰여 평화를 해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혈세로 지급된 방위비분담금이 주일미군 항공기 정비에 지원되고 있다는 것은 한미간 특별협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일본 아베의 경제침략에 맞서 일본상품 불매운동과 지소미아 종료로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시점에 매우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한반도는 평화의 시대로 가고 있음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을 줄여야 합니다.

북구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우리 북구의 적은 예산으로 온갖 민원에 시달리며 살림을 사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산의 쓰임을 잘 아시는 혜안을 가진 전문가이시니 6조란 돈의 규모를 잘 아실 것입니다.

6조원이면 아동수당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기초연금 2배 이상, 농민 240만명에게 월20만원의 농민수당, OECD평균 장애인 예산 확보 , 병사들의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 인상, 비정규직 문제 해결, 청년수당확대, 대학의 반값등록금을 실현시켜 학자금과 배우고 싶은 요구 해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2019년 우리나라 여성가족부 예산과 통일부 예산이 이제야 겨우 1조원이 조금 넘는 시기이며 100만이 넘는 대도시인 울산광역시의 예산이 3조6천억원입니다.

각 광역시 지자체 마다 500억씩 나눠준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우리 북구의 보편복지가 얼마나 확대될 수 있겠습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동네 청소년문화의 집,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회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위한 마더센터, 인생이모작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일자리, 취약노동자들의 건강한 노동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지원, 중소업체와 중소상인들 지원 등 우리 사회 힘들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 민생복지에 쓰인다면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워 살림이 팍팍할 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평화의 시대를 맞이해도 자주국방의 예산은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예산들은 삭감해야 합니다. 이런 국가예산에 대한 결정은 우리 정부만이 자주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국민의 복지를 위해 써야 할 천문학적인 혈세를 우리 국민, 국회, 정부의 뜻에 어긋나게 근거가 확실치 않은 곳에 협정과 규정을 무시하면서 사용한다는 것은 자주 재정주권 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군에게 지출되는 수조원의 비용은 이제 우리의 삶은 바꾸는 보편적 복지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노동자 서민이 근심 걱정 없이 복지와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박상복 의원
○ 발언일시 : 제185회 제2차 정례회(2019. 11. 20.)
○ 발언요지 : 조삼모사식 북구 행정기구 조직개편안에 반대한다.



존경하는 22만 주민과 이주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박상복 의원입니다.

북구청은 '기획조정실 신설 등을 포함'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당시 현실적으로 실장을 누가 담당할 지 관심이 많았습니다.

신설되어 야심차게 출발하는 조직인 만큼 구청장님의 기대와 사업달성 목표가 있을 진데, 담당리더가 리더십에 대한 흠결이나 노조, 외부 사회단체들의 반발 없이 업무 역량을 발휘하여 이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었습니다.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급히 기획조정실을 없애고 일부 부서를 부구청장 직속체제로 개편하였지만 이 조직도 역시 단기 6개월짜리로 존재 되는 게 아닌지, 이에 대한 제언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조직개편안을 접하면서 개편 조직의 규모가 직원의 역량을 배가 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최근 기업체들도 조직의 규모가 직원의 역량을 누르면 조직은 성장하지 못하고 망함을 알기에 조직의 규모와 직원 역량의 차이를 어떻게 줄일 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하복종 통제에 맞춰졌던 조직을 대수술하여 수평적 문화로 바꾸거나, 보고서 축소, SNS 보고 등 다양한 시도로 조직이 비대해져 의사결정 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막고자 노력 중입니다.

이에, 시발점이 컨트롤타워의 축소와 일할 수 있는 현업 사업부서의 보강이 그 트렌드라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간에 삼성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미래전략실을 없애고 본사 기능을 강남에서 수원으로 이전 하였으며 현대자동차 역시 기획조정실과 기획실

역할을 축소하여 각 사업부 단위에서 의사결정을 하여 직원들의 역량을 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수의 포춘지 500대 기업은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과감히 권한 이양을 통해 사업부에서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북구청은 현업사업부서보다 전략사업담당을 두고 소위 현업부서에서 말하는 옥상옥, 현업부서 빨대 조직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신설되는 전략사업담당관에서 공모사업 업무 분장이 되어 있는데 과연 직접 공모사업을 수행하여 예산을 확보할 지 아니면 해당 현업 부서로 업무를 F/UP만 할 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4개 과를 부구청장 직속으로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대한 스크린이나 부구청장의 업무 과중, 타 부서에 비해 상위 부서의 역할 등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둘째, 현 국회의원부터 선출직 의원들이 미래의 먹거리는 관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혼 없는 멘트는 아닐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로 되면서 기존 관광개발해양과의 계가 축소됩니다. 동구의 경우 우리와 유사함에도 실급으로 해양관광정책실을 두어 전문성을 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 북구의 방향은 어떤지에 대한 청사진이 보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체육과는 문화, 관광, 체육 세 분야가 하나의 별도 부서가 되더라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의 많은 업무량일진데 한 부서의 과장께서 담당한다는 것은 업무량 증가가 뻔한 사항입니다. 체육만 보더라도 봄, 가을 체육 시즌에 주말도 없이 항상 체육행사에 참석하는 과장님은 무슨 죄입니까? 항상 체육회는 별도 조직이라고 대답 하면서 체육회장의 의전을 위해 주말을 희생하는 사항 역시 제고 되어야 합니다.

문화, 관광, 체육 어느 하나 덜 중요한 것이 없을 진데 어디에 전문성을 두고 의사결정을 고민해야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다시 한 번 미래의 먹거리를 관광이라 하는 말이 영혼 없는 멘트는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셋째, 단순히 당초 예산 편성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사회복지비가 전체 예산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이에 따른 각 동의 일선현장에서 민원해결 및 복지 사각

지대를 줄이고자 온 몸으로 고생하는 사회복지 계열에 대한 승진 및 예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부서의 업무 강화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무관 승진 요건이 충족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수 계열인 사회복지직이 동구, 중구, 울주군에 5급 이상이 각 1명, 울산시에는 5명이 근무 중입니다.

과연 우리 북구는 어떤지 되묻습니다.

넷째, 어린이집 입학 전 그리고 퇴임 이후의 구민 교육 및 케어에는 가족정책과 및 사회복지과 등의 지원/담당이 있으나 유치원 입학에서 청·장년층까지에 대한 평생교육 케어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학교, 회사 등의 타 조직에서 담당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구민을 위해 좀 더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도서관과 일 것입니다.

도서관과 역시 중앙도서관을 필두로 전문직 개방형 공채를 통해 주민과 함께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고민해 보는 것에 대해서도 제안 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 후 주민소통실 신설, 북구문화예술회관 전문개방형 공채 등으로 기존과 다른 조직 구성을 시행 중입니다. 주민과 더 다가가고 전문성 있는 인재를 통해 주민의 문화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점에 공감이 되듯이 도서관과도 중앙도서관을 메인으로 하여 별도의 사업소 운영에 대해 제안 드립니다.

존경하는 22만 주민과 이주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니즈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조직은 유연하게 변화해야 하며 그 첫 번째는 바로 내부구성원간의 합의가 그 출발입니다. '개인이 조직을 이길 수 없다' 했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집결된 조직은 시간이 갈수록 관습화 되고 문서화 되어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는 의사소통을 위해 "올바른 의사소통은 서로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참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소통의 결과를 성실하게 지킬 것이라는 믿음도 있어야 하며, 사람들의 관계가 평등하고 수평적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민을 위해 조직을 바꾸고 업무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라며 그 소통의 시작이 조직 변경이기에 부디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에게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그럴듯한 명분으로 조직 변경안을 제시하는 조삼모사식의 개편이 아니라 참으로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로 충분히 알아 들을 수 있는 쉽고 명확한 메시지가 오가야 하는데 이 점이 부족하여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임채오 의원
○ 발언일시 : 제185회 제2차 정례회(2019. 11. 20.)
○ 발언요지 : 권역형 복지허브화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22만 주민과 이주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채오 의원입니다.

지역 현장에서는 주민 스스로 복지수요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복지서비스 시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중심 동을 거점으로 일반 동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권역형 복지허브화 사업 성공을 위해 중심 동의 동장은 일반 동의 동장보다 더 큰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사례관리 사업을 총괄 수행해야 합니다.

1995년부터 보건·복지 사무소 시범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사회복지 사무소 시범사업,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그리고 현재 보건복지인력 1.5만 명을 확충하여 읍면동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8개 동으로 이뤄진 북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본형과 권역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기본 과제를 통해 동행정기관의 혁신 뿐만 아니라 주민과 마을의 혁신으로 보건복지, 생활안전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북구는 2022년까지 8개 동을 권역형에서 기본형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안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에 지속 반영될 수 있는 동별 소요인력 확충과 조례 제정, 자치단체 실시 계획을 통해 지역자원과 주민사업 연계방안을 고민해 보

아야 합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은 예산문제, 인력확충 문제 그리고 법과 제도 개정 문제 등으로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별 출산·양육, 노인진입가구, 시설퇴소예정자, 고위험 1인 가구,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상담 및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대상자 발굴 사업과 자원 지원 등에 심한 편차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 동이 기본형으로 전환되기까지 일반 동 2~3개를 묶어서 통합 관리하고 있는 권역형 복지모델에 대한 보완이 시급합니다.

첫째,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권역형 책임동의 동장 역할과 활동역량 강화입니다. 지난 1월에서 9월까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권역형 동의 동장·팀장 방문건수를 기본형과 비교해 봤을 때 권역형 평균이 기본형 방문건수의 63.5%정도였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동장역할강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및 복지에 대한 동장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심이 되는 권역형 동장은 일반 동의 동장보다 더 큰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중심 동 뿐만 아니라 일반 동의 사례 관리 사업을 연계하여 총괄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고난도 사례관리에 대해 중심동의 장은 복지팀장을 비롯한 일반 동 복지팀원들과 정기적으로 사례 솔루션 회의를 진행하여 권역형 복지사례관리모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둘째, 권역형 동장은 일반 동에서 겪고 있는 상담인력 부족에 대한 보완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안양시에서는 복지콜센터가 복지상담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형 일반 동의 경우 복지공무원이 행정업무를 병행하다보니 행정업무, 전화 상담, 현장방문 등으로 업무량이 과중해 질 수 있습니다.

셋째, 중심 동의 장은 일반 동의 복지공무원이 정신질환자, 알콜 중독자, 학대우려 가구 등을 방문할 경우 안전 확보 방안을 동별 여건에 맞게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통장, 자생단체, 사회복무요원 등 동행할 수 있는 인력확보 계획을

세우고 동별 시스템으로 안착시켜야 합니다.

2015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사회 복지직 여성비율이 72.7%로 일반직 35.4%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권역형 중심 동에는 복지팀이 있어 2인 1조로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할 수 있겠지만 일반 동의 경우, 통합관리 사례사나 복지공무원이 동행 없이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위험상황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넷째, 복지팀 그리고 동별 복지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업무분장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불행한 사건들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문제는 향후에도 이러한 불행을 멈출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복지 대상자들에게 생계, 교육, 주거, 의료 등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으로 복지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인력확충 전까지 복지 업무는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고된 현장상담업무와 과중한 복지행정 업무를 중심 동의 동장이 총괄적으로 일반 동의 동장들과 사례 관리, 주민 참여 및 업무분장 회의를 통해 복지공무원에 대한 업무 경감, 따뜻한 격려 그리고 효율적인 업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위해 활발한 주민홍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시 청소년, 장애인, 1인 가구, 다문화 가정 등 복지서비스 수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합니다.

수혜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로 그들의 목소리를 사업에 담는다면 보다 내실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끝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추진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 기반 되어야 합니다.

추진 시책을 일반 주민들에게 알리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주기적으로 실시

하여 주민 총회가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권역형 복지허브화 사업이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기본형으로 전환되는 만큼, 복지업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박상복 의원
○ 발언일시 : 제185회 제2차 정례회(2019. 12. 20.)
○ 발언요지 : 행정의 실수로 출입로가 사라진 아파트



존경하는 22만 주민과 이주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박상복 의원입니다.

농소1동 매곡 404세대가 살고 있는 대하아파트는 1992년 2월 사업승인이 되어, 1993년 7월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 당시의 행정에 제출된 사진 자료를 확인하면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차장, 입구 등 녹지공간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입주민은 당연히 아파트를 둘러싼 펜스까지를 공유면적으로 이해했을 겁니다. 20여 년간 사용해 온 유일한 출입구는 건설회사의 부도에 따른 체납된 세금으로 2013년 6월, 일부 주차공간 부지는 2014년 9월에 공매로 개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고 소유주는 뒤늦게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분명히 준공검사 과정에서 제대로 측량이 되지 않았거나 기부채납 과정에 출입로 및 주차장 대지가 누락되는 등 당시 행정에 착오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출입로가 없는 맹지 위에 아파트에 행정기관이 준공을 해줄 정도의 업무 처리는 하지 않았을 테니 말입니다. 주민들은 이 과정을 전혀 몰랐고, 지적도 상 아파트를 둘러싼 펜스 내부에 위치해 사유지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아파트 입주 전 주차장 및 출입로, 내부 시설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확인해 보십니까? 누구나 공감하는 상식으로 주민의 민원에 대해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용검사 당시 관련부서에서 제대로 확인했다면 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현재 토지 소유자들도 공매 당시 아파트 내부 공용공간이라는 것을 알고 구입한 만큼 주민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할 것입니다.

울주군 시절에 진행됐던 사용허가와 기부채납이지만 행정의 연속성을 봤을 때 분명 집행부는 책임지고 해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계획된 도시 도로가 실효되기 전 도로를 만들던지, 유일한 출입로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예산의 한계를 말하기 전에 행정의 실수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기부채납한 땅을 집행부가 매입하지 못한다면 북구청이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행히 주차장 부지의 경우 1심 판결에서 아파트 입주자 손을 들어줬다고 하나, 계획도로의 부지가 내년 6월 말 실효가 되면 소유주의 개발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주차장에 대해서 차단 시설 등을 설치해 주차장 사용을 전면 중단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1993년부터 해당 부지는 아파트를 신축한 회사의 소유인만큼, 집행부는 아파트 둘레에 설치된 담장과 옹벽 안에 위치해 내부 도로와 통행로, 화단으로 이용된 대지를 원래대로 정상화 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22만 주민과 이주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엄지의 법칙(Rule of thumbs)'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업무를 함에 있어 눈대중, 어림짐작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과학적,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여 해결책을 마련할 충분한 여유가 없을 때, 혹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짧은 시간만 확인할 수밖에 없거나, 자신의 체험을 바탕에 두고 '내가 해봐서 아는데'로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엄지의 법칙'을 좇는 이들을 '꼰대'라고 합니다.

여기서 위험한 것이 '현장에 답이 있다' 입니다. 의사 결정 전에 현장을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나, 세심히 관찰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대충 확인 후 '내가 현장을 가봐서 아는데'라고 답을 내는 함정에 빠집니다. 부디 최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은 엄지의 법칙만으로 주민의 민원을 판단하지 말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주민을 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피라미드 조직에서 상위조직으로 갈수록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의사결정에 오류가 없습니다. 직급이 높을수록 혁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혁신은 버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버린 만큼 우선순위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직위가 높아질수록 과감한 업무에 대한 권한 이양, 전결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 한군데 더 나가는 것보다 차분히 집중하여 우리 북구의 미래를 설계하고 혁신을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바쁘게 지낸 것 같은데 돌아보면 남는 게 없다면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올바른 의사 결정을 가능토록 여유를 만들어 주는 것은 참모의 역할입니다. 역할에 맞는 자리로 기억하시어 계장 같은 국장, 과장 같은 구청장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직급에 맞는 일과 의사 결정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해 동안 구청장님과 북구청 공무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금이라는 정말 무서운 돈이 잘 사용될 수 있고 주민의 편익이 증대 될 수 있는 북구를 만들어 주심에 재차 감사를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임채오 의원
○ 발언일시 : 제186회 임시회(2020. 2. 17.)
○ 발언요지 : 역사는 곧 북구의 미래입니다!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과 이주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채오 의원입니다.

우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에 애쓰고 계신 북구청 공무원들과 보건소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북구청은 7개반 49명으로 구성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전담반 운영과 136명의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안과 걱정이 커지는 만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세심한 방역 대책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미래를 짐작하는 가장 뛰어난 예언자는 그 도시가 품고 있는 역사라고 했습니다. 북구지역은 삼한시대부터 철광석과 토철을 캔 곳으로, 중국의 고서인 후한서와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한, 예, 왜가 이곳에서 철을 가져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북구는 삼한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동북아 철기문명의 중심지로서 찬란한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달천철장이 2003년 4월 24일 시지정 기념물 제40호 지정이후 이동권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달천철장 유적공원이 완공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소중한 북구 철의 역사를 영상물과 실제 모형을 통해 철을 수집하고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북구의 임란역사를 바로 세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1592년 4월 13일 17만 여명의 일본군은 부산 앞바다에 도착하여 부산포를 침략하고 4월 14일에 부산진성을 함락하였습니다. 일본군은 이어서 동래성을 4월 15일에 점령하였습니

다. 순차적으로 부산에 상륙한 일본군은 3진으로 나누어 북쪽으로 침략하였습니다.

울산에는 4월 19일 가토 기요마사의 제2군이 언양을 점령하였으며 경상좌병영을 비롯해 울산 지역을 점령하고, 21일 경주로 북상하였습니다.

왜적이 길을 셋으로 나누어 한꺼번에 진격함에 군과 민이 놀라 흩어져 여러 고을들이 무너져 막아내지 못하고 울산은 왜적에게 점령되었습니다. 우리 북구 선조들은 의병을 결진하여 일본군이 주둔한 병영성을 공격하였습니다. 북구는 울산의 임진왜란 전쟁의 시작과 끝을 상징하는 중요한 전투가 행해졌던 지역입니다.

임진왜란 초기, 조선의 대응태세, 의병의 창의 과정 및 전투방식, 일본군의 행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역사적 흔적들이 북구 전역에 남아있습니다.

북구 지역의 임란사를 재조명하는 학술심포지엄이 2017년에 있었습니다. 전문가 3인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기박산성 의병결진과 임란사'를 주제로 다루었고 학술적인 접근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와 토론과정에서 풀지 못한 많은 역사적 의문들이 남겨졌습니다.

초기 의병 창의 후 주둔했던 함월산성에 대한 추가 자료 확보, 울산지역 의병들에 의한 싸움으로는 시초가 되었던 병영성 기습작전의 전투방식, 병영성 공격 이후 왜 병영성에 주둔하지 않고 다시 무룡산중으로 돌아왔는지, 달현전투를 비롯한 무룡산중에서 전개된 전투양상, 민의 군대조직 이후 기박산성 의병지휘부와 효문산성 지휘부 간의 무룡산지형을 이용한 공조전략전술 등 2017년 학술심포지엄에 참고되었던 『제월당실기』를 비롯하여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송호유집』을 함께 재조명하는 2차 학술심포지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기류 자료들에 나타나고 있는 과장되거나 윤색된 부분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역사적 사실에 접근하는 섬세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임진왜란 역사에 있어서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가 소중한 우리나라 역사자료이듯이 우리 북구의 『이경연실기』와 『송호유집』은 울산·경주 중심의 의병들의 활동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임란일기로 북구 임란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지난 학술심포지엄에 참고되지 않았던 『송호유집』은 문중 책장 속에 오랜 세월

동안 묻혀 있다가 경상좌도의 임란일기로 평가되어 한국국학진흥원의 협조로 국역 편찬되었으며 2017년 1월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3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귀중한 우리 구의 호국문화유산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연구와 학술심포지엄 개최 등 관련 기관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하며 또한, 우리 구가 추진 중인 역사문화벨트 사업과도 연계하여 주민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알려주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도 고취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임진왜란, 정유재란 시기 목숨을 버릴 각오로 전투에 참여한 우리 지역 호국문중의 공로와 신흥사를 중심으로 한 승병들의 공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 중에서 동물은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현실 세계에 온전히 적응해서 살아가지만 인간은 현실 세계에 발 담그고 있으면서 동시에 현실 너머를 보려하고 현실을 초월하려고 하며, 현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상상하려고 합니다. 역사는 현실 너머의 미지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뉴잉글랜드는 하버드대학을 비롯하여 예일 ·브라운 ·매사추세츠공과대학 등의 유명한 대학이 있는 지역입니다. '언덕위의 도시'를 건립하고자 1630년 아벨라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온 청교도들이 영국의 부당한 조세정책에 반대하는 보스턴 차사건을 시작으로 독립선언문까지 신대륙에서 독자적으로 세운 역사가 뉴잉글랜드의 현재를 예언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강동권 종합개발사업,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농소~외동 간 도로, 중산동 이화산업단지와 더불어 북구임란역사의 새로운 한 줄로 호국역사를 품은 미래융합도시 북구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임수필 의원
○ 발언일시 : 제186회 임시회(2020. 2. 27.)
○ 발언요지 : 북구주민은 고준위핵쓰레기장 임시저장소 건설 주민투표를 요구한다.



사랑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중당 임수필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헌법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헌법 전문에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은 인권이자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울산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 주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 국가적 위기상황에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이 잘 작동해야 합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주요 예방 용품 등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 돌봄 대책과 영세 상인들의 지원대책, 사회적 약자들의 돌봄과 생산 현장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살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공공병원이 없는 울산이지만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의료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자발적 시민들의 위생관리 또한 필요한 때입니다.

북구주민 여러분 함께 이겨냅시다.

주민 여러분, 코로나19가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주변에 있는 핵발전과 고준위핵발전소 임시저장소 문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

가 주민들에게 불안과 시련을 주지만 백신이 개발되길 기대하고 있는 반면 핵발전소의 중대한 사고는 세대를 두고 가혹하고 모든 희망을 잃게 만들 것입니다. 현재의 국가위기시스템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울산 북구 주민은 핵발전소와 관련된 문제로부터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 안전성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40여 년간 핵발전소 6개를 북구주변에 껴안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구주민들에게는 월성핵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어떠한 안전대책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핵발전소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북구주민은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정부도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한수원도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피해가 북구주민들에게 발생될 수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북구주민은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행정으로 침묵을 강요당했고 현재에도 핵발전소로부터 반경 20km안에 22만명이 거주하면서도 국가로부터 안전할 권리와 보호받을 권리에서 배제되고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인권이자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임을 다시금 명심하여야 할 것 입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핵발전소의 위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똑똑히 보았고, 2016년 지진 5.8의 공포는 더 이상 이곳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구주민들이 안전할 권리를 찾는 것은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인 것입니다.

북구주민은 더 이상 40년 전의 주민이 아닙니다. 국가정책이라고 묵묵히 침묵을 강요당해왔던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이 아닌 것입니다. 침묵의 결과는 계속해서 핵발전소 6개가 지어졌고 안정성이 어떻게 유지되고 지켜지고 있는지 북구주민은 아무도 모릅니다. 더 이상 침묵으로는 그 누가 북구주민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침묵을 강요당했던 북구주민들에게 또다시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80년대 국가행정 방식으로 고준위 핵쓰레기장 임시저장시설을 짓는다고 합니다.

북구주민들이 분노합니다. 임시라는 명분으로 핵발전소 가동과 그로부터 얻는

수익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핵쓰레기에 대한 최종 처분장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후대에 짐을 미루는 것은 양심을 가진 세대들이 못 할 짓입니다. 월성핵발전소 중대사고의 위험의 당사자는 북구주민입니다. 북구주민들은 핵발전소로부터 반경 20㎞안에 22만명이 살고 있으며 방사선비상경계구역 안에는 울산시민 115만명이 넘게 살고 있습니다. 울산시를 벗어난 곳에 북구주민을 위한 구호소나 대피소는 없습니다. 오롯이 울산시 안에만 있어야 합니다.

주민투표요구 북구주민 청원을 11,483명이 하였습니다. 북구주민들이 핵쓰레기 장임시저장소 건설을 주민투표로서 결정해달라는 주민투표요구 청원 서명을 2월 19일 산자부와 청와대에 제출하였습니다. 시장, 거리, 아파트, 식당, 성당과 교회에서 투표권을 가진 주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소중하게 적어낸 청원서입니다. 지금까지 불안을 느끼면서도 어느 누가 나서서 목소리를 내지 않아서 가슴에만 품었던 좌절과 분노가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북구주민들은 주민투표를 요구합니다.

핵발전소 위험성에 대해 몰랐던 시절에는 침묵하고 묵묵히 국가 정책에 미련하게 복종할 수밖에 없었지만, 위험성을 알게 된 이상 침묵을 하는 것은 북구주민 스스로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북구주민을 배제하고 경주시민 일부만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방안이 아니며 경주시민들이 북구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위험한 핵쓰레기임시저장소를 지을지 말지를 위험의 당사자인 북구주민들이 주민투표로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재검토위원회, 북구청과 북구의회는 북구주민들의 주민투표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울산 북구주민들의 주민투표 요구를 수렴해야 합니다.

다음은,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 면제 청원의 건이 미뤄진 것에 대해 얘기 하겠습니다.

주민에게 위임받은 의회가 당리당략으로 주민들의 청원을 무시하고 소개의원과의 논의도 없이 야합으로 처리하는 것에 북구의회 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6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청원을 통해 자유롭

게 자신들의 요구를 개진하고 국가기관이 수리 심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만 명이 넘는 주민청원이 지방의회에서 무시당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국회의원의 특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회 곳곳에 남아 있는 의원들의 특권도 내려놓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명령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청원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으로 접근하기 까다로운 규정을 둠으로써 주민들의 청원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소개의원이 있어야 하는 것과 문서로만 제출해야 되는 것, 청원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날짜 같은 것이 없으므로 인하여 의회가 방만하게 처리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삶을 법적인 기준을 넘어 다양한 애환과 억울함과 근심·걱정을 가까이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곳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의 참여와 요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청원법 또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청원할 권리와 결정할 권리가 주민들에게 있습니다.

의견충돌로 인한 표의 유불리를 계산하기보다는 헌법에 보장된 절박한 주민청원이 우선 되어야 하며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노력해온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의 노력을 존중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발언의원 : 임수필 의원
○ 발언일시 : 제187회 임시회(2020. 4. 20.)
○ 발언요지 : 코로나19의 위기 북구주민 힘 모아 이겨 냅시다.



사랑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을 살피시는 이동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중당 임수필 의원 입니다.

먼저 4.15총선에서 커다란 승리를 한 집권여당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그동안 억눌러 왔던 우리 사회의 정치개혁과 남과 북의 화해와 평화, 교류 확산의 담당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에서 북구 구의원에 당선된 정치락 의원께도 축하와 함께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최근 정부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이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엄두도 못 낼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힘이 국가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란 국민 한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고 보살펴 줘야 한다는 것이며 세월호 6주기를 맞아 차디찬 물속에서 힘들게 사라진 단원고 학생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교훈임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지난시기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운동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민주노총과 진보정당들이 의료보험 민영화를 막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국민들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했던 민주노총에게 감사

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흔들어 미국처럼 민간의료보험제도를 만들려고 했던 세력들이 누구였습니까?

국민의 생명보다 이윤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재벌과 정당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사필귀정입니다.

우리는 세계 선진국이라 말하는 나라들의 의료체계를 실시간 인터넷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염병 진단 검사비만 400만원이 넘고 국민의 1/4이 이상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며 빈민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사태에 대책 없이 패닉상태에 빠진 모습을 봅니다.

코로나 대응을 놓고 싸우는 대통령과 주지사간의 의견 충돌과 국경을 닫는 모습은 그동안 우리가 상상했던 선진국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는 자동차와 노동자의 도시인 북구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항구를 봉쇄하고 하역이 안 되고 선적이 되지 않아 수출 선적 부두에 빈 배 여러 대가 떠 있답니다.

생산하고 판매되어야 하는 세계 경제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현대자동차 수출 주력인 5공장에는 주문이 취소되어 휴업 일정이 잡혀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이후 최악의 상태로 나빠져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하고 있으며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거나 근무시간 단축 등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8년에 현대자동차는 구조조정으로 많은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그 악몽이 지금까지 현장 노동자들에게 그늘져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우리들에게 다가와 삶을 변화 시켰듯이 그 영향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어려움은 태풍처럼 해고를 비롯한 구조조정이 울산 북구주민들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북구의 예산은 넉넉하지 않아 코로나19가 없어도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재난 시 중요하고 묵직한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겠지만 자체적으로도 급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은 행사성 예산은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구청장의 의지와 사업 및 행사 담당 주관 부서, 그리고 지역 주관 단체 간의

양해와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들어하는 북구주민들의 삶의 곳곳을 면밀히 봐야 합니다. 중앙정부나 시에서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다양한 지원정책을 세우겠지만 이 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영세 중소 상인, 중소기업, 대기업들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힘든 사람들은 그들뿐만 아닙니다. 무급휴직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강사, 건설일용노동자, 청년, 노인, 학생, 엄마, 민간 어린이집, 유치원, 소상공인과 서비스업 종사자 등 전 국민이 힘들어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힘들어 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주민들이 곁에 있음에도 모른 체 행사를 치루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정의 모습입니다. 면밀히 따져보고 올 해의 구청 살림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북구의회도 해외연수를 통해 의원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지만 올 해는 자제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합니다.

며칠 전 언론에도 나왔듯이 아파트 내 민간어린이집 형편이 어렵다고 아파트에서 코로나19 위기가 끝날 때까지 임대료를 면제해 준다는 미담 사례를 우리 구에서 보았습니다. 농소3동 대동아파트와 벽산블루밍아파트 입대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북구주민들도 착한 임대료 낮추기 운동과 배려하는 실천에 적극 동참하려는 이 때 북구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북구의회와 북구청이 앞장서서 북구주민과 노동자들의 힘 모아 지역 공동체를 생각하며 코로나19를 이겨냅시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위기 속에 우리나라의 대응을 주목하고 따라 배우려는 모습에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는 모범을 보여 줘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촛불로, 정권교체로, 코로나19 대응으로 그리고 이번 4.15총선에서 민족과 국민의 정의로운 시민의 힘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이정민 의원
○ 발언일시 : 제187회 임시회(2020. 5. 4.)
○ 발언요지 : 1차 추경을 마감하며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과 이주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래통합당 이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신규 확진자수가 10명 이하로 바이러스 확산 정점을 지나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생활방역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의 방역 및 각종 재난 대책 수립·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87회 임시회에서는 당초예산보다 약 532억원이 증액된 4,266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당초 집행기관에서는 과감한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삭감한 예산을 주요 재원으로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했지만, 증액된 532억원의 예산 중 코로나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 중 21프로에 해당하는 111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111억원의 예산마저도 대부분 국비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구 자체 사업이라기보다는 국가 차원에서의 대비책으로 타 시·군·구와 차별화된 대비책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물론 세수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우리구 자체 사업을 만든다는 것이 재정여건 상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적은 예산이나마 제대로 활용한다면 이 위기속에서 우리구 자체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고민이 기대보다 못 미쳐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을 살펴보면,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근본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보다는 보여주기식 선심성 예산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업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깊이 있는 고민과 노력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4월 28일은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여파로 시민들은 우려와 공포에 떨었고, 거리 두기와 자가격리는 일상을 크게 바꾸어놓았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울산의 주력업종인 자동차·조선, 석유정제 및 화학제품 등에서 투자, 자금사정, 고용 등 전반에 걸쳐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어느정도 진정되더라도 이로 인한 경제여파는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미 1997년에 닥친 IMF 외환위기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코로나'에 대비해야 합니다. 항공, 호텔, 유통, 관광, 외식업 등 서비스업계 전반에 걸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하여 실업자들도 속출할 것이며 이는 다시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큰 틀에서의 대비책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도 대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특히, 관내 영세상인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몇 달간 영업을 하지 못해 폐업의 위기에 몰린 우리의 이웃들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창한 사업계획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도 우리는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울산페이 구매 동참 릴레이와 소상공인 응원 댓글 남기기 이벤트 등 지자체 스스

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 적극 추진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 추진 후 성과를 평가하고 언젠가 다시 또 있을지 모를 제2, 제3의 코로나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시오. 전염병 위기는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 위기도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전염병 위기가 갑자기 닥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조직적·계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는 대응으로 지방자치의 참의미와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의원 : 임수필 의원
○ 발언일시 : 제188회 제1차 정례회(2020. 6. 10.)
○ 발언요지 : 월성핵쓰레기 임시저장소 추가건설 찬반 주민 투표 성사는 주민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이동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중당 임수필 의원입니다.

주민투표 성사시키 주민의 위대한 승리를 얘기하기 전 몇 마디 말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동권 구청장님이 윤종오 전 구청자에 대한 구상금 논란의 마침표를 찍고 지역사회 통합의 길로 가고자하는 소신을 지지합니다.

윤종오 전 구청장에 대한 구상금 면제는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북구주민들 모두가 알고 있을 만큼 공개적인 논의 속에 주민들의 뜻이 모아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구주민 절대다수와 노동자들도 지지하고 환영할 것입니다. 아직도 민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미래통합당의 정치적 공세는 멈춰야 합니다.

이제는 각 정당이 추가하는 정책과 소신으로 북구의 발전을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적폐로서 청산되어야 할 곳은 사법과 행정·외교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독점하고 핵발전소를 운영해 온 집단에도 있습니다. 행정과 기업, 언론, 권력이 결탁해 온 핵마피아라 부르는 집단은 철저히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외면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을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파괴함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민주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작금의 현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 경주 월성핵발전소 앞에 상여를 끌고 집회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습

니다. 조상대대로 살아 온 나아리에서 더 이상 희망도 없으니 안전한 곳으로 이주시켜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를 포함한 감포, 양북, 양남지역의 일부 사람들은 핵발전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기 보다는 지원금과 세수를 먼저 생각합니다. 돈을 두고 나눠먹는 곳에는 부정부패가 있고 공동체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북구주민도 안전할 권리가 있다고 호소하면 너희들은 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북구청도 모르게 비밀리에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의 영향으로 인한 해수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피해보상을 강동 어민들에게 진행했습니다.

핵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는 합리적 이성이 설 자리가 자꾸만 없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핵발전소 운영과정의 투명성과 참여성을 진심으로 보장하고 존중하기 보다는 돈으로 매수·현혹하여 온 지난 40년 가까운 세월동안 한수원은 정직하고 양심적이지 못했습니다.

북구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북구의회의 결의안과 구청장과의 기자회견, 북구주민의 청원를 통해 북구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호소했음에도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문전박대와 외면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우리 북구주민들은 제대로 된 권리를 박탈당해왔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풀 위에 바람이 불면 풀은 반드시 눕습니다. 그러나 바람 속에서도 풀은 다시 일어 납니다.
북구주민들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던 핵발전과 관련된 시설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요구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월성핵 쓰레기장 추가건설 찬반 주민투표라는 것을 주민스스로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번 울산 북구 주민투표는 50,479명의 참여와 47,829명(94.8%)의 압도적 반대는 주민의 권리와 안전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마음이며 주민을 무시해 온 정부와 산업통상부의 태도에 대한 저항이고 주민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투표가 아니라서 선거인명부, 예산, 인력, 투표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열악한 조건에서 22만명이 살고 있는 자치구에서 이루어 낸 기적 같은 주민투표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던 주민들에게는 너무나 아쉽고 송구스런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북구주민들과의 만남과 투표의 결과를 보면서 북구주민들 마음속에 그동안의 부당함과 억울함이 쌓여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주민투표 청원서명과 동의서명을 받으면서 주민들로부터 매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코로나19 정국에서 되겠냐'는 우려와 불신을 주민들 속에서 극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한 가가호호 방문 주민투표 동의 서명은 안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한순간에 바꾼 기적이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홍보와 서명운동에 '우리 아파트에는 왜 안 오느냐?', '아파트 게시판에 붙일 전단과 방송할 내용을 달라'는 요구가 매일 들어오면서 주민투표 참여 동의서명에 43,000명이 참여했습니다. 투표에 어떻게 참여하면 되느냐는 질문과 신분증이 없어 투표 당일 투표를 할 수 없다는 말에 실망과 항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 오시고 주민등록증을 가지러 다시 집으로 가시는 주민들의 모습은 감동이었습니다. 그러한 주민들의 행동 하나 하나가 투표의 성사와 승리를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위험 당사자 주민들을 배제하고 무시한 채 민관기관에 위탁하여 모집한 549명의 시민참여단만을 대상으로 일방적이고 형식적으로 진행하여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험의 당사자인 주민의 권리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이제는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북구주민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재검토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엉터리 공론화를 백지화하고 정부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가는 전 국민 공론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고준위 핵쓰레기임시저장소 추가건설 및 핵발전소 관련 시설 공론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투명성과 참여성을 보장하는 것이며 가짜뉴스를 통한 왜곡된 정보가 아닌 진실하고 정확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북구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북구청과 북구의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시간을 내서 한 표를 행사해 준 노부부 같은 북구주민들의 마음은 북구청과 북구의회에 보내는 명령이며 책임지는 자세로 핵쓰레기 양산의 주범인 월성 2,3,4호기 조기 폐쇄까지 주장하고 앞장서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산업통상부와 한수원이 주민을 무시하는 오만방자함에 맞선 이번 북구의 주민투표 승리 뒤에는 주민들의 참여뿐만 아니라 울산과 전국 시민 단체의 연대가 있었으며 울산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연대로 이뤄낸 승리인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4절 진정·건의서 처리현황

1. 처리현황

(2018. 7. 1. ~ 2020. 6. 30.)

연도별	접 수	처 리 결 과			
		계	완 료	추진 중	불 가
계	13	13	8	4	1
2018	9	9	5	3	1
2019	2	2	1	1	
2020	2	2	2		

2. 접수 및 처리내용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18. 7. 3. 한라비발디 보강토 옹벽 시공 개선 요청(완료)	석○○ 외 11명	○ 한라비발디 공사 내용 중 보강토 옹벽 시공에 대한 개선 건의 요청함 - 북구청에서도 한라비발디 보강토 옹벽 시공에 관하여 시공사측에 전면 개선 요청 의견을 간곡히 건의 드림.	○ 2018. 7. 4. 의회사무과 → 건축주택과 (관련 자료 및 집행부 의견 요청) ○ 2018. 7. 9. 건축주택과 → 의회사무과 (의견 회신) ※ 회신내용 ○ 해당 주택건설사업장에 시공된 보강토 옹벽에 대하여 구조전문가·감리단 및 사업주체에게 확인한 바, 구조안전 확인을 거쳐 설계도서와 같이 현장 시공이 완료된 상태로 해당 보강토 옹벽의 철거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는 불가하며, 입주 전까지 옹벽은 물론 구조물에 대한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입주예정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회신이 울산광역시로 제출된 바 있으며, ○ 또한 외부 옹벽 등의 변경은 아파트 사업주체와 입주예정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행정청에서 사업주체에게 강제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 ○ 울산광역시 및 북구청에서는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게 민원사항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 하였으니, 입주예정자들께서도 사업주체와 원만한 협의를 거쳐 민원사항을 해소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함.
'18. 7. 17. 신천효성 해링턴 하자보수 미흡 사항 개선 요청 (추진중)	서○○	○ 신천효성해링턴 하자보수 미흡 사항 개선 요청함.	○ 2018. 7. 24. 의회사무과 → 건축주택과 (관련 자료 및 집행부 의견 요청) ○ 2018. 7. 31. 건축주택과 → 의회사무과 (의견 회신) ※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여야 하고,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부위, 보수방법 및 보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함.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하자 여부 판정 등의 사무를 심사·조정 및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같은 조 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하자심사신청서에 당사자간 교섭경위서, 하자발생 사실 증명자료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아울러, 하자보수공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사측에 사실조회 요청 및 행정지도 조치함.
'18. 8. 23. 강동산하지구관련 민원 (추진중, 완료)	이○○	○ 강동산하지구 인근 아스콘 공장으로 인해 악취가 심함. ○ 강동산하지구 내 인도 변에 풀이 무성함.	○ 2018. 8. 24. 의회사무과 → 환경위생과, 도시과 (관련 자료 및 집행부 의견 요청) ○ 2018. 8. 28. 환경위생과 → 의회사무과 (의견 회신) ○ 2018. 8. 31. 의회사무과 → 도시과(의견 회신)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 회신내용 ○ 아스콘공장 악취 관련 - 8.22(수) 사업장을 방문하여 배출구에서 악취시료를 포집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하였으나, 분석결과 기준 미만으로 회신 받음. - 그러나 주민불편사항을 고려하여 지난 8.27(월) 강동아파트 입대위 및 통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구청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 및 주민들의 건의사항 등을 듣고 논의하였음. -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아스콘공장 가동 시 새벽시간에 악취를 재측정할 예정이며, 공장가동 철저 및 차량우회 협조, 주변 야간 순찰 등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음. ○ 강동산하지구 인도 풀베기 - 해당 지역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단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지구이며, 현재 미준공되어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는 사업시행자인 강동산하지구도시개발조합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시행자에게 보도 관리 요청하여 8. 30.자로 도시개발사업지구 전체적인 제초작업을 시작하였음을 알려 드림.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18. 8. 28. 7번국도 개선 요청 (추진중)	조○○ 정○○	○ 7번국도 정체로 출·퇴근길이 지옥길이므로 개선 요청함.	○ 2018. 8. 30. 의회사무과 → 건설과 (관련 자료 및 집행부 의견 요청) ○ 2018. 9. 6. 건설과 → 의회사무과(의견 회신) ※ 회신내용 ○ 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오토밸리로 개통 및 국도7호선 물류량 증가로 산업로 확장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공사로 인해 출·퇴근 시 차량정체 현상이 발생하는 점에 대하여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시행청인 종합건설본부에 조속한 시일 내 공사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겠음. ○ 또한, 옥동~농소1 도로와 연결하여 천곡~외동까지 연결되는 노선을 추진 중에 있고, 울산시에서 국토부로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반영을 요청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음.
'18. 9. 29. 도로 보수 요청 및 심청골 저수지 산책로 조성 (완료, 불가)	최○○	○ 현대자동차 문화회관에서 심청골까지 도로 훼손 보수 요청 ○ 심청골 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	○ 2018. 10. 4. 의회사무과 → 건설과, 도시과 (관련 자료 및 집행부 의견 요청) ○ 2018. 10. 22. 건설과, 도시과 → 의회사무과(의견 회신) ※ 회신내용 ○ 자동차문화회관에서 심청골까지 도로보수 - 10. 18.(목) 현장 확인을 통하여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최○○님께서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0. 30.(목) 보수완료하였음. ○ 심청골 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 - 저수지 둘레는 산지 경사가 급하고 저수지 수심 또한 깊어 둘레길을 만들기가 어렵고, 힘들게 산책로를 만들더라도 위험한 부분이 많아서 둘레길 조성이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
'18. 11. 19. 체육회 사무감사 요청 (완료)	최○○	○ 체육회 이재형 사무국장 민원접수 거부 반려 및 중립의무 위반과 직무방해에 대한 사무감사 조사 요청과 여운발 회장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결과에 대한 사무감사 조사 요청	○ 2018. 12. 4. 의회사무과 (민원인 답변 통지) ※ 답변내용 ○ 체육회 사무감사 조사 요청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감사대상의 범위는 자치단체로부터 위임·위탁받아 처리하는 사무에 한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 또한 자치단체의 사무 위임·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도 따로 본회의의 의결로 승인을 받아야 감사를 실시 할 수 있음. 체육회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이며 감사대상기관이 되는 것은 아님. 다만 보조금을 지급한 부서의 감사를 실시하면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질문과 답변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어, 제17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활동 시 (2018.11.23.) 문화체육과 관련 내용으로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질의 및 답변하였음. ○ 의사발언에 대한 속기록 삭제요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57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회의규칙 제53조에 “비밀로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귀하께서 요청하신 부분은 이에 해당사항이 없음. 그리고 귀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께서는 파크 골프협회의 내부적인 사항들로 회원들이 자구적인 노력으로 해결하는 차원에서 발언하셨으므로 오해 없으시기를 바람.
’18. 11. 27. 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 민원 (완료)	신○○	○ 농소2동 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 정원 조정 및 폐강 내용 관련 민원 제기	○ 2018. 11. 27. 의회사무과 → 자치행정과 (관련 자료 및 민원사항 이첩) ○ 2018. 12. 3. 자치행정과 → 의회사무과 (의견회신) ※ 회신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며 주민자치위원의 위촉 및 해촉도 동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농소2동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함. ○ 농소2동장은 수강생들의 의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건청취 후 “지금 이 상황에서 확답은 못하지만, 동장은 주민을위해 존재하므로 수강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발언을 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졌음. ○ 증원된 정원은 2019년 1분기 부터 적용되고 12월 중순에 모집 예정이므로 지금 당장 속단하기는 이르며, 수강생모집 결과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게 적합하다고 판단됨. - 수강생 모집 결과 정원의 70% 이상 : 문제없이 노래교실 운영 - 수강생 모집 결과 정원의 70% 미만 : 70% 미만일 때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하여 운영할 수도 있으며, 정원 증원의 사유인 수요 예측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시 2019년 2분기 모집 시기에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후 정원 조정도 가능
’19. 3. 14. 진장명촌지구 관련 민원 (완료)	이○○ 외 3명	○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사업 행정사무조사 촉구의 건	○ 2019. 3. 14. 의회사무과 → 기획홍보실 (관련 자료 및 민원사항 이첩) 2019. 3. 20. 기획홍보실 → 의회사무과 (농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답변취합 및 의견회신)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 회신내용 1. 진장명촌지구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관련(농수산과) ○ 현 농지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 의거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대상이 되는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인가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납부되었는지 확인한 후 인가하고 있지만, 1999년 당시 구 농지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 부담금(20,451,788,410원) 납입을 조건으로 인가되었음. ○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허가취소 또는 관계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나 사업취소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구 농지법 제40조 제5항 및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세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조합소유의 재산이 없어 체비지 목록대장을 압류하였음. ○ 구 농지법 제41조에 의거 허가취소 또는 관련 공사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던 실정으로 이렇게 할 경우 구획정리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장기화됨에 따라 만성적인 민원발생, 체비지를 매각하여 각종 부담금과 사업비를 조달해야 하는 조합의 실정으로는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점과 개별건축허가 불가 등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행사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개별건축허가 시 대지면적에 해당하는 농지조성비 등을 조합에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였음. 2. 진장명촌지구에 대한 “하수부담금” 관련 (건설과) ○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 조합에서 2004년 납부(금4,908,031,900원)를 완료하였으나, 그 이후 2010년 9월 1일 부당이득금 반환 손해배상청구 최초 접수(김○○외 3인)후 대법원 판결('14. 06. 12.) 확정 전까지 개별 건축물에 대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음. ○ 판결결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인정하여 3년 이내 청구 시 환부하도록 결정이 났으며, 그에 따라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의거 환부신청 안내문 등기발송을 실시하였고 '15년 9월 7일까지 227건에 대하여 납부액 및 손해배상금 3,389,485,540원을 환부 완료하였음. ○ 나머지 124건에 대한 원금 및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이자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이 불가함. 3. 진장명촌지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관련(도시과)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8조에 따라 하자보수 보증금은 공사완료 보고와 동시에 관할시장 및 군수에 이관할 사항으로 사업시행중인 현 시점에서는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와 관련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7조제2항 적용이 어려움. ○ 이와 관련 진장명촌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측에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음.
’19. 5. 28. 상안테니스장 태양광 발전사업시설 신설 요청 (추진중)	문○○ 외 204명	○ 상안테니스장 태양광 발전사업시설 신설 요청	○ 2019. 6. 3. 의회사무과 → 문화 체육과 (관련 자료 및 민원사항 이첩) ○ 2019. 6. 4. 문화체육과 → 의회사무과 (의견회신) ※ 회신내용 ○ 지붕형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날씨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공공체육시설인 테니스장 유지관리 문제, 계약기간 이후 관리 문제, 화재 안전사고 우려, 도로 및 주택과 인접한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문제이므로 추후 협회 및 관련 업체와의 간담회를 거쳐 시행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20. 3. 30. 송정반도유보라 배수펌프장 설치 이전요청 (완료)	임○○	○ 송정반도유보라 배수펌프장 설치 이전 요청 공개질의 - 민원발생 우려에 대한 대책 부재 - 주민의견 수렴 절차 미이행 - 2안의 펌프장 설치에 대한 위치선정 과정 부재 - 각 대안별로 검토결과에 대한 논리적 설명 미흡 - 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 절차 미준수 - 펌프장시설 설계기준 미준수 - 건축허가표지판 미설치 - 불합리한 행정처리 - 유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홍수량 산정	○ 2020. 3. 30. 의회사무과 → 기획홍보실 (관련 자료 및 민원사항 이첩) ○ 2020. 4. 13. 기획홍보실 → 의회사무과 (건설과, 울산시, LH공사 답변취합 및 의견회신) ※ 회신내용 1. 민원발생 우려에 대한 대책 부재 ○ 울산광역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이행하고 있으며, 주민입주시점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가관로공사를 2019. 6. 30.까지 완료하였음. 2. 주민의견 수렴 절차 미이행 ○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은 주민의견수렴 대상이 해당되지 않으며, 송정빗물펌프장 설치 건 또한 도시계획상 개별사업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3. 2안의 펌프장 설치에 대한 위치선정 과정 부재 ○ 2안(펌프장 신설 및 근린공원2 추가관로 신설) 위치선정은 울산광역시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조건부 가결 심의결정 사항이며, 심의조건사항 중 2안이 울산광역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심의위원회에서 채택됨. 4. 각 대안별로 검토결과에 대한 논리적 설명 미흡 ○ 2018년 2회 울산광역시 광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역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송정지구 개발에 따른 사업자측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이 제안된 사항이며 사업시행자측(LH공사)에서 수용하였음. ○ 3안 중 2안은 울산광역시 소하천정비계획(변경) 심의위원회에서 채택된 사항임. 5. 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 절차 미준수 ○ 2018년 제2차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에서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에 대해서 북구와 LH공사가 협의한 내용을 심의위원들에게 확인을 받도록 조건부 가결하였고, 이후 심의위원 7명에게 확인받은 사항임. 6. 펌프장시설 설계기준 미준수 ○ 송정지구 빗물펌프장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등 입지여건이 2008년 서울시 당해 현장과 유사하여 설계기준을 적용함. 상기 열거된 기준에 의해 펌프수 2대를 제시하였음. ○ 울산송정 택지개발사업지구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변경) 심의가 두 차례 부결되었으며, 19개월만에 변경심의가 완료(법적절차 이행완료)된 시점에서 심의위원 재검토는 불가함. 7. 건축허가표지판 미설치 ○ 해당 필지는 송정지구 내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빗물펌프장 배관공사로, 건축물을 짓기 위한 공사는 없었으며, 현재 빗물펌프장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는 미신청 상태임. 8. 불합리한 행정처리 ○ 2018년 제2차 광역소하천 관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된 화동천, 화봉천, 화산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개발 전, 후 홍수량 저감계획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저류지 등 추가설치를 검토하도록 심의·의결하였고 최종적으로 LH공사측이 제시한 2안(펌프장 신설 및 근린공원2 추가관로 신설)이 선정되었음. ○ 최근 10년간(2010~2019) 북구 관내 침수피해 이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7에 따라 별지 제2호의5서식의 침수흔적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함.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침수위험 지구)로 지정·고시된 사항 없음. 9. 유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홍수량 산정 ○ 1,2,3(안) 모두 홍수 저감량을 제시하였으며, 심의시 추가의견으로 요구된 홍수 저감량 6.0㎥/s 이상의 과도한 저감량 검토는 불합리한 사항임.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 하천유역에 대한 홍수량 산정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SCS법'이 아닌 'Clark유역추적법'으로 산정하였으며 심의위원이 동의한 사항임. 또한 저류지 형식을 off-line형식 변경으로 인한 10㎥/sec 홍수량 저감량에 더하여 심의조건 부사항으로 추가 홍수량 저감방안 요청이 있어 대안(1,2,3안)을 마련하였음. ○ 홍수유출량 산정근거는 정보공개 요청시 검토하겠음.
'20. 3. 30. 송정반도 유보라 배수펌프장 설치 이전요청 추가질의 (완료)	임○○	○ 송정반도유보라 배수펌프장 설치 이전요청 추가질의 - 각 대안별 홍수량 저감량에 대한 산출보고서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근거 조항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에 따른 펌프장 설치예정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서(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제2회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 후 조건부 가결사항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2안(펌프장 설치)을 채택한 위원명단과 근거서류 - 명촌천 하천정비계획 보	○ 2020. 5. 15. 의회사무과 → 기획홍보실 (관련 자료 및 민원사항 이첩) ○ 2020. 6. 5. 기획홍보실 → 의회사무과 (건설과, 울산시, LH공사 답변취합 및 의견회신) ※ 회신내용 1. 각 대안별 홍수량 저감량에 대한 산출보고서 ○ LH공사로 정보공개 요청시 공개하겠음. 2.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근거 조항 ○ 송정택지개발사업 시행 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63호로 2004년 12월 31일 주민 공람을 실시함.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고서, 태화강 하류 하천정비 기본계획 보고서 (가장 최근년도)	다만, 송정빗물펌프장 설치건은 도시계획 상 개별사업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3.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에 따른 펌프장 설치예정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서 ○ 해당 부지의 경계에 설치한 가설펜스는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해당 번지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사항은 없으며, ○ 또한 부지 내 장비투입만으로 건축물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장비 투입에 대한 건축법상 제재 규정은 없음. 4. 제2회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 후 조건부 가결사항에 대한 확인과정에서 2안(펌프장 설치)을 채택한 위원명단과 근거서류 ○ 2018년 9월 19일 개최된 제2회 울산광역시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는 북구청에서 심의 요청한 '화동천, 화봉천, 화산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건을 심의하여 전체 위원 17명 가운데 10명이 출석하고 출석위원 전원

접수일자 및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결과
			찬성으로 심의 안건을 조건부 가결하였으며 사업시행자(LH공사)의 이행계획에 대해 '심의 조건사항 4)'에 따라 심의위원들의 확인을 받은 사안으로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는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9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음. 5. 명촌천 하천정비계획보고서, 태화강 하류 하천정비 기본계획 보고서(가장 최근년도) ○ 북구청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보공개 요청시 공개하겠음.

제5절 주요 의정활동사항

□ 2018년 하반기

01. 제7대 북구의회 전반기 원구성 완료



북구의회가 7월 2일 제174회 임시회를 열어 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주언 의원, 부의장으로 국민의 힘(당시 자유한국당) 백현조 의원을 각각 선출하며 의장단 구성을 완료했다.

6·13 지방선거 울산 북구 가선거구(농소1·강동·송정동)에서 당선된 이주언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대외협력국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구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같은 선거 북구 다선거구(효문, 양정, 염포동)에서 당선된 백현조 부의장은 제6대 북구의회 의원을 역임한 재선의원이다.

이주언 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북구의 가치를 보다 높이는 것이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가장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2. 의정활동 실시간 인터넷 생방송

북구의회가 구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인터넷과 모바일로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생방송하기 시작했다.

북구의회는 7월 17일부터 열린 제175회 임시회부터 인터넷 생방송 및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의정활동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고 있다.



울산시의회를 제외하고 지역 5개 구·군 의회 중 최초로 시행한 것이다.

구민 누구나 북구의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방송에 접속하면 회기 중 본회의 등 의사진행 과정 전반을 생방송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서나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켰으며, 질문자와 답변자를 같은 화면에서 볼 수 있는 1대 1 영상분할시스템도 도입하여 생동감을 높였다.

의정활동 인터넷 생방송은 북구의회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http://council.bukgu.ulsan.kr)에 접속하면 시청할 수 있다.

지난 방송은 녹화 VOD 다시보기를 통해, 회의 영상 및 자막까지 함께 제공하며 의원별 영상도 검색할 수 있어 이용에 편리함을 더했다.

03. 추석맞이 자원봉사활동 실시



북구의회 의원들이 추석을 맞아 9월 17일 오전 강동산하지구 주변에서 풀베기 현장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잡풀이 많이 자라 풀베기 민원이 급증하던 강동초교 주변 및 도로변을 직접 둘러보고 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현장을 찾아 현장 활동에 나선 것이다.

이주언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과 의회사무과 전 직원이 참여해 풀을 베고 주변 환경을 적극 정비했다.

이주언 의장은 “추석 전 주요 민원사항을 해결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북구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기 위해 자원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4.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북구의회 의원들이 9월 18일 오전 관내 복지시설인 엘림종합복지센터와 양정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과일 및 생활용품 등을 추석 위문품으로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각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불편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주언 의장을 비롯한 북구의회 의원들은 “추석을 맞아 관심과 온정이 그리운 이웃들이 행복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관내 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방문, 격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05. 자동차부품 경쟁력 강화 세미나 개최



북구의회가 12월 4일 의회 다목적실에서 의원연구회 ‘희망북구의정포럼’ 주관으로 자동차부품 경쟁력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품질부서 관계자와 관련 중소기업인을 초빙해 이들로부터 고급차에 대한 이해와 미래 자동차 산업 등을 주제로 안내받았다.

이를 통해 제네시스 브랜드의 디자인, 상품성 등을 안내받고 고급차로의 변화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와 함께 자율주행차, 고성능차, 카셰어링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자동차 산업의 방향성을 짚어봤다.

의원들은 북구청 앞에 마련된 실제 자동차를 보면서 미래자동차 산업의 준비를 위해 구청 담당부서와 함께 행정 지원 방향을 고민하기로 했다.

06.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종합 심의의결



제179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12월 21일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의의결을 마지막으로 폐회했다.

32일간의 일정 중 마지막 날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는 2회 추경 대비 164억7,966만원이 증액된 3,573억98만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정민 의원은 '북부버스터미널의 신설과 농소2·3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촉구합니다'를 주제로, 박상복 의원은 '자동차 부품산업 전담부서를 신설하자'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2019년도 예산안, 조례안 및 각종 부의안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 2019년 상반기

01.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격려품 전달



북구의회 의원들이 설을 맞아 1월 29일 오전 관내 사회복지시설 2개소를 방문했다.

클로버장애인단기보호시설과 북구어르신행복마을을 방문하여 격려품을 전달하며 시설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과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 등을 경청했다.

이주언 의장은 "소외계층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 이들이 이웃과 함께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02. 광역전철 송정역(가칭) 연장 촉구 결의



북구의회가 2월 28일 열린 제18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부산~울산 광역전철 송정역(가칭) 연장 운행 촉구 결의안 및 고헌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주언 의장은 부산~울산 광역전철 송정역(가칭) 연장 운행 촉구 결의안에서 "송정역은 향후 유일한 북구의 역사가 되고, 송정역에서 직선거리 10km 내에는 약 45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창 개발 중인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로 10만여명이 지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송정역까지 광역철도가 반드시 연장 운행되어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외경 의원은 고헌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개정 촉구 결의안을 통해 “광복회 총사령을 역임한 고헌 박상진 의사는 광복회를 조직하고 조국의 독립운동에 모든 것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서훈등급이 3등급에 머물렀다”면서 “조국 독립에 기여한 공헌과 공적을 고려하여 서훈등급을 반드시 상향해야 한다”며 상훈법 개정을 촉구했다.

03. 재활용품 수거 환경미화봉사활동



북구의회 의원들이 3월 4일 새벽 화봉동 일원에서 환경미화원과 함께 재활용품 수거 및 홍보활동을 추진했다.

이 활동은 북구의회가 분기별로 추진하는 자원봉사활동의 하나다.

의원들이 직접 재활용품 수거에 나서면서 환경미화원들의 노고를 함께 체험하고 공감했다.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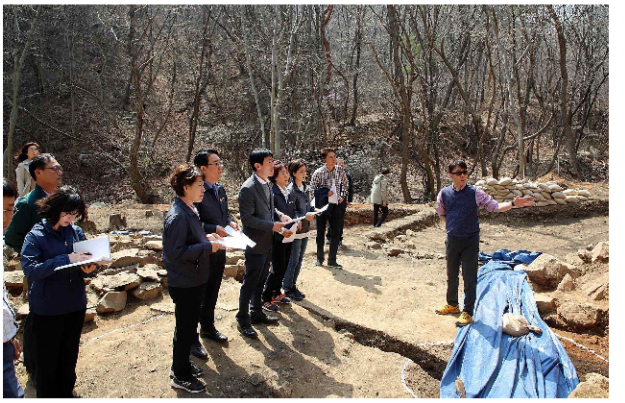
이주언 의장은 “매일 새벽 주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애쓰는 환경미화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근무환경이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4. 달천철장 토철활용 쇠부리터 시찰

북구의회가 대안동 쇠부리터 발굴조사 현장을 찾아 쇠부리기술 복원에 대해 강조했다.

이주언 의장 등 북구의회 의원들은 3월 27일 북구 대안동 산 177 일원의 일명 ‘깊은 골’로 불리는 동대산 쇠부리터를 찾았다.

이곳은 쇠부리 복원사업 활용과 달천철장과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 북구가 5월까지 발굴 및 조사를 진행 중인 곳이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시설과 주변 일대를 둘러보면서 이번 발굴조사가 울산쇠부리기술 복원과 쇠부리콘텐츠 개발 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주언 의장은 "울산쇠부리는 우리나라 쇠부리 역사에서 가장 특징적이고 선진적인 기술문화를 보유했다"면서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명맥이 끊긴 울산쇠부리기술을 복원, 울산쇠부리문화를 울산의 랜드마크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05. (가칭)송정역 건립현장 등 현안 점검



북구의회가 제181회 임시회 14일차인 4월 25일 (가칭)송정역사 등 관내 주요시설 건립현장에서 현안을 파악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이날 오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고 곧바로 현장방문 활동에 나섰다.

의원들은 먼저 송정역 건립공사 현장 곳곳을 둘러본 뒤 광역전철 송정역 연장 운행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송정역사 확장 가능성 및 역사 주차면수 확대 등에 대해 피력했다.

이에 앞서 의원들은 화봉동 일원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울산시가 추진 중인 화봉제1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현장을 찾았다.

의원들은 이날 호계동의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현장도 찾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건립 추진상황 등을 보고 받은 의원들은 구축되는 시설과 이용 수요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이날 현장방문활동을 마무리했다.

06. 개원 1주년 맞아 간식전달·보육도우미 봉사



북구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아 별도의 기념행사 대신 지역 장애어린이들에게 사랑을 전파하는 훈훈한 자원봉사 활동에 나섰다.

북구의회는 7월 10일 북구종합사회복지관에 위치한 국공립 장애전문 해밀어린이집을 찾아 '개원 1주년 기념 의원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보육교사도우미로서 반별로 배치돼 교사, 어린이들과 함께 만들기와 그리기 등을 진행하고, 미끄럼틀과 장난감을 활용하면서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와 별도로 유기농 과자와 음료 등의 간식도 전했다.

이주언 북구의회 의장은 "개원 1주년을 맞아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고, 첫 등원 때의 초심을 되돌아보기 위해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준비했다"면서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는데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보면서 오히려 큰 힘을 얻어간다"고 밝혔다.

07. '일본정부 수출규제 철회' 촉구

북구의회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구의회는 8월 26일 본회의장에서 이동권 구청장 등 북구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주언 의장을 비롯한 북구의회 의원 8명 전원은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자로 발언대에 오른 임채오 운영위원장은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 제재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에 반하며 양국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조치”라고 지적하면서, 양국 우호 관계를 훼손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농단하려는 아베 정부의 만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08. 추석 맞아 아동센터 등 복지시설 위문



북구의회가 추석을 앞두고 9월 9일 공립 호계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와 사회복지법인 메아리복지원이 운영하는 메아리동산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추석을 앞두고 관심과 온정이 필요한 이웃들이 행복한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한 것이다.

지난달부터 15일간 진행해 온 ‘제183회 임시회’를 이날 오전 폐회한 뒤 첫 공식일정으로 이들 시설을 찾았다.

방문단은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을 격려하고, 시설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쌀과 복사용지, 물티슈 등 생활필수품을 양 기관에 각각 전달했다.

북구의회 이주언 의장은 “모든 이들이 행복한 명절을 맞이하길 바라면서 이웃들을 찾았다”면서 “즐거워야 할 명절에 소외되는 계층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돌보려 한다”고 말했다.

09. 경로식당서 어르신 배식봉사활동



북구의회가 4분기 자원봉사활동으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활동에 나섰다.

북구의회는 10월 17일 울산 북구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어르신행복식당'에서 자원봉사활동으로 급식 배식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각자의 배식코너에서 3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차질 없이 점심식사를 하도록 지원했다.

이주언 의장은 "어르신들이 즐겁게 식사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매우 보람찬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사회 공헌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10. 기박산성 등 역사벨트 현장방문 활동



북구의회가 북구 역사벨트사업 현장을 방문하면서 '제18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북구의회는 10월 17일 박상진 역사공원과 기박산성, 신흥사, 유포석보를 차례로 찾는 현장방문활동에 나섰다.

의원들은 박상진 역사공원을 방문해 산책로, 조경 및 잔디, 담장, 고택건축물, 교육장 및 관리동 등을 점검했다.

이어 기박산성, 유포석보, 신흥사 등을 찾아 울산 북구청의 '역사 벨트화' 사업 추진 현황 및 현안 사항을 확인했다.

이주언 의장은 "기박산성과 신흥사는 임진왜란 당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의

병을 일으킨 울산을 대표하는 호국정신이 깊이 서려 있는 지역"이라며 "이처럼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잘 보존하는 것은 우리 후손들의 의무이며, 이를 통해 북구관광 활성화도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11. 3차 추경안 의결, 2019년 일정 마무리



북구의회가 12월 20일 본회의장에서 제185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2019년도 공식 일정을 마쳤다.

북구의회는 앞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천881억5천90만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사했고, 사무비품 구입비 2천만원 및 보건소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공사비 1천만원을 삭감해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북구의회는 이날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지난달부터 한 간 이어 온 이번 회기를 폐회했다.

이번 회기에서 북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452건의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75건을 건의하고 14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 13일 개최한 제18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3천734억3천507만8천원 규모의 내년도 북구 당초예산안을 의결했다.

특히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침체에 따른 긴축재정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의원 해외출장 경비 등을 자발적으로 삭감했다.

□ 2020년 상반기

01. 설 앞 아동센터 등 복지시설 위문



북구의회가 설을 맞아 관심과 온정을 필요로 하는 지역 이웃들을 찾아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내밀었다.

북구의회 의원 일동과 의회 사무과 직원들은 1월 21일 북구지역 복지시설 2곳을 찾아 격려 성품을 전달하고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연암동 상방로에 위치한 '우리들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이용자들을 위한 쌀과 물티슈 등의 생필품과 함께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을 전달했다.

이어 연암동 두부곡1길 소재 울산현대요양원을 찾아 화장지와 세제 등의 생필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로부터 현황을 청취했다.

02.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현장방문



북구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점검과 비상근무자 격려에 나섰다.

북구의회는 2월 5일 북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계획'에 따라 운영 중인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울산공항 발열 감시 카메라 운용 현장을 찾아 이를 점검하고 대책을 확인했다.

먼저, 1월 24일부터 북구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를 찾아 감염병 예방 대책을 듣고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전담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울산공항에서 발열 감시 카메라를 운용 중인 북구청 비상근무 담당자들을 만나 감시 기기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 대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주언 의장은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방지와 무분별한 거짓 뉴스 및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03. 북구의회 2020년 첫 임시회, 업무계획 청취



울산북구의회가 2020년 첫 임시회에서 북구청 각 실·과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에 나섰다.

북구의회는 2월 17일 본회의장에서 제186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같은달 28일까지 12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18일부터 오는 26일까지는 각 부서로부터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27일에는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안',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마지막 28일에는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04. 코로나19 극복 위한 성금 전달

울산북구의회가 대구, 경북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해 성금을 전달했다.

대구·경북 지원을 위해 전국적인 성금 전달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울산지역 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성금 전달에 나선 것이다.



북구의회는 3월 12일 의장실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모금 전달식'을 열고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구지회 계좌로 송금했다.

성금은 같은달 9일부터 이날까지 의원 7명 전원과 의회사무과 공무원 전원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모은 것으로 약 200만원 규모다.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 경북지역의 취약계층 지원과 환자 치료 및 의료진 방호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북구의회 구성원들이 마음을 한 데 모았다.

05. 법제처 초빙 '맞춤형 자치법제' 교육



울산북구의회가 자치법규 품격 향상과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법제처 법률전문가를 초빙, 자치법제 교육을 진행했다.

북구의회는 3월 18일 의회 다목적실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 총 23명이 참가한 가운데 '맞춤형 자치법제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가 진행 중인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사업에 의거한 것이다.

법제처 조정필 법제협력관이 강사로 나서 △자치법규 입안 해석 정비 방향 △조례(규칙) 제·개정 가능 여부 및 상위법령 위반 여부 △자치법규 입안 시 문장 구성 및 형식 △자치법규 진행시 쟁점사항 및 현행 자치법규 해석 등에

대해 2시간 동안 강연했다.

조 협력관은 자치입법의 기본원칙,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관계 등에 대해 판결 및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이해를 도왔다.

06. 임채오 울산북구의회 7대 후반기 의장 선출



울산북구의회가 6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18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제7대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치렀다.

의장 선거에는 임채오 의원이 단독 입후보해 의장으로 당선됐다.

임채오 신임 의장은 "코로나19, 경기 침체, 자동차산업 부진, 고용 불안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영광과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치른 부의장 선거에서는 이정민 의원이 투표 끝에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이정민 신임 부의장은 "구민을 위한 길을 찾기 위해 진지한 고민과 토론을 펼쳐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자"면서 "열린 자세로 동료의원 간에 화합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의원들이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말했다.

07. 봉사활동으로 7대 전반기 마무리

울산북구의회가 제7대 전반기를 자원봉사활동으로 마무리했다.

북구의회 의원 8명 전원과 의회사무과 전 직원은 6월 30일 북구 천곡천 일대를 찾아 쓰레기 수거 및 환경정화 활동에 나섰다.

이날 행사는 제7대 개원 2주년을 맞아 전반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후반기 원



구성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의회 구성원들은 잡풀이 무성한 풀숲을 헤치고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들을 수거하며 굵은 땀방울을 흘렸다.

이주언 전반기 의장은 "봉사하고 솔선수범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수시로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다소 무더운 날씨에도 적극적으로 정화활동에 나서 준 의원들과 직원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제6절 의정활동일지

2018년도

일 시	장 소	분 류	의정활동 내용	비고
7. 2.(월) 16:00	북구의회	개원식	◦ 제7대 북구의회 개원식	
7. 2.(월) 17:00	북구의회 의장실	간담회	◦ 7월 임시 의원 간담회	
7. 3.(화) 10:00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농소1동 동 순회 방문	
7. 3.(화) 10:00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농소2동 동 순회 방문	
7. 6.(금) 15:30	북구 문화예술회관	정기행사	◦ 2018 양성평등 기념행사	
7. 6.(금) 16:00	북구청 대회의실	이·취임식	◦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이·취임식	
7. 7.(토) 10:00	쇠부리 체육센터	정기행사	◦ 2018 드림하이 명랑운동회	
7. 9.(월) 10:00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농소3동 동 순회 방문	
7. 9.(월) 14:00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강동동 동 순회 방문	
7. 10.(화) 10:00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효문동 동 순회 방문	

일 시	장 소	분 류	의정활동 내용	비고
7. 11.(수) 10:00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송정동 동순회 방문	
7. 11.(수) 14:00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양정동 동순회 방문	
7. 12.(목) 10:00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염포동 동순회 방문	
7. 12.(목) 14:00	북구의회 다목적실	교육	◦ 제7대 북구의회 의원 역량강화교육	
7. 13.(금) 14:00	북구 문화예술회관	정기행사	◦ 제2회 북구 구민의 날 기념식	
7. 17.(화)~ 7. 26.(목)	북구의회	임시회	◦ 제175회 북구의회 임시회	
7. 17.(화) 11:00	북구의회 의장실	간담회	◦ 7월 의원 간담회	
7. 28.(토) 10:00	친환경 급식센터	정기행사	◦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8. 13.(월) 10:00	북구의회	의회방문	◦ 호계느티나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모의의회	
8. 14.(화) 10:00	북구의회	의회방문	◦ 이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모의의회	
8. 15.(수) 10:00	박상진의사 생가	정기행사	◦ 고헌 박상진의사 순국 97주기 추모제	
8. 20.(월)	북구의회	임시회	◦ 제176회 북구의회 임시회	
8. 28.(화)~ 9. 10.(월)	북구의회	임시회	◦ 제177회 북구의회 임시회	
9. 1.(토) 13:00	정자항 남파제 일원	정기행사	◦ 제4회 강동섶다리축제	
9. 3.(월) 16:00	북구 보건소	개소식	◦ 건강버스 운영 및 건강관리센터 개소식	

일 시	장 소	분 류	의정활동 내용	비고
9. 4.(화) 10:30	울산 안전체험관	개관식	◦ 울산안전체험관 개관식	
9. 8.(토) 10:30	북구청광장	정기행사	◦ 제7회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9. 10.(월) 11:30	북구 노인복지관	봉사활동	◦ 북구노인복지관 행복식당 배식 봉사활동	
9. 15.(토) 10:00	북구청광장	정기행사	◦ 제7회 울산북구 농도한마당 큰잔치	
9. 17.(월) 10:00	강동초등학교 인근	봉사활동	◦ 풀베기 작업 등 환경정화활동	
9. 18.(화) 10:00	양정느티나무 지역아동센터 외 1개소	위문방문	◦ 추석맞이 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9. 20.(목) 10:00	오토밸리 복지센터	정기행사	◦ 다문화여성들과 함께하는 추석음식 만들기	
9. 21.(금) 10:00	효문코오롱 하늘채	개원식	◦ 국공립 하늘채어린이집 개원식	
9. 28.(금) 14:00	북구의회 다목적실	의원교육	◦ 제7대 북구의회 의원 예·결산 교육	
10. 5.(금)~ 10. 19.(금)	북구의회	정례회	◦ 제178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10. 11.(목) 10:40	북부소방서	개청식	◦ 북부소방서 개청식	
10. 14.(일) 09:30	농소운동장	정기행사	◦ 제18회 구민한마음 생활체육대회	
10. 16.(화) 11:00	오토밸리 복지센터	정기행사	◦ 제19회 북구장애인 복지증진대회	
10. 17.(수) 13:30	북구 노인복지관	정기행사	◦ 제22회 노인의날 기념 북구 선배 시민 문화제	
10. 18.(목) 14:00	친환경 급식센터	정기행사	◦ 북구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계절김치담그기'	

일 시	장 소	분 류	의정활동 내용	비고
10. 18.(목) 16:00	북구 보건소	개소식	◦ 치매안심센터 개소식	
10. 20.(토) 09:00	정자항	정기행사	◦ 강동사랑길 및 해파랑길 걷기 대회	
10. 20.(토) 14:00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정기행사	◦ 제4회 삼포축제	
10. 23.(월) 21:00	농소3동 관내	봉사활동	◦ 자율방범활동 및 학생 통학지도	
10. 24.(화) 15:20	오토밸리 복지센터	정기행사	◦ 2018 사회복지시설·기관 한마음대회	
10. 27.(토) 10:00	북구 문화예술회관	정기행사	◦ 제17회 효자송도선생 효사상 고취 사생대회	
10. 27.(토) 10:30	북구청 광장	정기행사	◦ 제5회 울산 북구 책잔치	
10. 27.(토) 11:00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정기행사	◦ 농소2동 어르신 한마음 큰잔치	
11. 7.(수) 19:00	쇠부리 체육센터	기념공연	◦ 쇠부리체육센터 공연장 개관기념 공연	
11. 16.(금) 14:00	달천동767번지	정기훈련	◦ 2018 산불진화 대응훈련	
11. 17.(토) 17:00	북구 문화예술회관	정기행사	◦ 북구청소년 오케스트라 제6회 정기연주회	
11. 18.(일) 08:00	양정구장 내 인라인장	정기행사	◦ 제1회 북구청장배 인라인대회	
11. 18.(일) 08:00	농소운동장	정기행사	◦ 제15회 북구청장배 축구대회	
11. 20.(화)~ 12. 21.(금)	북구의회	정례회	◦ 제179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11. 27.(화) 10:00	북구청 대회의실	정기행사	◦ 북구 제3대학 제11기 졸업식	

일 시	장 소	분 류	의정활동 내용	비고
12. 3.(월) 14:00	강동문화센터	개관식	◦ 강동문화센터 개관식	
12. 6.(목) 13:30	오토밸리 복지센터	정기행사	◦ 2018 북구 자원봉사 대축제	
12. 18.(화) 17:30	북구 문화예술회관	정기행사	◦ 제8회 북구 보육인의 밤 문화행사	
12. 21.(금) 11:00	북구청 대회의식	퇴임식	◦ 환경미화원 정년퇴임식	
12. 21.(금) 11:30	북구의회 다목적실	종무식	◦ 2018 북구의회 종무식	
12. 31.(금) 11:00	북구청 대회의실	종무식	◦ 2018 북구청 종무식	

2019년도

일 시	장 소	분 류	의정활동 내용	비고
1. 7.(월) 10:00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정기행사	◦ 2019 염포동 새해공감토크	
1. 7.(월) 14:00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정기행사	◦ 2019 양정동 새해공감토크	
1. 8.(화) 10:00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정기행사	◦ 2019 효문동 새해공감토크	
1. 8.(화) 14:00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정기행사	◦ 2019 강동동 새해공감토크	
1. 9.(수) 14:00	북구청 대회의실	정기행사	◦ 2019 구정발전 기원 신년인사회	
1. 10.(목) 10:00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정기행사	◦ 2019 송정동 새해공감토크	
1. 10.(목) 14:00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정기행사	◦ 2019 농소3동 새해공감토크	
1. 11.(금) 10:00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정기행사	◦ 2019 농소2동 새해공감토크	
1. 11.(금) 10:00	효문코오롱하늘채 아파트	개소식	◦ 효문코오롱하늘채 경로당 개소식	
1. 11.(금) 14:00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정기행사	◦ 2019 농소1동 새해공감토크	
1. 22.(화) 14:00	북구청 대회의실	정기행사	◦ 자연보호 중앙연맹 북구협의회 제21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1. 22.(화) 19:00	북구청 대회의실	보고회	◦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	

일 시	장 소	분 류	의정활동 내용	비고
1. 24.(목) 14:00	북구청 대회의실	교육	◦ 2019 통장 직무 교육	
1. 28.(월) 15:00	북구청 대회의실	공청회	◦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공청회	
1. 29.(화) 10:30	클로버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외 1개소	위문방문	◦ 설맞이 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1. 30.(수) 11:30	북구보훈회관	정기총회	◦ 6.25.참전유공자 안보결의 대회 및 정기총회	
1. 31.(목) 14:00	정자 활어직매장	준공식	◦ 정자활어직매장 준공식	
2. 7.(목) 10:00	북구 문화예술회관	발대식	◦ 201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 및 안전교육	
2. 18.(월)~ 2. 28.(목)	북구의회	임시회	◦ 제180회 북구의회 임시회	
2. 19.(화) 16:00	강동 산하해변	정기행사	◦ 2019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	
2. 22.(금) 11:00	오토밸리 복지센터	이·취임식	◦ 북울산 새마을금고 이사장 이·취임식	
2. 26.(화) 10:20	북구청 대회의실	정기행사	◦ 울산북구문화원 제15차 정기총회	
2. 27.(수) 13:30	북구청 대회의실	교육	◦ 2019 보육사업안내 교육	
3. 1.(금) 09:30	북구 문화예술회관	정기행사	◦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3. 4.(월) 06:30	연암,화봉, 송정동 일원	봉사활동	◦ 재활용품 수거 및 홍보활동	
3. 5.(화) 10:00	북구청 대회의실	정기행사	◦ 제3대학 제12기 입학식	
3. 8.(금) 10:30	북구노인지회 다목적실	정기행사	◦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제22차 정기총회	

일 시	장 소	분 류	의정활동 내용	비고
3. 15.(금) 17:00	북구청 대회의실	발대식	◦ 청소년지도위원 발대식 및 역량강화 교육	
3. 20.(수) 10:30	신천하나로마트 문화센터	정기행사	◦ 제29기 농소농협 주부대학 개강식	
3. 20.(수) 15:00	북구 보건소	정기행사	◦ 2019 치매파트너 어르신기억지킴이 발대식	
3. 21.(목) 10:30	당사동 산 149번지 일원	정기행사	◦ 제74회 식목일기념 나무심기 행사	
3. 21.(목) 14:00	오토밸리 복지센터	정기행사	◦ 한국외식업중앙회울산북구지부 제23회 정기총회	
3. 22.(금) 10:00	명촌동 꽃동산	정기행사	◦ 바르게살기운동 꽃길, 꽃동산 만들기	
3. 26.(화) 14:00	명촌동 둔치	정기행사	◦ 새봄맞이 일제 대청소의 날	
3. 28.(목) 10:30	농소농협 벼 육묘장	정기행사	◦ 제6회 풍년농사 기원제 및 화합한마당	
3. 29.(금) 11:00	북구보훈회관	정기행사	◦ 2019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울산 북구지회 총회 및 안보결의대회	
3. 30.(토) 10:00	북구청 광장	정기행사	◦ 2019 새봄맞이 행복매장 클린-환경 나눔장터	
4. 1.(월) 16:00	중산어린이공원	개장식	◦ 중산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리모델링 개장	
4. 3.(수) 14:00	북구의회 다목적실	위원회	◦ 울산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 위원회	
4. 6.(토) 11:00	호봉사	정기행사	◦ 제66회 농소 6.25 전몰군경 합동 위령제	
4. 7.(일) 09:00	양정 생활체육공원	정기행사	◦ 제18회 북구청장배 족구대회	
4. 7.(일) 10:00	이화중학교	정기행사	◦ 제19회 농소2동 동천강 걷기대회	

일 시	장 소	분 류	의정활동 내용	비고
4. 12.(금)~ 4. 26.(금)	북구의회	임시회	◦ 제181회 북구의회 임시회	
4. 17.(수) 14:00	호계2차 수자인아파트	개관식	◦ 한양수자인 작은도서관 개관식	
4. 18.(목) 16:00	한솔공원	준공식	◦ 한솔공원 리모델링 사업 준공식	
4. 19.(금) 11:00	정임석 열사 묘역	정기행사	◦ 제59주년 4.19 민주열사 정임석 추모행사	
4. 20.(토) 10:00	종하체육관	정기행사	◦ 2019 울산광역시 구·군의원 교류행사	
4. 21.(일) 10:00	오토밸리 복지센터	정기행사	◦ 북구방법연합회 창립 19주년 기념 가족한마음체육대회	
4. 23.(화) 10:30	기령소공원	정기행사	◦ 제20회 기박산성의병 추모제	
4. 23.(화) 16:30	마동로47	개소식	◦ 마을기업 씨엔트리(주) 개소식	
4. 25.(목) 14:00	오토밸리 복지센터	정기행사	◦ 송철호 시장 초청 북구민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한마당	
4. 26.(금) 11:30	효문운동장	정기행사	◦ 2019 상반기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4. 27.(토) 10:30	달천운동장	정기행사	◦ 제22회 농소3동 체육회 편백숲걷기 및 명랑운동회	
4. 27.(토) 18:00	호계시장	정기행사	◦ 제5회 호계전통시장 한마당 큰잔치	
4. 28.(일) 10:00	효문운동장	정기행사	◦ 제16회 효문동 한마음체육대회	
5. 4.(토) 10:00	북구청 광장	정기행사	◦ 제97회 어린이날 기념 북구 어린이 큰잔치	
5. 4.(토) 11:00	북구청 대회의실	발대식	◦ 울산쇠부리축제 쇠부리봉사단 발대식 및 학술 심포지엄	

일 시	장 소	분 류	의정활동 내용	비고
5. 8.(수) 09:30	북구 노인복지관	정기행사	◦ 울산북구노인복지관 제47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5. 9.(목) 10:30	화봉 게이트볼장	정기행사	◦ 제19회 북구청장배 게이트볼대회	
5. 10.(금)~ 5. 12.(일)	북구청 및 달천철장	정기행사	◦ 제15회 울산쇠부리축제	
5. 18.(토) 13:00	오토밸리 복지센터	정기행사	◦ 제6회 청소년직업체험축제 꿈꾸잡	
5. 19.(일) 09:00	강동해변	정기행서	◦ 제13회 강동해변 몽돌마라톤 대회	
5. 19.(일) 10:30	오토밸리 복지센터	정기행사	◦ 제16회 북구청장배 동대항 배구대회	
5. 21.(화) 10:00	농소 운동장	정기행사	◦ 제5회 북구 노인 건강 체육대회	
5. 21.(화) 21:00	진장, 명촌동 일원	봉사활동	◦ 자율방범활동	
5. 25.(토) 10:00	북구청 광장	정기행사	◦ 제2회 클린환경 나눔장터	
5. 26.(일) 10:00	메카볼링센터	정기행사	◦ 제20회 북구청장배 볼링대회	
5. 26.(일) 11:00	박상진 호수공원	정기행사	◦ 제12회 박상진호수공원 건강걷기대회	
5. 28.(화) 14:00	울산공항	정기훈련	◦ 2019 을지태극연습 훈련	
6. 1.(토) 16:00	쇠부리 문화거리	정기행사	◦ 제6회 농소3동 어울림 한마당 축제	
6. 2.(일) 10:00	무룡정	정기행사	◦ 제19회 북구청장배 궁도대회	
6. 2.(일) 11:00	양정 생활체육공원	정기행사	◦ 제12회 양정동민 한마음 산행 및 체육대회	

일 시	장 소	분 류	의정활동 내용	비고
6. 2.(일) 13:00	쇠부리 체육센터	정기행사	◦ 제13회 북구청장배 국학기공대회	
6. 3.(월) 11:00	효문운동장	정기행사	◦ 2019 북구마을공동체운동활력화 다짐대회	
6. 4.(화) 10:00	창평동390 일원	기공식	◦ 호계문화체육센터 기공식	
6. 6.(목) 10:00	울산대공원 현충탑	정기행사	◦ 제64회 현충일 추념식	
6. 8.(토) 09:30	진장 파크골프장	정기행사	◦ 제6회 북구협회장배 파크골프대회	
6. 9.(일) 17:00	천곡문화센터	이·취임식	◦ 농소3동 자율방범대 창립22주년 기념 및 제9대 대장 이·취임식	
6. 10.(월)~ 6. 24.(월)	북구의회	정례회	◦ 제182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6. 10.(월) 13:00	북구 문화예술회관	정기행사	◦ 2019 북구 어린이집 연합 부모교육	
6. 10.(월) 14:00	산하중앙2로	개관식	◦ 현대자동차 키즈오토파크 울산 개관식	
6. 11.(화) 15:00	남정자경로당	선포식	◦ 어르신 안심마을 선포식	
6. 15.(토) 10:30	북구청 대회의실	발대식	◦ 2019 제1대 울산 북구 아동의회 발대식	
6. 19.(수) 13:00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개소식	◦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 지원식	
6. 20.(목) 14:00	북구청 대회의실	세미나	◦ 2019 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책 세미나	
6. 23.(일) 09:00	농소운동장	정기행사	◦ 제16회 북구청장배 축구대화	
6. 25.(화) 10:00	종하체육관	정기행사	◦ 제69주년 6.25전쟁 기념행사	

일 시	장 소	분 류	의정활동 내용	비고
6. 27.(목) 11:00	종달새공원	준공식	◦ 종달새공원 리모델링 사업 준공식	
6. 30.(일) 10:00	쇠부리 체육센터	정기행사	◦ 제14회 북구청장배 검도대회	
7. 4.(목) 14:00	북구청 대회의실	정기행사	◦ 북구 최고의 고민을 찾아라	
7. 5.(금) 13:30	북구 문화예술회관	정기행사	◦ 2019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7. 7.(일) 09:00	쇠부리 체육센터	정기행사	◦ 제9회 북구청장배 스쿼시대회	
7. 7.(일) 10:00	오토밸리 복지센터	정기행사	◦ 제10회 북구청장배 수영대회	
7. 8.(월) 14:00	구암마을	준공식	◦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준공식	
7. 9.(화) 10:00	화청경로당	준공식	◦ 화청경로당 준공식	
7. 9.(화) 10:00	산하해변	정기행사	◦ 바르게살기위원회 해변청결운동	
7. 9.(화) 11:00	오토밸리 복지센터	정기행사	◦ 제3회 북구청장배 한궁대회	
7. 10.(수) 10:30	해밀어린이집	봉사활동	◦ 개원1주년기념 보육교사도우미 봉사활동	
7. 11.(목) 10:30	신천하나로마트 문화센터	정기행사	◦ 농소농협 제29기 주부대학 수료식	
7. 12.(금) 10:00	별하나, 별두리 어린이집	개원식	◦ 국공립 별하나, 별두리 어린이집 개원식	
7. 14.(일) 13:30	강동 바다봉사실	정기행사	◦ 해병대전우회 울산북구지회 안전기원제	
7. 15.(월) 14:00	북구 문화예술회관	정기행사	◦ 2019 주민자치센터 동아리경연대회	

일 시	장 소	분 류	의정활동 내용	비고
7. 15.(월) 20:00	연암자율방범대 초소	봉사활동	◦ 연암자율방범대 합동순찰	
7. 18.(목) 10:30	농소 새마을금고	정기행사	◦ 주부가요교실 제23기 졸업식	
7. 22.(월) 17:00	태화강 국가정원	헌정식	◦ 태화강국가정원 지정서 헌정식	
7. 24.(수) 10:00	북구의회	의회방문	◦ 세계로태권도 국제문화교류단 견학	
7. 24.(수) 10:30	경주 관성해수욕장	정기행사	◦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북구지부 장애인과 함께하는 바다체험	
7. 26.(금) 14:00	잠실공원	준공식	◦ 잠실공원 리모델링 사업 준공식	
7. 26.(금) 15:00	북구청 대회의실	토론회	◦ 울산 북구 노사민정 토론회	
7. 26.(금) 19:30	강동동 중앙공원	정기행사	◦ 2019 울산 서머페스티벌	
7. 31.(수) 10:30	은월초등학교	개교식	◦ 은월초등학교 개교기념식	
8. 15.(목) 10:00	고헌 박상진 생가	정기행사	◦ 고헌 박상진의사 순국 98주기 추모제	
8. 19.(월) 10:00	강동산하해변	정기행사	◦ 행락철 피서지 쓰레기 일제대청소	
8. 20.(화) 10:00	발리동천	정기행사	◦ 2019 울산 구·군의회 의원 합동워크숍	
8. 24.(토) 17:00	북구 청소년 문화의집	정기행사	◦ 2019 청소년 한여름밤의 꿈 행사	
8. 26.(월)~ 9. 9.(월)	북구의회	임시회	◦ 제183회 북구의회 임시회	
8. 26.(월) 14:00	북구청 대회의실	보고회	◦ 울산 쇠부리문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일 시	장 소	분 류	의정활동 내용	비고
8. 27.(화) 14:00	북구청 대회의실	발대식	◦ 범 구민 도서기증 운동 발대식	
8. 29.(목) 14:00	북구청 대회의실	간담회	◦ 울산 북구 중소기업·소상공인 기업 옴부즈만 현장회의	
8. 30.(금) 15:00	송정저수지	정기훈련	◦ 2019 저수지·댐 비상대처훈련	
9. 1.(일) 17:00	한솔근린공원	정기행사	◦ 제8회 송화축제	
9. 2.(월) 10:00	오토밸리 복지센터	출범식	◦ 울산 북구 시설관리공단 출범식	
9. 2.(월) 13:00	고헌초등학교	개교식	◦ 고헌초등학교 개교기념식	
9. 3.(화) 10:00	오토밸리 복지센터	정기행사	◦ 농소농협 주부대학 총동창회	
9. 7.(토) 10:00	오토밸리 복지센터	정기행사	◦ 제3회 북구청장배 우슈대회	
9. 9.(월) 13:30	메아리동산 외 1개소	위문활동	◦ 추석맞이 복지시설 위문	
9. 10.(화) 14:00	북구종합사회 복지관	정기행사	◦ 추석맞이 명절음식 나누기 행사	
9. 18.(수) 13:00	북구청 민방위장	정기행사	◦ 2019 지역 민방위 대장 교육	
9. 20.(금) 18:00	신천효성 어린이집	개원식	◦ 국공립 신천효성어린이집 개원식	
9. 21.(토) 10:00	북구청 광장	정기행사	◦ 제8회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9. 21.(토) 14:00	북구 문화예술회관	정기행사	◦ 제16회 청소년 예술제	
9. 24.(화) 11:30	신선도원몰	정기행사	◦ 6.25참전유공자회 호국영웅기장수여 기념 위로연	

일 시	장 소	분 류	의정활동 내용	비고
9. 25.(수) 11:00	오림이들	정기행사	◦ 벼 품종비교 시범포 평가회	
9. 25.(수) 17:00	오토밸리 복지센터	정기행사	◦ 민주평통자문회의 울산북구협의회 제19기 출범식 및 회장 취임식	
9. 28.(토) 10:00	달천운동장	정기행사	◦ 2019 사회복지시설 기관 관계자 한마음대회	
9. 28.(토) 18:00	호계역 광장	정기행사	◦ 제7회 홈골의 나눔소리 축제	
9. 30.(월) 10:00	북구청 대회의실	정기행사	◦ 2019 울산 북구 어린이집 연합 원장교육	
10. 1.(화) 11:00	북구청 대회의실	이·취임식	◦ 울산북구문화원장 이·취임식	
10. 4.(금) 13:00	농소운동장	정기행사	◦ 제2회 북구청장배 그라운드골프대회	
10. 5.(토) 13:00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정기행사	◦ 제5회 삼포축제	
10. 6.(일) 10:00	강동 산하중앙공원	정기행사	◦ 제5회 강동섶다리축제	
10. 7.(월) 10:00	강동문화센터	설명회	◦ 강동산하지구 현안사항 주민설명회	
10. 10.(목) 10:30	송정금강 어린이집	개원식	◦ 국공립 송정금강어린이집 개원식	
10. 11.(금) 18:00	박상진의사 생가	정기행사	◦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의 밤	
10. 13.(일) 09:30	농소운동장	정기행사	◦ 제19회 구민한마음 생활체육대회	
10. 14.(월) 11:30	오토밸리 복지센터	정기행사	◦ 농소농협 원로조합원 행복지원 행사	
10. 14.(월) 15:30	오치골공원	준공식	◦ 오치골공원 정비사업 준공식	

일 시	장 소	분 류	의정활동 내용	비고
10. 15.(화)~ 10. 18.(금)	북구의회	임시회	◦ 제184회 북구의회 임시회	
10. 15.(화) 13:30	당사 활어직판장	환영행사	◦ 현대자동차 노사지원 당사해상캠핑장 조성 MOU 체결 환영행사	
10. 16.(수) 10:00	북구 노인복지관	정기행사	◦ 2019 울산북구 선배시민문화제	
10. 16.(수) 14:00	쇠부리 체육센터	정기행사	◦ 북구새마을회 생명살림운동 현장교육	
10. 17.(목) 11:00	북구 노인복지관	봉사활동	◦ 어르신 배식봉사활동	
10. 18.(금) 10:00	양정생활 체육공원	정기행사	◦ 양정동 어르신 효 큰잔치	
10. 19.(토) 10:00	진장 파크골프장	정기행사	◦ 제4회 북구청장배 파크골프대회	
10. 20.(일) 10:00	효문운동장	정기행사	◦ 제19회 북구청장배 생활체육족구대회	
10. 20.(일) 11:00	무룡정	정기행사	◦ 제12회 고헌 박상진의사 순국 98주년 추모기념 궁도대회	
10. 20.(일) 12:00	명촌근린공원	정기행사	◦ 제7회 차별없는 세상을 향한 시민 걷기대회	
10. 21.(월) 10:30	쇠부리 체육센터	정기행사	◦ 제22회 농소3동 어르신위안잔치 한마당	
10. 25.(금) 10:30	JW 컨벤션센터	정기행사	◦ 제20회 북구장애인복지증진대회	
10. 26.(토) 09:00	강동사랑길	정기행사	◦ 2019 강동사랑길, 해파랑길 걷기대회	
10. 27.(일) 10:00	메카볼링장	정기행사	◦ 제20회 북구청장배 클럽대항 볼링대회	
10. 27.(일) 11:00	송정, 염포, 농소1동	정기행사	◦ 2019 어르신 경로잔치	

일 시	장 소	분 류	의정활동 내용	비고
10. 29.(화) 11:30	머큐어앰배서더호텔	현판식	◦ 머큐어앰배서더 울산 4성 기념 현판식	
11. 2.(토) 10:00	북구청 광장	정기행사	◦ 제6회 울산 북구 책잔치	
11. 3.(일) 09:00	쇠부리 체육센터	정기행사	◦ 2019 쇠부리 풍물경연대회	
11. 3.(일) 11:00	강동초등학교	정기행사	◦ 2019 강동동 어르신 한마음 큰잔치	
11. 4.(월) 11:00	박상진 호수공원	정기행사	◦ 2019 그린리더 힘다지기 행사	
11. 5.(화) 10:00	오토밸리 복지센터	정기행사	◦ 2019 효문동 경로잔치	
11. 9.(토) 10:00	북구청 대회의실	정기행사	◦ 제22회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 학생 글짓기대회	
11. 9.(토) 10:00	북구청 광장	정기행사	◦ 제4회 클린환경 나눔장터	
11. 11.(월) 10:30	오토밸리 복지센터	정기행사	◦ 2019 보훈가족 합동위로연	
11. 15.(금) 10:00	오토밸리 체육관	정기행사	◦ 2019 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11. 15.(금) 19:00	북구청 대회의실	정기행사	◦ 2019 소통하는 마을만들기 성과보고회	
11. 17.(일) 09:00	농소운동장	정기행사	◦ 제26회 북구 축구협회장배 축구대회	
11. 17.(일) 09:00	오토밸리 체육관	정기행사	◦ 2019 북구청장배 태권도 품새 한마당	
11. 18.(월) 10:30	비발디 어린이집	간담회	◦ 국공립 비발디어린이집 간담회	
11. 19.(화) 14:00	오토밸리 복지센터	세미나	◦ 취약계층 노동자 건강권 지원 확산을 위한 세미나	

일 시	장 소	분 류	의정활동 내용	비고
11. 19.(화) 19:00	쇠부리 체육센터	정기행사	◦ 2019 울산 북구지역아동센터 후원자의 밤	
11. 20.(수)~ 12. 20.(금)	북구의회	정례회	◦ 제18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11. 20.(수) 15:00	북구청 대회의실	정기행사	◦ 2019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11. 26.(화) 10:00	북구청 대회의실	정기행사	◦ 북구 제3대학 제12기 졸업식	
11. 28.(목) 14:00	오토밸리 복지센터	정기행사	◦ 2019 북구자원봉사 대축제	
11. 29.(금) 11:30	오토밸리 복지센터	정기행사	◦ 2019 도서관 자원봉사자 워크숍	
12. 5.(목) 15:00	북구청 대회의실	정기행사	◦ 2019 울산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범운영 사업 결과보고	
12. 6.(금) 14:00	무룡고 일원	준공식	◦ 연암동 무룡고 일원 소방도로 개설 공사 준공식	
12. 10.(화) 18:00	오토밸리 복지센터	정기행사	◦ 2019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 전진대회	
12. 11.(수) 11:00	북구 노인복지관	정기행사	◦ 2019 울산북구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평가회	
12. 12.(목) 14:00	북구청 대회의실	정기행사	◦ 2019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 보고회	
12. 13.(금) 14:00	농소3동 도서관	개소식	◦ 농소3동 도서관 〈소통&공감 갤러리〉 개소식	
12. 13.(금) 15:00	북구청 대회의실	보고회	◦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12. 13.(금) 17:00	동대15길 21 일원	정기행사	◦ 2019 자유총연맹 북구지회 송년회	
12. 15.(일) 18:00	오토밸리 복지센터	이·취임식	◦ 제13,14대 송정,화봉 자율방범대 대장 이·취임식	

일 시	장 소	분 류	의정활동 내용	
12. 16.(월) 15:00	북구청 대회의실	보고회	◦ 2019 울산 쇠부리 제철기술 복원 실험 결과보고회	
12. 19.(화) 14:00	송정경로당	준공식	◦ 송정경로당 준공식	
12. 19.(화) 16:00	오토밸리 복지센터	정기행사	◦ 2019 북구 평생학습 성과보고회	
12. 19(화) 18:30	울산진장 CGV	정기행사	◦ 2019 북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밤	
12. 20.(금) 11:00	북구의회 다목적실	종무식	◦ 2019 북구의회 종무식	
12. 20.(금) 15:00	북구청 다목적실	보고회	◦ 2019 마을골목 깔끔이 프로젝트 성과평가 보고회	
12. 22.(일) 13:00	신흥사 경내	정기행사	◦ 신흥사 산사음악회	
12. 24.(화) 11:00	상안동	퇴임식	◦ 2019 환경미화원 정년퇴임식	
12. 26.(목) 10:00	동구청 대강당	정기행사	◦ 울산광역시 구·군 의원 합동 워크숍	
12. 27.(금) 14:00	연암동 1118-2번지 일원	기공식	◦ 북구 평생학습관 건립공사 기공식	
12. 27.(금) 17:00	달천동 1-7번지	개관식	◦ 달천철장 관리시설 개관식	
12. 30.(월) 10:00	달천아이파크 1차 아파트	개소식	◦ 울산 북구 공동육아나눔터 제3호 개소식	
12. 30.(월) 14:00	송내공원	준공식	◦ 송내공원(족구장)정비공사 준공식	
12. 30.(월) 18:00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정기행사	◦ 2019 울산쇠부리소리보존회 송년의 밤	
12. 31.(화) 11:00	북구청 대회의실	종무식	◦ 2019 북구청 종무식	

2020년도

일 시	장 소	분 류	의정활동 내용	비고
1. 1.(수) 06:00	당사해양 낚시공원	정기행사	◦ 2020 당사마을 해맞이 행사	
1. 2.(목) 08:30	울산대공원	정기행사	◦ 2020 새해 현충탑 참배	
1. 6.(월) 10:00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정기행사	◦ 2020 새해공감토크	
1. 7.(화) 14:00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정기행사	◦ 2020 새해공감토크	
1. 8.(수) 10:00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정기행사	◦ 2020 새해공감토크	
1. 9.(목) 14:00	북구청 대회의실	정기행사	◦ 2020 구정발전기원 신년인사회	
1. 9.(목) 16:00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발대식	◦ 농소1동 주민자치회 발대식	
1. 10.(금) 10:00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정기행사	◦ 2020 새해공감토크	
1. 11.(토) 10:00	북구청 광장	정기행사	◦ 2020 아름다운 가게 나눔보따리 행사	
1. 13.(월) 10:00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정기행사	◦ 2020 새해공감토크	
1. 14.(화) 10:00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정기행사	◦ 2020 새해공감토크	
1. 14.(화) 19:00	북구청 대회의실	정기행사	◦ 2019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	

일 시	장 소	분 류	의정활동 내용	비고
1. 16.(목) 10:00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정기행사	◦ 2020 새해공감토크	
1. 16.(목) 18:00	오토밸리 복지센터	정기행사	◦ 자연보호중앙연맹 북구협의회 제22차 정기총회 및 신년회	
1. 17.(금) 10:00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정기행사	◦ 2020 새해공감토크	
1. 21.(화) 10:00	울산현대요양원 외 1개소	위문방문	◦ 설맞이 복지시설 위문방문	
1. 22.(수) 10:00	친환경 급식센터	정기행사	◦ 2020 북구새마을협회 부녀회 정기총회	
1. 30.(목) 11:00	친환경 급식센터	정기행사	◦ 북구새마을회 정기총회	
1. 31.(금) 11:30	북구보훈회관	정기행사	◦ 6.25참전유공자 북구지회 2020 안보결의대회 및 정기총회	
1. 31.(금) 14:00	강동문화센터	설명회	◦ 강동 발전 관련 진행상황 및 계획 설명회	
2. 4.(화) 09:30	농소농협 본점	정기행사	◦ 농소농협 제51기 정기총회	
2. 4.(화) 16:00	북구청 대회의실	정기행사	◦ 지방분권 주민교육	
2. 6.(목) 14:00	북구청 대회의실	정기행사	◦ 2020 통장 직무교육	
2. 7.(금) 18:30	오토밸리 복지센터	취임식	◦ 북구체육회 제3대 회장 취임식	
2. 10.(월) 14:00	강동문화센터	전달식	◦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검사 증명서 전달식	
2. 11.(화) 14:00	구남마을	기공식	◦ 강동 베이스타즈 C.C 기공식	
2. 17.(월)~ 2. 28.(금)	북구의회	임시회	◦ 제186회 북구의회 임시회	

일 시	장 소	분 류	의정활동 내용	비고
2. 25.(화) 14:00	화봉동 450-1번지	기공식	◦ 북구 노인회관 기공식	
2. 28.(금) 10:00	북구의회 의장실	간담회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의원 간담회	
3. 1.(일) 10:00	울산 문화예술회관	정기행사	◦ 제101주년 3.1절 기념행사	
3. 12.(목) 14:00	호계시장	방역활동	◦ 호계시장 방역활동	
3. 17.(화) 15:00	북구청 로비	제막식	◦ 북구 명예의 전당 제막식	
3. 18.(수) 10:00	염포,양정동	방역활동	◦ 염포,양정동 방역의 날 행사	
3. 18.(수) 14:00	북구청 다목적실	교육	◦ 찾아가는 법제처 자치법제 교육	
3. 25.(수) 16:00	명촌동	방역활동	◦ 명촌동 방역의 날 행사	
4. 1.(수) 16:00	농소1동	방역활동	◦ 농소1동 방역의 날 행사	
4. 8.(수) 16:00	강동동	방역활동	◦ 강동동 방역의 날 행사	
4. 20.(월)~ 5. 4.(월)	북구의회	임시회	◦ 제187회 북구의회 임시회	
4. 27.(월) 15:30	화봉공원	준공식	◦ 화봉공원 공영주차장 준공식	
4. 29.(수) 16:00	LH 현장사무소	간담회	◦ 송정지구 빗물펌프장 관련 간담회	
5. 4.(월) 11:00	북구의회 다목적실	보고회	◦ 북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사용료 현실화 방안 보고회	
5. 6.(수) 14:00	북구청 대회의실	설명회	◦ 2020 주민자치회 전환 주민설명회	

일 시	장 소	분 류	의정활동 내용	비고
5. 7.(목) 14:00	북구 문화예술회관	오픈식	◦ 북구문화예술회관 예술책방 오픈식	
5. 14.(목) 10:30	신천하나로마트 문화센터	정기행사	◦ 제30기 농소농협 주부대학 개강식	
5. 18.(월) 17:00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개소식	◦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소통&공감 갤러리 개소식	
5. 26.(화) 11:00	북구청 상황실	기부채납식	◦ 북구장애인복지관 부지 기부채납식	
5. 28.(목) 14:30	호계동 1021-1번지	착공식	◦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공사 착공식	
6. 4.(목) 10:30	UNIST	견학	◦ 의원 및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UNIST견학	
6. 5.(금) 17:00	오토밸리 복지센터	정기행사	◦ 민주평동 북구협의회 제19기 4차 정기회의	
6. 9.(화) 10:00	북구청 대회의실	정기행사	◦ 2020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 개강식	
6. 9.(화) 16:00	호계11길 10	개소식	◦ 호계그린나래 청소년지역아동센터 개소식	
6. 10.(수)~ 6. 24.(수)	북구의회	정례회	◦ 제188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6. 20.(토) 10:00	북구청 대회의실	정기행사	◦ 2020 제2대 북구 아동의회 발대식	
6. 26.(금) 14:00	북구청 대회의실	정기행사	◦ 북구 최고의 고민 경연 행사	
6. 30.(화) 11:00	천곡천	봉사활동	◦ 개원 2주년 기념 의원 및 직원 봉사활동	
6. 30.(화) 14:00	육아종합 지원센터	개관식	◦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식	
6. 30.(화) 16:00	대안마을	준공식	◦ 강동동 대안마을 진입도로 개통식	

부 록

1. 역대 의장단 명단
2. 초대의원 명단
3. 초대의원 사진
4. 제2대 의원 명단
5. 제2대 의원 사진
6. 제3대 의원 명단
7. 제3대 의원 사진
8. 제4대 의원 명단
9. 제4대 의원 사진
10. 제5대 의원 명단
11. 제5대 의원 사진
12. 제6대 의원 명단
13. 제6대 의원 사진
14. 제7대 의원 명단
15. 제7대 의원 사진
16. 북구지역 전직의원 명단
17. 역대 구청장 명단
18. 역대 사무(국)과장 명단
19. 역대 전문위원 명단

역대 의장단 명단

□ 의장 명단

구 분	선 거 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초 대	강 동 동	김 성 보	1937. 4. 4.	1997. 7. 15. ~1998. 6. 30.	
제2대 전반기	송 정 동	윤 두 환	1955. 3. 5.	1998. 7. 7. ~2000. 2. 21.	
〃	농소3동	박 춘 환	1952. 1. 11.	2000. 2. 21. ~2000. 7. 6.	
제2대 후반기	양 정 동	진 한 걸	1953.11. 15.	2000. 7. 7. ~2002. 6. 30.	
제3대 전반기	송 정 동	김 진 영	1964.10. 11.	2002. 7. 9. ~2004. 7. 6.	
제3대 후반기	염 포 동	하 인 규	1959. 9. 17.	2004. 7. 7. ~2006. 6. 30.	
제4대 전반기	효 문 동, 양 정 동, 염 포 동	류 재 건	1961. 2. 5.	2006. 7. 3. ~2008. 7. 2.	
제4대 후반기	농소1동, 강 동 동, 송 정 동	윤 임 지	1952.10. 15.	2008. 7. 3. ~2010. 6. 30.	
제5대 전반기	농소1동, 강 동 동, 송 정 동	안 승 찬	1963. 5. 29.	2010. 7. 1. ~2012. 6. 30.	
제5대 후반기	농소2동, 농소3동	윤 치 용	1966.11. 18.	2012. 7. 1. ~2014. 6. 30.	
제6대 전반기	농소2동, 농소3동	이 수 선	1961.12. 7.	2014. 7. 1. ~2016. 6. 30.	
제6대 후반기	비례대표	정 복 금	1952. 1. 25.	2016. 7. 1. ~2018. 6. 30.	
제7대 전반기	농소1동, 강 동 동, 송 정 동	이 주 언	1971. 6. 17.	2018. 7. 2. ~2020. 7. 1.	

□ 부의장 명단

구 분	선 거 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초 대	송 정 동	윤 두 환	1955. 3. 5.	1997. 7. 15. ~1998. 6. 30.	
제2대 전반기	농소3동	박 춘 환	1952. 1. 11.	1998. 7. 7. ~2000. 2. 21.	
〃	양 정 동	진 한 걸	1953.11. 15.	2000. 2. 21. ~2000. 7. 6.	
제2대 후반기	강 동 동	박 광 식	1955.11. 15.	2000. 7. 7. ~2000. 6. 30.	
제3대 전반기	농소2동	김 재 근	1958. 9. 11.	2002. 7. 9. ~2004. 7. 6.	
제3대 후반기	농소1동	이 재 경	1956. 4. 25.	2004. 7. 7. ~2006. 6. 30.	
제4대 전반기	농소1동, 강 동 동, 송 정 동	윤 임 지	1952.10. 15.	2006. 7. 3. ~2008. 7. 2.	
제4대 후반기	농소2동, 농소3동	문 석 주	1962. 8. 27.	2008. 7. 3. ~2010. 4. 21.	
〃	효 문 동, 양 정 동, 염 포 동	류 인 목	1961.12. 30.	2010. 4. 22. ~2010. 6. 30.	
제5대 전반기	효 문 동, 양 정 동, 염 포 동	정 윤 석	1960. 9. 20.	2010. 7. 1. ~2012. 6. 30.	
제5대 후반기	농소2동, 농소3동	이 수 선	1961.12. 7.	2012. 7. 1. ~2014. 6. 30.	
제6대 전반기	효 문 동, 양 정 동, 염 포 동	강 진 희	1970. 5. 12.	2014. 7. 1. ~2016. 6. 30.	
제6대 후반기	효 문 동, 양 정 동, 염 포 동	강 진 희	1970. 5. 12.	2016. 7. 1. ~2018. 6. 30.	
제7대 전반기	효 문 동, 양 정 동, 염 포 동	백 현 조	1964. 8. 26.	2018. 7. 2. ~2020. 7. 1.	

초대의원 명단

연번	직 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의 장	강 동 동	김성보	1937. 4. 4.	1997. 7. 15. ~1998. 6. 30.	환경수도
2	부의장	송 정 동	윤두환	1955. 3. 5.	1997. 7. 15. ~1998. 6. 30.	교육사회
3	의 원	진 장 동	정석수	1937. 4. 15.	1997. 7. 15. ~1998. 6. 30.	운영·건설
4	의 원	농 소 동	한성두	1941. 3. 31.	1997. 7. 15. ~1998. 6. 30.	도시경제
5	의 원	농소·강동 (제10선거구)	이상원	1941. 8. 29.	1997. 7. 15. ~1998. 6. 30.	운영·내무
6	의 원	효 문 동	이병우	1942. 2. 8.	1997. 7. 15. ~1998. 6. 30.	내무위원장
7	의 원	양 정 동	진한걸	1953.11. 15.	1997. 7. 15. ~1998. 6. 30.	도시경제 (간사)·운영
8	의 원	염 포 동	조승수	1963. 1. 22.	1998. 3. 2. ~1998. 6. 30.	환경수도 (간사)·운영

※ 초대 울산광역시의회의원 겸직

초대의원 사진

□ 의장단

강 동 동(면)



의장 **김 성 보**

송 정 동



부의장 **윤 두 환**

□ 의 원

제10선거구



이 상 원

농 소 동(읍)



한 성 두

진 장 동



정 석 수

효 문 동



이 병 우

양 정 동



진 한 걸

염 포 동



조 승 수

제2대 의원 명단

연번	직 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의 장	송정동	윤두환	1955. 3. 5.	1998. 7. 1. ~2000. 2. 21.	전반기
2	〃	농소3동	박춘환	1952. 1. 11.	1998. 7. 1. ~2002. 6. 30.	전반기 부의장 및 의장(보궐)
3	〃	양정동	진한걸	1953.11. 15.	1998. 7. 1. ~2002. 6. 30.	전반기 부의장(보궐) 및 후반기 의장
4	부의장	강동동	박광식	1955.11. 15.	1998. 7. 1. ~2002. 6. 30.	
5	의 원	농소1동	김수헌	1957.11. 15.	1998. 7. 1. ~2002. 6. 30.	전반기 운영위원장
6	〃	농소2동	강혁진	1961.10. 1.	1998. 7. 1. ~2002. 6. 30.	
7	〃	효문동	류재건	1961. 2. 5.	1998. 7. 1. ~2002. 6. 30.	
8	〃	송정동	김진영	1964.10. 11.	2000. 6. 8. ~2002. 6. 30.	보궐선거 당선
9	〃	염포동	윤종오	1963. 8. 14.	1998. 7. 1. ~2002. 6. 30.	후반기 운영위원장

제2대 의원 사진

□ 의장단

송 정 동



의장 **윤 두 환**

농 소 3 동



의장 **박 춘 환**

양 정 동



의장 **진 한 걸**

강 동 동



부의장 **박 광 식**

□ 의 원

농 소 1 동



김 수 현

농 소 2 동



강 혁 진

효 문 동



류 재 건

송 정 동



김 진 영

염 포 동



윤 종 오

제3대 의원 명단

연번	직 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의 장	송정동	김진영	1964.10. 11.	2002. 7. 1. ~2006. 6. 30.	전반기 의장
2	〃	염포동	하인규	1959. 9. 17.	2002. 7. 1. ~2006. 6. 30.	후반기 의장
3	부의장	농소2동	김재근	1958. 9. 11.	2002. 7. 1. ~2006. 6. 30.	전반기 부의장
4	〃	농소1동	이재경	1956. 4. 25.	2002. 7. 1. ~2006. 6. 30.	후반기 부의장
5	의 원	농소3동	김대영	1960. 2. 2.	2002. 7. 1. ~2006. 4. 10.	후반기 운영위원장
6	〃	강동동	윤임지	1952.10. 15.	2002. 7. 1. ~2006. 6. 30.	
7	〃	효문동	류재건	1961. 2. 5.	2002. 7. 1. ~2006. 6. 30.	
8	〃	양정동	류인목	1961.12. 30.	2002. 7. 1. ~2006. 6. 30.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3대 의원 사진

□ 의장단

송 정 동



의장 김 진 영

염 포 동



의장 하 인 규

농 소 2 동



부의장 김 재 근

농 소 1 동



부의장 이 재 경

□ 의 원

농 소 3 동



김 대 영

강 동 동



윤 임 지

효 문 동



류 재 건

양 정 동



류 인 목

제4대 의원 명단

연번	직 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의 장	효 문 동, 양 정 동, 염 포 동	류재건	1961. 2. 5.	2006. 7. 1. ~2010. 6. 30.	전반기 의장
2	〃	농소1동, 강 동 동, 송 정 동	윤임지	1952.10. 15.	2006. 7. 1. ~2010. 6. 30.	후반기 의장
3	부의장	농소1동, 강 동 동, 송 정 동	윤임지	1952.10. 15.	2006. 7. 1. ~2010. 6. 30.	전반기 부의장
4	〃	농소2동, 농소3동	문석주	1962. 8. 27.	2006. 7. 1. ~2010. 4. 21.	후반기 부의장
5	〃	효 문 동, 양 정 동, 염 포 동	류인목	1961.12. 30.	2006. 7. 1. ~2010. 6. 30.	후반기 부의장
6	의 원	농소1동, 강 동 동, 송 정 동	박병석	1966. 9. 25.	2006. 7. 1. ~2010. 6. 30.	
7	〃	농소2동, 농소3동	아은영	1966.10. 16.	2006. 7. 1. ~2010. 3. 22.	
8	〃	비례대표	이영희	1963. 7. 22.	2006. 7. 1. ~2010. 6. 30.	

제4대 의원 사진

□ 의장단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의장 **류 재 건**



농소1동, 강동동, 송정동

의장 **윤 임 지**



농소2동, 농소3동

부의장 **문 석 주**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부의장 **류 인 목**

□ 의 원



농소1동, 강동동, 송정동

박 병 석



농소2동, 농소3동

이 은 영



비례대표

이 영 희

제5대 의원 명단

연번	직 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의 장	농소1동, 강 동 동, 송 정 동	안승찬	1963. 5. 29.	2010. 7. 1. ~2014. 6. 30.	전반기 의장
2	〃	농소2동, 농소3동	윤치용	1966.11. 18.	2010. 7. 1. ~2014. 6. 30.	후반기 의장 전반기 운영위원장
3	부의장	효 문 동, 양 정 동, 염 포 동	정윤석	1960. 9. 20.	2010. 7. 1. ~2014. 6. 30.	전반기 부의장
4	〃	농소2동, 농소3동	이수선	1961.12. 7.	2010. 7. 1. ~2014. 6. 30.	후반기 부의장
5	의 원	효 문 동, 양 정 동, 염 포 동	강진희	1970. 5. 12.	2010. 7. 1. ~2014. 6. 30.	후반기 운영위원장
6	〃	효 문 동, 양 정 동, 염 포 동	이홍걸	1961. 2. 10.	2010. 7. 1. ~2014. 6. 30.	
7	〃	비례대표	이혜경	1969. 3. 21.	2010. 7. 1. ~2014. 6. 30.	

제5대 의원 사진

□ 의장단



농소1동, 강동동, 송정동

의장 안 승 찬



농소2동, 농소3동

의장 윤 치 용



효문동,양정동, 염포동

부의장 정 윤 석



농소2동, 농소3동

부의장 이 수 선

□ 의 원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강 진 희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이 홍 걸



비례대표

이 혜 경

제6대 의원 명단

연번	직 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의 장	농소2동, 농소3동	이수선	1961.12. 7.	2014. 7. 1. ~2018. 6. 30.	전반기 의장
2	〃	비례대표	정복금	1952. 1. 25.	2014. 7. 1. ~2018. 6. 30.	후반기 의장
3	부의장	효 문 동, 양 정 동, 염 포 동	강진희	1970. 5. 12.	2014. 7. 1. ~2018. 6. 30.	전·후반기 부의장
4	의 원	농소1동, 강 동 동, 송 정 동	이상육	1962. 6. 4.	2014. 7. 1. ~2018. 6. 30.	전반기 운영위원장
5	〃	농소2동, 농소3동	윤치용	1966.11. 18.	2014. 7. 1. ~2017.12. 22.	후반기 운영위원장
6	〃	농소1동, 강 동 동, 송 정 동	안승찬	1963. 5. 29.	2014. 7. 1. ~2018. 4. 12.	
7	〃	효 문 동, 양 정 동, 염 포 동	백현조	1964. 8. 26.	2014. 7. 1. ~2018. 6. 30.	

제6대 의원 사진

□ 의장단

농소2동, 농소3동



의장 **이 수 선**

비 례 대 표



의장 **정 복 금**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부의장 **강 진 희**

□ 의 원

농소1동, 강동동, 송정동



이 상 육

농소2동, 농소3동



윤 치 용

농소1동, 강동동, 송정동



안 승 찬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백 현 조

제7대 의원 명단

연번	직 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의 장	농소1동, 강 동 동, 송 정 동	이주언	1971. 6. 17.	2018. 7. 1. ~2022. 6. 30.	전반기 의장
2	부의장	효 문 동, 양 정 동, 염 포 동	백현조	1964. 8. 26.	2018. 7. 1. ~2022. 6. 30.	전반기 부의장
3	의 원	효 문 동, 양 정 동, 염 포 동	임채오	1975. 8. 4.	2018. 7. 1. ~2022. 6. 30.	전반기 운영위원장
4	〃	농소1동, 강 동 동, 송 정 동	박상복	1978. 6. 17.	2018. 7. 1. ~2020. 1. 15.	'20. 1. 15. 사직
5	〃	농소1동, 강 동 동, 송 정 동	정치락	1959. 8. 17.	2020. 4. 16. ~2022. 6. 30.	'20. 4. 16. 보궐선거 당선
6	〃	농소2동, 농소3동	정외경	1965. 8. 15.	2018. 7. 1. ~2022. 6. 30.	
7	〃	농소2동, 농소3동	이정민	1959. 6. 29.	2018. 7. 1. ~2022. 6. 30.	
8	〃	농소2동, 농소3동	임수필	1968. 4. 5.	2018. 7. 1. ~2022. 6. 30.	
9	〃	비례대표	이진복	1977. 1. 28.	2018. 7. 1. ~2022. 6. 30.	

제7대 의원 사진

□ 의장단

농소1동, 강동동, 송정동



의장 이 주 언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부의장 백 현 조

□ 의 원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임 채 오

농소1동, 강동동, 송정동



정 치 락

농소1동, 강동동, 송정동



박 상 복

농소2동, 농소3동



정 외 경

농소2동, 농소3동



이 정 민

농소2동, 농소3동



임 수 필

비례대표



이 진 복

북구지역 전직의원 명단('97.7.15 이전)

연번	직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의 원	울산시제10선거구	이상원	1941. 8. 29.	1995. 7. 1. ~1997. 7. 14.	제5대 경남도의회의원 운영·내무위원
2	의 장	울주군 농소읍	한성두	1941. 3. 31.	1991. 4. 15. ~1997. 7. 14.	초대 울산군의회의원 통합·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울주군의회의장 통합시의회 부의장
3	의 원	울주군 강동면	김성보	1937. 4. 4.	1991. 4. 15. ~1997. 7. 14.	초대 울산군의회의원 통합·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환경수도위원
4	〃	중 구 송정동	윤두환	1955. 3. 5.	1991. 4. 15. ~1997. 7. 14.	초대 울산시의회의원 통합·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도시경제위간사교육사회위원
5	〃	중 구 진장동	김두헌	1936. 4. 15.	1991. 4. 15. ~1995. 6. 30.	초대 울산시의회의원 도시경제위원
6	〃	중 구 효문동	한기찬	1938. 4. 3.	1991. 4. 15. ~1995. 6. 30.	초대 울산시의회의원 건설위원
7	운 영 위원장	중 구 양정동	류재락	1945. 8. 15.	1991. 4. 15. ~1995. 6. 30.	초대 울산시의회의원 운영위원장
8	의 원	중 구 염포동	김춘길	1942.10. 10.	1991. 4. 15. ~1995. 6. 30.	초대 울산시의회의원 내무위원
9	〃	중 구 진장동	정석수	1937. 4. 15.	1995. 7. 1. ~1997. 7. 14.	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운영·건설위원
10	내 무 위원장	중 구 효문동	이병우	1942. 2. 8.	1995. 7. 1. ~1997. 7. 14.	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내무위원장
11	의 원	중 구 양정동	진한걸	1953.11. 15.	1995. 7. 1. ~1997. 7. 14.	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도시경제위간사운영위원
12	〃	중 구 염포동	조승수	1963. 1. 22.	1995. 7. 1. ~1997. 7. 14.	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환경수도위간사운영위원

역대 구청장 명단

연 번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직무대행	황 성 환	1948. 2. 29.	1997. 7. 15. ~1998. 6. 30.	
2	민선초대	조 승 수	1963. 1. 22.	1998. 7. 1. ~2002. 6. 30.	
3	민선제2대	이 상 범	1957. 4. 15.	2002. 7. 1. ~2006. 5. 24.	
4	민선제3대	강 석 구	1960. 9. 18.	2006. 7. 1. ~2010. 6. 30.	
5	민선제4대	윤 종 오	1963. 8. 14.	2010. 7. 1. ~2014. 6. 30.	
6	민선제5대	박 천 동	1966. 3. 20.	2014. 7. 1. ~2018. 6. 30.	
7	민선제6대	이 동 권	1957. 8. 5.	2018. 7. 1. ~2022. 6. 30.	

역대 사무(국)과장 명단

연번	직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비 고
1	사무국장	지방서기관	이종영	1939. 9. 27.	1997. 7. 15. ~1998. 9. 30.	1998.10.1 구조조정으로 직제개편
2	사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백용한	1946.12. 30.	1998.10. 1. ~2001. 1. 15.	〃
3	〃	〃	최종식	1952.10. 20.	2001. 1. 16. ~2004. 3. 5.	
4	〃	〃	송태호	1955. 1. 10.	2004. 3. 6. ~2006. 1. 11.	
5	〃	〃	이상현	1955. 2. 6.	2006. 1. 12. ~2007. 7. 26.	
6	〃	〃	홍장희	1956. 7. 22.	2007. 7. 27. ~2009. 7. 19.	
7	〃	〃	윤규태	1959. 5. 10.	2009. 7. 20. ~2010. 7. 22.	
8	〃	〃	이차범	1955. 9. 17.	2010. 7. 23. ~2011.12. 31.	
9	〃	〃	강결수	1957.11. 5.	2012. 1. 1. ~2014. 8. 6.	
10	〃	〃	이태희	1959. 9. 23.	2014. 8. 7. ~2016.12. 31.	
11	〃	〃	홍성욱	1959. 5. 19.	2017. 1. 1. ~2018. 6. 30.	
12	〃	〃	김용종	1960. 6. 19.	2018. 7. 1. ~2019. 6. 30.	
13	〃	〃	허사영	1964. 4. 17.	2019. 7. 1. ~2020. 6. 30.	

역대 전문위원 명단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비고
1	전문위원	지방행정 사 무 관	백용한	1946.12. 30.	1997. 7. 15. ~1998. 9. 30.	
2	〃	〃	이차호	1960.10. 26.	1998.10. 1. ~1999. 9. 30.	
3	〃	〃	성낙화	1952. 5. 5.	1999.10. 1. ~2001. 1. 15.	
4	〃	〃	김찬수	1955. 9. 28.	2001. 1. 16. ~2003. 1. 27.	
5	〃	〃	이상찬	1971.12. 25.	2003. 1. 28. ~2006. 1. 8.	
6	〃	〃	박민수	1957. 4. 27.	2006. 1. 12. ~2008. 7. 20.	
7	〃	〃	윤규태	1959. 5. 10.	2008. 7. 21. ~2009. 7. 19.	
8	〃	〃	김규석	1956. 7. 26.	2009. 7. 20. ~2011. 2. 13.	
9	〃	〃	김종구	1956.10. 2.	2011. 2. 14. ~2012.12. 31.	
10	〃	〃	공영옥	1955. 4. 15.	2013. 1. 1. ~2014. 6. 30.	
11	〃	〃	김남희	1964. 1. 5.	2014. 8. 7. ~2015. 6. 30.	
12	〃	〃	이정걸	1957. 4. 19.	2015. 7. 1. ~2016. 6. 30.	
13	〃	〃	김용종	1960. 6. 19.	2016. 7. 1. ~2018. 6. 30.	
14	〃	〃	허사영	1964. 4. 17.	2018. 7. 26. ~2019. 7. 1.	
15	〃	〃	최상규	1965.10. 13.	2018. 7. 26. ~2020. 6. 30.	
16	〃	〃	김광명	1964. 3. 13.	2019.7.1.~현재	

의 정 백 서 제12집

제7대 전반기

인 쇄 : 2020년 12월

발 행 : 2020년 12월

발행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우)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편집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TEL : 052-241-8973

FAX : 052-241-8979